

발 간 등 록 번 호

52-6260000-000076-10

釜山史料叢書 22

國
譯

通信使膽錄(Ⅲ)

(1709. 2 ~ 1712. 5)

國譯 鄭景柱
俞英玉
監修 李源鈞
解題 金東哲



釜山廣域市史編纂委員會

2015. 8.

일 러 두 기

- 이 책은 현존하는 통신사등록 14책(1641년, 인조 19년 ~ 1811년, 순조 11년)과 통신사 초등록 1책 중 통신사등록 제5책(1709. 2. 18 ~ 1711. 3. 1)과 제6책(1711. 3. 3 ~ 1712. 5. 20)을 국역한 것이다.
- 이 책은 조선후기 일본의 통신사 파견 요청, 통신사절목, 통신 3사(정사, 부사, 종사관) 자료와 왜선의 출래, 차왜의 출래, 안위관 파견, 차비역관의 출래, 문위역관의 파견 등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 통신사등록의 국역문은 가능한 한 원문의 취지에 가깝게 직역하되, 외교 및 무역 관례상 관습적으로 굳어진 용어는 가급적 그대로 사용 하였다.
- 이 책은 조선후기 공용문서이므로 이두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대개 이두의 본 뜻을 살려 국역하였으나, 간혹 문장의 호흡이 너무 길어 문맥을 이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중간에 끊어 고친 곳이 있다.
- 원문의 어휘 중에 간혹 지금의 관용 표기와 다른 경우는 재래의 관습을 중시하여 대개 원문대로 살렸다. 다만 필사과정의 실수로 인한 오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각주에 그 사실을 밝히고 고쳤다.
- 日本 人名과 地名에 사용된 한자는 일본 측의 表音が 분명한 경우에는 풀어 표기하였으나, 조선 측의 한자음이 관용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조선 측의 한자음으로 표기하였다.

국역 통신사등록(III)

(1709. 2 ~ 1712. 5)

차 례

- 일러두기
- 차 례
- 국역 통신사등록(III) 해제 3

국역 통신사등록

제 5 책

- 기축(己丑, 1709년, 숙종 35년)
 - 2월 18일 顯自卒 逝告計事로 倭船 出來 87
 - 6월 3일 顯自身死告訃大差倭 出來 通報 87
 - － 大差倭 出來에 對備한 京接慰官 및 差備譯官 差出
 - 6월 30일 日本 新關白이 對馬島主에게 朝鮮通信使 要請을 分付함 89
 - 7월 27일 關白身死告訃倭 平眞致 出來 89
 - － 差倭 一行의 接待 伴從數 感除
 - － 接慰官 下送 催促
 - 關白告訃差倭 齎來 書契 內容
 - － 關白告訃差倭書契에 대한 回答書契 準備 및 別幅回禮物目
 - 告訃差倭 一行에 대한 三度宴 및 京接慰官 禮單物目
 - 8월 2일 告訃差倭 一行 接待 伴從 및 格倭數 感除 94
 - 9월 1일 關白承襲告慶差倭 出來 通報 95
 - － 告慶差倭에 대한 京接慰官 및 差備譯官 差出
 - － 舊關白 弔慰 渡海譯官을 미리 差出할것
 - 9월 6일 京接慰官 李世瑾 東萊 到着 97
 - 9월 10일 關白弔慰譯官 差出(卞廷郁, 鄭萬益) 97

○ 9월 12일	告訃差倭 一行에 대한 茶禮 設行 및 所呈書契, 別幅 上送……	97
○ 9월 13일	關白弔慰禮單 및 焚香時 所用禮物 磨鍊……………	98
○ 9월 14일	關白弔慰譯官의 盤纏禮單 및 渡海糧 題給……………	98
○ 9월 20일	告訃差倭一行에 대한 下船宴 設行……………	99
○ 9월 21일	新關白承襲告慶差倭 平倫久 出來……………	99
	－ 接慰官 및 差備譯官 下送 催促	
○	告慶差倭齋來 書契 및 別幅 內容	
	－ 告慶差倭書契에 대한 回答書契 準備 및 別幅回禮物目	
○	告慶差倭一行에 대한 三度宴 및 京接慰官 禮單物目	
○ 10월 7일	告訃差倭一行에 대한 別宴 宴需乾物을 入給함……………	103
○ 10월 8일	漂人領來差倭 橘友重 및 京接慰官 禮單物目……………	103
	－ 差倭齋來書契 內容中 結辭 文句에 대한 責諭	
○	島主還島告還差倭齋來 書契 및 別幅 內容	
	－ 島主告還差倭書契에 대한 回答書契 및 別幅回禮物目	
○	告漂差倭에 대한 兩度宴 贈給禮單物目	
○ 10월 19일	京接慰官 李廷濟 東萊 倒着……………	108
○ 10월 23일	以後 書契末端 結句는 「不宜」 대신 「不備」로 할 것……………	108
○ 10월 27일	問慰譯官護行裁判差倭 蘇方恭 出來……………	109
	－ 新舊裁判差倭 交替 및 舊裁判 撤供	
	－ 渡海譯官은 問慰, 弔慰 兼行으로 할 것	
○	問慰譯官護行裁判差倭 齋來 書契 및 別幅 內容	
	－ 裁判差倭書契에 대한 回答書契 準備 및 別幅回禮物目	
○	裁判差倭一行에 대한 三度宴 增給禮單物目	
○ 10월 29일	渡海譯官은 問慰, 弔慰 兼行으로 하며 書契는 各張으로 할 것……	113
○ 11월 1일	問慰兼 弔慰 渡海譯官 齋來書契 準備 및 禮單雜物……………	114
○	問慰譯官 私禮單 磨鍊	
○	問慰譯官 騏卜馬 準備	
○	問慰譯官 禮單載持刷馬 準備	
○ 11월 7일	關白告訃差倭 一行에 대한 上船宴 設行……………	114
○ 11월 11일	新關白告慶差倭 一行에 대한 茶禮, 設行 및 所呈, 書契, 別幅, 上送……	115
○ 11월 17일	關白告訃差倭 乘船 및 京接尉官 離發……………	115
○	關白告訃差倭 三次所呈 禮物單子 內容	

○ 11월 24일	關白告訃差倭 下船宴 設行	116
○ 11월 28일	關白告訃差倭 發船 入歸	117
○ 12월 18일	告慶差倭 一行에 대한 別宴 宴需를 乾物 入給함	117
○ 12월 25일	告慶差倭 一行에 대한 京接慰官 離發	117
○	告慶差倭 乘船 및 京接慰官 離發	
○	告慶差倭 兩次所呈 禮物單子 內容	

□ 경인(庚寅, 1710년, 숙종 36년)

○ 6월 13일	通信使請求差倭 平眞連 出來	118
○ 6월 14일	倭船 出來와 入歸	119
	－ 請求差倭 一行에 대한 京接慰官 및 差備譯官 下送 開催	
	－ 請求差倭 一行에 대한 接待 伴從 및 格倭數 感除	
	－ 通信使 借送 問題는 廟堂에서 稟處할 것	
○	請求差倭 齎來 書契 및 別幅 內容	
	－ 請求差倭書契에 대한 回答書契 準備 및 別幅回禮物目	
○	請求差倭 一行에 대한 三度宴 및 接慰官 禮單物目	
○ 6월 19일	通信使 該曹에서 미리 擇差할 것	124
○ 7월 10일	京接慰官 鄭道復 東萊 到着	125
○ 7월 21일	請求差倭가 通信使에 대한 日本側 要求 提示	125
	－ 日本側의 陳請條目(信使行次節目) 內容	
	－ 日本側의 信使行次節目에 대한 朝廷의 處理方針	
○ 7월 22일	通信使 行次時의 應行廳事節目	129
○	使行時의 日本國王以下 各處 使臣禮單物目	
	－ 使行時의 日本國王以下 各處 使臣禮單物目	
○	通信使齎去雜物物目 및 各道卜定 內容	
○ 7월 25일	日本側이 要求한 堂下譯官 加數定送을 拒絕함	136
○	倭船 出來 및 入歸	
	－ 日本側이 信使時 節目講定事로 渡海譯官 入送 要請	
	－ 日本側이 公作米 年限 延期 要請	
	－ 渡海譯官 別送에 대한 論議	
	－ 公作米年限 延期要請에 대한 論議	
○ 7월 26일	渡海譯官 別送에 관한 決定(拒絕)	140

○	公作米年限 延期要請에 대한 決定(限午年許給)	
○	被罪譯官 崔尙鍊을 放釋하여 信使時 譯官으로 差送할 것	
○	在謫譯官 定送事는 放送傳旨 啓下後 舉行할 것	
○윤7월 1일	請來差倭齋來 陳請條目別單 內容……………	144
○윤7월 21일	請來差倭에 대한 下船宴 設行 및 禮單 鷹連의 加送……………	145
○윤7월 23일	倭船 出來 및 入歸……………	145
	－ 日本側이 胡挑, 栢子, 許貿 要求(許貿)	
	－ 信使 使行時의 禮單馬 圖形 持來에 대한 論議(還給)	
○윤7월 24일	信使齋來鷹子の 輸納處所 및 日期를 回移할 것……………	147
○	通信使齋去雜物 및 禮單雜物의 物種數 對備 確認	
○윤7월 27일	請求差倭 一行에 別宴 宴需를 乾物 入給함……………	149
○ 8월 22일	通信正使 및 從事官을 改差할 것……………	149
○ 8월 28일	館守倭에 대한 撤供 還給 및 被罪譯官 崔尙鍊 渙發配所 決定…	150
○ 9월 2일	請求差倭 一行에 대한 上船宴 設行 및 接慰官 離發……………	151
○	請求差倭 所呈書幅 內容 및 禮物物目	
○ 9월 12일	通信使齋去雜物中 大燭臺는 日光山 致祭 與否를 기다려 造成할 것…	152
○	渡海時 格軍 什物 分定을 위해 慶尙道에서 成冊 上送할 것	
○ 9월 13일	請求差倭 一行發船 入歸……………	153
○ 9월 15일	通信使 使行時의 馬上才人 差定……………	154
○ 9월 17일	通信使 使行時 堂上譯官으로 韓後瑗을 起復 送去할 것……………	154
○ 9월 25일	信使盤纏鷹子中 江原道 卜變數 調定……………	154
○	通信齋去雜物 江原道 分定數中 鷹子, 人蔘, 皮物, 五色紙에 대한 論議	
○ 9월 26일	各道分定雜物 主掌 위해 差使員 別定할 것……………	156
○	信使所乘船의 紅段帳을 壬戌前例에 따라 差備할 것	
○	馬上才人의 衣服 造給	
○ 9월 29일	倭譯 韓後瑗 起復 送去 決定을 撤回할 것……………	156
○ 10월 12일	日本側에서 信使時 所用 白馬尾 許貿 要請……………	157
○	通信使 員役人中 別皮陳兼軍官, 典樂, 寫字官 擇定	
○	信使 渡海時 格軍 付物 區別成冊을 上送	
○	渡海時 格軍 付物 分定成冊의 都數 內容	
○ 10월 22일	通信使齋去反應雜物中 人蔘, 鷹連 等物 改分定……………	159
○ 11월 4일	通信使 渡海時 雜物中 全羅道卜定 熱麻, 山麻의 移定……………	159
○	平安道卜定 鷹連 收納時 鷹子臂去者供饋 및 鷹食을 覓給함	

○	黃海道卜定雜物 및 鷹子の 輸送	
○	通信使齋去禮單駿馬의 馬醫 借定	
○ 11월 18일	通信使求請雜物雜種의 指一 分付 要請(南平縣)	161
○	通信使求請雜物雜種의 輸送方法 問題(南平縣)	
○	安岳郡卜定 石鱗을 使臣乾糧所로 輸送함	
○ 11월 27일	通信使 渡海時의 付物中 慶尙道卜定 不足數 變通	162
○ 12월 3일	通信使 發程 및 乘船日 推擇	163
○	通信使 使行時 雜物 差使員 差定	
○ 12월 11일	安岳郡 捧上 石鱗을 退送함	163
○	通信使 當次醫員 差定	
○ 12월 26일	通信使迎護裁判差倭에 대한 鄉接慰官 差定(朴澄)	164
○ 12월 29일	通信使 一行員役中 堂上譯官 및 首譯 差定 論議	164

□ 신묘(辛卯, 1711년, 숙종 37년)

○ 1월 5일	特送使倭船 入歸	165
	－ 裁判差倭에 대한 茶禮 設行	
	－ 日本側에서 使行에 관한 凡事 面護次 首譯 下送 要求	
○ 1월 8일	信使節目 構定事로 首譯下送 決定	166
○ 1월 9일	通信迎護裁判差倭 平方正 出來 및 接待問題 論議	166
○	裁判差倭齋來 書契 및 別幅 內容	
	－ 裁判差倭書契에 대한 回答書契 準備 및 別幅回禮物目	
○	裁判差倭 一行에 대한 三度宴贈給 禮單物目	
○	裁判差倭 一行에 대한 首譯 私禮單 磨鍊	
○	首譯 騏卜馬 題給	
○	通信使齋去 樂器 措備與否 問題	
○ 1월 10일	通信使 入送 및 行期에 관한 移次與否를 廟堂에서 議處할 것...	171
○ 1월 11일	通信使齋去盤纏雜物 人蔘中 平安道 移定分에 대한 頃報 頃報...	171
○	平安道移定 人蔘 頃報에 관한 處理(宣惠廳에서 辛酉典例로 舉行)	
○ 1월 17일	通信使齋去禮單盤纏雜物의 卜定數 對備(慶尙道)	173
○ 1월 19일	通信使齋去盤纏雜物中 軍糧米 및 書契家에 대한 確認(慶尙道)...	176
○ 1월 21일	通信使 入送 保知 答問 撰出 및 齋咨官 差送 決定	176
○ 1월 22일	倭船 出來 및 信使護送差倭 接待問題(接慰官 差定)	177

○	信使齋去禮單鷹連 加送 問題 論議	
○ 1월 24일	鷹子臂去인 및 鷹子所食之物 草料 成給……………	180
○	通信使齋去雜物中 江原道卜定 生梨를 栢子로 代身함	
○ 1월 27일	通信使 江戶 執政以下 所贈禮單 感除 및 儀仗 備去與否 論議…	181
○	通信使齋去禮單中 人蔘詐僞者는 論罪할 것	
○	通信使軍官中 宣傳官 및 監察 卒去 論議	
○	通信使 乘船之帆을 綿布로 造成할것	
○	商譯輩 등의 潛像行爲에 관한 處罰 強化	
○	彦千代圖書 造給에 관한 論議	
○	信使下去時 設宴은 東萊에서만 舉行할 것	
○	信使下去時 使行에 대한 接待供饋에 浮備하지 말 것	
○	通信使軍官 및 書記 給料 支給	
○	通信使員役에게 治裝을 위해 넉넉히 貸給할 것	
○ 1월 28일	通信使 使行時 禁斷節目 內容……………	187
○	信使發行日期 및 應食, 臂應人供饋 準備 各道 通報	
○	信使齋去禮單中 減除分에 대한 確認	
○ 2월 2일	通信使齋去 鷹連中 平安道 卜定分 輸送……………	189
○ 2월 12일	信使盤纏花席 措備……………	190
○	通信使齋去 軍器 運送	
○ 2월 13일	使行求請中 京畿, 湖西 求請에 대한 論議……………	191
○ 2월 17일	通信使齋去 書契家 造作……………	191
○	通信使齋去 鷹連中 黃海道 卜定分 輸送	
○ 2월 19일	通信使 渡海時 格軍 貸價에 대한 問議(全羅道)……………	192
○	信使齋去禮單中 減除分에 대한 確認	
○	首譯私禮單 贈給與否 論議	
○	倭人求請 白馬米 折價에 대한 問議(慶尙道)	
○ 2월 20일	日本側의 信使齋去禮物 減除要請에 대한 論議……………	193
○ 2월 26일	通信使 渡海時 莞席價米 渡海格軍料米에 대한 問議(靈岩郡) ……	196
○ 2월 29일	通信使渡海時 格軍價에 대한 問議(咸平縣)……………	196
○ 3월 1일	通信使 三使臣 假銜以送事……………	196
○	馬上才 所騎馬 및 鞍具 給送	
○	通信使護行大差倭 出來時の 差備譯官 擇送	

□ 신묘(辛卯, 1711년, 숙종 37년)

- 3월 3일 通信使齋去禮單雜物을 釜山僉使에게 輸送할 것…………… 199
- 3월 4일 抗禮問題로 江戶 執政以下 所贈禮單 減除事에 대한 論議… 199
- 3월 5일 通信使盤纏雜物 物目 確認(花方席)…………… 201
- 通信使 盤纏中 平安道 移定 人蔘의 일부 退訟
- 3월 6일 通信使護行貸借倭 平方直 出來 및 信使行次日期 論議…………… 203
- 護行貸借倭에 대한 接慰官은 慶尙道都事로 差定할 것
- 護行差倭齋來 書契 및 別幅 內容
 - － 護行差倭書契에 대한 回答書契 準備 및 別幅回禮物目
- 護行差倭 一行에 대한 三度宴 및 接慰官 禮單物目
- 3월 7일 執政以下 所贈禮單 減除事에 대한 責諭을 別關 措辭할 것… 208
- 3월 8일 關白儲君 禮物 感除事에 대해 差倭에게 詰問할 것…………… 209
- 江戶 執政 以下 및 儲君 所贈禮物 減除事에 대한 備局別關
- 3월 12일 通信使齋去雜物 沒數를 慶尙道로 謄送할 것…………… 211
- 執政以下 所贈禮物를 元數대로 磨鍊할 것
- 3월 13일 通信使齋去 方物櫃子 造作에 관한 問議(繕工監)…………… 212
- 3월 14일 倭船 出來 및 信使時 所用 乾大口魚 許可 要請…………… 213
- 3월 22일 通信使 渡海時 格軍의 格糧 磨鍊에 대한 問議…………… 214
- 通信使 船上 雜物中 忠淸道 卜定分을 釜山에 輸送함
- 通信使行次에 관한 各邑 支持 等事를 故待 改分代 舉行할 것
- 通信使禮單馬에 대한 預差馬를 慶尙道에서 措備할 것
- 3월 24일 禮單馬의 毛色과 匹數…………… 216
- 馬上才 所用 胡鞍을 冬至事持來 胡鞍으로 出給할 것
- 3월 28일 通信使禮單中 平安道卜定 鷹運을 東萊府로 發送함…………… 216
- 3월 29일 回還謝恩使 持來의 胡鞍의 到着이 늦어짐…………… 217
- 通信使 使行時 首譯私禮單 磨鍊에 대한 論議
- 4월 1일 春秋館 實錄 曝曬 考出事…………… 218
- 通信使 行期 差退
- 4월 5일 通信使 渡海時 格軍의 格糧 折價成冊에 대한 問議(興陽縣監)… 219
- 通信使 渡海時 格軍의 格糧 磨鍊에 대한 問議(海南縣監)

○	通信使 齎去盤纏 人蔘에 대해 首譯이 看品할 것	
○ 4월 6일	冬至事 持來胡鞍을 內弓房에 領納 後 信使發行時 出給할 것	219
○ 4월 9일	差倭의 執政禮物 減除로 인한 抗禮問題 論議	219
	－ 日本側の 通信使節目 講定案	
	－ 執政 및 儲君禮物 減除事에 대한 論議	
○	東萊府 下人輩 및 商譯들이 館守에게 本國事情을 傳通함을 嚴斷할 것	
○ 4월 10일	通信使盤纏中 江原道 卜定 人蔘數	232
○	平安道 卜定 人蔘의 退送分을 改備 上送함	
○ 4월 11일	日本側の 八送使停止로 奉行 通書에 대한 論議	233
	－ 八送使停止 通書에 대한 處理잘못으로 東萊府使 및 訓導 別差 問責	
○	通信使齎去鷹連中 咸鏡道卜定分을 釜山에 下送함	
○	通信使齎去禮單中 黃海道卜定物 運送에 관한 論議	
○ 4월 14일	關白子 및 執政以下 禮物 減除與否는 島主回答을 기다려 處理할 것	237
○ 4월 16일	關白子 및 執政以下 禮物事로 對馬島主에게 보낼 書契 準備	242
○ 4월 17일	對馬島主에게 보내는 書契草稿의 啓書 下送事	242
○ 4월 18일	新舊 東萊府使 交替 및 倭船 入歸 出來	242
	－ 通信使 發行 및 乘船日期 擇定	
○	通信使 從事官 差定(李邦彦)	
○	通信使齎去方物櫃子 造作	
○ 4월 28일	通信使護行大差倭에 대한 茶禮 設行	245
○	護行大差倭 接慰官 朴聖輅의 不下去에 대한 推考	
○ 4월 29일	通信使 乘船은 前定日로 할 것	247
○ 4월 30일	關白子 및 執政禮物 減除事로 對馬島主에게 보내는 書契 入送	247
○ 5월 1일	差倭接慰官 朴聖輅 東萊 倒着	249
○ 5월 5일	通信使齎去禮單 封裏	249
○	通信使 使行時 首譯 私贈禮單 題給	
○	通信使 一行員役 職姓名 書給	
○ 5월 7일	通信使 私禮單 磨鍊에 대한 論議	250
○	通信使 私禮單 別單 書入	
○	通信使 私禮單 物目	
○	關白子 및 執政以下 禮物 持去與否 論議	
○ 5월 8일	護行差倭 一行에 대한 下船宴 設行	252
○ 5월 9일	關白子 및 執政以下 禮物 封送은 對馬島主의 回答書契를 기다려 處理할 것	252

○ 5월 10일	新關白 避諱로 인한 書契 末端結句의 變改를 日本側에 周知시킬 것…	253
○ 5월 11일	通信使齋去禮單 御覽物目 ……………	254
○ 5월 12일	通信三使 借銜 ……………	255
○	通信使 齋去禮單領去 差使員 및 刷馬 定送	
○ 5월 13일	書契 末端結辭를 「不備」로 하고 日本側에 周知시킬 것…	256
○	通信使 一行員役의 職姓名	
○ 5월 14일	通信使 私禮單 磨鍊에 대한 論議……………	259
○ 5월 15일	倭船 入歸 및 出來……………	260
	－ 關白子 禮物 停除事에 대한 回答書契 倒着	
○	通信使 使行時 關白子 및 執政以下 禮單을 勿送할 것	
○	關白子 等の 禮單 書契는 勿送하고 安室別幅은 燒火할 것	
○	通信使齋去 日本國王以下 各處 禮單物目	
○	彦千代 圖書 許給與否에 대한 論議	
○	儲君禮物 및 執政書契 停除를 確認하는 對馬島主의 回答書契 內容	
○ 5월 16일	日本國王子 禮單鷹連 停除할 것……………	264
○	禮單載持刷馬를 減送할 것	
○	關白子別幅을 燒火할 것	
○ 5월 18일	關白子 및 執政以下 禮單 勿送 및 使臣私禮單 仍給 決定……………	265
○	彦千代 圖書 許給與否에 대한 論議	
○	犯奸倭는 我國人과 同律로 勘罪할 것	
○	日本側의 書契式 請改 要求에 대한 論議	
○ 5월 29일	信使齋去 國書書式 請改要求(日本國王號 使用)에 대한 論議…	277
○ 5월 29일	被罪譯官 崔尙嶸을 放送하여 使行譯官으로 差遣할 것……………	288
○ 5월 30일	信使齋去 國書書式請改에 대한 領府事의 意見(國王으로 改送)…	290
○	譯官 崔尙嶸의 盤纏 磨鍊	
○ 6월 1일	信使齋去 國書書式請改를 許諾하여 「大君」을 「國王」으로 改書할 것…	290
○ 6월 4일	譯官 崔尙嶸의 官帶 磨鍊……………	291
○ 6월 8일	禮單 回答書契는 大提學이 選出할 것……………	292
○	不告提調 私自下鄉한 寫子官을 汰去推治할 것	
○ 6월 9일	改式國書 下送時 譯官을 定送 陪行케 할 것……………	292
○ 6월 11일	護行差倭 一行에 대한 別宴 宴需 乾物을 入給함……………	293
○ 6월 27일	護行差倭 一行에 대한 上船宴 宴需 乾物을 入給함……………	293
○	護行差倭의 三度宴 所呈禮物物目	

- 6월 29일 倭船 入歸 및 出來…………… 294
 - 日本側에서 信使時 需用인 胡桃, 柏子 求貿 要請
- 7월 8일 通信使 齎去 國書 改本 및 別幅을 通信使가 受領함…………… 297
 - 國書中 御諱 部分을 刀擦後 納入할 것
- 7월 11일 通信使護行大差倭 및 裁判差倭 一行 入歸…………… 298
 - 通信使 一行 出發
- 7월 17일 通信副使 所乘船의 尾木 折傷으로 差使員을 拿推할 것…………… 299
 - 入歸 倭船의 還迫 및 倭船 出來事
 - 加定 堂上譯官에 대한 日本側의 待遇문제(上官例로 施行)
- 9월 21일 對馬島主의 通信副使 卜船 推敗 通報에 대한 回答與否 論議… 301
- 9월 25일 對馬島主의 通信副使 卜船 推敗 通報에 대해 回答書契를 提出할 것… 302
 - 對馬島主의 通信副使 卜船 推敗通報 書契 內容
- 10월 10일 倭船 出來…………… 302
 - 通信使 一行 赤間關 離發
 - 日本側에서 信使時 所用 乾大口魚 求貿 要請
- 12월 22일 通信使 一行의 日本內 近況과 日程을 알리는 信使狀啓 및 島主書契 到着… 304
 - 島主 西界 및 別幅 內容
 - 島主書契에 대한 回答書契 및 別幅回禮雜物 磨鍊

□ 임진(壬辰, 1712년, 숙종 38년)

- 1월 1일 國書 改送 問題로 問啓할 것…………… 307
- 1월 4일 日本에 보낸 國書의 書式과 犯諱 改造에 대한 論議…………… 307
- 2월 14일 日本側에서 八送使停止 通報에 대한 回答書契 入給 要請… 315
- 2월 22일 倭船 出來 및 通信使 一行의 近況 傳達…………… 320
 - 對馬島主 書契에 대한 回答書契 要求
- 3월 2일 倭船 出來 및 通信使次 消息 傳達…………… 321
 - 通信使護行大差倭 出來에 對備한 京接慰官 및 差備譯官 差出
 - 通信使 一行 및 通信護來大差倭 平倫之, 裁判差倭 橘方高 出來
 - 對馬島主의 犯奸 一款 新定約條를 上送함
- 3월 7일 護來差倭齎去 書契謄本 및 別幅 內容…………… 322
 - 護來差倭西界에 대한 回答書契 提出 및 別幅回禮物目
- 護來差倭 一行에 대한 三度宴 및 京接慰官 禮單物目
- 通信使護來裁判差倭 一行에 대한 三度宴 禮單物目

○	通信使 受來 犯奸 新定約條 謄本 內容	
○	3월 8일 護來大差倭 接慰官은 京接慰官으로 差定할 것	331
○	3월 9일 倭船 入歸 및 出來	332
	－ 倭船致敗로 關白 등이 보낸 別幅雜物 沈水에 대한 責諭	
○	通信使齎去 島主以下 回答書契 및 別幅 內容	
○	關白 및 島主以下 回禮書契 別幅에 대한 處分	
○	3월 10일 京接慰官에게 口傳으로 付軍職을 할 것	335
○	3월 14일 通信使船 致敗에 대해 島主가 別定頭倭를 통해 書契 出送함	336
	－ 島主書契에 대한 回答書契를 提出할 것	
○	通信使船 致敗에 대한 島主書契 內容	
○	3월 22일 通信使護來裁判差倭에 대한 接慰官 差定(鄭夢海)	338
○	4월 7일 通信使 回還時 關白以下 所呈 回禮禮物物目	338
○	4월 11일 京接慰官 趙錫命 東萊 倒着	338
○	4월 17일 對馬島主 所呈禮單別幅中 信使受來分과 大差倭受來分の 換受辭緣	339
○	4월 24일 傳給하지않고 도로 가져온 日本國王子 및 守職倭處 溯及禮單物目	340
○	5월 3일 護來差倭에 대한 下船宴 設行	340
○	5월 5일 犯奸 新定約條를 倭館中에 刻立할 것	340
○	日本側에 通信三使가 島主에게 보내는 書簡 求(不許)	
○	5월 17일 護來差倭 一行에 대한 別宴 宴需 乾物을 入給함	341
○	5월 20일 通信使護來裁判差倭에 대한 茶禮宴 設行	342
	－ 彦千代 圖書 許給	
	－ 倭館 西館行廊 改建은 故待秋成할 것	
	－ 信使護來 禁徒倭 等에 대한 帖給을 不許함	
□	影印本 通信使謄錄 第五冊	349
□	影印本 通信使謄錄 第六冊	471
□	國譯 通信使謄錄(III) 찾아보기	639

『국역 통신사등록』(Ⅲ) 해제

金 東 哲

(釜山大學校 史學科)

차 례

1. 통신사의 명칭과 성격
2. 통신사 관련 등록류 개관
3. 『통신사등록』 개관
4. 『국역 통신사등록』(Ⅰ) 개관
5. 『국역 통신사등록』(Ⅱ) 개관
6. 『국역 통신사등록』(Ⅲ) 개관

[참고문헌]

1. 통신사의 명칭과 성격

일본의 대외교섭관계 사료집인 『통항일람(通航一覽)』(1850-1853년경 편찬)에는 17세기 이후 일본의 교섭관계를 통신의 나라[조선·유구]와 무상(貿商)의 나라[중국·네덜란드]로 구분하였다. 무상의 나라는 단순한 교역국이다. 유구는 1609년 이후로 일본의 지배 아래 있었으므로, 실질적인 통신의 나라는 조선뿐이었다.

17~19세기 일본과의 교류는 통신사와 왜관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임진왜란으로 중단되었던 조선과 일본과의 관계는 1607년 회답검쇄환사의 파견, 1609년 기유약조의 체결로 정상화되었다. 1607년 1차 회답검쇄환사의 파견 후, 1617년, 1624년에 2, 3차 회답검쇄환사가 파견되었다. 그리고 1636년부터 1811년까지 9차례 통신사가 파견되었다. 이 12차례의 사행을 회답검쇄환사와 통신사로 구분하거나, 합쳐서 통신사로 부르기도 한다. 17세기 이후 조선과 일본 간의 대등한 선린우호 외교의 상징이 통신사였다.

통신사는 17세기 이후에만 간 것은 아니다. 통신사란 이름은 고려 때도 있었다. 1375년(고려 우왕 1) 나홍유를 무로마찌막부에 통신사로 파견한 적이 있다. 조선 건국 이후 16세기 말까지 일본으로 보낸 조선국왕사는 20여 차례나 된다. 이 가운데는 통신사나 통신관이란 이름으로 파견된 사절도 10여 차례나 된다. 이 가운데 ‘통신사’로 불만한 사행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견해의 차이를 보인다. 1413년(태종 13) 정사 박분 때가 통신사 조건을 갖춘 첫 통신사였으나, 이 사행은 경상도에서 도항이 중지되었다. 그 때문에 1428년(세종 10) 사행을 첫 통신사로 본다. 정사 박서생, 부사 이에, 서장관 김극유로 막부장군의 경조를 위한 사절이었다. 1432년(세종 14) 사행까지는 통신사와 회례사의 명칭이 혼재되어 있다가, 1439년(세종 21) 정사 고득중 때부터 통신사로 명칭이 정착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처럼 조선전기 통신사에 대해서는 어느 사행이 통신사의 개념에 가장 적절한가에 따라, 통신사의 시작을 1413년, 1428년, 1439년 등으로 보고 있다. 조선 후기 통신사를 기준으로 조선전기 통신사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1602, 1604년의 사절은 일본 사정을 염탐하는 사절이었다. 임진왜란 이후 국교가 다시 열리면서 일본에 간 통신사는 조선국왕이 일본국왕인 도쿠가와막부장군에게 파견하는 외교사절이다.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 간 통신사는 모두 12회였으나, 1607, 1617, 1624년 3차례의 사절 이름을 통신사라 하지 않고, 회답검쇄환사라 한 것은 장군의 국서에 대한 회답과 납치된 포로의 쇠환을 목적으로

한 사절이었기 때문이다. 아직 임진왜란의 후유증이 남아 있어, 통신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통신사’로 부를 만큼 일본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임진왜란이 남긴 전쟁의 상처는 그만큼 크고 깊었기 때문이다. 1636년 사절부터 통신사란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통신사행은 1636, 1643, 1655, 1682, 1711, 1719, 1747, 1763, 1811년, 9차례 파견되었다.

통신사 파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막부장군의 장군직 계승 등을 축하하고, 일본의 국정을 탐색하며, 양국의 우호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장군직 계승과 관련 없이 파견된 적도 있다. 즉 1636년 통신사는 양국 우호의 유지와 일본 정세 파악, 1643년 통신사는 3대 장군 도쿠가와 이에미쓰(德川家光) 때 아들이에쓰나(家綱)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통신사는 지금의 도쿄인 에도(江戸)까지 갔지만, 1617년에는 교토, 1811년에는 쓰시마의 이즈하라까지 갔다. 특히 1811년 통신사는 통신사의 성격이 변질되었다. 이를 역지(易地)통신이라고 부른다. 우호와 평화의 사절단으로 상징되던 통신사도 1811년을 끝으로 중단되었다. 통신사가 중단된 후에도 양국 간의 관계는 왜관을 통해 유지되었다.

통신사의 명칭은 대체로 조선에서는 통신사, 신사, 일본통신사, 일본에서는 신사, 조선통신사, 조선신사라고 불렀다. 조선에서 출발한 해와 일본에 도착한 해가 달라서 부르는 명칭이 다른 경우도 있다. 조선에서는 1763년 계미통신사, 일본에서는 1764년 갑신통신사라고 부른다. 통신사를 보내는 나라와 맞이하는 나라에 따라 이름을 달리하기도 하였다. 조선에서 온 통신사라는 뜻에서 붙여진 조선 통신사란 명칭에는 그 속에 통신사는 조공사절이라는 역사인식이 암암리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선입견을 줄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쓴 명칭을 그대로 쓸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그러나 이미 브랜드화 되어 있고,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에 익숙할 정도로 고착된 개념이라는 현실론의 입장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무방하다는 의견도 강하다.

1876년 개항 이후에 4차례 일본에 간 사절의 이름은 통신사가 아니라 수신사였다. 4차례의 수신사 외에 1881년 조사(朝土)시찰단 이름으로 1차례 갔다. 이처럼 조선 국왕이 보낸 사절 자격으로 일본에 간 사행의 이름은 다양하였다.

2. 통신사 관련 등록류 개관

조선후기 일본과의 교류사를 연구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인 등록류는 현재 많이 남아 있다. 이 가운데 통신사와 관련된 대표적인 등록류는 『통신사등록』, 『통신

사등록초』, 『통신사왕회시광주부관교참거행등록』, 『동래부접대등록』 등이 있다. 이 4종류의 책은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하우봉, 정연식, 한문중 등의 연구를 토대로 이 책들의 내용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래부접대등록』(규 18108)은 동래부가 편찬한 책으로, 1653년(효종 4)부터 1841년(헌종 7)까지 대마도에서 파견한 차왜에 대한 접대 기록이다. 통신사 파견을 요청하러 온 통신사청래차왜, 통신사를 호행하러 온 통신사호행차왜에 대한 접대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1841년 통신사청래차왜에 대한 기록은 마지막으로 통신사를 파견하였던 1811년 이후의 양국 관계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둘째, 『통신사왕회시광주부관교참거행등록』(규 15068)은 1811년(순조 11) 통신사 정사가 경기도 광주부(廣州府) 판교참(板橋站)을 오갈 때의 준비 및 접대 내용을 광주부에서 편찬한 책이다. 광주부는 통신사가 지나가는 중요한 통로에 위치한다. 통신사가 통과할 때의 도로, 다리, 선창의 수리에 대한 경기감영의 공문, 이에 대한 광주부의 처리와 보고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양재참의 도로와 다리, 한강나루의 선창에 대한 수리를 둘러싸고 광주부판관과 과천현감 사이에 오간 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정사 일행의 인원과 말, 예단의 수송, 접대음식의 종류와 수량, 숙소의 치장도구, 통신사가 돌아올 때 일본으로부터 받은 예물의 품목과 수량, 짐꾼의 인원수 등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셋째, 『통신사초등록』(규 15067)은 일본의 요청, 외교 교섭상의 문제 등으로 정지되거나 취소된 통신사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기록한 책이다. 1786년(정조 10)부터 1808년(순조 8) 사이에 일본에 파견된 통신사에 관계되는 사항을 예조 전객사에서 편찬한 책이다. 표지에는 해당 연도인 병오(1786), 정미(1787), 기유(1789), 신해(1791), 갑인(1794), 임술(1802), 계해(1803), 을축(1805), 병인(1806), 정묘(1807), 무진(1808)이라고 적혀 있다. 특히 1786년(정조 10) 9월 일본 에도막부의 10대 장군 도쿠가와 이에하루(德川家治)가 죽은 것을 위문하고, 이듬해 1787년(정조 11) 4월 도쿠가와 이에나리(德川家齊)가 11대 장군이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통신사를 파견할 계획이었으나, 연이은 흉년과 화재 등 일본의 국내 사정으로 일본이 통신사 파견의 정지를 요청함에 따라 중지된 사행에 관한 기록이 대부분이다.

넷째, 『통신사등록』(규 12870의 1, 2, 3)은 예조 전객사에서 통신사에 관련된 문서를 연월일 순으로 모아 필사한 책이다. 동래부사나 경상감사 등 대일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관의 외교 업무에 관한 보고, 이에 대한 예조나 비변사의 논의와 처리에 관한 각종 문서를 수록하고 있다. 특히 왜선의 왕래에 대한 보고, 차왜의

과견, 접위관과 차비역관의 파견, 차왜에 대한 접대, 차왜가 가져온 서계와 별폭의 상송(上送), 회사(回賜) 예단의 마련, 문위역관 파견 요청, 통신사 파견 요청, 통신사절목의 마련, 통신사 삼사의 파견 등 조선후기 통신사를 중심으로 하는 양국의 외교 관련 사항이 주요 내용이다.

3. 『통신사등록』 개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14책의 『통신사등록』은 ㉠ 『통신사등록』(규 12870의 1, 12책, 1641~1811년), ㉡ 『통신사등록』(규 12870의 2, 1책, 1681~1682년), ㉢ 『통신사등록』(규 12870의 3, 1책, 1641~1811년)의 세 유형으로 나뉜다. 『통신사등록』(규 12870의 1)의 12책에서 제1책은 계미통신사(1643년, 인조 21), 제2책은 을미통신사(1655년, 효종 6), 제4책은 임술통신사(1682년, 숙종 8), 제5책과 제6책은 신묘통신사(1711년, 숙종 37), 제7책과 제8책은 기해통신사(1719년, 숙종 45), 제9책과 제10책, 제11책은 정묘통신사(1747년, 영조 23), 제12책은 계미통신사(1763년, 영조 39), 제14책은 신미통신사(1811년, 순조 11) 관련 내용이다. 제3책과 제13책은 결본이다.(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참조)

『국역 통신사등록』은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1991년 영인본으로 간행한 『통신사등록(일~오)』을 저본으로 하고 있다. 이 영인본 『통신사등록』은 14책의 『통신사등록』과 1책의 『통신사초등록』을 합하여, 전체 15책으로 간행되었다. 영인본에 수록된 해제를 토대로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영인본 『통신사등록』에 수록된 원책과 관련 통신사행

원책 번호	사행명(사행연도)	수록기간	비고
제1책	계미사행(1643, 인조 21)	1641.1.14.~1644.10.14	
제2책	을미사행(1655, 효종 6)	1653.1.16~1656.5.19	
제3책	임술사행(1682, 숙종 8)	1681.6.26~1682.4.12	『통신사등록』 (규 12870의 2)
제4책		1681.4.15~1683.3.4	
제5책	신묘사행(1711, 숙종 37)	1709.2.18~1711.3.1	
제6책		1711.3.3~1712.5.20	

제7책	기해사행(1719, 숙종 45)	1713.1.24~1718.11.17	
제8책		1718.11.14~1720.7.7	
제9책	정묘사행(1747, 영조 23)	1746.7.10~1747.7.9	
제10책		1747.7.10~1747.12.29	
제11책		1748.1~1748.11.25	
제12책	계미사행(1763, 영조 39)	1760.12.17~1765.윤2.26	『통신사등록』 해제에는 갑신사행
제13책	사행퇴정(1788, 정조 12)	1786.10.6~1787.12.26	『통신사등록』 (규 12870의 3)
제14책	신미사행(1811, 순조 11)	1809.1.22~1811.12.7	
통신사초 등록	사행퇴정(1788, 정조 12)	1786.10.12~1808.12.11	『통신사초등록』 (규 15067)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통신사등록』(규 12870의 2)이 제3책, 『통신사등록』(규 12870의 3)이 제13책, 『통신사초등록』(규 15067)이 제15책으로 편집되었다. 제13책인 『통신사등록』(규 12870의 3)은 표제가 『통신사초등록』이다. 『통신사초등록』(규 15067)과 마찬가지로 초서로 적혀 있다. 해당 기간에는 사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행 연기와 역지(易地) 통신의 교섭만 진행되어 초기(草記)형태로 남은 채 정서(精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3책과 제4책은 수록 날짜가 각각 1681년 6월 26일부터 1682년 4월 13일까지, 1681년 4월 15일부터 1683년 3월 4일까지로 중복되어 있다. 중복된 것은 한 책으로 된 『통신사등록』(규 12870의 2)이 제3책으로 편집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통신사등록』은 1643년 통신사 관련 등록이 처음이다. 그 이전 것은 현재 전하지 않는다. 『통신사등록』 계미년 11월 22일자(를 보면, “병자 이전의 본조(예조) 문서는 거의 다 분실되어, 정축년(1637)의 전례를 조사하여 참고할 근거가 없다”라고 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조선후기 대일관계 등록은 30종 정도 된다. 이 가운데 『동래부접왜장계등록가고사례초책』을 제외한 모든 등록은 병자호란 직후인 1637년 또는 그 이후부터 수록되어 있다. 그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으로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승정원일기』 숙종 7년(1681) 12월 26일조를 보면, 통신사가 일본에 갈 때 왕이 어필을 써 보내는 문제와 관련하여, ‘을미년(1655)통신사등록’을 가져와서 보고 논의하였다. 『국역 통신사등록』에도 기술된 것처럼, 1643년 통신사 파견과 관련

해서는 1636년 통신사가, 1655년 통신사는 1643년 통신사가 전례가 되었다. 이처럼 『통신사등록』은 통신사 파견 때 항상 전례로 삼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책이었다. 『통신사등록』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하우봉이 전론의 논문을 발표하여 그 사료적 가치를 정리한 바 있다. 하우봉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신사의 파견에서 귀환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조선 정부의 전체 업무와 그 처리 절차 및 방법을 살필 수 있다. 특히 통신사 관련 조약 내용과 결정 과정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어 양국의 목적, 동기, 배경 등을 잘 알 수 있다.

둘째, 통신사에 관한 외교업무가 발생에서 처리까지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어서, 양국의 입장 차이와 인식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또한 동일 사안에 대한 수정, 보완 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다.

셋째, 통신사가 가지고 가는 각종 예단과 별폭의 품목과 수량이 수령 대상자 별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예단은 해당 관청과 지방에 배당되었다. 그러므로 통신사의 경제적, 재정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넷째, 사행원이 지켜야 할 각종 규정들이 기록되어 있어 일본에 대한 조선 정부의 인식을 알 수 있으며, 당시의 현안을 파악할 수 있다. 일본에서 조선에 보낸 서계는 일본국왕(막부장군), 대마도주, 차왜 등이 망라되어 있고, 특히 대마도주의 소지(小紙)까지 망라되어 있어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4. 『국역 통신사등록』(Ⅰ) 개관

『국역 통신사등록』(Ⅰ)은 신사년(1641 인조 19) 10월 14일부터 병신년(1656, 효종 7) 5월 19일까지 내용을 번역한 것이다. 『통신사등록』 원본의 제1책과 제2책, 그리고 서울대학교 도서관이 간행한 영인본 『통신사등록』(一)의 1~394쪽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 영인본에는 날짜별로 내용을 요약한 제목을 목차에 싣고 있다. 그리고 같은 날짜에 수록된 기사라도 시작 날짜 항목과 다른 내용의 기사는 별도의 제목으로 목차에 실려 있다. 영인본의 목차에 정리된 기사 항목을 한 건으로 보고, 연도별 기사 항목의 건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국역 통신사등록』(Ⅰ)의 연도별 기사 항목 수

시기	1641(인조 19)	1642(인조 20)	1643(인조 21)	1644(인조 22)	합계
항목 수	2	15	67	11	95
시기	1653(효종 4)	1654(효종 5)	1655(효종 6)	1656(효종 7)	
항목 수	2	13	45	8	68

<표 2>를 보면 기사 항목 건수는 모두 163건이다. 기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째는 1641년부터 1644년까지로, 원본의 제1책, 영인본의 1~206쪽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둘째는 1653년부터 1656년까지로, 원본의 제2책, 영인본의 207~394쪽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조선은 일본에 통신사를 상시적으로 파견한 것은 아니다. 첫째 것은 1643년 계미통신사, 둘째 것은 1655년 을미통신사와 관련된 내용이다. 통신사가 파견되기 2년 전, 통신사 파견 해당 연도, 통신사 파견 후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점이 주목된다. 통신사는 일반적으로 막부 장군이 장군직을 계승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일본에 갔다. 도쿠가와(德川)막부 역대 장군의 재임 기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도쿠가와(德川)막부의 역대 장군과 그 재임 기간

대	장군 이름	재임기간
1대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1603. 2~1605. 4
2대	도쿠가와 히데타다(德川秀忠)	1605. 4~1623. 7
3대	도쿠가와 이에미쓰(德川家光)	1623. 7~1651. 4
4대	도쿠가와 이에즈나(德川家綱)	1651. 8~1680. 5
5대	도쿠가와 쓰나요시(德川綱吉)	1680. 8~1709. 1
6대	도쿠가와 이에노부(德川家宣)	1709. 5~1712. 10
7대	도쿠가와 이에쓰구(德川家繼)	1713. 4~1716. 4
8대	도쿠가와 요시무네(德川吉宗)	1716. 8~1745. 9
9대	도쿠가와 이에시게(德川家重)	1745. 11~1760. 5
10대	도쿠가와 이에하루(德川家治)	1760. 5~1786. 9
11대	도쿠가와 이에나리(德川家齊)	1787. 4~1837. 4
12대	도쿠가와 이에요시(德川家慶)	1837. 4~1853. 6
13대	도쿠가와 이에사다(德川家定)	1853. 11~1858. 7
14대	도쿠가와 이에모치(德川家茂)	1858. 10~1866. 7
15대	도쿠가와 요시노부(德川慶喜)	1867. 1~1868. 1
출전 : www.http://ja.wikipedia.org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1641년은 3대 장군 이에미쓰(家光) 재임 때이고, 1643년 통신사는 장군직 계승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1643년 통신사는 3대 장군 도쿠가와 이에미쓰 때 아들 이에즈나(家綱)가 태어난 것을 축하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국역 통신사등록』(I)의 첫 기록은 신사년(1641 인조 19) 10월 14일조이다. 내용은 <동래부사 정호서(丁好恕)가 장계한 내용>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과 <이에 근거하여 비변사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동래부사의 장계는 제1특송사가 상선연 때 대군[관백]이 아들을 낳았으므로 내년엔 통신사 파견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하기에, 최근 3~4년 동안 흉년이 계속되어 백성들의 힘이 고갈되었으므로 축하할 일이지만 반드시 해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아직 답변이 없다고 보고한 것이다. 예조의 계목은 관백이 아들을 낳았으니 축하할 일이지만 우리가 먼저 축하사절을 보내는 것은 부당하므로, 묘당[비변사]에 명하여 확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다. 비변사의 계목은 동래부사가 대응한 일에 대해 일본의 답변이 없으므로 뒷날의 기미를 보고 조처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다. 그대로 시행하라는 인조의 윤허가 있었다.

이 첫 번째 기록은 「부특송사가 관백이 아들을 낳았다고 전함→ 제1특송사가 통신사 파견 요청이 있을 것이라고 전함→ 동래부사가 일본측에 답변한 후 이를 예조에 보고함→ 예조가 이를 보고하고 묘당[비변사]에서 결정하기를 청함→ 비변사가 일본측의 답변을 기다려 결정하자는 의견을 보고」하는 등 통신사 파견 요청과 이에 대한 결정 과정을 잘 보여준다.

1월 26일 두 번째 기사는 첫 번째 기사에 이어지는 내용이다. 다만 장계의 주체가 동래부사가 아니라 경상감사인 점이 차이를 보인다. 경상감사는 관백이 아들을 낳은 것을 축하하기 위해 사절을 파견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고, 대마도 측도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 재정 압박을 받으므로, 사신을 청하는 일이 없을 듯하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예조는 도주의 문서를 기다린 후에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비변사가 이미 결정하였으므로, 우리 쪽이 먼저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미 확정된 대로 실시하자고 보고하였다. 『국역 통신사등록』(I)의 내용 가운데 주목되는 점들을 몇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643년 통신사와 1655년 통신사 명단

1643년 통신사 사행록은 부사 조경의 『동사록』, 종사관 신유의 『해사록』, 저자 미상의 『계미동사일기』가 대표적이다. 3책 모두 『해행총재』에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사행록에는 통신사 명단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통신사등록』 계미년 1월 11일조에는 통신사가 데려가는 원역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 『통신사등록』에 수록된 1643년 통신사 명단(1)

당상역관	2원	홍희남	승록대부	이장생	정현대부	병자년 예로 데려감
상통사	2원	김근행	행 훈도	윤제현	행 사맹	
차상통사	2원	정시심	행 사맹	김시성	전 봉사	
압물통사	1원	김홍립	전 정			
한학상통사	1원	정충헌	전 정			
압물통사	1원	함식	행 사용			
사자관	2	박송현		김의신		
화원	1	김명국				

이 기사에서는 의원과 잡예인은 사신이 마땅한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므로 아직 임명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당상역관 2명은 병자년(1636) 통신사 가운데서 선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압물통사는 각각 1명씩으로 정해져 있다. 통신사 전체의 현황은 아니지만, 통신사 원역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초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이다. 계미년 2월조에는 통신사 원역의 성명과 직함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2> 『통신사등록』에 수록된 1643년 통신사 명단(2)

직책	이름	직함	이름	직함	이름	직함
정사	윤순지	병조참지				
부사	조경	홍문관 전한				
종사관	신유	이조정랑				
당상역관	홍희남	행 사직	이장생	행 사과		
상통사	김근행	행 훈도	윤제현	전 판관		
차상통사	정시심	전 직장	김시성	전 봉사		
압물통사	김홍립	전 정				
가정통사	이형남	전 정	한상국	전 정	윤성립	전 주부
한학상통사	정충헌	전 정				
한학압물통사	함식	행 사용				
의원	김호	전 정	송경일	전 주부		
이문학관	박안기	진사	정언열			

사자관	박승현		김의신			
회원	김명국		이기룡			
천문학	황효공	전 정				
정사자제군관	윤전지	초관	윤천지	업무		
정사군관	조응립	전 부사	정부현	초관	정신경	검사복
	이용	전 만호	최기남	사과	장익	전 사과
부사자제군관	조헌	충의위	한상량	한량		
부사군관	김민학	전 군수	홍우량	전 현감	맹상현	전 만호
	이대인	내금위	이정	전 사과	유윤번	전 만호
종사관자제군관	신태해	전 주부				
별과진검군관	박의룡		이예남			
마상재	방계남		강승선			
이마	김득신					
전악	김마당		설의립		임허룡	
	조응립		김용금		김천	
숙수	이운		장돌시			
정사반인	조효검					
정사노자	신일		무응실			
부사반인	문기원					
부사노자	선인		생이			
종사관반인	이의신					
종사관노자	예남		점이			
당상역관 이하 원역노자 23명, 군관노자 19명						

1643년 사행록에 명단이 수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통신사등록』은 통신사의 구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통신사의 구성은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 1655년 통신사의 삼사는 정사 조형, 부사 유창, 종사관 남용익이다. 1655년 통신사의 사행록은 조형의 『부상일기』, 남용익의 『부상록』이 대표적이다. 후자는 『해행총재』에 수록되어 일찍부터 이용되었으나, 전자는 최근 원문이 『대계 조선통신사』(3)에 수록되고, 또 국역되면서(임장혁, 『조형의 부상일기연구, 집문당, 2000) 이용이 편리하게 되었다. 이들 사행록에는 통신사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통신사등록』 을미(1655) 3월 13일조에도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부상록』에는 삼사의 경우, 품계, 관직, 성명, 자, 호, 본관, 생년, 과거급제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나머지 인원은 정사선, 부사선, 종사관선별로 되어 있어, 현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세 책에 수록된 명단을 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1655년 통신사 명단의 비교

	부상록				부상일기	통신사등록			
통신사 직책	이름	현직 또는 경력	이름	현직 또는 경력	이름	이름	현직 또는 경력	이름	현직 또는 경력
정사	조형	사간원대 사관			조형	조(趙)	이조참 의(임직)		
부사	유창	사복 시정			유창	유(兪)	사복시 정		
종사관	남용익	홍문관 교리			남용익	남(南)	홍문관 부교리		
당상역관	홍희남	행사용	김근행	행사용		홍희남	행사직	김근행	행사용
역관	홍여우	전 판관	박형원	전 직장	홍희남, 김근행, 홍여우				
	변이표	전 참봉							
상통사	정시심	행사맹	김여택			김시성	행참봉	정시심	전 정
	김시성	행참봉							
차통사						이상한	행사맹	변이표	전 참봉
압물통사						홍여우	전 판관		
한학 상통사						오인량	전 판관		
한학압 물통사						이승현	전 직장		
한학	오인량	행참봉							
의원	한형국	행참봉	이계훈		한형국, 이계훈	한형국	전 주부	최인	사과
	최인	부사정			최인				
화원	한시각	부사과			한시각	한시각	전 사과		
독축관	이명빈	상호군			이명빈	이명빈	상호군		
서기	배옥		한상	무겸	배옥				

	김자휘		최산준	전 도사	김자휘				
	박문원				박문원				
사자관	김의신	전 참봉	유응발		김의신, 유응발	김의신	전 참봉	정침	전 사과
	정침	부사맹	윤덕용		윤덕용				
상사자 제군관	조침	행사용				조침	행사용	목양선	한량
부사자 제군관	민응성	전 사과				민응성	전 사과	정철선	한량
종사관자 제군관	남득정	한량				남득정	한량		
별파진	윤개중		목양선	한량					
	김건희		정철선	한량					
군관	나득성	전 우후	조상빈			조현	전 첨사	나득성	전우후
	조현	전 첨사	이동로	전 현감		한상	무겸	이형익	초관
	박지용	첨정				정지석	내금위	이동로	전 현감
						박지용	훈련원 첨정	최산준	전 종사
						정사한	무겸	정귀현	전 판관
						이몽량	내금위	최성길	전 사과
별파진 검군관						윤익형		김건희	
선장	황생		전운서						
	정사한	선전관	유달신						
초관	이익형								
도훈도	최시연		배준익						
	이몽량	출신	심계신						
내금	정지석								
청직	최효갑		신선원						
	박홍선								
이마						박홍원			
악공	장일춘		김몽술			설의립		김몽술	
	설의립								
숙수						한영			

소동	신득방		정철귀						
	이승현		안덕용						
	구애길		하민선						
	이영택		이두명						
상사 반당 (반인)	정득열					정득열			
부사 반당 (반인)	이행점					이행점			
종사관 반당 (반인)	도신덕					도신덕			
사노자	원립		일선						
	애남		경생						
	필성		산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각 책마다 직책과 이름 사이에 차이를 보인다. 『부상록』과 『통신사등록』이 상세하다. 두 책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조형은 원래 직책은 사간원 대사간인데, 임시로 이조참의 자격으로 정사를 맡았음을 알 수 있다. 『통신사등록』은 사행록의 명단과 비교하여, 통신사 구성원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둘째, 1643년 통신사절목의 마련

계미년(1643) 1월 5일조에는 통신사절목에 관한 예조의 감결이 정리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1624년, 1636년 통신사의 전례를 참고하여 거행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별도 항목으로 작성된 같은 날 예조의 계목을 보면, 병자년 문서가 모두 산실되어 참고할 수 없으므로, 갑자년(1624) 사례대로 마련하여 계목을 후록한다고 하였다. 이 두 절목은 내용상의 차이를 보인다. 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1643년 통신사절목의 비교

통신사절목(예조 감결)		통신사절목(예조 계목)	
1	사신의 반전 등의 물자는 해당 관청에 명하여 미리 먼저 조치함.	1	좌동(左同)

2	사신 일행에게 하사하는 쌀은 한결같이 연경에 가는 사신의 사례대로 거행함.	2	좌동
3	사신의 장복(章服)은 부사 이상은 모두 당상관의 복장을 상의원에 명하여 만들어 지급하게 함.	3	좌동
4	일행 원역의 의복과 신발 등의 물자는 공조와 제용감에 명하여 만들어 지급하게 함.	4	좌동
		5	사신의 형명기와 독(纛)은 본도에 명하여 만들어 지급하게 함.
		6	맞이할 때의 취라치[吹螺赤]는 본도에 명하여 정하여 보내게 함.
		7	상선 2척, 하선 2척, 소선 2척은 격군과 함께 본도에 명하여 미리 먼저 만들고 간택하여 호송하게 함.
5	사신이 가져가는 인신 한 개는 주조한 관방(關防)을 갖추어 공조에 명하여 만들어 보내도록 함.	8	사신이 가져가는 인신 1알은 주조된 관방인(關防印)을 갖추어 공조에 명하여 만들어 보내게 하되, 인가(도장집)와 관가(관방인신집)와 가족 남라개(문서통) 한 바리를 본도에서 만들어 대령하게 할 것.
6	상사는 자제군관 2인, 군관 6인, 종 2명. 부사는 자제군관 2인, 군관 6인, 종 2명. 종사관은 자제군관 1인, 종 1인. 왜통사 5원, 한통사 2원. 의원 2원. 화원 1원. 화포장(火砲匠) 2명, 포수 2명, 사자관 2원은 각 해당 관청에서 택하여 보냄.	9	상사의 자제 2원, 군관 6원, 종 2명. 부사 자제 2원, 군관 6원, 종 2명, 종사관 자제 1원, 종 1명, 왜통사 5원, 한통사 2원, 의원 2원, 화원 1원, 별파진검군관 2인, 포수 2명은 감원하여, 갑자년의 사례에 의하여 각 해당 관청에서 선발하여 보냄. 사자관은 병자년에 2원을 데려 간 사례가 있는데, 이 사례대로 시행함.
		10	바다를 건널 때 일행을 수검(搜檢)하는 등의 일은 사신이 엄하게 금단하여, 원역 등이 만약 함부로 범하는 일이 있으면, 조정으로 귀환한 뒤에 일일이 조사하여 계문함.

7	정남침(定南針)은 관상감에 명하여 지급하게 함.	11	좌동
8	일행의 원역은 각기 중 1명을 거느림.	12	좌동
		13	사신 이하가 관문이나 나루를 넘어 갈 적에 검사할 문자가 있어야 하는데, 갑자년의 사례에 의거 마련하여 지급함.
		14	사신이 돌아들어올 때 갑자년의 사례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에서 사로잡혀 간 인물을 쇄환하기 위하여, 본조에서 만들어 준 돈유(敦諭)공문으로 찾아다니며 쇄환하여 무마하고 보살피 데리고 올 것.
9	일본국왕에게는 전례에 따라 ‘위정이덕(爲政以德)’ 서계를 찍었으니 이대로 시행함.	15	좌동
10	일본국 집정과 도주와 수직왜, 수도서인 등에게는 사신이 귀국하여 들어올 때 차등을 두어 서신을 보내고 선물을 증정하는 전례는 이대로 마련하여 거행함.	16	좌동
11	시급한 일이 있으면 파발마를 보낼 것.	17	좌동
		18	미진한 조건은 추가로 마련함.

통신사절목은 날짜는 같지만 다른 기사로 각각 11조항과 18조항으로 두 절목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정리한 것이 <표 6>이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11조항의 절목 내용은 동일하게 또는 일부 수정, 보완되어 18조항 절목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11조항의 절목에 없는 일곱 개 항목이 18조항의 절목에 포함되어 있다. 후자는 전자를 수정, 보완한 절목이다. 이 절목은 통신사가 시행해야 할 여러 가지 규정을 절목 형태로 정리한 것이다.

그런데 18조항의 절목은 『춘관지』에도 「신사응행절목(信使應行節目)」이란 이름으로 수록되어 있다. 다만 『춘관지』에는 18조항 가운데 제2, 3, 4, 5, 6조항

의 다섯 절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통신사등록』에 수록된 18조항은 『춘관지』를 편찬할 때 의도에 맞게 수정을 가하여 「신사응행절목」으로 정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자료는 통신사절목의 제정 과정과 절목의 내용은 물론 『증정교린지』나 『춘관지』 등 대일관계사와 관련된 기본 책자를 편찬할 때, 원 자료가 어떻게 수정·완전되면서 편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셋째, 1643년 통신사 종사관 재거(賣去) 일행 금단절목의 마련

계미년(1643) 1월 6일조에는 통신사 종사관이 가져가는 일행금단절목(從事官賣去一行禁斷節目)이 수록되어 있다. 예조에서는 전례를 상고하여 이 절목을 마련하여 계목에 후록한다고 하였다. 『통신사등록』 원본의 상단에는 ‘신사시종사관재거절목(信使時從事官賣去節目)’이라고 부기되어 있다. 각 항목마다 시작하는 첫 부분에 일(一, 하나)라고 하여 항목별로 구분하고 있다. 전체 열 개 항목으로 된 절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절목은 『춘관지』에도 ‘종사관재거일행금단절목’이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어 있다. 『춘관지』에 수록된 절목은 항목별로 된 절목 형태는 아니며, 『통신사등록』과 약간의 글자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내용은 같은 내용이다. 양자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1643년 통신사종사관재거일행금단절목의 비교

	통신사등록		춘관지
1	일행이 가져가야 할 물건은 점검하여 바리로 만들어 각각 글자를 적어 표시하여 서명하고, 또 자호(字號)를 찍어서 달아 놓고, 도중에 불시에 적간하며, 포소 및 대마도와 달리 머무는 곳에 이르면 별도로 점검하여, 표가 없는 것은 관물로 몰수하고, 범한 사람은 율령대로 죄를 다스림	1	좌와 거의 같음
2	『대전후속록』에 실린 왜인에게 본토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건 및 약재와 사라능단, 황백사와 보물을 몰래 거래하는 자는 율령 대로 죄를 다스림	2	상동
3	『대전후속록』 내에 왜인을 무역하는 자, 왜인이 가져온 대량피 및 포소의 잠상과 무역하는 자 및 사정을 아는 통사는 모두 율령대로 죄를 다스림	3	상동
4	향통사 및 장사꾼이 어두운 밤에 만나기로 약속하여 매매하거나 혹은 서로 모인 자는 모두 잠상금물 조에 의하여 논단함	4	상동
5	일행의 인원 등이 본국의 숨겨야 할 일이나 국가의 중대한 일을 누설하는 자는 모두 율령대로 죄를 다스림	5	상동

6	상통사 이하 일행의 하인이 금제에 연계된 자는 곤장 80대 이하로 직단함	8	좌동
7	다른 나머지 미진한 조건은 일에 따라 규찰하여 단속하되, 우리 국경에서 범한 일은 즉시 계문하고, 바다를 건넌 뒤에 범한 일은 조정으로 귀환한 뒤에 일일이 적어 장계로 알림	9	좌와 거의 같음
8	우리나라에서 사로잡혀갔다가 쇄환한 사람을 격군으로 뒤섞어 충당하는 것은 극히 편치 못하니 일체 충당하지 말고, 만약 충당하였다가 탄로나면 본관 수령을 각별히 추고하여 죄를 다스림	10	상동
9	일행이 가져가는 군기는 종사관이 서명하여 문서에 기록하고, 만약 군기를 몰래 매매하는 자가 있으면 모두 율령대로 죄를 다스림	7	상동
10	본국의 각종 서책 등의 물건을 누설하거나, 상국(上國)과 관련된 일을 누설하는 자는 모두 율령대로 죄를 다스림	6	상동

<표 7>에서 보는 것처럼 양자는 순서의 차이도 보인다. 『통신사등록』 8번째 항목이 『춘관지』에는 10번째 마지막 항목이다. 『춘관지』에는 마지막 항목에 승덕 계미년(1643)에 한 조항을 첨가하였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 내용이 맞다면 이 금단절목은 전부터 존재하던 것인데 1643년에 추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춘관지』 9번째 조항에 표현되어 있는 ‘나머지 미진한 조건(他餘未盡條件)’이 일반적으로 절목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므로, 『춘관지』 순서가 『통신사등록』보다 타당하다고 본다.

이 절목은 『춘관지』와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절목의 제정 과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 『통신사등록』 을미년(1655) 4월 3일조에는 을미년 통신사 종사관 재거 일행금단절목이 수록되어 있다. 『통신사등록』 원본의 상단에는 ‘신사종사관재거금단절목’이라고 부기되어 있다. 이 금단절목은 1643년 통신사의 사례대로 마련하였다고 한다. 내용을 1643년 금단절목과 동일하다.

넷째, 대마도주의 소지(小紙)와 봉행(奉行) 등의 소지(小紙)

『통신사등록』에는 일본에서 보낸 서계는 그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모두 수록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대마도주나 봉행들이 보낸 소지(小紙: 비망록)까지도 망라하고 있다. 소지는 대마도주나 봉행이 보낸 조목을 나열한 작은 쪽지이다. 이 작은 쪽지에 대해 예조가 계목으로 보고하고, 다시 비변사가 검토한 후 해당 관청과 경상도에 내려보내 알리도록 하였다. 소지는 계미년 1월 15일조에 수록되어 있다. 『통신사등록』 원본의 상단에는 ‘신사시도주급봉행등조렬소지해서(信

使時島主及奉行等條列小紙解書)’라고 부기되어 있다. 대마도주의 소지는 ‘대마도 주소지해서’라고 적혀 있다.

『변례집요』(권 18, 신사) 계미년 1월조에도 「도주소지(島主小紙)」가 수록되어 있다. 『통신사등록』의 내용이 훨씬 구체적이다. 내용은 대동소이하나 『변례집요』는 축약된 내용이다. 『변례집요』는 국사편찬위원회가 간행한 활자본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탈초 과정에서 오탈자가 많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8-1> 대마도 도주의 소지(小紙) 비교

	통신사등록		변례집요
1	통신사가 바다를 건너는 시기는 3월 중순과 하순 사이에 대마도에 들어가도록 해 달라고 하였는데, 이대로 시행하는 일로 이미 택일 하였음	1	좌와 대동소이
2	대군(大君) 앞으로 보내는 서계는 특별히 유념해서 하되, 별폭의 물건 수량은 앞서의 연례대로 하며, 약군(若君) 앞으로 보내는 별 폭은 조금 차등을 두되, 다만 마필(馬匹)의 수는 대군 앞으로 보내는 것과 한가지로 해 달라고 하였는데, 비변사에서 지금 아직 확정하지 못하였으니, 비변사의 조치를 기다려 거행할 것임.	2	상동
3	약군 앞으로 보내는 서계는 특별히 유념하여 하되, 별폭 가운데 찍는 어보는 대군 앞으로 보내는 서계에 찍는 어보를 찍어 보내달 라고 하였는데, 별폭에 어보를 찍는 일은 상감의 말씀대로 시행할 것임	3	상동
4	일광산에 세 사신이 가는 날 어필을 새긴 종과 향로, 촛대, 화병(花瓶) 등의 물건은 그 때 전하여 줄 것으로 생각하여 이번 사자가 구두로 상세히 진술하였는데, 동래부사가 비변사에 올린 장계로 인하여 이대로 시행하는 일로 이미 확정하였음.	4	상동
5	상감께서 치제하는 제문을 세 사신이 가지고 바다를 건너고 향전(香奠)의 물품은 귀국의 법과 예대로 함이 가하다고 하였는데, 들 어갈 향전과 제문은 마련하여 지급하여 보낼 것임.	5	상동
6	대군과 약군 앞에서 사신이 상견례를 행할 때 및 일광산에서의 예법 은 서로 어긋남이 없는데, 만약 그 때를 당하여 어긋남이 있으면 잡담을 제하고 한결같이 도주가 하는 말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는데, 비변사의 회계(回啓)의 판부(判付) 내용에, 사신 등의 예절은 전례가 있는 일인지라 이제 와서 따져 정하는 것은 극히 무리하니 허락하지 말도록 하였음.	6	상동
7	집정 등에게 보내는 서계 별폭은 특별히 유념하여 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승문원에 명하여 이대로 시행하게 하였음.	7	상동

『통신사등록』에는 계미년 1월 15일조에는 대마도주의 소지에 봉행 등 소지(奉行等小紙解書)가 수록되어 있다. 『통신사등록』은 30개 항목, 『변례집요』는 29개 항목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8-2> 봉행 등 소지(小紙)의 비교

	통신사등록		변례집요
1	통신사가 바다를 건너가는 일자는 오는 3월 중으로 한정하여 대마도에 들어오되, 차왜 등지승이 가져온 서계의 회답 내용 가운데, 통신사가 바다를 건너는 기일을 명백하게 적어 보내면, 그 답서를 에도에 들여보내는 것이 한 시각이 급하니, 별도로 한 사람을 정하여 들여보내고, 등지승은 통신사가 바다를 건너는 기간까지 부산 왜관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승문원에 명하여 회답 서계를 이대로 지어서 보내라고 하였음.	1	좌와 대동소이
2	대군 앞으로 보내는 별폭의 물건은 이전과 같이 그 품질이 좋은 것을 고르되, 그 가운데 두 가지 단자(段子)는 없어서는 불가한데, 바라건대 나라 안에서 찾으면 반드시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 이 뜻을 동래 및 두 지사 앞에 이야기하여 해당 관청에 품신하여 보고해 달라고 하였는데, 비국에서 이대로 하라는 일로 이미 확정하여 해조에 명하여 거행하게 하였음.	2	상동
3	약군 앞으로 보내는 별폭 가운데 응련(鷹連)과 마필(馬匹)은 없어서는 불가하니, 각별히 염두에 두어서 기이하고 귀한 물건을 보내고, 대모필과 각색 붓도 또한 보내 달라고 하였는데, 예단의 수량과 물목은 현재 아직 마감하지 않고 비국의 확정을 기다려 시행할 것임.	3	상동
4	약군 앞으로 보내는 별폭에 어보를 찍는 일은 다시 말하지 않고, 한 장에는 어보만 찍고 한 장에는 국왕이라 적고 그 위에 어보를 찍어 도합 두 장을 가져오는데, 이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에도에 도착하여 집정과 상의하여 좋은 모양으로 조처할 것이니, 이대로 해 달라고 하였는데, 비변사의 계사(啓辭)에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였음.	4	상동
5	대군과 약군 앞으로 보내는 별폭의 물건은 작은 쪽지에 적어서 내어 보내니 이대로 할 것이나, 이 밖에 나라 안에서 비축된 토산물 가운데 합당한 물건이 있으면 첨가하여 보내는 것도 좋으며, 무릇 예단에 사용하는 물건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지급해야 할 곳에 보내지 않을 수가 없으니, 세 사신이 사용할 잡물을 이전보다 수량을 배로 하여 가져와 달라고 하였는데, 세 사신의 예물을 이전보다 수량을 배로 하여 가져가는 일은 비국의 조정에 의거하여 해당 관청에 명하여 마련할 것임.	5	상동

6	집정 등에게는 앞서의 연례와 같이 예조에서 각각 서계를 만들고 별폭 등의 물건은 특별히 유념해야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각처에 보내는 서계 및 예물은 전례대로 조정하여, 승문원 및 해당 관청에 명하여 마련하여 거행할 것임.	6	상동
7	이번에 집정 등의 성명을 적어 보내니 이대로 성명을 적어 넣어서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이대로 시행하는 일을 비국에서 이미 조정하여 승문원에 명하여 이대로 거행하게 하였음.	7	상동
8	별폭 가운데 응자(매)는 마침 채철이 지났기에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도에 들여보낼 수량이 많게는 54-5연에 이르니, 지사(知事) 등에게 말하여 다음 달 중순에 모조리 들여주어서, 왜관 안에서 수십 일 먹이를 먹인 뒤에, 그 중 병이 없는 것을 들여보내면, 여기서 오사카[大坂] 성에 올려보내어 대군의 응사(鷹師)에게 전해줄 계획이니, 급속히 들여보내 달라고 하였는데, 비국에서는 병자년의 규정대로 시행하는 일로 이미 조정하여 본도 및 강원 감사에게 급속히 거행하는 일로 이문하였음.	8	상동
9	일광산에 세 사신이 들어갈 때 종과 향로 등의 물건을 조정에서 주조하여 일광산에 보내는 것으로 예조에서 대마도주에게 서계를 만들어 들여보내면, 주조한 물건을 그 서계와 한꺼번에 예도로 들여보내어 귀국의 은근한 정을 보여주게 해 달라고 하였는데, 이대로 하라는 일로 이미 확정하여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지어 보내게 하였음.	9	상동
10	일광산에 세 사신이 들어갈 때 제문과 향진(香奠)을 가져오는데, 사신 또한 예단이 없지 아니하니 함당할 물건을 마련하여 가져와 달라고 하였는데, 제문과 향진을 거행하는 일은 이미 계하하였고, 예단은 마련하여 시행할 것임.	10	상동
11	이번 세 사신은 반드시 대관(大官)으로 정하여 보내는 것은 이곳에서 감히 진달할 수 없으나, 이 밖의 상하 원역(員役)은 지극하게 선발하여 데려오되, 일행 가운데 법도를 세워서 하인이 금법을 범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하였는데, 데려가는 원역은 사신이 스스로 선발하여 데려가고 일행 가운데 법도를 세우는 것은 이미 금지하는 사목이 있거니와, 하인이 금령을 범하지 못하게 하는 일은 사신에게 명하여 신칙하여 시행하게 할 것임.	11	상동
12	역관은 앞서의 연례 통신사 때에는 수가 적어서 무릇 사환을 하는 사이에 매양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었고, 각 배에 나누어신지 아니하기까지 하여 보기에 극히 구차하였으니, 이번에는 노소를 막론하고 왜어(倭語)에 능통한 자를 잘 선발하여 서너 사람의 인원수를 더하여 데려와 달라고 하였는데, 이대로 하라는 뜻으로 이미 조정하여, 왜어에 능통한 자 서 세를 사역원에 명하여 선발하여 보내게 하였음.	12	상동

13	유자(儒者)로서 글씨를 잘 쓰는 자와 화원 등의 인원 수가 적었는데, 이번에는 각색마다 한 두 사람을 더하여 데려오고, 의원도 또한 최상으로 선발하고, 악공 또한 음악을 잘 하는 자로 극도로 선발하여 데려 오되, 앞서 연례로 들어온 연담(蓮潭)과 같은 자를 선발하여 보냄이 좋겠다고 하였는데, 이대로 하라는 일로 이미 조정하여 각 해당 관청 및 통신사에게 명하여 참작하여 최상으로 선발하여 데려가라고 하였음.	13	상동
14	세 사신이 대군 앞에서 예를 행할 때 신는 화자(靴子)는 흙을 밟고 곧장 전각 안으로 나가는 것은 불가한 듯하니, 이번에는 화자를 벗고 행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비변사의 회계로 인하여 이미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대로 시행할 것.	14	상동
15	세 사신의 상하 원역이 일본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의 법제(法制) 사목을 적어 대마도에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사신이 들어갈 때 분디 금단하는 사목이 있으니 이것을 참작하여 적어 보낼 것.	15	상동
16	사신이 왕래할 때 선박이 정박하는 곳 및 숙소로 삼는 곳에서 접대하는 사람은 모두 대관(大官)으로 정하여 기다리는데, 사신이 간혹 멀미[水疾]를 칭탁하거나 병을 칭탁하여 상륙하지 않아서, 접대하기 위하여 허다하게 마련한 물자를 공연히 버려 부질없게 되니, 세 사신 가운데 혹 한 분이라도 상륙하여 참여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는데, 이대로 하는 일은 오히려 사신이 당연히 시행할 일인지라 사신에게 명하여 임시로 잘 조처하라 하였음.	16	상동
17	육로로 가는 도중에 점심을 먹거나 숙소를 정한 곳에서 접대할 때, 세 사신이 노곤하다고 칭하거나 혹은 병을 칭하여 익힌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극히 부당하고 하였는데, 사신에게 명하여 임시로 선처하라 하였음.	17	17번, 18번째 항목을 합쳐 요약 서술
18	세 사신의 휴가 날은 미리 통보해 달라고 하였는데, 이는 사신이 거행할 일인지라 이대로 할 것임.		
19	물이나 물이나 곳곳마다 장막을 친 임시 가옥을 정제하여 기다릴 것인데, 하인 등이 임의로 출입하는 것을 주인이 감히 손대지 못하니, 한결같이 도중(島中)의 봉행 등이 하는 말대로 하게 해 달라고 하였는데, 사신에게 명하여 엄격하고 분명하게 신칙하여 이런 폐단이 없게 할 것임.	18	좌와 대동 소이
20	일행의 원역(員役)이 들어가서 탈 말은 모두 장관(將官)이 타는 말에서 나오므로, 대마도에서 별도로 감관을 정하여 그 중 상중하의 등급을 보고 차례로 나누어 주는데, 하인들이 감관의 말을 듣지 않고 임의로 뺏어가니 극히 민망하고 우려되어, 이번에는 행중(行中)에서 별도로 4-5인을 정하여 감관이라 일컫고 일일이 나누어 줌으로써, 서로 다투어 빼앗아 가는 일이 없게 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사신에게 명하여 엄격하고 분명하게 신칙하여 거행하되, 만약 따르지 않고 난잡하게 하는 자가 있으면 각별히 죄를 따져 시행할 것임.	19	상동

21	바닷길로 갔다가 돌아올 때 세 사신이 타는 배가 바람으로 인하여 정박할 때는 비록 혹 앞서거나 뒤처지더라도, 포구에 와서는 기다렸다가 차례차례 정박하게 해 달라고 하였는데, 이대로 하더라도 또한 어려운 일이 아니기에, 사신에게 명하여 이대로 시행하게 함.	20	상동
22	마상재 두 사람은 각기 잘 길들인 말을 끌고 들어가되, 앞서의 연례 마재는 모두 솜씨가 치졸하였으니, 이번에는 최상으로 선발하여 데려와 달라고 하였는데, 혼련도감에 명하여 이대로 선발하여 보내는 일로 이문하였음.	21	상동
23	말을 달리고 활을 잘 쏘는 등 각종 기예를 가진 자 두 세 사람을 군관 중에 데려 오고, 활을 쏘는 도구 또한 가져와 달라고 하였는데, 이는 사신 중에도 데려가는 군관이 있으니, 사신에게 명하여 이대로 데려가게 하였음.	22	상동
24	에도에 도착하여 일을 마친 뒤에 도주가 사실(私室)에서 세 사신을 청하여 잔치를 하려하니, 미리 알려 참여하게 해 달라고 하였는데, 사신이 이대로 시행할 것임	23	상동
25	각 역참에서의 접대는 최상으로 정하게 골라 준비하는데, 상하 원역 등이 즐겨 먹을 수 없는 것은 제하고 은근히 상을 차려 먹을 만한 음식물만 골라 드리도록 함이 어떠할지, 이는 임의로 하게 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이대로 거행하는 일을 일행 중의 장무역관이 담당하여 거행할 것임.	24	상동
26	떠들고 잡담하며 혹은 빼앗거나 혹은 가져가거나 불을 금하는 등의 일은 각별히 엄금하고, 만약 일행 중에 절박하게 사들여 사용할 물건이 있으면, 대마도에서 별도로 통사왜(通事倭)를 정하여 사들여 주게 해 달라고 하였는데, 사신에게 명하여 엄격하게 조목을 세워서 이대로 하라 하였음.	25	상동
27	세 사신이 교자(轎子) 앞에는 앞말 한 필씩으로 끌게 하면 되니 이는 임의로 하게 해 달라고 하였는데, 이는 비변사에서 회계할 때 거론하지 않았음.	26	상동
28	세 사신이 타는 배는 각별히 정밀하게 제조하여 용을 그린 배의 휘장과 노 등의 물건을 일일이 정밀하게 갖추어 일본인에게 비웃음을 사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한 사공 등이 바람을 살피지 못하	27	상동

	여 매양 우려되는 사태를 당하니, 한결같이 일본 사공이 말하는 대로 함이 좋겠다고 하였는데, 본도 및 사신에게 명하여 이대로 하는 일로 거행할 것임.		
29	이제 이번에 진술하는 바의 일은 모두가 귀국을 위하여 유념한 계획이니 한결같이 도주가 말하는 대로 함이 좋을 것이며, 기왕의 통신사 행차에 비록 좋지 않은 일이 있었으나 감히 일일이 진달하지 못하니, 모든 일을 각별히 잘 조처하는 일을 동래 부산 양 지사가 힘을 써서 해 달라고 하였는데, 따라도 될 일이면 도주가 하는 대로 하겠으나 따를 수 없는 일이면 결단코 따르기가 어려우니, 사신에게 명하여 임시로 살펴서 거행하게 하였음.	28	상동
30	위 항목의 조건은 상의하여 조처하고, 조선에서 만약 수궁하지 않는 일이 있으면 비선으로 말을 알려달라고 하였는데, 각 항목의 조건을 나열하여 비국에서 이미 참작하여 보고하고 조정하였음.	29	상동

<표 8-2>에서 보는 것처럼 『변례집요』에서는 『통신사등록』의 17번, 18번째 항목을 합쳐서 1개의 항목으로 만들었으므로 항목 수가 하나 적다. 그리고 『통신사등록』은 『변례집요』와는 달리 각 항목의 끝에 이에 대한 결정이 수록되어 있다. 예를 들면 4번째 항목은 비변사가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변례집요』는 이런 결정내용은 무시하고 대마도 측의 소지 내용만 수록되어 있다. 『변례집요』에는 13번째 조항에 있는 통신사 화원 연담(김명국)에 관한 부분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두 책을 비교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섯째, 통신사가 가져간 선물과 받아온 선물

계미년 2월 12일조에는 통신사가 일본에 가져간 선물 품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예조 단자를 보면 병자년(1643) 통신사의 사례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선물의 지급 대상은 일본국왕, 봉행 7인, 대마도주, 수도서왜 4명, 소(召)장로, 수직왜 9명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9-1> 1643년 통신사가 가져간 대상자별 선물

	국왕	봉행7인각각	대마도주	수도서왜 4인각각	소(召)장로	수직왜 9인각각
대수자	10필					
대단자	10필					
황조포	30필					
흰모시	30(10)필	10필	10필	5필	5필	3필

검은삼베	30(5)필	5필	5필			
면주	10필	10필	10필	5필	5필	3필
흰무명			20필			3필
인삼	50근		5근		3근	
범가죽	15(2)장	1장	2장	1장		
표범가죽	20장					
청서피	30장					
(채)화석	20(5)장		5장			2장
황모필	50(30)자루	20자루	30자루		20자루	10자루
준마(안장)	2필					
매	20(1)연	1연				
유매먹	50(20)홀	10홀				
참먹					10홀	5홀
황밀	100근					
청밀	10그릇					
어피	100장					
색지	30권					
백지						5권
유둔	3부			1부		

비고 : 국왕의 팔호안은 품목이 중복된 경우다. 포함 여부는 분명하지 않으나, 포함하면 매는 21연, 호피는 17장이 되어 수가 애매하므로 중복 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표 9-1>을 보면 품목은 식물류, 인삼, 가죽류, 화문석, 동물, 먹, 꿀, 종이류 등이 주종이다, 국왕에게 대한 선물은 다른 사람과는 물품과 수량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비단류, 가죽류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물품과 수량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통신사행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계미년 11월 22일에 수록된 예조 단자에는 통신사가 일본에서 받아온 선물 목록이 기록되어 있다. 일본 관백(국왕), 약군, 대마도주, 만송원, 평의진, 봉행과 집정에게서 받은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9-2> 1643년 통신사가 가져온 대상자별 선물

	관백	약군	대마도주	만송원	평의진 平義眞]	봉행 6인, 집정 2인 각각	집정1인
첩금육곡병풍 (貼金六曲屏風)	20쌍						
산금시회대자 (繖金時繪臺子)	5식						
쇠술[鐵釜]	●						
구리화로[銅爐]	●						
구리물병[銅水壺]	●						
구리판립(銅板立)	●						
구리수적(銅水滴)	●						
구리개치(銅蓋置)	●						
산금시회서봉 (繖金時繪書棚)	2개						
산금시회광개 (繖金時繪廣蓋)	10개						
산금시회의연 (繖金時繪衣桁)	5가						
산금초대도 (繖金鞘大刀)		10자루					
갑옷[鎧]		10벌					
당직(唐織)		50단					
금대병풍 (金大屏風)			10쌍				
홍주(紅朱)			3근				
운문지(雲紋紙)			300근				
납발(鐵鉢)			500근				
색대단자 (色大段子)				2권			
산화연상 (繖畵硯床)				2개			
단목(丹木)				200근			
문선(文選)					1부 31책		

산화연갑 (緞畫硯匣)					2개		
우단초(羽段綃)					3권		
백은(白銀)						100매	100매
월주면(越州綿)						100순	
식룡(食籠)							1구
흑칠시회부채 (黑漆蒔繪扇子)							200자루
말광소삼 (末廣小簾)							양면
금니(金泥)							양면
은니(銀泥)							●
청지(靑地)							●
백지(白地)							●
●은 받았지만 수량은 불명확한 것임							

백은(白銀) 단 한 종류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선물을 준 사람에 따라 내용이 달랐다. 통신사가 가져온 선물 가운데 집정 이하 9명이 보낸 것은 전례대로 호조로 보내고, 관백과 약군이 보낸 것은 상방(상의원)으로 보냈다.

여섯째, 1643년 통신사가 가져가는 잡물

통신사가 일본을 오가는 동안에 쓸 각종 필수 물품들을 총칭하여 잡물(雜物)이라 하였다. 계미년 1월 17일조에는 후록으로 잡물들의 종류와 수량이 기록되어 있다. 1643년 통신사가 가져가는 잡물은 1636년 통신사의 전례를 참고하여 마련하였다. 이 잡물들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등지에 나누어 배당하여 마련하였다. 예조의 계목에 후록한 잡물 가운데 약재와 우구(雨具)는 말미에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잡물의 종류와 수량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1> 1643년 통신사가 가져간 잡물(1)

진간장	10섬	간장	1섬	율무가루	5말	청밀	2섬
밀가루	2섬	환소주	150병	밀계	5000립	초	300자루
대절참먹	100정	중절참먹	100정	포육	80접	전복	20접

말린해삼	3섬	말린홍합	3섬	호두	2섬	황을	2섬
꽃감	70접	갯	2섬	인삼	20근	백지	245권
대유지	4권	만화석	30장	채화석	30장	옷칠부채	100자루
기름칠부채	600자루	백접부채	30자루	미선	20자루	참기름	2섬
4장불은유둔	40번	6장불은유둔	20번	누룩	130원	콩	6섬
팔	7섬	조기	3500속	건어	80속	도련지	5권
초주지	30권	녹두	2섬	흰모시베	50필	참깨	2섬
편포	8접	말린노루	14마리	개자	3말	참쌀	3섬
말린쟁	100마리	김	40접	미역	200근	좁쌀	7섬
메밀	3섬	황밀	6말	오미자	2말	소금	9섬
생을	2섬	녹두가루	5말	생강	6말	표고버섯	4말
범가죽	16장	표범가죽	8장	사슴가죽	3장	배	100개
군량	333섬	흰사발	15죽	흰보시기	15죽	흰대접	15죽
흰접시	25죽	흰종지	15죽	백자대접	10죽	백자중발	5죽
백자잔대구	8부	백자종지	3죽	백자사발	4죽	백자규화잔대구	3부
차일	5	휘장	6	돛자리	3부	면석	3립
독석	3립	단석	3좌	화방석	3좌	문방석	1죽
다리높은상	3	안식	3부	교의	3	평교자	3
작은병풍	3	모부	3	평연	3	대분토	3
소분토	3	관대가죽상자	3	작은밥상	3	춧대	3쌍
놋쇠타구	3	작은서안	3	일산	3	청산	3

우산	3	요	3	용정	3	향꽃이	3
도장안자	1	매	15연	기름종이포대	4부	바가지 대,중	24개
밥고리	3	체	6	채칼	3자루	큰밥술	4틀
중간밥술	5틀	작은밥술	4틀	좌철	3	부쇠	2
부젓가락	3쌍	적쇠	3쌍	놋소라	3	놋대야	3
놋요강	3	칠기쟁반	4죽	용탕순가락	3단	놋젓가락	3매이
큰 놋숫가락	3가락	놋뚜껑	3	휘건	3	수건	3
흰면주비갑	3쌍	작은 놋술	3	주전자	2	도롱	4바리
차보시기	3	좌면지	30장	항아리	4좌	독	12좌
어피	50장	흰사기항아리	10좌	장지	5권		

<표 10-2> 1643년 통신사가 가져간 잡물(2) : 약재

생지황	10냥	옥리인 (산앵두씨)	3냥	마황	7냥	황기	1근
맥문동	10냥	천문동	1근	길경 (도라지)	10냥	적복령	10냥
시호	10냥	백출	2근	방풍	8냥	산약	5냥
천남성	4냥	백작약	5냥	당귀	1근	백복령	10냥
궁궁	7냥	승마	5냥	전호	3냥	향유	2근
백지	3냥	창출	2근	대황	8냥	황백	10냥
강활	5냥	소엽	7냥	황금	8냥	백편두	4냥
택사	6냥	상백피	5냥	반하	8냥	애엽	5두름
목통	10냥	차전자	2냥	말린모과	5냥	오미자	5냥
세신	5냥	박하	3냥	형개	4냥	인동	2근

<표 10-3> 1643년 통신사가 가져간 잡물(3) : 우구(雨具)

상품 가는 도롱이	3건	상품 언치	3건	백적	3건	유삼	3건
달치	3거리	차상품 익힌 도롱이	32부	차상품 언치	32부	짚도롱이	15부
화자	3부	행수목	1동				

『증정교린지』(권5)에는 「경외노수(京外路需)」 항목에 기록되어 있다. “각 도에 복정한 물품은 부산에 실어다 납부하여 6척의 배에 나누어 신고, 여러 도에서 구하여 가린 물품은 사신에게 나누어 보내되, 부경(赴京) 반전의 예와 같이 한다”라고 하였다. 『통신사등록』의 내용과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통신사가 일본을 왕래하는 동안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의 내용을 잘 볼 수 있다. 통신사 사행원의 일상생활사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일곱째, 피로인 쇄환 유문(諭文)

『통신사등록』 계미년(1643) 1월 5일조에 수록되어 있는 ‘통신사절목’을 보면, “사신이 돌아들어올 때 갑자년(1624) 사례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사로잡혀 간 인물을 쇄환하기 위하여, 예조에서 만들어 준 돈유(敦諭)공문으로 찾아다니며 쇄환하여 무마하고 보살피 데리고 올 것”이라고 하였다. 이 피로인을 쇄환하는 유문이 계미년 1월 25일조에 수록되어 있다. 예조 단자를 보면 「피로인물쇄환유문」을 전례를 참고하여 단자에 후록한다고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조에서 통유(通諭)하는 일임. 국가가 불행하여 갑자기 병란의 화를 입어 팔도의 생령이 도탄에 빠졌는데, 그 중에 겨우 칼날에 죽음을 모면한 자가 모두 묶여 있는 지가 지금까지 50년이 되었다. 그 가운데 어찌 부모의 나라를 그리워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계획을 하는 이가 없겠는가마는, 아이를 포대기에 들쳐 업고 나오는 자가 보이지 않으니, 이는 필시 함몰된 지 오래되어서이니 그 실정 또한 가련하다. 국가에서는 쇄환하는 사람에 대해 특별히 관대한 은전을 베풀어, 병자년(1636) 사이에 사신이 데려온 사로잡혀 간 사람에 대해서는 모두 죄를 면하게 하고, 신역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면역하였으며, 공사천은 면천하여 완전히 복호(復戶)하고 보호하고 보살피서 그들로 하여금 본토에 편안하게 정착하게 하여, 그 쇄환되어 온 사람들 역시 모두 친족들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여, 다시금

낙토의 백성이 되게 하였는데, 일본에 있는 이들도 또한 필시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이다. 하물며 이제 일본은 이미 우리나라의 원수가 된 적당을 섬멸하고, 앞 시대에 하던 바를 모조리 고쳐서 서신을 보내어 우호를 요청하기에, 국가에서는 특별히 생령 때문에 사신을 보내나니, 사로잡혀 가서 일본에 있는 자가 살아서 본토로 돌아오는 것이 지금이 그 시기이다. 만약 일제히 나온다면, 마땅히 지난 날 나왔던 사람들의 사례대로 면천 면역 복호 등의 은전을 일일이 시행할 것이니, 유시하는 글이 도착하는 즉시 서로 전달하여, 유시문 내용대로 통고하여, 사신이 돌아올 적에 일시에 나오도록 하여,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여 시일을 연기하지 말고, 다른 지역의 귀신이 되는 것을 면하도록 하라. 대조하여 시행함이 마땅하되, 모름지기 통첩을 받을 사람에게 도착되도록. 위 통첩은 사로잡혀 간 사민(土民)들에게 내림.”

통신사는 인조의 지시에 따라 피로인을 쇄환하려고 노력하였다. 1643년 통신사 사행록인 『계미동사일기』에는 피로인 쇄환 내용이 비교적 상세하게 적혀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 사람 잉질금과 청도사람 자질사리·자질덕 내외는 모두 나이가 많고 자식이 없어서 나가기를 원하였다. 시나가와(品川)에서 대구 양반 출신인 안경우(安慶佑)를 만났다. 의사로 살고 있는 그는 번주가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8월 6일) 하코네(箱根)에서는 도중에 심한 검문을 받기도 하였다. (8월 9일, 14일) 오가키(大垣) 서쪽에 있는 역참에는 피로인이 많다고 하므로 역관 이형남과 김근행을 보내 이들을 찾아 데려 오도록 했다. (8월 17일) 교토에서 대춘(大春)·묘운(妙雲) 등 광주(光州) 출신 여인이 고국에 돌아가기를 원하므로 상통사를 시켜서 데려가도록 했다. (8월 24일) 김근행을 하카다(博多) 근처에 보내 피로인을 찾게 하였다. (9월 22일) 잇키섬(壹岐島)에 도착했을 때 김근행이 3명을 찾아 왔다. (9월 23일) 이형남이 피로인 두 사람을 데리고 왔다. (9월 23일)

『인조실록』 21년(1643) 10월 29일조를 보면, 통신사 윤순지와 부사 조경이 대마도에 돌아와 치계하기를, 임진·정유년에 사로잡혀간 인민들은 모두 자손을 두고 그 땅에 안주해 살면서 고향에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 14명만 데리고 나왔는데, 도중에 병들어 죽은 자가 여섯 사람이라고 하였다. 11월 3일조를 보면, 통신사 윤순지와 조경 등이 일본에서 돌아올 때, 피로인 남녀 14명을 데리고 와서 부산에 도착하였으므로, 경상감사로 하여금 의복과 식량을 넉넉하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14명은 어릴 때 이름과 본관 등을 성책한 후 원적의 지방관으로 보낼 계획이었다. (『통신사등록』 계미년 11월 10일)

쇄환 유문을 가지고 가서 피로인에게 보이는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많은 사람을 쇄환하지는 못하였다. 도중에 6명은 죽고 14명만이 다시 조선의 땅을 밟게 되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잡혀간 사람들은 모두 자손을 두고 일본에서 안주하면서 고향에 돌아가려고 하지 않은 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피로인 문제는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종료되었고 본다.

피로인을 쇄환하는 문제는 1643년 통신사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였다. 이 유문은 피로인 문제와 관련한 통신사의 성격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럼에도 『통신사등록』 을미년(1655) 3월 13일조에는 계미년 통신사 때 한 명도 쇄환하지 못하였으므로, 1655년 통신사에게 쇄환하라고 하는 것은 형식에 가깝다고 서술하고 있다. 『승정원일기』 숙종 37년(1711) 4월 1일조에도 계미통신사 때 피로인을 쇄환하기 위하여 ‘돈유공문’이 성급한 것이 언급되어 있다.

여덟째, 남선사 금지원과 건인사 십여원의 편액 요청

일본은 무로마치(室町)시대에 아시카가 요시미츠(足利義滿)가 중국 남송의 제도를 본받아 오산십찰제(五山十刹制)를 확립하였다. 남선사를 오산보다 위에 두고, 천룡사(天龍寺), 상국사(相國寺), 건인사(建仁寺), 동복사(東福寺), 만수사(萬壽寺)를 교토 오산으로 정하였다.

『통신사등록』 갑신년(1644) 4월 8일조에는 대마도주 다이라 요시나리(平義成)가 상사(上使 : 통신사 정사) 윤순지에게 보낸 서계가 수록되어 있다. 이 서계는 계미년(1643) 11월에 쓴 것이다. 계미(1643)통신사는 일본에 갔다가 1643년 10월 29일에 부산에 도착하였다. 그러므로 통신사가 돌아가자 곧 보낸 서계이다. 서계는 근래에 일본의 승려가 건물 하나를 지었으나 아직 편액을 써서 걸지 못하였으므로 ‘금지원(金地院)’이란 세 글자를 써서 보내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다. 또한 건인사의 홍장로(洪長老)가 우거하는 곳이 십여원(十如院)인데, 이 곳의 편액도 바란다는 것이다. 이 부탁을 사양하지 마시길 청하면서, 별도로 서전(書傳) 1부와 산화문갑(緞畫文匣) 1개를 보냈다.

별견역관 홍희남은 수본(手本)으로 이 문제를 보고하였다. 즉 부특송사가 나올 때 통신 상사 앞으로 도주가 바치는 서신과 별폭, 금지원과 십여원의 제액(題額)을 쓸 당지(唐紙) 4장을 보냈다는 것이다. 금지원은 대군의 국사(國司) 양장로(良長老)의 수호(守號)이고, 십여원은 대마도에 와서 거주하는 홍장로의 수호인데, 정사가 손수 쓴 필적을 얻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런 일은 전에도 빈번하게 있었으므로 참고하여 회답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근거한 예조의 계목을 보면, 윤순지에게 명하여 써서 보내게 하고, 또

도주가 이미 서신을 보내고 윤순지에게 물건을 보냈으니 서로 신뢰하는 도리에서 회답과 회례가 없어서는 아니되므로, 승문원에 명하여 회답 초고를 짓게 하고, 회례하는 예물을 마련하여 내려보내고, 보내온 서책 등은 예조에 명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그대로 시행하라는 인조의 윤허가 있었다.

통신사가 돌아오고 난 이후 양국 간의 교류 양상을 알 수 있는 한 단면이다. 윤순지가 금지원과 십여원의 편액을 써 주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이 내용은 1643년 통신사와 관련된 다른 자료에서는 볼 수 없다. 현재로서는 유일한 기사가 아닌가 생각한다. 앞으로 다른 자료의 발굴과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아홉째, 일광산 동조궁 제사와 대유원 제사

일광산 동조궁 제사

1643년 통신사와 1655년 통신사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로 각각 일광산(日光山) 치제(致祭)와 대유원(大猷院) 치제를 들 수 있다. 1641년 일본의 3대 장군 도쿠가와 이에미쓰가 동조궁(東照宮)의 보탑을 석조보탑으로 개조하여 완공할 무렵에 그의 아들이 태어났다. 그는 보탑 완공을 기회로 통신사를 요청했다. 조선에서는 일광산 동조궁에 대장경, 인조의 어필 편액, 조정 대신의 시, 동종, 향로, 축대, 화병 등 선물을 전달하고, 세자의 탄생을 축하하는 통신사를 일본에 파견하였다.

통신사 삼사가 결정된 후 사행 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1643년 1월 부산에서 역관 홍희남과 대마도의 다이라 나리타카(平成幸) 사이에 「통신사강정절목」 24개 조항이 결정되었다. 이 내용은 『증정교린지』(권5, 신행각년례)에 수록되어 있다. 이 강정절목 가운데 일광산 치제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삼사가 일광산에 나아갔을 대에 칙필(勅筆), 종, 향로, 축대, 화병 등의 물품을 마땅히 준비하여 지급하고 제문은 삼사가 가지고 가고 향전은 일본에 예법에 따라 행한다.

㉡ 대군과 약군 앞에서 상견하는 것 및 일광산에서 예를 행하는 것은 모두 전례에 따르고, 만약 그 때 가서 틀리는 것이 있으면 모두 대마도주가 말한 대로 한다.

㉢ 일광산에 삼사가 들어갈 때 쓸 예단을 가지고 온다.

위의 내용은 일광산 치제에 관한 절목이 처음 명문화한 것이다. 『통신사등록』 계미년(1643) 1월 15일조에 수록된 예조 계목을 보면, 일광산(日光山)에 세 사신이 제사를 지낼 때 쓸 예단(禮單)이 후록으로 기록되어 있다. 즉 인삼 15근, 흰 모시 20필, 흰 명주 20필, 오색종이 50권, 채화석 20장, 황모필 각색 100자루, 유매

묵(油煤墨) 100홀, 유둔 10번(番), 백지 100권, 석린(石鱗) 20근이다.

1월 25일조에 수록된 예조 단자를 보면, 일광산에 제사지낼 때 쓸 폐백(幣帛)은 홍색 모시 3필, 흰 명주 3필, 검은 삼베 3필, 채초(彩綃) 3필로 정하였다. 그런데 2월 12일조에는 일광산 치제에 쓸 폐백으로, 금단(錦段) 3필, 채화석(彩花席) 10장, 자기잔대(磁器盞臺) 3죽(竹), 대접[大貼] 3죽, 보시기[甫兒] 3죽, 대화촉(大花燭), 대부용향(大芙蓉香), 운모(雲母), 화석(花席) 5넙. 유둔(油菴) 2부가 추가되었다.

앞에서 본 것처럼 1월 15일조에 수록된 ‘대마도주 소지’에는 일광산 치제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다.(〈표 8-1〉의 4, 5, 6 참조) 그리고 ‘봉행 등 소지’에도 치제 관련 내용이 들어있다.(〈표 8-2〉의 9, 10 참조) 계미년 2월 11일조에 수록된 「홍희남이 가져온 등차(차왜 藤智繩)의 열거 조목(洪喜男賣來藤差條列)」의 일광산 치제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지난 여름 어필을 들여보낼 때, 에도에서 사신이 일광산으로 들어갈 때 받들어 가지고 사당에 납입하는 의장 등의 물건을 마련하여 가지고 들어가도록 해달라고 하였는데, 의장은 여기에서 가져가는 것이 불가한 일이기로, 비변사에서 이미 틀어막는다고 입계하였음.

㉡ 일광산에서 치제할 때의 폐백은 난잡한 상품을 사용하여서는 불가하니, 금단(錦段) 두세 필과 대화촉(大花燭), 대부용향(大芙蓉香), 운모채화석(雲母彩花席), 자기(紫器) 약간으로 마련하여 보냄이 좋겠다고 하였는데, 치제의 폐백 12필은 이전에 이미 마련하여 계하하였으니, 이제 이 말대로 세모시[細苧]와 삼베 등 물건은 모두 제거하고, 금단(錦段) 3필 및 향촉과 운모채화석(雲母彩花席), 자기(紫器) 등의 물건이 비록 치제의 폐백에 적합치 않지만, 해당 관청에 명하여 마련하여 가져가서 임시로 조처하게 할 것.

이처럼 『통신사등록』에는 일광산 치제와 관련된 사항들이 여러 형태로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한편 일광산 치제 때 사배(四拜)를 하느냐 재배를 하느냐는 예법이 문제가 되었다. 계미년 2월 6일조를 보면 대마번 차왜인 후지 도모나와(藤智繩)는 사배의 예를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역관 홍희남은 전례를 들어 재배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일광산에서 사신이 행례하는 것은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필(御筆)을 존경하여 높이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예조는 사배를, 약군(若君)에게는 재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 논의는 그후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다만 1643년 통신사의 사행록을 보면 다시 거론되고 있다. 『계미동사일기』 3월 26일조를 보면, 통신사가 부산에 머물 때 세 사신이 사청(射廳)에 모여 일광산에 헌향하는 의식을 연습하고

난 한 뒤에 관원과 사공들을 모아 금지 조항을 설명하였다. 일광산 치제 의식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7월 15일 예도에 있을 때, 대마도주와 역관 홍희남·이장생이 약군 앞에서 취할 예법과 일광산에 배례 문제를 다시 논의하였다. 약군에 대한 예법은 전명(傳命) 의식이 행해지는 날 참석하지 않아서 쉽게 해결되었다. 일광산 배례 문제도 재배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계미동사일기』를 보면 7월 21일 예도에 머물 때, 역관 정충헌으로 하여금 숙수를 데리고 먼저 일광산에 가도록 했다. 7월 26일 새벽에는 대마도주가 제물 때문에 상의하고자 역관 홍희남과 함께 먼저 일광산으로 갔다. 7월 27일 사신이 평상 위에서 향을 피우고 축을 읽고 전후 재배의 예를 행하니, 도주와 집정들은 평상 밑에 서서 숨을 죽이고 엄숙한 얼굴로 감히 소리내지 못했다고 하였다.

이처럼 『통신사등록』에는 일광산 치제를 둘러싸고, 양국 간의 의견이 오고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상세한 과정과 예단, 폐백의 결정과정, 치제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대유원 제사

대유원은 막부 3대 장군인 도쿠가와 이에미쓰(德川家光)의 묘당(廟堂)이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묘당인 권현묘(權現廟 : 대권현궁, 동조대권현궁) 서쪽 400m 쯤에 위치한다. 이에미쓰는 생전에 그의 묘를 일광산에 축조하려고 하였다. 이에미쓰가 1651년 4월에 죽자 시신은 일광산에 매장되었다. 이어 영묘(靈廟)인 대유원 축조가 이루어져 1653년 4월 완공되었다. 1653년 9월에는 유구의 축하사절이 예도에 왔다가 동조궁과 대유원에 분향을 하였다.

갑오년(1654) 11월 16일조에 수록된 예조 계목을 보면, 대유원의 폐백과 향전(香奠)에 필요한 물품이 수록되어 있다. 물품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1-1> 대유원에 쓸 폐백(幣帛)

금단 (錦段)	대화촉 (大花燭)	대부용향 (大芙蓉香)	채화석	자기잔	대접	보시기 [甫兒]	석린
3필	2쌍	30매	10장	1죽	3죽	3죽	10근

<표 11-2> 대유원 향전(香奠)에 쓸 물품

백단향	은향합	홍상건사라	주홍곡수좌면지	백납촉	대부용향
2냥	1부	1필	10장	3쌍	3쌍

『통신사등록』 을미년(1655) 3월 2일조에는 문위역관 이형남·박원량 등의 도해(渡海) 후 별단이 수록되어 있다. 별단 가운데 대유원 관련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일광산 대권현(大權現) 묘당(廟堂)과 대유원 묘당은 거리가 1~2리 정도이니 통신사는 먼저 대유원에 갔다가 다음 대권현으로 감이 좋겠음.

㉡ 대유원 묘당에 통신사가 참배할 때 등롱은 귀국에서 이미 주조하여 만들었다고 하니 이는 다행이며, 악기 여러 도구는 정하게 갖추어 들여보내는 것이 매우 적절함. 또한 제문은 은근히 제작하여 보내고 치제할 때의 전물(奠物)은 새 물과 새 불로 숙수(熟手)가 새 옷을 입고 함매(啣枚)하여 손을 대지 않고 조과(造果)하므로, 계미년(1643) 치제 때 각종 전물이 비록 극히 정하였으나 일본의 풍속과는 달랐기에 사당에 진설하지 않고 곧장 대군 앞으로 들였는데, 이번의 전물 여러 도구는 가져오되 그 가운데 기름에 지지는 물건은 일본 풍속에 맞지 않으나, 호두와 대추, 밤, 잣, 꽃감, 청밀 등의 물건은 수량을 갑절로 가져와서, 그 중 좋은 것을 가려 정결한 버들상자에 담아 넣어 치전함이 좋겠음. 혹시 익혀서 진설하는 일이 있으면 숙수가 없어서는 안될 듯하니 숙수 1명을 데려와도 무방함.

㉢ 어필을 대유원 묘당에 써서 보낼 때 선대군(先大君) 생시에 귀국에 대하여 은근한 뜻이 많았다는 뜻을 제술하여 보내면 좋겠음.

예조에서는 도해역관 이형남의 별단이 부질없는 내용이 많으므로 긴요한 일만 후록한다고 하였다. 이 가운데 대유원 관련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대권현 묘당에 이전에 사신이 들어갔을 때 혹 분향하거나 혹 치제하는 데는 이미 전례가 있으니 이제 이전대로 함이 마땅하되, 이른바 대유원 묘당은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 일체로 시행함이 마땅할 듯한데, 해조에서는 마음대로 하기 어려우니 이는 묘당에 명하여 논의하여 조치할 것.

㉡ 저쪽에서는 대유원 묘당에 등롱을 청하여 얻은 뒤에 또 악기를 청하는 것은 대개 대권현 묘와 일체로 하려고 하는 뜻이나, 전에 이미 갖추어 보냈으니 이제 틀어막기가 어려운데, 또한 해조에서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니, 묘당에 명하여 의논하여 조치하게 하며, 전물 한 가지 일은 그 말대로 시행하되, 숙수는 1명을 정하여 보내도 무방하니, 사신에게 명하여 선발하여 데려가게 함.

이러한 예조의 견해에 대해, 비변사에서는 권현묘당의 치제와 분향은 본래 전례가 있는데, 대유원은 이에미쓰의 사당이니 치제하는 절차는 달리하기 어려울 듯한데다가, 장소 또한 매우 가까우니 행하더라도 무방할 듯하고, 악기도 등롱을 이미 허락하였기에 그대로 부응함이 마땅할 듯하니, 예조에 명하여 거행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그대로 시행하라는 효종의 윤허가 있었다.

을미년(1655) 3월 13일조를 보면, 왜인이 구청한 대유원 묘당의 악기를 권현 묘당과 마찬가지로 만들어 보내기로 허락하였으므로, 임진년(1652)의 사례대로 호조와 공조 낭청이 장악원 관원과 함께 『악학궤범』의 척도대로 정밀하게 제조하여 보내도록 하였다. 그래서 임진년에 보낸 악기대로, 거문고(琴), 슬(瑟), 축(祝), 어(敵), 훈(墳), 지(簾), 약(簫), 적(簞), 관(管), 통소(簫)의 10종 악기를 각 1건씩 만들어 보내도록 하였다. 그런데 『증정교린지』(권5) 「일광산에 제사지내는 의례(日光山致祭儀)」에서는 슬(瑟), 어(敵), 금(琴), 적(笛), 지(簾), 약(簫), 관(管), 훈(墳), 축(祝), 진(甄?), 소(簫)의 11종을 주었다고 하였다.

대유원 치제는 처음이므로 치제 때 사용할 예물과 잡물은 모두 일광산 치제 때와 같이 마련하도록 하였다.(을미 3월 23일) 을미년(1655) 4월 3일조에는 「권현 묘당 및 대유원의 치제 의례(權現廟堂及大猷院致祭儀)」가 수록되어 있다. 사전 준비 내용, 행례 과정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대유원제문’이 수록되어 있다. 제문은 다음과 같다.

[유세재 을미 4월 을묘삭 20일 갑술 조선국왕은 삼가 신하 통정대부 이조참의 지제교 조형 등을 보내어 일본국 대유원의 영령에 치제하노라]

“아득히 생각건대 영신(靈神)은, 공덕을 크게 드러내어, 큰 사업을 이어받아 지키며, 남겨준 법칙을 준수하여, 후손이 능히 창성하고, 효성스런 생각이 더욱 독실합니다. 우뚝할사 저 정한 사당은, 명복을 비는 곳인지라, 그 산은 높다랗고, 단청은 찬란하게 빛나니, 보우하는 은덕이 미쳐, 기반이 더욱 험합니다. 생각건대 우리나라는, 대대로 친목을 닦음에 돈독하여, 비록 큰 파도가 막혀 있지만, 명성과 공훈을 사모한지 오래입니다. 이에 사절을 보내어, 보잘 것 없는 제수를 올리니, 부디 음덕의 보살핌으로, 영세토록 함께 즐겁기를”

1655년 통신사 정사 조형의 『부상일기』를 보면, 10월 18일(병인)에 대유원에서 제사를 지냈다. 통신사 종사관 남용익의 『부상록』에도 제문에 수록되어 있다. 다만 제문 날짜가 ‘시월 을묘삭 이십일 갑술’로 『통신사등록』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 제문은 대제학 채유후(蔡裕後)가 지은 것으로 『춘관지』에도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춘관지』에는 「대유원 등롱명(燈籠銘)」도 수록되어 있다. 『증정교린지』(권5)에도 「일광산에 제사지내는 의례(日光山致祭儀)」가 수록되어 있다. 『통신사등록』은 대유원치제는 물론 권현묘를 비롯한 일광산 치제와 관련한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춘관지』, 『증정교린지』, 『부상록』 등 관련 자료와의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 『국역 통신사등록』(Ⅱ) 개관

『국역 통신사등록』(Ⅱ)는 신유년(1681, 숙종 7) 6월 26일부터 계해년(1683, 숙종 9) 3월 4일까지 내용을 번역한 것이다. 『통신사등록』 원본의 제3책과 제4책, 그리고 서울대학교 도서관이 간행한 영인본 『통신사등록』(一)의 395~771쪽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 영인본에는 날짜별로 내용을 요약한 제목을 목차에 싣고 있다. 그리고 같은 날짜에 수록된 기사라도 시작 날짜 항목과 다른 내용의 기사는 별도의 제목으로 목차에 실려 있다. 영인본의 목차에 정리된 기사 항목을 한 건으로 보고, 연도별 기사 항목의 건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 『국역 통신사등록』(Ⅱ)의 연도별 기사 항목 수

시기	1681(숙종 7)	1682(숙종 8)	1683(숙종 9)	합계
항목 수	56	142	5	203

<표 12>를 보면 기사 항목 건수는 모두 203건이다. 기사 항목은 모두 1682년(숙종 8) 임술통신사와 관련된 내용이다. 1682년 통신사의 역관 홍우재(洪禹載)가 쓴 사행록인 『동사록(東槎錄)』에 의하면, 1682년 통신사는 1682년 5월 8일 서울을 출발하여 11월 16일 서울로 돌아왔다. 그러므로 1681, 1682년의 기사는 통신사 파견 전의 교섭과정 및 통신사 파견 내용에 집중되어 있다.

도쿠가와 막부의 4대 장군인 도쿠가와 이에즈나(德川家綱)가 1680년 5월 사망하고, 동생 쓰나요시(綱吉)가 8월 5대 장군으로 즉위하였다. 이에 통신사 파견 문제가 발생하였다. 조선에서는 ‘형이 죽고 동생이 계승했다(兄亡弟及)’면 장군직을 찬탈한 것이 아닌가 의심도 하였으나, 전례에 따라 통신사를 파견하게 되었다. 1682년 통신사는 1678년 초량왜관이 완성된 이후 일본에 간 첫 통신사였다. 초량왜관이 완성된 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통신사의 파견이 논의되었으므로, 초량왜관과 관련된 내용을 볼 수 있다.

『국역 통신사등록』(Ⅱ)의 첫 기록은 신유년(1681, 숙종 7) 6월 26일조이다. 내용은 <동래부사 남익훈(南益薰)이 장계한 내용>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啓目) 내용>과 <비변사의 회계(回啓) 내용>과 <예조 계목에 대한 판하(判下)>의 네 부분으로 되어 있다.

동래부사의 장계는 통신사를 청하는 차왜가 예조참판에게 보내는 서계를 가지고 머지않아 건너올 것이며, 문위역관(問慰譯官)이 9~10월 경에 대마도에 가야 궁색한 폐단이 없으며, 통신사는 내년 3월 경에 서울을 출발 6~7월 경에 에도(江戸)에

도착할 것이라고 했으며, 차왜가 오면 경접위관(京接慰官)과 차비역관(差備譯官)을 즉시 파견해야 한다는 것이 중심 내용이다. 예조의 계목은 여러 등록(謄錄)을 상고하니 계미년(1643) 통신사를 청하러 온 차왜 때는 경접위관이, 을미년(1653) 때는 경상도 도사(都事)가 접대하였는데, 이번에는 경접위관을 내려보내야 마땅하며, 문위역관도 미리 차출해야 마땅하되, 이 일은 묘당(廟堂)에 명하여 품의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다. 비변사의 회계는 계미년(1643)과 을미년(1653)의 사례가 다른데, 이번 차왜는 을미년(1653) 전례와 같으니 경상도 도사가 접대하되, 문위역관은 미리 차출하여 대기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이대로 분부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다. 예조 계목에 대한 판하는 별차왜 때는 향접위관을 파견하지만 경접위관과 같이 대우하는 사례가 있으니 그대로 시행하라는 숙종의 윤허가 있었다.

이 첫 번째 기록은 「두왜(頭倭)가 통신사 파견을 청하는 차왜가 올 것이라고 전함→ 동래부사가 경접위관과 차비역관 파견을 청하는 장계를 예조에 보냄→ 예조는 동래부사의 의견에 따라 경접위관을 파견하되 묘당[비변사]에서 결정하기를 청함→ 비변사는 경접위관 대신 경상도 도사를 파견하도록 한다」 등 일본 특의 통신사 파견 요청과 이에 대한 조선측의 결정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국역 통신사등록』(II)의 내용 가운데 주목되는 점을 몇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682년 통신사 명단

『통신사등록』 임술년(1682) 5월 4일조에는 통신사 사행원의 직책과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3> 『통신사등록』에 수록된 1682년 통신사 명단

직책	이름	전·현직	이름	전·현직	이름	전·현직
정사	윤지완	이조참의				
부사	이언강	홍문관 전한				
종사관	박경후	홍문관 교리				
제술관	성완	성균관 진사				
당상역관	박재홍	동지	변승업	첨지	홍우재	첨지
상통사	안신휘	전 주부	정문수	전 직장	유이관	전 정
차상통사	김관	전 판관	박중렬	전 봉사		

압물통사	오윤문	전 정	김도남	부사맹	이석린	통훈대부
	김지남	정				
의원	정두준	전 정	주백	전 판관	이수번	전 주부
사자관	이삼석	상호군	이화립	상호군		
화원	함제건	전 교수				
정사 군관	차의린	첨지	윤취상	전 부사	신이장	전 군수
	원덕휘	전 군수	백흥령	전 만호	이엽	전 초관
	이만상	초관	강진무	부사과		
부사 군관	윤취오	전 부정	장한상	전 부정	김중기	첨지
	양익명	선전관	이유린	부사과	홍세태	전 첨정
	김효상	호군	조정원	호군		
종사관 군관	정태석	전 판관				
별파진검군관	이시형	어모장군	한준일	선략장군		
마상재	오순백	부사과	형시정	부사과		
이마	박계한					
전악	김몽술		윤만석			

표에서 정사 윤지완, 부사 이언강, 종사관 박경후, 제술관 성완을 비롯한 46명의 직책과 이름을 알 수 있다. 종사관 박경후(朴慶後)는 자료에 따라 박경준(朴慶俊)으로 기록된 경우도 있다. 『숙종실록』에 따라 박경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682년 통신사 사행록은 당상역관 홍우재의 『동사록』과 압물통사 김지남(金指南)의 『동사일록』이 대표적이다. 두 책 모두 『해행총재』에 수록되어 있다. 홍우재의 『동사록』에는 통신사 사행원의 좌목이 없다. 다만 1682년 11월 16일 일기에 보면 서울에 돌아온 후 논공행상을 할 때 원역의 내용을 일부 알 수 있는 정도이다.

사행원의 명단은 김지남의 『동사일록』에 상세하다. 삼사 외에 제1선(정사선)에 31명, 제2선(부사선)에 29명, 제3선(종사관선)에 24명, 합계 84명의 직책과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의 직책과 이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4> 김지남의 『동사일록』에 수록된 1682년 통신사 명단

직책	이름	전·현직	이름	전·현직	이름	전·현직
정사	윤지완	이조참의				
부사	이언강	홍문관 전한				
종사관	박경후	홍문관 교리				
제술관	성완	진사				
수역	박재홍	가선	변승업	절충	홍우재	절충
상통사	정문수	직장	안신휘	주부	김관	전판관
	박중렬	전 봉사	유이관	전 정	오윤문	전 정
	이석린	통훈				
양의	정두준	전 정				
의원	이수번	전 주부	주백	전 판관		
화원	함제건	전 교수				
한학	김지남	전 정				
가정	김도남	사맹				
사자관	이삼석	참봉	이화립	상호군		
서기	임재	부사과	이담령	진사		
정사 자제군관	백홍령	전 만호	이엽	전 판관		
군관	차의린	절충	신이장	전 경력	원덕휘	전 군수
	이만상	전 초관	강진무	수문장		
부사 자제군관	이유린	부사과	홍세태	전 첨정		
군관	윤취오	전 부정	장한상	전 부정	양익명	선전관
	김효상	호군	조정원	호군		
종사관 자제군관	정태석	전 판관				
군관	윤취상	전 부사	김중기	전 첨정		
별파진	이시형		한준일			
마상재	오순백		형시정			
전악	윤만석		김몽술			

이마	박계한					
반당	김태익		강선립		홍여량	
선장	황생		김용기		김중일	
복선장	김여경		황진중		장지원	
예단직	여신립					
반전직	여자신		장후량			
도훈도	김기남		남석로		서수명(한학)	
청직	조귀동		박성익			
소동	김취언		최정필		장성일	
	이지화		현천필		장외봉	
	장익		김자중		최영숙	
	장계량		김취적			
수역소동	김성건		최차웅		한국안	
제술관소동	김이경					
사노	애금		맛봉		영립	
	천업		수생		시킨	

표에서 보는 것처럼, 『통신사등록』과 『동사일록』 사이에는 이름과 직책의 차이를 보인다. 두 책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통신사등록』은 통신사 구성원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둘째, 1678년 무오절목과 1683년 계해약조

초량왜관과 관련된 대표적인 유물로는 1683년에 세워진 약조제찰비를 들 수 있다. 이것은 1683년 계해약조의 내용을 적은 비이다. 이것은 초량왜관이 신축된 해인 1678년(숙종 4) 9월에 동래부사 이복(李馥)이 제시한 7개항을 근거로 한 무오절목을, 4년 후 파견된 1682년(임술) 통신사가 대마번과 직접 교섭하여 검토한 후, 이듬해 1683년 계해약조로 체결되어 왜관 안팎에 세워진 것이다.

『통신사등록』 임술(1682) 11월 30일조에는 「무오년(1678) 장계의 후록(後錄) 조건」과 「폐에 새길 새 약조」로 구분하여 무오절목과 계해약조에 관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통신사등록』에 기록된 1678년 「무오절목」의 7개 조항을 정리한 후, 이를 『변례집요』(권5, 약조 부금조)의 항목 유무와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5> 『통신사등록』에 수록된 1678년 무오절목

	통신사등록	내용요약	변례 집요
1조	왜관 문 밖으로 왜인이 출입하는 제한은 엄중하게 그 경계를 정하지 않아서는 불가하니, 구관(舊館)에서는 수문(守門) 밖 수십 보 되는 곳에 좌자천(左自川) 냇물 하나가 있으므로 그 내를 한계로 하되, 신관(新館)에서는 수문 밖에서 앞으로 나오면 곧 해안의 항구이고, 그 항구를 건너면 곧 절영도(絶影島)이며, 서쪽으로 나가면 곧 연향청(宴享廳)으로 지나가는 길이고, 문에서 연향청까지는 겨우 한 마장(馬場)입니다. 동쪽으로는 곧 구관으로 왕래하는 길인데, 문에서 송현(松峴)까지 또한 백 보 남짓 거리에 불과합니다. 연향청에 출입하는 곳은 비록 또한 문이 있지만 평상시에는 밖에서 굳게 잠궜두고, 열고 닫는 권한은 우리에게 있기에, 왜인이 결코 수문(守門)을 버리고 감히 이 문으로 출입할 생각을 내지 못합니다. 이제 경계를 정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먼저 수문으로 그들이 출입하게 정하고, 앞으로는 감히 해안의 항구를 건너 절영도에 왕래하지 못하게 하고, 서쪽으로는 감히 연향청을 지나지 못하게 하며, 동쪽으로는 송현을 지나지 못하게 하는 뜻으로 명백하게 조정함.	왜관 밖 왜인 출입의 한계 설정	○
2조	이미 경계를 정한 뒤로는 만약 감히 범하는 자가 있으면 수문(守門) 군관(軍官)과 입번(入番) 소통사(小通事)와 복병(伏兵) 등이 법을 범한 왜인을 사로잡아 관수왜에게 들여 주어 즉시 도중으로 보내어 법대로 형벌을 행하라는 뜻으로 특별히 한 조목을 만들어 도주(島主)에게 조정함.	한계를 정한 뒤에 범한 자의 처벌	×
3조	잠상(潛商)의 노부세(路浮稅)가 적발되어 잡힌 뒤에는 피차간에 같은 죄로 해야 마땅하나, 근래에는 비록 이 일로 금법을 범하는 자가 있더라도 또한 단지 우리나라 사람만 죽일 따름이고, 왜인은 탈이 없으니 이 어찌 두 나라가 신의로 일을 처리하는 도리이겠는가? 일의 체면으로 헤아리자면 극히 한심하니, 지금 이후로 만약 범하는 자가 있으면 받은 자도 같이 일죄(一罪)로 하자는 뜻으로 엄하게 조목을 세워 도중(島中)과 조정하여 일체로 준행하여 결단코 용서하지 않음.	잠상 노부세의 엄금	×

4조	개시(開市) 때 대관(代官) 여러 왜인이 우리나라 역관 상인들과 대청(大廳)에서 좌정하고, 상인들의 종들과 말 주인들은 그들 이름으로 패를 받아 문에 들어온 자는 대청 아래에 줄지어 앉는데, 무릇 매매하는 일은 한결같이 문을 들어온 물화의 수량에 따라 그 다소와 귀천의 품질을 따져 공정하게 교역하여 물리가고, 일체 그 하왜(下倭)들과 사사로이 상인 및 말 주인들과 함께 몰래 각 방에 들어가서 몰래 매매하지 말라는 뜻으로 엄하게 조목을 세워서, 만약 범하는 자가 있으면 각기 잠상(潛商)의 율을 시행하여 결단코 용서하지 않음.	개시 때 밀 무역의 금지	○
5조	왜인이 몰래 여염집으로 나와서 함부로 난잡하게 행동하는 폐단은 한정이 없는데, 몰래 나온 자들은 매양 생선과 채소를 산다고 말을 하나 그 간교한 버릇은 참으로 매우 밋지만, 다만 생선과 채소를 매매하는 길을 영영 막는다면 먼 외국 사람의 생계가 또한 매우 절박하여 또한 모름지기 별도로 한 조목을 세워서 우리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생선과 채소와 과실과 쌀 등 일상생활에서 폐지할 수 없는 물품을 매일 아침 전에 관문 밖에 가서 팔도록 허락하는 외에, 또한 왜인에게도 수문(守門) 밖에서 사들이는 즉시 들어가서 일체 이전처럼 여염집에 출몰하지 말라는 뜻으로 각별히 조정할 것	조시 때 수문 앞 이외의 민가 출입 금지	○
6조	신관(新館)의 객사(客舍)를 아직 새로 짓지 않았고 객사의 터는 현재 비록 들어가 사는 여염집이 없으나, 해가 오래된 뒤면 장차 큰 마을을 이룰 형세이니, 만약 미리 약속하지 않는다면 뒤에 막기가 어렵고, 곧장 구관(舊館)의 일로 말하자면 왜관에서 객사에 이르는 사이에 시골 마을이 즐비하므로, 송사(送使) 등이 숙박하러 왕래할 즈음에 종왜(從倭)를 많이 거느리고 와서 흠어져 들어가 횡행하는 폐단을 견디지 못하니, 이 뒤로는 신관의 송사가 숙박하러 객사에 왕래할 때면 한결같이 품수(品數)에 따라 그 수행하는 인원수를 정하여 곧장 갔다가 곧장 오되, 혹시라도 뒤쳐져서 함부로 행동하여 이전의 버릇을 따르지 말라는 뜻으로 또한 명백하게 조정함.	송사 진상 숙박 때의 규정	○
7조	오일잡물(五日雜物)을 관왜에게 들여 줄 때는, 전례로는 본부에서 아전과 고직(庫直)들을 정하여 보내어 왜관 문을 들어가서 수량을 대조하여 지급하되, 계산하여 지급할 때 만약 사소하게 만족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왜인이 시비를 묻지 아니하고 곧장 사납게 화를 내어, 색리(色吏)나 고자(庫子)나 소통사(小通事)나 부장(部將)이나 문직(門直)의 무리를 따지지 않고	5일잡물 입급 때의 규정	○

7조	사사로이 끌고 다니며 구타하고, 심지어는 의관을 찢어버리거나 신체를 손상하는 지경에 이르니, 이는 두 나라 사이의 성신(誠信)의 도리가 아니다. 지금 이후로는 일체 이런 버릇을 따르지 말고 비록 혹시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조용히 본부에 전하여 알려 좋은 모양으로 조치하라는 뜻으로 명백하게 조정함.	5일잡물 입급 때의 규정	○
----	--	------------------------	---

『통신사등록』에서는 무오절목 내용의 수정 사항을 대해 조목별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일급 가지 약조는 동래부에서 올린 무오년(1678) 장계 등록에 실려 있으나, 문자가 길고 번거로워 폐에 새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일급 가지 가운데 제1조는 관문(館門) 밖의 출입 한계를 정하는 일, 제2조는 경계를 정한 뒤에 범하는 자는 죄를 다스린다는 일, 제5조는 조시(朝市)에서 어울려 매매하는 이외에는 일체 여염집에 출몰하지 말라는 일이다. 이 세 조목은 말의 뜻이 중첩되어 한 가지로 합쳐야 한다.

② 제3조의 잠상(潛商)으로 금법을 범하는 자는 주는 자와 받는 자를 같은 죄로 한다는 한 조목은 편치 못한 일이 없지 않으니, 우리나라의 간사한 사람이 관가에 고하지 않고 몰래 물화(物貨)를 가지고 왜인과 매매하는 자를 잠상(潛商)이라 일컫는데, 왜인은 그 사람이 잠상인지 모르고 함께 매매하였다가 그것이 적발된 뒤에 우리나라 사람과 더불어 함께 일죄(一罪)로 논한다면 저쪽에서 반드시 원통한 마음을 품을 뿐만 아니라, 저쪽에서 잠상을 금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비하여 배로 엄격하여 왜인이 잠상을 참형으로 처단한 것이 전후로 한 두 번이 아니거니와, 금령을 범한 왜인이 소지한 물화가 반드시 우리나라 상인의 몰래 판 물건이 아닐 수도 있어서, 우리나라 상인이 세금을 납부하고 피집(被執)한 물건을 왜인들이 사사로이 매매하다가 도중(島中)에서 탄로 나서 잡힌 뒤에 우리나라 사람을 같은 죄로 처벌하기를 요구한다면 일이 매우 난처하니, 잠상 두 글자는 빼어버리고 단지 노부세(路浮稅) 한 조목만 남겨 둬야 어떻겠느냐?

③ 제6조의 이른바 왜인이 진상숙배(進上肅拜)하러 왕래할 때 그 직품 등급에 따라서 그 수행 인원을 정하여 곧장 갔다고 곧장 올 것이지 혹시라도 뒤쳐져 제멋대로 다니지 말라고 하는 한 조목은, 이른바 뒤쳐져 제멋대로 다닌다는 것은 경계 표시의 금제를 범하는 자와 원래 다름이 없어서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고, 수행 인원 수를 정하는 것은 형편상 시행하기 어렵고 또한 번쇄(煩瑣)한 일이라 이 한 조목은 빼어버리는 것이 적합할 듯하다.

④ 이렇게 말하자면 꽤에 새길만한 것은 네 가지에 지나지 않겠기로, 신이 감히 비천한 견해로 조목을 만들어 무오년(1678)에 확정한 7조와 아울러 뒤에 나열 하였으니, 묘당에 명하여 참작 취사하여 분부하여 거행하도록 해 주실 일.

동래부사 남익훈은 7개 조항을 돌에 새기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4개 조항만 새기자는 장계를 1682년 11월 올렸다. 비변사는 4개 조항을 범한 자는 모두 왜 관 밖에서 처형한다는 조항을 첨가하였다.

셋째, 1682년 통신사 응행절목(應行節目)

『통신사등록』 신유년(1681, 숙종 7) 9월 15일조에는 이번 통신사의 행차에 시행해야 할 여러 일을 을미년(1655) 통신사의 사례에 따라 후록한다고 하였다. 후록한 것이 통신사 응행절목이다. 그런데 『통신사등록』 계미년(1643) 1월 5일 조에는 1643년 통신사절목이 수록되어 있다. 이것은 이미 <표 6>에서 정리한 바 있다. 『춘관지』 권2에는 「신사응행절목」이 하나의 독립된 항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1682년 통신사 응행절목을 1643년 통신사 응행절목, 『춘관지』 신사응행절목과 비교하면 다음 <표 16>과 같다.

<표 16> 1682년 통신사 응행절목

	1682년	1643년	춘관지
1	사신의 출발하는 일정 및 바다를 건너는 날씨는 문위역관이 돌아온 뒤에 관상감에 명하여 택일하여 거행함.	×	×
2	사신의 반전(노자) 등의 물자는 해조에 명하여 미리 마련함	○	○
3	사신 일행에게 하사하는 쌀은 을미년(1653) 사례대로 마련하여 지급함.	○	×
4	사신의 장복(章服)[부사 이상은 모두 당상관 장복]은 상의원에 명하여 마련하여 지급함.	○	×
5	일행 원역의 의복과 신발 등 물자는 공조와 제용감에 명하여 만들어 지급하게 함.	○	×
6	사신의 형명기와 독(蠹)은 본도에 명하여 마련하여 지급함.	○	×
7	맞이할 때의 취라치(吹螺赤)는 본도에 명하여 정하여 보냄.	○	×
8	사신이 가져가는 인신 1알은 주조한 관방인(關防印)을 갖추어 공조에 명하여 만들어 보내고, 도장집[印家]과 관방인집[關家]과 소가죽 남라개집(南羅介: 문서통)를 한 바리 만드는 것도 공조에 명하여 마련하게 함.	○	○

9	상선 2척, 하선 2척, 소선 2척에 격군은 모두 본도에 명하여 미리 만들고 간택하여 호송함.	○	○
10	상사의 자제 2원, 군관 6원, 노자 2명, 부사의 자제 2원, 군관 6원, 노자 2명, 종사관의 자제 1원, 노자 1명 및 독축관 1원, 왜통사 당상관 2원, 당하관 6원, 한통사 2원, 사자관 2원, 의원 2원, 화원 1원, 별과진검군관 2인, 마상재 2인, 악공 2인, 이마와 숙수 각 1인은 각 해당 관청에 명하여 선발하여 데려가게 하되, 차왜가 말하는 말 잘 타고, 활 잘 쏘며 육량궁(六兩弓)을 잘 쏘는 자는 사신의 군관 중에서 최선으로 선발하여 데려 감.	○	○
11	바다를 건널 때 일행을 수검(搜檢)하는 등의 일은 사신이 엄하게 금하여, 원역 중에서 함부로 범하는 일이 있으면 조정에 되돌아온 뒤에 일일이 조사하여 계문함	○	○
12	정남침(定南針)은 관상감에 명하여 지급함.	○	○
13	일행 원역은 각기 노자 1명을 데려 감.	○	○
14	사신 이하가 관문과 나루터를 건너갈 때, 보고 검사할 문서는 을미년(1653)의 사례에 의거 마련하여 지급함.	○	○
15	일본 국왕에게 보내는 서계에는 전례대로 ‘위정이덕(爲政以德)’ 어보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이대로 시행함.	○	○
16	차왜가 가져온 서계 가운데 지금의 대군(大君)에게는 이미 저군(儲君)이 있다고 하였는데, 서신을 보내고 선물을 증정하는 등의 일은 계미년(1643)의 사례대로 마련하여 거행함.	×	×
17	일본국 집정과 대마도주, 수도서인 등에게 사신이 되돌아 들어올 때 차등을 두어 서신을 보내고 선물을 증정하는 것이 전례라고 하니 이대로 시행함.	○	○
18	사신이 가져가는 예단은 일본국왕 및 집정 4인, 봉행 6인, 장로 1인 등 각 왜인에게 전례대로 차등있게 증정하여 주는 물건은 호조와 본도에 명하여 미리 마련하며, 수직왜에게는 전례대로 짐짓 9인의 수량을 마련하되, 지금은 필시 생존한 자가 없을 것이니, 문위역관이 탐문하여 되돌아온 뒤에 품의 조치함.	×	×
19	시급한 일이 있으면 파발말로 알릴 것.	○	○
20	사신을 들여보낼 때 일본 집정과 도주 이하 수도서 왜인 등에게 본조에서 서신을 보내고 선물을 증정하여 주는 규정이 있는데, 이제 이번 통신사 때도 전례대로 서신을 보내도록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마련하게 함.	×	×
21	사신 일행에게 시행할 잡물은 호조 및 본도에 명하여 을미년(1653)의 사례를 상고하여 급속히 마련하여 대령하게 함.	×	×

22	미진한 조건은 추가로 마련함.	○	○
내용 중 동일하거나 비슷한 내용이 있으면 ○, 없으면 ×로 표시하였다.			

1643년 통신사의 절목이 18개 항목인데 비해, 1682년 통신사의 절목은 22개 항목이다. 통신사의 전례를 따른 것으로, 특히 1643년, 1653년 통신사가 근거가 되었다. 제10조에 보면 말 잘타거나 활잘쓰는 사람을 삼사 군관 중에서 특별히 선발한다는 등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1643년 절목에는 피로인 쇄환에 관한 내용이 있으나 1682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넷째, 1682년 통신사 강정절목(講定節目)

통신사가 파견되기 전에 조선과 일본은 통신사 파견과 관련된 규정인 절목을 서로 강론하여 결정하였다. 이렇게 결정된 절목을 강정절목이라 한다. 『증정교린지』(권5, 신행각년례)에 의하면, 1682년(숙종 8, 임술)에 관백 이에쓰나(家綱)가 죽고, 그의 아우 쓰나요시(綱吉)가 그 자리를 이어 통신사를 요청하므로, 윤지완(尹志完), 이언강(李彦綱), 박경후(朴慶後)를 보내었다. 절목은 신유년(1681, 숙종 7) 문위역관인 변이표(卞爾標) 등이 강정하여 왔다고 하였다. 『증정교린지』에는 이 강정절목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통신사등록』과 『증정교린지』에 수록된 강정절목의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17> 1682년 통신사 강정절목

	통신사등록	증정교린지
1	선대군(先大君) 능묘는 도성의 동북 5리 쯤의 동예산(東叡山) 땅에 있는데, 묘원의 호칭은 겐유잉[嚴有院]이다. 전례대로 모름지기 전하의 친필 편액을 증정하는 것과 제문을 증정하여 주기 바라는데, 그 동경(銅鑒:구리 등잔걸이), 악기 등은 예전 규범을 준수하기 바라며, 그런 뒤에 그 등경(燈檠)에는 모름지기 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글씨의 글자 모양은 뜻대로 지어주기 바라며, 만약 먼저 그 초고를 주시면 모양의 높낮이를 모름지기 그림을 그려서 지휘할 것이다.	등롱과 악기는 모두 구례에 따라 하고, 등롱의 명문(銘文)은 먼저 초본을 보여준다
2	또한 생각건대 대체로 매양 본국에 사신을 오는 관사(官使)는 반드시 일광산에 일이 있는데, 이번에 동도(東都)에 머물러 있는 기간 동안 도오조오규우[東照宮]과 다이유잉[大猷院] 묘에 분향을 할 수 있을지? 만약 과연 그럴 일이 있으면 모름지기 분향하는 예물과 먼 길의 수고를 사양하지 말기 바람.	권현당과 대유원 두 곳에서는 분향만 하고, 엄유원에서만 제사 지낸다.

3	본국의 집정 및 봉행은 당초에 정해진 인원이 없는데, 이제 혹시라도 인원이 더해지기도 한다. 만약 그렇다면 모름지기 음식을 접대하고 위문하는 일이 있어야 하니, 예조의 도장을 찍은 종이 몇 장을 가지고 오는 것이 예전의 관례이다.	예조의 도장을 찍은 종이 몇 장을 들여보낸다
4	본국 해로의 험하고 평탄한 장소는 귀국 뱃사공이 아는 바가 아니라서, 우리 뱃사공 가운데 가장 잘하는 자를 최선으로 선발하여 귀국의 배에 나누어 실을 것인데, 바람을 살피고 조수를 살핌에 있어서 모름지기 그 지휘를 따라주고 귀국의 뱃사공이 마음대로 출발하거나 거두지 말게 하기 바란다.	왜 사공은 삼사선에 나누어 타고서 바람과 조수를 기다리게 한다.
5	오사카[大坂] 이동에서 관원이 타는 말은 모두 우리나라 후백(侯伯)이 바치는 것이다. 모름지기 빠르게 몬다고 채찍을 치지 말기 바란다. 그 행렬을 소란하게 하여 죽는 경우가 많으며 사람을 상할까 염려된다.	일행이 타는 말을 너무 달리게 해서 길에 쓰러져 죽는 일이 없게 한다.
6	전년에 사신이 도착하던 날 하관의 종복(從僕)들이 법령을 회롱하거나 침범하여 간혹 객관 밖에서 외람되이 어정거리거나 혹은 나라에서 금하는 물건을 몰래 무역하는 자가 있었다. 이제 정령(政令)이 매우 엄격하여 온 나라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만약 몰래 사사로이 금지하는 물건을 매매하는 자는 규찰하고 검속하여 탄핵하여, 본국의 간사한 사람에게 형벌을 시행하는 법과 다름없이 할 것이니, 바라건대 이번 일행에는 어른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응당 모름지기 바르고 엄숙하게 하여 주기 바란다. 또한 관사의 하의(賀儀)에 사용하는 별폭은 마땅히 두어 가지 물품만 사용하고, 그리고 아침저녁으로 반드시 사용할 집물 외에는 다른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것을 허락하지 말기 바란다.	일행들이 사관 밖에 함부로 나다니거나 금지된 물건을 몰래 매매하지 못하도록 한다.
7	지난번에 이미 글을 잘 짓고 글씨를 잘 쓰고 활을 잘 쏘는 관원을 데려오기를 희망하였는데, 궁수는 모름지기 완력이 있는 자여야 하고, 마상재는 모름지기 조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	글에 능하고, 글씨 잘 쓰고, 그림 잘 그리고, 말 잘 다루고, 활을 잘 쏘고, 말 잘 타고 힘 센 사람을 대동동한다.

8	전년에는 상상관으로 임명된 자가 2원이었는데, 이번 행차에는 3원이 와도 좋다. 이는 하관이 정제되고 예의가 있게 하기 위해서이며, 또한 좋은 의원 및 통역을 담당하는 관원의 인원을 더하여도 무방하나, 쓸데없는 인원 몇 명을 데려오지 말기 바란다.	상상관(上上官), 압물관(押物官), 양의(良醫)를 증원한다.
9	우리나라 세 종실 및 집정 등 몇 사람에게는 모두 세 분의 대관사(大官使)께서 증정하는 선물이 있는데, 그 물품을 많이 하는 것이 예전의 사례이나, 무명베와 호두 열매와 잣, 화석, 유지(油紙), 설면(雪綿), 패향(佩香), 청심원 등은 굳이 동도의 대관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머지 매와 인삼, 범 가죽, 표범 가죽, 양 가죽, 담비 가죽, 청서피, 백조포(白照布), 필묵, 비단[緞綾], 채전(彩牋), 어피, 녹두, 백밀(白蜜), 작은 칼도 모두 좋다.	삼종실(三宗室)과 집정에게 삼사가 주는 물건 중에 무명, 호두, 잣, 화문석, 유둔, 설면, 패향(佩香), 청심원 등의 물건은 동도(東都 강호)에서 쓰는 물건이 아니다. 이 밖에 매, 인삼, 호피, 표피, 청서피, 양피, 백저포, 붓, 먹, 능단, 색종이, 어피, 녹두, 백밀, 작은 칼을 가지고 온다.
10	세 사관(使官)이 타는 배는 견고하고 치밀하면서 정밀하게 갖추되 큰 밧줄 및 쇠닢은 모름지기 이쪽 대마주에서 실어 보내며, 그 나머지 배 위에서 사용할 짐물로서 만약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기 바람.	사신이 타는 배의 큰 노와 철정은 대마도에서 실어 보내고, 의룡 몇 짐도 만들어 보낸다.
11	대군 앞으로 보내는 서계를 넣은 궤짝은 모름지기 정밀하게 만들도록 하고 또한 그것을 싸는 보자기 역시 모름지기 극히 화려하게 할 것.	대군(大君)에게 보내는 서계(書契)는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보자기에 싸고 궤에 넣는다.
12	이번 행차에는 말을 치는 종이라도 새옷을 착용하기 바람. 우리나라에서는 더러운 옷을 입는 것을 불경한 것으로 여기니 풍속을 어지르지 말기 바람.	사신 일행이 데리고 오는 사람은 채색옷을 입는다.
13	폐백으로 사용할 말 및 그 밖에 가져올 말을 5필로 정했는데, 별도로 서너 필을 끌고 오면 좋겠고, 그 털 품질은 위라말[駮;얼룩말]이나 가라말[驪:검정색], 절따말[紫毛]이나 황부루[黃毛]를 사용하고, 비록 폐백 말이라도 흰색은 버릴 것.	폐백(幣帛)을 신는 말과 예단(禮單)을 신는 말 이외에 미리 말 3, 4필을 보내되, 얼룩말, 검은말, 자황색 등의 말을 더 보낸다.
14	매는 30연으로 정했는데 그 나머지 세 대사(大使)가 사용할 것까지 피차간에 합쳐서 50연인데, 별도로 10여 연을 조롱에 넣어 온다면 좋겠음. 만약 말이나 매의 발굽이 손상되거나 깃털이 손상되면 바칠 수가 없을까 염려되고 또한 죽게 되는 경우 또한 알 수가 없음.	예단에 들어 있는 매 50마리[連] 이외에 10마리를 더 보낸다.

15	전년에 되돌아 올 적에는 다만 세 분의 대사가 도착하면, 상관이 된 자가 음식을 진설하지 않고 5일 분의 물자를 공급만 하고 말았다. 이번에는 그 사례대로 오가는 사이에 음식을 진설하지 않는 것이 어떠할지? 그러나 오사카 및 양도(兩都)에 처음 도착하는 날과 그 나머지 큰 고을에서는 모름지기 예전 규정을 준수하여 진선(進膳) 연향(宴饗)을 할 것인데, 수고를 사양하지 말기 바란다.	바다나 육지의 각 역참에서는 예(例)에 따라 5일지공(五日支供)을 지급하고, 대판(大坂) 및 양도(兩都)와 그 나머지 큰 읍(邑)에서는 숙공(熟供)으로 잔치를 베푼다.
16		집정봉행(執政奉行) 등 10인 이외에 대집정(大執政) 1인, 서경 윤(西京尹) 1인, 봉행 2인에게 줄 물건을 더 가지고 온다.

『통신사등록』에는 『증정교린지』에 없는 내용도 다수 있다. 같은 항목의 내용도 『증정교린지』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강정절목의 어떤 내용이 『증정교린지』에 어떻게 요약 정리되었는가를 잘 보여준다.

이렇게 강정된 절목에 따라 통신사의 파견 내용이 바뀌었다. 예를 들면 1655년 통신사 이전까지는 보통 2명의 의원이 갔다. 그런데 이 절목에 양의(良醫)를 증원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1682년 통신사부터 의원과는 별도로 양의 1명이 증원되었다.

다섯째, 1682년 통신사의 의원(醫員)과 양의(良醫)

통신사에 참여한 의원(醫員) 수는 원래 2명이었다. 그러다가 1655년 통신사부터 3명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1682년 통신사부터는 의원 3명 가운데 1명은 양의(良醫)로 대체되었다. 양의의 파견은 마지막 통신사인 1811년 통신사까지 계속되었다. 다만 1811년 통신사 때는 양의 1명과 의원 1명만 갔다.

통신사에 참여한 의원 2명은 정식 규정 인원이며, 양의 1명은 가정(加定), 즉 추가된 인원이다. 양의에 대한 선발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1682년부터 양의가 증원된 이후, 일반적으로 의원과 구분하기 위해 ‘양의’가 직책 이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증정교린지』(권5, 통신사행)에서는 “양의 1명은 왜인이 요청하면 의술에 정통한 자를 가려서 파견하였고, 의원 2명은 전의감과 혜민서에서 각 1명씩 선발하였다”고 하였다.

양의 파견이 처음 실시된 1682년 통신사 때는 정두준(鄭斗俊)이 양의, 이수변

(李秀蕃)과 주백(周伯)이 의원으로 갔다. 정두준은 본관은 하동이며, 1660년(현종 1) 의과에 합격하였다. 정두준은 1678년(숙종 4) 당시에는 어의(御醫)로 활동할 정도로 의술에 뛰어났다. 1682년 통신사가 일본에 갔을 때, 9월 1일 대마도주는 병이 나서 양의 정두준을 요청하였다. 양의도 오사카(大坂)에서는 가마를 타는 것이 허락되었다. 이것은 에도(江戸)에서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양의에 대한 일본측의 접대는 제술관, 상통사와 같은 ‘상관(上官)’의 격이었다. 일본의 이러한 태도는 양의를 통한 의학 정보 수입이라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통신사등록』 신유(1681) 11월 23일조에서는, 전의감(典醫監)에서 전 판관 주백(周伯)을,惠民서(惠民署)에서 전 주부 이번(李蕃)[이수번의 오기]을 의원으로 차정한다고 하였다. 12월 21일조에 보면, 양의(良醫) 한, 두 명을 늘려서 들여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양의는 2명이 전례이므로 인원수를 추가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12월 21일조에 수록된 문위역관 변이표가 가져온 대마도주의 별단을 보면, 양의와 역관의 인원을 늘려도 무방하지만, 쓸모없는 사람 몇 명을 데려오지 말기 바란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측에서는 의관을 추가하여 보내는 것은 변통에 관계되므로, 묘당[비변사]에 명하여 품의 조치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의원 1명을 해당 관청에 명하여 선발하도록 하였다.

『통신사등록』 임술(1682) 1월 15일조에 수록된 도주별단에도, 양의와 역관 한, 두 사람을 추가로 데려와도 무방하다고 하였다. 『통신사등록』 임술(1682) 3월 5일조에서는 의원 정두준을 해조에 명하여 군직(軍職)에 부치는 일을 탐전에서 확정하였다고 하였다. 3월 11일조에서는 상상관 및 양의와 역관은 보여준 대로 인원수를 더하여 데려간다, 5월 4일조에서는 이번 사행에서는 당상역관, 당하역관, 의원을 각 1명씩 추가한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통신사등록』 임술(1682) 5월 4일조에 수록된 통신사의 명단을 보면, 「의원 전 정(正) 정두준(鄭斗俊), 전 판관(判官) 주백(周伯), 전 주부(主簿) 이수번(李秀蕃)」으로 3명의 의원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3명의 의원은 양의와 의원의 구분없이 모두 의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의원 이수번은 『통신사등록』 신유년 11월 23일조에는 이번(李蕃), 임술년 5월 4일조에는 이수번(李秀蕃)으로 기록되어 있다. 『통신사등록』에서는 양의와 의원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다.

홍우재의 『동사록』(6월 20일조)에 의하면, 의원 이수번은 인삼 10여근을 몰래 숨겨 두고 있다가 발각되었다. 통신사 의원의 밀무역과 관련된 사례의 하나이다. 『통신사등록』은 등록이라는 자료적 성격 때문에 통신사행에 참여한 사람들이 일본에서 한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내용이 부족한 점이 있다. 의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통신사 사행원이 남긴 사행일기[사행록]나 필담창화집,

문답집 등 관련 자료와 비교,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여섯째, 1682년 통신사의 대상자별 선물[예단]

1682년 통신사 때 압물통사인 김지남의 『동사일록』에는 「재거물건(賚去物件)」이란 항목이 있다. 이 항목에는 대군, 약군, 집정, 대마도주에게 보내는 서계의 유무와 내용, 별폭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통신사가 가져간 선물[예단] 내용을 대상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8> 1682년 통신사가 가져간 국왕 등 대상자별 선물[예단]

	대군(大君)	약군(若君)	집정(執政)	대마도주
매(鷹子)	10마리(連)	10		
준마(駿馬)(안장)	2마리(匹)	2		
호피(虎皮)	15장(張)	10	3	2
표피(豹皮)	20장(張)	10	2	3
초피(貂皮)	20장(令)			
대유자(大襦子)	10필(疋)			
대단자(大段子)	10필(疋)			
색대사(色大紗)	20필(疋)	10		
백조포(白照布)	20필(疋)		17	10
황조포(黃照布)	20필(疋)			
유포(油布)	30필(疋)			5
인삼	50근(斤)	30		5
청피(靑皮)	30장(張)	15	5	
어피(魚皮)	100장(張)	100	15	
색지(色紙)	30속(束)			
붓/색붓(筆/色筆)	50자루(柄)	50		
참먹(眞墨)	50개(笏/丁)	50	20	
황밀(黃蜜)	50근(斤)			
황청밀(黃淸蜜)	10단지(壺)			
비단(錦段)		10필	3(段子)	
비단(綾子)		20필		
꽃무늬벼루(花硯)		5개(面)		
황필(黃筆)			30자루(柄)	
유둔(油菴)			5개(浮)	
백면주(白綿紬)				10

백목면				20
화석(花席)				5장
출전 : 김지남, 『동사일기』, 「재거물건(賚去物件)」				

<표 18>을 보면, 품목은 동물(매, 말), 호피 등 가죽, 비단 등 직물, 종이와 붓 등 문방구류, 인삼, 꿀 등이 주종이다. 국왕에 대한 선물은 다른 사람과는 물품과 수량에서 차이를 보인다. 대상자 모두에게 지급된 품목은 호피, 표피, 비단의 세 품목이다, 비단은 질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통신사등록』 신유(1681) 9월 15일조를 보면, 일본 국왕, 왕자, 집정, 봉행, 대마도주, 수도서인, 장로, 수직왜에게 가져갈 선물[예단]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9> 1682년 통신사가 가져갈 국왕 등 대상자별 선물[예단]

	국왕	왕자	집정	봉행	대마도주	수도서인	장로	수직왜인
대단자(大段子)	10필(匹)	10						
백릉(白綾)	20필(匹)	20						
백저포	30필(匹)	30	10	10	10	5	5	3
흑마포	15필(匹)	15		5	5			
인삼	30근(斤)	30			5		3	
호피	10장(張)	10	2	1	2	1		
표피	15장(張)	15			3			
각 색필	50자루(柄)	50						
청서피	15장	15						
준마(鞍)	2필(匹)	2						
유매묵(油煤墨)	50개(笏)	50(柄)	20개(笏)	10			10	5
화연(花硯)	5개(面)	5						
어피	100장	100						
매(鷹子)	10마리(連)	10	1	1				
백면주			10필(匹)	10	10	5	5	3
황모필			30자루(柄)	20			20	10
유둔			3개(部)			1		
화석(花席)			5장		5	3		2
백목면					20			
출전 : 『통신사등록』 신유년(1681) 9월 15일								

<표 18>에서는 국왕, 왕자, 집정, 대마도주의 네 대상자에게 모두 지급된 것이 호피, 표피, 비단의 세 품목이다, <표 19>에서는 호피, 비단, 백저포고 표피는 집정은 제외되어 있다. <표 19>를 보면 모든 대상자에게 간 예단은 백저포 한 품목이다. 국왕과 왕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 모두에게 간 품목은 백면주 한 품목이다. 『동사일기』 내용과 가장 큰 차이의 하나는 국왕과 왕자의 예단 품목과 수량이 같다는 점이다. 이것은 기록상의 오기인지도 모른다. 앞으로 검토를 요한다.

『통신사등록』에는 해당 물품의 조달을 담당하는 관청이나 지역이 기록되어 있어 『동사일기』 내용보다는 훨씬 상세하다. 또한 <표 9>에서 정리한 1643년 통신사의 예단과도 차이를 보인다. 통신사의 시기별 예단의 변화상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일곱째, 통신사 수행원의 작폐(作弊)와 대마도주의 대응

통신사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우리 나라 사행원 가운데는 상국(上國)의 입장에서 대마도 사람을 무시하고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통신사 삼사 사신들은 매번 수행원들의 예의범절을 강조하였다. 대마도주는 통신사 수행원을 예우하느라, 이들이 다소 무례한 행동을 하여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1682년 통신사 때는 대마도주의 태도가 달라졌다. 대마도에 머물고 있던 6월 29일 대마도주가 삼사 일행을 초청하는 연회가 있었다. 대마도주는 수행원의 예의를 강조하며 5가지 요망 사항을 적어 보냈다. 이러한 사실은 홍우재의 『동사록』(6월 29일)에 잘 나타나 있다. 이날 일기를 보면 “오늘 연회에 나아가서 세 사신이 자리를 떠나 휴게소에 있을 때 대마도주가 5조목으로 된 한 폭 족자를 보냈다”라고 적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행의 상관(上官) 이하에 있어서 마땅히 정숙하고 조심해야 함이 요망되며, 술에 취하여 문이나 기둥에 흠집 내거나, 돛자리나 병풍을 베어 내거나, 벽에 침을 뱉거나 오줌을 계단에 누는 것이나, 말을 달리다가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여러 관속들이 심부름할 때 높은 곳에 앉아 오만하게 내려보는 일들을 금한다는 것이다.

② 지난번에 잠상(潛商)을 금하기를 청했는데, 이번에 우리 영토에 들어왔을 때 금지령이 매우 엄하고 가장 정중하였다는 것이며, 이것은 이번의 사신 일행이 좌수포(佐須浦)에 이르러 잠매하려는 물건을 엄하게 수색 검사한 관계로 이를 변명한 것이다.

③ 지난 무신·기유년 사이에 우리나라[倭]의 축전주(筑前州) 호민(豪民)들이 귀국의 상인과 비밀히 통하여서 금지된 물건들을 무역하다가 사형을 당했는데, 이번에 동도(東都)에 머무실 때 혹시 시강관(侍講官)이 의심나는 곳에 증거를 대게 하거든 실정(實情)대로 답해 주기 바란다는 것이다.

④ 두 장로(長老) 삼(森)과 영(靈)가 접대할 때는 역시 옛 제도에 따라 할 것이다.

⑤ 시를 짓는다가 여행기를 쓰는 등의 저작물에 그들이 싫어하는 말[忌諱]을 쓰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홍우재는 『동사록』에서 이 5조목 글이 번다하므로 그 큰 뜻만 초록한다고 부기하고 있다. 『동사록』의 내용은 전문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초록한 것이다. 6월 29일 대마도주가 보낸 5조목은 『통신사등록』에서는 임술(1682) 7월 11일조에 ‘별단(別單)’으로 기록되어 있다. 『통신사등록』 원본의 해당 부분 상단에는 ‘신사전 도주별단(信使前島主別單)’이라고 부기되어 있다. 별단을 보면 5조목을 적어 보내니, 해아려 살펴주기를 바란다는 전제 위에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별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 역관을 통하여 입으로 알리고자 한 것이 다섯 조목이었으나 사건이 번거롭고 세세하여 곡진하게 전달하지 못할까 염려되기 때문에 기록하여 바칩니다. 또 생각건대 기실(記室)이 글을 잘하지 못하여 사정을 다 말씀드리지 못하니 오직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번 일행의 상관 이하는 모름지기 정숙하고 삼가하고 성실하기 바람. 계미년(1643)과 을미년(1655)에 각처의 대기하며 접대하는 곳에서 술을 얼큰하게 마시고 흠뻑 취한 탓에 간혹 술잔과 쟁반이 낭자하거나 혹은 부질없이 문이나 기둥을 짚아 새기거나, 자리를 잘라내고 병풍에 글을 쓰거나 혹은 당(堂)과 벽에 침을 뱉거나, 혹은 계단 가로 오줌을 흘려보내거나, 마침내는 타는 말을 달리게 하여 엎어져 죽기에 이르는 자도 있어서, 우리나라 인사가 개미떼나 사슴 떼처럼 모여들어 보는 자가 담장과 같았는데, 그 목동이나 마부와 종들까지 또한 칼을 차지 않는 자라도 그 풍속이 과감하여 여유 있게 부드러운 기상이 전혀 없으니, 만약 혹시라도 말을 타고 군교를 차거나 혹은 부녀들에게 침을 뱉기까지 하면 보는 이들이 매우 한심하게 여기고, 또한 대기하여 접대하는 곳에서 여러 관리들이 가지 않고 높이 누워 거만하게 바라보는 자가 종종 있으며, 병자년(1636)에 사신들이 이미 동도(東都)에서 출발하는 날 한 하관이 술에 잔뜩 취한

나머지 말 위에서 우리 병졸에게 꾸짖어 욕설을 하자, 군졸이 노하여 말을 꺼내자 칼을 쳐서 상해하였는데, 생각하면 그렇게 말에 상처를 입힌 것은 오히려 말할 것도 못되고, 만약 혹시라도 얼굴에 침을 뱉거나 욕설하여 꾸짖는 자는 반드시 살해당하여 죽는데. 우리나라의 사나운 풍습은 서경(西京) 동쪽이 심하니, 요컨대 모름지기 잘 살펴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국의 사람으로서 법을 범하거나 금지를 침범하는 무리가 있으면 모름지기 먼저 기록하여 알려 주시기 바라며, 저는 내 휘하에 있는 자뿐만 아니라, 비록 후백(侯伯)의 대관(大官) 집의 요속(僚屬)이나 이민(吏民) 또한 청하는 바에 따라 처치할 것입니다. 나의 휘하에 속한 자에게는 이미 벌써 몇 건의 명을 내려서 그 법이 매우 엄격하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② 지난번에 동래에다 잠상을 금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미 우리나라 국경으로 들어왔으니 바라건대 명령을 매우 엄중하게 하여 주시면 가장 감사하겠기에 정중히 말씀드리오니, 우리 섬을 떠나기 전에 더욱 더 규찰하여 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③ 전년인 무신년(1668)과 기유년(1669) 사이에 우리나라 쓰구젠주[筑前州]의 호민(豪民)이 위장 선박으로 귀국과 몰래 통하여 금지된 물품을 무역하다가 그 일당 수십 인이 일이 발각되어 모조리 책형(磔刑)을 당하고 집안의 많은 재산을 관고(官庫)로 몰수당하였는데, 그 가운데 귀국에 적(籍)을 올린 자도 또한 많다고 합니다. 일찍이 『동국통감(東國通鑑)』을 세상에 간행하였고, 또 들으니 『여지도(輿地圖)』와 『대전(大典)』 등의 책을 관고(官庫)에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생각건대 이번 동도(東都)에 머무는 날 혹 시강관으로 하여금 의심나는 여러 곳을 바로잡을 것이니, 그렇다면 모름지기 사실대로 답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성조(盛朝)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국가의 금령과 관계되는 것은 청탁하여 빙자하는 한계를 두지 않겠습니다.

④ 이번에 두 장로로 하여금 접위하게 한 것 또한 예전 사례를 준수한 것입니다. 본국에서는 불교를 숭상하여 믿은 지 오래되었으므로, 자의(紫衣)와 황의(黃衣)를 하사한 자는 우리나라 전상관(殿上官)에 상당하니, 경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⑤ 창화(唱和)와 기행(紀行)의 여러 시문 작품에 기휘하는 말을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군(大君)은 천부의 자질이 영매(英邁)하고 문학을 숭상하며, 집정 여러 관원 또한 자못 책을 좋아하여, 이 때문에 이번 사행에 저술한 것을 감히 빼껴 적어 위에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기탄 없이 말하면 저의 허물이 될까 두렵습니다. [6월 29일 대마주 태수 다이라 요시자네[平義眞]].

위 5조목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조, 1636년, 1643년, 1655년 통신사 때 술먹고 행패부리는 등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행동을 많이 하였으므로, 이번 사행에서는 상관 이하는 모름지기 정숙하고 삼가하고 성실하기 바란다.

제2조, 참상, 즉 밀무역을 엄중하게 금지하기 바란다.

제3조, 1668~1669년 쪼구젠[筑前]주 호민과 조선인이 결탁한 밀무역 사건에 대해 막부에서 물으면 사실대로 대답해 주기 바란다.

제4조, 접반승(接伴僧)은 전례를 준수한 것으로, 이들을 경시하지 않기를 바란다,

제5조, 창화 등 글을 지을 때 기휘(忌諱)하는 말을 쓰지 않기를 바란다.

역관 홍우재가 사행록에 이를 적은 것은 그만큼 대마도주의 요구가 강했기 때문이다. 대마도주가 보낸 「일폭오조(一幅五條)」의 내용은 김지남의 『동사일록』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홍우재가 사행록에 적은 것은 이미 언급한 것처럼 전문이 아니고 초록이다. 전문은 『통신사등록』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통신사등록』이 가지는 사료적 의미가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양자를 비교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6. 『국역 통신사등록』(Ⅲ) 개관

『국역 통신사등록』(Ⅲ)은 기축년(1709, 숙종 35) 2월 18일부터 임진년(1712, 숙종 38) 5월 20일까지 내용을 번역한 것이다. 『통신사등록』 원본의 제5책과 제6책, 그리고 서울대학교 도서관이 간행한 영인본 『통신사등록』(二)의 3~575쪽, 즉 전책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 영인본에는 날짜별로 내용을 요약한 제목을 목차에 실고 있다. 그리고 같은 날짜에 수록된 기사라도 시작 날짜 항목과 다른 내용의 기사는 별도의 제목으로 목차에 실려 있다. 영인본의 목차에 정리된 기사 항목을 한 건으로 보고, 연도별 기사 항목의 건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0> 『국역 통신사등록』(Ⅲ)의 연도별 기사 항목 수

시기	1709(숙종 35)	1710(숙종 36)	1711(숙종 37)	1712(숙종 38)	합계
항목 수	41	56	148	26	271건

<표 20>을 보면 기사 항목 건수는 모두 271건이다. 기사 항목은 모두 1711년(숙종 37) 신묘통신사와 관련된 내용이다. 1711년 통신사 때의 사행록으로는 정사

조태억(趙泰億)의 『동사록(東槎錄)』, 부사 임수간(任守幹)과 종사관 이방언(李邦彦)의 『동사일기(東槎日記)』, 압물통사 김현문(金顯門)의 『동사록』이 있다. 조태억을 정사로 하는 1711년 통신사행은 1711년 5월 15일 국왕 숙종에게 하직인사를 한 후 도성을 출발하였다. 11월 1일 에도(江戸)에서 국서를 전달하였다. 1712년 2월 25일 부산 좌수영 남천에 도착하였으며, 3월 9일 서울에 돌아와 국왕에게 복명하였다. <표 20>의 기사는 통신사 파견 전의 교섭과정과 통신사 파견 내용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통신사 파견 당해인 1711년 기사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도쿠가와(德川)막부의 5대 장군인 도쿠가와 쓰나요시(德川綱吉)는 일본력 보영(寶永) 6년(1709) 1월 10일 64세로 사망하였다. 이에 통신사 파견 문제가 발생하였다. <표 3>에서 정리한 것처럼, 보영 6년(1709) 5월에 6대 장군 도쿠가와 이에노부(德川家宣, 1709.5~1712.10)가 즉위하였다. 통신사는 이에노부가 장군직에 취임한 2년 후인 1711년에 파견된 것이다.

『국역 통신사등록』(Ⅲ)의 첫 기록은 기축년(1709, 숙종 35) 2월 18일조이다. 내용은 <동래부사 권이진(權以鎭)이 2월 10일 장계한 내용>이 중심이다. 동래부사의 장계는 황령산 봉군의 보고 내용과 부산첨사의 통보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다. 부산첨사 윤이경(尹以經)의 치통(馳通) 내용에는 2월 8일 밤에 왜선 1척이 초량왜관에 도착하였으므로, 훈도 김도남(金圖南)과 별차 김현문(金顯門)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알아보라고 하였는데, 훈도와 별차의 보고에 올해(1709년) 정월 10일 관백(關白)이 갑자기 서거하였다는 부음을 전통(傳通)하는 일로 나왔다고 하므로, 가져온 노인(路引)을 받아 올려보낸다고 하였다. 이에 동래부사 권이진은 비선의 노인 1통을 예조로 올려보내면서, 그 연유를 장계를 올려 보고한다는 것이다.

대마도 측에서는 두왜(頭倭)를 보내 관백의 부고(訃告)를 전하고, 동래부사가 장계를 올려 이 사실을 보고하는 절차를 통해, 5대 장군 도쿠가와 쓰나요시가 사망한 사실이 조선 조정에 알려지게 되었다. 『국역 통신사등록』(Ⅲ)의 내용 가운데 주목되는 점을 몇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차왜(大差倭)가 가지고 온 대마도주의 서계, 별폭과 조선 측의 회례

조선후기 대마도에서 온 차왜(별차왜)는 크게는 대차왜와 소차왜로 나뉜다. 대차왜는 참판사라고도 부른다. 대차왜와 소차왜는 업무와 구성 등에 따라 이름이 세분되어 있다. 관백고부차왜, 관백승습고경차왜, 통신사청래차왜, 통신사호행차왜 등은 대차왜, 도주고부차왜, 도주고환차왜, 재판차왜 등은 소차왜에 속한다.

대차왜와 소차왜는 술속과 서계 수신인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서계 수신인의 경우 대차왜는 예조참판, 예조참의, 동래부사, 부산첨사, 소차왜는 예조참의, 동래부사, 부산첨사이다. 대마도주의 별폭과 조선측의 회례도 그 종류, 수량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① 관백고부차왜의 사례

『통신사등록』기축(1709) 7월 27일조에는 관백고부차왜 평진치(平眞致)와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관백고부대차왜가 탄 배에는 봉진압물 1인, 시봉 1인, 반중 16명, 격왜 70명 등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대마도주가 예조참판과 예조참의, 동래부사와 부산첨사에게 보내는 서계와 별폭을 가져왔다. 이 차왜는 수목선(水木船), 견선[견인선], 각선(脚船)이란 3척의 배를 대동하고 왔다. 대마도주가 보낸 4통의 서계에서는 관백의 부고를 알리고, 별폭의 보잘 것 없는 물품으로 성신(誠信)을 표한다고 하였다. 별폭의 물품을 정리하면 <표 21-1>과 같다.

<표 21-1> 관백고부차왜편에 보낸 대마도주의 별폭

물품	예조참판	예조참의	동래부사	부산첨사
채화괘연(彩畵掛硯)	1비(備)			
황칠괘연(黃漆掛硯)			1비	1비
대화진주(大和眞珠)	5근(斤)	1근	1근	
첩금소병풍(貼金小屏風)	1쌍(雙)			
수랍중명완(粹蠟中茗盃)	20개			
적동루오관반(赤銅累伍盥盤)	1부(部)			
적동루삼관반(赤銅累參盥盤)		1부		
채화의형(彩畵衣桁, 옷걸이)		1각(脚)		
채화일척염경(彩畵一尺奩鏡, 화장거울)		1면(面)		
문지(紋紙)		500편(片)	200편	
수정립서(水晶笠緒, 갓끈)				1결(結)
흑칠화전갑(黑漆華箋匣)				2개

<표 21-1>의 별폭 내용은 『증정교린지』 권2 「차왜, 관백고부차왜」에 기록된 내용과 동일하다. 별폭에 대해서는 답례를 표하는 회례(回禮) 물품을 전례대로 마련하였다. 『통신사등록』에서 <후록(後錄)>으로 정리된 회례품은 <표 21-2>와 같다.

<표 21-2> 대마도주의 별폭에 대한 조선측의 회례품

	예조참판	예조참의	동래부사	부산첨사
인삼	2근	2근		
호피(虎皮)	1장	1장		
표피(豹皮)	1장	1장		
백면주(白綿紬)	10필(匹)	7필	5필	5필
백저포(白苧布)	10필	7필	5필	5필
흑마포(黑麻布)	7필	5필	3필	3필
백목면(白木綿)	20필	20필	10필	10필
황모필(黃毛筆)	30자루[柄]	30자루	20자루	20자루
화문석[花席]	5장	5장	3장	3장
4장불인유둔(四張付油苴)	3부(部)	2부	1부	1부
참먹[眞墨]	30홀(笏)	30홀	20홀	20홀

<표 21-2>의 회례 내용은 『증정교린지』 권2 「차왜, 관백고부차왜」에 기록된 회사(回賜)별폭의 내용과 동일하다. 회례품의 종류와 수량은 예조참판과 예조참의, 동래부사와 부산첨사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동래부사와 부산첨사는 예조참판과 예조참의에 비해 인삼, 호피, 표피 3종류가 없다. 예조참판과 예조참의는 물품 종류는 같지만 수량에서 차이가 있다. 동래부사와 부산첨사는 종류와 수량이 모두 동일하다. 『통신사등록』에는 이 회례품 외에도 관백고부차왜의 하선연, 상선연, 별연 때, 선물로 줄 예단과 경접위관이 가져갈 예단의 종류와 수량 등이 기록되어 있다.

기축(1709) 9월 13일조를 보면, 조선 조정은 관백을 조위(弔慰)하는 역관을 파견할 것 확정하고 승문원에 명하여, 경신년(1680, 숙종 6) 예에 따라 조위서계(弔慰書契)를 짓고, 조위예물을 보내도록 하였다. 조위예물 내용은 <표 21-3>과 같다.

<표 21-3> 조선에서 일본에 지급하는 조위예물의 내용

품목	부용향 (芙蓉香)	화촉(畫燭)	백방사주 (白方絲紬)	침향 (沈香)	큰 촛대 (大燭臺)	향로	향합	화룡대촉 (畫龍大燭)
수량	10봉(封)	100자루	10필	1편	1쌍	1부	1부	1쌍

② 관백승습고경차왜의 사례

『통신사등록』 기축(1709) 9월 21일조에는 관백승습고경차왜 평륜구(平倫久)와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대마도주가 보낸 4통의 서계에는 새 관백의 취임 을 알리고, 양국의 우호를 닦기 위해 별폭의 물품으로 정성을 표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별폭의 물품을 정리하면 <표 21-4>와 같다.

<표 21-4> 관백승습고경차왜편에 보낸 대마도주의 별폭

물품	예조참관	예조참의	동래부사	부산첨사
첩금소병풍(貼金小屏風)	2쌍			
수정 갓끈[水晶笠緒]	3결	5결	1결	1결
채화의형(彩畫衣桁)	1각			
채화괘연(彩畫掛硯)	1비			
채화유대대연갑(彩畫有臺大硯匣)	1비			
채화화가(彩畫畫架)	1각			
대화진주(大和眞珠)	2근	1근	1근	
적동루오관반(赤銅累伍盥盤)	2부			
적동명로(赤銅茗爐)	3개			
적동루삼관반(赤銅累參盥盤)		2부		1부
채화문갑(彩畫文匣)		1각		
채화원분(彩畫圓盆)		10개		
수랍명완(粹蠟茗盃)		20개		
채화화전갑(彩畫華箋匣)			1개	1개
채화소원분(彩畫小圓盆)			10개	
바둑판[碁盤]			1위(圍)	
적동대약관(赤銅大藥罐)			1개	
채화육존염경(彩畫六寸奩鏡)				1면
흑칠등대(黑漆燈臺)				5개

『증정교린지』 권2 「차왜, 관백승습고경차왜」에는 대마도주가 예조참관, 예조참의, 동래부사, 부산첨사에게 보낸 별폭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증정교린지』의 별폭 내용은 <표 21-4>와는 물품과 수량에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양자를

비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표 21-1>과 <표 21-4>를 비교해 보면, 차왜의 종류에 따라 별폭의 내용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관백승습고경차왜에게 지급한 회례품의 내용은 <표 21-2>와 동일하다. 관백고부차왜와 관백승습고경차왜의 사례를 비교해 보면, 대마도주의 별폭 내용은 차이가 있으나, 조선 측의 회례품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소차왜(小差倭)가 가지고 온 대마도주의 서계, 별폭과 조선측의 회례

① 도주고환차왜의 사례

『통신사등록』 기축(1709) 10월 8일조에는 도주고환차왜 원기차(源紀次)와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도주고환차왜가 탄 배에는 봉진압물 1인, 반종 5명, 격왜 40명 등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대마도주가 예조참의, 동래부사, 부산첨사에게 보내는 서계를 가져왔다. 대마도주가 보낸 3통의 서계에는 대마도주가 동무(東武, 에도)에 조근(朝覲, 참근교대)하고 대마도로 돌아온 것을 알리고 안부를 여쭙면서, 별폭의 물품으로 정성을 표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별폭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22-1>과 같다.

<표 22-1> 도주고환차왜편에 보낸 대마도주의 별폭

물품	예조참의	동래부사	부산첨사
대화진주(大和眞珠)	1근		
채화중원분(彩畵中圓盆)	10개		
채화중층갑(彩畵中層匣)	1비		
적동루오관반(赤銅累五盥盤)	1부		
수정 갓끈[水晶笠緒]		1결	
적동루삼관반(赤銅累參盥盤)		1부	
채화유결소원분(彩畵有玦小圓盆)		10개	
채화화전갑(彩畵華箋匣)			1비
주칠대원분(朱漆大圓盆)			10개

『증정교린지』 권2 「차왜, 도주고환차왜」에는 예조참의, 동래부사, 부산첨사에게 보내는 별폭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증정교린지』의 별폭 내용은 <표 22-1>과 물품과 수량에서 차이를 보인다. 양자를 비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별폭에 대해서 답례를 표하는 회례(回禮) 물품을 전례대로 마련하였다. 『통신사등록』에서 <후록>으로 정리된 회례품은 <표 22-2>와 같다.

<표 22-2> 대마도주의 별폭에 대한 조선측의 회례품

물품	예조참의	동래부사	부산첨사
호피(虎皮)	1장		
표피(豹皮)	1장		
백면주(白綿紬)	5필	3필	3필
백저포(白苧布)	5필	3필	3필
흑마포(黑麻布)	3필	2필	2필
백목면(白木綿)	10필	5필	5필
황모필(黃毛筆)	20자루	10자루	10자루
화문석[花席]	3장		
4장불인유둔(四張付油苴)	2부		
참먹[眞墨]	20홀		

『증정교린지』 권2 「차왜, 도주고환차왜」에는 예조참의, 동래부사, 부산첨사가 차왜에게 지급하는 회사별폭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회사별폭의 품목과 내용은 <표 22-2>와 동일하다. 차왜가 조선측에 주는 서계별폭은 『통신사등록』과 『증정교린지』의 내용이 다른 데 비해, 일본측에 주는 회사별폭은 양자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표 21-2>와 <표 22-2>를 비교해 보면, 소차왜의 경우 대차왜에 비해 전반적으로 수량이 감소하였다. 물품 종류의 경우, 예조참의는 인삼이, 동래부사와 부산첨사는 화문석[花席], 4장불인유둔(四張付油苴), 참먹[眞墨]이 제외되었다.

② 문위역관호행 재판차왜의 사례

『통신사등록』 기축(1709) 10월 27일조에는 문위역관호행 재판차왜 등방공(藤方恭)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문위역관호행 재판차왜가 탄 배에는 봉진압물 1인, 시봉 1인, 반중 10명, 격왜 40명 등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대마도주가 예조참의, 동래부사, 부산첨사에게 보내는 서계를 가져왔다. 대마도주가 보낸 서계에는 대마도주가 역사(譯使, 문위역관)를 맞이하면서, 신의(信義)의 표시로 별폭 물품을 보낸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별폭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22-3>과 같다.

<표 22-3> 문위역관호행 재판차왜편에 대마도주가 보낸 별폭

물품	예조참의	동래부사	부산첨사
채화서가(彩畵書架)	1각		
흑칠화전갑(黑漆華箋匣)	1개		
채화삼촌염경(彩畵參寸奩鏡)	5면		
문지(紋紙)	600편		
적동루삼관반(赤銅累參盥盤)	1부		
채화대원분(彩畵大圓盆)	10개		
흑칠중연갑(黑漆中硯匣)		1비	
채화육촌염경(彩畵六寸奩鏡)		2면	
주칠중원분(朱漆中圓盆)		10개	
수랍중명완(粹蠟中茗盃)		10개	
화전갑(華箋匣)			1개
적동명로(赤銅茗爐)			1위(圍)
주간연기(朱竿煙器)			30악(握)

『증정교린지』 권1 「접대대마도인신정사례, 문위관호행차왜」를 보면, 근래에는 반드시 재판이 교대로 와서 호행한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차왜 이름이 문위역관 호행 재판차왜인 것이다. 『증정교린지』 권2 「차왜, 재판차왜」에는 예조참의, 동래부사, 부산첨사에게 보내는 별폭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증정교린지』의 내용은 <표 22-3>과는 물품과 수량에서 차이를 보인다. 양자를 비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위역관호행 재판차왜는 소차왜이지만, 같은 소차왜인 도주고환차왜(<표 22-1>)와 비교해 보면 물품에서 차이를 보인다. 소차왜의 별폭 내용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별폭에 대해서는 답례를 표하는 회례(回禮) 물품을 전례대로 마련하였다. 『통신사등록』에서 <후록>으로 정리된 회례품은 <표 22-4>와 같다.

<표 22-4> 대마도주의 별폭에 대한 조선측의 회례품

	예조참의	동래부사	부산첨사
인삼	1근		
호피(虎皮)	1장		
표피(豹皮)	1장		
백면주(白綿紬)	5필	3필	3필
백저포(白苧布)	5필	3필	3필
흑마포(黑麻布)	3필	2필	2필
백목면(白木綿)	10필	5필	5필
황모필(黃毛筆)	30자루	20자루	20자루
화문석[花席]	3장	2장	2장
4장불인유둔(四張付油苴)	2부	1부	1부
참먹[眞墨]	30홀	20홀	20홀

『증정교린지』 권2 「차왜, 재판차왜」에는 예조참의, 동래부사, 부산첨사가 차왜에게 지급하는 회사별폭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회사별폭의 품목과 내용은 <표 22-4>와 동일하다. 차왜가 조선측에 주는 서계별폭은 『통신사등록』과 『증정교린지』의 내용이 다른 데 비해, 일본측에 주는 회사별폭은 양자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같은 소차왜인데도 회례품을 <표 22-2>와 비교해 보면 차이를 보인다. 한편 이 문위역관호행 재판차왜가 타고 온 배 외에도 이때 비선 4척이 함께 왔다. 비선 4척 중 3척에는 각각 1만냥, 1척에는 5천냥, 합계 3만 5천냥의 절행(節行) 은화가 실려 있었다. 대마도에서 조선으로 수출되는 은(銀)은 크게는 2시기로 나누어져 있었다. 7~8월의 황력은(皇曆銀)과 10~11월의 동지은(冬至銀)이 그것이다. 이 절행 은화는 동지은을 가리키는 것이다. 1709년 10월 당시 절행 은화, 즉 동지은의 수입 규모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한다.

셋째, 경접위관에게 준 대마도측의 예물

관백고부차왜나 관백승습고경차왜는 대차왜이다. 이들 대차왜에 대한 접대는 서울에서 파견한 경접위관이 담당하였다. 기축(1709) 11월 17일조에는 관백고부차왜 평진치(平眞致)가 경접위관인 부사직(副司直) 이세근(李世瑾)에게 지급한 3차례의 예물, 12월 25일조에는 관백승습공경차왜 평륜구(平倫久)가 경접위관인 병조정랑 이정제(李廷濟)에게 준 2차례의 예물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 예물 내용을 정리하면 <표 23>과 같다.

<표 23> 관백고부차왜, 관백승습고경차왜가 경접위관에게 지급한 예물

	관백고부차왜			관백승습고경차왜	
	기축 9월	기축 9월	기축 10월	기축 11월	기축 12월
채화대연갑(彩畵大硯匣)	1비(備)				
소동탕기(小銅湯器)	5제(提)		5제		
화도소명(花陶小皿)	20좌(坐)				
청패연기(靑貝煙器)	10악(握)		20악		
문지(紋紙)	200편(片)		100편		
주개과아(朱蓋鍋兒)	1제(提)				
혁과대부갑(革裹大簿匣)		1비		1비	
채화중연갑(彩畵中硯匣)		1비		1비	
채화오촌염경(彩畵伍寸奩鏡)		1면		1비	
화보아(花甫兒)		20개			

별화대접(別花大貼)		1개			
적동명로(赤銅茗爐)		1위		1개	
별목경(別目鏡)		1조(操)		1조	
전자(剪子)		2자루			
적동중층화로(赤銅中層火爐)		1위			
이척오촌산금병풍(貳尺伍寸撒金屏風)			1비		
채화팔촌염경(彩畵八寸鹽鏡)			1면		
중천리경(中千里鏡)			1개		
화대사발(花大沙鉢)			10개		
화중접시(花中貼匙)			10개		
대동탕기(大銅湯器)			3제		
화대도기(畵大陶器)				2개	
적동소탕기(赤銅小湯器)				10개	
첩금소병풍(貼金小屏風)					1쌍
채화화전갑(彩畵華箋匣)					1개
별문지(別紋紙)					500편
중화보아(中畵甫兒)					20개
소도(小刀)					5자루
우산(雨傘)					4자루
중동탕기(中銅湯器)					6개

대차왜인 관백고부차왜와 관백승습고경차왜가 경접위관에게 준 예물품의 종류는 차이를 보인다. 같은 차왜라도 각각 3차레, 2차레 준 내용도 차이를 보인다. 예물 가운데 천리경, 소도(小刀), 우산 등 물품이 1차레씩 포함되어 있는 것이 주목된다.

넷째, 통신사청래대차왜가 가지고 온 대마도주의 별폭

경인(1710) 6월 13일조를 보면 왜선 4척이 초량왜관으로 들어왔다. 제1선은 신사청래대차왜의 배로, 정관 평진연(平眞連), 봉진압물 1인, 시봉 1인, 반중 16명, 격왜 70명 및 교대차 나온 의왜(醫倭) 1인, 통사왜 1인, 금도왜 3인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예조참판, 예조참의, 동래부사, 부산첨사에게 보내는 서계와 별폭을 지참하고 있었다. 제2선은 차왜의 수목선, 제3선은 동 건선, 제4선은 동 각선이었다. 이들은 통신사가 내년(1711) 5월 안으로 부산을 출발하여 7~8월에 에도(江戸)에 도착하도록, 통신사의 파견을 요청하였다. 6월 14일조에는 차왜가 가져온 서계 등본과 별폭 물목이 기재되어 있다. 별폭 내용을 정리하면 <표 24>와 같다.

<표 24> 통신사청래차왜가 가지고 온 대마도주의 별폭

물품	예조참판	예조참의	동래부사	부산첨사
혁과대부갑(革裹大簿匣)	1비			
수정갓끈[水晶笠緒]	2결			1결
채화유부방분(彩畵有趺方盆)	20매		10매	
첩금소병풍(貼金小屏風)	1쌍			
대화진주(大和眞珠)	2근	2근	1근	
채화팔촌염경(彩畵八寸奩鏡)	1면			
채화문갑(彩畵文匣)	1개			
적동루오관반(赤銅累伍盥盤)	2부	1부		1부
주간연기(朱竿煙器)	30악			
채화옥괘연(彩畵玉掛硯)		1비		
수랍중명완(粹蠟中茗椀)		20개		20개
채화대층갑(彩畵大層匣)		1비		
채화대원분(彩畵大圓盆)		10매		
적동명로(赤銅茗爐)		2위		
동화지(桐花紙)			400편	
주칠대원분(朱漆大圓盆)			10매	
동관연기(銅管煙器)			10기	
채화오촌염경(彩畵五寸奩鏡)				2면
흑칠중층갑(黑漆中層匣)				1비

『증정교린지』 권2 「차왜, 통신사청래차왜」에는 예조참판, 예조참의, 동래부사, 부산첨사에게 보내는 별폭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증정교린지』의 내용은 <표 24>와는 물품과 수량에서 차이를 보인다. 양자를 비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통신사등록』에는 이 차왜에 대한 예조참판, 예조참의, 동래부사, 부산첨사의 회례 품목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도 『증정교린지』와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통신사청래차왜의 진정조목

경인(1710) 7월 21일조에는 통신사청래차왜 평진연(平眞連)이 통신사 파견과 관련하여 진정한 내용이 조목별로 정리되어 있다. 이것이 진정조목(陳情條目)이다. 조목의 항목은 필자가 임의로 붙인 것이다.

<표 25> 통신사청래차왜의 진정조목

	항목	내용
1	제사, 예단 물품	일광산 알묘(謁廟)와 저군(儲君)에 대한 배례(拜禮)는 이번에 이 두 가지 일이 없으나, 제사의 공급 물품과 예단 물건은 없애지 않고 갖추어 장만할 일.
2	통신사 파견 준비	본주에서 통신사를 맞이하고 호송하는 인원은 내년 정월 내에 보내려고 하니, 귀국의 빙사(聘使)는 5월 중순에 부산에서 닻줄을 풀기를 바라며, 혹시라도 지연하면 바닷길에 가고 올적에 풍파가 있을 우려가 있을까 염려되는데, 다만 배는 기일에 앞서 십분 완전하고 견고하게 제조하여야 좋으며, 그 선박의 수효는 대소 6척으로 정하여 한결같이 앞서의 규정대로 할 것.
3	상관[군관]의 폐해	임술년 귀국 사신이 내빙할 때 상관 가운데 간혹 함부로 무례하여 역관의 지휘에 따르지 않는 일이 있었는데, 물어보면 이는 모두 귀족 자제로서 문벌이 평소 높은 자가 우리나라를 관람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잠시 하급 관료로 몸을 굽혔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무릇 역관이 비록 미미한 관직이나 이미 무거운 서명을 받아서 상상관이 되어 우리나라에서 향응하는 규정이 극도로 우대하는데, 이제 상관임에도 지휘에 복종하지 않고 도리어 또 제멋대로 하였으므로,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만히 혹 귀국은 원래 예의의 나라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아래 사람이 위사람을 능멸하는 풍속이 있는지 의심하기 까지 하였다. 또한 이런 인물은 풍속을 알지 못하고 쉽사리 사건을 만들어 내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는가? 이번에는 귀족 자제는 결코 데려오지 말기 바라는 일임.
4	상상관 선발	귀국의 빙사(聘使)를 인견(引見)할 때 말을 전하거나 뜻을 소통하는 데는 오직 상상관만 힘입을 뿐이고, 역관 가운데 사람마다 언어에 능통한 것은 아니니, 만일 하나라도 분에 넘치게 사람을 뽑아 함부로 그 인원수를 채우면 예를 행할 즈음에 해됨이 알지 아니하다. 임술년에 박동지가 상상관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언어를 통역하는데 익숙하고 사정에도 밝아서 진퇴하며 말을 전함에 참으로 볼만하였다. 이번에는 박동지와 같은 사람을 힘써 선발하여 데려오기를 바란다. 대체로 상상관의 상관사(上判事)는 언어에 능통하고 사정에 밝은 것이 중요한데, 만약 그런 사람이 아니면 동무(東武)에 장애가 있을 뿐 아니라 바다와 육지로 오가는 즈음에 그 폐단이 참으로 적지 않으니, 천만 바라건대 십분 정밀하게 선발하여 데려 올 일.

5	역관 수	임술년에 역관이 많지 않아 걸핏하면 장애가 있었으니, 이번에는 군관의 인원수를 줄이고 말을 아는 사람 7-8명을 교체하여 인원수를 보충함으로써 피차간에 편하게 함이 어떠할지.
6	사행원 수	빙사(聘使) 일행의 인원수는 군이 앞서의 규정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익히 알고 지나는 길에서의 물품 공급은 사례를 따라 미리 장만하는데, 만약 한 사람이라도 늘어다면 때가 되어 시끄러울 우려가 있을까 염려되니, 데려오는 인원수는 하는 일의 고하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앞서의 규정대로 하여 미리 조목을 통지할 것.
7	삼사의 관직, 성명	삼사를 차출하여 정한 뒤에 관함과 성명을 속히 관수에게 통보할 일.
8	국서 별폭, 삼사 예단	국서의 별폭은 삼사의 예단 물건과 아울러 한결같이 앞서의 규정대로 하여 정밀하고 자세하게 하도록 할 것.
9	능문인, 능서인, 궁예인	글을 잘하고 글씨를 잘 쓰며 활쏘기 재능에 능한 사람을 정밀하게 택하여 데려 올 일.
10	마상재	마상재를 하는 사람을 데려오는 규정이 있는데, 익히 조련한 말 3필을 힘써 가려서 사례에 비추어 데려 올 일.
11	별폭의 매, 말	별폭의 매와 말은 한결같이 예전 규정대로 미리 선택하여 준비해주기 바람. 임술년에는 말은 비록 다른 일이 없었으니 매는 간혹 죽고 손상되었다. 가만히 생각건대 길이 아득하게 멀고 계절이 더운 철이라 만에 하나라도 병들어 죽는 우려가 있으면 때가 되어 변통하기가 어렵게 될까 두렵다. 이번에는 말과 매를 정수 외에 데려와 부응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나라 풍속에 말의 상을 보는데 선모(旋毛)가 있는 것을 꺼리는데, 이제 말그림을 내어보내어 채택하는데 편하게 하며, 말 색깔은 검은 색이나 혹은 얼룩말이 좋겠다는 일임.

『증정교린지』 권5, 「각년신행례」의 숙종 37년 신묘(1711)조에는 「강정절목」이 수록되어 있다. <표 25>의 진정조목은 「강정절목」과 내용이 대부분 중복된다. 그러나 「진정조목」의 내용이 보다 구체적이다. 양자를 비교,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섯째, 1711년 통신사 응행절목과 금단절목

① 1711년 통신사 응행절목

경인(1710) 7월 22일조에는 이번 통신사의 행차에서 시행해야 할 여러 일들을 임술년(1682, 숙종 8) 사례에 따라 마련하여 후록한다라고 하였다. 이 통신사 행차에서 시행해야 할 일이 1711년 통신사 응행절목(應行節目)이다. 이 절목을 정리하면 <표 26-1>과 같다.

<표 26-1> 1711년(신묘) 통신사 응행절목

1	사신이 출발하는 일정 및 바다를 건너는 날짜는 관상감에 명하여 택일하여 거행하게 함.
2	사신의 반전 등의 물자는 해조에 명하여 미리 마련함.
3	사신 일행에게 하사하는 쌀은 임술년(1682)의 사례대로 마련하여 지급함.
4	사신의 장복(章服)[부사 이상은 모두 당상관 장복]은 상의원에 명하여 마련하여 지급하고, 중사관의 장복은 그 품복(品服)을 만들어 지급하는 일을 호조에 분부함.
5	일행 원역의 의복과 신발 등 물자는 공조와 제용감에 명하여 만들어 지급할 것.
6	사신의 형명기와 독(蠟)은 본도에 명하여 마련하여 지급하고, 상사·부사의 절월(節鉞)은 호조·공조에 명하여 각별히 정밀하게 만들어 보낼 것.
7	맞이할 때의 취라치(吹螺赤)는 본도에 명하여 정하여 보낼 것.
8	사신이 가져가는 인신 1알은 주조한 관방인(關防印)을 갖추어 공조에 명하여 만들어 보내고, 도장집[印家]과 관방인집[關家]과 소가죽 남라개집(南難箇家, 문서통)를 한 바리로 만드는 것도 공조에 명하여 마련하게 함.
9	상선 2척, 하선 2척, 소선 2척의 격군은 모두 본도에 명하여 미리 만들고, 간택하여 호송함.
10	상사의 자제 2원, 군관 6원, 노자 2명, 부사의 자제 2원, 군관 6원, 노자 2명, 중사관의 자제 1원, 노자 1명 및 독축관 1원, 왜통사 당상관 3원, 당하관 7원 , 한통사 2원, 사자관 2원, 의원 2원, 화원 1원, 별파진검군관 2인, 마상재 2인, 악공 2인, 이마와 숙수 각 1인은 각 해당 관청에 명하여 선발하여 데려가게 함.
11	바다를 건널 때 일행을 수검하는 등의 일은 사신이 더욱 엄하게 금단하고, 원역 중에서 만약 함부로 범하는 일이 있으면 조정에 되돌아온 뒤에 일일이 조사하여 계문할 것.
12	정남침(定南針)은 관상감에 명하여 지급함.
13	일행 원역은 각기 노자 1명을 데려 감.
14	사신 이하가 관문과 나루터를 건너갈 때, 보고 검사할 문서는 임술년(1682)의 사례에 의거하여 마련하여 지급함.
15	일본 국왕에게 보내는 서계에는 전례대로 ‘위정이덕(爲政以德)’ 어보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이대로 시행함.

16	일본국 집정, 대마도주, 수도서인 등에게 사신이 되돌아 들어올 때, 차등을 두어 서신을 보내고 선물을 증정하는 것이 전례라 하니, 이대로 시행함.
17	사신이 가져가는 예단으로 일본국왕, 집정 1인, 집사 3인, 근시(近侍) 2인, 봉행 8인 , 대마도주, 수도서인 2인, 수직왜(受職倭) 5인, 장로 1인 등 각 왜인에게 차등 있게 증정하여 주는 물건은, 호조와 본도에 명하여 미리 마련할 것.
18	사신을 들여보낼 때 일본 집정과 도주 이하 수도서 왜인 등에게 본조에서 서신을 보내고 선물을 증정하여 주는 규정이 있는데, 전례대로 보내는 서신을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마련하게 함.
19	사신 일행에게 시행할 잡물은 호조 및 본도에 명하여 임술년(1682)의 사례를 상고 하여 급속히 마련하여 대령하게 함.
20	시급한 일이 있으면 파발마로 분부할 것.
21	미진한 조건은 추가로 마련함.

1711년 통신사의 절차는 임술년(1682) 통신사의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표 16>에서 임술년(1682) 통신사 응행절목을 정리한 바 있다. 양자를 비교해 보면 큰 틀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표 16>은 전체 22조인데 비해, <표 26-1>은 21조이다. <표 16>의 제17조가 <표 26-1>에서는 생략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밑줄로 표기하였다. 제11조, 제17조의 내용도 차이를 보인다.

② 1711년 통신사 금단절목

신묘(1711) 1월 28일조에 보면, 예조에서 단자를 올려 종사관이 가지고 가는 일행의 금단절목(禁斷節目)을 임술년(1682)의 사례대로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금단절목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26-2>와 같다.

<표 26-2> 1711년 통신사 금단절목

1	일행이 한꺼번에 가져가야할 물건은 점검하여 짐바리로 만들어 각기 글자를 적어 표시하고 서압(署押)하며, 또 자호를 붙여서 서압하여 걸어 묶고, 도중에 간간이 불시에 적간하며, 포소 및 대마도와 달리 머무는 곳에 도착하면 별도로 추가 점검하여, 표가 없는 것은 관에서 몰수하며, 범한 사람은 법률대로 죄를 다스림.
2	『대전후속록』에 실려 있는바 왜인에게 본토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건 및 약재와 사라능단, 황백사(黃白絲)나 보물을 몰래 사고파는 자는 모두 법률대로 죄를 다스림.
3	『대전후속록』 내용에 왜인을 무역하는 자와, 왜인이 가져온 대랑피(大狼皮) 및 포소에서 몰래 사고팔아 무역하는 자 및 사정을 아는 통사는 법률대로 죄를 다스림.

4	항통사 및 장사꾼이 왜인과 약속하여 어두운 밤에 매매하거나 혹은 서로 모이는 자는 모두 잠상금물조에 의거하여 논단함.
5	일행의 인원들이 본국에서 숨겨야 할 일 및 국가와 관련된 중대한 일을 누설하는 자는 모두 법률에 의거하여 죄를 다스림.
6	상통사 이하 일행의 하인으로 금제에 걸린 자는 곤장 80대 이하로 직단함.
7	다른 나머지 미진한 조건은 일에 따라 규찰하여 점검하되, 우리나라 경내에서 범한 일은 즉시 장계로 알리고, 바다를 건넌 뒤에 만약 금제를 범하는 자가 있으면 세 사신이 상의하여 그 범한 죄의 경중에 따라 참작하여 다스리되, 범한 죄가 매우 무겁고 기밀에 관계된 자는 수역과 군관 이하를 곤장 효시함.
8	우리나라에서 풍랑에 표류하였다가 되돌아온 사람을 격군에 뒤섞어 넣어 충당하는 것은 극히 편치 못하니 일체 충당하여 넣지 말고, 만약 탄로가 난 자 및 본관 수령은 각별히 추고하여 죄를 다스림.
9	일행이 가져가는 군기는 종사관이 서압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만약 군기를 몰래 매매하는 자가 있으면 아울러 법률에 의거하여 죄를 다스림.
10	본국의 각종 서책 등의 물건을 슬며시 누설하여 사사로이 통한 자와 중국과 관계된 일을 누설하는 자는 아울러 법률대로 죄를 다스림.
11	일행의 원역 이하로서 만약 왜의 여인과 몰래 통하다가 적발된 자는 극률(極律)로 논단함.
12	통신사의 행중에 무릇 잠상의 무리는 적발되는 대로 죄를 단정하는 일을 매번 사행마다 신칙한 바 있으나, 상역(商譯)들이 예사로 여겨서 태연히 법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번에는 한결같이 정사가 진달한대로 만약 중한 죄과를 범한 자가 있으면 적발되는 대로 효시할 것임.

<표 26-2>의 금단절목을 <표 7>의 「통신사종사관재거일행금단절목」과 비교해보면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표 26-2>는 <표 7>보다 2개가 늘어난 12개 항목이다. 제11조와 제12조가 늘어난 것이다. 일본 여인과 잠통하다 현장에서 적발되면 사형에 처한다는 것과, 잠상을 하다 적발되면 효시한다는 사형 조항이 추가된 점이 주목된다.

일곱째, 1711년 통신사행의 격군과 집물의 마련

경인(1710) 10월 12일조에는 통신사가 바다를 건널 때 필요한 격군(格軍) 및 배안에 사용하는 집물(什物)의 구별(區別) 정책이 수록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27>과 같다.

<표 27> 1711년 통신사행 도해 때 필요한 격군과 배 안에 쓸 물품의 마련

	합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호조
격군	302명	262	40		
초둔(草屯)	252번(番)	168	42	42	
초둔 부족분	8번	8			
산마(山麻)	3,775근	3,016	379근8냥	379근8냥	
산마 부족분	1,632근		1,632근		
각항 줄에 들어갈 산마	2,515근		2,515근		
각항 줄에 들어갈 숙마(熟麻)	3,647근	2,065	791	791	
숙마 부족분	798근	798			
새로 마련할 각항 줄에 들어갈 숙마	1,291근	1,291			
숙마선삭(熟麻線索)	2,016발[把]		1,008	1,008	
완풍석(莞風席)	708넛(立)	380	164	164	
완풍석 부족분	70		70		
정철(正鐵)	1,000근(斤)	1,000			
정철 부족분	1,075			1,075	
선장(船帳)에 사용할 홍릉지초(紅綾只綃)	1074척 (60필12척5촌)				60필12척5촌

통신사행에 참가한 인원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격군이다. 격군의 마련은 통신사행에 따라 차이가 있다. <표 27>을 보면 1711년 통신사의 경우 격군은 대부분 경상도에 분정되었다. <표 27>은 통신사 배에 소용되는 초둔, 산마, 숙마, 밧줄, 완풍석, 정철, 홍릉지초 등의 필요한 수량과 분정된 각 도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선장(船帳)에 사용되는 홍릉지초는 호조에, 나머지는 하삼도(下三道)에서 조달하였다.

한편 경인(1710) 11월 4일조에 수록된 전라감사의 이문을 보면, 전라도에 분정된 숙마 791근은 전례대로 함경도에서 분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산마 부족분 1,632근과 각항 줄에 들어갈 산마 2,512근, 완풍석 70넛은 임술년등록을 상고하여, 선혜청에서 전라좌수영, 전라우수영, 함경도에 분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예조의 수결이 있었다. 그리고 신묘(1711) 2월 29일조를 보면, 통신사 격군에게는 1명당 환상미(還上米) 15섬씩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여덟째, 통신사가 가지고 갈 매와 통신사 반전 인삼의 분정

① 통신사가 가지고 갈 매[鷹]의 도별 분정

경인(1710) 10월 22일조를 보면, 신유년(1681)에 경상도에 복정한 매 10연을 평안도에 복정하고, 전라도에 복정한 매 11연, 충청도에 복정한 매 2연, 예비용 매 2연을 황해도에 12연, 함경도에 3연으로 고쳐 분정하도록 하였다. 1711년 통신사 때도 이 전례에 따라 평안도에 10연, 황해도에 12연, 함경도에 3연이 배당되었다.

11월 4일조에 수록된 평안감사의 이문을 보면, 평안도에서는 임술년 사례대로 매가 산출되는 강변과 산군의 각 읍에 분정하고, 매를 데려갈 응수(鷹手)는 매를 분정하지 않은 각 고을에 분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동래까지 데려가도록 하였다. 동래까지 가는 도중의 응수의 음식과 매 먹이는 전례대로 경유하는 각 군현에서 조달하도록 하였다. 황해도에서는 도내 강령(康翎), 웅진(瓮津), 소강진(所江鎭), 오차포(吾叉浦), 장연(長淵), 백령진(白翎津), 은율(殷栗), 풍천(豊川), 안악(安岳), 장연(長連), 신계(新溪), 수안(遂安)의 12개 지역에 1연씩 분정하였다.

② 통신사 반전 인삼의 분정

신묘(1711) 4월 10일조를 보면, 예조에서 “통신사 반전 인삼을 준비하여 예조로 보내라”라는 관문을 강원도에 보냈다. 강원감영에서는 복정된 12근 인삼을 감영에서 모두 모아 보내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럴 경우 고을→감영→예조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폐단이 생기므로, 고을에서 바로 예조로 보내도록 하였다. 인삼은 생삼과 숙삼을 절반씩 마련하도록 하였다. 강원도 각 고을에 분정된 내용은 <표 28>과 같다.

<표 28> 강원도에 할당된 인삼의 지역별 분정

(단위: 근-냥-돈)

지역	강릉	원주	춘천	삼척	양양	평해	철원
수량	1-10-0	1-4-0	1-2-3	0-9-3	0-12-5	0-11-4	0-11-5
지역	이천	간성	울진	경강	안이	홍천	횡성
수량	0-11-5	0-11-3	0-9-1	0-7-8	0-6-8	0-2-3	0-4-0
지역	고성	통천	양구	영월	흡곡	금화	금성
수량	0-4-0	0-3-6	0-3-0	0-2-0	0-1-6	0-7-0	0-2-8
지역	낭천	회양	평창	인제	정선	합계	
수량	0-1-7	0-1-8	0-1-0	0-0-9	0-0-8	3-134-100=12-0-0	
비고: 1근=16냥, 1냥=10돈, 1근=160돈							

<표 28>은 강원도에 한정된 것이지만, 강원도에 복정된 인삼 12근의 고을별 분정 실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아홉째, 1711년 통신사 명단과 예단

① 1711년 통신사 명단

신묘(1711) 5월 5일조, 5월 13일조에는 통신사행의 정사 이하 원역의 직함과 이름이 수록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29-1>과 같다.

<표 29-1> 『통신사등록』에 수록된 1711년 통신사행의 명단

직책	이름	전·현직	이름	전·현직	이름	전·현직
정사	조태억	이조참의				
부사	임수간	홍문관 전한				
종사관	이방언	홍문관 교리				
제술관	이현	전 좌랑				
상상관(당상역관)	이석린	동지	이송년	첨지	김시남	첨지
상판사	홍순명	전 판관	현덕윤	부사용	정창주	전 판관
차상판사	김시량	전 주부	최한진	전 첨정		
압물관사	김현문	전 첨정	박태신	전 직장	김시업	전 참봉
	조득현	전 직장				
양의	기두문	전 직장				
의원	현만규	전 주부	이위	부사용		
사자관	이수장	상호군	이이방	상호군		
화원	박동보	부사과				
정사 군관	이액	첨지	김일영	첨지	이행검	전 군수
	조건	경력	한범석	첨정	류준	주부
	김세진	(전)초관	한윤기	전 참봉		
부사 군관	민제장	전 감찰	정수송	선전관	조빈	도사
	정찬술	선전관	신진소	호군	유정좌	전 별장
	장문한	부사맹(용)	임도승	한량		
종사관 군관	변경화	부사용				
정사 서기	홍순연	판관				
부사 서기	엄한중	전 현감				
종사관 서기	남성중	부사과				
별파진검군관	김두명		엄한우			
마상재	지기택		이두홍			
이마	안영민					
전악	김석겸		김세경			

부사 임수간과 종사관 이방언이 쓴 『동사일기』에는 「신묘통신사 좌목」이 수록되어 있다. 좌목에는 사행원의 직책, 성명, 직함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표 29-1>의 명단은 이 좌목과 대동소이하지만, 양자를 비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후 비변사의 상계에 따라 당상역관에 최상집이 추가되었다(『통신사등록』 신묘(1711) 5월 29일, 5월 30일, 6월 4일, 7월 17일조 참조).

② 1711년 통신사의 예단(선물)

신묘(1711) 5월 11일, 15일조에는 통신사가 가져가는 예단 물목이 기재되어 있다. 두 기록에는 차이가 있다. 『증정교린지』 「권5, 공예단도수(都數)」에도 예단 물목과 수량이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5월 15일조에는 국왕, 왕자, 집정 등에게 주는 「사신 예단」도 수록되어 있다. 『증정교린지』 「권5, 삼사신사예단」에도 사예단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통신사등록』과 『증정교린지』의 내용을 비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신사등록』 5월 11일, 15일자 내용을 종합하여 공예단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29-2>와 같다.

<표 29-2> 1711년 통신사가 가져가는 공예단

	국왕	왕자	집정 (1인)	집사 (3인)	서원경(1인) 근시(1인)	봉행 (8인)	대마도 주	수도서 인(2인)	수직왜 (5인)	장로 (1인)
말과 안장	2필 (부)	2								
호피	15장	10	3	2	1	1	2	1		
표피	20장	15	2	2	1		3			
초피	20장									
인삼	50근	30					5			3
청서피	30장	15	5	3	2					
어피	100장									
대수자	10필									
대단자	10필		3	3						
색대사	20필									
백저포	20필 (12승)		10 (9승)	10 (9승)	5 (9승)	10 (9승)	10 (9승)	5 (9승)	3 (9승)	5 (9승)
생저포	20필 (10승)									

흑마포	30필					5	5			
각색필	50 자루	50								
색지	30권									
진묵	50홀							5	10	
황밀	100근									
청밀	10기									
금선		10필								
대릉		20필								
색사		10필								
황모필			30		20	20			10	20
백면주						10	10필	5	3	5
백목면							20필			
화문석							5장	3	2	
유둔								1부		

선물인 예단의 주종은 호피, 표피, 청서피 등 피물, 비단, 모시, 마포, 목면 등 직물류, 붓, 종이, 먹 등 문방구류, 인삼, 꿀, 말과 안장 등이다. 백저포의 경우 국왕에게는 12승포, 집정 등 나머지 사람에게는 9승포가 지급되었다. 일본 측 자료인 『통항일람(通航一覽)』에도 장군(국왕)에게 보내는 예단이 기록되어 있으나, 예단의 종류와 수량에서 차이를 보인다. 『통신사등록』과 『통항일람』을 비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열제, 일본국왕 호칭과 회답 국서의 범휘(犯諱)와 겹봉투 격식 문제

① 일본국왕 호칭 문제

일본은 통신사가 가져오는 조선국왕의 국서에 장군을 ‘일본국 대군(大君)’이라 칭하게 했고, 장군의 답서에는 ‘대군’을 자칭하지 않고 그냥 ‘일본국 ○○○’라고 썼다. 그런데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는 조선 국왕의 국서나 장군의 답서에 ‘일본국왕’이라고 쓸 것을 주장하였다. ‘대군’이란 호칭이 유교경전에는 천자를 의미하므로 천황의 권위를 손상시킬 수 있고, 조선에서는 국왕의 아들을 가리키는 호칭이므로, 격이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1711년 통신사 때 조선국왕의 국서 서식을 고치는 문제는 신묘(1711) 5월 18일, 5월 29일조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비변사는 동래부사의 장계와 대마도 주의 서계를 근거로 국서의 서식을 고치는 문제를 거론하였다. 아라이 하쿠세키의 주장에 따라 일본측은 조선국왕의 국서에 장군에 대해 ‘대군’이란 호칭 대신 ‘국왕’이란 호칭을 사용하는 문제를 조선측에 요청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 영의정 서종태, 좌의정 김창집, 우의정 조상우, 형조판서 최석항, 좌참찬 이언강, 예조참판 김진규, 병조참판 윤지인, 공조참판 권상유, 좌부승지 박태항 등 조정 대신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기하였다. 이들은 과거에 ‘대군’, ‘국왕’ 등을 사용한 문헌을 통해 전례를 상고하면서, 일본측이 다시 복호(復號)를 주장하는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였다.

숙종은 이 문제 대해, “에도가 장군, 국왕, 대군이라 칭하는데, 그 변개(變改)하는 국절은 모르겠지만, 올해년(1635, 인조 13) 이전에 이미 국왕이라 칭했으니, 오늘날 창안하여 요청한 일은 아니다. 다만 서식을 고치느냐 않느냐를 대차 왜가 나왔을 때 강정(講定)하지 않고, 지금 급한 시점에 임박하여 갑자기 발설하니, 그 습성은 정말 가증스럽다. 이 일을 허락하느냐 않느냐가 국가에 손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매번 그들의 말을 따르다 가는 혹시 따르기 어려운 일에 허약함을 보이게 된다”고 하면서, 통신사가 일본에 들어간 뒤에 다른 염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시 의논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조선측의 국왕 복호 문제에 기본 입장은 1711년 통신사 파견을 정한 지 이미 오래되었고, 또 절목을 강정할 때도 아무 말이 없다가, 국서가 완성되어 통신사의 도해(渡海)가 임박하여, 에도의 명령이라 일컬으며 갑자기 오랜 전례를 바꾸려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신사등록』의 내용은 일본측 주장에 대한 조선측의 입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내용은 『비변사등록』 숙종 37년 5월 20일조에도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통신사등록』과 『비변사등록』의 내용을 비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기묘(1711) 5월 30일자 를 보면, 영중추부사 윤지완은 “국서에 일본국왕으로 일컫다가 일본이 대군으로 고쳤기에 우리나라도 대군으로 썼고, 일본의 모든 일은 대마도가 거간(居間)하여 요청하니, 가하면 허락하고 불가하면 물리치면 되고, 사행 승선이 아직 멀었으니 국서를 고칠 만하면 고치면 된다”라고 주장하였다. 숙종은 윤지완의 의견에 따라 어려워할 필요 없이 국서를 고쳐보내는 것이 옳다고 결정하였다. 기묘(1711) 6월 1일자를 보면, 비변사는 통신사가 가져갈 국서 서식은 ‘대군’을 ‘국왕’으로 고쳐 쓰고, 별도로 금군을 정하여 내려 보내도록 상계하였고, 숙종도 이를 허락하였다. 이로써 조선국왕의 국서에서 일본국왕

호칭을 쓰는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증정교린지』 권5 「국서식(國書式)」에서는 “숙종 37년 신묘(1711)에 통신사가 서울을 떠난 후에 왜사 우삼동(雨森東)이 와서 옛날의 예대로 ‘왕’이라 칭하기를 요청하므로, 조정에서 이를 허락하였다”라고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② 회답국서의 ‘범휘(犯諱)’와 결봉투 격식 문제

1711년 통신사가 조선국왕의 국서를 에도에서 막부장군에게 전달한 것은 1711년 11월 1일이다. 그리고 11월 11일에는 막부장군의 회답국서와 별폭이 통신사에게 전달되었다. 그런데 이 회답국서의 내용 중에는 종종 이름인 ‘역(懌)’자 적혀 있었고, 국서의 결봉투에는 답인이 없었다. 회답국서를 접한 통신사 정사 조태역 등은 이에 대해 격렬하게 항의하였다. 회답국서에 조선국왕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 즉 이른바 ‘범휘(犯諱)’는 통신사의 생사가 걸린 중요한 문제였다. 그러나 일본측은 조선국왕의 국서에도 3대 장군 이에미쓰(家光)의 ‘광(光)’자를 범한 것이 있고, 결봉투의 형식은 일본의 통례이므로, 국서를 고칠 의사가 없다고 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에도에서 발생한 회답국서 ‘범휘’ 문제다.

임진(1712) 1월 4일자를 보면, 지난(신묘, 1711) 12월 30일 영의정 서종태, 판중추부사 이이명 등 비변사 당상이 입시했을 때, 서종태가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여러 신하의 의견을 묻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숙종은 신하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에 이이명, 병조판서 최석항, 형조판서 이언강, 예조판서 윤덕준, 우윤 박권 등이 의견을 개진하였다. 국서의 글자를 고치는 문제는 논쟁 끝에, 조선국왕 국서를 고쳐 보낸 후에 일본장군 회답국서도 고쳐서, 양국의 국서를 통신사가 귀국하는 도중에 교환하고, 이것을 절목으로 하여 규약을 맺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1711년 통신사는 반환된 조선국왕의 국서를 휴대하고, 막부장군의 회답국서 없이 아주 이례적인 상태로 1711년 11월 19일 에도를 출발하여 귀국길에 올랐다. 새로운 양국 국서의 교환은 그후 대마도에서 이루어졌다.

『통신사등록』은 등록이라는 성격 때문에 사료로서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통신사와 관련하여 주고받은 공문서와 서계가 중심이다 보니, 전체 일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둘째, 사행원의 일본 내 활동에 대한 내용이 매우 소략하다. 외교적, 정치적 측면의 성격이 강하고, 문화적 측면의 성격이 약하다. 그러므로 문화교류에 관한 내용은 사행록이나 필담창화집 등 자료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통신사 연구에서 『통신사등록』은 그다지 많이 이용되지 않았다. 통

신사 연구가 주로 문화연구에 치중한 것도 중요한 이유의 하나다. 『증정교린지』, 『춘관지』, 『통문관지』, 『변례집요』 등에 수록된 통신사 관련 내용은 『통신사등록』과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 경우 『통신사등록』이 가지는 일차 자료로서의 가치는 매우 크다. 이번 『통신사등록』의 국역본 간행을 계기로 『통신사등록』이 적극 검토,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해제에는 다음 참고문헌의 연구성과를 그대로 인용한 부분이 있음을 밝혀둔다.

[참고문헌]

- 김건서 저, 하우봉·홍성덕 역, 『국역 증정교린지』, 민족문화추진회, 1998.
- 민덕기, 「근세 일본 외교의 두 얼굴, 효슈와 하쿠세키」 『한일관계 2천년 보이는 역사, 보이지 않는 역사』, 경인문화사, 2006.
- 민덕기, 『조선시대 일본의 대외 교섭』, 경인문화사, 2010.
- 법제처, 『춘관지(상)(하)』, 법제처, 1976.
- 三宅英利 지음, 손승철 옮김, 『근세 한일관계사 연구』, 이론과 실천, 1991.
- 손승철, 『조선시대 한일관계사연구』, 지성의 샘, 1994.
- 손승철, 「조선시대 한일관계사료의 소개」 『한일관계사연구』 18, 한일관계사학회, 2003.
- 손승철·김강일, 「조선시대 한일관계사료해제」 『중·근세 동아시아 해역세계와 한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논집편찬위원회 편, 경인문화사, 2010.
- 신로사, 「1643년 통신사행과 조정의 일본 인식에 관한 소고」 『민족문화』 41집, 민족문화 추진회, 2013.
- 양홍숙, 「조선후기 대일 접위관의 파견과 역할」 『역사와 세계』 24, 효원사학회, 2000.
- 윤유숙, 「17세기 후반~18세기 초두 왜관통제와 한일교섭」 『통신사·왜관과 한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편, 경인문화사, 2005.
- 이훈, 「전근대 한일교류사 자료로서의 대마도종가문서」 『역사와 현실』 28, 한국역사연구회, 1998.
- 정연식 외, 「『통신사등록』 해제」 『통신사등록 1』(영인본), 규장각자료총서 금호 시리즈 대외관계편, 서울대 도서관, 1991.
- 정장식, 「1655년 통신사행과 일본연구」 『일본학보』 44권 1호, 한국일본학회, 2000.

- 정장식, 「계미(1643년)통신사행과 일본인식」 『일본문화학보』 10호, 한국일본문화학회, 2001.
- 정장식, 『통신사를 따라 일본 에도시대를 가다』, 고즈윈, 2005.
- 泉澄一, 「대마도 종가문서의 분석 연구-국사편찬위원회 소장의 기록류(6,592점)를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7집, 국사편찬위원회, 1989.
- 최종일, 「조선통신사의 일광산치제 연구」, 강원대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 하우봉, 「새로 발견된 일본사행록들」 『역사학보』 112집, 역사학회, 1986.
- 하우봉, 「『통신사등록』의 사료적 성격」 『한국문화』 12,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1.
- 한문중, 「조선후기 일본에 관한 저술의 조사 연구-대일관계 등록류를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86집, 국사편찬위원회, 1999.
- 허경진·박혜민, 「조선통신사 필담창화집의 일본 문화」 『한국어문학연구』 54, 한국어문학 연구학회, 2010.
- 허지은, 「17세기 조선의 왜관통제책과 조일관계-계해약조(1683)의 체결과정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15집, 한일관계사학회, 2001.
- 홍성덕, 『17세기 조·일 외교사행 연구』, 전북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7.
- 홍성덕, 「조선후기 통신사 수행 醫員에 대하여」 『한일관계사연구』 32집, 한일관계사학회, 2009.
- 高橋昌彦, 「朝鮮通信使唱和集目錄稿」, 『グローバル時代の朝鮮通信使研究』, 松原孝俊 편, 花書院, 2010.
- 箕輪吉次, 「壬戌通信使講定交渉節次と追加的内容-草梁と對馬において-」 『일본학연구』 37집, 단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2.
- 吉川弘文館編輯部 편, 『日本史必携』, 吉川弘文館, 2006.
- 大瀧晴子, 「日光と朝鮮通信使」 『江戸時代の朝鮮通信使』, 映像文化協會 편, 毎日新聞社, 1979.
- 尹裕淑, 「近世癸亥約條の運用實態について-潛商・關出事例を中心に-」 『조선학보』 164집, 조선학회, 1997.
- 田代和生, 『江戸時代朝鮮藥材調査の研究』, 慶應義塾大學出版會, 1999.

『국역 통신사등록』(Ⅲ)

國譯 鄭 景 柱
 俞 英 玉
監修 李 源 鈞

통신사등록 제5책

기축(1709) 2월 18일

一. 동래부사 권이진(權以鎭)¹⁾이 2월 초10일에 성첩한 장계. 이달 초8일 해시(亥時) 쯤에 황령산 봉군 허완일(許完日)과 간비오 봉군 조대천(趙大天) 등이 진고한 내용에, “조선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작은 배 1척이 등불을 달고 물마루로 나온다”고 진고하였음. 뒤따라 도부한 부산첨사 윤이경(尹以經)의 치통 내용에 “왜인의 작은 배 1척이 등불을 달고 나온다는 석성(石城) 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초탐하기 위하여 개운포 만호 조윤벽(趙允璧)을 정하여 보내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초9일 오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어제 나왔던 왜인의 작은 배 1척을 영술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초탐장 조윤벽의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김도남(金圖南)²⁾과 별차 김현문(金顯門)³⁾ 등에게 명하여 문정한 뒤의 수본 내용에, ‘동 왜선이 밤이 깊어 도착 정박하였기에 문정하지 못하다가, 오늘 아침 왜관에 가서 문정하였더니, 비선 1척에 두왜 1인과 격왜 5명 및 교대차 나온 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노인을 가졌는데, 올해 정월 초10일에 관백(關白)이 갑자기 서거하였다는 부음을 전통(傳通)하는 일로 나왔다고 하기로, 가지고 있는 노인을 받아 올려 보낸다’고 수본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동 노인 1통을 보내는 일로 치통한다”고 하였음. 위 항목의 비선의 노인 1통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오며,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기축(1709) 6월 초3일

一. 동래부사 권이진이 5월 22일에 성첩한 장계. 이달 21일 술시 쯤에 황령산 봉군 방자원(方自元)과 간비오 봉군 김연봉(金連奉) 등이 진고한 내용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등불을 달고 물마루로 나온

1) 권이진(權以鎭, 1668-1734); 숙종 갑술(甲戌, 1694)에 문과에 급제하여 기축(己丑, 1709)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였으며, 관직이 호조판서에 이르렀다.

2) 김도남(金圖南, 1659-?): 우봉 김씨로 자는 중우(仲羽)이다. 숙종 4년(1678) 증광시의 역과에 급제하여 왜학(倭學)으로 종사하였다.

3) 김현문(金顯門, 1675-?): 우봉 김씨로 자는 양보(揚甫)이다. 숙종 28년(1792) 식년시의 역과에 왜학으로 합격하여 품계가 가선대부에 이르렀다.

다”고 진고하였음. 추후에 도부한 부산첨사 윤이경의 치통 내용에, “왜인의 작은 배 1척이 등불을 매달고 나온다는 석성 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초탐하기 위하여 개운포 만호 조운벽을 정하여 보내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22일 축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나왔던 왜인의 작은 배 1척을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초탐장 조운벽의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김도남과 별차 홍순명(洪舜明)⁴⁾ 등에게 명하여 문정(問情)한 수본 내용에, ‘왜관에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비선 1척에는 두왜 1인과 격왜 6명 등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는데, 관백이 올해 정월 초10일에 죽어서 부고를 알리는 대차왜(大差倭)가 오래지 않아 나올 것이기로 먼저 통지문을 가져 왔다고 하였으며, 관수왜의 말이 「관백이 죽어서 고부대차왜(告訃大差倭)가 오는 그름 사이에 마땅히 나올 것이니, 경접위관 및 차비역관으로 당상관과 당하관 각 1원을 전례대로 미리 차출하였다가 동 차왜가 나오는 즉시 내려 보내어 접대해 달라.」 고 이야기하기로, 가지고 있는 노인 1통을 받아 올려보낸다’는 수본이었음. 이에 의거하여 동 노인을 보내는 일로 치통하였는데, 위 항목의 비선 노인 1통을 감봉하여 예조로 올려 보냄. 전례를 가져다 살펴보니 경신년(1680)에 관백이 죽어서 고부차왜가 나왔을 때 경접위관을 보내어 접대한 전례가 이미 있거니와, 이제 이번 고부차왜를 접대하는 접위관 및 차비역관을 미리 차출할지 여부는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실 일임.

이에 의거하여 비변사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권이진의 장계를 보면, 비선 1척이 먼저 보낸 통지문을 가지고 나왔고, 관수왜의 말에 관백의 고부대차왜가 6월 그름 사이에 마땅히 나올 것이라 하였는데, 이제 이번 차왜의 접위관 및 차비역관을 차출하는 여부를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라고 하였는바, 관백의 고부차왜는 경접위관을 차출하여 보내어 접대하는 것은 이미 전례가 있으니, 접위관을 해조에 명하여 차출하게 하며, 차비역관 2원 또한 해당 사역원에 명하여 차출하여 차왜가 나온 뒤에 내려 보내도록 하라 하고, 예단 등의 일도 또한 해조에 명하여 미리 전례를 대조하여 마련하여 거행하게 함이 어떠할지? 강희 48년(1709) 6월 초3일 우부승지 신 홍중하(洪重夏)⁵⁾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4) 홍순명(洪舜明, 1677-?): 남양 홍씨로 자는 수경(水鏡)이다. 숙종 31년(1705) 식년시의 역과에 왜학으로 합격하여 품계가 통정대부에 이르렀다.

5) 홍중하(洪重夏, 1658-1716); 숙종 갑자(甲子, 1684)에 문과에 급제하고, 갑술(甲戌, 1694)에 부교리(副校理)의 신분으로 접위관(接委官)이 되어 부산에 와서 일본인이 말하는 죽도(竹島)가 우리나라 울릉도임을 밝혀 왜인의 울릉도 내왕을 금하게 하였다. 전라도관찰사를 거쳐 강원도 관찰사로 임지에서 죽었다.

기축(1709) 6월 30일

동래부사 권이진이 6월 23일에 성첩한 장계임. 방금 도부한 부산첨사 윤이경의 치통 내용임. 이달 19일에 나왔던 비선 1척에 문정한 연유는 이미 치통하였거니와, 방금 접한 훈도 김도남과 별차 홍순명 등의 수본 내용에, “이제 이번 비선 편에 사서(私書)가 나와서 이야기할 일이 있다고 하였으나, 밤이 깊었기에 다음날을 기다려 편안하게 이야기 하겠다고 하였는데, 관수왜의 말에 ‘이제 이번 사서 가운데 도주가 에도[江戸]에 들어갔는데, 5월 29일 새 관백(關白)이 도주에게 분부하기를 「속히 본도로 나가서 조선에 통보할 일이 있다」 고 분부하였기로, 같은 날 도주가 에도에서 급히 비선을 대마도로 보내어 봉행(奉行) 등에게 통지하기를 「오늘 관백의 분부 내용에 조선에 통고할 일이 있으니 속히 본주(本州)로 나가라고 운운하였으므로, 내일 마땅히 하직할 계획이고, 조선에 통고하는 일은 하직할 때 상세히 알아보고 갈 수 있겠다」 고 하였기로, 도중에서 또 비선을 보내어 통지하였거니와, 도주가 나오는 것이 이달 내에 있을 것이니, 오면 상세히 알 수 있을 것인데, 이제 이번에 관백이 도주에게 분부하는 일이 필시 통신사를 청하여 오는 한 가지 조목일 것이다’라고 운운하였기에, 연유를 수본으로 함”이라고 한 수본이었음. 이에 의거하여 치통하는 일이라고 한 치통이었음.

이달 22일 신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임. 이달 초10일 나왔던 당년 조 1특송사의 수목선에 격왜 20명 및 무자년(1708) 4월 초9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4인, 동년 7월 초9일에 나왔던 도도금도왜 1인 등이 함께 땀으며, 이달 17일 규정 외로 나왔던 병술조 제1선 송사선에 격왜 40명 등이 함께 타고, 도합 2척이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당일 진시에 발선하여 돌아들어갔음. 정해년(1707) 11월 초8일 나왔던 역부왜(役夫倭) 1명이 당일 병으로 죽었기로, 저들 왜관 안에서 나와 왜관 뒷산에 묻었다는 역관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연유를 아울러 치통하는 일이라는 치통이 있었음.

기축(1709) 7월 27일

동래부사 권이진이 7월 18일 성첩한 장계. 우도로 표류한 왜선 및 다대포로 표류한 왜선 등은, 그 배가 관소로 돌아와 정박한 뒤에 다시 문정하여 장계로 알리겠다는 연유를 방금 이미 치계하였거니와, 이달 17일 신시에 도부한 다대

포침사 유정익(柳挺翼)의 치통 내용에, “이제 이번 우도로 표류한 왜선 3척은 가덕진에서 호송장으로 제포만호 방이직(方以直)을 정하여 보내 영솔하여 와서 본진에 교부하거늘, 본진 앞바다로 표류하여 정박한 왜선 3척 및 금도왜의 작은 배 1척과 함께 그대로 수호장 안경발(安敬發)에게 명하여 호송하게 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일”로 치통하였음.

18일 인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윤이경의 치통 내용에, “우도로 표류한 왜선 3척 및 다대포로 표류한 왜선 3척과 금도왜의 작은 배 1척을 함께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호송장 안경발의 치보에 의거하여, 다시 훈도 김도남과 가별차 박태신(朴泰信)⁶⁾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한 뒤의 수본 내용에, ‘왜관에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으며, 「제1척은 관백의 죽음을 알리는 대차왜(大差倭)의 배에 정관 다이라 마사찌[平眞致]와 봉진압물 1인, 시봉 1인, 반종 16명, 격왜 70명 등이 예조참관과 참의에게 보내는 서계 및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를 가졌으며, 제2척은 동 차왜의 수목선으로 도선주 후지 세이쇼쿠[藤政則], 격왜 20명 등이 함께 타고 각기 노인을 가졌으며, 제3척은 동 차왜의 견선(撾船:견인선)으로 격왜 20명, 제4척은 동 차왜의 각선(脚船)으로 격왜 20명이 함께 타고 각기 노인을 가졌으며, 제5척은 병술조 2 특송사 1호가 재차 건너온 배로서 격왜 40명, 제6척은 동 특송사 2호가 재차 건너온 배로서 격왜 30명 등이 함께 타고 각기 노인을 가지고 나왔다고 운운」 하였음. 위 항목의 견선(撾船)과 각선(脚船) 및 병술조 2특송사의 1·2호가 재차 건너온 배 등은 모두 격식 외이기로 노인을 받지 않고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렀으며, 반종 14명만 접대를 허락하는 일은 동 차왜 및 관수왜에게 이치에 의거하여 책망하여 타일러 말하기를 「경신년(1680)에 예전 관백이 죽어 부음을 알리는 대차왜가 나왔을 적에, 처음에는 말하기를 부음을 알리면서 경사를 알리는 일을 겸하였다고 하기로 반종을 16명으로 조정 한 뒤에, 경사를 알리는 차왜가 또 나온다고 운운하였으므로 반종 2명을 줄이고 14명으로 접대하였는바, 이번에도 부음을 알리고 경사를 알리는 일을 겸하여 나왔다면 16명의 반종이 그래도 혹 가능할 수 있겠으나 부음을 알리는 일만으로 나왔다면 반종의 수가 전례와 어긋남이 있다」 고 하였더니, 동 왜인 등이 답하여 말하기를, 「이 일에는 곡절이 없지 아니하나, 오늘은 밤이 깊어 다 토로할 수 없고, 내일은 마땅히 설파할 길이 있을 것이다」 하였기로, 짐짓 파하고 돌아왔으며, 차왜가 가지고 있는 서계 등은 다례하

6) 박태신(朴泰信, 1679-?): 밀양 박씨로 자는 신재(信哉)이다. 숙종 25년(1699) 식년시의 역과에 왜학으로 합격하여 품계가 가선대부에 이르렀다.

는 날 전례대로 바칠 계획이기로 등본 및 수목선의 노인 1통을 올려보냄'이라고 수본하였는데, 동 서계 등본을 받아 올려 보내거니와, 노인의 서면에 '각도 각관의 방어소'라 적어 넣었기에 전례에 의거하여 물리치고 받지 아니하였다는 연유를 아울러 치통 하는 일"이라고 치통 하였음.

위 항목의 규정 이외로 나온 왜선은 되도록 속히 되돌려 보내라는 일 및 격식이 어긋난 노인을 고쳐 적어 바치라는 뜻으로 다시 역관들에게 명하여 관수 왜에게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였으며, 고부차왜가 가져온 서계의 등본 1통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냄. 경신년(1680)의 등록을 가져다 살펴보니, 관백이 죽어 부음을 알리는 차왜가 나왔을 때, 경사를 알리는 것을 검하여 행한다고 하기로 반종 16명을 조정에서 특별히 접대할 것을 허락하였다가, 또 경사를 알리는 차왜가 나온다고 운운하였으므로, 2명을 줄여 14명을 접대하였으며, 격왜도 60명의 접대를 허락하였기로, 이번에도 경신년의 사례대로 인원수를 조정한다는 뜻으로 다시 역관들에게 명하여 타일러 줄여서 정한 뒤에 추가로 계문(啓聞)할 계획이거니와, 차왜가 이미 벌써 나왔으니 머물러 대기함에는 폐단이 있으니, 접위관을 해조에 명하여 급속히 재촉하여 내려 보내달라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권이진의 장계를 보니, 관백이 죽어 부음을 알리는 차왜가 이미 벌써 나왔으니 머물러 대기하는 데는 폐단이 있으니 접위관을 해조에 명하여 재촉하여 내려 보내라고 하였는바, 접위관은 벌써 이미 차출하였으니 수일 내로 재촉하여 출발하게 하되, 차왜 이하에게 증정하여 줄 물건 및 접대 등의 일은 경신년(1680)의 사례대로 거행하라는 뜻으로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48년(1709) 7월 27일 우승지 신 홍중하(洪重夏)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一. 관백의 부음을 알리는 차왜 다이라 마사찌[平眞致]가 가져온 서계 등본.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拾遺) 다이라 요시가다[平義方] 봉서(奉書).

조선국 예조참판 대인 합하(閣下).

이에 알리는 것은, 본방(本邦)의 변고로 귀대군(貴大君)께서 뜻하지 않게 초봄 10일에 문득 돌아가셨기에, 신민(臣民)이 부여잡고 소리치며 말할 바를 모릅니다. 이에 정관 다이라 마사찌[平眞致]와 도선주 후지 세이소쿠[藤政則], 봉진압물 등을 보내어 이 뜻을 전달합니다. 별폭의 보잘 것 없는 물품으로 성신(誠信)을 표하오니, 아무튼 살펴주시기 바라오며, 삼가 이만 퍼지 못합니다. 보영(寶永) 6년(1709) 기축 2월 일.

별폭: 채화괘연(彩畵掛硯) 1비(備), 대화진주(大和眞珠) 5근, 첩금소병풍(貼

金小屏風) 1쌍(雙). 수랍중명완(粹鑲中茗盥) 20개. 적동루오관반(赤銅累五盥盤) 1부. 정(整).

一.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拾遺) 다이라 요시가다[平義方] 봉서(奉書).
조선국 예조참의 대인 함하.

이에 알리는 것은 본방이 상서롭지 못하여 귀대군(貴大君)께서 갑자기 돌아가시어 온 나라의 근심이 얼마나 지극하겠습니까? 이에 정관 다이라 마사찌[平眞致]와 도선주 후지 세이소쿠[藤政則]와 봉진(封進) 등을 보내어 슬픔의 부고를 발송하며, 보잘것없는 물품으로 정성을 붙이오니 살피주시기 바랄 뿐입니다. 삼가 이만 퍼지 못합니다. 보영(寶永) 6년(1709) 기축 2월 일.

별폭: 채화의형(彩畵衣桁: 채색 그림을 그린 옷걸이) 1각(脚). 채화일척염경(彩畵一尺奩鏡: 채색 그림을 넣은 화장 거울) 1면(面). 대화진주(大和眞珠) 1근(斤). 문지(紋紙: 문양을 넣은 종이) 500편(片). 적동루삼관반(赤銅累三盥盤) 1부(部). 정(整).

一.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拾遺) 다이라 요시가다[平義方] 계서(啓書).
조선국 동래 부산 양(兩) 영공(令公).

뜻밖에도 본방이 갑자기 대상(大喪)을 당하여, 이에 다이라 마사찌[平眞致]와 도선주 후지 세이소쿠[藤政則]와 봉진(封進) 등을 차출하여 남궁(南宮; 예조)에 알리오며, 감히 누누이 진달하지 못하오니 청컨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벼운 물품이 부끄러우나 아무튼 바다와 같이 포용해 주시기를. 퍼지 못합니다. 보영(寶永) 6년(1709) 기축 2월 일.

동래부사공 별폭: 대화진주(大和眞珠) 1근(斤). 문지(紋紙: 문양을 넣은 종이) 200편(片). 황칠괘연(黃漆掛硯) 1비(備). 정(整).

부산영공 별폭: 수정립서(水晶笠緒; 수정갓끈) 1결(結). 흑칠화전갑(黑漆華箋匣) 2개. 황칠괘연(黃漆掛硯) 1비(備). 정(整).

이 일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啓目)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전에 관백(關白)의 부고를 알려온 차왜 다이라 마사찌[平眞致]가 가져온 서계의 회답 및 동래 부산에서의 답장 초고를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지어내게 하였는데, 별폭의 회례(回禮) 물건을 전례대로 마련하여 계목에 후록(後錄)하였으니, 이대로 마련하여 내려보내는 일로 해조 및 본도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후록(後錄).

참관의 회례(回禮): 인삼 2근, 범가죽[虎皮] 1장, 표범가죽저[豹皮] 1장, 흰 명주[白綿紬] 10필, 흰 모시베[白苧布] 10필, 검은 삼베[黑麻布] 7필, 흰 무명[白木綿] 20필, 황모필(黃毛筆) 30자루[柄], 이상 해조에서 마련함. 화석(花席) 5장, 녁장 붙인 유둔(油氈) 3부(部), 참먹[眞墨] 30홀(笏), 이상 본도에서 제급(題給).

참의의 회례: 인삼 2근, 범가죽[虎皮] 1장, 표범 가죽[豹皮] 1장, 흰 명주[白綿紬] 7필, 흰 모시베[白苧布] 7필, 검은 삼베[黑麻布] 5필, 흰 무명[白木綿] 20필, 황모필 30자루, 이상 해조에서 마련함. 화석 5장, 녁장 붙인 유둔 1부, 참먹 30홀, 이상 본도에서 제급함.

동래 부산 두 곳의 회례, 각각: 흰 명주 5필, 흰 모시베 5필, 검은 삼베 3필, 흰 무명 10필, 황모필 20자루, 이상은 해조에서 마련함. 화석 3장, 녁장 붙인 유둔 1부, 참먹 20홀, 이상 본도에서 제급함.

강희(康熙) 48년(1709) 7월 27일 우승지 신 홍중하(洪重夏)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一. 예조단자(禮曹單子). 이제 이번 관백(關白)의 죽음을 알리는 차왜(差倭) 다이라 마사찌[平眞致] 등의 하선연(下船宴)과 상선연(上船宴)과 왜관에 머물 때의 별연(別宴) 도합 세 차례의 잔치에 증정하여 줄 예단 및 경접위관(京接慰官)이 가져갈 예단 등을 전례대로 마련하였으니, 급속히 마련하여 내려 보내는 일로 해조 및 본도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차왜에게 베푸는 세 차례의 잔치에 각 사람에게: 인삼 1근, 흰 명주 5필, 흰 모시베 5필, 검은 삼베 3필, 흰 무명 5필, 황모필 20자루, 이상은 해조에서 마련함. 화석(花席) 3장, 녁장 붙인 유둔(油氈) 2부, 참먹 20홀, 이상은 본도에서 지급.

도선주 1인에게 세 차례의 잔치에 각각: 인삼 1근, 흰 명주 3필, 흰 모시베 3필, 검은 삼베 3필, 흰 무명 4필, 황모필 20자루, 이상은 해조에서 마련. 화석 2장, 녁장 붙인 유둔 2부, 참먹 20홀, 이상은 본도에서 지급함.

압물(押物) 1인, 시봉(侍奉) 1인에게 각각 세 차례의 잔치에 각각: 흰 명주 2필, 흰 모시베 2필, 흰 무명 3필, 이상은 해조에서 마련함.

반종 14명에게 각 세 차례의 잔치에 각각: 흰 명주 1필, 흰 모시베 1필, 흰 무명 2필, 이상은 해조에서 마련함.

접위관이 가져갈 예단: 인삼 3근 12냥, 표범가죽 3장, 흰 명주 10필, 흰 모시베 10필, 검은 삼베 7필, 흰 무명 20필, 황모필 40자루, 이상은 해조에서

마련함. 화석 5장, 낙장 불인 유둔 5부, 참먹 40홀. 이상은 본도에서 지급.

강희 48년(1709) 7월 27일 입계하여 입계한 대로 시행하라 하셨음.

기축(1709) 8월 초2일

동래부사 권이진(權以鎭)이 7월 23일 성첩한 장계. 관백의 부고를 가져온 차왜가 데려온 반중 2명과 격왜 10명은 경신년(1680)의 사례에 의거하여 기어코 줄여 정한 뒤에 추가로 장계하여 알릴 계획이라는 연유는 이미 치계하였는데, 방금 바친 훈도 김도남(金圖南)과 별차 박태신(朴泰信) 등의 수본 내용에, “대차왜의 반중 2명과 격왜 10명의 수를 줄이는 일로 다시 타일렀더니, 동 왜인 등이 답하기를 ‘차왜라는 호칭을 하는 자는 이루 해야될 수 없지만 각기 품계의 고하와 업무의 경중이 있는데, 어찌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억지로 줄이는가?’ 하면서 자못 언짢은 생각이 있거늘, 소인 등이 답하기를 ‘경신년(1680) 고부차왜는 곧 도중(島中)의 일등(一等) 봉행(奉行)으로 구 도주의 생결과 새 도주의 사촌이라, 그 직급의 높음이 공에 비하여 더함이 있지 모자람이 없는지라, 그 때 반중이 14명, 격왜가 60명이었다. 이제 일반 차왜인데 이전보다 추종(騶從)의 인원수를 더하려고 하는 것은 왜냐? 공 등은 비록 천마디 만 마디 말을 하더라도 필시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경신년(1680)의 고부(告訃)는 경사를 알리는 것과 절로 등급의 구별이 있었는데, 이제 공이 반드시 고경차왜와 동등하게 하고난 뒤에 그만두려고 한다면, 고경차왜가 나오면 또 장차 이전에 비하여 인원수를 더할 것이니, 인원수를 더하는 폐단은 장차 한도가 없을 것이다. 비록 10년 동안 버티며 다투더라도 결단코 허락해 줄 리가 없다. 차라리 사리대로 따르는 게 낫겠다.’고 반복하여 타일렀더니, 동 왜인 등이 머리를 떨어뜨리고 한참 있다가 그제서야 말하기를 ‘판사 등이 하는 말이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럽고 불안하게 함이 있으니, 많은 말은 필요 없이 한결같이 경신년(1680)의 관백 고부차왜 사례대로 반중은 14명, 격왜 60명으로 인원수를 정하여 시행하여 달라’고 운운하였기로, 연유를 수본으로 하는 일”이라고 수본하였음.

위 항목의 고부차왜가 데려온 반중 2명은 다시 역관에게 명하여 이미 타일러 인원수를 줄여 정하게 하였는데, 잔치에 증정할 예단 잡물을 해조에 명하여 수량을 줄여 마련하여 내려 보내라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권이진의 장계를 보면, 관백의 고부차왜가 데려온 인원은 한결같이 경신년

(1680) 고부차왜의 사례대로 반중 14명, 격왜 60명으로 인원수를 정하여 시행하는 일로 이미 타일러 인원수를 줄여 정하였으니, 연례에 증정할 예단잡물은 해조에 명하여 수량을 줄여 마련하여 내려 보내 달라 하였는바, 당초 본부의 장계로 말미암아 반중을 이미 14명으로 마련하라고 계하하여 분부하였으니, 이렇게 회이(回移)함이 어떠할지? 강희 48년(1709) 8월 초2일 동부승지 신오명준(吳命峻)⁷⁾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험함.

기축(1709) 9월 초1일

동래부사 권이진이 8월 13일에 성첩한 장계. 이달 11일 유시 쯤에 조선 배 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작은 배 한 척이 물마루에서 나온다는 진고(鎭告)가 있었음. 추가로 도부한 부산첨사 윤이경(尹以經)의 치통 내용에, ‘작은 배 한 척이 나온다’는 석성(石城) 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초탐하기 위하여 두모포 만호 양시준(梁時俊)을 정하여 보냈다는 일로 치통하였음. 같은 날 해시에 성첩하고 12일 자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임. 나왔던 왜인의 작은 배 한 척을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초탐장 양시준의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김도남과 가별차 박태신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한 후의 수본 내용임, “관소에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비선 1척에 두왜 1인, 격왜 6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을 가졌으며, 관수왜의 말이 ‘이제 도중에서 온 사서(私書)를 보니 새 관백이 승습(承襲)한 경사를 알리는 대차왜가 이달 18일에 장차 배를 타려고 바람을 기다리고 있기에, 먼저 알리려고 나왔는데, 내일 아침 서로 마주하여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였기로, 가지고 있는 노인 1통을 받아 보내는 일이라는 수본이었음. 이에 의거하여 동 노인을 이전대로 보내는 일로 치통한다”고 하였음. 같은 날 유시에 도부한 훈도 김도남과 가별차 박태신 등의 수본 내용임. “어제 나왔던 비선에 문정한 연유는 방금 이미 부산진에 수본을 올렸거니와, 관수왜가 내일 아침 서로 마주한 뒤에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였기에, 오늘 아침 가서 만나보았더니, 동 왜인이 ‘어제 나온 비선 편에 사서를 받아보니, 새 관백의 승습한 경사를 알리는 대차왜가 오래지 않아 나온다고 하였으니 접위관과 차비역관을 당상관과 당하관으로 미리 차출하였다가, 차왜가 나오는 즉시 내려오게 해 달라’고 이야기하였으며, 또 ‘구 관백이 조위(弔慰)에 대해서도 전례대로 진작 거행하지 않아서는 불가하니, 조위를 위한 도해역관을 당상관과 당하관으로 또한 차출하였다가 그 호행

7) 오명준(吳命峻, 1662-?): 해주 오씨로 자는 보경(保卿)이다. 숙종 20년(1694)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관직에 예조판서에 이르렀다.

차왜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올해 안으로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봉행 등의 사서가 저에게 내도하였으므로 이렇게 전하여 고한다'고 하였기로, 연유를 수본하였다"는 일로 치통 및 수본하였음. 위 항목의 비선의 노인 1통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냄. 관수왜는 새 관백의 승습(承襲) 경사를 알리는 대차왜가 오래지 않아 나올 것인데, 경접위관 및 차비 당상 당하 역관 등을 전례대로 미리 차출하여 차왜가 나오는 즉시 내려와 접대하게 해 달라고 하였는바, 관백의 승습 경사를 알리는 차왜의 접대는 이미 전례가 있으니, 경신년(1680) 사례대로 경접위관 및 차비역관 등을 해조에 명하여 미리 차출하게 하시며, 구 관백의 조위 도해역관 당상 당하관 역시 미리 차출하여 호행차왜가 나오기를 기다려 즉시 내려오게 해 달라고 하였는바, 전례를 가져다 상고하니 경신년(1680)분 구 관백이 죽은 뒤에 도주가 대마도로 돌아와서 고지차왜를 내보낸 뒤에 비로소 조위역관과 문위역관을 청하였거늘, 이번에는 대마도로 돌아온 것을 알리기 전에 대범하게 조위역관의 도해를 일컫는 것은 매우 극히 범범하기로, 조위와 문위를 겸하여 시행하는 한 조목에 대하여 다시 역관들에게 명하여 관수왜에게 묻도록 하여 추가로 장계하여 알릴 계획이거니와, 조위나 문위나 간에 역관을 차출하여 보내야 마땅할 듯하니, 도해역관으로 당상 당하관을 전례대로 해당 사역원에 명하여 미리 차출하여 달라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권이진의 장계를 보면 관수왜가 새 관백의 승습의 경사를 알리는 대차왜가 오래지 않아 나오는데, 경접위관 및 차비 당상 당하 역관 등을 전례대로 차출하여 차왜가 나오는 즉시 내려와 접대하게 해 달라고 하였으며, 구 관백의 조위를 위한 도해역관 당상 당하관 또한 미리 차출하여 호행차왜가 나오기를 기다려 즉시 내려와 달라고 하였는데, 경신년(1680) 사례에 의거하여 경접위관 및 차비역관 등을 해조와 해당 사역원에 명하여 차출하게 하며, 조위든 문위이든 간에 도해역관을 차출하여 보내야 마땅할 듯하니, 또한 전례대로 미리 차출하여 달라고 하였는바, 관백의 승습 경사를 고하는 차왜에게 경관을 보내어 접대하는 것과 조위역관을 들여보내는 데는 이미 시행한 전례가 있지만, 일이 변방의 정세와 관계되니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함이 어떠할지? 강희 48년(1709) 8월 20일 동부승지 신 오명준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한 일임.

이에 의거하여 비변사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동래부사 권이진의 장계로 말미암아 해조에서 복계(覆啓)하여, '관백의 승습 경사를 알리는 차왜에게는 경신년(1680)의 사례대로 경접위관 및 차비역관 등을 미리 차출하고, 조위 및 문위 도해역관 역시 미리 차출하는 일로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도록' 청하여, 이미 윤하하였는데, 이번에는 도주가 대마도로 돌아오기 전에 조위라고 대범하게 칭한 것은 전례에 어긋남이 있겠는데, 그 사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듯하고, 고경차왜에게 경관으로 보내어 접대하는 것과 조위역관을 들여보내는 것은 모두 이미 시행한 전례가 있으니, 아울러 전조(銓曹;吏曹)와 해당 사역원에 명하여 차출하게 함이 어떠할지? 강희 48년(1709) 9월 초1일 좌부승지 신 허윤(許琿)⁸⁾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기축(1709) 9월 초6일

접위관 병조정랑 이세근(李世瑾)⁹⁾이 성첩한 장계. 신은 이달 12일 사조(辭朝)¹⁰⁾하고 28일 오시 쯤에 동래부에 도착하였거니와, 관백의 고부차왜 다이라 마사찌[平眞致]의 다례는 날짜를 정하여 배풀어 행하고 추후에 장계로 알릴 계획이며, 연유를 먼저 치계하는 일임.

기축(1709) 9월 초10일

예조 단자. 사역원에서 바친 첩정(牒呈) 내용임. 이제 이번 관백의 조위 당상역관으로 행부사용(行副司勇) 변정옥(卞廷郁)¹¹⁾, 당하역관으로 전봉사(前奉事) 정만익(鄭晩益)¹²⁾을 차정(差定)한다 하였는데, 첩보한 대로 출발시켜 보내라는 뜻으로 분부하심이 어떠할지? 강희 48년(1709) 9월 초10일 계품하여 계품한 대로 시행하라고 하심.

기축 9월 12일

접위관 병조정랑 이세근과 동래부사 권이진이 9월 초5일 성첩한 장계. 관백의 고부차왜 다이라 마사찌[平眞致]의 원역(員役) 등에 대한 다례(茶禮)를 이

8) 허윤(許琿, 1645-1729) : 양친 허씨로 자는 윤옥(允玉), 호는 계주(桂洲)이다. 숙종 9년(1683) 증광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동부승지 병조참의 경주부윤 한성우윤 등을 역임하고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9) 이세근(李世瑾, 1664-1735) : 숙종 정축(丁丑, 1697)에 문과에 급제하고 기축(己丑, 1709)에 접위관으로 동래에 왔으며, 관직이 대사헌에 이르렀다. 벽진인(碧珍人).

10) 사조(辭朝) : 외직으로 부임하는 관원이 임금에게 하직하는 절차.

11) 변정옥(卞廷郁, 1638-?) : 밀양 변씨로 자는 문경(文卿)이다. 숙종 4년(1679) 증광시의 역과에 왜학으로 합격하여 품계가 정헌대부에 이르렀다.

12) 정만익(鄭晩益, 1664-?) : 하동 정씨로 자는 대수(大受)이다. 숙종 19년(1693) 식년시의 역과에 왜학으로 합격하여 품계가 통정대부에 이르렀다.

달 초4일로 정하였기로, 신 등이 함께 연청(宴廳)으로 가서 전례대로 베풀어 행한 뒤에 해조로 보내는 서계 2통과 별폭 2통,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 1통과 별폭 2통을 받아 올려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오며,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기축(1709) 9월 13일

예조 단자. 이제 이번 관백의 조위역관을 들여보내는 일을 묘당에서 이미 확정하였는데, 조위서계(弔慰書契)를 승문원에 명하여 전례대로 말을 만들어 지어내게 하였는데, 조위 및 분향(焚香)할 때의 예물을 전례대로 마련하였으니, 즉시 속히 마련하여 지참하여 보내도록 하는 일로 각 해당 관청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조위예물. 부용향(芙蓉香) 10봉(封), 화촉(畫燭) 100자루, 백방사주(白方絲紬) 10필.

분향 시에 사용할 침향(沈香) 1근(斤), 큰 촛대 1쌍, 향로 1부, 향합 1부, 화룡대촉(畫龍大燭) 1쌍.

강희 48년(1709) 9월 초5일 계품하여 계품한 대로 시행하라 하셨음.

기축(1709) 9월 14일

一. 예조에서 상고할 일. 방금 계하하신 말씀임. 이제 이번 관백의 상에 조위역관을 들여보내는 일을 묘당에서 이미 벌써 확정하였으므로 당상 당하 역관 각 1인을 내려 보내야 마땅하겠는데, 타고 갈 배와 사공 및 격군 등을 각 별이 선발하여 대기하는 일로 각 관 및 수영에 분부하고, 반전(盤纏)으로 증정할 예단과 도해 양식 등은 전례를 상고하여 일일이 마련하여 지급하되, 도부 즉시 일시를 이문할 일.

一. 예조에서 상고할 일. 이제 이번 관백의 상에 조위역관을 들여보내는 일을 묘당에서 이미 확정하였으므로 당상 당하 역관 각 1인을 내려 보내야 하는데, 반전과 증정할 쌀과 전례에 따라 증정할 물품을 전례를 상고하여 마련하여 지급할 일. 호조로.

기축(1709) 9월 20일

접위관 병조정랑 이세근과 동래부사 권이진이 9월 13일 성첩한 장계. 관백 고부차왜 다이라 마사찌[平眞致]의 하선연(下船宴)을 이달 12일로 정하였기로, 신 등이 함께 초량 객사로 가서 동 차왜 등과 전례대로 진상(進上) 숙배(肅拜)한 뒤에 하선연을 그대로 베풀어 행하였고, 공사 예단 잡물 또한 수량을 대조하여 들여 주었거니와, 이제 이번 차왜는 이미 고부차왜라고 일컬었으니 잔치를 베풀 때 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저들에게 일의 체면으로 보아 미안하다는 뜻을 임역(任譯)들에게 명하여 차왜에게 타이르게 하였더니, 그들이 과연 순종하였기로, 음악을 동원하지 않았으며,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기축(1709) 9월 21일

동래부사 권이진이 9월 11일에 성첩한 장계. 이달 초8일 신시에 도부한 부산진 겸임 좌수영 우후(虞侯) 이찬(李撰)의 치통 내용에, 올해 8월 18일에 나온 비선 1척에 두왜 1인과 격왜 7명 등이 함께 타고 관수왜의 사서를 가지고 당일 진시에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고 치통하였음. 초9일 술시 쯤에 황령산 봉군 김기봉(金己奉)과 간비오 봉군 김철생(金哲生) 등이 진고한 내용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5척이 앞뒤로 나뉘어 물마루로 나온다’고 진고하였음. 추가로 도부한 부산진 겸임 좌수영 우후 이찬의 치통 내용에, 왜선 5척이 앞뒤로 나뉘어 나온다는 석성 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초탐하기 위하여 두모포만호 양시준(梁時俊)을 정하여 보낸다는 일로 치통하였음. 초10일 미시에 도부한 동 우후의 치통 내용임. “나온 왜선 5척을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초탐장 양시준의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김도남과 가별차 현덕윤(玄德潤)¹³⁾ 등에게 명하여 문정한 뒤의 수본 내용에, ‘왜관에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제1척은 새 관백의 승습 경사를 알리는 대차왜의 배에 정관 다이라 마찌큐우[平倫久]와 봉진압물 1인, 시봉 1인, 반종 16명, 격왜 70명 등이 함께 타고 서계를 가지고 있으며, 제2척은 동 차왜의 수목선(水木船)으로 도선주 마쓰우라 데미교우[松浦禎卿]와 격왜 20명, 제3척은 동 차왜의 견선(撿船)으로 격왜 20명, 제4척은 동 차왜의 각선(脚

13) 현덕윤(玄德潤, 1676-1737): 자는 도이(道以), 호는 금곡(錦谷), 본관은 천녕이다. 숙종 31년(1706) 역과에 급제하여 부산 훈도로 재직하였으며, 신묘(1711) 사행에 왜학상통사로 수행하였다.

船)으로 격왜 20명 등이 함께 타고 각기 노인을 가지고 있으며, 제5척은 병술조 만쇼잉[萬松院] 송사가 재차로 건너온 배인데 격왜 40명 및 교대차 나온 통사왜 1명과 중금도왜 4명, 소금도왜 3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을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하여 나왔는데, 위 항목의 견선과 각선 및 만쇼잉 송사가 재차로 건너온 배 등은 모두 규정 외이기로 노인을 받지 아니하고 속히 들여 보내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렀음. 동 왜인 등의 말이, 접위관 및 차비역관 당상 당하관을 속히 내려 보내라는 뜻을 전례대로 장계로 알려달라고 하였으며, 지참하여 온 서계는 다례하는 날 마치겠다고 운운하기로 등본 및 차왜의 수목선 노인 1통 등을 받아 올려 보낸다'는 수본이었음. 이에 의거하여 동 서계 등본을 보내드리거니와, 수목선의 노인은 문서 전면에 '각도각관 방어소(各道各官防禦所)'라 써 넣었기로 전례대로 물리쳐 받지 아니하고 연유를 아울러 치통하는 일"로 치통하였음. 위 항목의 차왜가 가지고온 서계 등본은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며, 규정 외로 나온 왜선을 되돌려보내는 일 및 격식을 어긴 노인은 고쳐 적어 바치라는 뜻으로 역관들에게 명하여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였음. 이제 이번 새 관백의 경사를 알리는 차왜가 데려온 원역은 경신년(1680)의 사례에 의거하여 이미 나왔으니, 달리 책망하여 타일러 고칠 일이 없는바, 왜관에 오래 머무는 것은 또한 심한 폐단이 있으니, 접위관 및 차비역관 등을 해조에 명하여 재촉하여 내려 보내기 바란다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권이진의 장계를 보면 새 관백의 승습 경사를 알리는 대차왜가 데려온 원역은 경신년(1680) 사례대로 이미 나왔으니 접위관 및 차비역관 등을 해조에 명하여 재촉하여 내려 보내라고 하였는바, 이제 이번 고경차왜의 접위관 및 차비역관 등은 이미 벌써 차출하였으니 수일 내로 재촉하여 보내라는 뜻으로 해조와 해당 사역원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48년(1709) 9월 21일 우부승지신 박필명(朴弼明)¹⁴⁾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새 관백의 승습 경사를 알리는 차왜 평륜구가 지참하여 온 서계 등본.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 다이로 요시가다[平義方] 봉서(奉書)

조선국 예조참판대인 합하

아득히 생각건대 귀국의 맑고 태평함을 받돋움하여 끝없이 축원드립니다.

14) 박필명(朴弼明, 1658-1716): 자는 중량(仲良), 호는 인재(忍齋). 반남박씨로 숙종 23년(1697) 정시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서장관으로 청나라에 다녀온 뒤에 대사간을 거쳐 승지로 임명되었으며, 전라도관찰사, 도승지, 경기관찰사를 역임하였다.

본방(本邦)의 귀대군(貴大君)께서 보위(寶位)를 이어받아 오르시니 그 의식이 법도에 어긋나지 않아 정치 교화가 원근에 흡족하고 덮어주고 양육하는 덕이 백성을 덮어 나라 안에 있는 이라면 누군들 경하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정관 다이라 마찌큐우[平倫久]와 도선주 마쓰우라 데이교우[松圃禎卿]를 차출하여 두 나라의 대대로 혁혁한 옛 우호를 닦으면서 인하여 별폭을 갖추어 미미한 정성을 펴니다. 임중(林鍾)의 달¹⁵⁾에 다시금 계절에 맞추어 위중(衛重)하시기를 기원하며, 아무튼 높이 살피주시기 바라오며, 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보영(寶永) 6년 기축 6월 일

별폭: 첩금소병풍(貼金小屏風) 2쌍(雙), 수정 갓끈[水晶笠緒] 3결(結), 채화 옷걸이[彩畵衣桁] 1각(脚), 채화 패연(掛硯) 1비(備), 채화에 받침대 있는 큰 벼루[彩畵有臺大硯] 1비, 채화 화가(畵架) 1각(脚), 대화진주(大和眞朱) 2근, 적동루오관반(赤銅累伍盥盤) 2부, 적동명로(赤銅茗爐) 3개, 정(整).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 다이라 요시가다[平義方] 봉서(奉書)

조선국 예조참의대인 합하

계절이 늦여름인데 태후(台候) 편안하신지, 그리워 쏘리는 마음 참으로 깊습니다. 본방(本邦)의 귀대군(貴大君)께서 조종(祖宗)을 계승하여 홍업(洪業)이 더욱 왕성하고 국가의 법도가 되어 신민(臣民)이 기뻐하고 경하하여 힘입지 않는 바가 없습니다. 이에 정관 다이라 마찌큐우[平倫久]와 도선주 마쓰우라 데이교우[松浦禎卿]를 차출하여 성대한 일을 알려져 교류의 우호를 돈독히 합니다. 끝에 기록한 가벼운 물품은 삼가 웃으며 받아들여 주십시오. 아무튼 계절에 맞추어 진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보영(寶永) 6년(1709) 기축 6월 일

별폭: 채화문갑(彩畵文匣) 2개, 채화화가(彩畵畵架) 1각(脚), 채화원분(彩畵圓盆) 10개, 수정 갓끈[水晶笠緒] 5결(結), 대화진주(大和眞朱) 1근, 수랍명완(粹蠟茗盥) 20개, 적동루삼관반(赤銅累參盥盤) 2부, 정(整).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 다이라 요시가다[平義方] 계서(啓書)

조선국 동래 부산 두 영공(令公) 합하.

무더위에 여러분의 생활이 편안하시리라 생각하며 항상 기울이는 관심이 간

15) 임중(林鍾)의 달: 음력 6월의 별칭.

절합니다. 본방(本邦)의 귀대군(貴大君)께서 나라의 정통을 빛나게 이어받아 시절이 화평하니, 나라 사람들이 환호함에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이에 정관 다이라 마찌큐우[平倫久]와 도선주 마쓰우라 데이교우[松浦禎卿]를 보내오니, 예조에 알리셔서 전달해주시기를 청합니다. 자잘한 물품은 부끄럽지만 받아들여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나머지는 살펴주시고, 짐짓 이에 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보영(寶永) 6년(1709) 기축 6월 일

동래부사공 별폭: 채화화전갑(彩畵華箋匣) 1개, 채화소원분(彩畵小圓盆) 10개, 바둑판[碁盤] 1위(圍), 주칠대원분(朱漆大圓盆) 10개. 대화진주(大和眞朱) 1근, 적동대약관(赤銅大藥罐) 10개. 정(整).

부산영공 별폭: 채화화전갑(彩畵華箋匣) 1개, 수정 갓끈[水晶笠緒] 1결(結), 채화육촌염경(彩畵六寸鹽鏡) 1면(面), 흑칠등대(黑漆燈臺) 5개, 적동누삼관반(赤銅累參盥盤) 1부. 정(整).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앞서 새로 승습하는 경사를 알리는 차왜 다이라 마찌큐우[平倫久]가 지참하여 온 서계의 회답 및 동래 부산에서의 답장 초고를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지어내게 하였는데, 별폭의 회례 물품을 전례대로 마련하여 계목에 후록하였으니 이대로 마련하여 내려 보내는 일로 해조 및 본도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후록

참관의 회례: 인삼 2근, 범 가죽 1장, 표범 가죽 1장, 흰 명주 10필, 흰 모시베 10필, 검은 삼베 7필, 흰 무명 20필, 황모필 30자루. 이상 해조에서 마련함. 화석(花席) 5장, 넉장 불인 유둔 3부, 참덕 30홀. 이상 본도에서 지급.

참의의 회례: 인삼 2근, 범 가죽 1장, 표범 가죽 1장, 흰 명주 7필, 흰 모시베 7필, 검은 삼베 5필, 흰 무명 20필, 황모필 30자루. 이상 해조에서 마련함. 화석(花席) 5장, 넉장 불인 유둔 2부, 참덕 30홀. 이상 본도에서 지급.

동래 부산 두 곳의 회례 각각: 흰 명주 5필, 흰 모시베 5필, 검은 삼베 3필, 흰 무명 10필, 황모필 20자루. 이상 해조에서 마련함. 화석(花席) 3장, 넉장 불인 유둔 1부, 참덕 20홀. 이상 본도에서 지급.

강희 48년(1709) 9월 21일 우승지 신 박필명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一. 예조 단자. 이제 이번 새 관백의 승습 경사를 고하는 차왜 다이라 마찌 큐우[平倫久]의 하선연 상선연과 왜관에 머무를 때의 별연(別宴) 도합 3차례의 연회에 증정하여 지급할 예단 및 경접위관이 지참하여 갈 예단 등을 전례대로 마련하였으니, 급속히 마련하여 내려 보내는 일을 해조 및 본도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차왜의 3차례 연회에 증정하여 지급할 물품. 각각: 인삼 1근, 흰 명주 5필, 흰 모시베 5필, 검은 삼베 3필, 흰 무명 5필, 황모필 20자루. 이상 해조에서 마련함. 화석 3장, 넉장 불인 유둔 2부, 참덕 20홀. 이상 본도에서 지급.

도선주 1인에게 3차례 연회에 증정하여 지급할 물품: 인삼 1근, 흰 명주 3필, 흰 모시베 3필, 검은 삼베 3필, 흰 무명 4필, 황모필 20자루. 이상 해조에서 마련함. 화석 3장, 넉장 불인 유둔 2부, 참덕 20홀. 이상 본도에서 지급.

압물 1인, 시봉 1인에게 각각 3차의 연회에 증정하여 지급할 물품. 각각: 흰 명주 2필, 흰 모시 베 2필, 흰 무명 3필. 이상 해조에서 마련함.

반중 16명에게 각각 3차의 연회에 증정하여 지급할 물품. 각각: 흰 명주 1필, 흰 모시베 1필, 흰 무명 2필. 이상 해조에서 마련함.

접위관이 지참하여 갈 예단: 인삼 3근 12냥, 표범 가죽 3장, 흰 명주 10필, 흰 모시베 10필, 검은 삼베 7필, 흰 무명 20필, 황모필 40자루. 이상 해조에서 마련함. 화석 5장, 넉장 불인 유둔 5부, 참덕 40홀. 이상 본도에서 지급.

강희 48년(1709) 9월 21일 계품하여 계품한대로 시행하라 하셨음.

기축(1709) 10월 초7일

접위관 병조정랑 이세근(李世瑾)과 동래부사 권이진이 9월 29일 성첩한 장계. 관백의 고부차왜 다이라 마사찌[平眞致] 원역 등에 대한 별연(別宴)을 베푸는 것을 없애고 건물(乾物)로 들여주기를 원한다 하였다고 역관 등이 와서 고하였기에, 그 원하는 대로 이달 28일 동 잔치 물품의 건물 및 공사 예단 잡물을 아울러 수량을 대조하여 들여 주었으며,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기축(1709) 10월 초8일

동래부사 권이진이 9월 29일 성첩한 장계. 이달 24일 유시에 도부한 부산 겸임 좌수영 우후 이정주(李廷周)의 치통 내용임, 올해 6월 초10일 나왔던 우

리나라 표류인을 영솔하여 온 차왜의 배 1척에 정관 다찌바나 도모시게[橘友重]와 봉진압물 1인, 반종 3명, 격왜 40명 및 표류인의 배를 함께 타고 나온 사공왜(沙工倭) 1명, 통사왜(通事倭) 1명, 금도왜 2인 등이 함께 타고 같은 날 사시에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는 일로 치통하였음. 25일 미시 쯤에 황령산 봉군 김석남(金石男)과 간비오 봉군 허만석(許萬石) 등의 진고 내용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구분되지 않는 배 4척이 물마루로 나온다고 진고하였음. 추가로 도부한 부산진 겸임 좌수영 우후 이정주의 치통 내용에, “왜선 4척이 나온다는 석성 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초탐하기 위하여 본진의 이선장 안시적(安時迪)을 정하여 보낸다는 일”로 치통하였음.

같은 날 해시에 성첩하고 26일 자시에 도부한 동 우후의 치통 내용임. “나왔던 왜선 4척을 영솔하여 관수에 부쳤다는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문정하라는 뜻으로 역관 등에게 분부하였는데, 훈도 김도남과 별차 한찬흥(韓贊興)¹⁶⁾의 수본에 ‘동 왜선 4척이 술시 쯤에 관소에 도착 정박하였는데, 날이 이미 캄캄하게 어두워 수색하여 검사하지 못하겠기로 왜인들이 짐짓 육지에 내리지 못하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 상세히 문정할 계획이라’는 수본이었음. 이에 의거하여 치통하는 일”이라고 치통하였음.

같은 날 유시에 도부한 동 우후의 치통 내용임. “당일 신시에 도부한 훈도 김도남과 별차 한찬흥 등이 문정한 뒤의 수본 내용. 어제 밤이 깊어서 문정하지 못하였다가 오늘 아침 왜관에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제1척은 당년도 부특송사 1호선에 정관 다찌바나 도모다다[橘友忠], 도선주 다이라 고갱[平鉦顯], 봉진압물 1인, 시봉 1인, 반종 4명, 격왜 40명 등이 함께 타고 서계를 지참하였으며, 제2척은 동 특송사 2호선으로 부관 후시다쓰망[藤立滿], 이선주(二船主) 미나모토 다까노리[源高令], 류선주(留船主) 다이라 사카요[平昌良], 사복압물(私卜押物) 1인, 시종 1인, 반종 3명, 격왜 30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을 지참하였으며, 제3척은 도주의 귀환을 알리는 차왜 미나모토 시루쓰기[源紀次], 봉진압물 1인, 반종 5명, 격왜 40명 등이 함께 타고 서계를 지참하였으며, 제4척은 병술조 부특송사 2호선이 재차 건너온 배로 격왜 30명 및 교대차 나온 소금도왜 7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을 지참하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나왔다고 하는데, 이른바 재차 건너온 배는 규정 밖이기로 노인을 받지 아니하고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렀으며, 정관 등이 소재한 서계는 다례하는 날 전례대로 바칠 계획이라고 운운 하였기로, 되돌아온 것을 알리는 차왜가 지참한 서계 등본 및 당년조 부

16) 한찬흥(韓贊興, 1680-?): 청주 한씨로 자는 기중(起仲)이다. 숙종 34년(1708) 역과에 올라 왜학(倭學)으로 종사하였다.

특송사 2호선의 노인 1통을 올려 보내거니와, 동 서계를 베껴 쓸 즈음에 말단에 ‘불실(不悉)’이라 써 넣었거늘, 소인 등이 동 차왜 및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이르기를 ‘이전에는 불선(不宣)이라 써 넣는 것이 평상시 규정이거늘 이번에 만 불실(不悉)이라 적어 넣은 것은 무슨 곡절인지, 일이 매우 부당하다’고 하였더니, 동 왜인 등이 ‘이번 이 서계 말단의 불실(不悉) 두 글자는 전례에 어긋남이 있다는 판사 등의 말에는 고집할 바가 없지 아니하나, 새 관백의 생부(生父) 이름 글자 가운데 선(宣)자를 꺼려서 숨기는 일이 있으므로 이렇게 바꾸어 썼다’는 말과 설명에 의거하여 수분한다 하였다고 하기에, 위 항목의 대마도로 되돌아온 것을 알리는 차왜의 서계 등본을 그대로 보내거니와, 2호선의 노인은 서면에 ‘각도각관방어소(各道各官防禦所)’라 적어 넣었기에 전례대로 물리쳐 받지 아니하였다는 연유를 아울러 치통하는 일”이라는 치통이었음.

위 항목의 교환차왜(告還差倭)가 지참하여 온 서계 등본 1통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오며, 2호선의 격식에 어긋난 노인은 고쳐 적어 바치는 일 및 규정 외로 나온 왜선을 속히 되돌려 보내는 일은 역관들에게 명하여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였고, 차왜가 가지고 있는 원 서계 및 부특송사왜가 가지고 있는 서계 등은 추후에 다례를 베풀면서 받아서 올려보낼 계획이거니와, 도주가 대마도로 돌아온 일을 알리는 차왜가 이미 나왔으니, 일이 전례에 의하여 접대해야 하겠기로 접위관을 인근 수령 가운데서 차출하여 정하라는 뜻으로 도신(道臣)에게 보고하였으니, 연례(宴禮)에 증정할 예단잡물을 해조에 명하여 사례를 대조하여 마련하여 내려 보내며, 옛 사람의 서찰을 보내는 예에 ‘불비(不備)’는 존중하는 말이고, ‘불선(不宣)’은 평교(平交) 사이에 쓰는 말이며 ‘불실(不悉)’은 강등(降等)의 말로 간혹 준비 사이에 참작하여 쓰기도 하는데, 저쪽은 서찰을 알지 못하는 야만인이라 준비의 예를 반드시 아는 것은 아닐 터이나, 고경(告慶) 서계로부터 갑자기 불실(不悉)이라 써 넣은 것은 매우 놀라운지라 역관에게 명하여 누차 책망하여 물었더니, 새 관백의 이름이 가선(家宣)인지라 나라 안에서 선(宣)자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실(悉)자로 대신 사용하니 이번 이후로는 마땅히 분부하는 대로 불구(不具), 불비(不備) 등의 글자로 적어 오라는 뜻으로 도중(島中)에 통보하겠다고 운운하였다고 역관이 수분하였음. 이전에 이에미쓰[家光]가 관백이 되었을 때 왜인이 광(光)자를 피하도록 청하였으니 전례가 없지는 않은 듯하고, 피차간에 이미 적체(適體)의 예를 사용하니 회답 서계에 또한 불실(不悉)로 써 넣으면 또한 부끄러울 사단이 없겠기에, 짐짓 받아 올려 보내고, 이 뒤로는 불구(不具) 불비(不備) 등의 글자로 적어 오라는 뜻을 다시 엄하게 타이르면 어떠할지, 또한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실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권이진의 장계를 보면 도주가 대마도로 돌아온 것을 알리는 차왜가 이미 벌써 나왔으니 일이 전례대로 접대해야 마땅하니 연례에 증정할 예단을 해조에 명하여 전례를 대조하여 마련하여 내려보내며, 경사를 알리는 서계 가운데 불실(不悉)이라 적어 넣은 것은 매우 놀라워 역관에게 명하여 누차 책망하여 물었더니, 새 관백의 이름이 이에노부[家宣]이기 때문에 실(悉)자를 대신 사용한다고 운운하였으니, 이 뒤로는 불구(不具), 불비(不備) 등의 글자로 적어 오라는 뜻으로 다시 엄하게 타일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또한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라 하였는바, 도주가 대마도로 돌아온 것을 알리는 차왜를 접대하는 데는 이미 전례가 있으니 전례대로 접대하라는 뜻으로 동래부에 분부하되, 서계 말단에 불실(不悉)이라고 처음으로 적어 보낸 일은 매우 놀라우나, 저들이 이미 선(宣)을 피휘(避諱)한다고 말을 하니, 선(宣)자를 억지로 써 넣게 강요할 수는 없을 듯하니, 이 뒤로는 불구(不具), 불비(不備) 등의 글자로 적어 보내라는 뜻을 다시 더욱 책망하고 타이르는 것이 적절할 듯한데, 또한 변통하는 일에 관계되는 지라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함이 어떠할지? 강희 48년(1709) 10월 초8일 동부승지 신 이만선(李萬選)¹⁷⁾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一. 도주가 대마도로 돌아온 것을 알리는 차왜 미나모또 시루쓰기[源紀次]가 지참하여온 서계 등본.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 다이라 요시가다[平義方] 봉서(奉書)

조선국 예조 대신 합하

시원한 바람이 잠깐 부는데 멀리 생각건대 귀국의 태평함을 흠양(欽仰)하는 마음 더욱 깊사오며, 본방(本邦)의 태평한 정치의 즐거움을 알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동무(東武)에 조근(朝覲)하였다가 외람되어 은혜로운 보살핌을 입어 신속히 본관으로 오는 휴가를 내리시어 어려움 없이 이달 13일 저의 고을로 돌아와 쉬게 되었습니다. 이에 미나모또 시루쓰기[源紀次]를 차출하여 편안하신지 안부를 여쭙습니다. 박하고 소략한 물품은 웃으시며 거두어 사랑하시고, 밝게 살펴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만 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보영(寶永) 6년(1709) 기축 7월 일

별록: 대화진주(大和眞朱) 1근, 채화중원분(彩畵中圓盆) 10개, 채화중충갑

17) 이만선(李萬選, 1654-1735); 숙종 계유(癸酉, 1693)에 문과에 급제하고 한성 판윤을 역임하였다.

(彩畵中層匣) 1비(備), 적동루오관반(赤銅累伍盥盤) 1부.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 다이라 요시가다[平義方] 계서(啓書)

조선국 동래 부산 두 영공(令公) 합하.

초가을에 멀리 생각건대 여러 분의 생활이 진중하기를 바라는 마음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저는 외람되이 은혜로운 휴가를 받아 이달 13일 저의 고을로 배를 돌려왔습니다. 이에 미나모토 시루쓰기[源紀次]를 차출하여 보내어 남궁(南宮:예조)에 서계를 바치오니, 삼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산 물품은 비록 사소하나 살펴 받아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다 적지 못합니다.

보영(寶永) 6년(1709) 기축 7월 일

동래부사공 별폭: 수정 갓끈[水晶笠緒] 1결(結), 적동루삼관반(赤銅累參盥盤) 1부, 채화유결소원분(彩畵有珓小圓盆) 10개. 계(計).

부산영공 별폭: 채화화전갑(彩畵華箋匣) 1비, 주칠대원분(朱漆大圓盆) 10개. 계(計).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전에 도주가 대마도로 돌아온 것을 알리는 차왜 미나모토 시루쓰기[源紀次]가 가져온 서계의 회답 및 동래 부산에서의 답장 초고를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지어 내게 하였는데, 별폭의 회례 물품을 전례대로 마련하여 계목에 후록하였으니, 이대로 마련하여 내려 보내는 일로 해조 및 본도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후록.

별폭 회례: 범 가죽 1장, 표범 가죽 1장, 흰 명주 5필, 흰 모시베 5필, 검은 삼베 3필, 흰 무명 10필, 황모필 20자루. 이상 해조에서 마련. 화석 3장, 넉장 불인 유둔 2부, 참떡 20홀. 이상 본도에서 지급.

동래 부산 두 곳에서의 회례. 각각: 흰 명주 3필, 흰 모시베 3필, 검은 삼베 2필, 흰 무명 5필, 황모필 10자루. 이상 해조에서 마련함.

강희 48년(1709) 10월 초8일 동부승지 신 이만선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一. 예조단자. 이제 이번 도주가 대마도로 되돌아온 것을 알리는 차왜 미나모토 시루쓰기[源紀次] 등의 하선연과 상선연 두 차례 연회에 증정하여 지급할 예단을 전례대로 마련하였으니 이대로 마련하여 별도로 차비역관을 정하여

지참하여 내려보내는 일로 해조 및 본도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차왜에게 두 차례 연회에 증정할 물품. 각각: 인삼 1근, 흰 명주 5필, 흰 모시베 3필, 검은 삼베 2필, 흰 무명 5필, 황모필 20자루. 이상 해조에서 마련. 화석 3장, 너장 붙인 유둔 2부, 참덕 20홀. 이상 본도에서 지급.

압물 1인에게 두 차례 연회에 각각: 흰 명주 2필, 흰 모시베 2필, 흰 무명 3필. 이상 해조에서 마련.

반중 5명에게 각각 두 차례 연회에 각각: 흰 명주 1필, 흰 모시베 1필, 흰 무명 2필. 이상 해조에서 마련.

강희 48년(1709) 10월 초8일 계품하여 계품한대로 시행하라 하심.

기축(1709) 10월 19일

접위관 병조정랑 이정제(李廷濟)¹⁸⁾가 10월 12일 성첩한 장계. 신은 지난 달 12일 신시에 동래부에 도착하였거니와, 신은 이미 이곳에 도착하여 고경차왜(告慶差倭) 다이라 마찌큐우[平倫久]의 다례를 진작 베풀어 행하였는데, 동 다이라 마찌큐우[平倫久]가 가지고 있는 서계 가운데 불선(不宣)의 선(宣)자를 실(悉)로 바꾸었는바, 부사 신 권이진이 고환차왜(告還差倭)의 서계 가운데 선(宣) 실(悉) 두 글자를 품의 확정하라는 일로 이미 장계하였고, 다이라 마찌큐우[平倫久]가 가지고 있는 서계는 그것과 다름이 없기에, 일이 본부의 장계에 대한 회계가 내려오기를 기다려 거행해야 마땅하겠기로,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는 일임.

기축(1709) 10월 23일

비변사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동래부사 권이진의 장계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에, 왜인의 서계 말단에 불실(不悉)이라는 말을 처음 적어 보냈는데, 저쪽에서는 선(宣)자를 꺼려 피한다고 말을 하니, 지금 이후로는 불구(不具), 불비(不備) 등의 글자로 적어 보내라는 뜻으로 다시 더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라는 일을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치하게 하라

18) 이정제(李廷濟, 1670-1737); 숙종 경진(庚辰, 1700) 문과에 급제하여 대사헌(大司憲), 호조판서(戶曹判書)를 역임하고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가 되었다. 숙종 기축(己丑, 1709)에 접위관으로 동래에 온 적이 있다.

하였는바, 선(宣)자를 이미 꺼려 피한다고 말을 하니 그대로 쓰도록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어떤 글자로 대신하든 특별히 방해될 것은 없으니. 이미 온 서계는 이제 짐짓 받도록 허락하며, 우리나라의 서찰에 사용하는 말에는 불비(不備)와 불실(不悉) 사이에 조금 경중이 있으니, 지금부터 서계 말단에 비(備)로 선(宣)을 대신한 일로 훈도 별차 등에게 명하여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라는 뜻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48년(1709) 10월 23일 좌부승지신 허윤(許琿)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기축(1709) 10월 27일

동래부사 권이진이 10월 18일 성첩한 장계. 이달 17일 축시에 도부한 부산 첨사 조세망(趙世望)의 치통 내용. 어제 나온 왜선 5척을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초탐장 조윤벽(趙允璧)의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김도남과 별차 한찬홍(韓纘興)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한 뒤의 수본 내용에, “왜관에 가서 문정하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제1척은 문위역관(問慰譯官)의 행차를 호위할 재판차왜(裁判差倭) 정관 후지 가다교우[藤方恭]와 봉진압물 1인, 시봉 1인, 반중 10명, 격왜 40명 및 문위역관의 배에 타기 위한 사공왜(沙工倭) 2명 등이 함께 타고 예조로 보내는 서계 및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를 지참하였으며, 그 나머지 4척은 모두 비선인데 두왜 각 1인과 격왜 각 6명 등이 함께 탔는데, 3척은 각기 절행(節行) 은화(銀貨) 1만 냥씩 실어가지고 있었고, 1척은 5,000냥만 실어서 도합 3만 5천냥을 실어가지고, 또한 노인을 지참하고 나왔으며, 재판차왜의 말이 ‘문위역관을 재촉하여 내려와서 올해 12월 안에 배를 타고 돌아들어가게 해 달라’고 누누이 이야기하였으며, 가지고 있는 서계는 다례하는 날 바치겠다고 하여, 등본 및 비선의 노인 4통을 받아 올려보냄”이라는 수본이었기에, 이에 의거하여 동 서계 등본 및 노인 4통을 전례대로 보내는 일로 치통하였음.

위 항목의 비선의 노인 4통 및 재판차왜가 지참하여온 서계 등본 1통 등을 감봉하여 올려 보내거니와, 동 서계등본을 가져다 살펴보니 ‘재판 다이라 다메구[平爲矩]가 직책을 맡은 지 여러 해인지라 후지 가다교우[藤方恭]로 하여금 그 책임을 대신하게 할 일’이라고 하였는바, 지금 왜관에 있는 재판이 곧 후지[藤]이거늘 다이라 다메구[平爲矩]라고 적어 넣은 것은 매우 괴이하고 의아하기로, 다시 역관들에게 명하여 차왜에게 물어 조사하게 하였더니, 방금 바친 훈도 김도남과 별차 한찬홍 등의 수본 내용에, “즉각 도부한 전령에 의

거하여 즉시 관수왜에게 가서 어제 나온 재판차왜를 불러다가 함께 서로 마주한 뒤에 전령 내의 사연을 가지고 책망하여 타이르며 따져 물어 말하기를, ‘어제 문정할 때는 밤이 깊어서 상세히 묻지 못하였는데, 이제 이 서계를 보면 재판 다이라 다메구[平爲矩]의 대신으로 후지 가다교우[藤方恭]가 그 일을 대신 맡는다고 운운한 것은 거기에 무슨 곡절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지금 구재관은 곧 후지 노리쇼쿠[藤則直]이거늘 다이라 다메구[平爲矩]로 적어 넣은 것이 매우 분명치 못할 뿐 아니라, 이른바 다이라 다메구[平爲矩]는 어떤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인가? 막중한 서계에 성명이 어긋난 것은 몽롱하기가 이보다 심한 것이 없으니, 범연하게 말한 책임은 면하기 어려우며, 지난번에 도해역관을 청하러 온 두왜가 나올 적에 단지 조위(弔慰)만 청하였지 문위(問慰) 두 글자는 거론하지 않았기로, 그 때 이 연유를 따져 물었더니 너의 말이, 「한결같이 봉행(奉行) 등이 보낸 서신 가운데의 말뜻을 통고하였을 따름, 앞으로 조위와 문위를 겸하여 부칠 것인지는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이 뜻을 도중에 통첩하여 회답 기별을 기다렸다가 다시 고달(告達)하겠다」 고 운운하였거늘, 이제 한 마디 말도 없는 것은 왜냐? 이러한 연유를 상세히 설파하여 곧장 장계로 알리도록 하겠다’고 하였더니, 동 왜인 등이 답하기를, ‘어제 밤에 문정할 때는 밤을 틈타 육지에 내려서 곧장 문정하였으므로 정신이 어둡고 헛갈려 상세하지 다 말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이번 서계 가운데 재판 다이라 다메구[平爲矩]의 대신으로 후지 가다교우[藤方恭]가 대신하여 그 일을 맡는다고 운운한 것은 실로 다른 뜻은 없고, 도중의 재판 다이라 다메구[平爲矩]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직책에 있는 지 여러 해인데, 이제 비로소 교체되었으므로 그 대신으로 후지 가다교우[藤方恭]를 차출하여 보냈는데, 이는 전후로 근거할 사례가 있고 또 도중에서 늘 행하던 일이며, 원래 지금 재판인 후지 노리쇼쿠[藤則直]가 대신하여 맡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고 하였으며, 또 조위와 문위의 일에 대해서는 ‘전례대로 겸하여 부쳤으나, 대개 관백이 도주에게는 군주와 신하의 사이인지라 일의 체면에 있어서 한 장의 서계에 아울러 그 일을 첨가하는 것이 불가하니, 동 서계는 조위와 문위 두 조목으로 말을 만들어 전례대로 각쪽에 적어 보내라는 뜻으로 고달(告達)하여 달라’고 운운하였기로, 연유를 수본으로 하는 일”이라고 수본하였음.

다시 전례를 상고해보니, 병술년(1706) 재판 미나모토 가다아리[原方有]가 나왔을 때 을유년(1705) 재판 다이라 다메구[平爲矩]의 대신이라 적어 넣지 않고, 계미년(1703) 재판 다찌바나 젠경[橋全賢]의 대신이라 운운하였는데, 이제 와서 왜인 등이 이것을 전례로 인용하는 것은 근거가 없지 아니하거니와,

정묘년(1687) 간에 부사 신 이원(李沅)이 재임할 때, 두 재판관을 접대하는 일로 장계를 청하였다가 나포 심문하여 죄를 논하는 일이 있기까지 하였던 바, 이제 이번 문위역관의 호행 재판차왜가 또 나왔으니, 전 재판 후지 노리쇼쿠[藤則直]는 전례대로 이미 철공(撤供:물자 공급을 거둠)하였으며, 이제 이번에 나온 호행차왜는 전례대로 접대하는 일이 마땅하여, 접위관을 가까운 고을 수령 가운데서 차출하여 정하는 뜻으로 도신(道臣)에게 보고하였으니, 연례와 증정할 예단잡물을 해조에 명하여 전례를 대조하여 마련하여 내려 보내며, 관백이 죽은 것을 조위(弔慰)하는 역관은 이미 장계로 알려 차출하게 하였거니와, 도주가 대마도로 돌아온 뒤에 알리면 역관을 보내어 문위(問慰)하는 데는 또한 전례가 있는데, 이제 이번 도해역관의 인편에 문위와 조위를 겸하여 행하되, 문위와 조위를 각장의 서계로 하는 일은 해조에 명하여 사례를 상고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며, 도해역관 등도 또한 해당 사역원에 명하여 재촉하여 내려보내게 해 달라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권이진의 장계를 보면, 문위역관의 호행 재판차왜가 또 나왔으니, 전 재판 후지 노리쇼쿠[藤則直]는 전례대로 이미 철공하였으며, 이제 이번에 나온 호행차왜는 전례대로 접대해야 마땅한 일이기로 접위관을 차출하여 정하라는 뜻으로 도신에게 보고하였는데, 이른바 연례에 증정할 예단 잡물을 사례를 대조하여 마련하여 내려 보내며, 도주가 대마도로 돌아온 뒤에 알리면 역관을 보내어 문위하는 데는 또한 전례가 있는데, 문위와 조위를 각장의 서계로 하는 일을 해조에 명하여 사례를 상고하여 품의 조처하며, 도해역관도 해당 사역원에 명하여 재촉하여 내려보내 달라고 하였는바, 역관의 호행 차왜를 접대하는 것은 이미 전례가 있으니, 전례대로 접대하되, 새 재판이 중첩하여 왔으니 구 재판에 대하여 철공하는 데는 이 전례가 있으니 철공해야 마땅한 일이며, 도해역관의 인편에 문위와 조위를 겸하여 행하는 일 및 각장의 서계를 만드는 것은 비록 이미 시행한 전례가 있지만 일이 변방 정세와 관계되는지라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며, 도해역관은 이미 벌써 차출하여 정하였으니 해당 사역원에 명하여 재촉하여 보내라는 뜻으로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48년(1709) 10월 27일 우부승지 신 이만선(李萬選)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一. 문위역관의 호행 재판차왜 등방공(藤方恭)이 지참하여 온 서계 등본.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 다이라 요시가다[平義方] 봉서(奉書)

조선국 예조 대인 합하

가을이 늦었습니다. 멀리 생각건대 귀국은 평안하며 문후(文候)는 다 순조로 우신지, 삼가 우러러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제 재판 다이라 다메구[平爲矩]가 직책에 있는 지 여러 해인지라 이제 후지 가다교우[藤方恭]로 하여금 그 일을 대신 말도록 하고, 또 통역 사절[譯使]을 맞이하게 하였으니, 바라는 바는 다시금 더 지휘하시기를. 나머지는 가다교우[方恭]가 구두로 전하도록 부쳤습니다. 저희 나라 생산품은 신의의 표시이니 단지 높여 두시기를 기원합니다. 삼가 여기 다 적지 못합니다.

보영(寶永) 6년(1709) 기축 9월 일

별품: 채화서가(彩畵書架) 1각(脚), 흑칠화전갑(黑漆華箋匣) 1개, 채화삼촌염경(彩畵參寸奩鏡) 5면(面), 문지(紋紙) 600편(片), 적동루삼관반(赤銅累參盥盤) 1부(部), 채화대원분(彩畵大圓盆) 10개. 제(際).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 다이라 요시가다[平義方] 계서(啓書)

조선국 동래 부산 두 영공(令公) 합하.

가을 끝에 멀리 생각건대 여러 분의 상태가 아름다우리라 여기며 쏘리는 마음 어찌 견디겠습니까? 이에 후지 가다교우[藤方恭]를 보내어 재판 특차(特差)를 교대하고, 역사(譯使)를 맞이하게 하고, 인하여 남궁(南宮:예조)에 서계를 바치고자 하오니, 청컨대 전달하여 주십시오. 나머지는 사절의 허끝에 부치고 감히 누누이 진술하지 않습니다. 사소하고 간략한 토산품은 살펴보시고 머물러 두시면 다행이겠습니다. 이만하고 다 적지 않습니다.

보영(寶永) 6년(1709) 기축 9월 일

동래부사공 별품: 흑칠중연갑(黑漆中硯匣) 1비(備), 채화육촌염경(彩畵六寸奩鏡) 2면, 주칠중원분(朱漆中圓盆) 10개, 수랍중명완(粹蠟中茗盥) 20개. 제(際).

부산영공 별품: 화전갑(華箋匣) 1개, 적동명로(赤銅茗爐) 1위(圍), 주간연기(朱竿煙器) 30약(握). 제(際).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전에 도해역관의 호행 재판차왜 후지 가다교우[藤方恭]가 지참하여 온 서계의 회답 및 동래 부산에서의 답장 초고를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지어내게 하였는데, 별품의 회례 잡물을 전례대로 마련하여 계목에 후록하였으니 이대로 마련하여

내려보내는 일로 해조 및 본도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후록 별폭 회례: 인삼 1근, 범가죽 1장, 표범 가죽 1장, 흰 명주 5필, 흰 모시베 5필, 검은 삼베 3필, 흰 무명 10필, 황모필 30자루. 이상 해조에서 마련. 화석 3장, 녀장 붙인 유둔 2부, 참덕 30홀. 이상 본도에서 지급.

동래 부산 두곳에서의 회례. 각각: 흰 명주 3필, 흰 모시베 3필, 검은 삼베 2필, 흰 무명 5필, 황모필 20자루. 이상 해조에서 마련. 화석 2장, 녀장 붙인 유둔 1부, 참덕 20홀. 이상 본도에서 지급.

강희 48년(1709) 10월 27일 우부승지 신 이만선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一. 예조단자. 이제 이번 도해역관의 호행 재판차왜 후지 가다교우[藤方恭] 등의 하선연과 상선연, 왜관에 머물 때의 별연 도합 세 차례의 연회에 증정하여 지급할 잡물을 전례대로 마련하였으니, 급속히 마련하여 별도로 차비역관을 정하여 지참하여 내려보내는 일로 해조 및 본도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차왜의 세 차례 연회에 증정 지급할 물품. 각각: 인삼 1근, 흰 명주 5필, 흰 모시베 5필, 검은 삼베 3필, 흰 무명 5필, 황모필 30자루. 이상 해조에서 마련함. 화석 3장, 녀장 붙인 유둔 2부, 참덕 30홀. 이상 본도에서 지급.

압물 1인, 시봉 1인에게 각각 세 차례의 연회에 증정 지급할 물품. 각각: 흰 명주 2필, 흰 모시베 2필, 흰 무명 3필. 이상 해조에서 마련함.

반중 10명에게 각 세 차례의 연회에 증정 지급할 물품. 각각: 흰 명주 1필, 흰 모시베 1필, 흰 무명 2필. 이상 해조에서 마련함.

강희 48년(1709) 10월 27일 계품하여 계품한대로 시행하라 하심.

기축(1709) 10월 29일

비변사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동래부사의 장계에 의거한 예조의 복계 내용에, 도해역관 편에 문위(問慰)와 조위(弔慰)를 겸하여 행하는 일 및 각장의 서계를 보내는 일을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라 하였는 바, 이전부터 문위의 행차에 조위를 겸하여 행하였으며, 서제도 그 사단이 이미 다르니 각쪽에 닦아 보내는 것은 또한 전례가 있는데, 이제 또한 이대로

거행하게 함이 어떠할지? 강희 48년(1709) 10월 29일 우부승지 신 이만선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기축(1709) 11월 초1일

一. 예조단자. 이제 이번 도해역관 편에 문위와 조위를 겸하여 행하는 일로 이미 벌써 확정하고, 문위 서계를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지어내게 하였는데, 지참하여 갈 예단 잡물을 전례대로 마련하였으니, 급속히 마련하여 내려 보내는 일로 해조 및 본도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인삼 5근, 범 가죽 3장, 표범 가죽 3장, 흰 명주 10필, 흰 모시베 10필, 검은 삼베 10필, 흰 무명 30필, 황모필 30자루. 이상 해조에서 마련함. 화석 10장, 낙장 불인 유돈 5부, 참떡 30홀, 상화지(霜花紙) 10권, 화연(花硯) 3면(面). 이상 본도에서 지급.

강희 48년(1709) 11월 초1일 계품하여 그대로 시행함.

一. 예조에서 상고할 일. 이제 이번 도해역관 편에 문위와 조위를 겸하여 행하는 일을 이미 벌써 확정하였는데, 역관 등이 도주(島主) 이하와 서로 접촉할 때 전례에 따라 사례단(私禮單)을 증정하는 일이 있으니, 전례를 상고하여 전례대로 지급할 일. [호조와 본도로].

一. 예조에서 상고할 일. 대마도 도주에게 문위역관을 들여보내는 일을 이미 벌써 확정하였는데, 역관이 타는 말과 짐말 각 1필과 당하역관이 타고 갈 말 1필과 짐말 한 마리를 전례대로 지급할 일. [병조로].

一. 예조에서 상고할 일. 대마도 도주에게 문위역관 1인을 들여보내는 일을 이미 벌써 확정하였는데, 문위역관의 예단을 실어 갈 쇠마(刷馬) 1필 및 사례단을 실어 갈 쇠마 등을 전례대로 급속히 정하여 보낼 일. [경기 감영으로]

기축(1709) 11월 초7일

경접위관 부사직 이세근(李世瑾)과 동래부사 권이진이 10월 29일 성첩한 장계. 관백의 고부차왜 다이라 마사찌[平眞致] 원역 등에 대한 상선연을 이달 28일에 베풀기로 정하였기에, 같은 날 신 등이 함께 관소(館所)로 가서 전례

대로 배풀어 행한 뒤에 공사 예단 잡물 또한 수량을 대조하여 들여주었으며,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기축(1709) 11월 11일

경접위관 병조정랑 이정제(李廷濟)와 동래부사 권이진이 11월 초3일 성첩한 장계. 새 관백의 경사를 알리는 차왜 다이라 마찌큐우[平倫久] 원역에 대한 다례를 이달 초3일로 정하였기에, 같은 날 신 등이 함께 관소(館所)으로 가서 전례대로 배풀어 행한 뒤에 해조로 보내는 서계 2통과 별폭 2통,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 1통과 별폭 2통 등을 받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며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기축(1709) 11월 17일

경접위관 부사직 이세근이 11월 초10일 성첩한 장계. 관백의 고부차왜 다이라 마사찌[平眞致]의 상선연을 배풀어 행한 연유는 이미 치계하였거니와, 동차왜가 이달 초10일 배를 탔으며, 돌아들어가는 한 조목은 이전부터 동래부사가 추후에 장계로 알리기 때문에, 신은 당일 이곳에서 출발하여 전진하고 있음. 차왜가 3차에 걸쳐 바친 예물 단자 3통을 감봉하여 예조로 올려 보내고, 물건은 동래부로 수송하여 추후에 올려 보내도록 하였으며,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는 일임.

一. 접위관 대인 합하 봉정(奉呈).

아름다운 국화가 누런 빛을 바치는데, 이 때 안정하시는 맛이 더욱 더 맑으시리라 위안드립니다. 아래에 적은 보잘 것 없는 토산품은 혹시라도 좋은 날 한 번 감상할 거리가 될지, 웃으며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펴지 못합니다.

기축(1709) 9월. 일본국 부사(訃使). 도장 찍음.

채화대연갑(彩畵大硯匣) 1비(備), 소동탕기(小銅湯器) 5제(提), 화도소명(花陶小皿) 20좌(坐), 청패연기(靑貝煙器) 10악(握). 문지(紋紙) 200편(片), 주개과아(朱蓋鍋兒:붉은 두경의 냄비) 1제(提). 제(際).

一. 접위관 대인 합하 봉정(奉呈).

지난번에 다연(茶宴)에서 처음 깨우침을 받들수 있었는데 거듭하여 정성스런 접대를 받고 돌아와서 지내며 한편으로 감사하고 한편으로 기뻐합니다. 근래 어떻게 되돌아가셨습니까? 인하여 보잘것 없는 물품으로 미미한 정성을 표하오니 정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만 펴지 못합니다.

기축(1709) 9월 일본국 부사(訃使). 도장을 찍음.

혁과대부갑(革裹大簿匣) 1비(備), 채화중연갑(彩畵中硯匣) 1비(備), 채화오촌염경(彩畵伍寸畵鏡) 1면(面), 화보아(花甫兒) 20개, 별화대접[別花大貼] 1개, 적동명로(赤銅茗爐) 1위(圍), 별목경(別目鏡) 1조(操), 전자(剪子) 2자루, 적동중층화로(赤銅中層火爐) 1위(圍). 제(際).

一. 접위관 대인 합하 봉정(奉呈).

어제 떠나는 자리에서 조용히 대화할 수 있어서 떨어져 있었던 처지에 위안이 되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더구나 성대한 예로 진수성찬을 펼치시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배를 타고 되돌아갈 날짜가 닥치니 다시 만날 기약이 없는 것이 한스럽습니다. 이에 장차 아래 기록한 물품으로 배에 오르는 정성을 표하오니 살펴서 남겨두시면 다행이겠습니다. 짐짓 이만 하고 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기축(1709) 10월 일. 이척오촌산금병풍(貳尺伍寸撒金屏風) 1쌍, 채화팔촌염경(彩畵八寸畵鏡) 1면, 중천리경(中千里鏡) 1개, 청패연기(靑貝煙器) 20악(握), 화대사발(花大沙鉢¹⁹⁾) 10개, 화중접시[花中貼匙] 10개, 대동탕기(大銅湯器) 3제(提), 소동탕기(小銅湯器) 5제(提). 문지(紋紙) 100편(片).

기축(1709) 11월 24일

경접위관 병조정랑 이정제와 동래부사 권이진이 11월 17일 성첩한 장계. 관백의 고경차왜 다이라 마찌큐우[平倫久] 원역 등에 대한 하선연을 이달 16일로 정하였는데, 같은 날 신 등이 함께 초량 객사(客舍)로 가서 차왜 등이 전례대로 진상 숙배한 뒤에 하선연을 그대로 베풀었으며, 공사 예단 잡물 또한 수량을 대조하여 들여 주었다는 일임.

19) 원본의 ‘沙体’는 ‘沙鉢’의 초서체를 잘못 옮겨 적은 듯하다.

기축(1709) 11월 28일

동래부사 권이진이 11월 20일 성첩한 장계. 이달 17일 신시에 도부한 부산 첨사 조세망(趙世望)의 치통 내용에, “올해 7월 13일 나왔던 관백의 고부차왜의 배 1척에 정관 다이라 마사찌[平眞致]와 봉진압물 1인, 시봉 1인, 반종 16명, 격왜 70명 및 동 차왜의 수목선 1척에 도선주 후지 세이쇼쿠[藤政則]와 격왜 20명 등이 함께 탔으며, 올해 9월 25일 나왔던 당년조 부특송 2호선 1척에 격왜 30명 및 병술년(1706) 7월 18일에 나왔던 소금도왜 6명 등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도합 3척에 당일 진시에 발선하여 돌아 들어갔다는 일임.

기축(1709) 12월 18일

경접위관 병조정랑 이정제와 동래부사 권이진이 11월 30일 성첩한 장계. 관백의 고경차왜 다이라 마찌큐우[平倫久] 원역에 대한 별연(別宴)을 베풀지 말고 건물(乾物)로 들여주기를 원한다고 역관 등이 와서 고하기에, 그 원하는 바대로 이달 29일 동 연회 물품의 건물 및 공사 예단 잡물을 아울러 수량을 대조하여 들여 주었으며,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기축(1709) 12월 25일

경접위관 병조정랑 이정제가 12월 16일 성첩한 장계. 관백의 고경차왜 다이라 마찌큐우[平倫久] 원역 등의 상선연을 이달 15일로 정하였는데, 부사 권이진은 습담(濕痰)의 묵은 병으로 여러 달 심하게 앓고 있어 스스로의 힘으로 가서 참여할 수가 없기에, 같은 날 신이 홀로 관소로 가서 전례대로 베풀어 행한 뒤에, 공사 예단 잡물을 또한 수량을 대조하여 들여 주었으며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一. 경접위관 병조정랑 이정제가 12월 20일 성첩한 장계. 관백의 고경차왜 다이라 마찌큐우[平倫久]의 상선연을 베풀어 행한 연유는 이미 치계하였거니와, 동 차왜가 이달 20일 배를 탔으며, 돌아들어가는 한 조목은 이전부터 동래부사가 추후에 장계로 알리기에, 신은 당일 이곳에서 출발하여 전진하고 있음. 차왜가 두 차례 바친 예물 단자 2통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오며,

차비 당상역관 한후원(韓後瑗)²⁰⁾은 병으로 다닐 수가 없으므로 뒤쳐지게 하였기에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는 일임.

一. 접위관 대인 합하 봉정(奉呈)

지난번에 예를 갖춘 잔치에서 아름다운 모범을 접할 수 있었는데 더구나 여러 가지 성대한 잔치를 받았습니다. 인하여 이웃 우호의 큼을 생각건대 흐려지지 않고 더함이 있는지라 실로 감사와 다행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에 삼가 보잘것없는 물품으로 간략하게 미미한 정성을 표하오니 아무튼 높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다하지 못합니다.

기축(1709) 11월 고경사(告慶使) 그의 도장을 찍음.

혁과대부갑(革褰大簿匣) 1비(備), 채화중연갑(彩畵中硯匣) 1비, 채화오촌염경(彩畵五寸畵鏡) 1면, 화대도기(畵大陶器) 2개, 적동소탕기(赤銅小湯器) 10개, 적동명로(赤銅茗爐) 1개, 별목경(別目鏡) 1조(操). 제(際).

一. 접위관 대인 합하 봉정(奉呈)

어제 상선연에 거듭 정성스런 접대를 받고 조용하게 대화하여 돌아옴에 맑은 음성이 귀에 남아 있어서, 일어나고 누움에 기쁨과 감사함이 아울러 교차합니다. 이제 돌아가는 배가 모래 있을 예정이라 뒷날 만날 기약이 없기에 이에 가벼운 물품을 갖추어 이별의 정을 표시하니, 웃으며 받아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오직 계절에 따라 더욱 진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갖추지 못합니다.

기축(1709) 12월 일 고경사(告慶使) 그 도장을 찍었음.

첩금소병풍(貼金小屏風) 1쌍, 채화화전갑(彩畵華箋匣) 1개, 별문지(別紋紙) 500편(片), 중화보아(中畵甫兒) 20개. 소도(小刀) 5자루, 우산(雨傘) 4자루, 중동탕기(中銅湯器) 6개. 제(際).

경인(1710) 6월 13일

경상좌수사 이상집(李尙穰)²¹⁾이 6월 초6일 성첩한 장계. 이달 초5일 유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조세망(趙世望)의 치보 내용임. 조선배인지 왜선인지 분간

20) 한후원(韓後瑗, 1659-?): 청주 한씨로 자는 백옥(伯玉)이다. 숙종 4년(1678) 증광시의 역과에 급제하여 왜학(倭學)으로 종사하였다.

21) 이상집(李尙穰, 1644-1722): 전주 이씨로 자는 계방(季芳). 숙종 8년(1682) 무과에 급제하여 경상좌수사와 삼도수군통제사, 평안도병마절도사를 역임하였다.

되지 않는 배 4척이 대마도에서 앞뒤로 나왔다는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문정하라는 뜻으로 역관 등에게 분부하였는데, 초6일 진시에 도부한 가훈도 정만익(鄭晩益)과 가별차 변계(邊槩)²²⁾ 등의 수본 내용에, “오늘 아침 왜관에 가서 문정하였더니, 제1척은 통신사를 청하러 오는 대차왜(大差倭)의 배인데 정관 다이라 마사랭[平眞連], 봉진압물 1인, 시봉 1인, 반중 16명, 격왜 70명 및 교대차 나온 의왜(醫倭) 1인, 통사왜 1인, 금도왜 3인 등이 함께 타고 예조 및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를 별폭과 아울러 지참하였으며, 정관왜의 말이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통신사를 청하여 오기 위해 나왔는데, 통신사의 행차가 내년 5월 내로 부산을 출발하여 7-8월 사이에 에도[江戸]에 도착하도록 하며, 경접위관 및 차비역관 당상 당하 2원(員)이 속히 내려오라는 뜻으로 전달해 달라고 이야기하였음. 제2척은 동 차왜의 수목선으로 도선주 다이라 슈우게이[平守經]와 격왜 20명, 제3척은 동 차왜의 견선(撻船)인데 격왜 20명, 제4척은 동 차왜의 각선(脚船)으로 격왜 20명 등이 함께 타고 각기 노인을 가지고 나왔다고 운운 하였다”는 일임.

경인(1710) 6월 14일

동래부사 권이진이 6월 초6일 성첩한 장계. 이달 초2일 신시 쯤에 황령산 봉군 서계명(徐戒命)과 간비오 봉군 김만석(金萬石) 등이 진고하기를,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작은 배 1척이 물마루에서 나온다고 진고하였음. 추후에 도부한 부산첨사 조세망의 치통 내용에, 왜인의 작은 배 1척이 대마도에서 나온다는 석성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초탐하기 위해 두모포만호 양시준(梁時俊)을 정하여 보낸다는 일로 치통하였음.

같은 날 술시에 성첩하고 초3일 자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임. 나오던 왜인의 작은 배 1척을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초탐장 양시준의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가훈도 정만익과 가별차 변계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한 뒤의 수본 내용에, “왜관에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비선 1척에 두왜 1인과 격왜 5명 등이 함께 타고 관수왜에게 보내는 사서 및 노인을 가지고 나왔기로 가지고 있는 노인 1통을 받아 올려 보낸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동 노인을 보내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초5일 미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올해 2월 초1일 나왔던 정해

22) 변계(邊槩, 1687-?): 자는 숙보(肅甫). 숙종 계사년(1713) 증광시의 역과에 왜학으로 합격하였다.

조 제12선에 격왜 20명이 함께 탔고, 지난달 25일 돌아들어가다가 바람을 기다리는 곳으로 되돌아와서 정박하고 있었던 기축년(1709) 11월 17일에 나왔던 관수왜가 타고 온 배에 격왜 40명 및 정해년(1707) 11월 초8일 나왔던 통사왜 1명과 정해년(1707) 12월 20일에 나왔던 통사왜 1명, 대관왜 2인, 기축년(1709) 4월 초4일에 나왔던 문위역관 배에 함께 탔던 사공왜(沙工倭) 2명 등이 함께 탔으며, 금년 4월 초9일 나왔던 문위역관 호행 재판차왜 배에 격왜 40명 및 병술 10월 초10일 나왔던 대관왜 2인과 무자년(1708) 6월 초6일 나왔던 금도왜 2인, 기축년(1709) 4월 초4일 나왔던 구 재판왜 후지 노리 쇼쿠[藤則直]와 시봉 1인, 반중 10명 등이 함께 타고, 도합 3척이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당일 진시에 발선하여 돌아 들어갔다는 일로 치통하였음.

같은 날 유시 쯤에 황령산 봉군 서계명(徐戒命)과 간비오 봉군 김만석(金萬石) 등이 진고하기를,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4척이 선후로 나누어 물마루로 나온다고 진고하였음. 추후에 도부한 부산첨사 조세망의 치통 내용에, 왜선 4척이 앞뒤로 나뉘어 나온다는 석성 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초탐하기 위해 두모포만호 양시준을 정하여 보낸다는 일로 치통하였음.

초6일 오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임. 어제 나왔던 왜선 4척을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초탐장 양시준의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가훈도 정만익과 가별차 변계 등에게 문정하게 한 뒤의 수본 내용에, “어제 밤이 깊어 도착 정박하여 문정하지 못하다가 오늘 아침 왜관에 가서 문정하였더니, 제1척은 통신사를 청하러 온 대차왜의 배에 정관 다이라 마사령[平眞連]과 봉진압물 1인, 시봉 1인, 반중 16명, 격왜 70명 및 교대차 나온 의왜(醫倭) 1인, 통사왜 1인, 금도왜 3인 등이 함께 타고 예조참판과 참의 및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를 지참하였으며, 정관왜의 말이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으나 통신사를 청하기 위해 나왔는데, 통신사의 행차가 내년 5월 내로 부산에서 출발하여 7-8월에 에도[江戸]에 도착하도록 함이 마땅하며, 경접위관 및 차비역관 당상 당하관 2원(員)이 속히 내려오라는 뜻을 전달해 달라’고 이야기하였음. 제2척은 동 차왜의 수목선에 도선주 다이라 슈우게이[平守經]와 격왜 20명, 제3척은 동 차왜의 견선(撓船)에 격왜 20명, 제4척은 동 차왜의 각선(脚船)에 격왜 20명 등이 함께 타고 각기 노인을 가지고 나왔는데, 수목선의 노인 1통을 받아 올려 보내거니와, 이른바 견선(撓船)과 각선(脚船) 등은 규정 외이기로 노인을 받지 아니하고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 일렀으며, 정관왜가 가지고 있는 서계는 다례하는 날 전례대로 바칠 계획이라 운운하기로, 등본을 올려보낸다”는 수본이었음. 이에 의거하여 위 항목의 등본을 보내거니와, 수목선의 노인 서면(書面)에 ‘각도각관방어소(各道各官防禦

所)’라 적어 넣었기로 전례대로 물리쳐 받지 아니하고 연유를 아울러 치통하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위 항목의 통신사를 청하러 온 차왜가 지참하여 온 원 서계는 추후에 다례하는 날 받아서 올려 보낼 계획이며, 동 서계의 등본 1통 및 비선의 노인 1통 등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고, 규정 밖에 나온 왜선은 급속히 되돌려보내는 일 및 격식을 어긴 노인을 고쳐 바치라는 뜻으로 다시 역관들에게 명하여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였음. 전례를 가져다 살펴보니 신유년(1681) 통신사를 청하러 온 차왜가 나왔을 때는 단지 반종 14명, 격왜 50명만 접대하였고, 차비역관도 당하 2원이 와서 대기하였는데, 이제 이번 차왜는 반종 16명과 격왜 70명을 거느리고 왔고 또 당상 당하 역관을 보내도록 청하였는바, 신유년(1681) 사례와 비교하면 어긋남이 있기로, 한결같이 신유년(1681) 사례대로 데려온 반종과 격왜, 그리고 차비 역관을 모두 당하관으로 접대한다는 뜻으로 다시 역관들에게 명하여 차왜에게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였으니, 그 조정을 기다려 추후에 장계로 알릴 계획이거니와, 차왜가 이미 나왔으니 왜관에 머무르면 폐단이 있으니 접위관을 해조에 명하여 각별히 재촉하여 내려보내게 할 것. 초6일 신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조세망의 치통 내용에, 올해 3월 17일 나왔던 비선 1척에 두왜 1인, 격왜 7명 등이 함께 타고 관수왜의 사서를 가지고 당일 진시에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는 일로 치통하였기에 아울러 치계하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권이진의 장계를 보면 통신사를 청하러 온 대차왜의 배에 정관 다이라 마사령[平眞連]의 말이, 통신사의 행차는 내년 5월 내로 부산에서 출발하여 7-8월 사이에 에도[江戸]에 당도할 수 있도록 하며, 경접위관 및 차비역관 당상 당하 2원이 속히 내려오라는 뜻을 전달해달라고 이야기 하였다고 하며, 위 항목의 차왜가 데려온 반종은 전례를 가져다 살펴보니 신유년(1681) 차왜가 나왔을 때는 반종 14명과 격왜 50명만 접대하였고 차비역관으로 당하관 2원이 와서 대기하였는데, 이제 이번 차왜는 반종 16명, 격왜 70명을 데려 왔으며 또한 당상 당하 역관을 보내라고 청하니, 신유년(1681)에 비하여 어긋남이 있기로, 반종과 격왜, 그리고 차비역관에 대하여 다시 역관들에게 명하여 그 조정을 기다려 다시 장계로 알릴 계획이거니와, 차왜가 이미 벌써 나왔는데 왜관에 머물면 폐단이 있으니 접위관을 해조에 명하여 각별히 재촉하여 내려 보내달라고 하였는바, 접위관 및 차비역관은 장계대로 해조와 해당 사역원에 명하여 재촉하여 내려보내며, 통신사를 차출하여 보내는 일은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치하고, 차왜가 데려 온 반종 및 격왜를 접대하는 일은 한결같이 신유년(1681)의 사례

대로 접대를 허락함이 마땅하니, 이대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49년(1710) 6월 14일 우승지 신 이민영(李敏英)²³⁾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一. 통신사를 청하러 온 차왜 다이라 마사렐[平眞連]이 지참하여 온 서계 등본.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 다이라 요시가다[平義方] 봉서(奉書)

조선국 예조참판 대인 함하.

주명(朱明:더운 여름)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엿드려 생각건대 귀국은 안녕 하십니까? 본방 역시 그 법도는 한가지라, 함께 즐거워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대군(大君)께서 보명(寶命)을 이어 받으시어 국가를 편안하고 화평하게 하니, 성대한 사절이 내빙(來聘)하는 기일은 내년 5월에 귀국에서 발선하여 7-8월 사이에 동무(東武)에 도착하되,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날짜를 계산하여 시기를 어기지 마십시오. 이에 정관 다이라 마사렐[平眞連]과 도선주 다이라 슈우게이[平守經]를 차출하여 보내어 알립니다. 애오라지 보잘것없는 예물로 멀리서 정성을 표하며, 다시금 국가를 위하여 계절에 따라 자중하시기 바라며, 아무튼 밝혀 살피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갖추지 못합니다.

보영(寶永) 7년(1710) 경인 4월 일.

별폭: 혁과대부갑(革裹大簿匣) 1비(備), 수정 갓끈[水晶笠緒] 2결(結), 채화유부방분(彩畵有趺方盆) 20매(枚), 첩금소병풍(貼金小屏風) 1쌍, 대화진주(大和眞朱) 2근, 채화팔촌염경(彩畵八寸奩鏡) 1면, 채화문갑(彩畵文匣) 1개, 적동루오관반(赤銅累伍盥盤) 2부, 주간연기(朱竿煙器) 30약(握). 제(際).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 다이라 요시가다[平義方] 봉서(奉書)

조선국 예조참의 대인 함하.

회화나무 바람이 여름을 맞았습니다. 가만히 생각건대 귀국의 지치(至治)와 균후(鈞候)가 더욱 나아지니 기쁨과 위로됨이 배로 더합니다. 이제 정관 다이라 마사렐[平眞連]과 도선주 다이라 슈우게이[平守經]를 보내어 성사(星使)가 내빙(來聘)할 기일을 알리오니, 바라건대 내년 5월에 귀국에서 출발하시어 7-8월 사이에 동무(東武)에 도착하시면 되겠는데, 바다를 건너는 기일은 바라건대 지연하지 말기 바랍니다. 구구한 정은 사절의 입에 붙여 두었습니다.

23) 이민영(李敏英, 1653-1722): 전주 이씨로 세종(世宗)의 서자(庶子) 계양군(桂陽君)의 후손이며, 자는 사행(士行)이다. 숙종 10년(1684) 정시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우승지, 의주부윤 등을 역임하였다.

넉넉지 못한 토산품으로 미미한 정성을 표하오니 웃으시며 머물러 두시면 다행이겠습니다. 아무튼 높이 살피주시기 바라오며 갖추지 못합니다.

보영(寶永) 7년(1710) 경인 4월 일.

별폭: 채화옥괘연(彩畵玉掛硯) 1비(備), 수랍중명완(粹蠟中茗碗) 20개, 대화진주(大和眞朱) 2근, 채화대층갑(彩畵大層匣) 1비(備), 채화대원분(彩畵大圓盆) 10매, 적동명로(赤銅茗爐) 2위(圍), 적동루오관반(赤銅累伍盥盤) 1부. 제(際).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 다이라 요시가다[平義方] 계서(啓書)

조선국 동래 부산 양 영공(令公) 합하

아득히 생각건대 여러분의 평소 생활이 진중하시리라 생각하며 우러러 바라는 마음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이에 내년에 사절이 내빙하는 기일을 알리기 위하여 사신 하나를 보내어 예조에 서계를 바쳐 알려 고하오니, 이 일을 신속히 전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잘 것 없는 저희 나라 산물을 별폭에 기록하였으니 웃으며 받아 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갖추지 못합니다.

보영(寶永) 7년(1710) 경인 4월 일.

동래부사공 별폭: 채화유부방분(彩畵有趺方盆) 10매, 동화지(桐花紙) 400편, 주칠대원분(朱漆大圓盆) 10매, 대화진주(大和眞朱) 1근, 동관연기(銅管煙器) 10기. 제(際).

부산영공 별폭: 채화오촌염경(彩畵五寸奩鏡) 2면, 수정 갓끈[水晶笠緒] 1결(結), 흑칠중층갑(黑漆中層匣) 1비(備), 적동루오관반(赤銅累伍盥盤) 1부, 수랍중명완(粹蠟中茗碗) 20개. 제(際).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앞서 통신사를 청하러 오는 차왜 다이라 마사령[平眞連]이 지참하여 온 서계의 회답 및 동래 부산에서의 답장 초고를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지어내게 하였는데, 별폭의 회례 물품을 전례대로 마련하여 계목에 후록하였으니, 급속히 마련하여 내려 보내는 일로 해조 및 본도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후록.

참관 회례: 인삼 2근, 범 가죽 1장, 표범 가죽 1장, 흰 명주 10필, 흰 모시베 10필, 검은 삼베 7필, 흰 무명 20필, 황모필 30자루. 이상 해조에서 마련함. 화석 5장, 넉장 붙인 유둔 3부, 참떡 30홀. 이상 본도에서 지급.

참의 회례: 인삼 2근, 범 가죽 1장, 표범 가죽 1장, 흰 명주 7필, 흰 모시베 7필, 검은 삼베 5필, 흰 무명 20필, 황모필 30자루. 이상 해조에서 마련함. 화

석 5장, 녁장 불인 유둔 2부, 참떡 30홀. 이상 본도에서 지급.

동래 부산 두 곳의 회례. 각각: 흰 명주 5필, 흰 모시베 5필, 검은 삼베 3필, 흰 무명 10필, 황모필 20자루. 이상 해조에서 마련함. 화석 3장, 녁장 불인 유둔 1부, 참떡 20홀. 이상 본도에서 지급.

강희 49년(1710) 6월 14일 우승지 신 이민영(李敏英)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一. 예조 단자. 이제 이번 통신사를 청하러 온 차왜 다이라 마사령[平眞連] 등의 하선연과 상선연, 왜관에 머물 때의 별연 도합 세 차례의 연회 및 경접 위관이 지참하여 가는 예단 등의 물품을 전례대로 마련하였으니, 급속히 준비하여 내려보내는 일을 해조 및 본도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차왜의 3차 연회에 증정 지급할 물품. 각각: 인삼 1근, 흰 명주 5필, 흰 모시베 5필, 검은 삼베 3필, 흰 무명 5필, 황모필 20자루. 이상 해조에서 마련. 화석 3장, 녁장 불인 유둔 2부, 참떡 20홀. 이상 본도에서 지급.

도선주 1인에게 3차의 연회에 증정 지급할 물품. 각각: 인삼 1근, 흰 명주 3필, 흰 모시베 3필, 검은 삼베 3필, 흰 무명 4필, 황모필 20자루. 이상 해조에서 마련. 화석 3장, 녁장 불인 유둔 2부, 참떡 20홀. 이상 본도에서 지급.

압물 1인과 시봉 1인에게 각각 3차의 연회에 증정 지급할 물품. 각각: 흰 명주 2필, 흰 모시베 2필, 흰 무명 3필. 이상 해조에서 마련함.

반중 14명에게 각각 3차의 연회에 증정 지급할 물품. 각각: 흰 명주 1필, 흰 모시베 1필, 흰 무명 2필. 이상 해조에서 마련함.

접위관이 지참하여 갈 예단: 인삼 3근 12냥, 표범 가죽 3장, 흰 명주 10필, 흰 모시베 10필, 검은 삼베 7필, 흰 무명 20필, 황모필 40자루. 이상 해조에서 마련함. 화석 5장, 녁장 불인 유둔 5부, 참떡 40홀, 이상 본도에서 지급.

강희 49년(1710) 6월 14일 입계하여 입계한대로 시행하라 하셨음.

경인(1710) 6월 19일

비변사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의 사연을 보면, 통신사를 차출하여 보내는 일을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라 하였는바, 관백이 새로 서면 사절을 보내어 통신하는 것이 당연한

전례이니, 해조에 명하여 미리 사신을 선발 차출하고, 다른 나머지 일은 전례를 상고하여 거행함이 어떠할지? 강희 49년(1710) 6월 19일 동부승지 신 정래상(鄭來祥)²⁴⁾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경인(1710) 7월 초10일

경접위관 부사과 정도복(丁道復)²⁵⁾이 7월 초3일 성첩한 장계. 신은 지난달 17일 사조(辭朝)하고 이달 초2일 동래부에 도착하였거니와, 통신사를 청하러 온 차왜 다이라 마사령[平眞連]의 다례는 날짜를 정하여 배풀어 행한 뒤에 추후에 장계로 알릴 계획이오며, 연유를 먼저 치계하는 일임.

경인(1710) 7월 21일

경접위관 부사과 정도복이 7월 12일 성첩한 장계. 통신사를 청하러 온 차왜 다이라 마사령[平眞連] 원역 등의 다례를 이달 11일로 정하였는데, 동래부사 신 권이진은 병세가 한결같이 위중하여 결코 자력으로 가는 참여할 형편이 아닌지라, 신이 혼자 관소로 가서 전례대로 배풀어 행한 뒤에, 동 왜인이 바친 해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2통과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 1통과 별폭 2통 등을 받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냄.

다례할 때 차왜가 누누이 통역하여 말하기를 “관백은 닛꼬오산[日光山]에 분향하는 일은 임술년(1682)의 사례대로 없애도록 하며, 저군(儲君)의 나이가 어려서 예를 이룰 수가 없으니 이번에는 세 사신이 배례(拜禮)를 하지 않도록 하며, 통신사의 호행차왜는 내년 정월에 당연히 나올 것이니, 세 사신이 미리 부산에 내려와서 부산에 머물다가 5월 내로 기어코 바다를 건너서 수로로 갔다가 되돌아올 때 풍파의 우려를 면하도록 하며, 세 사신의 배는 이번에는 이전같이 하지 말고 기일에 앞서 제조하여 십분 완전하고 견고하게 하며, 이제 이번 세 사신의 군관(軍官) 가운데 만약 일본 풍속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고 직급이 높은 왜인이나 낮은 왜인을 막론하고 일체로 지나가는 도로에서 능멸하는 폐단이 끊어지지 않는 일이 있다면 도주에게 장애됨이 있을 뿐 아니라,

24) 정래상(鄭來祥, 1643-1717): 동래 정씨로 자는 대숙(大叔), 숙종 1년(1675) 증광시에 생원이 되고, 숙종 5년(1679) 정시에 합격하여 승정원 승지를 역임하였다.

25) 정도복(丁道復, 1666-1720): 압해 정씨로 자는 내중(來仲)이다. 숙종 20년(1694)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공조참의, 승정원 좌부승지를 역임하였다.

또한 사행(使行)에 있어서도 광채가 없을 것이니, 성신(誠信)으로 교류하는 도리에 있어서 어찌 신중하게 하는 도리가 없어서야 되겠는가 하였으며, 세 사신이 관백에게 행례(行禮)할 때는 오가며 말을 전하는 일이 제법 있으니, 당상역관 세 사람은 반드시 왜어(倭語)에 능통하고 사리를 환하게 아는 자를 각 별히 선발해서 차출하여, 때가 되어 말하지 못하거나 답하지 못하는 폐단이 없게 하고, 임술년에는 역관이 많지 않아 걸핏하면 장애가 있었으니, 이번에는 당하 역관 서너 사람을 인원수를 더 선발 차출하여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제반 인원수는 임술년(1682)의 사례대로 하며, 세 사신을 속히 차출하여 도중에 통보해주도록 하며, 마상재(馬上才)를 하는 사람도 또한 택하여 보내되 익숙하게 잘 달리는 말 3필을 전례에 비추어 데려 오며, 별폭의 매와 말은 한결같이 예전 규정대로 미리 선택하여 준비하였다가, 바다를 왕래할 즈음에 반드시 병으로 손상할 우려가 없지 아니하니, 이번에는 원 수량 외에 또한 참작하여 수를 더하여 예비하도록 하며, 일본의 풍속에는 말의 상을 볼 적에 선모(旋毛)가 있는 것을 꺼리니, 이제 말 그림을 내보내어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말의 색깔은 검거나 혹은 얼룩말이 좋다고 운운하였는바, 별도로 규정 외의 말이 있어서 논란하거나 어긋나서 뒤엎을 만한 것이 없기로, 그 말을 기록하여 알리오며, 동 왜인이 왜관으로 되돌아간 뒤에, 또 별지 2통을 바쳤는데, 모두 통신사의 행차 절목을 말하였기로, 전례를 가져다 살펴보니, 이는 임술년(1682) 도해역관을 호송해 온 차왜가 한 일인데, 이번에는 이 차왜가 미리 먼저 하였으나, 별로 선후로 논할 만한 것은 없고 규정 외의 대단한 일은 없기로, 동 2통의 종이에 진달한 바를 전례대로 후록하여 계품하였으니,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여 분부하시며, 회답서계도 해조에 명하여 각별히 재촉하여 내려 보내어 먼 곳 사람이 오래 지체하는 폐단이 없게 하여주시기를.

진정(陳情) 조목

一. 닛꼬오산[日光山] 알묘(謁廟)와 저군(儲君)에 대한 배례(拜禮)는 이번에 이 두 가지 일이 없으나, 제사의 공급 물품과 예단 물건은 없애지 않고 갖추어 장만할 일.

一. 본주에서 통신사를 맞이하고 호송하는 인원은 내년 정월 내에 보내려고 하니, 귀국의 병사(聘使)는 5월 중순에 부산에서 닻줄을 풀기를 바라며, 혹시라도 지연하면 바닷길에 가고 올적에 풍파가 있을 우려가 있을까 염려되는데, 다만 배는 기일에 앞서 십분 완전하고 견고하게 제조하여야 좋으며, 그 선박의 수효는 대소 6척으로 정하여 한결같이 앞서의 규정대로 할 것.

一. 임술년(1682) 귀국 사신이 내빙할 때 상관 가운데 간혹 함부로 무례하여 역관의 지휘에 따르지 않는 일이 있었는데, 물어보면 이는 모두 귀족 자체로서 문벌이 평소 높은 자가 우리나라를 관람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잠시 하급 관료로 몸을 굽혔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무릇 역관이 비록 미미한 관직이나 이미 무거운 직임(職任)을 받아 상상관(上上官)이 되어 우리나라에서 향응하는 규정이 극도로 우대하는데, 이제 상관임에도 지휘에 복종하지 않고 도리어 또 제멋대로 하였으므로,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만히 혹 귀국은 원래 예의의 나라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아래 사람이 위사람을 능멸하는 풍속이 있는지 의심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이런 인물은 풍속을 알지 못하고 쉽사리 사건을 만들어 내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는가? 이번에는 귀족 자체는 결코 데려오지 말기 바라는 일임.

一. 귀국의 빙사(聘使)를 인견(引見)할 때 말을 전하거나 뜻을 소통하는데는 오직 상상관(上上官)만 힘입을 뿐이고, 역관 가운데 사람마다 언어에 능통한 것은 아니니, 만일 하나라도 분에 넘치게 사람을 뽑아 함부로 그 인원수를 채우면 예를 행할 즈음에 해됨이 알지 아니하다. 임술년(1682)에 박동지(朴同知)가 상상관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언어를 통역하는데 익숙하고 사정에도 밝아서 진퇴하며 말을 전함에 참으로 볼만하였다. 이번에는 박동지와 같은 사람을 힘써 선발하여 데려오기를 바란다. 대체로 상상관의 상판사(上判事)는 언어에 능통하고 사정에 밝은 것이 중요한데, 만약 그런 사람이 아니면 동무(東武)에 장애가 있을 뿐 아니라 바다와 육지로 오가는 즈음에 그 폐단이 참으로 적지 않으니, 천만 바라건대 십분 정밀하게 선발하여 데려 올 일.

一. 임술년(1682)에 역관이 많지 않아 결핍하면 장애가 있었으니, 이번에는 군관의 인원수를 줄이고 말을 아는 사람 7-8명을 교체하여 인원수를 보충함으로써 피차간에 편하게 함이 어떠할지.

一. 빙사(聘使) 일행의 인원수는 굳이 앞서의 규정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익히 알고 지나는 길에서의 물품 공급은 사례를 따라 미리 장만하는데, 만약 한 사람이라도 늘어나면 때가 되어 시끄러울 우려가 있을까 염려되니, 데려오는 인원수는 하는 일의 고하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앞서의 규정대로 하여 미리 조목을 통지할 것.

一. 삼사(三使)를 차출하여 정한 뒤에 관함(官銜)과 성명을 속히 관수에게 통보할 일.

一. 국서(國書)의 별폭(別幅)은 삼사(三使)의 예단 물건과 아울러 한결같이 앞서의 규정대로 하여 정밀하고 자세하게 하도록 할 것.

一. 글을 잘하고 글씨를 잘 쓰며 활쏘기 재능에 능한 사람을 정밀하게 택하여 데려 올 일.

一. 마상재(馬上才)를 하는 사람을 데려오는 규정이 있는데, 익히 조련한 말 3필을 힘써 가려서 사례에 비추어 데려 올 일.

一. 별폭의 매와 말은 한결같이 예전 규정대로 미리 선택하여 준비해 주기 바람. 임술년(1682)에는 말은 비록 다른 일이 없었으니 매는 간혹 죽고 손상되었다. 가만히 생각건대 길이 아득하게 멀고 계절이 더운 철이라 만에 하나라도 병들어 죽는 우려가 있으면 때가 되어 변통하기가 어렵게 될까 두렵다. 이번에는 말과 매를 정수 외에 데려와 부응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나라 풍속에 말의 상을 보는데 선모(旋毛)가 있는 것을 꺼리는데, 이제 말 그림을 내어보내어 채택하는데 편하게 하며, 말 색깔은 검은 색이나 혹은 얼룩말이 좋겠다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경접위관 정도복의 장계를 보면, 통신사를 청하러 온 차왜 다이라 마사령[平眞連]이 말을 통역하여 이르기, “관백이 닛꼬오산[日光山]의 분향은 임술년(1682)의 사례대로 없앤다고 하였으며, 저군(儲君)은 나이가 여러 예를 이룰 수 없으니 세 사신이 배례를 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통신사의 호행차왜가 내년 정월에 마땅히 나올 것이니, 세 사신이 미리 내려와 부산에 머물다가 5월 내로 기어코 바다를 건너게 해 달라고 하였으며, 배는 기일에 앞서 제조하여 십분 완전하고 견고하게 하여 달라고 하였으며, 군관 가운데 직급이 높은 왜인이나 낮은 왜인이나를 막론하고 일체로 능멸하는 폐단은 도주에게 장애가 있을 뿐 아니라 사행에게도 광채가 없다고 하였으며, 세 사신이 관백에게 행례할 때는 말을 전하는 일이 제법 있으니, 당상 역관 3인은 반드시 왜어에 능통하고 사리를 아는 자를 각별히 선발 차출하되, 임술년(1682)에 역관이 많지 않아서 걸핏하면 장애가 있었으니, 이번에는 당하 역관 서너 사람의 인원수를 더하여 선발 차출하여 달라고 하였으며, 그 밖에 제반 인원수는 임술년(1682)의 사례대로 하며, 사신을 속히 차출하여 통보해 주도록 하며, 문장에 능하고 글씨에 능하며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선발하여 데려오고, 마상재 하는 사람도 선발하여 보내되 익숙하여 잘 달리는 말 3필을 사례에 비추어 데려오며, 별폭의 매와 말은 한결같이 예전 규정대로 미리 가려 준비하되 바다를 건너 왕래할 때 병으로 손상될 우려가 없지 않으니 원 수량 외에 참작하여 수량을 더하여 달라고 하였으며, 일본의 풍속에는 말을 상을 볼 때 선모(旋毛)가 있는 것을 꺼리니, 이제 말 그림을 내보내 주어서 채택하고, 말 색깔은 검은색이나 혹은 얼룩말이 좋다고 하였으며, 회답 서계도 해조에 각별히 재촉하여 내려 보내달라

고 하였는바, 이제 이번 차왜가 하는 말은 별로 규정 밖의 일이 없으니, 이대로 거행함이 마땅하되, 당하 역관 3-4인의 인원수를 더 선발하여 보내는 일은 비록 대단하지 아니하나, 일이 전례에 없는 바라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며, 회답 서계는 해당 승문원에 명하여 속히 지어내어 내려 보내게 함이 어떠할지? 강희 49년(1710) 7월 21일 행도승지 신 권상유(權尙游)²⁶⁾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경인(1710) 7월 22일

예조의 계목. 이제 이번 통신사의 행차에 시행할 여러 일들은 임술년(1682) 사례대로 마련하여 계목에 후록하였으니, 이대로 거행한다는 뜻으로 각 해당 관청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후록. 一. 사신이 출발하는 일정 및 바다를 건너는 날자는 관상감(觀象監)에 명하여 택일하여 거행하게 함.

一. 사신이 반전(盤纏:노자) 등의 물자는 해조에 명하여 미리 마련하게 함.

一. 사신 일행에게 하사하는 쌀은 임술년(1682)의 사례대로 마련하여 지급함.

一. 사신의 장복(章服)²⁷⁾[부사(副使) 이상은 모두 당상관(堂上官)의 장복임.]은 상의원(尙衣院)에 명하여 마련하여 지급하고, 종사관(從事官)의 장복은 그 품계의 복장을 만들어 지급하는 일로 호조에 분부할 것.

一. 일행 원역(員役)들의 의복과 화자(靴子:관복 신발) 등의 물자는 공조에 명하여 제용감(濟用監)에서 만들어 지급함.

一. 사신의 형명기(形名旗)²⁸⁾와 독(纛)²⁹⁾은 본도에서 마련하여 지급하고, 상사와 부사의 절월(節鉞)³⁰⁾은 호조와 공조에 명하여 각별히 정밀하게 만들어 보낼 것.

一. 맞이할 때의 취라치(吹螺赤)³¹⁾는 본도에서 정하여 보냄.

26) 권상유(權尙游, 1656-1724): 안동권씨로 자는 계문(季文), 호은 구계(癸溪)이며 권상하(權尙夏)의 아우이다. 숙종 20년(1694)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대사간, 대사성, 대사헌과 형조, 호조, 예조, 이조의 판서를 지내고 우참찬에 이르렀다.

27) 장복(章服): 관원의 신분과 따라 차등을 두고 일정한 무늬를 놓아 꾸민 공식 예복.

28) 형명기(形名旗): 군사를 지휘할 때 사용하는 각종의 깃발.

29) 독(纛): 대가(大駕)의 거둥이나 군사 행진이 있을 때 행렬의 앞에 세워 들고 가는 의장(儀仗)의 하나. 각 부대를 상징하는 일종의 깃발로, 큰 삼지창에 붉은 술을 많이 달아 드리웠다.

30) 절월(節鉞): 절(節)은 왕의 특명을 받은 관원의 신분과 지위를 상징하는 일종의 깃발이고, 월(鉞)은 특명을 받은 관원에게 부여된 생살권(生殺權)을 상징하는 도끼 모양의 물건이다.

31) 취라치(吹螺赤): 군중(軍中)에서 소리를 부는 취타수(吹打手)의 하나.

一. 사신이 가져가는 인신(印信) 1알은 주조한 관방인(關防印)을 갖추어 공조에 명하여 만들어 보내고, 도장집[印家]과 관방인집[關家]과 소가죽 남라개집[南難箇家:문서통]을 한 바리로 만드는 것도 공조에 명하여 마련하게 함.

一. 상선(上船) 2척과 하선(下船) 2척, 소선(小船) 2척에 격군(格軍:노 젓는 군사)은 모두 본도에 명하여 미리 수리하거나 만들고 간택하여 호송함.

一. 상사(上使)의 차제 2원(員)과 군관 6원, 노자(奴子:사내종) 2명, 부사(副使)의 차제 2원과 군관 6원, 노자 2명, 종사관(從事官)의 차제 1원, 노자 1명, 독축관(讀祝官) 1원, 왜통사(倭通事) 당상관(堂上官) 3원, 당하관(堂下官) 7원, 한통사(漢通事) 2원, 사자관(寫字官) 2원, 의원(醫員) 2원, 화원(畫員) 1원, 별파진검군관(別破陣兼軍官) 2인, 마상재(馬上才) 2인, 악공(樂工) 2인, 이마(理馬)³²⁾와 숙수(熟手:요리사) 각 1인은 각 해당 관청에 명하여 선발하여 데려가게 함.

一. 바다를 건널 때 일행을 수검(搜檢)하는 등의 일은 사신이 더욱 엄하게 금단하여, 원역 중에서 만약 함부로 범하는 일이 있으면 조정에 되돌아온 뒤에 일일이 조사하여 계문(啓聞)할 것.

一. 정남침(定南針)은 관상감에 명하여 찾아서 지급함.

一. 일행 원역은 각기 노자(奴子) 1명을 데려 감.

一. 사신 이하가 관문과 나루터를 건너갈 때 보고 검사할 문서는 임술년(1682)의 사례에 의거하여 마련하여 지급함.

一. 일본 국왕에게 보내는 서계에는 전례대로 ‘위정이덕(爲政以德)’ 어보(御寶)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이대로 시행함.

一. 일본국 집정과 대마도주와 수도서인(受圖書人) 등에게 사신이 되돌아 들어올 때 차등을 두어 서신을 보내고 선물을 증정하는 것이 전례라고 하니 이대로 시행함.

一. 사신이 가져가는 예단으로 일본국왕 및 집정(執政) 1인, 집사(執事) 3인, 근시(近侍) 2인, 봉행(奉行) 8인, 대마도주, 수도서인(受圖書人) 2인, 수직왜(受職倭) 5인, 장로(長老) 1인 등 각 왜인에게 전례대로 차등 있게 증정하여 주는 물건은, 호조와 본도에 명하여 미리 마련할 것.

一. 사신을 들여보낼 때 일본 집정과 도주 이하 수도서(受圖書) 왜인 등에게 본조에서 서신을 보내고 선물을 증정하여 주는 규정이 있는데, 전례대로 보내는 서신을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마련하게 함.

32) 이마(理馬): 사복시(司僕寺) 소속의 정6품 잡직(雜職)의 관원. 말을 관리한다.

一. 사신 일행에게 시행할 잡물은 호조 및 본도에 명하여 임술년(1682)의 사례를 상고하여 급속히 마련하여 대령하게 함.

一. 시급한 일이 있으면 파발마(擺撥馬)로 분부할 것.

一. 미진한 조건은 추가로 마련함.

강희 49년(1710) 7월 22일 좌부승지 신 원성유(元聖兪)³³⁾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一. 예조의 계목. 이제 이번 통신사의 행차에 일본국왕 이하 각처에 증정하여 주는 예물을 임술년(1682)에 나온 차왜 다이라 마사고우[平眞幸]가 바친 별단 물목의 수대로 마련하여 계목에 후록 하였으니, 미리 마련하여 대령하는 일을 해조 및 본도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후록:

一. 일본국왕 앞의 예단. [서계(書契)가 있음. 서계 통은 은장식에 주홍색 칠을 함]: 응자(鷹子) 10연(連). [6연은 본도에서 마련. 4연은 강원도에서 마련]. 준마(駿馬) 2필, 안장 구비. [해당 관청에서 마련함]. 범 가죽 15장. 표범 가죽 20장. 담비 가죽 20장. 인삼 50근. 대수자(大繻子) 10필. 대단자(大段子) 10필. 색대사(色大紗) 20필. 흰 모시베 20필. 생모시베 20필, 검은 삼베 30필. 청서피(靑黍皮) 30장. 각색 붓 50자루. [이상은 해조에서 마련함]. 어피(魚皮) 100장. 색지(色紙) 30권. 참떡 50홀. 황밀(黃蜜) 100근. 청밀(淸蜜) 10그릇. [매 향아리마다 1말씩]. [이상 본도에서 마련함].

一. 일본국 왕자에게 증정하는 예단. [서계가 없고 별폭(別幅)이 있음. 통은 은장식에 주홍 칠을 함.]: 응자(鷹子) 5연. [함경도에서 마련함]. 준마 2필, 안장 구비. [해당 관청에서 마련함]. 인삼 30근. 범 가죽 10장. 표범 가죽 15장. 면선(綿線) 10필, 능자(綾子) 20필, 색사(色紗) 10필, 청서피 15장. 각색 붓 50자루. [이상 해조에서 마련함]. 색지(色紙) 30권. 참떡 50홀. 화연(花硯) 5면(面). 어피(魚皮) 100장. [이상은 본도에서 마련함].

一. 집정 1인에게 [서계가 있음. 서계통은 납염(鑱染) 장식에 흑칠을 함]: 범 가죽 3장. 표범 가죽 2장, 대단지(大段子) 3필, 흰 모시베 10필. 청서피 5장, 황모필 30자루. [이상은 해조에서 마련함]. 유둔(油菴) 5부(部). 참떡 20홀, 어피(魚皮) 15장. [이상 본도에서 마련함].

一. 집사(執事) 3인에게 각각, [각기 서계가 있음. 통은 납염 장식에 흑칠을

33) 원성유(元聖兪, 1640-?): 원주 원씨로 자는 명여(命汝)이다. 숙종 9년(1683) 증광시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부윤을 역임하였다.

함]: 범 가죽 2장, 표범 가죽 2장, 대단자 3필, 흰 모시베 10필, 청서피 3장. [이상 해조에서 마련함]. 유둔 5부. 어피 10장. 이상 본도에서 마련함.

一. 서경윤(西京尹) 1인, 근시(近侍) 1인에게 각각. [각기 서계가 있음, 통은 납염 장식에 흑칠]: 범 가죽 1장, 표범 가죽 1장, 흰 모시베 5필, 청서피 2장, 황모필 20자루. [이상 해조에서 마련함]. 참덕 10홀, 유둔 5부. [이상 본도에서 마련함].

一. 봉행 8인에게 각각. [각기 서계가 있음. 통은 납염 장식에 흑칠]: 흰 모시베 10필. 흰 명주 10필. 검은 삼베 5필. 범 가죽 1장. 황모필 20자루. [이상은 해조에서 마련함]. 참덕 10홀. [본도에서 마련함].

一. 대마도주에게. [서계가 있음. 서계통은 납염 장식에 흑칠을 하고, 도주 장로와 수도서인 등에게 보내는 서계는 모두 1통에 넣음]: 흰 모시베 10필. 흰 명주 10필. 검은 삼베 5필. 흰 무명 20필. 범 가죽 2장. 표범 가죽 3장. 인삼 5근. [이상은 해조에서 마련함]. 화석 5장. [본도에서 마련함].

一. 수도서(受圖書) 2인에게 각각. [서계가 있음]: 흰 모시베 5필. 흰 명주 5필. 범 가죽 1장. [이상은 해조에서 마련함]. 화석 3장. 유둔 1부. [이상은 본도에서 마련함].

一. 수직왜 5인에게 각각. [서계가 없음]: 흰 모시베 3필. 흰 명주 3필. 황모필 10자루. [이상은 해조에서 마련함]. 화석 2장. 참덕 5홀. [이상 본도에서 마련함].

一. 장로 1인에게. [서계가 있음]: 인삼 3근. 흰 모시베 5필. 흰 명주 5필. 황모필 20자루. [이상은 해조에서 마련함]. 참덕 10홀. [본도에서 마련함].

일본국왕에게 사신이 줄 예단: 범 가죽 5장, 인삼 10근, 흰 모시베 10필. [이상 해조에서 마련함].

집정(執政)으로부터 중납언(中納言) 등에게까지 사신이 주는 예단. 도합: 인삼 21근. 검은 삼베 85필, 황모필 420자루, 참덕 280홀, 부용향 310매, 범 가죽 6장, 흰 모시베 42필, 소은장도(小銀粧刀) 5자루. [이상 해조에서 마련함]. 색지(色紙) 44권. 백밀(白蜜) 85근. 방백자(房栢子) 500매, 어피 15장. [이상 본도에서 마련함]. 석린(石鱗) 6근[황해도에서 마련함]. 응자(鷹子) 3연.[전라도에서 마련함].

봉행(奉行) 8인 등에게 사신이 주는 예단. 도합: 인삼 8근. 검은 삼베 24필. 황모필 160자루. 참덕 80홀. [이상은 해조에서 마련함]. 색지 24권. [본도에서

서 마련함]. 석린(石鱗) 8근. [황해도에서 마련함]. 사신 일행이 사용할 청심원(淸心元) 100알. [의사(醫司)에서 마련함].

강희 49년(1710) 7월 22일 좌부승지 신 원성유(元聖濡)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운허함.

一. 예조의 계목. 이제 이번 통신사가 가져가는 잡물을 임술년(1682)의 사례대로 마련하여 계목에 후록하였으니, 이대로 급속히 마련하는 일로 해조 및 각 도청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후록:

一. 경상도에 복정(卜定)³⁴).

단 간장[甘醬] 10섬. 간장(艮醬) 1섬. 녹두가루[菉豆末] 10말. 울무 가루[薺苳末] 1말. 청밀 13말. 밀가루[眞末] 10말. 환소주(還燒酒) 150병. 밀계(蜜桂) 1000넙. 납촉(蠟燭) 60자루. [매 자루마다 무게 3냥씩]. 포육(脯肉) 20접[貼]. 전복 10접. 마른 해삼 1섬. 마른 홍합 1섬. 호두 1섬. 황률(黃栗:밤) 2섬. 표고버섯 2말. 곱감[乾柿子] 40접. 잣[栢子] 2섬. 인삼 8근. 백지 50권. 만화석(滿花席) 30장. 채화석 30장. 대유지(大油紙) 4권. 칠선(漆扇) 50자루. 유선(油扇) 200자루. 참기름[眞油] 7말. 녀장 불인 유둔(油苳) 20부. 누룩[眞麴] 40원(圓). 콩[太] 6섬. 팔[赤豆] 7섬. [전세(田稅)로 바꿈]. 범가죽 7장. 표범가죽 3장. 군량 333섬. [전세(田稅)]. 편포(片脯) 2접. 소금 5섬. 사슴가죽 2장. 흰 사발[白沙鉢] 15죽(竹). 흰 보시기[白甫兒] 15죽. 흰 대접[白大貼] 15죽. 흰 접시[白貼匙] 25죽. 흰 종지[白鍾子] 15죽. 백자 대접[白磁大貼] 5죽. 백자 중발[中鉢] 5죽. 백자 접시 10죽. 백자 잔 잔대 구비 8부(部). 백자 종지 3죽. 백자 사발 4죽. 백자 규화잔(葵花盞) 잔대 구비 3부. 큰 차일(遮日) 1부. 작은 차일 3부. 지의(地衣:큰뚝자리) 3부. 면석(面席) 3넙. 덕석[薦席] 3넙. 단석(單席) 3넙. 화석(花席) 3넙. 문방석(紋方席) 1죽. 고족상(高足床) 3부. 안식(安息) 3부(部). 작은 식상(食床) 3. 수반(手盤) 구비. 도장 안장[印鞍子] 1. 여러 가지 구비. 교의(交椅) 3부. 낫쇠 타구(鑰唾口) 3부. 응자(鷹子) 4연. 교자(橋子) 3부. 유기 쫓대 3쌍. 유지 주머니[油紙帄] 4부. 작은 병풍 3부. 작은 서안(小書案) 3부. 사령(使令) 관대(冠帶) 10건(件). 모둔(毛苳) 3부. 일산(日傘) 3자루. 표주박 큰 것 중간 것 모두 24개. 평연(平硯) 3. 집 갖추어. 푸른 일산[靑傘] 3자루. 체[篩子] 6개. 밥고리[食古里]

34) 복정(卜定): 조선시대 정기적으로 징수하던 공물(貢物) 이외에 상급 관아에서 하급 관아로 하여금 그 지방의 토산물을 강제로 바치게 하던 일.

3부. 화연(花硯) 5면. 우산(雨傘) 3자루. 대분토(大分土) 3부. 요[褥] 3부. 채칼[菜刀] 3자루. 소분토(小分土) 3부. 용정(龍亭) 2. 큰 밥술[大食鼎] 4. 관대 가죽 상자[冠帶皮箱] 3. 향동자(香童子) 3좌(坐). 중간 크기의 밥술[中食鼎] 5. 작은 밥술[小食鼎] 4. 좌철(坐鐵) 3부. 부시[火金] 2, 석소(石巢) 갖추어. 부젓가락[火筴] 3쌍(雙). 적쇠[炙金] 3쌍. 놋소라[鑪所羅] 3좌. 놋대야[鑪大也] 3좌. 놋요강[鑪要光] 3좌. 옷칠평반[漆平盤] 4죽. 용탕숫가락[禿匙] 3단(丹). 유기 큰 숟가락[鑪大匙] 3개. 놋젓가락[鑪筴] 3매이(每伊). 놋뚜껑[鑪盖子] 3. 휘건(揮巾) 3. 수건(手巾) 3. 붉은 무명 팔찌[紅綿臂赤] 3쌍. 놋새용[鑪沙用: 작은 술] 3좌, 아리쇠[阿里金:삼발이] 갖추어. 도롱(塗籠:종이 바른 상자) 4바리[駄]. 차보시기[茶甫兒] 3, 차순갈[茶匙]과 차탁[茶卓] 갖추어. 놋주전자[鑪酒煎子] 3. 좌면지(座面紙:제상 위에 까는 기름종이) 30장. 항아리[缸] 4틀[座]. 독[瓮] 11좌. 어피(魚皮) 80장. 오색지(五色紙) 100권. 백사(白沙) 항아리 10좌.[예단(禮單) 끝을 넣어 담기 위하여]. 장계지(狀啓紙) 1권. 장지(壯紙) 12권. 말린 지황[乾地黃] 10냥(兩). 옥리인(郁李仁:산이스라지 씨) 2근 9냥. 마황(麻黃) 7냥. 황기(黃芪) 3근. 맥문동(麥門冬) 10냥. 천문동(天門冬) 1근. 도라지[桔梗] 2근 13냥. 적복령(赤茯苓) 10냥. 시호(柴胡) 10냥. 백출(白朮) 3근 8냥. 방풍(防風) 2근 12냥. 산약(山藥) 2근 11냥. 천남성(天南星) 4냥. 말린 모과[乾木瓜] 5냥. 세신(細辛) 5냥. 인동초(忍冬草) 2근. 백작약(白芍藥) 2근 10냥. 당귀(當歸) 1근. 백복령(白茯苓) 10냥. 천궁(川芎) 7냥. 승마(升麻) 5냥. 전호(前胡) 3냥. 향유(香薷) 2근. 강활(羌活) 5냥. 백지(白芷) 3냥. 창출(蒼朮) 3근 8냥. 황금(黃芩) 8냥. 박하(朴下) 3냥. 적작약(赤芍藥) 2근 8냥. 황백(黃柏) 10냥. 백편두(白扁豆) 4냥. 택사(澤瀉) 6냥. 대황(大黃) 8냥. 소엽(蘇葉:차조기 잎) 7냥. 상백피(桑白皮:뽕나무 뿌리) 5냥. 반하(半夏) 8냥. 애엽(艾葉:쑥잎) 5두름[冬音]. 목통(木通:으름) 10냥. 차전자(車前子:질경이 씨) 2냥. 오미자(五味子) 1근. 형개(荊芥) 4냥. 상품의 가는 도롱이[上細蓑] 3부. 상품의 언치[上鞍赤] 3부. 백적(白赤) 3부. 유삼(油衫) 3부. 달치[月乙赤] 3부. 차숙사(次熟蓑) 44부. 차상품의 언치[次鞍赤] 42부. 짚도롱이[草蓑] 55부. 화자(靴子:가죽신) 정밀하게 구비하여 3부.

전라도(全羅道) 복정(卜定)

응자(鷹子:매) 8연. 울무[薏苡] 2말. 청밀(淸蜜) 3말. 전복 10점. 말린 해삼[乾海參] 1섬. 말린 홍합[乾紅蛤] 1섬. 호두 1섬. 곱감[乾柿子] 30점. 백지(白紙) 90권. 화석(花席) 20장. 옷칠한 부채[漆扇] 50자루. 기름 먹인 부채[油扇]

400자루. 흰 접부채[白貼扇] 30자루. 생강(生薑) 6말. 표고버섯[藟古] 6말. 참기름[眞油] 10말. 밀가루[眞末] 10말. 밀계(蜜桂) 1,000냥. 초[黃燭] 60자루[매 자루마다 무게 3냥]. 미선(尾扇) 20자루. 넝장 불인 유둔(油苴) 10부. 여섯 장 불인 유둔 10부. 누룩[眞麴] 5원(圓). 조기[石首魚] 2,000속(束). 건어(乾魚) 40속. 도련지(搗練紙) 3권. 초주지(草注紙) 20권. 녹두(菉豆) 2섬. 대절 참먹[大節眞墨] 75정(丁). 중절 참먹[中節眞墨] 50정. 포육(脯肉) 30점. 흰 모시베 24필. 참깨[眞荏子] 2섬. 편포(片脯) 2점. 말린 노루[乾獐] 4마리[口]. 찹쌀[粘米] 1섬. 말린 꿩[乾雉] 20마리[首]. 김[海衣] 40점. 소금 4섬. 생울(生栗) 2섬. 녹두가루[菉豆末] 5말. 범가죽[虎皮] 6장. 표범가죽[豹皮] 3장. 사슴가죽[鹿皮] 2장. 차일(遮日) 1부. 장막[帳] 1부. 오색지(五色紙) 15권.

충청도(忠淸道) 복정.

응자(鷹子) 2연. 울무 2말. 청밀 4말. 밀가루 4말. 밀계 1,500냥. 초 80자루[매 자루마다 무게 3냥]. 대절 참먹 75정. 중절 참먹 50정. 포육 20점. 백지 60권. 화석 20장. 참기름 10말. 넝장 불인 유둔 10부. 여섯 장 불인 유둔 10부. 누룩 40원(圓). 조기 1,500속. 건어 40속. 도련지 2권. 초주지 10권. 참깨 1섬. 흰 모시베 30필. 편포 2점. 말린 노루 5마리[口]. 개자(芥子) 3근. 찹쌀 2섬. 말린 꿩 20마리. 범 가죽 3장. 표범 가죽 1장. 차일 2부. 장막 3부. 행수목(行需木) 1동(同).

강원도(江原道) 복정.

청밀 10말. 밀계 1,500냥. 초 100자루[매 자루마다 무게 3냥]. 포육 10점. 말린 해삼 1섬. 말린 홍합 1섬. 인삼 12근. 참기름 3말. 편포 2점. 말린 노루 5마리[口]. 말린 꿩 60마리. 미역[甘藷] 200근. 좁쌀[粟米] 7섬. 메밀[木米] 3섬. 황밀 30근. 오미자 2말. 표범가죽 1장. 배[生梨] 100개.

함경도(咸鏡道) 복정.

응자 8연.

혜민서(惠民署) 전의감(典醫監) 분정.

황기 3근. 도라지 2근 13냥. 백출 3근 8냥. 방풍 2근 12냥. 산약 2근 10냥. 백작약 2근 11냥. 옥리인(郁李仁; 산이스라지 열매) 2근 10냥. 창출 3근 8냥. 적작약 2근 8냥.

황해도(黃海道) 복정.

백렴(白藪) 5근.

강희 49년(1710) 7월 22일 좌부승지 신 원성유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이는 전량 선혜청(宣惠廳)에서 첩정함]

경인(1710) 7월 25일

비변사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시기를. 접위관 정도복(丁道復)의 장계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에, “당하역관 3-4인의 인원수를 더 정하여 보내는 일로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라” 하였는바, 이전부터 통신사의 사행에 역관은 당상 3인, 당하 7인을 데려가는 것이 정해진 전례인데, 어찌 유독 임술년(1682) 사행에서는 역관이 많지 않아서 걸핏하면 장애가 있었는지, 말을 전하고 주선하는 것은 선발하여 차출하는 데 달려 있지 사람이 많음에 달려 있지 아니하니, 전례를 바꾸어 고칠 필요는 없고, 군관을 줄여서 역관의 인원을 더하여 보내는 데는 단지 예전부터 정해진 인원수대로 각별히 선발하여 보내라는 뜻으로 해당 사역원에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49년(1710) 7월 25일 우부승지 신 조도빈(趙道彬)³⁵⁾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一. 동래부사 권이진이 6월 26일 성첩한 장계. 이달 23일 신시 쯤에 황령산 봉군 서장민(徐長民)과 간비오 봉군 이귀석(李貴石) 등의 진고 내용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물마루로 나온다고 진고하였음. 추후에 도부한 부산첨사 조세망의 치통 내용에, 왜선 1척이 나온다는 석성 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초탐하기 위한 두모포만호 양시준의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이석린(李碩麟)³⁶⁾과 별차 정만익(鄭晩益)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한 뒤의 수본 내용임. 왜관에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정해조 제1선 송사왜가 재차 건너온 배에 격왜 40명 및 교대차 나온 도도금 도왜 1인, 도금도왜 3인 등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노인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른바 재차 건너온 것은 규정 밖이기로 노인은 받지 아니하고

35) 조도빈(趙道彬, 1665-): 양주 조씨로 자는 낙보(樂甫), 호는 수와(睡窩). 숙종 36년(1719)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우의정을 역임하였다.

36) 이석린(李碩麟, 1660-?): 해주 이씨로 자는 성서(聖瑞)이다. 숙종 4년(1678) 식년시의 역과에 왜학으로 합격하여 관직이 직장(直長), 품계가 가선(嘉善)에 이르렀다.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렀다는 수본임. 이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하는 일로 치통하였음.

25일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이달 25일 나왔던 정해조 2특송사 2호선에 격왜 30명, 같은 달 27일 나왔던 정해조 2특송사 1호선에 격왜 40명, 올해 6월 초5일 나왔던 대차왜의 견선(撻船)에 격왜 20명 및 기축년(1709) 12월 초 10일 나왔던 우리나라 표류인의 배에 함께 탔던 금도왜 2인과 통사왜 1명과, 동 차왜의 각선(脚船)에 격왜 20명 및 무자년(1708) 7월 초9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4인 등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었으며, 올해 4월 14일 나왔던 비선 1척에 두왜 1인과 격왜 5명 등이 함께 타고, 도합 5척이 당일 진시에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는 일로 치통하였음.

방금 바친 훈도 이석린과 별차 정만익 등의 수본 내용임. 관수왜가 비직(卑職) 등을 보기를 청하여 말하기를, ‘그저께 나온 배편에 이제 이번 통신사 때의 절목과 도해역관을 미리 차출하여 호행차왜가 나오는 즉시 도중으로 들여보내어, 통신사의 행차가 에도[江戸]에 왕래할 때 시행할 절차에 따져 확정해야 할 일이 많으니, 이번에는 왜어에 능통하고 사리를 밝게 아는 자를 선발 차출하여 들여보내 달라는 일로 도중에서 서신이 왔는데, 호행차왜는 다음달에 배를 타고 나왔다가 8월 안으로 기어코 호행하겠다’고 하거늘, 비직 등이 ‘이렇게 막중한 일을 어찌하여 그저께 문정할 때는 이야기하지 않고, 왜 이제 오늘 꺼내는가?’ 하였더니, 동 왜인이 ‘철공(撤供:물자 공급을 중단함)한 관수로서는 업무를 볼 때 머리를 내밀 생각이 없어서이지, 달리 다른 사람에게 미를 수가 없어서 이제 비로소 첨지 등에게 언급한다’ 하였기로, 연유를 수본하는 일이라는 수본이었음.

추후에 도부한 동 역관 등의 수본 내용임. 어제 재판왜가 비직 등을 보기를 청하여 말하기를 ‘공작미 한 가지 일은 저번에 이미 전훈도에게 언급하여 동래 영감 앞에 전달하게 하였는데, 전 훈도가 끝내 한 마디도 전하여 알리지 않았다’고 하면서, 인하여 많은 말을 하며 이르기를 ‘우리 대마도는 본디 바위로 된 섬이라 농사지을 땅이 없어 사람들이 생계를 꾸리지 못하는 형편임은 첨지 등이 눈으로 본 바일 뿐만 아니라 귀국에서도 통찰하고 있는 바라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다. 대개 우리 섬의 주민들은 오로지 이 쌀에 기대고 있는데, 지난 해 연한이 이미 다하였으므로 부득이하여 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으니, 바라건대 첨지 등이 모름지기 이전대로 쌀을 만들어 달라는 뜻으로 말을 만들어 동래 영감 전에 고달해 달라’고 하거늘, 비직 등이, ‘근래에 영남 한 도가 잇달아 흉작이기로 이번에는 조정에서 필시 본디 포목으로 들여

주는 일을 이미 확정하였으니, 우리들이 동래 영감 전에 고달한다 하더라도 결단코 흔들려 열어 줄 도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더니, 동 왜인이 '당초 공목(公木)은 요즘 근래에 들어 주는 포목이 아니라 모두 승수(升數)가 가늘고 자[尺]가 긴 것이었으므로, 신묘년에 쌀로 바꿀 적에 본디 공목을 도로 들여 준다면 반드시 승수가 가늘고 자가 긴 것으로 옛날 같이 되돌려 들여 주는 일로 피차간에 조정하여 수표(手標)를 만들기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그 때 견양목(見樣木)은 아직도 왜관 가운데 매달아 두고 있거니와, 본디 세목(細木)을 견양(見樣) 대로 들여 준다면 어디 간들 쌀로 바꾸지 못하겠는가? 다만 근년 이래로 공목이 점차 승수가 거칠고 잣수가 짧아져서 한 마디도 없이 순순히 받는 자가 없는 것은 그것으로 쌀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귀국에서 저의 섬의 사정을 진념(軫念)하여 공작미를 허락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금까지 60년이다. 이제 연한을 정하여 본디 공목을 들여 주면 우리 섬으로서는 할 말이 없지만 귀국에서 60년 동안 이웃을 보살피 준 혜택은 돌이켜보건대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였음. 비직 등은 '공작미 한 가지 일은 본디 평상시의 규정이 아니고 일시 은혜를 베푸는 사례에 불과하며, 연한의 약속을 정한 것 또한 한 두 번이 아닌데, 일시의 은혜로 베푸는 사례를 이제 와서 다시 구실로 삼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였더니, 동 왜인이 또 말하기를 '도중에서는 이 쌀로 모양을 내던 나머지 공목으로 들여 주면 그 낙망은 차마 말하지 못할 것이고, 내년 통신사의 행차에 우리 섬의 온갖 잡비를 마련하는 것은 모두 미곡인데, 이 쌀이 없으면 어떻게 돈을 얻겠는가? 첨지 등은 한 마디도 빠트리지 말고 잘 진달하여, 이전대로 쌀로 만들겠다는 뜻으로 속히 장계를 올려 우리러 먹여 주기를 기다리는 바람에 부응해 달라'고 하며 누누이 말하여 마지않기로, 연유를 수본으로 하는 일이라고 치통 및 수본하였음.

위 항목의 규정 밖으로 나온 왜선은 속히 되돌려 보내라는 뜻으로 다시 역관들에게 명하여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였음. 방금 역관 등의 수본을 보니, 도해역관을 미리 차출하여 호행차왜가 나오는 즉시 들여보내어, 통신사가 갈 때 절목 가운데 따져서 정할 일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는 왜어(倭語)에 밝은 자를 선발 차출하여 들여보내 달라고 하였는바, 을미년(1655)과 신유년(1681) 양년 등록을 가져다 살펴보니, 모두 별도로 절목을 따져 정하는 일로 역관을 보낸 일은 없었고, 도주가 대마도로 돌아옴에 문위역관이 갔더니, 도주가 함께 말을 주고받다가 그가 되돌아올 적에 대마도주의 별단(別單)이 있어서 약간 조목을 나열하였는데, 대개 새로 죽은 관백에 대한 치제(致祭)와, 집정(執政) 10인 외에 별도의 4원(員)에게도 선물을 보내어 문안하는

것과, 사행(使行) 가운데 매매하는 물건을 지참하지 않을 것, 사신이 만약 일찍 가지 않으면 되돌아오는 것이 반드시 10월이 되어 바람과 파도가 노호(怒號)하여 북쪽으로 바라보며 한심할 것이라는 등의 말일 따름이었으며, 또 봉행(奉行)의 별단이 있었는데 해 놓은 말은, 사신이 가지고 있는 물종(物種)은 반드시 인삼과 범이나 표범 가죽 등 10여 종을 사용하고, 사신이 타는 배가 완전하고 견고할 것, 옷을 넣은 농작이 선명하고 좋을 것, 데려 오는 하인이 새 옷을 입을 것 등등의 일로 모두 긴요한 일은 아니고 가소로운 것이 많았으니, 이런 일로 특별히 역관을 보내어 절목을 따져 정한다고 일컫는 것은 참으로 가소롭고, 또한 마치 우리 쪽에서 스스로 차사를 보내어 예를 묻는 것처럼 함이 있으니, 국가의 체면에 있어서도 또한 어떤 지경이 될지, 이는 전례에 없는 일인지라 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말며, 임오년 등록을 가져다 살펴보니, 그 때는 문위역관을 보내고 되돌아오는 일이 없었으므로, 두 나라의 간사왜(幹事倭)로서 지금 재판 모양으로 있는 후지 지에나와[藤智繩] 및 영후신사차왜(迎候信使差倭)였던 세이 우에몽[清右衛門] 등이 도주의 별폭과 봉행의 별지에 기록된 신사절목(信使節目) 30여 조건 등의 일을 품의 확정하여 돌아갔는데, 만약 이런 사례로 거행한다는 뜻으로 왜관에 있는 차왜에게 타이른다면, 국가 체면에 있어서 손상되는 바가 없을 듯하고, 또한 바다를 건너갔다가 오는 비용과 차왜가 호송하여 갔다가 호송하여 오면서 두 차례의 수송하는 폐단이 없을 것인데, 어찌 해야 할지,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시며, 공작미의 연한을 정한 규정은 연한이 다하면 곧장 늘여주어서 전혀 연한을 정한 의도가 없으나, 대마도의 생계가 한결같이 이 쌀에 달려 있어서 죽기로 청하여 반드시 받아내고야 말겠다고 하는데, 만약 끝까지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면 또한 견고하게 고집하여 그들이 억지로 청하는 소동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을 것인데, 무인년(1698)에 허락해 줄 때 정축년(1697) 조를 추후에 내려주었기로, 마침내 이듬해에 들여주는 규정이 있게 되었으니, 왜인이 미수(未收)라 칭하며 1년 안에 2년분을 함께 받아 내어 이듬해에 주는 폐단을 없애려고 하는데, 이는 조정에서 비록 굽혀서 따르려고 하여도, 본도의 형편이 결코 3만여 석을 1년 안에 들여 줄 이치는 결코 없기로, 왜인이 봄철에 화를 내어 고향치다가 난출(闌出)하는 지경에 이른 것은 대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마는, 이제는 저들 또한 이 일에 대한 희망을 끊었고, 왜인 가운데는 간혹 금년에는 본디 공목 400동을 상인들에게 수표(手標)로 만들어 내어주었다가 내년부터 쌀로 만들어 다음해로 미루는 폐단이 없도록 하려고도 하나, 혹 공작미의 연한에 방해가 있을까 하여 주저하고 있다고 하는바, 기한이 다하면 곧장 연장

해 주는 것이 비록 조정에서 저쪽 만인(蠻人)을 아이처럼 가련하게 여기는 뜻에서 나왔지만 실로 너무 허약한 데 관련되나, 내년에는 통신사가 있어야 하니, 저들의 비용이 평년보다 배로 더할 것이니 그 번민과 절박함이 필시 실정이 아니지는 않을 터이며, 설령 특별히 가련하게 여겨 구휼하는 정치를 베풀어서 특별히 공작미를 허락하더라도, 내년에 통신사를 접대하기 때문에 특별히 기한을 늘여주는 것을 허락하되, 반드시 다음해에 들여 준다는 뜻을 역관으로 하여금 조정하게 하여, 미수(未收)라고 고집하여 말하는 폐단이 없게 함이 일의 형편에 적절할 듯하며, 이 왜인이 나온 지가 90일 가까이 되도록 끝내 입을 열지 않다가 뒤의 재판이 나오면 앞서 왔던 자는 전례대로 철공(撤供)하는 일로 저들의 생각 또한 필시 흔들려 고칠 리가 없는 것을, 떠나면서 비로소 입을 열어 호행 재판이 나오기 전에 요지를 얻어 들어가게 해 달라고 간청한다 하였는바, 묘당에 명하여 속히 품의 조처하여 분부하시며, 통신사를 청하러온 대차왜의 반종과 격왜 인원수는 누차 훈도 별차에게 재촉하였는데, 이제 비로소 한결같이 신유년(1681) 사례대로 반종 14명, 격왜 50명의 접대를 허락한다는 뜻으로 조정하였는바, 증정할 잔치와 예단 잡물을 해조에 명하여 수량을 줄여 마련하여 내려 보내 주시기를.

경인(1710) 7월 26일

이번 7월 25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영의정 이여(李爾)가 계품하기를, “동래부사 권이진의 장계에 ‘차왜가 통신사가 갈 때의 절목을 강정(講定)하는 일로 도해역관을 보내주기를 청하였는데, 등록을 가져다 살펴보니 을미년(1655)과 신유년(1681) 두 해에는 문위역관이 되돌아오는 편에 절목을 부쳐 보내었고, 임오년(1702)에는 문위역관이 들어간 일이 없으므로, 간사차왜(幹事差倭) 및 통신사 영후차왜(迎候差倭)가 나올 적에 절목을 지참하여 왔으니, 이제 별도로 역관을 보내어 바다를 건너는 폐단을 끼칠 필요가 없다’고 운운하였는데, 예조의 등록을 가져다 살펴보니 과연 동래부사의 장계와 같으니 이대로 시행함이 마땅할 듯합니다”라고 하였더니, 상감께서 “그대로 하라”고 하셨음. [비변사, 사역원, 예조로]

이번 7월 25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영의정 이여(李爾)³⁷⁾가 계품하기를 “동래부사 권이진의 장계에 ‘공작미의 일로 연한이 다한 뒤에 매년 연한을 물리는 것은 매우 심히 싫지만, 이번에는 통신사가 이미

장차 들어갈 것이고 도중의 비용이 적지 않을 터라 특별히 지급을 허락함이 마땅합니다'라고 하였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대마도의 생계가 오로지 이 쌀에 의지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먼 곳의 사람들을 회유하는 도리에 있어서 그들의 생계를 끊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또한 이해로 말하더라도 공작목(公作木) 1 필을 12말[斗]의 쌀로 정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은데, 공작미의 지급을 허락한 것은 당초 특별한 은혜에서 나왔으나 그대로 규례(規例)가 성립되어 연한이 찬 뒤에 곧장 기한을 물리기를 청하면 조정에서는 매번 누차 견고히 고집한 뒤에 비로소 허락하여, 도리어 국가의 체면에 손상됨을 면치 못하였는데, 만약 끝내 지급하지 않아서는 안될 것이면 당초에 견고하게 아낄 필요가 없으므로, 을유년(1705)에 신이 고향집으로 물러난 뒤에 조정에서 공작미에 대한 일로 물은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조정의 논의는 다시 연한을 물려서는 안된다고 하였으므로 신은 감히 그렇지 않음을 진술하였으나, 그 뒤에 성교(聖敎)로 5년을 물리되 감히 다시 바라는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할는 일로 엄중하게 더 약속하라고 명하였는데, 이제 와서 많은 사람의 논의가 비록 10년이 지나더라도 연한을 물리는 데는 또한 불가할 것이 없다고 하니, 이는 전일 처분한 의도에 크게 어긋남이 있습니다. 이제 통신사가 갈 때의 온갖 잡비 때문에 특별히 5년 동안 지급을 허락하여 관대한 뜻을 보이고, 그 뒤에 다시 논의하여 조처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하여 경연에서 품의 확정하려고 즉시 회계하지 않았 습니다."라고 하였다. 우의정 김창집(金昌集)³⁸⁾이 말하기를 "통신사가 들어갈 때 도중의 온갖 잡비가 매우 거대하여 저쪽에서 이미 이를 빙자하여 말을 하는데, 이쪽에서도 이것을 말로 하여 허락하면 방해될 바가 없을 듯한데, 비변사의 여러 재상의 의도 또한 모두 허락해도 좋다고 하면서, 혹은 5년으로 한정함이 좋다고 하고, 혹은 10년으로 한정함이 좋다고 하니, 10년은 너무 머니 5년으로 한정함이 적절할 듯합니다."라고 하였음. 이(李)가 말하기를 "여러 신하들에게 두루 물어보아 조처함이 어떠할지?"라고 하였음. 상감께서 말씀하시기를 "비변사의 여러 신하들이 각기 소견을 진술하라." 하셨음. 형조판서 이언강(李彦綱)³⁹⁾이 말하기를 "공작목을 쌀로 대신 지급한 것은 당초 일시의 특

37) 이여(李畬, 1645-1718): 덕수이씨로 자는 자삼(子三), 호는 포음(浦陰)이다. 숙종 6년(1680)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거쳐 대사성, 대사간, 도승지, 대제학을 역임하고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38) 김창집(金昌集, 1648-1722): 안동 김씨로 자는 여성(汝成), 호는 몽와(夢窩)이고, 좌의정 상헌(尙憲)의 증손이며 영의정 수항(壽恒)의 아들, 창협(昌協)과 창훈(昌翕)의 형이다. 숙종 10년(1684) 정시 문과를 거쳐 호조, 이조, 형조의 판서를 역임하고 영의정에 이르렀다. 시호는 충헌(忠獻)이다.

39) 이언강(李彦綱, 1648-1716): 전주 이씨로 자는 계심(季心)이다. 숙종 4년(1678)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1682년 통신 부사로서 일본에 다녀왔으며, 여러 관직을 거쳐 좌참찬에 이르렀다.

별한 은혜에서 나온 것으로, 그대로 전례가 되어 연한이 이미 다한 뒤에 곧장 또 청이 있으니 그 습관이 참으로 고약하기에 이것이 조정에서 어렵게 여기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공작목의 가격을 절반으로 하여 그 그다지 과람(過濫)하지는 않고, 앞으로 통신사의 행차에 도중에서의 비용 또한 많을 것이니 4-5년 한정하는 조건으로 지급을 허락함이 무방합니다.”라고 하였음. 이조판서 김우항(金宇杭)⁴⁰⁾이 말하기를 “공작목을 쌀로 바꾼 것은 본디 과람한 것이 아니고, 대마도의 왜인이 모두 우리나라 통신사를 쳐다보고 밥을 먹는데, 우리나라 통신사가 이제 또 들어가니, 5-6년으로 한정하여 지급을 허락하는 것이 무방할 듯합니다.”라고 하였음. 예조판서 황(黃)이 말하기를 “이미 벌써 약속한 뒤에 매년 연한을 물리기를 청하는 것은 그 버릇이 고약한데 매양 굽혀서 허락하는 것 또한 국가 체면에 손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저들 역시 고집할 바가 있으니, 연한은 비록 모르겠으나 몇 년으로 정하여 지급을 허락함이 무방합니다.”라고 하였음. 이언강(李彦綱)이 말하기를 “대마도의 형세는 우리나라 공작미가 아니면 생계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먼 곳의 사람들을 대접하는 도리에 있어서 그 청을 영영 틀어막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라고 하였음. 상감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마도의 왜인이 오로지 이 쌀을 믿는 것은 명맥(命脈:목숨줄)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미 벌써 연한을 정한 뒤에는 참으로 저들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지나치게 제한하는 절도가 없어서는 불가하지만, 지금은 마침 통신사의 행차가 당면하였으니, 그 청하는 바에 고집할 바가 없지 아니하다. 5년으로 한정하여 지급을 허락함이 좋겠다”고 하셨음.

一. 이번 7월 25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영의정이여(李爾)가 계품한 바, “이전에 통신사가 있을 때 역관으로서 언어가 생소한 자가 많아서 잘 주선하지 못하였는데, 차왜가 이번에는 반드시 선발하여 보내라고 말하였다 하는데, 사역원의 도제조 서(徐)가 신 등에게 알려오기를 ‘왜어를 환하게 이해하는 자는 그런 사람이 전혀 없고, 그 중에서 이전부터 책임을 맡은 자도 혹은 죄를 입고 혹은 상중에 있어서 더욱이 변통하기가 어려운데, 혹 풀어주거나 혹은 기복(起復)하여 차출하여 보내는 일을 모름지기 품달(稟達)하여 변통하기에 달려 있다’고 운운하였는데, 군대의 일로 말하자면 혹 기복하여 종군(從軍)하거나 혹은 죄를 받고 있으면서 스스로 힘을 바치는 자가 있는데, 지금 역관으로서 왜어를 잘 하는 자를 갑자기 다시 얻기

40) 김우항(金宇杭, 1649-1723): 김해 김씨로 자는 제중(濟仲), 호는 갑봉(甲峰)이다.

숙종 7년(1681)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우의정에 이르렀다.

어려우니 변통하는 도리가 있어야 할 듯합니다” 라고 하였음. 우의정 김(金)이 말하기를 “죄를 받고 있으면서 일에 종사하는 것은 이전부터 이미 많이 있었고, 또한 상을 치르고 있는 자는 더욱 어려울 듯하니, 죄명(罪名)이 비록 무겁더라도 짐짓 석방하여 차출하여 보내는 것이 기복하는 것보다 나을 듯합니다.”라고 하였음. 상감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적(罪籍)에 있는 자가 몇 사람인가?”라고 하시자, 이(李)가 말하기를 “당상관으로는 최상집(崔尙曷)⁴¹⁾, 당하관으로는 한중억(韓重億)⁴²⁾, 상중에 있는 자로는 한후원(韓後瑗), 박재창(朴再昌)⁴³⁾입니다.”라고 하였음. 상감께서 말씀하시기를 “죄를 받은 자를 차출하여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음. 형조판서 이언강이 말하기를, “최상집은 바다를 건너갔을 때 동래부의 장계 가운데 효시(梟示)하라는 말까지 있어서 조정에서 적용할 형률(刑律)을 줄여 정배(定配)하였는데, 그 뒤 권이진이 장계를 올려 아뢰기를, 최상집이 차왜와 부동(符同)하여 서계를 전하지 않았다 운운하였으니, 죄명이 이러한데 갑자기 석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사행에 대려 갈 역관으로 끝내 그럴 만한 사람이 어렵다면 혹 변통할 도리가 있어야 할 듯합니다.”라고 하였음. 이(李)가 말하기를 “과연 차왜와 부동하였다면 참으로 용서하기 어려운 죄인데, 만약 가벼운 죄라면 어찌 여기에서 기복을 논하겠습니까? 죄를 받은 자를 차출하여 보내도 오히려 부족하다면, 비록 기복한다 하더라도 구애되어서는 안될 듯합니다.”라고 하였음. 상감께서 말씀하시기를 “죄를 받은 자를 정하여 보냄이 마땅하나, 그 인원수가 부족하면 형편을 보아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라고 하셨음. [비변사, 예조, 사역원으로]

一. 지난번에 인견했을 때 대신의 진달로 인하여 앞으로 있을 통신사의 행차에 적소(謫所)에 있는 역관 최상집(崔尙曷)과 한중억(韓重億) 등을 정하여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일로 하교하셨는데, 석방하여 보내라는 전지(傳旨)를 계하한 뒤에 비로소 거행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감히 품신드린다고 하였더니, 전교에 “석방하여 보내도 좋다”고 하셨음. [비변사, 의금부, 형조로]

41) 최상집(崔尙曷, 1664-?): 무주 최씨로 자는 연보(延普)이다. 숙종 13년(1687) 식년시의 역과에 왜학으로 합격하여 품계가 정헌대부에 이르렀다.

42) 한중억(韓重億, 1660-?): 신평(新平) 한씨로 자는 시중(時仲). 숙종 8년(1682) 증광시의 역과에 합격하여 왜학으로 종사하다가 통정대부 절충장군의 품계를 받았다.

43) 박재창(朴再昌, 1649-?): 무안 박씨로 자는 도경(道卿). 숙종 1년(1675)에 역과에 왜학으로 합격하여 교회(敎誨)를 역임하였다.

경인(1710) 윤7월 초1일

一. 예조 단자. 이제 이번 통신사를 청하러 온 차왜 다이라 마사령[平眞連]이 다례(茶禮)할 때 바친 진청조목(陳請條目) 가운데 시행할 만한 것은 이미 벌써 복계하여 윤희를 받았기로 별단에 적어 넣었으니, 이대로 거행하라는 뜻으로 각 해당 관청 및 해당 도에 아울러 분부함이 어떨지?

一. 낮꼬오산[日光山]에 분향하는 것은 임술년(1682)의 사례로 제거하는 일 및 저군(儲君)의 나이가 어려 예를 치를 수 없기에 사신이 배례를 하지 않게 해 달라고 하였는데, 분향에 사용하는 잡물 및 사신의 배례 등의 일을 거론하는 것은 그만 둘 것.

一. 호행차왜가 내년 정월에 나올 것이니 사신이 미리 내려와 부산에 머물다가 5월내에 기어코 바다를 건너게 해 달라고 하였는데, 이렇게 사신에 분부할 것.

一. 사신이 타고 갈 선척(船隻)은 기일에 앞서 제조하여 십분 완전하고 견고하게 하여 달라 하였는데, 위 항목 선척을 만들라는 뜻을 본도에 분부하였거니와, 반드시 완전하고 견고하게 각별히 만들라는 뜻으로 또한 본도에 분부하여 엄하게 신칙할 것.

一. 사신의 군관이 직급이 높은 왜인이나 낮은 왜인이나 일체로 능멸하는 폐단이 지나가는 도로에 끊이지 않는다면 도주에게 장애가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사신에게도 광채가 없다고 하였는데, 이번 사행에는 각별히 신칙하여 데려가라는 뜻으로 사신에게 분부할 것.

一. 당상 역관 3인은 반드시 왜어에 능통하고 사리를 밝게 아는 자를 각별히 선발 차출하여 달라 하였는데, 당상 역관 뿐만 아니라 당하역관 및 각 항목의 인원도 각별히 선발하여 보내라는 뜻으로 해당 사역원과 해당 관청에 분부할 것.

一. 글을 잘 짓고 글씨를 잘 쓰며,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선발하여 데려와 달라고 하였는데, 이는 사신이 데려가는 인원 중에서 겸하여 채워 넣어 차출하여 데려 가라는 뜻으로 사신에게 분부할 것.

一. 마상재(馬上才)를 하는 사람도 또한 선발하여 보내되 능숙하게 조련한 말 3필을 사례를 대조하여 데려와 달라고 하였는데, 마상재를 할 사람 2인 및 잘 달리는 말 3필은 안장을 갖추어 훈련도감에 명하여 각별히 선발하여 차출하여 내려 보내게 할 것.

一. 별폭의 매와 말은 한결같이 예전 사례대로 미리 먼저 골라 갖추되, 반드시 병이나 손상이 없지는 않을 것이니 원래 수량 외에 참작하여 수를 더하여 달라고 하였으며, 말의 색깔은 검거나 흑 얼룩말이 좋다고 하였고, 미리

차출한 응자(鷹子)는 이전에 수량을 더하여 보낸 사례가 있으니 이제 또한 응자 5연을 강원도에 명하여 더 보내도록 하며, 마필(馬匹)은 미리 차출한 것을 비록 에도[江戸]로 들여보내는 사례가 없지만 서울에서 내려 보낼 즈음에 간혹 병들어 절뚝거리는 폐단이 없지 아니하기로, 임술년 사행 때 본도에 명하여 예비용으로 차출한 말 두 세 필을 골라 대기하게 하였는데, 이제 또한 이 사례대로 준비하여 대기하게 하였다가, 내려 보낸 서울 말에 병이 있으면 바꾸어 보내라는 뜻으로 본도에 분부할 것.

강희 49년(1710) 윤7월 초1일 입계하여 입계한대로 시행하라 하셨음.

경인(1710) 윤7월 21일

경점위관 부사과 정도복이 윤7월 13일 성첩한 장계. 통신사를 청하러 온 차왜 다이라 마사렝[平眞連]의 하선연을 이달 12일로 정하였는데, 동래부사 권이진은 병세가 더욱 심하여져서 자력으로 갈 형편이 만무하여 참여하러 가지 못하고, 신이 홀로 초량 객사에 가서, 동 차왜 원역이 전례대로 진상 숙배한 뒤에 하선연을 그대로 베풀어 행하고, 공사 예의 잡물 또한 수량을 대조하여 들여 주었으며, 전일 다례할 때 차왜가 예단의 응련(鷹連)을 정수 외에 더 보내는 일을 신에게 문서로 보냈기에 이것을 장계로 알리고, 해조에서 복계하여 관문(關文)을 보냈는데, 신이 등록을 상고하여 보니, 이전의 통신사가 갈적에는 비록 더 보내는 일이 있었지만 모두 해마다 대마도에 지급하는 응련(鷹連)을 더 보내는 수량으로 하였지 별도로 특별히 마련하여 보낸 일이 없었기로, 연향(宴享) 때 신이 이 사례를 차왜에게 언급하고 전례대로 거행하도록 하였더니, 차왜가 도중에 통보하여 조정함이 마땅하다고 하였기에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는 일임.

경인(1710) 윤7월 23일

동래부사 권이진이 윤7월 13일 성첩한 장계. 이달 초9일 미시 쯤에 황령산 봉군 최사명(崔士命) 등이 진고한 내용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대마도에서 나온다고 진고하였음. 초10일 오시에 도부한 부산첨사의 치통 내용임. 나왔던 왜선 2척을 영술하여 관수에 부쳤다는 초탐장 김중탁(金重鐸)의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이석린과 별차 정만익 등에게 명하

여 문정하게 한 뒤의 수본 내용에, “밤이 깊어 도착 정박하였기에 문정하지 못하다가 오늘 아침 왜관에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제1척은 당년조 1특송사 1호선에 정관 다찌바나 게이깅[橋景憲], 도선주 다찌바나 히사시쓰기[橋久次], 봉진압물 1인, 시봉 1인, 반종 4명, 격왜 40명이 함께 타고 서계를 지참하였는데, 겸대 2특송, 3특송사왜의 서계 또한 지참하였으며, 제2척은 동 특송사 2호선으로 이선주(二船主) 기요하라 다다테이[清原惟貞], 사복압물(私卜押物) 1인, 반종 3명, 격왜 30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을 지참하고 나왔는데, 정관왜가 가지고 있는 서계 등은 다례하는 날 전례대로 바칠 계획이라 하였기로,

2호선이 가지고 있는 노인만 받아 올려 보내거니와, 관수왜의 말이, ‘에도[江戸]에서 요구하는 호두 10섬, 잣 10섬의 무역을 허락하는 일로 도중에서 서신이 왔으며, 통신사가 올 때 예단 말의 도형 1장 또한 나왔기로 동 마도(馬圖)를 받아 올려 보냄’이라는 수본이었음. 이에 의거하여 마도(馬圖)는 보내거니와 노인은 서면(書面)에 ‘각도각관방어소(各道各官防禦所)’라고 적어 넣었기로 전례대로 물리쳐 받지 아니하였다는 일로 치통하였음.

같은 날 미시에 도부한 동 첩사의 치통 내용임. 올해 7월 초5일 나왔던 정해조 3특송사 수목선 1척에 격왜 20명 등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당일 진시에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는 일로 치통하였음.

위 항목의 나왔던 송사왜가 지참하여 온 서계 별폭은 추후에 다례를 베풀면서 받아서 올려 보낼 계획이며, 격식을 어긴 노인은 속히 고쳐 적어 바치라는 뜻으로 역관들에게 명하여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였음. 관수왜는 에도[江戸]에서 요구한다고 호두 10섬, 잣 10섬을 무역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는바, 이는 이전에 무역을 허락한 물자이고 또한 그냥 주는 것도 아니니 전례대로 무역을 허락해야 마땅한데, 허락하여 부응할 지 여부를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며, 무역을 요구한 말은 매매에 관계된 일인지라 어떤 모양 어떤 색깔의 말을 들여보낼지 마도(馬圖)를 만들어 보낸 것은 본디 불가할 것이 없으나, 예단의 말은 이미 우리 쪽에서 선물로 주는 물건인지라 본디 마음대로 지참하여 가야 하나, 이미 받은 뒤로 그것을 사용할지 사용하지 않을 지는 본디 그 품속에 관계된 것으로 원래 우리가 미리 알아야 할 것이 아니거늘, 먼저 말의 도형을 그려 보내어 어떤 모양의 말을 가져 오라고 역지로 명하여 마치 옛날 윗사람에게 바치는 물건에 미리 명목과 색깔과 모양을 정하는 것처럼 함이 있으니, 저쪽으로서의 거만함이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수치가 되니, 변방 신하의 체면으로 보아 결코 편안하게 앉아서 받아 그대로 올려 보

내는 것이 불가하기에, 동 마도(馬圖)를 차왜에게 되돌려주고, 인하여 훈도와 별차에게 명하여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였으며, 먼 곳의 사람이 이미 벌써 지참하여 왔으면 비록 미세한 일이라도 모두 진달하지 않아서는 불가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나라에 들어가서는 또한 그 풍속에서 숭상하는 것을 알아야 마땅하기로, 한결같이 그 도형대로 모양을 해조로 올려 보내는데, 대체로 이전에 무역을 요구한 말을 도형과 특별히 다른 점이 없으나 그 색깔은 전일 차왜가 혹은 검거나 혹은 얼룩말이라고 적어 접위관의 다례하는 날 전달한 것이기로,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권이진의 장계를 보면, 관수왜의 말이 에도[江戸]에서 요구하는 호두 10섬과 잣 10섬의 무역을 허락하라는 일로 도중에서 서신이 왔다고 하였는데, 호두와 잣은 이미 이전부터 무역을 허락한 물품이고 또한 그냥 주는 것도 아니어서 전례대로 무역을 허락하며, 통신사가 갈 때의 예단 말은 본디 교린(交隣)에 증정하는 예물이니 도형을 내어 보내어 마치 강제로 정하는 듯이 하는 것은 일의 체면에 관계되는 것이라 결코 편안하게 받기가 어려워서 변방 신화가 되돌려 주고 책망하여 타이른 것은 참으로 체면을 지킨 것이라, 다시 훈도 별차에게 명하여 특별히 더 신칙하게 하며, 호두와 잣 등의 물건은 본도에 명하여 그 원하는 대로 수량에 맞추어 무역을 허락하라는 뜻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49년(1710) 윤7월 23일 우부승지 신 유봉휘(柳鳳輝)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경인(1710) 윤7월 24일

함경감사의 관문 내용. 통신사의 행차에 지참하여 갈 응자(鷹子) 8연을 복정(卜定)하는 일과, 일본국 왕자에게 증정할 예단 응자 5연을 미리 마련하는 일로 관문 2장이 도부하였는데, 어느 곳으로 수송하라는 말이 없는바, 수송하여 들일 장소와 기일을 회이하여 거행할 수 있도록 할 일. 수결(手決) 내용: 짐짓 분부를 기다려 거행할 일.

一. 경상감사의 관문 내용. 방금 도부한 예조의 관문에 의거, 통신사가 지참하여 갈 잡물 및 예단 잡물을 관문에 덧붙인 수량대로 각 관아에 분정하였는데, 이제 이번에 초록하여 온 물종(物種) 수량은 본도에서 보관하고 있는 임술등록과 비교하였더니 다른 곳이 없지 않기로, 서로 어긋나는 물종을 뽑아내어 이문

(移文)에 후록하니 속히 하나로 지휘하여 회이(回移)하여 거행하도록 할 일.

후록. 예단잡물: 오색지(五色紙) 100권. 백지(白紙) 100권. 채화석(彩花席) 20장. 백보시기[白甫兒] 3죽. 백대접[白大貼] 3죽. 백자(白磁) 잔(盞), 대(臺)를 갖추어 10부.

지참해 갈 잡물: 장(帳) 3부(部). 중지의(中地衣) 2부(浮). 국서통(國書筒) 1부. 유지(油紙) 4권 17장. 화석(花席) 30장[매조룡(鷹籠)을 만들기 위하여]. 큰 놋촛대[大鎗燭臺] 1쌍. 망소자(網小煮) 2. 유자(鑰煮) 1. 백준항(白樽缸) 2.

이상은 임술등록에 있는 것이나 이제 이 관문 가운데 마련하지 않은 예단잡물임.

화석 52장, 임술등록에 있는 것이나 이제 이 관문에는 단지 10장만 나오니 전에 비해 42장이 부족함. 녁장 붙인 유둔 25번(番), 임술등록에는 있는 것이나 이제 이번 관문에는 21부만 나오니 전에 비해 4부가 부족함. 응자(鷹子) 18연, 임술등록에는 있으나, 이제 이번 관문에는 단지 6연만 나오니 전에 비해 12연이 부족함. 어피(魚皮) 200장, 임술등록에 있는 것이나 이제 이번 관문에는 240장을 마련하니 전에 비해 40장을 더함. 색지 10권, 임술등록에 있는 것이나 이제 이번 관문에는 228권을 마련하니 전에 비해 198권이 더해짐. 참떡 295홀, 임술등록에 있는 것이나 이제 이 관문에는 165홀을 마련하니 전에 비해 130홀이 부족함.

지참해 갈 잡물: 부쇠[火金] 3, 임술등록에 있는 것이나 이제 이 관문에는 2개만 나오니 전에 비해 1개가 부족함. 초사(草蓑) 25부, 임술등록에 있는 것이나 이제 이 관문에는 55부를 마련하여 전에 비해 30부가 더해짐.

이에 의거한 예조의 수결(手決) 내용: 임술등록 가운데 예단잡물은 예전에 있었으나 지금 없는 것은 본디 곡절이 있으니 여러 말로 논할 필요는 없고, 지참하여 가는 잡물은 본도에서 별도로 준비하여 보내는 것으로 임술년(1682)에도 또한 공문을 오고간 일이 있으니 이대로 거행하며, 아래 조목에 기록한 예단 및 지참하여 갈 잡물에 대하여는 본조에 보관하고 있는 등록을 참고하니 여기 베껴온 후록과 다름이 없지 않아, 반드시 착오의 사단이 있으므로, 다시 한 장을 베껴 내어 내려 보내니, 이대로 조치함이 마땅한 일임.

오색지 100권. 백지 100권. 채화석 20장. 흰 보시기[白甫兒] 3죽. 백대접 3죽. 백자 잔 대를 갖추어 10부.[이는 겐유영[嚴有院] 등의 장소에 분향에 사용한 것으로 현재 미처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마련하지 아니하였음.]

지참하여 갈 잡물: 장(帳) 3건. 중지의 2부, 국서통 1부, 유지 4권 17장. 화석 30장[매 조룡을 만들기 위한 것]. 큰 놋촛대 1쌍. 망소자 2. 유자 1. 백준

항 2. [이는 본도에서 별도로 갖추어 보낼 물건이므로 마련하지 않음]. 화석 [도주의 예단 5장, 수도서인 2인 예단 각 3장, 수직왜 5인 예단 각 2장, 합 21장]. 유둔[집정 1인 예단 5부, 집사 3인 예단 각 5부, 서경윤 1인, 근시 1인 각 예단 5부, 수도서인 2인 예단 각 1부] 합 32부. 응자[국왕전 예단 6연]. 어피[국왕전 예단 100장, 국왕자 100장, 집정 1인 예단 15장, 집사 3인 예단 각 10장, 사신 예단 15장] 합 260장. 참떡[국왕전 예단 50홀, 국왕자 50홀, 집정 1인 20홀, 서경윤 1인, 근시 1인 예단 각 10홀, 봉행 8인 예단 각 10홀, 수직왜 5인 예단 각 5홀, 장로 1인 예단 10홀] 합 255홀. 색지[국왕전 예단 30권, 국왕자 30권, 사신 예단 44권, 봉행에게 사신 예단 24권] 합 128권. 이는 별쪽에 부치는 예단 수이고, 사신이 지참해 가는 것으로 본도에 복정한 잡물은 이 수효에 들어가지 않음. 부쇠[火金] 3. 임술등록에 실려 있다고 하였으니 을미 임술 두 해의 등록에는 모두 2개(二介)로 실려 있음. 초사(草蓑) 25부. 임술등록에 실려 있다 하였으나 본조에 보관한 등록을 다시 살펴보니 55부로 명백히 실려 있음.

경인(1710) 윤7월 27일

경점위관 부사과 정도복이 윤7월 20일 성첩한 장계. 통신사를 청하러 온 차왜 다이라 마사령[平眞連] 원역 등의 별연(別宴)을 베푸는 것을 없애고 건물(乾物)로 들여 주기를 원한다고 운운하였다고 역관 등이 와서 고하였기로, 그 원하는 대로 이달 19일 동 잔치 물품의 건물 및 공사 예단 잡물을 아울러 수량을 대조하여 들여 주고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경인(1710) 8월 22일

이달 8월 20일 주강(晝講)에 입시하였을 때 동지사 윤덕준(尹德駿)⁴⁴⁾이 계품한 바, “통신정사 이제(李濟)와 종사관 이방언(李邦彦)이 모두 패초(牌招)⁴⁵⁾를 어긴 일로 연좌되어 파직되었으나, 이는 멀리 가는 일을 싫어하여 피한 것이 아니라 사정이 행공(行公)하기에 불안하여 위패(違牌)⁴⁶⁾하지 않을

44) 윤덕준(尹德駿, 1658-1717): 남원 윤씨로 자는 방서(邦瑞), 호는 일암(逸庵)이다.

숙종 5년(1679)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거쳐 대사간, 형조판서, 한성판윤, 우참찬을 역임하였다.

45) 패초(牌招): 국왕이 승지(承旨)를 시켜 왕명으로 신하를 불러들임.

46) 위패(違牌): 패초의 명을 어김.

수 없어서였습니다. 이제 서용(敍用)하라는 명이 내렸는데, 사명(使命)이 가법지 아니하여 이미 벌써 선발하여 차출하였으니 무단히 대신 서용하는 명을 내는 것은 불가할 듯하며, 비록 내렸더라도 또한 무단히 도로 계하(啓下)하는 것이 불가하니, 감히 이를 우러러 계품하나이다.”라고 하였는데, 상감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속 이어서 고쳐 차출하는 것은 불가하니, 그대로 차출하여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음. [비변사, 이조, 예조로]

경인(1710) 8월 28일

이번 8월 26일 약방에서 입진(入診)하여 입시하였을 때 제조 민진후(閔鎭厚)⁴⁷⁾가 계품한 바, “동래부사 권이진의 장계에 ‘관수왜의 철공(撤供)이 이제 벌써 여섯 달이 되어 밤낮으로 울면서 원망하며 1년 양식을 철회하여 삼가지 못한 죄를 속량(贖良)해 주기를 하소연하는데, 변방 신하로서는 막을 수가 없기에 감히 이렇게 사유를 갖추어서 알린다’고 하였고, 그 아래에 또 최상집의 일을 논하고 이어서 ‘서계를 전하지 않은 죄를 사면하는 것은 변방 사정과 관계되는 바가 극히 중대하여 사유를 갖추어 품신하여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 신은 이 두 가지 일에 대하여 가만히 구구한 소회가 있어서 한번 진달하려 하였으나 오래도록 입시하지 못하여 지금까지 미루었습니다. 관수왜가 어지러이 왜관을 나온 죄에 대하여는 진실로 철공함이 합당한데 이제 이미 여섯 달이 되도록 끝까지 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그 허물을 고쳐 스스로 새롭게 되는 길을 끊는 것입니다. 지난 해 철공할 때는 마침 왜인이 장차 돌아갈 즈음이었으므로, 그대로 돌아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돌아갈 기일이 아직 멀다고 하는데, 만약 봉급을 빼앗는 사례에 의거하여 그 절박하고 간절하게 호소하는 때로 말미암아 다시 더 책망하고 타일러 환급하도록 허락하게 한다면 은혜와 위엄을 아울러 시행하는 도리에 합당할 듯합니다. 최상집에 이르러서는 그 사람의 간교함이 어떤지를 막론하고, 저쪽 사람이 만약 서계를 전하지 않은 것을 큰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 여긴다면 어찌 국가의 수치가 아니겠으며, 만약 혹시라도 역관에 사람이 모자라서 중한 죄를 가벼이 사면하였다고 한다면 그 수치는 더욱 심할 것입니다. 사역원 도제도가 변통하여 석방한 뒤에 여러 논의가 준엄함이 많았기에 짐짓 사행 역관으로 차출하여 넣지 않았는데, 다

47) 민진후(閔鎭厚, 1659-1720): 여흥 민씨로 자는 정순(靜純), 호는 지재(趾齋)이다. 숙종 12년(1686)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대사간, 예조판서, 공조판서 등을 역임하고, 우참찬에 올랐다. 경종의 묘정(廟庭)에 배향되고 시호는 충문(忠文)이다.

시 해당 사역원과 묘당에 명하여 반복 상의하여 품의 조처하게 함이 어떠할 지?” 하였더니, 상감께서 말씀하시기를 “철공에 만약 기한이 없으면 끝내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새롭게 되도록 하는 길이 아니다. 이제 환급하는 일로 분부하라. 최상집의 일은 동래부사의 장계가 극히 옳으니, 통신사의 행차에 보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음. 민(閔)이 말하기를, “만약 통신사의 행차에 보내지 않는다면 전일 입었던 죄는 어떻게 조처할까요?” 하였는데, 상감께서는 “석방을 허락하도록 명한 것은 전혀 통신사의 행차에 보내기 위함이었는데, 이제 이미 보내지 않는다면 어찌 그대로 두어서야 되겠는가?” 하셨음. 민(閔)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배소(配所)로 돌아가게 할까요?” 하였더니, 상감께서는 “그대로 하라.”고 하셨음. [비변사, 의금부, 예조, 사역원.]

경인(1710) 9월 초2일

접위관 부사과 정도복이 8월 24일 성첩한 장계. 통신사를 청하러 온 차왜 다이라 마사렝[平眞連] 원역 등의 상선연을 이달 23일로 정하였는데, 동래부사 신 권이진은 병세가 한결같이 침중하여 나가 참여하지 못하고, 같은 날 신이 홀로 관소에 가서 전례대로 베풀어 행한 뒤에 공사 예단 잡물 또한 수량을 대조하여 들어 주었으며, 차왜의 기한 일자가 이미 10여일이 지났는데, 그는 해조에서의 답서를 베껴 적어 도중에 보내고 그 회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상선연을 행하려고 해도 연기하여 지금에 이르러 비로소 베풀어 행하였으니, 차왜가 기한 일자를 채워 넘긴 지가 이미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일찍이 이전에 대차왜를 접대할 때 상선연 뒤로는 접위관이 즉시 출발하고, 차비역관을 머물러 두어서 그가 배를 타도록 기다리는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라 이미 규례가 되었기로, 신은 전례를 차왜에게 말하고 25일 동래부에서 출발하여 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차왜가 배를 타고 발선하는 등의 일은 본부에서 본디 치계할 것이며, 차왜가 바친 하선연과 상선연, 절일(節日)의 세 차례 예물은 동래부로 수송하여 추후에 인편으로 올려 보내도록 하였으며, 동 예물 서쪽 3통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고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는 일임.

一. 접위관 대인 합하 봉정(奉呈)

그동안 살피지 못했는데 기미(氣味)가 어떠하신지, 부질없는 마음만 더할 뿐입니다. 배를 돌이킬 날짜가 박두하여 구름과 바다가 아득한데, 교제하는 인정이 서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옆드려 생각건대 전별연(餞別宴)을 마치

면 만날 기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머지 군말을 더하지 않습니다. 아래에 적은 가벼운 물품으로 오로지 경의의 정성을 표하오니 아무튼 살펴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짐짓 이만하고 갖추지 못합니다.

경인(1710) 윤8월 일. 수빙사(修聘使) 그의 도장을 찍음.

수주혁과연갑(垂珠革褰硯匣) 1비(備). 채화대층갑(彩畵大層匣) 1비. 피갑오촌경(皮匣五寸鏡) 10면(面). 화도기자(畵陶璣子) 20개. 화도잔대(畵陶盞臺) 40좌(坐). 채화중연갑(彩畵中硯匣) 1비. 층동화로(層銅火爐) 1개. 목경(目鏡) 2조(操). 문지(紋紙) 300편. 건령귀(乾靈龜) 1개. 제(際).

一. 접위관 대인 합하.

초가을이 조금 시원해졌습니다. 이런 날에 생각건대 관청의 상황이 편안하신지요. 아래에 적은 보잘 것 없는 물품은 오로지 간략한 예를 표하오니, 사랑을 비추어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갖추지 못합니다.

경인(1710) 7월 일. 수빙사. 그의 도장을 찍음.

채화팔촌염경(彩畵八寸奩鏡) 1면. 중건령귀(中乾靈龜) 2개. 오화당(五花糖) 2근. 화채대도기(花彩大陶器) 1개. 피갑오촌경(皮匣五寸鏡) 2면. 평연갑(平硯匣) 1비. 제(際).

一. 접위관 대인 합하.

지난번 다연(茶宴)에 처음 정성스런 접대를 받는데다 여러 가지 예를 갖춘 음식을 받들고, 인하여 생각하기를 이웃의 우의가 돈독하여 영원히 이같이 변치 않음에 대하여 감사하고 다행으로 여기는 마음 매우 깊었습니다. 삼가 가벼운 물품을 갖추어 오로지 한 치 정성을 표하오니 웃고 머물러 두시기 바랍니다. 짐짓 이만하고 갖추지 못합니다.

경인(1710) 7월 일. 수빙사. 그의 도장을 찍음.

첩금소병풍(貼金小屏風) 1쌍. 채화오촌염경(彩畵五寸奩鏡) 3면. 소동탕기(小銅湯器) 5개. 화보아(花甫兒) 40개. 등관연기(藤管煙器) 30악(握). 문지(紋紙) 500편. 주개과아(朱蓋鍋兒) 3개. 전자(剪子) 10악(握). 화도소병(畵陶小瓶) 10개. 청칠칠합함(淸漆七合函) 1부. 백방도(白方刀) 2자루.

경인(1710) 9월 12일

경상감사의 관문 내용. 방금 도부한 예조 관문 내용에, “통신사가 지참하여

갈 잡물을 관문의 수량대로 각 관아에 분정하였는데, 그 중 큰놋촛대[大鑪燭臺] 1쌍은 임술등록 가운데 귀조(貴曹)에서 주조하여 만들어 내려온다고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귀조에서 주조하여 내려 보낼 일임. 이에 의거한 예조의 수결 내용: 도부하였거니와, 큰 촛대는 임술등록에 이러하니, 닛꼬오산[日光山] 치제(致祭)를 행할지 여부를 기다렸다가 서울에서 만들어 보냄이 옳으니 상고하여 시행할 일.

一. 경상감사의 관문 내용. 이제 이번 통신사의 행차에 시행될 여러 가지 일을 한결같이 임술등록에 의하여 마련하는 일로 관문이 있었기로, 등록을 상고하였더니 바다를 건널 때 격군의 짐물(什物) 또한 다른 도에 분정하는 수량이 있어서, 귀조에서 이미 각 해당 도에 분부했을 것으로 생각되거니와, 임술년(1682)에도 배 가운데의 짐물 또한 귀조에서 따져 보고하여 선혜청에서 마감하도록 분부하였는데, 그 때 부족하여 더 준비한 수량을 아울러 융통하여 마련하되, 다른 도에 일체로 분부한다는 뜻으로 선혜청에서 첩보하여 급속히 파발에 부쳐 회이함으로써 때맞춰 거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일임.

이에 의거한 예조의 수결 내용: 임술등록을 살펴보니 격군 및 배 위의 짐물은 처음에는 양호(兩湖:호남과 호서)에 분정한 일이 없다가, 본도에서 을미년(1655) 사례를 구별한 성책을 이문으로 보내온 이후에 비로소 양호에 분정하였는데, 이제 만약 본도에서 별도로 성책(成冊)을 만들어 올려 보내면 근거를 상고하여 양호에 분정할 수 있겠거니와, 본조에서는 성책을 기다리며 거행하지 못하고 있으니, 동 성책을 속히 올려 보내어 미루는 폐단이 없도록 할 일.

경인(1710) 9월 13일

동래부사 권이진이 9월 초7일 성첩한 장계. 이달 초6일 신시에 도부한 부산 첨사 조세망의 치통 내용임. 경인년(1710) 6월 초5일에 나왔던 통신사를 청하러 온 차왜의 배에 정관 다이라 마사령[平眞連]과 봉진압물 1인, 시봉 1인, 반종 16명, 격왜 69명, 의왜(醫倭) 1인이 함께 타고, 동 차왜의 수목선에 도선주 다이라 슈우게이[平守經]와 격왜 20명, 올해 4월 초9일 나왔던 정해조 2특송사 수목선에 격왜 20명 등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싣고 있으며, 올해 6월 21일 나왔던 비선 1척에 두왜 1인과 격왜 6명 등이 함께 타고, 동 차왜의 약간의 짐을 실어가지고 도합 4척이 당일 진시에 발선하여 돌아 들어갔다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다는 일임.

경인(1710) 9월 15일

훈련도감의 관문 내용. 본조의 첩보로 인하여 통신사 사행 때의 마상재 군사로 우수한 자인 지기택(池起澤)과 강상주(姜相周)를 이미 정밀하게 뽑았으니, 상고하여 시행할 일. 이에 의거한 예조의 수결: 도부.

경인(1710) 9월 17일

이번 9월 16일 대신과 비변사의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우의정 김창집(金昌集)이 계품한 바, “통신사의 사행 때 당상 역관 3인을 정하여 보내는데, 이제 당상의 왜역(倭譯)이 혹은 상중(喪中)에 있거나 혹은 죄를 받아 인원수를 갖추 수가 없어서, 혹 기복(起復)하거나 혹은 죄를 사면하여 보내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기복하는 것은 무겁고 어려우므로 죄적(罪籍)에 있는 사람을 정하여 보내는 일로 이미 확정하였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상감께서 “최상집을 말함인가?” 하자, 우의정이 “그렇습니다. 동래부사는, 나라를 욕보인 사람이라 다시 보내서는 안된다고 장계로 알리기까지 하여, 최상집을 도로 배소로 가게 하였는데, 이 사람 외에는 달리 보낼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하였음. 병조판서 민진후(閔鎭厚)가 말하기를 “신이 사역원 제조로 있기 때문에 곡절을 상세히 압니다. 역관 중에 실로 보낼 만한 자가 없고, 단지 한후원(韓後瑗) 한 사람이 있는데, 현재 상중에 있습니다. 그가 비록 미천하나 또한 의관(衣冠)을 갖춘 사람이라 기복하는 것은 참으로 중대하고 어려우나, 일찍이 이전에도 통신사의 행차 및 바다를 건너갈 때 모두 역관을 기복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도제조 서(徐)가 말하기를 ‘이렇게 묘당에 말을 보내자’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상감께서 “그렇다면 기복하여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음. [비변사, 예조, 사헌부, 사간원, 사역원]

경인(1710) 9월 25일

강원감사의 관문 내용. 방금 도부한 관문 내용에, 통신사의 행차에 일본국 왕 앞의 예단 응자(鷹子) 4연을 미리 마련하여 달라고 하였으며, 추후에 도부한 관문 내용에, 미리 준비하는 응자 5연은 원래 수량 외에 참작하여 수량을 더하여 마련하라는 일로 관문이 있었기에, 본도의 등록을 가져다 살펴보니,

신유년(1681) 분으로 응자 7연을 복정(卜定)하였으나, 이번에는 4연만 분정하여 보냈기로 각 고을에 한 푼의 폐단이라도 덜 수 있었는데, 예비로 마련하는 응자 5연을 또 더하여 분정하였는 바, 동 응자는 원래 본도에서 산출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또한 전일에 분정한 영동의 평해, 울진, 통천, 고성, 흡곡(歙谷) 등의 고을은 금년 농사가 참혹하게 가뭄과 홍수의 재앙을 당하여 이미 큰 흉년으로 판명이 나서 바야흐로 앞으로의 구휼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통산시의 반전(盤纏) 잡물을 줄여 줄 것을 청하기는 어려울 듯하나, 응자에 있어서는 원래 수량 외의 5연은 이미 예비로 마련하는 것이고, 또한 곡식이 익지 않은 때를 당하여 민간에 책임 지워 내게 하기에는 그 형편이 극히 어렵기로, 이렇게 공문을 발송하니, 귀조에서 본도의 형편을 참작하여 추가로 분정한 응자 5연을 산출되는 곳으로 옮겨 분정하는 일을 입계하여 변통하여 속히 회이함으로서 기다리는 폐단이 없게 할 일.

이에 의거한 예조의 수결 내용: 신유년(1681) 사례 대로 7연만 마련하여 대기함이 마땅할 일.

一. 경상감사의 관문 내용. “통신사가 지참하여 가는 잡물을 관문에 의거하여 각 고을에 분정하였는데, 입술등록을 상고하니 응자(鷹子) 22연, 인삼 8근을 본도에 분정하였다가 곧장 대신의 입계로 말미암아 본도는 원래 산출되는 곳이 아니라고 하여 다른 도로 옮겨 분정하여 본도에서는 마련하지 않았으며, 또한 표범가죽 3장과 범 가죽 7장, 사슴 가죽 1장을 본도에 분정하였다가, 추후에 도부한 선혜청의 관문 내용에 통신사가 지참하여 갈 잡물 가운데 표범가죽과 범 가죽 등은 본청에서 준비하여 행중(行中:여행에 함께 가는 일행)에 보낼 것이니 본도에서는 마련하지 말라고 하였기로 이대로 거행하였는데, 이제 이 본도에 복정(卜定)한 인삼 8근과 응자 10연은 원래 본도에서 산출되는 것이 아니고 임술년(1682)에 이미 벌써 다른 도로 옮겨 분정하였는 바, 이번에도 임술년(1682)에 당초 분정한 수를 본도에만 전례에 따라 관문을 보낸 것인지, 혹은 이미 다른 도로 옮겨 분정하고 본도로 하여금 그 복정한 수만 알리려고 이렇게 관문을 보낸 것인지, 명백하게 확정하여 회이(回移)하며, 표범가죽 3장과 범 가죽 7장, 사슴 가죽 1장 등도 임술년(1682) 사례대로 선혜청에서 준비하여 보낼 것인지, 만약 본도에서 그대로 마련한다면 반드시 가미(價米:값으로 치를 쌀)를 구획하는 일이 있는 연후에 거행할 수 있겠으니, 해당 선혜청과 본도 사이에 준비 여부 및 가미를 아울러 본조에서 선혜청에 첩보하여 확정해서 회이하며, 이제 분정한 지물(紙物) 가운데 오색지는 어떤 어

편 색깔로 몇 권을 뜨야 할지, 견양(見樣)의 대소를 구별하며, 일본국왕 앞으로 증정할 색지는 단지 색지라고만 하였지 어떤 어떤 색깔 몇 권인지 여부 역시 구별하지 아니하여 그 연유를 모르겠으니, 아울러 상세히 상고하여 회이하여 진작 거행할 수 있도록 할 일.”

이에 의거한 예조의 수결 내용: 응련과 인삼의 분정은 단지 등록에만 근거하여 분부하였는데, 이미 임술년(1682)에 변통한 일이 있었다면 다시 묘당에 논의하여 분부해야 마땅할 것이며, 피물(皮物)은 선혜청에 이문(移文)하여 조치하도록 할 것이며, 색지에 있어서는 등록 가운데 단지 오색지와 색지라고만 일컬었지 권 수와 색깔 품질에 대하여는 장부에 기록한 일이 없는데, 본영에서는 필시 임술년(1682)에 물품을 보낸 전례가 있을 것이니 상고하여 시행할 일임.

경인(1710) 9월 26일

一. 예조에서 상고할 일. 이제 이번 통신사를 보내는 일로 각 도에 분정한 잡물을 대조하여 받아들일 즈음에, 주관하는 관원이 없어서는 불가하여 전례대로 별도의 차사원을 정하여 모든 일을 검사 신칙하고 조정하여 대기함으로써 미진한 폐단이 없게 하되, 도부 일시를 이문할 것. [경상감영으로]

一. 예조에서 상고할 일. 이제 이번 통신사가 타고 갈 세 선박의 홍단장(紅段帳)은 임술년(1682)의 전례대로 마련하여 보낼 일. [호조로]

一. 예조에서 상고할 일. 이제 이번 통신사가 데려 갈 마상재 2인이 착용할 의복은 반드시 선명한 채단(彩段)으로 정밀하게 만들어 지급함이 마땅하니, 상고하여 시행할 일. [호조로]

경인(1710) 9월 29일

一. 이번 9월 28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장령 이익한(李翼漢)⁴⁸이 계품한 바, “신이 예조의 이관(移關)을 살펴보니, 왜역 한후원(韓後援)을 기복(起復)하는 일이 있는데, 신은 가만히 생각건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비록 미천하지만 설령 전례가 있더라도 통신사의 일이 전쟁에 기복하는 일에 비할 것은 아니고, 예의 방한(防限)에 크게 관계됩니다. 하

48) 이익한(李翊漢, 1659-?): 전주 이씨로 자는 여익(汝翼)이다. 숙종 26년(1700)에 춘당대문과에 장원급제하고 관직이 병조참판, 한성부 우윤에 이르렀다.

물며 우리나라는 예의로 이웃나라에 존중받는데, 만약 외이(外夷)로 하여금 듣게 한다면 어찌 국가 체면에 손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역관에 비록 사람이 모자란다고 하나 어찌 한 둘의 합당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구차한 일을 합니까? 왜역 한후원을 기복하는 명을 없던 것으로 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음. 상감께서는 “계품한 대로 하라”고 하셨음. [사역원, 사간원, 사헌부, 예조]

경인(1710) 10월 12일

一. 동래부사 권이진이 10월 초4일 성첩한 장계. 이달 초3일 술시 쯤에 황령산 봉군 방필선(方必善) 등의 진고한 내용에, 조선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작은 배 1척이 물마루에서 등불을 달고 나온다고 진고하였음. 초4일 축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조세망의 치통 내용임. 나왔던 왜인의 작은 배 1척을 영술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초탐장 양시준의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정만익과 별차 이덕기(李德基)⁴⁹⁾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한 뒤의 수본 내용임. “왜관에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비선 1척에 두왜 1인과 격왜 5명 및 직급이 높은 왜인 1인 등이 함께 타고 노인을 지참하고 나왔는데, 관수왜의 말이, ‘앞으로 통신사가 있을 때 용도가 매우 많아서 부득이 1년조의 미수(未收) 공작미 1만 6천섬을 재촉하여 받기 위하여 직급이 높은 두왜 1인을 정하여 보냈다’고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통신사가 올 때 소용되는 흰 말꼬리[白馬尾] 100냥(兩)의 무역을 허락하되, 그 길이는 포백척(布帛尺)⁵⁰⁾으로 1자 6치 쯤 되는 것으로 한정하여 골라 되도록 속히 들여 달라’고 운운하기로, 가지고 있는 노인 1통을 받아 올려 보낸다는 수본이었음. 이에 의거하여 동 노인을 보내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위 항목의 통신사 때 소용될 흰 말 꼬리 100냥의 무역을 허락하여 들여 달라고 하였는바, 이는 일찍이 무역을 허락한 물품이고 또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니, 전례대로 무역을 허락함이 마땅할 듯하니. 허락하여 부응할지 여부를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시기를.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권이진의 장계를 보면 통신사 때 사용될 흰 말 꼬리 100냥의 무역을 허락하되 길이는 포백척으로 1자 6치로 한정하여 골라 들여 달라고 하였으나 무역의

49) 이덕기(李德基, 1677-?): 전주 이씨로 자는 대유(大有)이다. 숙종 31년(1705) 증광시의 역과에 왜학으로 합격하였다.

50) 포백척(布帛尺): 피륙을 잴 때 사용하는 자. 영조척(營造尺) 보다 대략 한 배 반 정도로 길다.

허락 여부를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라 하였는바, 이제 이번에 요구하는 바의 물품은 이미 전례가 있고 또한 그냥 주는 것도 아니어서 틀어막기가 어려울 듯하니, 동 흰 말 꼬리를 본도에 명하여 수량에 맞추어 무역을 허락한다는 뜻으로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49년(1710) 10월 12일 동부승지 신 김일경(金一鏡)⁵¹⁾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一. 군기시(軍器寺)의 첩정 내용. 이제 이번 통신사의 행차 때 데리고 갈 별파진(別破陣) 겸군관(兼軍官)으로 최동태(崔東泰), 김두명(金斗明) 등을 뽑아 정하였기에 연유를 첩보하니 상고하여 시행할 일. 이에 의거한 예조의 수결 내용: 도부함.

一. 장악원(掌樂院)의 첩정 내용. 이제 이번 통신사의 행차 때 전악(典樂)으로 김세경(金世京), 김석겸(金碩謙) 등을 뽑아 정하였으니 상고하여 시행할 일. 이에 의거한 예조의 수결 내용: 도부하였음.

一. 승문원(承文院) 첩정 내용. 이제 이번 일본 사행 시에 사자관(寫字官)으로 이수장(李壽長), 이이방(李爾芳)을 차출하여 정하였다는 일임. 이에 의거한 예조의 수결 내용: 도부하였음.

一. 경상감사의 관문 내용. 이제 이번 통신사가 바다를 건널 때의 격군 짐물을 다른 도에 분정한 수량이 있으며, 그 때 부족하여 더 준비한 수량을 아울러 융통하여 마련하도록 다른 도에도 일체로 분부하라는 뜻으로 선혜청에 첩보하여 급속히 회이하라는 일로 이문(移文)을 귀조에 보냈는데, 지금 도착한 회이 내용에, 본도에서 을미년의 사례에 의거하여 구별한 성책(成冊)을 올려 보내라는 일로 이관하였기에, 동 구별 성책을 을미년의 등록에 의거하여 마련한 성책을 올려 보내니, 급속히 양호(兩湖)에 분정하여 지연되는 폐단이 없게 함이 마땅하니 상고하여 시행할 일. 이에 의거한 예조의 수결 내용: 이대로 양호 및 선혜청에 분부하기 위해 도부함.

一. 통신사가 바다를 건널 때의 격군 및 배 안에 사용하는 짐물의 구별 성책. 격군(格軍) 302명 내에서 262명은 본도, 40명은 전라도. 초둔(草屯) 252번(番) 내에서 168번은 본도, 42번은 전라도, 42번은 충청

51) 김일경(金一鏡, 1662-1724): 광산 김씨로 자는 인감(人鑑), 호는 아계(丫溪)이다. 숙종 28년(1702)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우참찬, 이조판서를 역임하였다.

도, 부족분 8번은 본도.

산마(山麻) 3775근 내에서 3016근은 본도, 379근 8냥은 전라도, 379근 8냥은 충청도. 부족분 1632근은 전라도에서 새로 준비.

각항의 줄에 들어갈 산마(山麻) 2515근은 전라도. 숙마(熟麻) 3647근 내에서 2065근은 본도, 791근은 전라도, 791근은 충청도. 부족분 798근은 새로 마련하되 각항의 줄에 들어갈 1291근과 합쳐 숙마 2089근은 본도.

숙마선색(熟麻線索) 1008발[把] 전라도 1008발 충청도.

완풍석(莞風席) 708넝 내에서 380넝은 본도, 164넝은 전라도, 164넝은 충청도.

선장(船帳)에 사용할 홍릉지초(紅綾只綃) 1074척, 필(疋)로 환산하여 60필 12자 5치는 호조에서 내려보낼 일.

이에 의거하여 선혜청 및 호조, 전라감영, 충청감영 등으로 이문하여 첩정함.

경인(1710) 10월 22일

예조에서 계품하기를 “이제 이번 통신사가 지참하여 가는 반전 잡물은 한결 같이 임술년(1682) 통신사 때의 사례대로 마련 계하하여 각 도에 분부하였는데, 방금 경상도 전라도 등 감사의 이문을 접하니, 지난 신유년(1681) 10월 23일 인견하였을 때, 대신이 계품한 바로 말미암아 인삼과 응련(鷹連) 등은 산출되는 곳에 분정하는 사례가 있으니 본조에서 속히 변통하라 하였는데, 이미 산출되는 물품이 아니라면 또한 변통하는 도리가 없어서는 불가하니, 이제 신유년(1681)에 확정한 경상도에 복정(卜定)한 인삼 8근과 응자 10연을 평안도에 옮겨서 복정하고, 전라도에 복정한 응자 11연과 충청도에 복정한 응자 2연과 예비용 2연 등 내에서 황해도에 12연, 함경도에 3연으로 고쳐 분정하니 속히 마련하여 대령하라는 뜻으로 제도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전교에 “윤희한다” 하셨음.[비변사, 선혜청, 사역원]

경인(1710) 11월 초4일

一. 전라감사의 이문 내용. 방금 도부한 예조의 관문 내용에, “이제 이번 통신사가 바다를 건널 때의 격군 및 잡물을 관문에 후록하였으니 급속히 마련하여 대령하라는 일로 관문하였는데, 동 후록의 잡물 가운데 본도에서 마련해야 할 물품을 이전 등록대로 각 읍에 분정하였거니와, 숙마 791근은 이전 등록

가운데 본도에서 산출되는 물품이 아니기로 함경도로 옮겨 분정하였는데, 이번에도 한결같이 전례대로 동 숙마를 해당 도로 옮겨 분정하며, 부족한 산마 1632근을 새로 준비하고, 각항의 줄에 들어갈 산마 2515근 등 도합 4147근, 완풍석(莞風席) 70널 등은 이전 등록을 상고하니 귀조에서 직접 본도의 좌우 수영에 분정하였으나, 이번에는 다른 잡물과 일체로 본도에 분정하였는데, 본영에서 좌우 수영에 반씩 나누어 분정하도록 분부하고 연유를 아울러 이문하니 상고하여 시행하시기를.

이에 의거한 예조의 수결 내용: 이는 본조에서 분정할 일이 아닐 뿐 아니라, 임술년(1682) 등록을 상고하면 본 선혜청에서 전라 좌우 수영 및 함경도에 분정하였기로 이렇게 첩보하니 위 항목의 잡물을 속히 마련하라는 뜻으로 분부하여 시행할 일.[선혜청으로 첩정]

一. 평안감사의 이문 내용. 방금 도부한 예조에서 계하한 관문 내용에, “이제 이번 통신사가 지참하여 갈 인삼 8근, 응자 10연을 급속히 마련하라는 일로 관문이 있었는데, 동 응자는 임술년(1682) 사례대로 산출되는 강변(江邊) 및 산군(山郡) 각 읍에 분정하였으며, 응자를 데려 갈 응수(鷹手)도 응련(鷹連)을 분정하지 않은 각 고을에 분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동래까지 데려가도록 할 계획이거니와, 임술년(1682) 등록을 가져다 살펴보니, 동래로 수송하여 납입하는 기일, 및 응련을 데려갈 때 먼 길에 매를 데려가면서 양식을 싸가기가 어려운 형편이라, 경유하는 각 관아에서 전례대로 차례차례 공궤(供饋)하고 응자가 먹을 것도 넉넉하게 지급하는 일로 귀조에서 확정하여 행회(行會)하였는데, 이제 이번 관문 가운데는 단지 응자 10연을 마련하라고만 하였을 뿐, 동래로 수송하여 납입하는 기일 및 응자를 데려가는 자의 음식 공급과 매가 먹을 것을 찾아 지급하는 등의 일은 원래 거론한 일이 없기로, 전례를 낱낱이 거론하여 이렇게 이문하니, 속히 회이하여 때맞추어 거행하도록 할 일.

이에 의거한 예조의 수결 내용: 임시로 알릴 것임. 도부함.

一. 황해감사의 이문 내용. 방금 도부한 예조의 관문 내용에, 통신사의 사행 때 지참하여 갈 응자 12연을 급속히 마련하여 대령하라 하였기로 응자를 관문대로 각 읍에 분정한 뒤 분정한 성책을 다듬어서 올려 보내거니와, 응자는 이미 산출되는 계절이 아니고 순색(純色)으로 적합한 것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기로, 묵은 매이든 가을 매이든 반드시 체구가 크고 쓸만한 것으로 극구 가려서 준비하여 대기하였다가, 다시 관문을 기다려 한꺼번에 색리(色吏)를

정하여 동래로 수송한다는 뜻을 각 읍에 분부하였거니와, 관문에는 전일 복정한 잡물을 다시 알리기를 기다려 동래로 수송하라 하였는데, 본도에서 동래까지의 거리가 거의 20일 노정이온바, 먼 길에 운송하기가 극심한 폐단이 있을 뿐 아니라, 본도에서는 상정법(詳定法)⁵²⁾을 시행한 이후로 무릇 복태(卜駄)의 운임은 상정미(詳定米)의 여유 미곡으로 회감(會減)⁵³⁾하는데, 이곳에서 동래까지 운송할 즈음에 각 고을에서 기일에 맞추어 수납하는 것 또한 반드시 기약하지는 못하겠기에, 일의 형편을 참작하여 영문(營門)과 각 고을에 복정(卜定)한 노수(路需)와 잡물을 직접 경중(京中)에 직접 수납함이 어떠할지, 급속히 회이하여 분부 거행하도록 할 일.

이에 근거한 예조의 수결 내용: 응자는 임시로 동래부로 직접 보내며, 잡물은 경중으로 수송함이 마땅하니 상고하여 시행할 일.

[통신사가 지참하거 갈 응자를 강령(康翎), 웅진(瓮津), 소강진(所江鎭), 오차포(吾叉浦), 장연(長淵), 백령진(白翎津), 은율(殷栗), 풍천(豊川), 안악(安岳), 장연(長連), 신계(新溪), 수안(遂安)에 각 하나씩 분정함.]

一. 사복시(司僕寺)의 첩정 내용. 이제 이번 통신사가 지참하여 갈 예단의 준마(駿馬)를 영술하여 갈 마의(馬醫)로 안영민(安永民)을 정하여 보내니 상고하여 시행할 일. 예조 수결 내용: 도부함.

경인(1710) 11월 18일

一. 남평(南平) 현감의 첩정 내용. 이전에 도부한 예조의 관문에 의거한 관찰사의 관문 내용에, 통신사의 노비(路費) 잡물을 미리 마련하라 하였으며, 추후에 도부한 비변사의 관문에 의거한 관찰사의 관문 내용에, 구청잡물(求請雜物)은 연행(燕行)⁵⁴⁾의 구청 사례로 마련하여 수송하라 하였는바, 이제 이번 구청(求請)은 전후 관문의 물종(物種)이 각기 달라 조치할 바를 모르겠으니, 하나로 지적하여 분부하여 거행하도록 할 일.

이에 의거한 예조의 수결 내용: 물종은 본조의 등록에 기재된 것이 아니거니와, 본도 및 본 현에 반드시 임술년(1682)의 근거할 만한 사례가 있을 것이니 상고하여 거행할 일.

52) 상정법(詳定法): 대동상정법(大同詳定法). 1708년부터 황해도에 시행된 대동법.

53) 회감(會減): 관청끼리 서로 주고 받을 것을 견주어 남는 것을 셈하는 일.

54) 연행(燕行): 조선 후기 중국 연경(燕京)으로 사신이 가는 일.

一. 능주목(綾州牧) 겸임 남평현감의 첩정 내용. 이전에 도부한 예조의 관문에 의거한 관찰사의 관문 내용에 동 능주에 복정한 통신사가 지참하여 갈 잡물은 지금 바야흐로 마련하고 있고, 그 중에서 차일목(遮日木) 1필은 이미 도회(都會)인 순천부(順天府)로 수송하였는데, 즉각 도부한 비변사의 관문에 의거한 관찰사의 관문 내용에, 이번 통신사의 구청잡물은 연행의 사례대로 세 사신에게 올려 보내 달라고 하였는바, 전후의 관문이 크게 서로 같지 아니하여 어디를 따라야 할 지 모르겠으니, 하나로 지적하여 분부함으로써 급하게 거행할 수 있도록 할 일.

이에 의거한 예조의 수결 내용: 전에 관문으로 알린 것은 오직 본도에서 참작하여 어떻게 분정할지에 달려 있거니와, 비변사에서 분부한 것은 곧 행중(行中)에 사용되는 것이니 전례대로 거행할 일.

一. 안악(安岳) 군수의 첩정 내용. 방금 도부한 본도 순찰사의 관문 내용으로 본군에 복정하여 예조에 납입할 석린(石鱗) 14근을 정밀하게 준비하여 올려 보내는 일로 첩정함. 이에 의거한 예조의 수결 내용: 사신의 건량소(乾糧所)에 수송하였으니 상고하여 시행할 일. [건량소에서 감결(甘結)을 받음]

경인(1710) 11월 27일

경상감사의 관문 내용. 통신사가 바다를 건널 때의 선박 가운데 사용하는 집물로서 다른 도에 분정한 수량 및 본도에 복정한 수량을 아울러 구별한 성책을 겨우 이미 다듬어서 올려 보냈고, 다른 도에 분정한 물품은 귀조에서 이미 각 해당 도에 분부하였을 것으로 생각되거니와, 본도에 복정한 물품은 비록 확정하여 회이한 일은 없으나, 임술년(1682)의 사례대로 각 고을에 분정하였는데, 방금 통영 및 좌수영에서 첩보한 바를 접하니, 임술년(1682) 집물 가운데 부족한 수량은 임시로 미처 변통하지 못하고 각 해당 수영에서 담당하여 마련하였으니, 이번에는 각 고을에 일체로 분정하여 달라고 하였는바, 이는 값을 회감(會減)하는 물자이니 전례에 따라 분정하는 것은 후일에 난처한 사단이 없지 않겠기로, 부족한 수량을 이문에 후록하였으니, 혹은 다른 도로 옮겨 분정하거나, 혹은 본도에서 융통하여 분정하거나, 귀조에서 선혜청에 첩보하여 확정하여 회이함으로써 거행할 수 있도록 할 일.

이에 의거한 예조의 수결 내용: 사행의 잡물은 한결같이 이전 등록대로 분정하여 거행할 따름이고, 이른바 부족한 수량이라 운운한 것은 그 연유를 알

지 못하겠으나, 각 고을에 분정한 뒤에 선혜청에 보고하여 회감함이 마땅하니, 상고하여 시행할 일.

본도의 후록: 정철(正鐵) 1196근. 숙마(熟麻) 1811근. 질정(蛭釘:거멸못) 대(大) 중(中) 425개. 선식(船食) 252근.

경인(1710) 12월 초3일

一. 예조 단자. 이제 이번 통신사의 발정(發程) 및 승선(乘船) 길일(吉日)을 일관(日官)에게 명하여 뽑으라 하였더니 발정은 내년 신묘(1711) 4월 초6일, 승선은 5월 초9일 오시가 길하다고 하니, 이대로 분부하여 거행함이 어떠할지? 강희 49년(1710) 11월 초3일. 입계하여 입계한 대로 시행하라 하셨음.

[충청감영 전라감영 경상감영 동래부사 호조 함경감영 강원감영 황해감영 평안감영 등]

一. 경상감사의 관문 내용. 이전에 도부한 예조 관문의 내용에, 통신사가 갈 때 각도에 분정한 잡물을 대조하여 받아들일 즈음에 주관하는 관원이 없어서는 불가하니, 전례대로 별도로 차사원(差使員)을 정하는 일로 관문이 있었는데, 동 잡물 차사원으로 부산첨사를 이미 차출하여 정하여 분부하였으니, 상고하여 시행할 일.

경인(1710) 12월 11일

一. 통신사의 관문 내용. 이제 이번 통신사의 사행이 지참하여 갈 예단에 사용될 석린(石鱗)은 마땅히 귀조에서 골라 가져다가 봉합하여 싸서 건량청(乾糧廳)으로 수송하여 거기에서 받아 올리라고 하였기로, 황해도 안악군에서 복정한 석린을 받아 올리기 위하여 간품(看品)하였더니, 거칠고 잡박하며 정갈하지 못하고 조각조각 부스러져서 하나도 쓸 만한 것이 없기로, 형편이 부득이하여 도로 물리쳐 보냈으니, 이 뜻을 본군에 엄중하게 신칙하여 정밀하게 골라 고쳐 마련하여 기일에 맞추어 올려 납입하도록 할 일.

이에 의거한 예조의 수결 내용: 속히 고쳐 마련하여 올려 보낼 일로 본도에 이문을 보는 일임. [황해감영으로 이문]

一. 전의감(典醫監)의 첩정 내용: 통신사의 차례에 해당하는 의원으로 전정(前正) 장재만(張在萬)을 차출하여 정하였는데, 상고하여 시행할 일. 이에 의거한 예조의 수결 내용: 도부하였음.

경인(1710) 12월 26일

경상감사 유명홍(兪命弘)이 12월 19일 성첩한 장계. 통신사를 영접하고 호위하는 재판차왜 다이라 마사데이교우[平方正卿]의 접위관으로 울산부사 박징(朴澄)을 차출하여 정하고 전례대로 접대하게 하였으며,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경인(1710) 12월 29일

이번 12월 28일 행관중추부사 이유(李濡)와 좌의정 서종태(徐宗泰)⁵⁵⁾, 우의정 김창집(金昌集)이 청대(請對)하여 입시하였을 때 좌의정이 계품한 바, “통신사의 사행 중 수역(首譯)을 변통할 사람으로 이미 대계(臺啓)의 윤허를 받은 뒤에 합당한 사람을 골라 자급(資級)을 올려 보내라는 하교가 있었는데, 신이 사역원 제조로 있는 지 오래되지 않아 저들의 능한지 여부를 상세히 알지 못하여 진작 거행하지 못했는데, 근일에 같은 책임의 제조 민진후(閔鎭厚) 윤덕준(尹德駿)과 함께 모여 통신사 사행 중에 차출하여 맡길 사람 및 그 밖에 몇 사람에게 그 본업인 왜어(倭語)와 문필을 시험하였더니, 근래 왜학(倭學)은 더욱이 사람이 모자라 비록 특별히 우수한 사람은 없으나 모두 능히 제법 알고 있었는데, 현재 왜학 당상역관으로 사고가 없는 자로는 오직 이석린(李碩麟) 한 사람이고, 제법 글과 말에 능숙하며, 당하 역관으로는 이송년(李松年)⁵⁶⁾ 김시남(金始南)⁵⁷⁾이 또한 제법 앞장서고 있는데, 행중의 당상역관으로는 근자의 사례에 의하면 마땅히 3원이 되어야 하니, 이석린, 이송년, 김시남을 아울러 자급을 승진시켜 보냄이 어떠할지? 수역(首譯)은 반드시 가선(嘉善)의 품계일 필요는 없으나 예전 사례에 모두 직급이 높은 역관이었고, 임술

55) 서종태(徐宗泰, 1652-1719): 달성 서씨로 자는 군망(君望), 호는 만정(晩靜), 서곡(瑞谷), 송애(松厓)이다. 숙종 6년(1680)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승지, 대사간, 대제학, 공조판서, 대사헌, 이조판서를 거쳐 영의정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효(文孝)이다.

56) 이송년(李松年, 1660-?): 광주 이씨로 자는 윤숙(允叔)이다. 숙종 9년(1683) 증광시의 역과에 왜학으로 합격하여 품계가 통정대부에 이르렀다.

57) 김시남(金始南, 1656-?): 우봉 김씨로 자는 중숙(重叔)이다. 숙종 16년(1690) 역과에 왜학으로 합격하여 품계가 통정대부에 이르렀다.

년(1682) 통신사 때 수역 역시 가선이었는데, 일이 예전과 다르면 왜인이 필시 이를 언짢게 생각할 것이니 가선을 수역을 함이 적절합니다.”라고 하였음. 상감께서 “그대로 하라”고 하셨음. [비변사, 이조, 예조, 사역원]

신묘(1711) 정월 초5일

一. 동래부사 권이진이 12월 26일 성첩한 장계. 이달 19일 신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박중징(朴仲徵)의 치통 내용임. 올해 윤7월 초9일 나왔던 당년조 1 특송사 1호선에 정관 다찌바나 게이겐[橋景憲]과 도선주 다찌바나 큐우쓰기[橋久次], 봉진압물 1인, 시봉 1인, 반종 4명, 격왜 40명 등이 함께 탔으며, 동 특송사 2호선에 이선주 기요하라 다다데이[清原惟貞], 사복압물 1인, 반종 3명, 격왜 30명 및 기축 3월 20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2인, 소금도왜 6명 등이 함께 타고, 도합 2척이 당일 진시에 발선하여 돌아 들어갔다는 일로 치통하였음.

당년조 수도서(受圖書) 만쇼잉[萬松院] 송사왜 원역 등에 개한 상선연을 이달 21일로 정하였는데, 신은 병으로 가서 참여하지 못하고 부산첨사 박중징이 홀로 가서 베풀어 행하였음.

방금 도부한 접위관 울산부사 박징(朴澄)의 이문 내용임. 재판차왜 다이라 가다세이[平方正] 원역 등에 대한 다례를 이달 25일 전례대로 베풀어 행한 뒤에 해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1통과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 1통과 별폭 2통 등을 받아 보내는 일로 이문하였음.

일시에 도부한 훈도 정만익(鄭晩益)과 별차 이덕기(李德基) 등의 수본 내용. 오늘 재판차왜의 다례를 베풀어 행할 때 동 왜인이 소인을 시켜 접위관 앞에 전달하여 말하기를 “임술년(1682) 통신사 때는 도해역관이 있었으므로 모든 일을 도중에서 강정(講定)하였는데, 지금은 도해역관이 없는데, 얼굴을 맞대고 논의해야 상세하게 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니, 수역(首譯) 한 사람이 속히 내려와서 일응(一應) 절차를 강정할 수 있도록 하며, 행중의 모든 일은 오로지 당상역관 3원에게 책임지우니, 반드시 왜어에 능숙하고 일본 풍속을 익히 아는 자를 선발하여 차출하여 주시고, 통신사 때 수다한 하인 중에 필시 잠상(潛商)을 하는 일이 없지 않을 것인데, 이번에는 각별히 준엄하게 신칙하며, 귀국의 뱃사람이 비록 익숙하다지만 배를 집으로 삼는 일본 사람 같지는 않을 것인데, 물의 형세와 바람의 힘이 어떤지를 알지 못하고 임의로 배를 운행하다가 매양 당황하여 고생하는 우려가 있게 되니, 이번 사행에는 일본 사공과

상의하여 배를 운행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해 달라”고 하였기에 연유를 수분으로 하는 일이라는 수분이었음.

위 항목의 재판차왜가 지참하여 온 서계 2통과 별폭 3통 등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며, 이제 이번에 청한 바는 모두 일찍이 이전에 누누이 말한 것으로 특별히 신기한 내용은 없으며, 수역이 내려오면 무슨 강정할 일이 있는 것인지, 수역이 내려오는 일은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치하라는 뜻으로 전에 이미 치계하였는데,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는 일임. [이는 비변사에 계하여, 같은 날 인견할 때 탑전(榻前)에서 확정함]

신묘(1711) 정월 초8일

이번 정월 초5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좌의정 서(徐)가 계품하기를, “동래부사 권이진이 재차 장계를 올려, 재판차왜의 소청으로 말미암아 수역을 내려 보내는 일로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치하기를 청하였는데, 임술년(1682) 통신사 사행 전에 절목을 강정하는 일로 배편을 따라 도해역관을 대마도로 보냈는데, 이번에는 차왜가 도해역관을 차출하여 보내달라고 청하여, 묘당에서 복계하여 틀어막았으므로 차왜가 또 수역을 내려 보내달라고 청하였으니, 그 말대로 내려 보냄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상감께서 “이는 어려운 일이 아니니 수역을 속히 내려 보냄이 좋겠다”고 하셨음.

신묘(1711) 정월 초9일

동래부사 권이진이 12월 12일 성첩한 장계. 이달 초9일 술시 쯤에 황령산 봉군 최계수(崔戒守)와 간비오 봉군 최종발(崔從發) 등의 진고한 내용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등불을 매달고 물마루로 나온다고 진고하였음.

초10일 해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박중징의 치통 내용에, “수문장 소통사 이석만(李碩萬)의 진고 내용에 ‘이제 이번 송도 앞바다에 표류한 왜선 2척을 영술하여 오기 위하여 왜관에 머무는 금도왜가 작은 배 1척을 타고 이전처럼 나간다’고 진고하였기로, 이에 의거하여 소통사 박귀찬(小通事) 박귀찬(朴貴贊) 장순악(張順惡) 등이 압송하였는데, 부산 앞바다에 이르러 표류한 왜선을 만나 함께 되돌아 관소로 향하였다고 하였음. 문정하기 위하여 별차 이덕기를

정하여 보냈더니 수본 내용에, ‘표류 왜선이 정박해 있는 곳으로 달려가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제1척은 재판차왜의 배에 정관 1인, 봉진압물 1인, 시봉 1인, 반종 10명, 격왜 40명 및 중금도왜 2명과 교대차 나온 통사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2척은 정해조 부특송사 1호선이 재차로 건넌 배에 격왜 40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을 지참하고 나왔다가 표류하여 이곳에 이르렀다고 운운하였다’는 수본이었음. 이에 의거하여 다시 문정하라는 뜻으로 역관 등에게 분부하였다”는 일로 치통하였음..

11일 축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임. 훈도 정만익과 별차 이덕기 등이 문정한 수본 내용에, 표류한 왜선 2척이 돌아와 관소에 정박한 즉시 왜관에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제1척은 통신사를 맞이하고 호송하는 재판차왜의 배에 정관 다이라 가다세이[平方正]와 봉진압물 1인, 시봉 1인, 반종 10명, 격왜 40명, 교대차 나온 통사왜 1인, 중금도왜 2인 등이 함께 타고 서계를 지참하고 있었으며, 제2척은 정해조 부특송사 1호선이 재차 건넌 배에 격왜 40명 등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하여 노인을 지참하고 나왔는데, 재차 나온 것은 규정 밖이기로 노인을 받지 않고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렀으며, 재판차왜의 말이 「임술년(1682) 통신사 때는 도해역관이 있었으므로 모든 시행되어야 할 절목을 도중(島中)에서 강정(講定)하였는데, 이번에는 귀국에서 도해역관을 보내지 않으므로 제가 통신사의 영접과 호위를 전담하면서 또한 절목을 강정할 일을 겸하여 위임받아 나왔거니와, 저희가 통신사를 영접하고 호위하여 그대로 에도[江戸]에 가기 때문에 통신사의 일응 절차를 통신사의 차사로 가는 수역과 상대하여 강정한 뒤에 임시로 군색(窘塞)할 우려가 없겠기로, 다례 뒤에 장차 수역을 청하여 올 일이 있으니, 동 다례를 속이 정하여 행하여 달라」 고 이야기 하였으며, 가지고 있는 서계는 다례하는 날 전례대로 바칠 계획이라 하기에, 동 서계 등본을 올려보냄’이라는 수본이었음. 이에 의거하여 동 등본을 수송하는 일로 치통하였음.

같은 날 신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임. 올해 9월 23일에 나왔던 당년조 만쇼영[萬松院] 송사 수목선 1척에 격왜 15명 등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당일 진시에 발선하여 돌아 들어갔다는 일로 치통한다고 하였음.

위 항목의 규정 밖으로 나온 왜선은 속히 되돌려 보내라는 뜻으로 다시 역관들에게 명하여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였으며, 재판차왜 다이라 가다세이[平方正]가 지참하여 온 서계는 다례하는 날 바칠 계획이라고 하기에 동 서계 등본 1통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냄.

전례를 가져다 살펴보니 임술년(1682) 통신사가 들어갈 때 재판차왜가 호행차왜와 일시에 호행(護行)하였다가 또 호위하여 되돌아왔기에 이미 전례가 있으니 이제 이 재판차왜도 전례대로 접대해야 마땅하겠으니 접위관을 가까운 고을 수령 가운데서 차출하여 정하라는 뜻으로 도신(道臣)에게 보고하였으니, 연례에 증정할 예단 잡물을 해조에 명하여 사례를 대조하여 마련하여 내려 보내게 하며, 수역을 만나 무슨 강정할 일이 있는지, 임술년(1682)에 강정한 것이 모두 긴요하지 않은 가소로운 일인즉, 이번에도 또한 반드시 강정할 일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혼도와 별차가 신에게 말을 전한 것을 장계로 알려 품의 조처하게 함이 마땅하나, 수역이 꼭 내려올 것은 아니나, 수역이 내려오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은 아니니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며, 당년조 1 특송사왜의 원역 등에 대한 상선연 및 관수왜 다이라 나오시루[平尙知]의 하선연을 베풀어 행하는 일을 조정하였는데, 신은 전년 겨울부터 병으로 접대하지 못하여, 송사왜 등이 이전에 되돌아간 왜인이 신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서 도중(島中)에서 책망을 받았다고 하니, 필시 한 번 대하여 접촉하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것이기로, 만부득이하여 억지로 병을 무릅쓰고 나가 일특송, 부특송, 만쇼잉 등의 왜인을 한 번 나가 접촉한 뒤로 병세가 엄중하게 더하여, 이번에는 가서 참여하지 못하고, 부산첨사 박중징이 전례대로 혼자 가서 일특송사 상선연을 이달 초8일에 베풀어 행하였으며, 관수왜는 11일에 또한 진상(進上) 숙배(肅拜)한 뒤에 하선연을 그대로 베풀어 행하였기로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권이진의 장계를 보면, 통신사의 영접과 호송을 위한 재판차왜가 서계를 지참하고 나왔는데, 전례를 상고하면 임술년(1682) 통신사가 들어갈 때 재판이 호행차왜와 일시에 호행(護行)하고 또 호환(護還:호위하여 되돌아옴)하여 이미 전례가 있는 일인지라 전례대로 접대함이 마땅하기로, 접위관을 차정하라는 뜻으로 도신에게 보고하였으니, 연례에 증정할 예단 잡물을 해조에 명하여 사례를 대조하여 마련하여 내려 보내 달라고 하였는바, 이제 이번 재판차왜를 접대하는 데는 일찍이 전례가 있고, 별폭의 회례 및 연례의 예단 잡물을 마련하여 들였으니, 전례대로 접대한다는 뜻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50년(1711) 정월 초9일 우승지 신 남취명(南就明)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이 원 장계는 경인(1710) 12월 19일 비변사에 계하하여 금년 정월 초5일 인견하였을 때 확정하였으므로 추후에 회계(回啓)를 환송함.]

一. 통신사 호행 재판차왜 다이라 가다세이[平方正]가 지참하여 온 서계 등본.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 다이라 요시가다[平義方] 봉서(奉書)
조선국 예조대인 함하.

소춘(小春)에 아득히 귀국이 화평할 것이라 생각하며, 본방도 같습니다. 이제 내년의 통신사에 피차간의 일을 조정하기 위하여 이제 다이라 가다세이[平方正]를 보내어 후지 노리쇼쿠[藤則直]를 대신하게 하며, 또한 통신사가 바다를 건너면 예전 규정을 준수하여 영접하고 호위하는 곡절은 사신의 이야기에 부쳐 두었습니다. 보잘 것 없는 물품을 넣은 함은 웃으며 남겨두시면 다행이겠습니다. 아무튼 살피주시기 바라며, 다시금 순조로운 건강 진중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갖추지 못합니다.

보영(寶永) 7년 경인(1710) 10월. 대마주 태수 습유 다이라 요시가다[平義方]
별폭: 채화옥괘연(彩畵玉掛硯) 1비. 채화화전갑(彩畵華箋匣) 1개. 기반(碁盤) 1위(圍). 채화칠존염경(彩畵七寸奩鏡) 2면, 주칠대원분(朱漆大圓盆) 10개. 제(際).
보영(寶永) 7년 경인(1710) 10월. 대마주 태수 습유 다이라 요시가다[平義方].

一.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 다이라 요시가다[平義方] 계서(啓書)
조선국 동래 부산 양 영공 함하.

초겨울에 생각건대 여러 분께서 지내시기 적절하신지 치달려가는 정이 참으로 간절합니다. 장차 내년 통신사를 내빙하는 일을 조정하느라 이에 재판을 서로 바꾸게 하고 인하여 바치오니 해당 부서에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사신의 허에 맡겨두었습니다. 별폭의 보잘 것 없는 물품은 웃으며 받아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이만 갖추지 못합니다.

보영(寶永) 7년 경인(1710) 10월. 대마주 태수 습유 다이라 요시가다[平義方].
동래부사공 별폭: 채화소원분(彩畵小圓盆) 20개. 채화대연갑(彩畵大硯匣) 1개. 적동대약관(赤銅大藥罐) 10개. 제(際).
부산영공 별폭: 적동누오관반(赤銅累伍盥盤) 1부. 채화소원분(彩畵小圓盆) 10개. 채화누합대연갑(彩畵累合大硯匣) 1비(備). 제(際).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전에 재판차왜 다이라 요시가다[平方正]가 지참하여 온 서계의 회답 및 동래 부산에서의 답장 초고를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지어내게 하였는데, 별폭의 회례 잡물을 전례대로 마련하여 계목에 후록하였으니 급속히 준비하여 내려 보내는 일로 해조 및 본도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후록

별폭 회례: 인삼 1근. 범 가죽 1장. 표범 가죽 1장. 흰 명주 5필. 흰 모시베 5필. 검은 삼베 3필. 흰 무명 10필. 황모필 30자루. 이상 해조에서 마련. 화석 3장. 녀장 붙인 유둔 2부. 참덕 30홀. 이상 본도에서 지급.

동래 부산 두 곳의 회례. 각각: 흰 명주 3필. 흰 모시베 3필. 흰 무명 5필. 황모필 20자루. 이상 해조에서 마련. 참덕 20홀. 본도에서 지급.

강희 50년(1711) 정월 초9일 우승지 신 남취명(南就明)⁵⁸⁾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一. 예조 단자. 이제 이번 통신사의 영호(迎護) 재판차왜 다이라 요시가다[平方正] 등의 하선과 상선, 왜관에 머물 때의 별연 도합 세 차례의 잔치에 증정하여 지급할 물품을 전례대로 마련하였으니 급속이 준비하여 별도로 차비역관을 정하여 지참하여 내려 보내는 일로 해조 및 본도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차왜에게 3차의 연회에 증정하여 줄 물품: 인삼 1근. 흰 명주 5필. 흰 모시베 5필. 검은 삼베 3필. 흰 무명 5필. 황모필 30자루. 이상 해조에서 마련함. 화석 3장. 녀장 붙인 유둔 2부. 참덕 30홀. 이상 본도에서 지급.

압물 1인, 시봉 1인에게 각각 3차의 연회에 증정해 줄 물품. 각각: 흰 명주 2필. 흰 모시베 2필. 흰 무명 3필. 이상 해조에서 마련.

반중 10명에게 각각 3차의 연회에 증정할 줄 물품, 각각: 흰 명주 1필. 흰 모시베 1필. 흰 무명 2필. 이상은 해조에서 마련.

강희 50년(1711) 정월 초9일 입계하여 입계한대로 시행함.

一. 예조에서 상고할 일. 방금 계하하시를, 이제 이번 통신사의 영호(迎護) 재판차왜에게 통신사 행차의 절목을 강정하기 위해 수역을 내려 보내는 일로 묘당에서 이미 확정하였는데, 수역과 차왜가 서로 접촉할 때 사예단을 증정하여 주는 규정이 있으니, 전례를 상고하여 동 사예단의 물품을 급속히 지출할 일.

一. 예조에서 상고할 일. 방금 계하하시기를, 이제 이번 통신사의 영호 재판차왜에게 통신사의 절목을 강정하기 위하여 수역 1인을 내려 보내는 일로 묘당에서 이미 확정하였는데, 수역이 타고 갈 말 및 짐말[卜馬]을 전례대로 지급할 일. [병조로 이문함]

58) 남취명(南就明, 1661-1741): 의령 남씨로 자는 계량(季良), 호는 약파(藥坡)이다. 숙종 20년(1694) 문과에 급제하여 지평과 수찬을 거쳐 승지를 역임하고 예조참판, 대사간, 경기도 관찰사·병조참판을 거쳐 지돈녕부사를 지냈다.

一. 호조의 이문 내용. 방금 경상감사의 이문을 접하니, “임술등록을 살펴보니 통신사가 지참하여 가는 악기인 관(管), 약(簫), 지(簾), 적(簞)에 들어가는 황죽(黃竹), 오죽(烏竹) 등의 물품을 호조에서 그때 본도에 분정하여 견양(見樣)을 내려 보낸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짐짓 분부하는 일이 없으니, 비록 분정하지 않고 이미 서울 관청에서 찾아내어 제작하였는지 모르겠으나, 이미 전례가 있으므로 이렇게 이문하니, 급속히 회이하여 때가 되어 궁색한 우려가 없게 할 일”이라는 관문이었는데, 이번에는 귀조에서 당시에 계하하여 이관(移關)한 일이 없었는지 그 사유를 알지 못하겠으나 속히 회이하여 거행하도록 할 일.

이에 의거한 예조의 수결 내용: 등록을 상고하면 이른바 다이유잉[大猷院]과 겐유잉[嚴有院]이라 한 것은 모두 치제(致祭)하는 장소인바, 반드시 저쪽 나라에서 그 명목과 호칭을 정하여 알려 온 연후에 악기 등의 물건을 마련하여 보내는데, 이에 앞서 치제를 아울러 하지 말라는 일로 조정하였거니와, 이번에는 치제하는 장소와 명칭을 고하여 온 일이 없기로 계하하여 알릴 수가 없었는데, 짐짓 수역이 내려간 뒤로 탐문하여 온 뒤에 계하할 계획이니, 상고하여 시행할 일.[이것은 호조로 회이할 일]

신묘(1711) 정월 초10일

예조에서 계품하기를, “여러 등록을 상고하면 일찍이 임술년(1682) 통신사를 들여보내고 가는 기일을 아울러 저쪽에 알렸는데, 지금 또한 이자(移咨)하는 일이 있어야 마땅할 듯한데,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함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전교에 “윤희한다” 하셨음.

신묘(1711) 정월 11일

평안감사의 관문 내용. 방금 도부한 예조의 이관 내용에, “이제 이 통신사가 지참하여 갈 반전(盤纏) 잡물은 한결같이 임술년(1682) 통신사 때의 사례대로 마련하여 각 도에 분정하였는데, 방금 경상감사의 이문을 접하니, 본도에 북정(卜定)한 인삼은 산출되는 곳이 아니라고 하여 일찍이 신유년(1681)에 변통하여 줄여 없었기로 동 인삼 8근을 본도에 옮겨 분정하니, 급속히 마련하여 보내라”는 일의 관문이었는데, 감영에 보관한 신유년(1681) 등록을 가져다 살

펴보니 통신 삼사(三使) 신의 행차에 각각 인삼 10냥을 보내고 원래 8근의 인삼을 갖추어 보내는 일이 없는 바, 이는 필시 저희 감영에서 탈보(頗報)⁵⁹⁾ 하여 거행하지 않은 소치일 것인데, 이번에도 경상도에서 옮겨 복정한 인삼은 본도에서는 담당하기가 어려운 형편인데, 통신사의 구청(求請)은 다른 곳과 다름이 있기로 인삼을 무역하기 위하여 별장(別將)을 정하여 강계부(江界部)로 보냈더니, 방금 강계부사가 알려진 바를 접하니 인삼의 이익이 이전에 비해 크게 줄어든 나머지 산에 들어가 채집하는 군사 가운데 혹 병들거나 혹 초상이 나서, 연속으로 나오는 것도 세삼(稅蔘)으로 줄여 지급하고 그 나머지 받아들이는 것이 겨우 90근이고, 금영(禁營)의 공사 무삼(貿蔘)이 많게는 90근에 이르러 돈삼계(勲蔘契) 사람들이 받는 가격이 1,000냥에 무명 100동이고, 양 의사(醫司)에서 내려 보내는 무명이 40동이며, 호조에서 복정한 상평삼(常平蔘)이 30근인바, 이는 모두 경사(京司)의 분부인지라 분별하여 거행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세삼(稅蔘) 90근은 모조리 보내어 처분하고 이미 남은 수량이 없는데다, 통신사의 구청 인삼 8근을 환무(換貿)하러 보낸 별장이 왔는데, 관청의 저축이 이미 고갈되어 전혀 여지가 없어서 무역하여 보내지 못한다고 하니, 이미 강계에서 무역하여 오지 못했다면 달리 얻을 만한 형편이 없는지라 마련하여 보내지 못하니, 상고하여 시행할 일.

이에 의거한 예조의 수결: 이 사연으로 매거하여 비변사에 첩보할 것이니 상고하여 시행할 일.

一. 예조에서 상고할 일. 이제 이번 통신사가 지참하여 갈 반전(盤纏) 인삼 8근을 한결같이 본조의 등록에 의거하여 경상도에 복정하였는데, 본도에서는 인삼이 본디 산출되는 곳이 아니라고 신유년(1681)에 대신이 진달한 뜻으로 인하여 평안도로 옮겨 분정한 것을 인용하였기로, 본조에서도 선혜청에서 확정된 전례를 인용하여 평안도로 옮겨 분정할 것을 계품하였는데, 방금 평안감사의 이문을 접하니, 신유년(1681) 통신사의 세 사신이 행차에 각각 인삼 10냥을 보냈으나 원래 8근의 인삼을 갖추어 보낸 일은 없으니, 이는 필시 저희 감영에서 탈보(頗報)하여 거행하지 않은 소치일 것이며, 이번에도 본도에서는 담당하기 어려운데 통신사의 구청은 다른 것과 다름이 있기 때문에 인삼을 사들이기 위하여 별장을 정하여 강계로 보냈으나, 강계부사의 보고 내용에 금영(禁營)의 공사 무삼(貿蔘)이 많게는 90근이나 되어 돈삼계 사람들이 값을 받

59) 탈보(頗報): 상사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말하여 책임의 면제를 청함.

는 것이 1000냥에 무명 100동이고, 양 의사에서 내려보내는 무명 40동, 호조에서 복정한 상평삼이 30근인바, 이는 모두 경사에서 의 분부인지라 구분하여 대략 거행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세삼 90근을 모조리 구획 조치하여 이미 남은 수량이 없는데다, 관청의 저축이 이미 고갈되어 전혀 여지가 없어서 무역하여 보내지 못한다고 하니, 이미 강계에서 사들여 올 수가 없다면 달리 얻을 만한 형편이 없는지라 마련하여 보내지 못한다고 말을 하였는바, 이제 이번 인삼을 평안도로 옮겨 분정한 것은 실로 신유년(1681)에 이미 시행한 전례에 의거한 것이나, 본도에서 보고한 바의 수효가 어긋나는 것은 이미 극히 괴이할 뿐 아니라, 통신사의 사행에 보내는 것은 다른 관청의 인삼과는 일의 체면이 자별하여 미루며 칭탁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제 이렇게 탈보(頌報)하였기에 본조에서는 다시 강박하기는 어려우니, 비변사[司]에서 선혜청에 분부하여 신유년(1681)의 전례대로 거행하게 하여 주시기를.

비변사의 제사(題辭) 내용: 선혜청에 분부하였으니 상고하여 시행할 일.

신묘(1711) 정월 17일

경상감사의 관문 내용. 통신사가 지참하여 갈 예단 반전 잡물을 한결같이 예조의 관문에 의거하여 각 고을에 분정한 뒤에 이대로 받아 올리라는 뜻으로 부산에 분부하였더니, 동 첨사의 보고 내용에, “이제 이번 복정한 물품을 임술년(1682) 등록과 비교하니 들쭉날쭉하여 같지 않은 일이 많은데, 이번에 증정하는 곳이 임술년(1682)보다 수효가 줄어서 같지 않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급속히 변통하여 분부하라는 일”로 첩보하였기로, 동 물건을 구별하여 이 문에 후록하였으니, 다시 전례를 상고하여 명백하게 회이하여 급속하게 거행하도록 할 일.

一. 백지(白紙): 임술년(1682) 당초 복정 150권, 추가 복정 110권, 도합 260권 내에서 50권은 반전, 210권은 예단. 이번 복정에서는 반전 50권 외에 예단 210권은 지금 복정 수량에 나오지 않음.

一. 채화석(彩畵席): 임술년(1682) 당초 복정 50장, 추가 복정 20장, 합계 70장 내에서 30장은 반전, 40장은 예단. 이번 복정에서는 반전 30장 외에 예단 40장이 지금 복정의 수량에서 나오지 않음.

一. 화석(花席): 임술년(1682) 복정 52장. 예단. 이번 복정에서는 21장 외에 31장이 지금 복정 수량에서는 나오지 않음.

一. 녁장 붙인 유둔(油氈): 임술년(1682) 당초 복정 45번, 추후 복정 12번,

도합 57번 내에 20번은 반전, 37번은 예단. 지금 복정 52번 내에 20번은 반전, 32번은 예단, 그 밖에 예단 5번은 지금 복정 수에 나오지 않음.

一. 각색지(各色紙): 임술년(1682) 복정 230권 내에 100권은 반전, 130권은 예단. 지금 복정 228권 내에 100권은 반전, 128권은 예단. 이외의 예단 2권은 지금 복정 수에 나오지 않음.

一. 유매먹[油煤墨] 한림풍월(翰林風月): 임술년(1682) 당초 복정 295홀, 추가 복정 30홀, 도합 325홀. 예단. 이번 복정에 참먹[眞墨]이 255홀이나 색깔과 명목이 각기 다를 뿐 아니라 70홀이 지금 복정 수량에 나오지 않음.

一. 흰 보시기[白甫兒]: 임술년(1682) 복정 18죽 내에 3죽은 예단, 15죽은 반전. 지금 복정 반전 15죽 외에 예단 3죽은 지금 복정 수에 나오지 않음.

一. 흰 대접[白大貼]: 임술년(1682) 복정 18죽 내 3죽은 예단, 15죽은 반전. 지금 복정 반전 15죽 외에 예단 3죽은 지금 복정 수에 나오지 않음.

一. 백자배대(白磁盃臺): 임술년(1682) 복정 18부 내 8부는 반전, 10부는 예단. 지금 복정 반전 8부 외에 예단 10부는 지금 복정 수에 나오지 않음.

一. 화면석(花面席) 7좌(坐), 황촉(黃燭) 5쌍: 임술년(1682) 복정에 예단이었으나 지금 복정에 수가 나오지 않음.

一. 통신사가 왜인을 접견할 때의 사례단(私禮單): 화석(花席) 27장, 벼루[硯] 3면, 4유둔(四油屯) 8번(番), 6유둔 2번, 참먹 30홀, 부채[扇子] 100자루, 황울 10말[斗], 호두 1섬[石] 12말[斗], 들기름[法油] 2말, 참깨[眞荏] 10말, 황국지(黃菊紙) 1권, 청태지(靑苔紙) 1권, 상화지(霜花紙) 1권, 백지(白紙) 50권, 장지(壯紙) 15권, 설화지(雪花紙) 1권, 운암지(雲暗紙) 1권, 도화지(桃花紙) 1권.

一. 수역(首譯)의 사례단(私禮單): 화석 27장, 호두 1섬 12말, 상화지 10권, 장지 15권, 백지 50권, 부채 100자루, 들기름 2말, 4유둔 8번, 6유둔 2번, 참깨 10말, 벼루 3면, 참먹 30홀, 황울 10말, 설화지 1권, 운암지 1권, 도화지 1권, 청태지 1권, 황국지 1권. 제(際).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상고할 일 운운이라는 관문이었음.

다시 본조에 보관한 등록을 살펴보니, 이제 이번 이문의 후록 가운데 혹은 이미 계하한 것도 있고, 혹은 계하하지 않은 것도 있기로, 동 계하한 수량 및 계하하지 않은 수량을 구별하여 이문에 후록하니, 상고하여 시행하되, 도부 일시를 이문할 것.

후록.

一. 백지 260권 내에서 사신 반전 50권은 이미 계하하여 전에 이미 이문하였음. 겐유잉[嚴有院] 100권, 다이유잉[大猷院] 100권. 이는 현재 확정하지 않았으니 짐짓 계하를 기다림.

一. 채화석 70장 내에서 사신의 반전 30장은 이미 계하하여 앞서 이미 이문한 수량임. 겐유잉[嚴有院]의 사신 예단 20장, 다이유잉 사신 예단 20장. 이는 현재 확정하지 않았으니 짐짓 계하를 기다림.

一. 화석 52장 내에 임술년(1682)에는 집정 4인에게 각각 4장씩 지급하여 도합 20장인데, 이것은 이번에 마련하지 않음. 수도서(受圖書) 3인에게 각각 3장씩 지급하여 합계 9장 내에 1인을 줄여 실제 수량 8장은 이미 계하함. 도주(島主) 1인에게 5장이나 이번에 또한 5장으로 이미 계하함. 수직왜(受職倭) 9인에게 각각 2장씩 지급하여 합계 18장인데, 4인을 줄여 지금은 5인에게 지급하는 10장만 이미 계하함. 사신의 반전이 3장인데, 이제 이번 이문 가운데 후록에 기록하지 않았으니 다시 상고하여 회이하기를.

一, 유둔 57번 내에 임술년(1682)에는 집정 4인에게 각각 3번씩 지급하여 합계 12번이었는데, 그 중 이번에는 1인으로 계하하면서 2번을 추가 지급하여 실제로는 5번으로 이미 계하하였음. 수도서(受圖書) 3인에게 각각 1번씩 지급하여 합계 3번 내에 1인을 줄여 실제로는 2번으로 이미 계하함. 집정 3인의 이름을 바꾼 집사 3인을 계하하여 각기 5번 씩 지급하니 실제로는 15번으로 이미 계하함. 서경윤 1인과 근시 1인에게 각각 5번씩 합계 10번으로 이미 계하함. 사신의 반전으로 20번을 이미 계하함. 이번에 줄여서 마련하여 집정 3인에게 지급할 남은 수량 7번과, 수도서인에게 지급하고 남은 수량 1번과, 지금 복정에 나오지 않는 5번[이는 겐유잉[嚴有院]에 사용한 사신의 예단] 등 13번은 계하하지 않았음.

一. 각색지 230권 내에 국왕 30권, 국왕자 30권, 사신 예단 68권, 반전 100권. 이는 이미 계하하였으나, 나오지 않는 2권은 기재된 곳이 없음. 이는 필시 사신 예단의 남은 수량일 것임. 겐유잉[嚴有院]과 다이유잉[大有院] 각 50권, 합 100권. 현재 확정하지 않음.

一. 유매먹[油煤墨] 325홀 내에서 국왕 50홀, 국왕자 50홀, 장로 1인 10홀. 이는 임술등록과 같음. 임술년(1682)에는 집정 4인에게 각각 20홀씩 지급, 합계 80홀 내에서 지금 3인을 줄여 실제로는 20홀. 봉행 6인에게 각각 10홀씩 합계 60홀이나 지금은 2인을 더하여 실제로는 80홀. 수직왜 9인에게 각각 5홀씩 합계 45홀이나 지금은 4인을 제하고 실제로는 25홀. 줄인 수직왜 4인

대신으로 서경운 1인과 근시 1인에게 각각 10홀씩 지급함. 집정 3인에게서 지급이 줄어든 60홀 내에서 봉행 2인에게 지급할 20홀을 제하면 실제 줄어든 것은 40홀.

一. 수역의 사례단 30홀은 현재 아직 확정하지 않았음.

一. 흰 보시기[白甫兒] 18죽 내에서 사신의 반전 15죽은 이미 계하하였음. 겐유잉[嚴猷院]에 사용한 3죽은 확정하지 않았기에 짐짓 계하를 기다리고 있음.

一. 백대접(白代貼) 18죽 내에서 사신의 반전 15죽으로 이미 계하하였음. 다이유잉[大猷院]에 사용된 10부는 확정하지 못하고 짐짓 계하를 기다리고 있음.

一. 백자배대(白磁盃臺) 18부 내에 사신의 반전 8부는 이미 계하함. 다이유잉[大猷院]에 사용한 10부는 확정하지 않아서 짐짓 계하를 기다림.

一. 화면석(化面席) 7좌, 황촉 5쌍: 이는 겐유잉[嚴有院] 등의 곳에 사용한 것으로 확정하지 못했으니 짐짓 하계를 기다리고 있음.

一. 통신사의 사례단 및 수역의 사례단 등은 임시로 변통할 것.

신묘(1711) 정월 19일

경상감사의 관문 내용. 통신사가 지참하여 갈 반전 잡물을 한결같이 관문에 붙인 대로 따라 이미 각 고을에 분정하였거니와, 그 중 군량미 333섬과 적두(赤豆) 7섬, 콩[太] 6섬 등은 전세(田稅)로 나누어 주라 하였는데, 전세를 상고하여 해조로 이문하여 진작 이렇게 나누어 지급하여 부산에 받아두도록 하였으며, 서계 집[書契家] 20부도 임술년(1682)에 귀조에서 내려 보낸다고 하였는데, 이번에도 전례대로 서울에서 만들 것인지 또한 회이하여 거행하도록 할 일.

이에 의거한 예조의 수결 내용: 이른바 군량미는 일의 체면이 호조에 보고해야 마땅하고, 서계 집은 공조에 문의하여, 서계 집 뿐만 아니라 서계 통 17부도 이제 막 만든다고 하여 관문이 왔는데, 20부는 그 사유를 알 수 없으니 상세히 다시 회이할 것.

신묘(1711) 정월 21일

一. 비변사에서 계품하기를, “이전에 통신사를 들여보낼 때 모두 저쪽에 알

리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아문(衙門)에 이자(移咨)해야 마땅하니, 승문원에 명하여 미리 자문(咨文)을 지어내고, 재자관(賚咨官) 역시 해조에 명하여 차출하여 때가 되면 발송하도록 함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전교에 “윤희한다” 하였음.[예조, 승문원]

신묘(1711) 정월 22일

一. 동래부사 권이진이 정월 14일 성첩한 장계. 이달 초7일 미시 쯤에 황령산 봉군 정시건(鄭時巾)과 간비오 봉군 김시명(金時命) 등이 진고한 내용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3척이 물마루로 나오다가 역풍을 만나 표류하여 우도로 향한다’고 진고하였음. 추후에 도부한 부산첨사 박중징의 치통 내용에, ‘왜선 3척이 대마도에서 나오다가 역풍을 만나 표류하여 거제도로 향한다는 석성 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정박한 곳을 상세히 탐지하여 급히 알리라는 뜻으로 차례차례 신척하였다’는 일로 치통하였음. 초9일 술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이제 이번 옥포(玉浦)로 표류한 왜선 2척에 거제왜학 장만규(張萬奎)가 달려가서 문정하니, 제1척은 무자조 제9선에 격왜 30명, 제2척은 동년조 제10선에 격왜 30명 등이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나오다가, 표류하여 이곳에 도착하였다고 하며, 저포(這浦)로 표류한 왜선 1척에 문정하였더니, 무자조 제8선에 격왜 30명 및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명 등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노인을 지참하고 나오다가 표류하여 이곳에 도착했다 운운 하였다고 차례차례 전통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치통한다’ 하였기로 연유를 치통하는 일로 치통하였음.

12일 자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박중징의 치통 내용. 당일 미시에 수문 소통사(小通事) 박원이(朴元伊)의 진고 내용에, 우도(右道)로 표류한 왜선을 맞이하여 오기 위해 왜관에 머무는 금도왜가 작은 배 1척을 타고 전례대로 다대포로 나갔다고 진고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소통사 박귀찬(朴貴贊) 이승한(李承漢) 등이 압송하였고, 우도로 표류한 왜선 3척 및 금도왜의 작은 배 1척을 아울러 영술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호송장 임택휘(林澤揮)와 정철(鄭哲) 등의 치보에 의거하여, 다시 훈도 정만익과 별차 이덕기 등이 문정한 후의 수본 내의 사연은 거제왜학 장만규의 문정 내용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데, 관수왜의 말이 ‘통신사 때 사용할 대구어(大口魚) 100마리의 무역을 허락하여 들여보내 달라’고 운운하였다고 하기로, 동 왜선 등의 노인 3통을 받아 보내는 일로 치통하였음.

13일 유시 썸에 황령산 봉군 방구백(方九白)과 간비오 봉군 임시윤(林時允) 등이 진고한 내용에, ‘조선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작은 배 1척이 나온다’고 하였고, 석성 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초탐하기 위해 두모포 만호 양시준을 정하여 보낸다는 일로 치통하였음. 같은 날 해시에 성첩하고 14일 자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나왔던 왜인의 작은 배 1척을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초탐장 양시준의 치통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정만익과 별차 이덕기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한 뒤의 수본 내용에, ‘왜관에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비선 1척에 두왜 1인과 격왜 5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을 지참하고 나왔는데, 통신사의 호행 대차왜가 배를 타면서 선문(先文)⁶⁰을 또한 가져왔다고 하기로, 노인 1통을 받아 올려보냄’이라는 수본이었음. 이에 의거하여 동 노인을 보내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위 항목에 나왔던 왜선 등의 노인 4통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냄.

임술년(1682) 등록을 가져다 상고하니 통신사 호행차왜가 나올 때는 본도의 도사가 접대하고 차비역관을 차출함이 없는데, 왜인의 접대하는 도리는 터럭 하나라도 전례를 고치는 일이 있어서는 불가하여 이번에도 전례대로 도사가 접대하는 일을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여 본도에 분부하여 차왜가 나온 뒤에 와서 대기하도록 하며, 관수왜는 통신사 때 사용하기 위하여 대구 100마리의 무역을 허락하여 들여 달라고 운운 하였다고 하는바, 이는 일찍이 이전에 무역을 허락한 물건이니 허락하여 부응할지 여부를 또한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할 일.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권이진의 장계를 보면, 통신사의 호행차왜가 나올 때 전례대로 도사(都事)가 접대하는 일을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며, 왜인이 요구한바 통신사 때 사용할 대구 100마리의 무역을 허락하여 들여주는 일 또한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라 하였는바, 본조의 등록을 가져다 상고하니, 임술년(1682) 4월에 동래부사가 장계로 호행차왜를 경접위관이 접대하기를 청하였는데, 비변사에서 복계하여 경접위관을 차출하지 않고 향접위관(鄉接慰官)이 접대하되, 향접위관으로 만약 이웃 고을에서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도사(都事)를 차출하여 정하는 일로 윤허가 내렸는데, 지금도 또한 이대로 거행하며, 또 신유년(1681) 등록을 상고하니, 왜인이 통신사 때 사용할 것이라고 칭하면서 대구 외에 요구한 물종이 또한 많았는데, 그 말대로 수량에 맞추어 허락하여 부응

60) 선문(先文): 도착하기에 앞서 미리 기일을 통지하는 글.

하였으니, 이제 이번 100마리의 물고기를 아까워할 필요는 없으니 청하는 바대로 마련하여 지급함이 마땅하니, 이 두 조목을 본도에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50년(1711) 정월 22일 우부승지 신 유명웅(兪命雄)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一. 경상감사의 관문 내용. 통신사가 지참하여 갈 예단에 쓸 것으로 본도에 복정한 응련(鷹連)은 산출되는 곳이 아니어서 사례에 근거하여 이문을 보내어 이미 평안도로 옮겨 복정하였거니와, 매라는 동물은 성질이 매우 조급하여 조금이라도 보호를 잘못하면 즉시 죽어버리기로, 임술년(1682)에 각 도의 응련이 먼 길로 데려올 즈음에 혹은 중도에서 죽어버리거나 혹은 왜관에 들어가서 병들어 죽은 것이 잇달아 있었으니, 그 죽은 매의 대체를 원래 복정한 해당도의 각 읍에 책임지워야 하나, 일의 형편이 급박하여 천리 먼 길에 다시 마련할 겨를이 없어서, 부득이 하여 본도에서 급급하게 세공(歲貢)으로 올리는 각 고을에 복정하여 수량을 채워 일이 생기는 것을 모면할 수 있었으나, 그 수량이 많아서 51연이나 되었는데, 이번에도 만약 전례대로 원 수량만 복정하고 병들어 죽는 것의 대체를 생각지 않는다면 때가 임박하여 군색하고 급박한 탄이 반드시 전일과 같을 것인바, 당초 본도에 원래 복정한 10연의 매도 오히려 마련하기 어려워서 이미 벌써 이문을 올려 재량하여 옮겼으니, 예비비용으로 차출하는 51연을 출발이 임박하여 다급한 사이에 어떻게 책임지울 수 있겠는가? 만약 여기서 진작 변통하지 않는다면 때가 임박하여 낭패를 볼 것이 단연코 의심할 것이 없으니, 본도가 산출되는 곳이 아니라는 형편과 또한 예비비용으로 많은 수량을 채집해야 하는 사유를 참작하여, 이번에는 동 예비비용 응련을 원래 복정하였던 함경도와 평안도, 강원도와 황해도에다 원래 복정이 1연이면 예비비용을 아울러 모두 2연씩 데려 오고, 혹시라도 한 두 연 같이 복정한 고을이 있으면 두 세 연에다가 예비비용 1연씩을 아울러 데려 오되, 실제 차출에서 만약 무사히 도달하게 되어 수량에 맞추어 피집(被執)하면, 예비비용으로 차출한 것을 되돌려 줌이 혹 무방할 듯하며, 1연을 대신으로 2연을 데려오는 것이 비록 폐가 있을 듯하나, 원래 복정한 응자를 모조리 피집하기는 결코 기약하기가 어렵지만, 약간의 폐단으로 구애되는 바가 있어서 일이 생기게 하여서는 불가하니, 원래 복정한 각 고을에 모두 예비비용을 갖추어 보내라는 뜻으로 급속히 변통하며, 동 응자를 와서 납부할 때 데려온 사람 및 매가 먹는 음식물 또한 경유하는 각 고을에서 갖추어 지급하는 일은 이미 전례가 있으니, 아울러 속히 회이하여 거행하도록 할 일.

이에 의거한 예조의 수결 내용: 이번에 보낸 응련은 원래 수량 40연 외에

예비용의 5연을 계하하여 분정하였는데, 임술년(1682)에 보낸 수량과는 거의 반으로 줄어들어, 설령 불행이 병으로 죽는 일이 있더라도 예비용의 응련으로 또한 수를 채울 수 있으니 상고하여 시행하며, 응자를 데려 오는 사람 및 매가 먹는 음식물을 다른 도에는 마땅히 알려야 하거니와, 본도에서는 전례대로 분부하여 거행할 일. 그 중에서도 이전의 등록을 살펴보니, 본도에서도 또한 예비용을 마련하여 두고 대기하는 일이 있었으니 참작하여 거행할 것.

신묘(1711) 정월 24일

一. 예조에서 상고할 일. 이제 이번 통신사가 지참하여 가는 예단 가운데 각 도의 각 고을에 복정한 응자(鷹子)를 데려가는 사람 및 매가 먹는 음식물을 각기 그 복정한 고을에서 동태에 이르기까지 경유하는 각 고을에서 미리 먼저 분부하여 대령하였다가 동 응련(鷹連)을 데려가는 사람에게 전례대로 공급하여 먹이며, 먹은 음식물은 또한 전례대로 넉넉한 수량으로 공급하되, 복정한 각 고을 매를 데려가는 사람에게 초료(草料)⁶¹⁾를 지급하여 보냄으로써 지체되어 병으로 죽는 우려가 없게 하도록, 이런 뜻을 도내의 경유하는 각 고을에 엄하고 분명하게 분부하여 시행하되, 도부 일시를 이문할 것.

[경기감영, 충청감영, 전라감영, 경상감영, 황해감영, 평안감영, 강원감영, 함경감영 등으로 이문함.]

一. 강원감사의 관문 내용. 방금 바친 강릉부사의 첩정 내용임. “통신사에게 보내는 잡물 가운데 생리(生梨: 배)는 날씨가 따뜻하면 반드시 부패하여 손상될 우려가 있는바, 신유년(1681) 등록을 상고하면, 생리 대신으로 잣[栝子]을 갖추어 보냈는데, 아직도 대신하여 보내라는 명령이 없다”고 첩보하였는바, 강릉 한 고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생리가 부패하여 손상되는 것은 다른 각 고을에서도 또한 이러한 우려가 없지 아니하니, 한결같이 신유년(1681) 사례대로 생리 대신으로 잣을 갖추어 보내게 함이 어떠하며, 통신사의 출발 일자를 또한 알려야 마땅하니 아울러 상세히 회이하여 각 고을에 분부하도록 할 일임.

이에 의거한 예조의 수결 내용: 전례대로 대신하는 봉물을 수송함이 마땅하며, 통신사의 출발 일정은 4월 초6일로 계하하였으니, 살펴보고 시행할 일.

61) 초료(草料): 초료장(草料狀). 관원이 공무로 지방에 여행할 때 지나가는 길의 각 역참(驛站)에 거마(車馬)와 식료(食料) 등의 공급을 명령하는 문서.

신묘(1711) 정월 27일

동래부사 권이진이 정월 17일에 성첩한 장계. 방금 바친 훈도 정만익과 별차 이덕기 등의 수본 내용임. 재판차왜의 말이 ‘이제 이번 비선 편에 도중의 사서(私書)를 보았더니, 임술년(1682) 통신사 때 에도[江戸]의 집정(執政)과 근시(近侍), 경윤(京尹) 등에게 단자(單子) 예물(禮物)을 주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집정이나 근시, 경윤과 봉행을 막론하고 예조에서 증정하는 예물은 일체 모두 폐단을 없애는 일로 에도[江戸]에서 대마도에 분부하였다고 운운하였다’는 연유’의 수본이 있었음. 이번 통신사 때 에도[江戸]의 여러 집정과 근시, 경윤 등에게 증정하는 예단 등의 물품을 일체 모두 없애어 감하라고 하였는데, 동 예단잡물은 해조에 명하여 수량을 줄여서 마련하게 하며, 신이 옆드려 선배의 일기를 보았더니, 통신사가 들어갈 때 대마도 도주가 전례로는 숙배하는 일이 있었는데, 사신이 데려간 악인(樂人)은 본디 왕명을 전할 때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라고 하니, 음악은 있으나 의장(儀仗)이 없으면 그 예가 갖추지는 것이 아닌지라, 이번에는 의장을 갖추어 가서 도주가 숙배할 때 부산에 있을 때의 사례와 같이 의장을 설치하고 음악을 연주하게 하며, 길을 갈 때나 왕명을 전할 때도 의장을 갖추고 가서 그대로 음악을 연주하여 우리나라 예의의 성대함을 보이는 것이 적절할 듯하니,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시기를.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권이진의 장계를 보면 이번 통신사 때 에도[江戸]의 여러 집정과 근시, 경윤 등에게 증정할 예단을 한결같이 모두 줄여 없애달라고 하였는데, 동 예단 잡물은 해조에 명하여 수량을 줄여서 마련하게 하며, 삼가 선배의 일기를 보니 통신사가 들어갈 때 대마도 도주가 전례에 따라 숙배하는 일이 있어서, 데려가는 악인(樂人)은 본디 왕명을 전할 때 음악을 연주한다고 하는데, 음악은 있으나 의장이 없으니 그 예가 갖추어지지 않는지라, 부산에 있을 때의 사례대로 의장을 베풀고 음악을 연주하며, 길에 있어서나 왕명을 전할 때는 의장을 갖추어 가서 우리나라 예의의 성대함을 보이는 것이 적절할 듯하니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라 하였는바, 이제 이번 통신사 때 에도[江戸]의 집정 이하에게 증정하는 물품을 임술년(1682)에 이미 시행한 사례대로 마련하여 계하하였는데, 차왜가 하는 말이 이와 같으니 당초 원 계목 가운데서 표를 붙여 줄여 제거하며, 의장의 일에 있어서는 여러 등록을 살펴보니, 일찍이 전에는 원래 의장을 갖추어 가는 일은 없었는데, 계미년(1703) 통신사 때 어필(御

筆)을 모시고 가는 일이 있었고, 그 때 도해역관 홍희남(洪喜男)이 가져온 등차(藤差)의 별록(別錄) 가운데 ‘의장(儀仗) 등의 물품은 이곳에서 미리 준비하여 간다’고 운운하였고, 그 때 묘당에서의 복계(覆啓) 가운데, 일의 형편이 어려움은 비록 논할 겨를이 없으니 그 마음이 발한 바를 따지자면 아마도 여기에만 있는 것 같지 않으니 결코 따라서는 안된다고 하여 막자고 계품하였는데, 이제 이번 동래부사의 장계 가운데 이른바 ‘선배의 일기 중에서 운운’한 것이 무엇에 근거했는지 알 수 없으나, 전례에 없는 일을 이제 새로 만드는 것은 불가할 뿐 아니라, 길에 있어서나 왕명을 전할 때 우리나라 예의의 성대함을 보이자고 운운한 것은 그 일의 체면이 타당한지 알 수 없으니, 이 한 조목은 그냥 둬서 어떠할지? 강희 50년(1711) 정월 27일 우승지 신 유명웅(兪命雄)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운허함.

一. 이번 정월 25일 통신사 조태억(趙泰億)⁶²⁾과 부사 임수간(任守幹)⁶³⁾, 종사관 이방언(李邦彦)⁶⁴⁾이 청대(請對)하여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부사 임수간이 계품한 바, “저쪽에 지참하여 가는 예단 가운데 왜인이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인삼 만한 것이 없는데, 근래에 인삼 품질이 아주 매우 위조품으로 섞여 있어서, 인삼 본체가 제법 큰 것은 반드시 그 가운데를 갈라서 그 가운데 인삼꼬리 및 다른 약초를 넣고, 심하게는 납을 채워 넣기도 하여 수백 근의 인삼을 비록 일일이 극진하게 골라내기는 어렵지만, 만약 허위로 속인 인삼을 저쪽 사람에게 가서 준다면 왜인의 성질이 본디 가혹하고 세심하여 꼬집어내어 보인다면 사신이 무안할 뿐 아니라 국가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것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신 등도 이것을 우려하여 일찍이 호조에 관문을 보내어 지방에 신칙하고, 관백과 약군(若君) 및 집정 이하까지 ‘어느 곳의 예단은 아무개에게서 받아들인 인삼을 지참하여 보내는 일’이라고 별도로 이름을 적은 성책을 인삼을 바치는 사람에게 거둬 밝혀서 공초를 받고, 비록 이미 알렸더라도

62) 조태억(趙泰億; 1675-1728): 자는 대년(大年), 호는 겸재(謙齋), 시호는 문충(文忠), 양주인(楊州人)이다. 숙종 임오년(1702) 식년문과에 급제하고 여러 관직을 거쳐 경자년(1720)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하였으며, 좌의정에 이르렀다.

63) 임수간(任守幹, 1665-1721): 임수간은 자가 용예(用譽), 본관이 서하(西河)이며, 호가 정암(靖庵)인데, 청평(淸坪), 둔와(遯窩)라고도 하였다. 숙종 갑술년(1694)에 알성 문과에 급제하여 호당을 거쳐 신묘(1711) 사행의 부사로 일본에 다녀온 뒤 『동사일기(東槎日記)』를 저술하고, 뒤에 우부승지를 역임하였다.

64) 이방언(李邦彦, 1675-?): 자는 미백(美伯), 호가 남강(南岡), 본관은 완산이다. 숙종 경진(1700)에 감과(柑科)에 장원하고 임오년(1702)에 문과에 급제하였는데, 병조정랑이 되어 숙종 신묘년(1711)의 사행에 종사관으로 참여하였다.

지금 인심의 거짓과 속임수로는 일체 금단한다고 보장하기가 어려우니, 인삼을 받아들일 때 예조 낭관(郎官)이 또한 함께 매근마다 서너 가닥을 끊어서 살피게 하여, 혹시라도 위삼(僞蔘)이 발각되는 자는 각별히 논죄(論罪)하는 일로 해조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하였더니, 상감께서 “근래 인심이 허위로 속이는 것이 이러하니, 이런 일이 만약 혹시라도 저쪽 사람들에게 지적되면 국가 체면에 손상됨이 참으로 작지 않다. 진달한 바가 옳으니, 이번에는 각별히 엄하게 신칙하여 거짓과 허위의 폐단이 없도록 함이 좋겠다.”고 하셨음. 임수간이 말하기를 “비록 만맥(蠻貊)⁶⁵ 사람이라도 성신(誠信)으로 접하지 않아서는 안되며, 만약 거짓과 허위를 보인다면 모욕을 당하는 것이 적지 않을 것이니, 호조에서 특별히 엄하게 조목을 세워야 마땅할 것인데, 무릇 거짓과 허위의 인삼을 와서 바쳤다가 적발된 자는 비록 일죄(一罪)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혹 다음 형률로 죄를 정함이 옳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는데, 상감께서는 “비록 일죄로 논단하기는 어렵지만 다음 형률로써 적발되는 대로 엄중하게 추궁함이 좋겠다”고 하였음. 임수간이 말하기를 “외방(外方)의 인삼은 전례대로 동래에 납입하는데 행차에 임박하여 급박하면 비록 간혹 점검하여 물리더라도 또한 고쳐 마련하기가 어려우니, 서울로 와서 바치게 하여 일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편하니, 이렇게 우러러 품신드립니다.”라고 하였는데, 상감께서 “그대로 하라”고 하셨음. [비변사, 호조, 예조, 사역원. 본조에서 평안감영, 강원감영 등으로 이문하여 알림.]

一. 같은 날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정사 조태억이 계품한 바, “통신사의 군관은 이전부터 한 시대의 명망을 받는 자를 극진히 선발하여 비록 선전관이 라도 또한 데려가는 것을 틀어막는 일이 없었습니다. 무오년(1678)에 고 상신(相臣) 오윤겸(吳允謙)이 통신사였을 때 선전관 이진경(李眞卿)을 데려갔고, 고 판서 신 조형(趙珩)이 갈 적에 선전관 정사한(鄭斯翰)을 데려갔으며, 임술년(1682) 사행에 선전관 양익명(梁益命)을 또한 데려갔으니, 사행에 선전관을 데려 가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얼마 전 묘당에서 방계(防啓)하기를 ‘신의 상소는 전례를 상세히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런 듯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군관은 이미 계하였는데, 앞으로 혹 고쳐 부표(付標)할 일이 없지 않을 것이므로 감히 진달합니다. 정이운(鄭以雲)은 당초 부사 임수간이 데려가려고 하였는데, 순무사(巡撫使)가 이제 방금 데려 갔기에, 4월 초6일 이전에는 되

65) 만맥(蠻貊): 옛날 중국인이 중국의 남쪽과 북쪽에 살던 이민족을 낮잡아 이르던 말.

돌아오기 어려운 형편이라 하며, 그 나머지 일찍이 마음에 두었던 자들도 간혹 선전관 가운데 있는데, 이미 방계(防啓)가 있는 뒤에는 감히 다시 논의하지 못합니다. 또한 민제장(閔濟章)도 부산 임수간이 또한 데려가는데 이제 감찰로 임명되었으니, 감찰은 곧 대부(臺府)의 직책인지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다른 직책으로 바꾸어 차출하기를 계청하오니, 일찍이 전례가 없었던 감찰의 임무를 이제 짐짓 고쳐 차출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감히 진달합니다.”라고 하였는데, 상감께서 “민제장의 감찰을 고쳐 차출하여 데려 가고, 선전관을 데려가는 것도 구애되지 않음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조, 병조, 예조, 사역원에서 승전(承傳)을 받들. 비변사.]

一. 같은 날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종사관 이방언이 계품한 바, “바다를 건널 때 사신이 타는 배는 이전부터 완석(莞席)으로 돛을 삼았는데, 왜인들이 보기에는 매물차기가 막심할 뿐 아니라 편하고 빠른 형세로는 포범(布帆)에 미치지 못하므로, 임술년(1682)에는 대신의 진달로 인하여 삼승(三升)⁶⁶으로 만들어 지급하는 일을 확정하였는데, 그 뒤에 대신이 삼승포를 갑자기 장만하여 내기 어렵다고 탑전(榻前)에 진달하여 완석으로 돛을 삼았는데, 왜인들이 이것을 극히 피폐하다고 하여 심지어는 저들이 스스로 장만하겠다고 청하기까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저 삼승포는 그 값이 적지 않으나 면포(綿布)는 그다지 장만하기에 심히 어려움은 없고 또한 세 배에 들어갈 수량도 3동(同)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만약 통영에서 새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사행을 보냈다가 되돌아온 뒤에 본영으로 되돌려 보낸다면 물력이 그다지 많이 허비되지는 않고 일도 매우 편하고 좋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차왜의 칠선(漆船)은 삼승포로 돛을 하고 붉은 비단으로 휘장을 한다고 하는데, 비록 저들과 그 사치함을 다룰 필요는 없지만 완석(莞席)으로는 매우 매물찬 듯하므로 감히 진달합니다.”라고 하였고, 정사 조태억이 말하기를, “임술년(1682)에 대신의 진달로 인하여 범석(帆席)을 삼승포 고치는 일로 확정하였다가 곧장 통영에 저축한 삼승포가 없다고 하여 도로 그만 두었기 때문에, 사신이 내려갈 때 왜인이 매우 그것을 피폐하다고 하였고, 또한 대마도주가 우리나라의 안면을 내게 하려고 스스로 마련하여 주겠다고 자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상감께서 “통영에 분부하여 면포로 돛을 만들게 함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비변사, 예조, 사역원에서 승전을 받들. 본조에서 통영으로 이문하여 알림.]

66) 삼승(三升): 삼승포(三升布). 석색 삼베.

一. 같은 날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정사 조태억이 계품한 바, “사행 때 잠상(潛商)을 적발되는 대로 죄를 다스리는 일로 예조에서 금제과조(禁制科條)를 제하여 분부함이 마땅한데, 사신이 내려 갈 때 죄가 엄중한 사람을 효시하는 일은 매번 시행에 문득 청하여야 했으므로 상역(商譯)들이 전례대로 하는 일로 보고는 태연히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금령을 범하는 자가 매우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엄하게 신칙하여 만약 무거운 죄과를 범한 자가 있으면 적발되는 대로 효수(梟首)하여 보임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상감께서 “그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비변사, 예조, 사역원]

一. 같은 날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정사 조태억이 계품한 바, “히꼬 센다이[彦千代]의 도서(圖書)를 내려 보내는 한 조목에 대하여 조정에서 아직도 처분이 없는데, 신 등이 바다를 건넌 뒤에 저쪽 사람이 반드시 이 일을 물을 것인데, 거기에 대답할 말을 반드시 미리 강구하여 정해 가야 하겠으므로 감히 이렇게 품달(稟達)드립니다. 이 일은 저쪽 사람이 와서 청한 지 이미 여러 해가 되기에 이르렀으나 조정에서는 버티면서 지금까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갑신년(1704)에 한후원을 대마도로 내려 보내어 요시마[義眞]의 아명(兒名) 도서(圖書)를 가져왔을 때 타이르기를 ‘그 도서를 만약 송납(送納)하면 요시가다[義方]의 아명 도서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였는데, 요시마[義眞] 도서를 이미 벌써 송납하였으나 조정에서는 아직도 처분이 없는데다, 히꼬 센다이[彦千代]의 도서(圖書)와 함께 허락하지 않으면 저쪽 사람이 참으로 우리나라가 신의를 잃었다고 의심할 것입니다. 지난 해 묘당에서는 서계에다 지급하여 보내겠다는 뜻을 미미하게 보여주었는데, 변방 신하가 장계하기를 ‘왜국에서 간사한 일을 범한 사람을 잡아 보내지 아니하였는데 조정에서 그 욕심을 굽혀 따라 도서를 만들어 보내는 것은 사리에 편안치 않다’고 운운하였으므로, 의심하여 버티며 결정하지 못하였습니다. 대개 그 일은 옳든 그르든 간에 허락할 만하면 허락하고 불가하면 틀어막으면 되는 것이지, 간사한 일을 범한 사람이라고 하여 도서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체면으로 헤아리건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밖에서의 논의에서는 ‘마땅히 지급해야 할 물건이면 바라는 대로 지급을 허락하고, 책망해야 할 일이면 이치에 근거하여 책망하는 것이 일의 체면에 당연하다’고 합니다. 사행이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한 가지로 지적하여 처분한 뒤에야 저쪽 사람에게 할 말이 있을 것이니, 청컨대 묘당에 명하여 다시 상의 확정하여 속히 품의 조치하게 하여, 사신이 내려간 뒤에 피차간에 문답할 즈음에 난처한 사단이 없게 함이 어떠할지?” 하였더니, 상감께서는 “묘

당에 명하여 상의해서 확정하여 품의 조처함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비변사]

一. 같은 날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정사 조태억이 계품한 바, “통신사가 내려 갈 때 이전부터 전례로는 충주, 안동, 경주, 동래에서 잔치를 베푸는 일이 있었는데, 을미년(1655) 통신사 때에 흉년이 들었으므로 세 곳에서는 모두 잔치를 정지하고 동래에서는 저쪽 사람이 보는 곳이라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이제 영남이 비록 제법 익었다고는 하나 사행을 접대하는 데 공급하는 물자가 거대하니, 이번 사행에 잔치를 베푸는 일은 다시 복구할 필요 없이 동래 이외의 충주와 안동, 경주 세 곳에서는 모두 정지하여 줄임이 적절할 듯한데, 반드시 기일에 앞서 먼저 알려야 허다한 잡비를 소모하는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는데, 상감께서 “이번 사행에도 전례대로 동래에서만 잔치를 베푸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조, 사역원에서 승전하고, 본조에서 충청감영, 경상감영으로 이문하여 알림.]

一. 같은 날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정사 조태억이 계품한 바, “통신사의 사행이 임술년(1682) 이후 30년 만에 이제 비로소 내려가기 때문에,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인지라 무릇 전례에 대하여는 본도에서도 상세하게 알지 못하여 사행을 접대하는 비용이 과다함을 면치 못한다고 하는데, 이는 비록 왕인(王人:왕명을 받은 사람)을 존경하여 접대하는 뜻이지만, 근래에 영남지방이 여러 차례 흉년을 겪었고, 저쪽 나라에 줄 예단 및 행중에 필요한 물품으로 부득이 가져가는 물건이야 전례대로 마련하지마는, 일행을 공궐하는 등의 일은 접대하는 사이에 낭비하는 잡비에 불과한데 지나치게 풍성하고 후하게 하는 일은 극히 미안하니, 이번에는 일행의 공궐 등의 일은 되도록 정하고 간결하게 하라는 뜻으로 한꺼번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상감께서 “임술년(1682)의 등록이 필시 남아 있을 것이니 등록 이외에는 비용을 낭비하지 말라는 일로 착실하게 분부함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호조, 예조, 사역원에서 승전을 받듦. 본조에서 충청감영, 경상감영으로 이문하여 알림]

一. 같은 날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정사 조태억이 계품한 바, “통신사의 군관 중에 참으로 실직(實職)에 있는 자가 많으나, 실직의 유무를 막론하고 구전(口傳)한 뒤에 급료는 본디 임술년(1682)의 전례가 있으니, 이제 전례대로 하되, 제술관(製述官)의 서사(書寫)에는 이전부터 급료를 주는 서기(書記)를 전례에 중인(中人)으로 데려갔는데, 이번에 문한(文翰)에 능하고 지식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전함(前倭) 문관(文官)으로 데려가되, 또한 군관과 똑 같이 급료를 줌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상감께서 “이대로 함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一. 같은 날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정사 조태억이 계품한 바, “통신사의 사행은 연행(燕行)과 달라서 혹 해를 넘기고 비로소 돌아오기 때문에 네 계절의 의복을 모두 가져가고, 또한 저쪽 사람의 풍속이 화려함을 숭상하기 때문에 의복을 검소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전례입니다. 세 사신은 조정에서 지급하는 반전이 넉넉하고 후하여 마련하기에 족하지만, 역관과 군관들은 단지 지급되는 반전만으로는 결코 모양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임술년(1682) 사행 때 일행 원역에 대하여 호조에서 은자를 사람마다 각각 5-60냥씩 빌려주고 되돌아온 뒤에 즉시 갚으라고 하였다는데, 소신(小臣)이 호조참의로 당시 본조의 관서 김우항(金字抗)과 상의하였더니, 임술년(1682) 문서는 이제 상고할 곳이 없는데, 막중한 국가의 은자를 다수 내어 주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사행의 기일이 점차 박두하여 행장을 꾸리는 한 가지 일을 장만하지 않아서는 일이 장차 낭패가 날 것이라, 역관과 군관 및 제술관, 서기, 사자관, 화원, 의원 등에게는 호조에서 되도록 넉넉하게 빌려주고, 내금위와 별파진, 전악, 이마는 모두 미포(米布)와 관련된 관청 소속이니, 각기 그 관청에서 되도록 넉넉하게 빌려주도록 허락하여, 때맞추어 마련할 수 있도록 함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상감께서 “이대로 분부하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호조, 병조, 예조,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사복시, 군기시, 장악원]

신묘(1711) 정월 28일

예조 단자. 이제 이번 통신사 종사관이 지참하여 가는 일행의 금단절목(禁斷節目)을 임술년(1682)의 사례대로 마련하였으니 이대로 시행함이 어떠할지?

一. 일행이 한꺼번에 가져가야 할 물건은 점검하여 짐바리로 만들어 각기 글자를 적어 표시하고 서압(署押)하며, 또 자호(字號)를 붙여서 서압(署押)하여 걸어 묶고, 도중에 간간이 불시에 적간(摘奸)하며, 포소(浦所) 및 대마도와 달리 머무는 곳에 도착하면 별도로 추가 점검하여, 표가 없는 것은 관에서 몰수하며, 범한 사람은 법률대로 죄를 다스림.

一.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에 실려 있는바 왜인에게 본토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건 및 약재와 사라(紗羅) 능단(綾緞) 황백사(黃白絲)나 보물을 몰래 사고파는 자는 모두 법률대로 죄를 다스림.

一. 『대전후속록』 내용에, 왜은(倭銀)을 무역하는 자와, 왜인이 가져온 대랑피(大狼皮) 및 포소에서 몰래 사고팔아 무역하는 자 및 사정을 아는 통사(通事)는 법률대로 죄를 다스림.

一. 향통사(鄉通事) 및 장사꾼이 왜인과 약속하여 어두운 밤에 매매하거나 혹은 서로 모이는 자는 모두 잠상금물(潛商禁物) 조에 의거하여 논단함.

一. 일행의 인원들이 본국에서 숨겨야 할 일 및 국가와 관련된 중대한 일을 누설하는 자는 모두 법률에 의거하여 죄를 다스림.

一. 상통사(上通事) 이하 일행의 하인으로 금제(禁制)에 걸린 자는 곤장 80대 이하로 직단(直斷)함.

一. 다른 나머지 미진한 조건은 일에 따라 규찰하여 점검하되, 우리나라 경내에서 범한 일은 즉시 장계로 알리고, 바다를 건넌 뒤에 만약 금제를 범하는 자가 있으면 세 사신이 상의하여 그 범한 죄의 경중에 따라 참작하여 다스리되, 범한 죄가 매우 무겁고 기밀에 관계된 자는 수역(首譯)과 군관(軍官) 이하를 곤장 효시함.

一. 우리나라에서 풍랑에 표류하였다가 되돌아 온 사람을 격군에 뒤섞어 넣어 충당하는 것은 극히 편치 못하니 일체 충당하여 넣지 말고, 만약 탄로가 난 자 및 본관 수령은 각별히 추고(推考)하여 죄를 다스림.

一. 일행이 가져가는 군기(軍器)는 종사관이 서압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만약 군기를 몰래 매매하는 자가 있으면 아울러 법률에 의거하여 죄를 다스림.

一. 본국의 각종 서책 등의 물건을 슬며시 누설하여 사사로이 통한 자와 중국과 관계된 일을 누설하는 자는 아울러 법률대로 죄를 다스림.

一. 일행의 원역 이하로서 만약 왜의 여인과 몰래 통하다가 적발된 자는 극률(極律)⁶⁷⁾로 논단함.

一. 통신사의 행중에 무릇 잠상(潛商)의 무리는 적발되는 대로 죄를 단정하는 일을 매번 사행마다 신칙한 바 있으나, 상역(商譯)들이 예사로 여겨서 태연히 법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번에는 한결같이 정사가 진달한대로 만약 중한 죄과를 범한 자가 있으면 적발되는 대로 효시(梟示)할 것임.

강희 50년(1711) 정월 28일 입계하여 입계한 대로 시행하라 하셧음.

신묘(1711) 2월 초2일'

평안감사의 관문 내용. 통신사가 지참하여 갈 예단 응련(鷹連)을 동래로 데려가는 기일 및 응련을 가져갈 때 경유하는 각관의 공궤(供饋)와 매의 먹이를 지급하는 등의 일은 전례를 낱낱이 들어 이문하였는데, 회이 내용에, 때가 임박하여 알릴 계획이라 하였는데, 며칠 전의 조보(朝報)에 동 통신사가 오는 4월 초6일에 출발하여 5월 초9일에 배를 타는 것으로 택일하여 계하하였다고 하는바, 만약 귀조의 관문에서 응련을 알리기를 기다려 영문에서 거두어 모은다면 먼 고을에 복정한 응련은 기일에 미치지 못하겠기로, 동 응련을 오는 3월 15일 영문에 와서 바치라는 뜻으로 분정한 각 고을에 분부하였으며, 이렇게 이문하니, 동 행차가 출발하는 기일을 급속히 회이하여 기일에 맞추어 매를 데리고 동래로 보낼 수 있도록 하되, 한결같이 임술년(1682)의 사례대로 응련을 데려갈 때 경유하는 각 고을에서 응수(鷹手)에게 차례차례 공궤하고 짚신[草鞋]을 지급하며 매의 먹을 것도 지급하라는 뜻으로 귀조에서 미리 경유하는 각 도의 각 고을에 알림이 마땅하니, 아울러 상고하여 시행할 일.

이에 의거한 예조의 수결 내용: 사신이 출발한 기일 및 매의 먹이와 매를 데리고 가는 사람을 공궤하는 등의 일은 이미 각조에 알렸으니, 상고하여 시행할 일.

一. 황해감사의 관문 내용. 전에 본조의 계하 관문으로 인하여 통신사가 지참하여 갈 백렴(白藪) 5근을 본도에 복정하였기로, 즉시 각 읍에 분부하였더니, 동 백렴 5근을 이제 거두어 상자에 넣어 감봉하여 올려 보내니, 받아들인 뒤에 회이할 일.

67) 극률(極律):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규정한 법률.

이에 의거한 예조의 수결: 건량소(乾糧所)로 수송하였으니 상고하여 시행할 일.

一. 예조에서 상고할 일. 통신사의 행중에 집정 이하 3인에게 줄 예단을 이미 본부의 장계로 인하여 복계하여 알렸거니와, 다시 상고하니 훈도의 수본 내용에, ‘집정 이하 봉행에게 이르기까지 줄여서 없앤다’고 운운하였는데, 장계로 알려진 가운데에는 단지 집정(執政)과 경윤(京尹), 근시(近侍) 3인만 거론하였는바 그 연유를 모르겠으며, 무릇 전례에 따라 증명하는 예단은 곧 전해온 규정이라 만약 혹 줄여 없앤다면 훈도의 수본에 집정에서 봉행까지 한가지로 모두 줄여 없앤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일의 체면에 당연한데, 장계 가운데 봉행을 거론하지 않은 것은 무슨 곡절인지, 본조의 계하 관문을 짐짓 저쪽 사람에게 전하여 보이지 말고, 수본과 장계가 서로 어긋난 사유를 상세히 들어서 급속히 보고하여 이로써 품의 조치하도록 할 일. [동래로 이문]

신묘(1711) 2월 12일

경상감사의 관문 내용. 통신사가 지참하여 갈 잡물을 임술년(1682) 등록과 비교하였더니 들쭉날쭉한 다른 곳이 많이 있다고, 부산첨사가 보고한 바로 인하여 이문하였는데, 이제 도착한 회이 내용에, 사신의 반전인 화석 3장을 이번 이 이문 후록에는 거론하지 않아서, 다시 살펴보고 회이하라고 하였기로, 당초의 관문을 가져다 살펴보니 예단의 화석 21장 외에 원래 사신의 반전을 구별한 곳이 없으므로 분정하지 아니하였는데, 본도에서 마련하는 여부를 속히 회이하여 때에 맞추어 거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일임.

이에 의거한 예조의 수결 내용: 예단의 화석 21장 외에 본도에 복정한 잡물 가운데 화석 3장을 명백히 알렸으니, 이전 관문을 상고하여 급속히 마련할 일.

一. 경상감사의 관문 내용. 통신사가 소지하는 군물(軍物)은 임술 등록에 의거하여 각 영문(營門)에 분정하였거니와 종사관이 소지하는 순시령기(巡視令旗), 언월도(偃月刀), 장검(長劍), 삼지창(三枝槍) 등 각 1쌍, 삼혈총(三穴銃) 1자루를 수영(水營)과 각 포구의 군기(軍器)에서 수송하였다가 되돌아온 뒤에 추심하여 올려 달라고 하였는바, 임술년(1682) 사례대로 수영과 각 포의 군기에서 수송할지 상고하여 급속하게 회이하여 거행할 수 있도록 할 일.

이에 의거한 예조의 수결 내용: 군기를 수송하는 것은 오직 본도에서 처치하기에 달려 있지, 본조에서 지휘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니, 상고하여 시행할 일.

신묘(1711) 2월 13일

이번 2월 초10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판윤(判尹) 이언강(李彦綱)이 “사신의 행차 전례에는 외방(外方)의 구청(求請)이 있어서 호서와 경기 두 도에 구청하면 선혜청에서 통신사의 사행에 값을 지급하는 데는 다름이 없어야 하는데, 방금 사신이 말을 보내기를 ‘출발 기일이 이미 확정되었는데 해당 선혜청에서는 근거로 삼을 만한 전례가 없다고 하여 지급하지 않으니, 묘당에서 분부해 달라’고 하였으므로 감히 진달합니다. 대개 사행의 구청은 임술년(1682)으로부터 비로소 변통하였으니, 이 때문에 근거로 삼을 만한 전례가 없을 듯한데, 사리로 말하자면 통신사에게 호조에서 지급하는 반전은 연해에 비하여 더 넉넉한데, 경기와 호서의 구청 가격에 구애되어 어찌 지급하지 않는 이치가 있으며, 그 수량 또한 연행에 지급하는 수보다 조금 더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였는데, 상감께서 “그렇다. 연행보다 더해야 마땅할 듯하다”라고 하였고, 좌의정 서(徐)가 말하기를 “통신사는 겹겹의 바다를 건너갔다가 되돌아오니 지체되거나 빠를 지는 또렷하게 확정하기가 어렵고, 또한 드문 행차이므로 조정에서의 물자 지급이 본디 되도록 넉넉하게 하였습니다. 지난 번에 통신사가 보낸 말로 말미암아 해당 선혜청에 물었더니, ‘문서를 두루 상고하면 기호에서는 구청(求請) 상하(上下)를 근거할 만한 등록이 없다’고 하는데, 비록 그 까닭을 모르겠으나, 사리로 말하자면 연행과 다름이 있어서는 부당할 듯합니다.”라고 하였음. 상감께서는 “근거할 만한 사례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의아하다. 찾아 지급하게 함이 적절하다”고 하셨음. 이(李)가 말하기를 “곧바로 지급하도록 분부하겠습니까? 품의 조처하게 하겠습니까?” 하였더니, 상감께서 “품의 조처함이 좋겠다”고 하셨음. [비변사, 선혜청, 호조, 예조]

신묘(1710) 2월 17일

一. 경상감사의 관문 내용. 통신사가 지참하여 갈 서계집[書契家] 20부를 임술년(1682)에 좌수영에서 각 포에 분정하여 1부의 가미(價米) 4말씩 도합 쌀 5섬 5말로 마련해 주기를 청하였는데, 그 때 해조에서 추후에 내려 보낼 것이므로 각 포에서 만든 서계 집은 되돌려 주라고 동 수영에서 보고하여 온 성책 가운데 명백하게 기록되었기로, 이렇게 이문하였는데, 이제 도착한 회이 내용에 17부를 이미 공조(工曹)에서 만들었다고 하니, 그 수의 가감에 대하여

는 반드시 동 공조의 등록 가운데 있을 것이니, 본도에서 마련하는지 여부를 다시 급속히 회이하여 거행하도록 할 일.

이에 의거한 예조의 수결 내용: 이렇게 해조로 이문하니, 상고하여 시행할 일.

一. 황해감사의 관문 내용. 본도 각 읍에는 관문대로 신칙하여 분부하였으며, 동 응련(鷹連)은 색리(色吏)를 정하고 초료(草料)를 지급하여 이달 그믐 사이에 동래로 수송할 계획이거니와, 본도의 금천(金川) 경계에서 동래에 이르기까지 경유하는 각 관에는 본조에서 미리 먼저 알려 시행할 일.

이에 의거한 예조의 수결: 이미 각 도에 알렸으니 상고하여 시행할 일.

신묘(1711) 2월 19일

一. 전라감사의 관문. 첨부된 흥덕(興德) 현감의 첩정 내용에 “통신사가 바다를 건널 때의 격군 1명을 건장하고 능숙한 자로 이제 바야흐로 정하여 대기하고 있거니와, 임가(賃價)는 어떤 모양의 곡물로 얼마만큼 지급할지 참작하여 한 가지로 지적할 일”이라 하였기에, 첨부한 관문임.

이에 의거한 예조의 수결 내용: 임가는 본조에서 알 바 아니니 혹 비변사에 보고하거나 혹 선혜청에 보고함이 마땅하니 상고하여 시행할 일.

一. 동래부사의 첩정 내용. 방금 도부한 예조의 관문 내용임.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집정 이하 봉행에 이르기까지 예단을 제감(除減)한다고 운운하였는데, 장계 가운데 집정(執政)과 근시(近侍), 경윤(京尹)만 든 것은 그 사유를 모르겠으나, 수본과 장계가 서로 어긋난 사유를 급속히 첩보하라는 일로 관문이 있었는데, 훈도 별차 등이 비록 잘못 알고 봉행을 거론하였으나, 예도[江戶]에는 봉행이라는 이름이 없다고 하거니와, 이제 이번 예단을 제감한다고 한 것은 집정과 봉행을 막론하고 관백의 신하 등에게 참판이 증정하는 예단을 한가지로 모두 제감한다는 말이기로 연유를 첩보하는 일.

이에 의거한 예조의 수결 내용: 도부함.

一. 경상감사의 관문 내용. 임술년(1682)에는 도해역관을 대마도로 보내어 절목을 강정(講定)하였으므로 전례에 따라 지급하는 예물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그렇지 아니하여 수역(首譯)으로 하여금 왜관에 가서 재판차왜와 더불어 강정(講定)한 바가 있었는데, 예단을 지급할지 지급하지 않을지는 새로 창안

하는 일에 관계되는 바, 만약 임술년(1682)에 바다를 건너간 수역(首譯)이 사례(私禮)로 증지한 사례에 의거하여 왜관에 있는 재판왜에게로 옮겨서 접촉할 때 지급한다면, 앞으로 통신사가 바다를 건넌 뒤에 수역(首譯)이 도주(島主)와 만날 때의 사례로 증정할 물품은 어떤 물건으로 마련하여 지참하여 보낼지, 상세히 확정하여 과발(擺撥)에 부쳐 회이하며, 도부한 귀조의 회관(回關) 내용에, 통신사가 저쪽에 도착한 뒤 사례로 증정하는 물품을 미처 계하지 못하고 임시로 변통하였는데 현재 확정하여 분부한 일이 없다고 하였기로, 다시 이문하니 즉각 일체로 확정하여 회이함으로써 거행하도록 할 일.

이에 의거한 예조의 수결 내용: 도해역관이 들어갈 때는 전례대로 증정하는 물품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이런 일이 없는데, 신미년(1711)에 안신휘(安愼徽)를 특별히 보낼 때 증정한 등록이 필시 본도에 있을 것이니 상고하여 참작 거행할 일.

一. 경상감사의 관문 내용. 왜인이 요구한 흰 말꼬리[白馬尾] 100냥을 각 고을에 분정하여 이제 바야흐로 동래로 수납하고 있거니와, 당초 관문에는 매냥마다 값이 얼마인지 작성하지 않았는바, 이른바 흰말꼬리는 평소에 사용하는 것이 드문 물품이라 일찍이 가격을 정한 곳이 없으므로 이렇게 이문하니, 매냥의 가격을 얼마로 허락할지 여부를 상세히 회이하여 회감(會減)할 수 있도록 할 일.

이에 의거한 예조의 수결 내용: 무릇 왜인이 구청하는 물건은 본도에서 계하하여 알려줄 따름, 원래 가격을 정해진 등록은 없었으며, 이는 아마 동래에 전해 오는 등록에 있을 것이니 분부하여 시행할 일.

신묘(1711) 2월 20일

동래부사 권이진이 2월 11일 성첩한 장계. 이달 초10일 신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박중정의 치통 내용임. 경인(1710) 11월 25일에 나왔던 무자조 제7선에 격왜 30명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당일 진시에 발선하여 돌아 들어갔다고 치통하였음.

통신사의 절목을 강정하기 위하여 수역 이석린이 이달 초1일 내도하였는데, 방금 바친 동 수역 이석린의 수본 내용에, “왜관에 가서 재판차왜를 다시 만나 보니, 동 왜인이 ‘동지(同知)가 이제 이미 내도하였으니 무릇 절목과 관련된 것을 마땅히 강정해야 하겠으나, 대차(大差)가 나오는 것이 또한 멀지 않

아 있을 것이니 대차를 기다려 함께 논의하여 강정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에도[江戸]의 집정과 집사(執事), 근시(近侍), 경윤(京尹) 등에게 예조에서 증정하는 예물을 없애라는 뜻은 전에 이미 훈도 별차에게 언급하였는데, 동지 역시 들은 바가 있는가?' 하거늘, 비직 등이 '예조에서 증정하는 예물을 무슨 곡절로 이번에 없앴는가?' 물었더니, 동 왜인이 '이른바 집정, 집사, 근시, 경윤은 곧 관백의 대신(大臣)인데, 예조의 예물은 본디 참판이 증정하기 때문에 항례(抗禮:대등한 예)에 있어서 편치 못한 소치인지, 도중(島中)에서 추측하는 의견이 이러하다'고 하거늘, 비직이 '참판이 에도[江戸]의 집정에게 서찰을 보내는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라 유래한지 이미 오래인데, 지금에 와서 무슨 항례에 편치 않음이 있다고 하는가?' 하였더니, 동 왜인이 '예물을 없앤 것이 앞서 말한 바와 같지만, 다만 도주(島主)가 두 나라 사이에 있으면서 크고 작은 일에 관계없이 반드시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지만, 에도[江戸]에서 이렇게 무단히 없애는 명령이 있었으므로, 도주 또한 그 의도를 알지 못하고, 부질없이 혼자 우려하고 있을 따름'이라고 운운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예조참판이 집정, 집사, 근시, 경윤 등에게 증정하는 예물은 비록 없었지만 세 사신이 집정, 집사, 근시, 경윤 등에게 보내는 예물 및 각처에 주는 예물은 한결같이 임술년(1682)의 사례대로 하며, 예조참의 이하의 서계와 예물도 또한 임술년(1682)의 사례대로 한다'고 하였으며, 동 왜인이 또 말하기를 '관백의 저군(儲君)은 현재 정해진 봉호가 없어서, 귀국에서의 별폭과 세 사신의 배례와 예물 등의 일 및 닛꼬오산[日光山] 치제와 악기, 등롱(燈籠), 그리고 다이유잉[大猷院]과 겐유잉[嚴有院]의 분향과 폐백 등의 일과 어필(御筆) 등도 임술년(1682)의 사례대로 한결같이 모두 제한다'고 하였으며, 동 왜인이 또 말하기를 '예단 말 2필 내에 1필은 모리(毛里)가 없이 체구가 큰 쌍창위라[雙倉月羅]로 하고, 1필은 검은 순색으로 모리가 없이 체구가 큰 것으로 가려서 보내달라'고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세 사신의 직책과 성명, 원역 등의 직책과 성명을 전례대로 속히 적어 보내달라'고 하였으며, 동 왜인이 또 말하기를 '행차의 택일은 언제 쫓에 있는가?'라고 하거늘, 비직 등이 '4월 초6일에 서울에서 출발하여 5월 초9일에 배를 탄다'고 하였더니, 동 왜인이 답하기를 '택일 날짜는 과연 합당하나, 임술년(1682) 행차에서는 5월에 출발하여 6월에 배를 탔는데, 이번에도 대차왜가 나온 뒤에 아마도 조금 물리자는 청이 있을 듯하다'고 하거늘, 다른 왜인에게 그 사유를 상세히 탐지하니, 에도에 있는 도주의 가사(家舍)를 이제 바야흐로 수리하고 있는데 미처 완성하여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음. 대차왜가 나온 뒤에 무릇 조정하는 일은 다시

수본할 계획이라는 일로 수본한다” 하였기에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권이진의 장계를 보면 통신사 때 절목을 강정하기 위한 수역 이석린의 수본 내용에, 왜관에 가서 다시 재판왜를 만나 보았더니, 무릇 절목에 관계된 것은 당연히 강정해야 하나 대차왜가 머지않아 나올 것이니 대차왜를 기다려 함께 의논하여 강정하자 하였으며, 집정, 집사, 근시, 경윤은 곧 관백의 대신인데 예조의 예물은 본디 참판이 증정하는 것이므로 항례(抗禮)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다는 소치인지

도중에서 추측하는 의견이 이러하다 하였으며, 참판이 집정 이하에게 주는 예물은 비록 제거하지마는 세 사신이 집정과 집사, 근시, 경윤 등에게 주는 예물 및 각처의 예물은 한결같이 임술년(1682)의 사례대로 하고, 참의 이하의 서계 예물도 또한 임술년(1682)의 사례대로 하며, 관백의 저군 별폭과 세 사신의 배례 예물 등의 일 및 닛꼬오산[日光山] 치제와 악기, 등록, 다이유잉[大猷院], 겐유잉[嚴猷院]의 분향과 폐백의 일과 어필 등도 임술년(1682)의 사례대로 한결같이 모두 없애며, 예단 말 2필 내에 1필은 쌍창워라로, 1필은 검정색 순색으로 모리(毛里)가 없이 체구가 큰 것을 가려 보내 달라고 하였으며, 세 사신 및 원역 등의 직함과 성명을 전례대로 적어 달라고 하였으며, 통신사 행차의 날짜는 과연 합당하나, 임술년(1682)에는 5월에 출발하여 6월에 배를 탔는데, 대차왜가 나온 뒤에 조금 물리자는 청이 있을 듯하다고 운운하였는바, 당초 절목을 대차왜와 함께 논의하여 강정하겠다고 한 것은 의도가 이미 있어서인데, 이제 이번 수역이 내려간 뒤에 강정할 즈음에 이른바 집정, 집사, 근시, 경윤은 관백의 대신인데 예조의 예물은 본디 참판이 증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항례(抗禮)에 있어서 편치 못함이 있어서라고 한 것은 실로 추측하기 어려우나, 이웃나라와 우호를 맺은 이래로 통신사의 행차가 한두 번에 그친 것이 아닌데, 이번에 홀로 관백의 대신이 항례하는 것이 편치 않다고 이야기하는 데는 그 정상에 현저히 경멸하는 뜻이 있어서, 분명히 듣지않고 그냥 두어서는 불가하기에, 부득이하여 수역에 명하여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였으며, 이른바 관백의 저군(儲君) 예물 등의 일은 한결같이 모두 제거하는 일은, 여러 등록을 살펴보면 계미년(1703) 통신사가 관백이 새로 아들을 낳아 축하 위로로 보내었기에 사례에 따라 증정하는 예물이 있었으며, 을미년(1655) 통신사 때는 저군에게 보내는 예물이 없었던 것은 대개 관백이 죽어서 이른바 저군이 계승하여 섰기 때문이라, 지금은 아들이 있으나 현재 봉호를 정한 것이 없어서 예물을 제감(除減)한다고 칭한 것은 그 사유를 알 수 없지만, 우리

가 서로 함께 하는 도리에 있어서는 또한 전혀 폐하는 것은 불가한데, 일찍이 이전에 있었던 사례를 그 말하는 바대로 제감하는 것이 무방할지, 아울러 묘당에 명하여 상의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며, 그 나머지 각 항목의 제감하는 일은 한결같이 장계 내의 사연대로 시행함이 마땅하나, 예단 말 2필은 또한 구하는 털의 색깔대로 가려서 보내라는 뜻으로 해당 관청에 분부하며, 사신 이하의 직함과 성명을 적어 보내는 일은 전례대로 시행을 허락하며, 배를 타는 기일을 물리는 일은 대차왜가 나온 뒤에 상의하여 임시로 진퇴함이 적절하니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50년(1711) 2월 20일 동부승지 신 윤행교(尹行敎)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신묘(1711) 2월 26일

영암군수의 첩정 내용. 통신사가 바다를 건널 때의 완풍석(莞風席)은 이미 벌써 마련하였거니와, 가미(價米)를 어떤 곡물로 지출하며, 바다를 건너갈 격군 2명의 요미(料米)는 얼마씩 어떤 곡물로 지출할지 지휘하실 일.

이에 의거한 예조의 수결 내용: 이는 본조에서 지휘할 일이 아니니 선혜청에 보고할 일.

신묘(1711) 2월 29일

함평현감의 첩정 내용. 통신사의 격군 값을 매 명마다 환상미(還上米)⁶⁸⁾ 15섬씩 지급하였는데, 동 격군의 가미(價米)를 회감하지 아니하여 동 격군의 가미(價米)를 마련해 낼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공사 간에 편하고 좋을 지,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극히 우려되니 좋은 도리를 참작하여 내려주실 일.

이에 의거한 예조의 수결 내용: 격군의 가미는 본조에서 알 바가 아니고, 선혜청에 보고하여 확정함이 마땅하니 상고하여 시행할 일.

신묘(1711) 3월 초1일

一. 이번 2월 30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세 사신을 가함(假啣: 임시 직함)으로 보내는 일을 탐전에서 확정함. [이조, 예조,

68) 환상미(還上米): 각 고을의 사창(社倉)에서 백성들에게 꾸어주었다가 가을에 다시 받아들이는 쌀.

사역원]

一. 이번 2월 30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예조판서 이돈(李墩)이 계품한 바, “통신사의 행차에 마상재 2인을 들여보내야 하는데, 안장 도구를 해조에서 만들어 지급하는 규정이 있어서, 여러 등록을 상고하니, 임술년(1682) 통신사 행차에 상고(廂庫)에 호안(胡鞍)이 있지만 쓸 곳이 없다고 듣고서 입계하여 확정하여 지급해 보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또한 재인(才人)이 타는 말이 2필인데 혹 중도에 병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어서 1필을 예비용으로 더 보내어, 이제 또한 3필로 계하하였으나, 예비 말의 안장 도구는 아울러 지급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는데, 상감께서 “전례대로 호안(胡鞍)을 지급하여 보내되, 안장 도구는 2부만 지급함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훈련도감, 호조, 예조, 상고, 사역원]

一. 같은 날 입시하였을 때 좌의정 서종태(徐宗泰)가 계품한 바, “동래부사의 장계에 호행(護行) 대차왜가 나온 뒤에 차비역관을 차출하여 보내는 것은 본부 등록에 없으니 내려 보내지 말기를 청하였는데, 사역원에는 임술년(1682) 호행 대차왜가 나올 때 차비역관을 차출한 문서가 있는데 그 이유가 상세하지 않으나, 이번에는 평상시와 다름이 있어서 탐문할 사정이 있을 것이니 차비역관 1인을 뽑아 보냄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상감께서 “뽑아 보냄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비변사, 예조, 사역원]

통신사등록 제6책

신묘(1711) 3월 초3일

예조에서 상고할 일. 이제 이번 통신사가 가져갈 예단에 사용할 응련(鷹連)과 반전(盤纏)⁷⁰⁾ 잡물을 마련하여 기다리는 일 및 사신이 출발하는 날짜는 아울러 일찍이 이미 알렸거니와, 본도에 복정(卜定)⁷¹⁾한 잡물과 선상(船上)의 짐물(什物)은 5월초까지 차사원 부산첨사에게 남김없이 수납하되, 도부를 받아 대조하여 돌려 준 뒤 상세히 회이(回移)하여 증빙할 바탕으로 삼을 일. [충청감사, 전라감사, 경상감사, 강원감사, 함경감사, 황해감사, 평안감사 등에게로 이문함].

신묘(1711) 3월 초4일

금 2월 30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켰을 때, 좌의정 서종태(徐宗泰)가 계한 바에 “동래부사의 장계에서 앞서 온 차왜가 말한 것 중 몇몇 조목과 예조 회계(回啓)를 아울러 지금 묘당에서 품처하라는 일로 운하가 내렸는데, ‘집정 이하 대신들은 참판과 대등한 예로 대함이 불편하니 증정하는 예물을 없애고, 관백(關白)의 저군(儲君)도 현재 아직 확정하여 책봉하지 않았으니 예물 등의 일을 한결같이 아울러 없앤다’는 등의 말은 모두 전례에 어긋납니다. 이는 곧 교제의 예절로서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이제와 덜어 없애기를 요청하며 ‘대등한 예로 대함이 불편하다’고 말하는 것은 더더욱 해괴하니, 대저 반드시 간사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대차왜가 나온 뒤에 그 말이 만약 차왜가 말한 바와 같다면, 동래부사로 하여금 그 연유를 힐문하여 그 기색을 살피고, 또 말한 바를 믿기 어려우니 마땅히 서신으로 도주(島主)에게 묻겠다는 뜻으로 말함이 좋을 듯합니다. 먼 곳 사람의 사정은 헤아리기 어려우니, 대차왜의 답변이 어떠한가를 기다려 마땅히 다시 품달하겠고, 처분하신 바가 있기에 짐짓 복계(覆啓)할 것이 없으므로 감히 계달합니다” 하였다.

예조판서 이돈(李璵)이 말하기를 “그 소위 ‘참판과 대등한 예로 대함이 불편하다’는 말은 정상(情狀)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대개 수역(首譯)이 그 예단을 감

70) 반전(盤纏) : 여행에 필요한 물품과 비용. 여비(旅費).

71) 복정(卜定) : 조정이나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조달함에 있어서 각 지방에 그 책임을 나누어 정하는 일.

제(減除)하는 연유를 묻자, 그 말한 바가 이와 같다가 끝내는 도중(島中)⁷²⁾의 추측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실로 일에 앞서 먼저 떠보는 계책에서 나온 것이니, 엄한 말로 꾸짖어 깨우쳐 타이르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서[서종태]가 말하기를 “예전과 같이 보내어 증정하는 일은, 저들이 일컫는 바 ‘대등한 예로 대함이 불편하다’는 말에 대하여 끝내 그 교만하고 방자한 마음을 꺾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감께서 말씀하시기를 “참판과 집정을 대등한 예로 대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예단을 보내지 말라는 말에 경시하고 업신여기는 뜻이 현저히 드러나니, 굳게 지켜 허락하지 않음이 옳다” 하였다. 서[서종태]가 말하기를 “대차왜가 온 후 그 사정을 알 수 있을 터인데, 저들이 만약 반드시 감제하고자 한다면 하필 억지로 보내겠습니까? 만약 ‘대등한 예로 대함이 불편하다’는 말을 꺼낸다면 반드시 쟁집할 바가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관윤 이언강(李彦綱)이 말하기를 “동래부사의 당초 장계에는 ‘예단 감제가 폐단을 없앤다는 뜻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이번 장계에는 곧 ‘대등한 예로 대함이 불편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교활한 왜(倭)의 정상은 참으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대차왜가 나온 뒤에 ‘대등한 예로 대함이 불편하다’는 말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만약 혹 서계(書契)를 고치기를 요청한다면 엄한 말로 준엄히 배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감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차왜가 나온 뒤에 그 말이 마땅히 어떠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혹 서계를 고치기를 요청한다면 시종일관 쟁집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서종태가 말하기를 “저군(儲君)에게 폐백을 주는 예는 집정에게 문안하고 예물을 주는 것과는 사체(事體)에 구별이 있습니다. 그 보내지 말라는 말로 인해 그 대로 보내지 않는다면, 예전부터 해온 교제의 예에 결락을 면치 못하니, 이는 거듭 말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하였다.

호조판서 김우항(金字抗)이 말하기를 “전례대로 보내는 예단은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차왜가 나온 뒤에 그 연유를 힐문하여 조치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이언강은 말하기를 “가지고 갔는데 받지 않으면 모욕됨이 가뻔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감께서 “그렇다”고 하였다. 서[서종태]가 말하기를 “관백의 아들에게 보내는 예폐(禮幣)는 이제부터는 전례대로 갖추어 보낸다는 뜻을 언급하여 특별히 우대하는 뜻을 보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상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마땅히 주어 보내야 할 것 같다”고 하였다.

예조참판 김진규(金鎭圭)가 말하기를 “신의 생각에 관백의 아들에게 주는 예폐

72) 도중(島中) : 대마도의 일본측 관청인 대마부중(對馬府中)을 가리킨다.

는 저쪽에서 비록 보내지 말라고 했으나 거기에는 ‘동맹국의 도리’가 있으니 보내지 않을 수 없고, 집정 이하에게 보내는 예폐는 처음에는 ‘폐단 제거’로 말을 하더니 후에는 ‘작질(爵秩)의 고하(高下)’로 말을 하니 간사한 마음이 있는 듯한데, 그가 운운한 바는 대개 대마도[馬島所]에서 억측한 말이고 아직 에도[江戸]의 사정이 과연 어떠한지 알지 못합니다. 대저 대차왜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탐문함이 마땅하되, 저들이 만약 작질로 말을 하면 전례에 의거하여 책유하여 따르지 않아서는 안 됨을 분명히 하시고, 저들이 끝내 듣지 않는다면 또한 반드시 억지로 보낼 것은 없습니다. 대개 이 예폐를 받지 않는 것과 서계를 고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니, 만약 우리에게 서계의 ‘대등한 예로 대함’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면 마땅히 반드시 힘써 다투어야 하지만, 예폐는 저들이 얻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니 억지로 사행(使行)에 부쳤다가 끝내 받지 않으면 그 욕됨이 심할 것입니다” 하였다.

행(行) 판결사(判決事)⁷³⁾ 윤덕준(尹德駿)이 말하기를 “대차왜가 나온 뒤에 알게 알 수 있겠지만, 대저 우리나라는 전부터 왜인과 서로 다투다가 끝내 반드시 왜인의 교묘하고 다단한 속임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저들이 ‘집정을 예조참판과 대등한 예로 대함이 불편하다’고 말하며 그 감제를 요청하였는데, 우리나라가 말도 없이 보내지 않는 것은 매우 무기력하니, 의당 ‘우리나라는 그 예를 아껴 예를 없앨 수 없는데, 너희 나라는 반드시 그 재물을 아끼니, 그렇다면 분량을 감하여 답폐(答幣)하라’고 말한다면, 끝내 비록 이기지 못해도 역으로 간사한 짝을 꺾는 방도는 될 듯합니다. 예로부터 교린에는 사령(辭令)⁷⁴⁾으로 힘을 얻는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어찌 아무 말도 없이 보내지 않아 스스로 약하다는 것을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하였다. 이언강이 말하기를 “재물을 아낀다는 말은 억측에 가까우니, 이것으로 말을 삼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들이 만약 서계를 고치기를 요청한다면 결단코 허락해서는 안 되지만, 단지 ‘대등한 예로 대함이 불편하다’고만 말한다면, 한 번 책유하면 그만이고, 예단에 있어서는 반드시 억지로 보낼 일이 아닙니다” 하였다. 상감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차왜가 온 후에 힐문하고 책유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호조, 예조, 사역원].

신묘(1711) 3월 초5일

경상감사의 관문 내용. 통신사 반전 잡물 중 화석(花席) 3장을 본도가 마련할지 여부를 회이(回移)할 일에 대해 (예조에서) 논의(論移)하였는데, 회관(回關)

73) 판결사(判決事) : 장례원의 장관으로 정3품 벼슬이다.

74) 사령(辭令) : 남에게 응대(應對)하는 말.

내용에 “예단 화석 21장 외에 본도에 복정(卜定)한 잡물 가운데 화석 3장을 명백히 알렸으니, 앞의 관문을 상고하여 급속히 마련할 일”로 관문하였기에, 귀조(貴曹)에서 당초에 보낸 관문을 다시 상고하니, 반전 잡물 중 돛자리 목록에 ‘만화석(滿花席) 30장, 채화석(彩畵席) 30장, 지의(地衣) 3부, 면석(面席) 3넙, 독석(篤席) 3넙, 단석(單席) 3넙, 화석 3넙, 문방석(紋方席) 1죽’이라 하였음. 본도가 각 관청에 분정(分定)할 때 임술년(1682) 감영의 등록과 부산에 보관한 잡물봉상입송등록(雜物捧上入送騰錄)을 두루 상고하여 하나하나 점을 찍어 비교해보니, 각양의 돛자리 품목[色目]과 장수(張數)가 부합되지 않음이 없는데, 그 중 화석 3장은 ‘화석’이 아니라 ‘화방석(花方席) 3넙’이라고 명백히 기록되어 있거늘, 허다한 물종(物種)을 옮겨 적는 사이에 글자 하나를 빠뜨리고 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므로 혹 빠뜨리고 쓴 것이라 생각하여, 본도가 임술년(1682)에 이미 시행한 사례에 한결같이 의거하여 화방석 3넙을 분정하였는데, 이제 이번 회이(回移)가 다시 이와 같은 것은 귀조의 등록에는 화방석의 ‘방’자가 누락된 결과인지, 방석 3넙 외에 또 화석 3넙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일이 매우 괴이하고 의아하여 다시 이렇게 논하여 이문(移文)하니, 등록을 거슬러 올라 고찰하여 상세히 구별해 속히 회이하여 거행하도록 할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수결한 내용. 한결같이 부산의 등록에 의거하여 거행할 일.

평안감사의 관문 내용에, “방금 도부한 비변사의 관문 내용 중에 ‘통신사 반전으로 경상도에 복정한 인삼 8근을 신유년(1681) 사례대로 본도에 회부한 곡식으로 바꾸어 구매해 갖추어 보낼 일’로 관문하였기에, 동 인삼 8근을 구매하여 께 짝에 넣어 감봉(監封)하고 도장을 찍어 감영의 군관인 사과(司果) 김세위(金世渭)에게 주어 올려보내오니, 받고서 회이(回移)해달라”는 일로 관문하였기에, 본조 낭청(郎廳)⁷⁵⁾이 사신 행렬 중 수역(首譯)과 장무역관(掌務譯官) 및 본 감영의 군관 등과 함께 간품(看品)한 즉, 불품없는 것도 있고 혹 다른 물건으로 그 안을 보충한 것도 있어 결단코 받아갈 수 없다고 하는 바, 타국에 보내는 물건을 이처럼 구차하게 채워서는 안 되니, 특별히 참작하여 그 중 합당한 것 2근 10냥 5전은 사행의 건량소(乾糧所)⁷⁶⁾로 받아 올려 수송하며, 부적합한 5근 5냥 5전 5푼은 도로 본 감영의 군관 김세위에게 주어 보내니, 성화같이 다시 구비하여 3월내로 맞추어 올려보내어 일이 생기는 폐단이 없도록 할 일임.

75) 낭청(郎廳) : 각 관아에 있는 당하관(堂下官)의 총칭.

76) 건량소(乾糧所) : 사신 일행의 양식을 담당하는 곳,

신묘(1711) 3월 초6일

동래부사 권이진(權以鎭)⁷⁷⁾이 2월 28일 성첩한 장계. 방금 바친 훈도(訓導) 정만익(鄭晩益)⁷⁸⁾과 별차(別差) 이덕기(李德起)⁷⁹⁾ 등의 수본(手本)⁸⁰⁾ 내용에 “경인조 부특송사왜(副特送使倭)의 원역(員役) 등이 별연(別宴) 설행을 없애고 건물(乾物)로 들여달라고 운운했다”고 수본하였음. 이에 의거하여 동 연회 수요의 건물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달 19일 수량을 대조하여 들여주었음.

이달 25일 미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박중징(朴仲徵)⁸¹⁾의 치통 내용에 “금년 정월 초7일에 나온 무자조 제9선 1척에 격왜 30명 등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어 가지고 당일 진시에 배를 출발하여 돌아간 일”로 치통하였음. 동일 신시쫄 황령산(荒嶺山) 봉군(烽軍) 방자원(方自元)과 간비오(干飛鳥) 봉군 옥명립(玉明立) 등이 진고(進告)한 내용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4척이 물마루를 나오다가 역풍을 만나 표류하여 우도(右道)로 향했다”고 진고하였음. 추후에 도부한 부산첨사 박중징의 치통 내용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4척이 나오다가 역풍을 만나 표류하여 우도로 향했다고 석성(石城) 봉군이 진고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배가 멈춰 정박한 곳을 상세히 탐문하여 급히 보고 하라는 뜻으로 차례차례 신칙한 일”로 치통하였음. 동일 유시쫄 황령산과 간비오 두 곳의 봉군 등이 다시 고한 내용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또 물마루를 나왔다”고 진고하였음. 추후에 도부한 부산첨사 박중징의 치통 내용에 “왜선 1척이 물러났다가 나왔다고 석성 봉군이 진고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상황을 탐색하려고 개운포 만호 김중탁(金重鐸)을 선정하여 보낸 일”로 치통하였음. 동일 해시에 성첩하고 26일 자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관소(館所)로 직향하는 왜선 1척을 영솔(領率)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초탐장(哨

77) 권이진(權以鎭, 1668~1734) : 안동 권씨로 자는 자정(子定), 호는 유희당(有懷堂)·수만헌(收漫軒)이다. 권득기(權得己)의 증손이요 권시(權謨)의 손자이며 송시열(宋時烈)의 외손자로 서인(西人) 유학자이다. 숙종 20년(1694)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1709~1711년 동래부사를 역임했으며, 1722년 사은부사로 청나라에 다녀오기도 했다. 1728년 이인좌(李麟佐)의 난을 수습한 공로로 원종공신 1등에 녹훈된 뒤 호조판서·공조판서·평안감사 등을 역임하였다.

78) 정만익(鄭晩益, 1664~?) : 하동 정씨로 자는 대수(大受)이다. 숙종 19년(1693) 식년시 역과(譯科)에 왜학(倭學)으로 급제하여, 관직이 교회(敎誨), 품계가 통정대부·절충장군에 이르렀다.

79) 이덕기(李德起, 1677~?) : 진주 이씨로 자는 대유(大有)이다. 숙종 31년(1705) 증광시 역과 왜학으로 급제하여, 관직이 총민(聰敏)·주부(主簿)에 이르렀다.

80) 수본(手本) : 공사(公事)에 대하여 상관에게 보고하던 서류.

81) 박중징(朴仲徵, 1661~?) : 밀양 박씨로 자는 몽응(夢應)이다. 숙종 20년(1694)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부산첨사로 1711년까지 재직했고, 경흥도호부사(慶興都護府使) 등을 역임하였다.

探將) 김중탁이 치보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정만익과 별차 이덕기 등에게 명하여 정황을 묻게 한 뒤의 수본 내용에 ‘관(館)에 나아가 정황을 물었더니, 도중(島中)에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무자조 제14선에 격왜 20명 등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어 가고자 노인(路引)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동 노인 1통을 받아 올려보낸다’는 뜻으로 수본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동 노인을 수송하는 일”로 치통하였음. 동일 유시에 황령산 봉군 허완일(許完日)과 간비오 봉군 조대천(趙大天) 등이 진고한 내용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4척이 물마루를 나왔다”고 진고하였음. 추후에 도부한 부산첨사 박중징의 치통 내용에 “왜선 4척이 나왔다고 석성 봉군이 진고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상황을 탐색하려고 본진(本鎭)의 제2선 선장 최재홍(崔再弘)을 선정하여 보낸 일”로 치통하였음.

27일 미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이제 이번에 나온 왜선 4척을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초탐장 최재홍이 치보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정만익과 별차 이덕기 등에게 명하여 정황을 묻게 한 뒤의 수본 내용에 ‘동 왜선이 어제 밤늦게 도착하여 정황을 묻지 못했다가 오늘 아침 관에 나아가 정황을 물었더니, 도중에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제1척은 통신사호행대차왜선으로 정관(正官) 다이라 가다나오[平方直], 봉진압물(封進押物) 1인, 시봉(侍奉) 2인, 반종(伴從) 16명, 의왜(醫倭) 1인, 통사왜(通事倭) 1인, 격왜 70명 등이 함께 타고 예조참판 참의와 동래 부산에 보내는 서계와 별폭을 가지고 나왔으며, 제2척은 동 차왜의 수목선(水木船)⁸²⁾으로 도선주(都船主) 다이라 나오세이[平尙誠], 교대할 중금도왜(中禁徒倭) 4인, 소금도왜(小禁徒倭) 3명, 격왜 20명, 제3척은 동 차왜의 견선(撓船)⁸³⁾으로 격왜 20명, 제4척은 동 차왜의 각선(脚船)⁸⁴⁾으로 격왜 20명 등이 함께 탔는데, 각각 노인을 가지고 나왔으며, 동 차왜가 가져온 서계와 별폭 등은 다례하는 날 전례대로 바칠 계획이라고 운운하는 바, 서계 등본과 노인 3통 등을 받아 올려 보낸다’는 뜻으로 수본하였기에, 위의 서계 등본은 전례대로 수송하고, 노인 3통은 서면(書面)에 ‘각도각관방어소(防禦所)’라 써넣었기로 전례대로 물리쳐 받지 않는 일”로 치통하였음.

방금 바친 통신사행 때의 절목 강정(講定)에 대한 수역(首譯) 이석린(李碩麟)⁸⁵⁾의 수본 내용에 “오늘 나아가 대차왜를 만나 그 도중(島中)의 사정을 물었

82) 수목선(水木船) : 물과 연료를 본선(本船)에 운반하는 작은 배.

83) 견선(撓船) : 견선(牽船). 사자(使者)가 타는 배는 대선(大船)이기 때문에 역풍을 만나거나 바람이 없을 때는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므로 본선(本船)을 끄는 견인선이 필요하다.

84) 각선(脚船) : 사자(使者)가 승선한 배로부터 육지에 오르거나 승선할 때 옮겨 타는 배.

85) 이석린(李碩麟, 1660~?) : 해주 이씨로 자는 성서(聖瑞)이다. 숙종 4년(1678) 식년시 역과에 왜학으로 합격하여, 관직이 직장(直長), 품계가 가선(嘉善)에 이르렀다.

더니, 동 왜인이 말하기를 ‘도중에는 일단 다른 일이 없는데, 다만 내가 가져온 서계 안에 통신사의 행차가 5월에 승선(乘船)한다고 적혀 있지만, 지난달 보름 사이 도중에서 사람 하나⁸⁶⁾를 정하여 에도와 각 주(州)에 보내어 그곳의 일체 응접과 마련 등의 일이 더딜지 빠를지를 탐색하게 했는데, 그 탐문하고 되돌아 오는 날짜가 마땅히 3월 그믐이나 4월 초에 있을 것이다. 에도와 각 주에서 온갖 준비가 이미 마련되었다면 승선이 5월에 있어야 마땅하고, 마련하지 못했다면 승선이 6월에 있어야 마땅할 듯하니, 그 탐문 결과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즉시 다시 알리겠다’고 한 바, 과연 이것이 실상이기로 연유를 수분하며, 절목 등의 일은 차왜가 어제 막 나왔으니 짐짓 강정하지 않았고, 강정한 뒤에 다시 수분할 계획이므로 연유를 아울러 수분하는 일로 통틀어 치통하고 수분한다” 하였기에, 위의 무자조 제12·13·14·15선의 노인 4통 및 차왜가 가져온 서계 등본 1통 등은 감봉(監封)하여 해조에 올려 보내고, 물에 젖은 노인과 격식에 위배된 노인 등은 속히 고쳐 써서 바치라는 뜻을 역관 무리에게 명하여 관수왜(館守倭)에게 책유하도록 하였음.

통신사호행차왜가 이미 나왔는데, 차왜가 머무는 기한은 50일에 불과하지만, 통신사가 승선할 기일이 아직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으니, 접위관은 회하(回下)를 기다린 후에 형세를 보아 오도록 청할 계획이거니와, 이제 이번 차왜의 원역은 임술년(1682)에 비해 부관(副官) 1인을 줄여 나온 바, 증정하는 공(公)·사(私) 예단 잡물을 해조에 명하여 전례에 비추어 마련하여 급속히 내려 보내게 하며, 통신사행 때 참관이 관백의 집정 등에게 증정하는 예물 제거의 일을 역관이 근래 수분했는데, 신의 생각에 남의 신하된 의리에는 사사로이 교류함이 없으니, 에도의 예물 제거 요청이 만약 이런 사리를 아는 데서 나왔다면 참의가 증정하는 것도 마땅히 제거해야 하니, 이런 사리로 차왜 등에게 알아듣게 잘 타일러 그들로 하여금 상세히 회보(回報)하도록 하라는 뜻을 역관에게 언급했으므로,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이는 초5일 계하(啓下)하였고, 초6일 청대(請對) 때 접대의 뜻을 탐전에서 확정함.

예조에서 상고할 일. 이제 동래부사의 장계로 인하여 통신사호행차왜 다이라 가다나오[平方直] 등 원역(員役)을 전례대로 접대하는 일을 탐전에서 확정하였으니, 즉시 나아가 접대하라는 뜻을 본도의 도사(都事)에게 통지하여 시행하되 도 부한 일시를 이문할 일. [경상감사, 동래 등에게로].

86) 일력(一力) : 일꾼 한 사람.

통신사호행차왜 다이라 가다나오[平方直]가 가져온 서계 등본.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拾遺) 다이라 요시가다[平義方]가 조선국 예조참판 대인(大人) 함하(閣下)께 봉서(奉書)합니다. 천지의 기운이 바뀌어 온갖 상서가 나란히 이릅니다. 생각건대 귀국은 화합하고 본방(本邦) 또한 그러하여 함께 손뻙을 치며 기뻐합니다. 그로 인해 정관 다이라 가다나오[平方直]와 도선주 다이라 나오세이[平尙誠]를 보내 빙사(聘使)를 엄숙히 맞이하되, 바다를 건너는 기일은 반드시 5월 초순으로 요청함을 감히 앞서 고합니다. 쓰고 남은 뜻은 사자(使者)의 혀에 붙이고, 박한 예물은 모두 아래에 기록합니다. 때가 쌀쌀한 봄날이니 다시 더욱 아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살펴주시기 바라오며 다 갖추지 못합니다. 보영(寶永)⁸⁷⁾ 8년(1711) 신묘 정월 일.

별폭: 가죽으로 짠 문서상자[革褱簿匣] 1비(備), 구리로 만든 다섯 개가 한 벌인 세숫대야[赤銅累五盥盤] 2부(部), 곧은 장죽 담뱃대[直竿烟器] 60악(握), 수정갓끈[水晶笠緒] 3결(結), 금을 붙인 작은 병풍[貼金小屏風] 1쌍(雙), 채화 옷걸이[彩畫衣桁] 1각(脚), 동화지(桐花紙) 1000편(片), 채화옥괘연(彩畫玉掛硯)⁸⁸⁾ 1비(備), 수납으로 만든 중간 크기 차사발[粹鑑中茗盃] 10개(箇) 끝.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 다이라 요시가다가 조선국 예조참의 대인 함하께 봉서합니다. 복두칠성이 인방(寅方)으로 돌아와 다시 정월이 되었으니 두 나라의 태평을 함께 빙니다. 이에 정관 다이라 가다나오와 도선주 다이라 나오세이를 보내 빙사(聘使)를 맞아 호위하되,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바다를 건너는 기일은 반드시 5월 상순에 있어야 합니다. 나머지 세세한 것은 사자의 혀에 붙이고, 비박(菲薄)한 물품은 별록에 두니, 빙그레 웃고 받아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삼가 이에 다 갖추지 못합니다. 보영 8년 신묘 정월 일.

별폭: 채화옥괘연(彩畫玉掛硯) 1비(備), 채화경대(彩畫鏡臺) 1각(脚), 금을 붙인 작은 병풍[貼金小屏風] 1쌍(雙), 대화진주(大和眞朱) 2근(斤), 곧은 장죽 담뱃대[直竿烟器] 30악(握), 채화된 발 달린 네모 동이[有趺方盆] 20매(枚) 끝.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 다이라 요시가다가 조선국 동래 부산 두 영공 함하께 계서(啓書)합니다. 초봄에 멀리서 두 분 모두 편안하시리라 생각하니, 그리운 마음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에 정관 다이라 가다나오와 도선주 다이라 나오세이를 보내 성사(盛使:사신)를 멀리서 맞이하매, 예조에 서계를 올려 이 일을 아뢰니, 속히

87) 보영(寶永) : 일본 제113대 히가시야마 천황[東山天皇, 재위 1687~1709]의 연호로, 1704~1711년 사용하였다.

88) 괘연(掛硯) : 다른 벼룻집[硯匣]을 이어 겹칠 수 있게 장치가 되어 있거나, 덮개가 있는 벼루.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박한 물품이나마 상자에 담아 보내오니, 꾸짖고 거둬 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다 갖추지 못합니다. 보영 8년 신묘 정월 일.

동래부사공 별폭: 가죽으로 싸고 구슬을 드리운 괘연[革褰簿垂珠掛硯] 1비(備), 채화한 7촌의 염경[彩畵鏡匳]⁸⁹⁾ 2면(面), 대화진주(大和眞朱) 1근(斤), 대에 채화한 큰 벼룻집[彩畵臺大硯匣] 1비(備), 화로(火爐) 3위(圍), 채화서가(彩畵書架) 1각(脚) 끝.

부산영공 별폭: 채화문갑(彩畵文匣) 1비(備), 화로(火爐) 3위(圍), 가죽으로 싸고 구슬을 드리운 괘연[革褰簿垂珠掛硯] 1비(備), 채화된 발 달린 네모 동이[彩畵有趺方盆] 10매(枚), 붉은 구리로 만든 세 개가 한 벌인 세숫대야[赤銅累參盥盤] 1부(部) 끝.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저번에 통신사호행차왜 다이라 가다나오가 가져온 서계에 대한 회답 및 동래 부산이 답할 초고(草稿)는 승문원(承文院)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지어 내게 하되, 별폭의 회례(回禮) 물품은 전례대로 마련하여 계목에 후록(後錄)했으니, 급속히 마련하여 내려 보낼 일로 해조와 본도에 분부하심이 어떠할지?

후록.

참관 회례: 인삼 2근, 범가죽[虎皮] 2장, 표범가죽[豹皮] 2장, 흰 명주[白綿紬] 7필, 흰 모시베[白苧布] 7필, 검은 삼베[黑麻布] 7필, 흰 무명[白木綿] 20필, 황모필(黃毛筆) 30자루.[이상은 해조에서 마련]. 화석(花席) 3장, 4장을 붙인 유둔[四張付油氈] 3부, 참먹[眞墨] 30홀(笏).[이상은 본도에서 지급].

참의 회례: 인삼 1근, 범가죽 1장, 표범가죽 1장, 흰 명주 7필, 흰 모시베 7필, 검은 삼베 7필, 흰 무명 20필, 황모필 30자루.[이상은 해조에서 마련]. 화석 3장, 4장을 붙인 유둔 3부, 참먹 30홀.[이상은 본도에서 지급].

동래·부산 두 곳의 회례: 각각 흰 명주 5필, 흰 모시베 5필, 흰 무명 10필, 황모필 20자루.[이상은 해조에서 마련]. 참먹 20홀[본도에서 지급].

강희 50년(1711) 3월 초6일 우부승지 신 한배주(韓配周)⁹⁰⁾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예조단자. 이제 이번 통신사호행차왜 다이라 가다나오 등의 접위관으로 본도 도사를 차정(差定)하는 일은 이전의 본부 장계로 인하여 이미 확정하였습니다. 예전부터 도사가 접대할 때의 체례(體例)⁹¹⁾는 경관(京官)과 서로 같아 사예단(私

89) 염경(鹽鏡) : 작은 상자 모양으로 된 경대.

90) 한배주(韓配周, 1657~1712) : 청주 한씨로 자는 문경(文卿)이다. 윤증(尹拯)에게 수학하고, 숙종 31년(1705)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충청감사 등을 역임했다.

禮單)⁹²⁾을 주는 일이 있으니 지금도 이에 의거하여 마련하며, 동 차왜 등이 배에서 내릴 때·배에 오를 때·관(館)에 머물 때 별연(別宴) 도합 3번의 연회에서 증정하여 주는 잡물 또한 전례대로 마련하니 급속히 마련하며, 차비역관(差備譯官)을 이미 차정했으니 그로 하여금 급속히 가지고 내려가게 할 일로 해조(該曹)·해원(該院) 및 본도에게 분부하심이 어떠할지?

차왜에게 3번 연회를 베풀 때 증정하여 줌. 각각 인삼 1근, 흰 명주 5필, 흰 모시베 5필, 검은 삼베 3필, 흰 무명 5필, 황모필 20자루.[이상은 해조에서 마련]. 화석 3장, 4장을 붙인 유둔 2부, 참떡 20홀.[이상은 본도에서 지급].

도선주 1인에게 3번 연회를 베풀 때 증정하여 줌. 각각 인삼 1근, 흰 명주 3필, 흰 모시베 3필, 검은 삼베 3필, 흰 무명 4필, 황모필 20자루.[이상은 해조에서 마련함]. 화석 3장, 4장을 붙인 유둔 2부, 참떡 20홀.[이상은 본도에서 지급].

압물(押物) 1인, 시봉(侍奉) 2인에게 각각 3번 연회를 베풀 때 증정하여 줌. 각각 흰 명주 2필, 흰 모시베 2필, 흰 무명 3필.[이상은 해조에서 마련].

반중(伴從) 16명에게 각각 3번 연회를 베풀 때 증정하여 줌. 각각 흰 명주 1필, 흰 모시베 1필, 흰 무명 2필.[이상은 해조에서 마련].

접위관의 사예단. 인삼 3근 12냥, 표범가죽 3장, 흰 명주 10필, 흰 모시베 10필, 검은 삼베 7필, 흰 무명 20필, 황모필 40자루.[이상은 해조에서 마련함]. 화석 5장, 4장을 붙인 유둔 5부, 참떡 40홀.[이상은 본도에서 지급].

강희 50년(1711) 3월 초6일 입계하니 입계한 대로 시행하라고 하심.

신묘(1711) 3월 초7일

금 3월 초6일 좌의정 서종태(徐宗泰), 병조판서 최석항[錫恒],⁹³⁾ 예조참판 김진규(金鎭圭)가 청대(請對)하여 입시했을 때 예조참판 김진규가 계한 바, “대차 왜가 나왔는데 그가 이제 막 왔기에 아직 통신사의 예절을 강정(講定)하지 못했다고 말한 장계를 올려보낸 후, 생각해보니 반드시 탐문할 일이 있을 텐데, 조

91) 체례(體例) : 일의 대체(大體) 및 규례(規例).

92) 사예단(私禮單) : 국가에서 보내는 공식적인 예단[公禮單]과 달리 사신이 사사로이 주는 예단을 뜻함.

93) ‘최석항’은 원문에 이름이 등장할 때 간혹 ‘석항’ 두 글자만 있거나 아니면 ‘최’자를 먹으로 뭉개고 이름 두 글자에 동그라미를 치는 등의 표시를 해놓았다. 그 까닭은 아마도 소론 4대신의 한 사람인 최석항(崔錫恒, 1654~1724)이 영조 원년(1725) 신임사화의 주동자라는 이유로 관작이 추탈되고, 그 후 여러 번 복관과 추탈이 반복되다가 정조 때 최종적으로 추탈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번역문은 이러한 표시에 상관하지 않고 모두 ‘최석항’으로 번역하였다.

정에서 지휘할 바를 이때 아직 분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경연에서 여러 신하들이 진달한 바는 의심하는 데서 나온 말이 많았으니 반드시 다 베껴 보내지는 않더라도, 그 책유하는 큰 뜻 같은 것은 분부하는 바가 있어야 마땅하니, 비국에서 이를 말로 만들어 동래에 별도의 관문을 보내심이 어떠할지?” 상감께서 말씀하시기를 “말한 대로 하라”고 하심. [비국과 예조에서 승전(承傳)을 받듦].

동일 입시 때 예조참판 김진규가 계한 바, “관백의 저군(儲君) 예단을 이때 아직 정봉(定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내지 말 것을 요청했는데, 전례를 살펴보니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인조조 임오년(1642) 관백이 아들을 낳았기에 통신사를 파견했는데 저군에 대한 예물이 있었습니다. 비록 포대기[襁褓]에 있어도 예물을 보냈는데, 지금 위호(位號)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제를 청하는 것은 그 연유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전례를 끌어와 대차왜에게 힐문하는 일로 동래부사에게 분부하심이 어떠할지?” 상감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례대로 힐문하는 일을 분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심. [비변사와 예조에서 승전을 받듦].

신묘(1711) 3월 초8일

비변사에서 상고할 일. 전일에 본부(本府)에서 앞서 온 차왜가 말한 것 중 ‘관백의 집정 이하를 본국의 예조참판과 대등한 예로 대함이 불편하니 증정하는 예물을 제거하고 관백의 저군이 현재 아직 정봉(定封)되지 않았으니 예물을 제거하는 일’로 장계를 올려 아뢰니 예조에 계하(啓下)되었는데, 예조에서 복계(覆啓)하여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였기로, 지난번 경연에서 여러 신하들이 진달한 바가 있었는데, 대개 이렇게 운운한 것은 대마도가 억측한 말에 불과하지, 예도 문서에 의거할 만한 것이 있어서 나온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그때는 대차왜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했기에, 경연에서 아뢴 바도 의심하는 말만 하고 짐짓 하나로 지정하여 확정된 것이 있지 않았음. 어제 또 장계를 보니 대차왜가 이미 나왔지만 사행절목 등의 일은 그가 이제 막 나왔기에 짐짓 아직 강정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본부에서 아직 탐문하여 치계하지 않았으니 조정에서도 미리 예측하여 갑자기 먼저 지휘하기가 어렵지만, 대저 이제 이번 왜인이 말하는 예물 제거의 두 사안은 모두 허락할 수 없는 바가 있음.

우리 조정이 일본과 통호(通好)한 이래 예조참판의 신분으로 서계를 왕복하며 예도의 집정과 봉행(奉行) 등 여러 관원에게 예물을 증정하여 주는 것은 그 유

래가 오래되었는데, 양국이 이 규례를 준행하면서 일찍이 ‘작질(爵秩)이 높고 낮은 것 때문에 대등한 예로 대함이 불편하다’고 말한 적이 없다가, 이제 대마도가 애초에는 폐단을 없앤다고 했다가 도로 다시 말을 바꾸어 전에는 말하지 않았던 작질로 구실을 대면서 그 운운한 바가 또 스스로 억측한 것이니, 도주의 담당직무가 양국의 일을 전달하여 통하게 함인데 어찌 그 말의 불성실함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또한 전례를 준수하지 않고 작질에만 맞추어 예를 행한다고 한다면, 도주는 단지 동래에만 서계를 통해야 하는데 그 사이에 예조 당상에게 서계를 보내어 대등한 예로 한 경우가 있었으니, 이제 예도의 관원들이 예조참판의 예물을 받지 않는다면 차후로 도주 또한 장차 예조 당상에게 서계를 소통할 수 없거늘, 어찌 그 생각이 여기에는 미치지 못하는지?

저군의 예물에 있어서는 조정에서 주는 것이니 사체가 가볍지 않아 도주가 예물 제거 여부에 간여할 바가 아니며, 또한 그가 아직 정봉되지 않았기에 증정하여 보내는 예물이 필요없다고 말하지만, 인조조 임오(1642) 년간에는 왜인이 관백이 아들을 낳았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 사신을 파견해줄 것을 원하였으니, 그때는 강보를 떠나지 못한 아이였어도 예물을 증정했는데, 지금 관백의 저군이 비록 정봉되지 않았어도 그 유치함이 반드시 임오년 관백의 신생아와 같지는 않거늘, 왜인이 폐할 수 없는 이웃나라의 접대 예절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그 전례도 다시 준수하지 않은 채, 처음에는 저군의 나이가 어리다며 세사신의 배례(拜禮) 제거를 말하더니, 이제는 또 조정에서 전례에 따라 증정하여 주는 예물을 제거하고자 하니, 이것이 과연 교린에 성실하고 신의 있는 도리를 하고자 함인지? 이런 일들은 예도의 문서에 의거할 만한 것이 있더라도 도리어 불가한데, 하물며 차왜가 말한 바는 대마도가 억측한 것에 불과하고 도주의 서계에도 실려 있지 않으니, 우리나라에서는 장차 어느 곳을 살펴 믿겠는가? 왜인은 이전부터 규례를 지키지 않아 일에 성실함이 부족했지만, 우리나라는 본디 예절을 중시하므로 매번 접대 즈음에 한결같이 법식과 규례를 따랐으니, 이제 예로부터 유래된 참판의 서계 소통의 전례를 폐할 수 없고, 또한 그 저군이 아직 정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내야 마땅한 예물을 보내지 않는 것도 불가함이 매우 명백할 뿐만 아니라, 대차왜가 말하는 것이 비록 앞서 온 차왜와 다름이 없더라도 결단코 들어줄 이치가 없으니, 부사가 역관 무리로 하여금 관문 내의 사연대로 이치에 맞게 잘 책유하게 하여 그들이 굴복하도록 기약하고, 또 차왜가 구전(口傳)한 말은 딱히 믿기 어려워 조정에서는 마땅히 ‘서계로 도주의 뜻을 묻겠다’고 말하니, 의당 각각 별도로 유념하여 거행해야 함.

이번 장계의 말단에 소위 “남의 신하된 의리에는 사사로이 교류함이 없다”는

말은 전혀 인용할 만한 말이 아님. 예관이 일본의 집정에게 서계를 통하고 예물을 증정하여 주는 것은 품지(稟旨)하여 거행하는 일이니 어찌 가히 사사로운 교류라고 하겠는가? 저들은 참관이 증정하는 예물을 받지 않고자 하는데, 여기서 또 참의가 증정하는 예물의 제거를 말하는 것은 말뜻이 평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묘당에서 품정한 것과도 배치되므로, 어제 경연에서 상감께서도 이렇게 말을 지어내는 것이 합당함을 잃었다고 하교하셨으니, 차후로 차왜를 책유할 때는 모름지기 이런 뜻을 알고 다시는 이와 같이 말하지 말며, 무릇 이 별도의 관문 사연은 곧 답전에서 품정한 것이니 아울러 상고하여 시행할 일. [동래에게로].

신묘(1711) 3월 12일

경상감사의 관문 내용. 통신사가 가져갈 예단과 반전 잡물은 한결같이 귀조의 관문에 따라 낱알이 분정하여 방금 부산에 수납하고 있거니와, 전후로 분정한 수(數)가 극히 많은 가운데 중도에 폐지하여 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들이 아니어서, 논이(論移)하여 옮겨 정한 물건 또한 많이 있는데, 이렇게 변통하는 [那移]⁹⁴⁾ 사이에 혹 누락되어 미진한 폐단이 없지 않을 테니, 저쪽에 도착하여 사용될 원래 수량을 상세히 알아서 본도에서 분정한 수량과 비교한 연후에 라야 남거나 모자라는 폐단이 없을 수 있으므로, 이문이 도착하는 즉시 그 별단(別單)의 반전 수를 조목조목 구별하여 몽땅 베껴 회이하되, 중앙 관청과 각 도에 분정한 것을 막론하고 한결같이 원래의 수에 따라 품목 별로 열거하고, 아무 곳에서 쓸 어떤 물건 약간 중에 얼마쯤은 중앙 관청에서 마련하고 얼마쯤은 어느 도에 복정할지 하나하나 주(註)를 달며, 어떤 일은 시행하지 않기로 조정하고 어떤 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지의 여부 또한 구별하여 베껴 보내어 증빙으로 삼아 거행할 수 있게 할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상고할 일. 운운한 일로 관문하였기로, 당초에 계한 일본국왕 이하에게 증정하는 예단 잡물 및 사신의 반전으로 각 도에 복정한 잡물은 관문에 후록하여 내려 보내고, 본도 외에 다른 도에 복정한 물건도 사신이 승선하기 전에 차사원인 부산첨사에게 수납하라는 뜻을 이문하여 통지했거니와, 만약 언급하지 못한 물건이 있으면 이문(移文)이 왕복하는 즈음에 또 지체되는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므로 본도에서 곧장 복정한 각 고을에 재

94) 나이(那移) : 물건이나 돈을 일시적으로 융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유용하는 것.

축하며, 동 잡물이 나란히 부산에 도착한 이후에 수효를 상세히 개록(開錄)하여 올려보내 증빙할 바탕으로 삼을 일임. 여기에는 당초 일본국왕 이하에게 증정하는 예단 및 각 도에 복정한 잡물은 모조리 등서했으며, 다이유잉[大猷院]⁹⁵⁾과 겐유잉[嚴有院]⁹⁶⁾은 비록 계하하지 않았으나 한결같이 임술년(1682) 등록에 수록된 물목에 의거하여 또한 베껴 보냄.

예조에서 입계하기를, “전날에 본조의 전 판서 신 이돈(李墩)이 동래부사 권이진(權以鎭)의 장계로 인하여, 통신사행 때 예도의 집정 이하에게 증정하는 예물을원래 계목 가운데서 부표(付標)하여 줄여버리는 일로 복계하여 윤허를 내려 거행한 이후, 동래부사의 장계에 또 ‘피차의 작질로는 대등한 예로 대함이 불편하다’는 말이 있으므로, 묘당에서 차왜에게 책유하라는 뜻으로 동래부사에게 별도의 관문을 보냈습니다. 방금 경상감사가 본조에 이문한 관문에 ‘통신사가 가져갈 예단 잡물을, 아무 곳에 쓸 어떤 물건 약간 중에 얼마쯤은 중앙 관청에서 마련하고 얼마쯤은 어느 도에 복정하며, 어떤 일이 행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었는지 어떤 일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지의 여부를 구별하여 베껴 보내어 증빙으로 삼아 거행할 수 있도록 하시라’ 하였는데, 소위 ‘집정 이하의 예물’은 하나를 지정하여 분부하심이 마땅할 듯합니다. 본조에서 이전에 복계한 바는 동래부사의 장계가 단지 ‘폐단 제거’만을 말했기 때문에 부표하여 제거할 것을 우러러 청했는데, 지금은 쟁집하는 바가 예절에 있으니, 이는 의당 굳게 지켜 흔들려서는 안 되니, 사체(事體)에 관계되는 일이라 갑자기 줄여 없애는 일을 외방에 선포하여 먼저 스스로 허약함을 보이는 것은 불가할 듯하고, 또 허다한 물종(物種) 역시 창줄간에 마련할 수 있는 바는 아니니, 원래의 계목 중에 이미 부표한 것이라도 본조에서 당초 마련한 바 대로 중앙 관청과 각 도에 알려, 그들로 하여금 준비하여 기다리게 하심이 어떠할지?” 전교하기를 “윤허한다”고 하심.

신묘(1711) 3월 13일

선공감(繕工監)의 첩정 내용. 이제 이번 통신사가 가져갈 방물(方物)을 담을

- 95) 다이유잉[大猷院] : 막부 3대 장군인 도쿠가와 이에미쓰[德川家光]의 묘당(廟堂).
이에미쓰는 1604년 7월에 출생하여 1623년 7월에 장군이 되고 1651년 4월에 죽었다.
- 96) 겐유잉[嚴有院] : 막부 4대 장군인 도쿠가와 이에즈나[德川家綱]의 묘당. 이에즈나는 1641년 8월에 출생하여 1651년 8월에 장군이 되고 1680년 5월에 죽었다.

케짜를 만들었는데, 방물 케짜를 백골(白骨)⁹⁷⁾로 가져갈지 무슨 색깔로 물들일지, 선공감에는 원래 전례가 없어서 이와 같이 논보(論報)하니, 예조에서 사세를 참작하여 지휘하여 분부하실 일.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수결한 내용. 임술년(1682) 케짜에 물들인 색깔은 선공감의 나이든 아전이 반드시 기억할 것이니 탐문한 후에 다시 보고하되, 왜국에 보내는 예물을 ‘방물’이라 일컫는 것은 부당하니, 차후의 문서에는 자세히 살펴 그 칭호를 의당 상고하여 시행할 일.

신묘(1711) 3월 14일

동래부사 권이진(權以鎭)이 3월 초6일 성첩한 장계. 방금 도부한 접위관 울산부사 박징(朴澄)⁹⁸⁾의 이문 내용에 “재판차왜(裁判差倭) 다이라 가다세이[平方正]의 원역 등이 이달 초5일 전례대로 진상하고 숙배한 후 하선연(下船宴)을 그대로 배풀었던 일”로 이문하였음. 이달 초5일 미시에 황령산 봉군 박귀복(朴貴福)과 간비오 봉군 김시명(金時命) 등이 진고(進告)한 내용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물마루를 나왔다”고 진고하였음. 추후에 도부한 부산첨사 박중징(朴仲徵)의 치통 내용에 “왜선 1척이 나왔다고 석성 봉군이 진고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상황을 탐색하려고 두모포 만호 이경(李++慶)을 선정하여 보낸 일”로 치통하였음. 동일 술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나온 왜선 1척을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초탐장(哨探將) 이경이 치보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정만익(鄭晩益)과 별차 이덕기(李德起) 등에게 명하여 정황을 묻게 한 후의 수본 내용에 ‘관(館)에 나아가 정황을 물었더니, 도중(島中)에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무자조 제16선에 격왜 20명 등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어 가고자 노인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동 노인 1통을 받아 올려보낸다’는 뜻으로 수본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동 노인을 수송하는 일”로 치통하였음.

방금 바친 훈도 정만익과 별차 이덕기 등의 수본 내용에 “대관왜(代官倭) 등이 통신사행 때 사용하겠다며 마른 대구어(大口魚) 200미(尾)의 무역을 허락하여 때에 미처 들여달라고 운운하기로, 연유를 수본하는 일로 통틀어 치통하고 수본한다” 하였기에, 위의 왜선 노인 1통을 감봉(監封)하여 해조에 올려보냈음. 대관

97) 백골(白骨) : 칠을 하지 않은 목기(木器).

98) 박징(朴澄, 1648~1731) : 무안(務安) 박씨로 자는 징지(澄之)이다. 숙종 7년(1681)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만경현령(萬頃縣令)·정안·예조좌랑·장령·울산부사 등을 역임했다. 1717년 기로소에 들었으며, 공조참의·동지중추부사·한성부 우윤에 이르렀다. 청렴하기로 이름이 높았다.

왜가 통신사행 때 사용하겠다고 마른 대구어 200미를 구무(求買)하여 들여달라고 운운했다고 하니, 허락 여부를 해조에 명하여 품처하도록 하실 일.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권이진의 장계를 보니 “훈도 정만익과 별차 이덕기의 수본 내용에 ‘통신사행 때 사용할 마른 대구어 200미를 구무하여 들여보내라’고 운운하니 허락 여부를 해조에 명하여 품처하도록 하시라”고 한 바, 위의 대구어는 전일에 구무를 허락한 것이 100미니 지금 또 구무하면 비록 횡수가 번다한 듯하지만, 통신사행 때 사용한다고 일컫는데다 또한 신유년(1681) 등록을 상고해보니 역시 그 청을 허락했으므로, 지금도 막을 필요가 없으니 그 말에 따라 본도에 명하여 숫자를 대조하여 부응하도록 허락함이 마땅하니 이렇게 분부하심이 어떠실지? 강희 50년(1711) 3월 14일 우승지 신 유명웅(兪命雄)⁹⁹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신묘(1711) 3월 22일

강진현(康津縣) 겸임 해남현감(海南縣監)의 첩정 내용. 통신사가 도해(渡海)할 때의 격군(格軍) 2명을 방금 정해놓고 기다리거니와, 동 격군의 양식은 어떤 곡식을 얼마씩 마련하여 대주어야 할지 참작하여 지휘하실 일.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수결한 내용. 이는 본조에서 지휘할 일이 아니라 선혜청에 보고함이 마땅하니 상고하여 시행할 일.

충청감사의 관문 내용. 앞서 도부한 관문 내용을 요약하면 “통신사행이 가져갈 선상(船上) 잡물 등을 부산에 수송하고 도부를 받아 대조한 후 회이하라”고 한 바, 본도에 복정한 잡물가목(雜物價目) 5동은 통영에 수송하고, 표범가죽 1장·범가죽 3장·철물 1075근도 이미 부산진에 수송하고서 도부를 받아 대조하였으니, 상고하여 시행할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수결한 내용. 도부했음.

예조에서 상고할 일. 방금 접한 비변사의 감결(甘結) 내용에 “이제 이번 통신사행의 기일은 형세가 앞서 정한 날짜에 출발하기 어려우므로, 각 고을이 지대

99) 유명웅(兪命雄, 1653~1721) : 기계 유씨로 자는 중영(仲英), 호는 만휴정(晩休亭)이다. 숙종 8년(1682) 문과에 급제하여, 정언·지평 등을 지냈으나 1689년 기사환국 때 파직되었다. 1694년 갑술환국 이후 다시 등용되어, 1696년 금성현령을 역임하고, 1699년 사은 겸 동지사행의 서장관으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형방승지·우부승지·황해감사·도승지 등을 역임하고, 1716년 강원감사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이후 형조판서·예조판서·한성부 판윤·공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支待)하는 등의 일은 짐짓 고쳐 분부하기를 기다렸다가 거행하라는 뜻으로 해조에서 분부하여 달라”는 감결을 받들었기로, 이와 같이 이문(移文)하는 바, 지나가는 각 고을에서 이 분부를 시행하되 도부한 일시를 이문할 일. [경기삼사, 충청감사, 경상감사 등에게로 이문함].

경상감사의 관문 내용. 앞서 도부한 예조의 관문 내용을 요약하면 “통신사 예단의 말을 서울에서 내려 보낼 때 혹 병들거나 다리를 저는 폐단이 없지 않으니, 예차마(預差馬)¹⁰⁰⁾ 2~3필을 검은 말이나 얼룩말로 본도에서 가려 뽑아 기다릴 일”로 관문한 바, 역마(驛馬)와 사마(私馬)를 막론하고 수색하여 털 색깔이 좋고 체구가 크며 잘 걷는 놈을 얻어 동래에 이송하라는 뜻으로 각 고을에 분부하였더니, 이어서 접한 동래부사의 보고에 “각 고을에서도 모두 찾기가 어렵다고 이문할 뿐, 한 고을도 간품을 거행하도록 말을 보내는 일이 없으니 장차 낭패”라고 하며, “정해놓은 각각의 색깔도 역시 각별히 다 찾았으나 끝내 있는 곳을 얻지 못했으니 극히 염려된다”고 한결같이 논보(論報)하는 바, 본도는 본디 ‘말이 나쁘다’고 일컬어져 예전에 구무(求買)했던 말들도 합당한 놈이 전혀 없어 매번 일이 생기는 우환을 면치 못하거늘, 하물며 이번 예단은 구무와 달리 반드시 체구가 크고 잘 걷는 놈을 얻어야 비로소 ‘불시에 필요한 물건’이 될 수 있는데, 각 고을에서 널리 다 찾기를 지금 거의 8~9개월 동안 했으나 여전히 합당한 놈을 1필도 얻지 못했거늘, 통신사행 기일은 겨우 한 달 남았으니, 각 고을로 하여금 다방면으로 널리 구하기를 8~9개월 동안이나 다 찾아도 얻지 못한 말을 한 달 안에 얻을 수 있을 리는 결단코 없을 뿐만 아니라, 중앙 관청에서 오로지 본도에서 선정하여 기다릴 일만 믿고 단지 실차마(實差馬)¹⁰¹⁾만 장차 내려보낸다면 때가 되어 낭패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기에, 본도에서 구하기 어려운 이러한 형편을 헤아려 동 예차마 2~3필도 중앙 관청에서 실차마와 일시에 내려보냄이 어떠할지 모르겠으니, 즉시 신속히 회이하여 거행할 일.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수결한 내용. 이는 전부터 본도에서 마련하던 물건이므로 전례대로 마련하라고 계하하였던 것이니, 중앙 관청에 떠넘기는¹⁰²⁾ 것은 사체에 부당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 마필은 그 털 색깔을 취하는 데 불과할 뿐인 즉 도내에서도 구할 수 있으니, 다시 이관(移關)하지 말고 각 고을에 신칙하여 준비하여 기다림이 마땅할 일이며, 이번 재판차왜가 나올 때도 구하는 말의 털 색깔이 1필은 검은 순색이고 1필은 쌍창위라[雙倉月羅]¹⁰³⁾로 모두 모리(毛

100) 예차마(預差馬) : 예비용으로 가져가는 말.

101) 실차마(實差馬) : 실제로 팔기 위한 말.

102) 주위(推諉) :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어 책임을 전가함.

리)¹⁰⁴)가 없고 체구가 큰 놈을 와서 구하였으니, 본도에서 마련할 예차마는 이 대로 찾아 두어 당차(當次)¹⁰⁵)에 따를 것.

신묘(1711) 3월 24일

사복시(司僕寺)의 첩정 내용. 이제 이번 일본 통신사 예단의 모리가 없고 체구가 큰 검은 순색의 준마 2필과 모리가 없고 체구가 큰 쌍창위라 준마 2필, 도합 4필의 털 색깔을 후록하여 첩보하니, 상고하여 받아 올리기를.

후록. 가라(加羅)¹⁰⁶)로서 두 코를 가른 7살 숫말, 가라로서 두 코를 가른 7살 숫말, 절따쌍창위라[赤多雙倉月羅]¹⁰⁷)로서 두 코를 가른 8살 숫말, 가라쌍창위라로서 두 코를 가른 7살 숫말.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수결한 내용. 도부했음.

전교하기를, “지난번 예조판서가 입계한 바 통신사가 들어갈 때 마상재(馬上才)¹⁰⁸)가 사용할 호안(胡鞍)¹⁰⁹)은 내궁방(內弓房)¹¹⁰)에서 즉시 내어주도록 하였는데, 있는 호안이 혹 변형되거나 파손되어, 이제 이번 동지사(冬至使)가 가져온 호안을 내어줌이 마땅하나, 예전부터 사신이 비록 들어오더라도 짐은 수일이 지난 후에 와서 납부하니, 통신사의 발행이 4월 초6일에 있어 형세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호안을 기일에 맞춰 상납할 일로 해조에서 관문을 발송하도록 분부할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상고할 일. 운운한 일로 전교하셨는데, 전교 내의 사연을 받들어 살펴 동 호안을 밤낮없이 올려 보내어 주시기를. [사신에게로, 이번에는 동평위(東平尉)¹¹¹)가 정사(正使)이므로 ‘첩정’임. 평안감사에게로].

신묘(1711) 3월 28일

평안감사의 관문 내용. 일전에 귀조에서 계하한 관문으로 인하여 통신사 예단

103) 쌍창위라[雙倉月羅] : 검은 털빛[加羅]에 엉덩이에만 흰 얼룩이 있는 말. 월라(月羅)는 얼룩말.
 104) 모리(毛里) : 말의 털 가운데 박힌 검은 반점을 일본 사람이 일컫는 말.
 105) 당차(當次) : 순번으로 돌아오는 차례를 맞춤. 또는 그런 일.
 106) 가라말[加羅馬] : 털빛이 온통 검은 말.
 107) 절따위라[赤多月羅] : 붉고 검은 털빛의 얼룩말.
 108) 마상재(馬上才) : 말을 타고 여러 가지 기능을 발휘하는 무예의 일종.
 109) 호안(胡鞍) : 중국에서 제조된 말 안장.
 110) 내궁방(內弓房) : 임금이 사용하는 활과 화살을 도맡아 만들던 궁내(宮內)의 관아. 상의원(尙衣院)에 소속되어 내시들이 이를 맡아 보았음.
 111) 동평위(東平尉) : 정재륜(鄭載崙, 1648~1723). 효종의 제5녀 숙정공주(淑靜公主)의 남편.

으로 본도에 복정한 응련(鷹連) 10마리는 각각 그 응수(鷹手)¹¹²⁾가 팔에 얹어 당일 곧바로 동래부에 발송했거니와, 응수들이 천 리 먼 여정에 신을 신발은 짊어지고 가기 어려운 형편이므로 지나가는 각 고을에서 차례차례로 구해준다는 뜻을 말먹이[草料]와 아울러 성급(成給)하여 발송하되, 연유를 먼저 이문하니, 상고하여 시행할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수결한 내용. 도부했음.

신묘(1711) 3월 29일

회환(回還)하는 사은사(謝恩使)의 관문 내용. 운운한 일로 접정한다 하였기에, 저쪽에서 보낸 예단의 호안(胡鞍)을 일행 중 상통사(上通事) 두 사람에게 주어가져오게 했는데, 사행이 강을 건넌 후 상통사들이 모두 뒤쳐져 만상(灣上)¹¹³⁾에 있어, 행렬 도중에는 형편상 가져오기 어렵기에, 즉시 이런 뜻으로 평안감영에 관문을 발송하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수결한 내용. 도부했음.

경상감사의 관문 내용. 통신사 절목을 강정하려고 수역(首譯)이 관(館)에 나아가 관수왜와 접할 때, 예단을 지급할 것인지 않을 것인지는 새로 만드는 규정과 관계되는지라 확정하여 회이(回移)하라는 일로 논의(論移)하였는데, 회관(回關) 내용에 “신미년(1691) 안신회(安愼徽)¹¹⁴⁾를 별도로 파견했을 때의 사례에 따라 거행할 일”이라고 관문한 바, 전례를 널리 상고하고 또 역관 무리에게 물어 급속히 거행하라는 뜻으로 동래에 분부하였더니, 동 부사가 회이한 내용에 “전례를 쫓 상고해보니 안신회 뿐만 아니라 전후로 수역이 내려간 경우가 한두 번에 그치지 않으나 별도로 사예단 잡물을 분정하여 받아 준 일은 없을 뿐만 아니라, 본도에서 별도로 주는 사예단의 물품이 없더라도 호조에서 동래부의 세삼(稅蔘)¹¹⁵⁾ 5근을 수역에게 지출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300여 금(金)이며, 또 호조에서 범가죽·표범가죽 각 1장, 흰 명주·흰 모시베·검은 삼베 각 5필, 흰 무명 6단(端) 등을 역관에게 지급하여 사예단 증정의 바탕으로 삼은 즉, 비록 10번을 접대하더라도 수작하고 응대할 수 있으니, 이것 외에 또 사예단을 주는 것은 사례를

112) 응수(鷹手) : 매를 기르는 사람.

113) 만상(灣上) : 평안도 의주만(義州灣)의 강상(江上)이란 말로 의주를 가리키는 말.

114) 안신회(安愼徽, 1640~?) : 순흥 안씨로 자는 백륜(伯倫), 호는 신재(春齋)이다. 현종 3년(1662)

증광시(增廣試) 역과(譯科)에 급제하여, 왜학(倭學) 교회(敎誨) 등을 역임하고 여러 관직을 거쳐 동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115) 세삼(稅蔘) : 인삼을 채집하는 채삼꾼으로부터 세금조로 거두는 인삼. 조선 정부에서는 매년 가을 인삼이 채집되는 강계 등지로 세삼영래계사(稅蔘領來計士) 1인을 내려보냈다.

참작하면 이런 이치는 없는 듯하다”고 첩보하거늘, 보고한 바가 정말로 그렇기에 전일에 분정한 잡물(雜物) 예단은 도해 후 수역의 사예단 증정의 바탕으로 이용함이 마땅할 것이라고 제사(題辭)를 써서 보냈거니와, 통신사가 저쪽에 도착한 후 왜인과 접할 때도 역시 사예단 증정의 일이 있으므로 급속히 확정하여 회이하라는 뜻으로 2월 14일 이문하여 보냈는데, 지금까지 한 달이 지나도록 여전히 회이의 거조(舉措)가 없으니, 사행 기일이 점차 임박하여 형세가 매우 군색하고 급하므로 주선하지 못하는 폐단이 있을까 염려되어 한결같이 전례대로 본도에서 먼저 마련하도록 분부하였으니, 거행 여부를 즉시 속히 회이할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수결한 내용. 이제 이번 수역을 관소로 내려 보낸 도해의 행차와는 사체가 같지 않으니, 도해 때의 사예단 전례를 사용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신미년(1691) 안신회가 내려갔을 때도 예단의 전례가 모두 없었으니, 그 갖추어 줄 필요가 없는 것은 참으로 동래부사가 보고한 바와 같거늘, 본도에서 마련하라고 분부한 것은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후하게 우대하는지? 이미 지나간 일이니 모름지기 허물하지는 않겠고, 이번에 이 예단을 사용함이 합당치 않다면 그 물건은 사행이 저쪽에 도착한 후 수역의 예단으로 이용하고 다시 더 증첩하여 마련하지 말아야 마땅하니, 이러한 뜻을 동래부사에게도 알리며, 2월 14일 이관한 관문의 말단에서 운운한 일은 이달 보름 이후 이미 마련할 조목을 적어 내려 보냈거니와, 이 이문을 성첩할 때는 아직 전달되지 않은 듯하니 상고하여 시행할 일.

신묘(1711) 4월 초1일

금 4월 초1일 예조참판 김진규(金鎭圭)가 청대하여 입시했을 때, 내일 춘추관의 실록을 포쇄(曝曬)¹¹⁶⁾하며 고출(考出)¹¹⁷⁾할 때 춘추관 당상으로 빈객을 겸대한 관원은 추이(推移)하여 회강(會講)에 나아가 참여하고, 춘추관의 사고가 없는 인원은 모두 나아가 고출할 일을 탐전에서 확정함. [춘추관, 예문관, 시강원, 예조].

동일 청대하여 입시했을 때, 통신사행의 기일을 이달 안에서 짐짓 조금 물리는 일을 탐전에서 확정함.

116) 포쇄(曝曬) : 책·곡식·의복 등을 햇빛에 말리거나 바람을 쐬어서 습기를 제거하는 것인데, 뒤에는 주로 책을 말린다는 의미로 사용됨.

117) 고출(考出) : 전거가 필요할 때 해당 부분만 뽑아서 열람함.

신묘(1711) 4월 초5일

흥양현감(興陽縣監)의 첩정 내용. 통신사가 도해할 때의 격군 2명과 잡물을 현재 정해놓고 기다리거니와, 절가(折價)를 성책(成冊)하려고 지나간 문서를 추심한 즉, 그때의 담당 색리(色吏)도 죽었는지라 감영의 등록을 상고하여 내려보내는 일로 점이(粘移)¹¹⁸⁾함.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수결한 내용. 이는 본조에서 알 일이 아니니 선혜청에 보고할 것.

해남현감의 첩정 내용. 통신사가 도해할 때의 격군 2명은 이미 정하여 세워놓았거니와, 동 격군의 식량은 무슨 곡식으로 몇 섬을 대주어야 할지 점이(粘移)하여 통보할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수결한 내용. 이는 본조에서 지휘할 바가 아니니 선혜청에 보고해야 마땅할 일.

비변사의 감결 내용. 이번 통신사행이 가져갈 반전으로 사용하는 인삼을 호조와 예조에서 받아 올릴 때 일행 중 수역이 직접 와서 간품하고 받아 올려 점퇴(點退)¹¹⁹⁾되는 폐단이 없도록 할 일로 감결을 받았음.

신묘(1711) 4월 초6일

예조에서 입계하기를, 지난번에 전교를 받들어 동지사가 가져오는 호안(胡鞍)을 오늘에 맞추어 상납하는 일로 사행 및 평안감사에게 관문을 발송했었습니다. 방금 본도의 유영장(留營將)이 감사가 순찰을 나갔기에 대신 첩정하여 본조로 안장 1부를 올려보냈고, 1부는 사행의 역관이 가져와 바쳤는데, 통신사행의 기일을 이미 조금 물렸으니, 장차 이것은 본조에서 통신사에게 직송할 것이 아니라, 동지사행(冬至使行)의 수역으로 하여금 내궁방(內弓房)에 2부를 납부하게 하여 통신사가 발행할 때 내어주도록 하심이 어떠할지? 전교하기를 “윤택한다”고 하심. [내궁방, 사역원].

신묘(1711) 4월 초9일

동래부사 권이진(權以鎭)이 3월 18일 성첩한 장계. 방금 도부한 부산첨사 박

118) 점이(粘移) : 공문서에 원래의 공문서를 첨부하여 이첩하는 것.

119) 점퇴(點退) : 흙을 지적하여 물리침.

중징(朴仲徵)의 이문 내용에 “첨사가 올봄의 조련(操鍊)에 참석하고자 이달 초6일 여러 배들을 영솔하여 수영(水營)으로 달려 나가면서 유진장(留鎭將)으로 군관 장한웅(張漢雄)을 차정한 일”로 이문하였음.

방금 바친 훈도 정만익과 별차 이덕기 등의 수본 내용에 “경인조 부특송사왜의 원역 등이 상선연(上船宴) 설행을 얹애고 건물(乾物)로 들여달라고 운운했다”고 수본하였음. 이에 의거하여 동 연회 수요의 건물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달 14일 수량을 대조하여 들여주었음.

이달 15일 신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박중징의 치통 내용에 “즉각 도부한 본진의 유장(留將) 장한웅의 치보 내용에 ‘금년 정월 초7일에 나온 무자조 제10선 1척에 격왜 30명 및 경인년(1710) 12월 초9일에 나온 재판차왜선 1척에 격왜 40명 등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어 가지고 도합 2척이 당일 진시에 배를 출발하여 돌아갔다’고 치보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하는 일”로 치통하였음.

방금 바친 통신사행 때의 절목을 강정하고자 별도로 파견된 수역 이석린(李碩麟)의 수본 내용임. 비직(卑職)¹²⁰⁾이 나아가 대차왜와 재판차왜를 만나 예조의 복계(覆啓) 내 사연으로 이치에 맞게 책유하기를 “우호로 교린한 이래 통신사행에서 예조참판이 서계와 예물을 에도의 집정 등에게 보낸 것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않건만, 이번에는 어찌하여 관백의 대신(大臣)을 ‘대등한 예로 대함이 불편하다’고 말하는가? 사리로 보면 거기에는 경시하고 업신여기는 뜻이 있는 듯하며, 참판의 예물을 ‘불편하니 제거하자’고 한다면 참의의 예물 또한 한결같이 제거해야 마땅하니 그대들도 이것을 다 알고 있다. 관백은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승습(承襲)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그 사이 반드시 저군(儲君)을 정봉(定封)한 거조가 없지 않을 텐데, ‘이때 아직 정봉되지 않았으니 예물을 전부 폐하자’는 것은 실로 괴이하고 의아하다”고 하니, 동 왜인들이 말하기를 “에도의 집정 등에 대한 예조참판의 서계와 예물은 당초 약조한 것이 아니라, 귀국에서 피로인(被虜人)을 쇄환할 때 비로소 서계를 보낸 것이니, 이번에 그 예물을 제거하는 것은 실로 피차간에 방해되는 바가 없는데, 어찌 그 사이에 터럭 하나라도 경시하고 업신여기는 뜻이 있겠는가? 또한 그 ‘대등한 예로 대하는 것에 불편함이 있는 듯하다’고 말한 것은 에도에서 의논한 바가 아니라, 바로 도중(島中)에서 부질없이 억측한 사담(私談)이기에, 지난번 동지(同知)와 수작할 때 말한 바 있다. 그대가 책유한 바를 듣고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과연 망발이라 스스로 지극히 황공함과 부끄러움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예물 제거는 이미 에도의 분부이니,

120) 비직(卑職) : 비직(卑職). 하급 관원이 상급 관원에게 스스로를 낮추어 일컫는 말.

도주가 고쳐 품정하여 변통할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축하하고 위로하는 국서를 관백에게 보내면 설령 관백의 신하에게 서계와 예물이 없더라도 어찌 사리에 손상될 바야 있겠는가?”라고 하며, 또 말하기를 “참판의 예물은 곧 에도의 집정 등에게 주는 것이고 참의의 예물은 도주에게 주는 것인데, 에도에 증정하는 예물을 제거하는 한 가지 일을 도주에게 증정하는 일에 견주어 그 서계와 예물을 제거한다면, 도주가 중간에 있으면서 통신(通信)하는 일이 도리어 어찌 있겠는가?”라고 하며, 또 말하기를 “관백이 지위에 서기 전에 아들이 둘 있었는데 지난 가을 갑자기 모두 죽었고, 작년 겨울 또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아직 강보에 있는지라 현재 그 저군을 아직 정봉하지 않았다. 만일 저군을 정봉하는 거조가 있었다면, 귀국이 비록 저군에게 예물을 보내지 않고자 해도 관백이 또한 반드시 억지로 요청했을 텐데, 하물며 관백에게 저군이 있는데도 그 예물을 제거하겠는가?”라고 하며, 동 왜인들이 종이 하나를 꺼내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이 일을 전달하여 사행이 다다랐을 때 서로 어긋나는 폐단이 없게 해달라”고 하거늘, 비직 등이 그것을 보니 하나는 국서와 별폭 및 세 사신의 예단 등의 물건을 한 겹같이 임술년(1682) 사례대로 정밀하게 갖추어 올 일이며, 하나는 별폭에 첨부한 예단 말을 더운 바다로 들여올 때 혹여 병들거나 상하는 거조가 있으면 다다랐을 때 난처할 것이 실로 염려되니 예차마(預差馬) 1필을 기어코 반드시 이끌고 올 일이며, 하나는 별폭의 응련(鷹連)을 넉넉한 숫자로 예비하여 세 사신이 바다를 건너기 전에 미리 먼저 들여주는 일이며, 하나는 이번엔 관백이 특별히 각 주(州)의 태수에게 접대의 뜻을 엄히 신칙하여 분부했으므로 피차에 증정하고 답하는 것이 반드시 후할 것으로 생각되니 세 사신의 사예단 물건을 전에 비해 더 준비하여 다다랐을 때 부족한 폐단이 없도록 할 일이며, 하나는 세 사신이 타는 배[騎船]와 짐을 싣는 배[卜船]를 깃발로 표시하되, 상선(上船)은 청색 깃발에 적색으로 ‘정(正)’자를 쓰고, 부선(副船)은 황색 깃발에 백색으로 ‘부(副)’자를 쓰며, 삼선(三船)은 홍색 깃발에 백색으로 ‘중(從)’자를 쓰고, 복선(卜船)은 그 기선(騎船)의 색깔에 따라 표시하여 기선과 복선을 왜인들이 보면 금세 알도록 하되, 그 표시 깃발이 밤낮으로 비와 바람에 날려 색이 바래 분간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을 테니 두 건을 준비하고 표시 깃발의 길이와 넓이는 이전에 비해 조금 크게 할 일이며, 하나는 세 사신이 타는 기선과 복선의 폴로 짠 자리돛[帆席]은 에도를 왕래하면서 보기에 극히 불품없으니 이번에는 기선과 복선의 자리돛을 모두 무명으로 제조하여 올 일이며, 하나는 귀국의 예의 풍속과 문翰(文翰)의 구비를 도주가 항상 에도와 각 주(州)에 과장했으니 사행의 하인배들이 혹 실례하여 도로를 왕래할 때 혹여 붙잡히는 일이 있으면 다만 도주의 부끄러

움일 뿐만 아니라 도리어 사행에도 광채가 없게 되니 각별히 신척할 일인 바, 그 조목들이 단지 이런 몇몇 말이기로, 연유를 수분하는 일로 수분한다고 하였음.

차왜가 청한 것 중 무명으로 자리돏을 만드는 요청은 비록 대단하게 관계되는 바가 있는 것은 아니나, 왜인의 말 때문에 종전에 사용하던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왜의 습속을 따라 과장하는 계책을 행한다면 아주 가소롭게 되고 마니 시행하기 어려울 듯함.

한편, 신이 엮드려 보건대 비국에서 탐전에 품정한 수 건의 일로 별도의 관문을 보내 분부한 내용에 “왜인이 말한 바 집정과 저군 등에게 예물을 제거하는 두 사안은 허락할 수 없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저군의 예물은 곧 조정에서 증정하여 주는 것이니 사체가 가볍지 않다. 임오(1642) 년간 왜인이 관백이 아들을 낳았다고 사신을 청한 까닭에 그때는 강보를 떠나지 못한 아이였어도 예물을 증정했는데, 지금은 관백의 저군이 비록 정봉되지 않았어도 그 유치(幼稚)함이 반드시 임오년 관백의 신생아와 같지는 않을 것이다. 왜인이 다만 이웃나라에 대한 예절을 폐할 수 없음을 유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그 전례도 다시 준수하지 않은 채, 처음에는 저군의 나이가 어리다며 세 사신의 배례(拜禮) 제거를 말하더니, 이제는 또 조정에서 전례대로 주는 것을 제거하고자 하니, 이것이 과연 교린의 성실하고 신의 있는 도리에 부합하는지? 부사가 역관으로 하여금 관문 내의 사연대로 이치에 맞게 잘 책유하여 기어코 그들이 굴복하도록 할 일”로 관문하였는 바, 춘추시대 열국이 서로 관여한 의리로는 제후의 세자가 천자에게 명을 받고 조회와 빙문(聘問)에 참여한 연후에야 바야흐로 이웃나라와 통성명하였으니, 하물며 우리 조정이 저들 왜인에게 비록 만부득이한 데서 이렇게 상통하는 일이 나왔지만, 어찌 그 자식에게까지 문안할 이치야 있겠습니까? 비록 히데요시[秀吉]가 흉악하고 사나웠고, 이에야쓰[家康]·히데타다[秀忠]¹²¹⁾가 새로 일어나 굴강(倔強)¹²²⁾했지만 또한 일찍이 한두 번 통신(通信)하면서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임오(1642) 년간 이에미쓰[家光]가 늦게 아들 하나를 낳자 우리에게 사신을 파견하여 축하해달라고 청하였는데, 그때 도왜(島倭)는 통신사가 순전히 아들을 축하하러 나오니 그 아들에게 문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서계와 별폭을 요청했으나, 비록 홍희남(洪希男)¹²³⁾의 무식함으로도 능히 이치에 의거하여 준엄히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왜인이 관(館)에 머물며 그 해가 다

121) 히데타다[秀忠] : 막부 2대 장군 도쿠가와 히데타다[德川秀忠, 재임 1605.4 ~ 1623.7].

122) 굴강(倔強) : 고집이 세어 굴하지 않음.

123) 홍희남(洪希男) : 홍희남(洪喜男, 1595-?). 남양 홍씨로 자는 자열(子悅)이다. 광해군 5년(1613) 역과에 합격하고 왜역으로 종사하여, 임진왜란 이후 대일 관계의 조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승록대부 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가도록 괴롭게 청하자, 해조에서 그 청을 따르자고 청하였으나, 성조(聖祖)께서 특별히 하교하여 허락하지 않으시되 다만 별폭만 허락하셨으니, 그 사리의 불가함을 밝게 알 수 있습니다. 대개 그 당초 허락한 것도 그들 오랑캐의 풍속이 무지하여 예의를 건주기가 부족하고, 또한 회융우잠(會戎于潛)¹²⁴⁾의 의리를 근거로 하여 단지 별폭만 허락하였으니, 또한 위대한 성인의 은미한 뜻이 있는 바를 가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왜인의 제거 요청은 구례(舊例)에 암암리에 합치되고, 우리에게는 진실로 종전의 꼭 눌러 참는 치욕이 없으니, 이대로 사례를 삼으면 다행함이 많은 즉, 어찌 이 때문에 터럭 하나라도 끌릴 이치가 있겠습니까? 또 그를 ‘저군’이라 일컫는 일도 반드시 자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저군은 아니며 그 아버지가 그를 봉한 연후에야 바야흐로 저군이 되니, 설령 관백에게 장성한 자식 10인이 있더라도 저들이 이미 “현재 아직 정복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웃나라가 억지로 그를 저군이라 하며 예물을 주는 것은 천하 만고에 이런 이치는 없을 듯합니다.

집정에게 서계와 예물을 증정하여 주는 것에 대해서는 비록 그 사례가 어느 때에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왜인은 다이라 아사요루[平朝賴] 이후부터 각 섬의 태수가 각각 스스로 웅거하여 군신(君臣)의 구분이 심히 분명치 않아서, 대내전(大內殿)·무위전(武衛殿)·소이전(小二殿) 등과 같은 여러 섬의 주장들이 각각 스스로 사신을 파견하여 내조(來朝)하였으므로, 저들이 오면 국왕과 큰 추장[巨酋]을 접대하는 사신이 있었고, 우리가 가면 각각 그 내조했던 사람들에게 문안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만력 신묘년(1591) 황윤길(黃允吉)이 들어갔을 때 이 사례대로 거추에게까지 문안하였는데, 망하거나 없어진 경우가 많이 있어 답서할 수가 없어서 사신이 이 때문에 근심하자, 히데요시[秀吉]가 망하거나 없어진 실질을 곧장 적어 주었습니다. 임진년(1592) 이후 통신사행 때는 거추 중에 문안할 만한 자가 거의 없었는데, 겐소[玄蘇]¹²⁵⁾ 등이 나와서 화평을 요청할 때 국왕과 그 집정 미나모토 마사중[源正純]의 서계를 가지고 나왔기에, 우리 사신이 갈 때도 그 집정에게 문안하되 다만 1장의 도장(都狀)¹²⁶⁾으로 여러 왜인들에게 간략히 문안했을 뿐이었습니다. 승정 병자년(1636) 통신 때는 대마도 다이라 요

124) 『춘추』 은공(隱公) 2년(B.C721) 봄에 “공이 융과 잠에서 회합하였다[公會戎于潛]”고 했다. 『춘추좌전』은 은공이 노나라 땅인 잠(潛)에서 이민족[戎]과 회합한 까닭은 은공의 부친인 혜공(惠公)의 우호관계를 닦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이때 융이 맹약을 요청했으나 은공이 사양하였다고 했다.

125) 겐소[玄蘇, ?~1612] : 임란 전후 일본의 외교사신으로 활약한 승려. 하카와시[博多市 세이주사[聖住寺] 주지.

126) 도장(都狀): 왜인들의 이름을 1통에 모두 열거하여 쓴 문서.

시나리[平義成]와 다이라 시게오키[平調興]가 서로 송사(訟事)하여¹²⁷⁾ 집정에게 아첨하고 기쁘게 하고자, 여러 왜인들의 성명을 나열하여 써서 거기에 일일이 서계를 소통해달라고 요청하기에, 조정에서 바야흐로 서쪽[청나라] 일이 걱정되고 또 이들 왜인과 서로 다투고 싶지 않아서 그 요청에 억지로 부응했으나, 사리(事理)로 헤아려보면 미미하게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대개 양국이 이미 서계를 소통하면서부터 신하가 사사로이 서로 서계와 공궤(供饋)함이 있는 것도 사리가 매우 올바르지 못한데, 더욱이 우리가 왜인의 숫자를 일일이 거론하여 서계를 소통하고 예물을 보낸은 영화가 아니라 욕인 즉, 이제 이들 왜인의 제거 요청은 우리나라에게는 진실로 근심할 만한 일이 아니니, 장차 이대로 규례를 이루면 어찌 심히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대등한 예로 대한다’ 등의 말에 있어서는 모두 차왜의 경망한 망발에서 나온 말입니다. 대마도 왜인은 우리나라의 사실은 상세히 알지만 에도의 일에는 비록 ‘그 나라’라고 하지만 완전히 캄캄합니다. 차왜가 처음 나왔을 때 ‘집정(執政)과 봉행(奉行)’이라 일컫기에 신이 시험삼아 “에도에도 ‘봉행’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 후에는 또 “원래 ‘봉행’이라는 명칭은 없는데 다만 대마도의 일로 착각했을 뿐”이라고 하더군요. 그 사람은 경망하고 무식하니 어찌 준신(準信)할 수 있겠습니까? 강항(姜沆)¹²⁸⁾이 얻은 <왜승백관도(倭僧百官圖)>¹²⁹⁾로 말하더라도 비록 대정대신(大政大臣), 대납언(大納言), 중납언(中納言) 등의 명칭이 있으나 원래 품질(品秩)과 직장(職掌)이라 말할 만한 것이 없고, 66주의 태수가 윤번으로 와 있으면서 관백에게 총애를 받는 자가 그 정령(政令)을 논할 뿐입니다. 임술년(1682) 도해역관(渡海譯官) 때 다이라 요시자네

127) 일본에서 ‘야나가와 한 사건[柳川一件]’이라고 불리는 국서개작 폭로사건을 가리킨다. 이 사건은 제20대 대마도주 소우 요시나리[宗義成, 1604~1657]와 그의 가신(家臣) 야나가와 시게오키[柳川調興, 1603~1684] 사이에 일어난 세력 다툼으로, 1631년 야나가와 시게오키가 도주 소우 요시나리로부터 받고 있던 지행(知行: 토지를 소유하여 조세를 징수하는 제도)과 세전선 권리[受圖書船 2척]를 반납하면서 발생하였다. 이에 도주 소우 요시나리는 야나가와 시게오키를 ‘불신(不臣)’으로, 야나가와 시게오키는 소우 요시나리를 ‘횡포(橫暴)’로 도꾸가와 막부에 서로 고발하면서, 막부에서는 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자행된 국서개작사건이 폭로되었다. 막부는 이 사건을 조선에 대한 외교체제를 개편하는 계기로 삼았는데,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대마도주의 지위를 확립시켜줌으로써 대조선 외교를 대마도주 소우씨(宗氏)로 일원화하였다.

128) 강항(姜沆, 1567~1618) : 진양 강씨 희맹(希孟)의 5대손으로 자는 태초(太初), 호는 수은(睡隱)이다. 전남 영광 출신으로 성혼(成渾)의 문인이다. 선조 26년(1593) 전주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1596년 공조좌랑과 형조좌랑을 역임했으나, 1597년 정유재란 때 포로가 되었다가 1600년에 귀국하였다. 일본 주자학의 개조가 되었으며, 『간양록(看羊錄)』, 『수은집』 등을 저술하였다.

129) <왜승백관도(倭僧百官圖)> : <왜국백관도(倭僧百官圖)>의 오기로 보임. 강항은 포로로 일본에서 지낼 때 일본의 역사·지리·관제 등을 파악하여 「적중견문록(賊中見聞錄)」에 기록한 뒤 1600년 귀국하던 해에 선조에게 올렸다. 『간양록』에 실린 「적중견문록」에는 <왜국백관도(倭僧百官圖)> <왜국팔도육십육주도(倭國八道六十六州圖)> 등이 수록되어 있다.

[平義眞]가 말하기를 “그 나라의 종실(宗室)로서 1~2품인 자는 그 품계가 우리나라의 흥록(興祿)·현록(顯祿)과 같고, 그 외조(外朝)에는 대광보국(大匡輔國)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숭정(崇政)·숭록(崇祿)과 같다”고 하였는데, 그 말의 잘못되고 망녕됨은 한번 웃음에 부쳐도 될 것이며, 에도에서 탐지하여 와서 나열하여 적어놓은 문안할 사람들로선 맨 위의 집정에서부터 말단의 시종에 이르기까지 모두 ‘종4위(從四位) 아무 주(州) 태수’라고 일컬었는데, 갑오년(1654) 전에는 다 이라 요시나리[平義成]가 항상 스스로 ‘종4위 시종’이라 일컬었으니, 그 직질의 고하를 말할 만한 것이 없음을 이에 의거하여 알 수 있고, 차왜의 ‘대등한 예로 대한다’는 말은 대개 우리나라의 일을 어렴풋이 모방하여 창졸간에 망발한 것입니다. 전후로 말한 바가 모두 한때의 가탁(假托)에서 나왔으나, 다만 들으니 저들 왜인 중 서계와 공궤를 받는 사람은 우리 사신 행차의 상하와 노복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증여할 것이 있는데, 그 경비가 넉넉치 않아서, 지금의 제거 요청이 반드시 비용을 아끼려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며, 이쪽 사람으로 사신을 따라 가야 할 자들이 이 일의 제거를 듣고 또한 자못 망연자실하지만, 나라의 체면[國體]에 있어 실로 손상되는 바는 없습니다. 단지 그 말이 먼저 저들에게서 나왔다는 것이 언짢을 뿐입니다. 참의가 도주에게 서계를 주는 것은 비록 평범한 일이나, 사신이 들어갈 때를 당하여 조정에서 먼저 도주에게 안부를 물어 사신의 행차에 부치는 것도 사신을 존중하는 도리가 아니므로, 신이 예의의 말로 저들 왜인의 참판 서계 제거 요청을 권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전날에 그 사례를 일삼은 것이 잘못되었음을 보고 한편으로는 오늘날의 제거가 우리에게 언짢아 할 것이 없음을 보고는, 참의가 보내는 서계까지 아울러 제거하도록 하여, ‘대등한 예로 대한다’는 망발을 꺾고, 또한 참판이 서계를 하지 않는 일로 서로 증명하여 모두 하지 않는 것으로 하면 일이 혹 합당할 것이므로, 제가 망녕되이 역관에게 명하여 차왜에게 언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옳되려 경연에서 품정한 바를 보고는 지극히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신이 변방에 있는 지 비록 오래되고 어리석음이 날로 심하여 문을 닫고 움츠러 었드린 채 날마다 죄를 기다리며 진실로 조정의 지휘를 봉행하지 못하여 주야로 황공하고 근심하며 초조하지만, 이미 마음에 품은 바가 있으니 다 드러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인이 에도의 말이라고 하여 우리나라에 요청한 것이 하나 둘이 아니로되 모두 차왜의 입과 혀로써 하는데, 지금에 와서 단지 이 두 사안만 가지고 그 문서를 책망하면 저들이 반드시 말이 있을 테니 이 또한 무단(無端)한 일인지라, 임술년(1682) 겐유잉[嚴有院]에 전(奠)을 드리지 말라고 요청할 때 도주의 별단이 있었기에 신은 이 사례를 끌어와 도주의 별단을 써서 바친

뒤에 품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수역(首譯)에게 명하여 차왜에게 책유하게 하였으니, 아울러 해조로 하여금 품쳐하도록 할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전 동래부사 권이진의 이 장계를 보니, 수역 이석린이 대차왜·재판차왜 등과 문답한 일 및 동왜인들이 글로 적어 보여준 9조목의 일을 차례로 열거하고 나서, 그 마음에 품은 바를 덧붙여 해조더러 품쳐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 소위 예단 등의 물건을 임술년(1682) 사례대로 정밀하게 갖추라고 말한 것은, 그들의 이런 말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물종을 마련하는 서울과 외방에 진실로 의당 신척하여 타국에서 일이 생기는 폐단이 없도록 해야 하니 이로써 각별히 알리십시오. 마필에 있어서는 중도에서 병들고 상할 것이 혹 염려되나 전에는 없던 일이므로 예차마는 결단코 숫자를 더하여 들여보내기 어려우니 동래부로 하여금 전례대로 틀어막게 하십시오. 응련은 당초 마련한 바를 채워 넣은 것 외에 또 숫자를 더했으니 이로써 저절로 추이(推移)할 수 있으므로 예비를 더 마련하는 일도 불필요하며, 사행이 바다를 건너기 전에 미리 먼저 들여주는 일은 그것이 우리나라에 있어 또한 조련하고 길러야 하는 폐단을 없앨 수 있으니 동래부로 하여금 그들의 요청대로 먼저 들여주게 하십시오. 사신의 사예단을 전에 비해 더 준비하는 일은, 저 나라의 접대 여하를 막론하고 조정에서 비용을 대어 보내는 데는 본디 정식이 있고 또 이미 넉넉하고 후하므로 이제 꼭 더 마련하여 그들의 뜻을 일일이 따를 필요는 없으며, 만일 사신이 사사로이 증정하는 바를 지적하여 말한다면 이는 조정에서 관여하여 알 수 있는 바가 아니니, 이로써 동래부와 사행에 분부하십시오. 사신이 타는 배와 짐 싣는 배를 깃발로 표시하는 일은, 바다를 건너가는 배가 깃발로 표시함이 없어서는 안 될 듯하고 또 전부터 과연 모두 그렇게 했으니, 지금도 역시 의당 변별하기 쉽도록 힘쓰되, 우리나라 배의 깃발 색과 모양을 왜인이 지휘할 바는 아니니, 사행으로 하여금 변별하기 쉽도록 배를 만드는 통영(統營) 및 좌수영(左水營)과 아무 색깔 아무 모양으로 의논하여 편의에 따라 제작하되 지나치게 사치스럽지 않게 하여 변방 장수에게 폐단이 없도록 하십시오. 자리돛을 무명으로 제조하는 일은, 일찍이 임술년(1682) 사행 때도 3승포로 돛을 만들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끝내 대신에게 막혔으니, 지금 이 수령[守臣:권이진]이 운운한 바는 견식이 없지 않은 듯합니다마는, 지난번 사신이 청대했을 때 이미 진달하여 윤허를 받았으니 이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사행의 하인들이 예를 차리지 않고 소란을 부리는 일은 비록 왜인의 부탁이 없더라도 봉명(奉命)하여 강역(疆域)을 나간 자가 그 아랫

사람을 단속하지 않아 오랑캐 풍속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도록 해서는 안 되니, 사신으로 하여금 특별히 엄히 신칙하게 하시고, 만일 범금(犯禁)하는 자가 있으면 되도록 엄중하게 죄를 따지게 하십시오.

에도의 집정에게 본조 참판이 서계와 예물을 주는 한 사안은, 왜인이 전후로 누차 그 말을 바꾸어, 처음에는 “폐단을 제거하는 데서 나왔다”고 했다가, 중간에는 “작질로는 대등한 예로 대함이 불편하다”고 했다가, 이제는 또 앞의 말을 망발로 귀결시키고는 전일에 없었던 약조와 쇄환 등의 말을 지어내니 그 교활함과 거짓됨이 아주 놀랄 만합니다.¹³⁰⁾ 왜인은 이번 사행에서 모든 것을 성대히 갖추고자 하면서 유독 이 서계와 예물에서만 폐단을 제거하겠다고 하는 것이 벌써 어불성설이며, ‘대등한 예로 대함이 불편하다’는 말이 과연 에도의 의논이 아니라 그들 무리가 억측한 것이라면 양국 간의 언어 전달이 얼마나 중대한데 이렇게 감히 공공연히 지어내어 제멋대로 말하는 것이며, 약조에 있어서는 기유년(1609)에 개정한 것인데, 어제 사고[史閣]에서 고출할 때 『광해일기』가 사고 안에 존재하지 않아 비록 명백히 근거할 만한 단서는 얻지 못했으나, 실록 중 다른 곳에서 약조를 논급한 것을 보면 그 강정(講定)한 바가 아마도 세선(歲船) 등의 일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비국에서 등사해둔 기유년(1609) 선위사(宣慰使) 이지완(李志完)¹³¹⁾이 기록한 책자를 살펴보면, 약조를 적으면서 세선·접대 등의 일을 열거하여 기록하고는 그 마지막 줄에 “나머지 다른 일은 한결같이 앞의 규례에 의거한다. 운운”이라고 썼습니다. 그렇다면 서계와 예물 등의 일은 세선 밖에 있고, 그전부터 이미 행하던 바가 있었는지 짐짓 그 근거할 만한 명백한 글을 얻지 못해 문서로 질정하기는 어렵지만, 서계를 소통하는 예절이 한때의 강정에서 나왔고 원래 맹약할 만한 일은 아닌 즉, 설령 약조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행한 지가 오래되었으니 사체(事體)에 관계되는 바라 무단히 폐지할 수는 없을 뿐더러, 만일 약조에 없는 것이라고 말을 한다면 도주가 을유년(1705) 이후 참판에게 서계를 소통하고 히꼬망[彦滿]¹³²⁾이 도서(圖書)를 받은 후에 세견(歲遣) 이외 여러 송사(送使)의 회답에서 참의의 서계를 얻기를 요청한 것 또한 약조에 있었는지, 무인년(1639) 이후 서계 안에서 관백을 ‘대군(大君)’으로 지칭한 것도 약조에 있었는지, 저쪽에서는 분명히 약조에 없는 것인데도 오직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을 하고, 이쪽에서는 예전부터 준행하던 바인데

130) 원문의 ‘해(該)’는 ‘해(駭)’의 오기로 보인다.

131) 이지완(李志完, 1575~1617) : 여흥 이씨로 자는 양오(養吾), 호는 두봉(斗峯)이다. 선조 30년(1597)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광해군 때 대사간·형조판서·우참찬 등을 역임하고 여성군(驪城君)에 봉해졌다. 시문에 능하여 1606년 이호민(李好閔)·허균(許筠) 등과 함께 중국 사신 주지번(朱之蕃)을 접반하였다.

132) 히꼬망[彦滿] : 다이라 요시나리[平義成]의 아들인 다이라 요시자네[平義眞]의 어릴 때 이름.

도 이제 약조를 구실로 삼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극도로 근거가 없습니다.

그 소위 피로인 쇄환으로 인하여 처음으로 서계를 보내게 되었다는 말도 의심할 바가 있습니다. 괴원(槐院:송문원)등록에 실린 갑자년(1624) 통신사 때 비변사에서 입계한 말에 “앞서 두 번의 사신 행차에 모두 ‘회답(回答)’으로 호칭하였고 별도로 오로지 ‘추쇄(推刷)’로 이름을 삼은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그 집정대신에게 보낸 서계 안에 대략 쇄환의 뜻을 담은 말을 골라 언급했으니, 지금도 역시 구례대로 집정에게 보내는 서계의 말단에는 말을 골라 첨가해 넣는 것이 마땅합니다” 운운했으며, 실록에서 고출(考出)한 바는 선조 정미년(1607) 여우길(呂祐吉)¹³³⁾ 등이 발행한 후 비변사에서 입계하기를, “엿드려 성교(聖敎)를 보건대 사신의 행차에 우리나라 피로인을 모두 다 쇄환하고자 하셨습니다. 구구이 이렇게 거론하신 것은 백성을 위하여 굽히신 것입니다” 하면서 사신의 호칭을 ‘회답 겸 쇄환사’라고 운운했으며, 그 후 우길 등이 일본에서 가져온 국서의 첫면에는 단지 ‘미나모토 히데타다[源秀忠]’만 쓰고 ‘국왕’은 쓰지 않았고, 예조에 답하는 서계에서는 우리나라를 ‘먼 곳 사람[遠人]’이라 하면서 예조참판 오억령(吳億齡)의 성명을 곧장 썼다고 운운했습니다. 괴원등록을 가지고 본다면 집정에게 이미 서계가 있었기에 쇄환의 뜻을 대략 언급한 것이지, 오로지 이 일 때문에 참판의 서계를 새로 만든 것은 아닌 듯합니다. 실록을 가지고 본다면 이러한 거조가 백성을 위해 굽히신 것이라 했으니, 어쩌면 그것은 인물들을 쇄환하기 위해 전일에 하지 않았던 서계를 한 것인지, 또 그 만서(嫚書)¹³⁴⁾를 가지고 본다면 혹 그때 예관(禮官)이 쇄환의 일로 관백에게 서계를 보냈기에 히데타다가 답서에서 예관의 성명을 지적하여 썼는지, 만약 그렇다면 정미년(1607) 참판이 서계를 소통한 자는 관백이요 집정이 아닌 것인지, 다만 괴원등록으로 서로 비교하여 논하자면 갑자년(1624) 이전 두 번의 사행 때 집정에게 보낸 서계 안에 쇄환의 뜻을 대략 언급했다고 운운하였고, 갑자년(1624) 사행 때 예조참판 오백령(吳百齡)¹³⁵⁾의 이름으로 일본 집정에게 서계를 소통한 것이 서계 글에 명백히 수록되어 있으니, 그렇다면 정미년(1607) 서계를 소통한 자도 역시 관백이 아니라 집정인 것인지, 원래 정확히 근거할 만한 문적이 없으니 억측으로 결단하기 어렵고, 참판이 서계를 소통한 것이 기유년(1609) 이전에 시작되었다면 기유년에 정한 약조 속에 있느냐 없느냐는 논할 바가 아니거늘, 차왜가 꾸며서 말

133) 여우길(呂祐吉, 1567~1632) : 함양 박씨로 자는 상부(尙夫), 호는 치계(稚溪, 痴溪)이다. 선조 24년(1591)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1596년과 1614년 두 차례 명나라에 다녀왔고, 1607년 통신사 정사(正使)를 거쳐, 공홍도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134) 만서(嫚書) : 거만한 글. 업신여기는 글. 모욕적인 편지. 여기서는 일본 국서를 지칭한다.

135) 오백령(吳百齡) : 오백령(吳百齡, 1560~1633). 선조 40년(1607) 정미년에 예조참판을 역임한 오억령(吳億齡, 1552~1618)의 동생으로, 인조 2년(1624) 갑자년에 예조참판을 역임했다.

을 지어낸 것은 “교묘하게 하려다가 도리어 졸렬하게 되었다”고 말할 만합니다.

관백의 아들은 당초에는 단지 ‘그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우리 사신의 배례(拜禮) 제거를 요청하더니, 말을 돌려 ‘아직 정봉(定封)되지 않았다’며 예물을 받고자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처음으로 ‘두 아들이 모두 죽고 작년 겨울 낳은 아들은 강보에 있다’는 말을 발설하니, 전후 말의 변화가 무상할 뿐만 아니라, 과연 아직 정봉되지 않았다면 애초부터 왜 ‘저군(儲君)’이라 일컬었는지 그들이 말한 바가 스스로 모순됩니다. 대저 차왜의 교활하고 거짓된 말은 구태여 많은 말로 논변할 것도 없지만, 수령이 논렬(論列)한 것은 득실을 말할 만한 것이 없지 않습니다. 춘추시대 열국의 세자가 천자에게 명을 받고 조회와 빙문에 참여한 연후에 이웃나라와 통성명하는 의리를 오랑캐에게 책려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왜인에게 통호(通好)한 것은 대개 견제에서 나온 것이니, 오직 마땅히 체례(體例)를 준수하여 그들의 조종을 받지 않아야 할 뿐입니다. 임오년(1642) 사행은 그 아들 낳은 것을 축하하기 위함이니 그것이 지나치게 간곡한 것이었음을 누가 모르겠습니까마는, 앞서 이미 그 아들에게 예물을 보내는 것이 곧 규례가 되었는데, 이제 나이가 어리다고 핑계대거나 아직 정봉되지 않았다고 핑계대면서 이웃나라가 예로 공궤하는 것을 물리치고자 하니, 대등한 상대 이상부터는 오히려 감히 그 증정하는 것을 받지 않아서는 안 되는 즉, 관백의 아들 주제에 우리 주상께서 규례를 준수하여 예로 공궤하심을 물리치는 것이 과연 공손합니까? 공손하지 못합니까? 또 임오년(1642)에 사신을 파견하여 예물을 증정한 것은 우리나라로서는 진실로 언짢은 듯하나, 지금 만약 우리가 먼저 “임오년(1642)에 비록 증정한 것이 있으나 이제 어린 아이에게 번번이 공궤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예물을 보내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존중하는 바탕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능히 이렇게 하지 못하고 저들이 도리어 물리치는 것이라, 조종함이 우리에게 있는지 저들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묘당에서 전일에 별도의 관문을 보내 임오년(1642) 일을 인용하여 말하도록 시킨 까닭입니다.

참판이 집정에게 서계와 물건을 증정하여 주는 문제에 있어서, 그 사례가 어느 때에 시작되었는지는 비단 동래부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조정에서도 상고할 만한 것이 없고, 수령이 인용한 바 “임진년(1592) 이전에 여러 섬의 추장으로서 ‘전(殿)’으로 호칭한 자들이 각각 스스로 사신을 파견했기에 우리도 각각 문안한 바가 있었다”는 것은 사세가 히데요시[秀吉]의 병탄(倂呑) 이후와는 다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때 우리 쪽에서 서계를 보낸 자도 어떤 모양의 관원인지 모르니, 아마도 지금 인용할 만한 바는 아닌 듯합니다. “젠소[玄蘇]가 나와서 화평을 요청한 후 우리 사신이 가서 그 집정에게 문안했다”고 말한 것 또한 어느 해의 일

을 지적하여 말한 것인지, 비록 1장의 도장(都狀)이라도 당연히 서계를 발행한 관원의 호칭이 있을 텐데 본부에 과연 그것이 기록된 문적이 있다면 어찌하여 상세히 진달하지 않았는지, 오늘날 쟁집하는 바는 참판과 집정에 있는데 수령이 전날의 일을 범범하게 끌어와 명확히 말하지 않은 것은 밝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병자년(1636) 시게오키[調興]가 여러 왜인들을 나열하여 써서 일일이 서계를 소통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말도 그렇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선조 정미년(1607)부터 참판으로 서계를 소통했다면 어찌 병자년(1636)에 처음으로 시게오키의 말 때문에 힘써 부응하였겠습니까? 이는 수령이 아마도 옛일을 상세히 알지 못한 듯합니다. 예관이 저들에게 서계를 소통하는 것은 실로 조정의 명령에서 나오는데 어찌 “사사로이 서로 서계하고 공궤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등한 예로 대함이 불편하다’는 말은, 이제 참의가 도주에게 서계를 소통하는 일을 끌어와 책유한 후에야 비로소 차왜가 앞의 이 말을 망발이라 하고 있으니, 그 본의를 헤아려보면 은연중 피차의 집정과 예관의 관위가 서로 대등하지 않다는 것으로 교만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을 환히 알 수 있습니다. 대개 관백은 곧 남의 신하이니 우리 주상께서 그와 서계를 소통하는 것은 우리에게 본디 너무도 대단한 실례이고, 또한 기유년(1609) 이전 선위사가 된 자는 차왜를 대하면서 도리어 그 관백을 ‘장군’이라 일컬었는데, 그 후로는 날로 점점 허물어져 ‘관백’이라 일컫는 것도 부족하여 ‘왕’이라 일컬고, ‘왕’이라 일컫는 것도 부족하여 ‘대군(大君)’으로 일컬었으니, 무릇 그 마음을 교만하게 만든 까닭이 이와 같은 즉, 어찌 저들이 예관과 집정에 대해 이렇게 운운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 나라에 관원의 품질(品秩) 제도가 없는 것은 수령이 말한 바와 진실로 같지만, 집정의 임무가 우리나라 6조보다 무겁다는 것은 차왜 또한 어찌 모르겠습니까? 또 도주가 이미 예도에 왕래한다면 그의 가신(家臣)된 자들도 어찌 예도의 일에 온전히 어둡겠습니까? 수령이 차왜를 준신(準信)하여 평탄하게 그의 말을 곧장 망발로 귀결시킨 것은 아마도 크게 소략함을 면치 못할 듯합니다. “비용을 아낀다”고 운운한 말도 억측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비록 간사하고 인색하지만 우리가 충신(忠信)으로 대하는 도리에 있어서는 마땅히 이와 같이 억측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대개 이 두 건의 일 중 관백의 아들이 예물을 받지 않으려는 것은 비록 전례와는 달라도 업신여김을 당한다는 혐의가 오히려 그리 현저하지는 않으니 그들이 말한 바를 따르는 것도 혹 한 방도입니다만, 그들이 받지 않는 것이 이미 공손하지 않은 일이나 우리로서는 그 전례대로 보냄이 적절하며, 비록 보내지 않기를 원하더라도 또한 마땅히 전례와 공손치 못한 정상을 분명히 말해 그들을

책유하되, “우리가 임오년(1642)에 물건을 증정한 것은 우대하는 데서 나왔는데, 이제 너희는 우리의 후의(厚意)를 체득하지 못한 채 이런 공손치 못한 거조를 하고, 차왜가 또 따라서 누차 사설(辭說)을 바꾸니, 우리도 하필 억지로 주겠는가?”라고 운운해야 할 것입니다.

집정에게 주는 서계와 예물의 경우에는, “약조와 서계 소통은 본디 각각의 사항이니 약조의 유무로써 말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하물며 서계 소통은 약조를 개정하기 전에 있었고, 또 당시 서계를 소통한 것은 대개 화평과 우호에서 나왔으며 쇄환의 일은 첨부한 것에 불과한데, 지금 너희는 마치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있어서 이런 거조를 시작한 것처럼 여기니, 이 어찌 미안한 일이 아니냐”는 뜻으로 타이름이 적절할 듯합니다. 또 ‘대등한 예로 대함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말한 것은 극도로 근거가 없으니, “이것이 에도에서 논의한 것이라도 도리어 불가하거늘, 하물며 도중(島中)에서 억측한 사담(私談)을 애초에 어찌 감히 발설하며, 또한 과연 에도에서 논의한 바가 아니라면 또 어찌하여 예물 제거를 에도의 분부라고 핑계대는지, 너희들이 말하는 바는 마디마디 다 깨어지니 어찌 이다지도 신실하지 못하는가?”라고 이치에 맞게 절실히 책유해야 합니다.

또 “도주가 참판·참의와 서계를 소통하는 것은 원래 약조에 없고, 우리로서도 역시 대등한 예로 대함이 불편하니, 이제 집정에게 서계와 예물을 제거한 뒤에는 이 또한 당연히 일체 정지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을 하되, 이 일은 단지 언어로 쟁변(爭卞)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물며 차왜의 말 바꿈이 다단(多端)하여 결코 간사하고 거짓됨이 없다고 보장하기 어려우니, 국체를 높이고 변방의 일을 중히 여기는 방도에 있어서는 도주에게 서계를 보내 위의 사항을 갖추어 진술하여 사연을 책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답을 보고, 그들이 만약 끝내 굴복하지 않으면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는 두터움을 따르는데 너희는 가볍고 업신여긴다. 이제 그 사양하는 것을 강제하지 않겠으니, 차후로 도주의 서계 소통도 마땅히 옛 규례만 준수하여 넘치지 말라”고 운운한 이후, 반드시 굳게 지켜 다시는 흔들려 뺏기지 말고, 기어코 조종하는 권한이 모두 저들에게 있지 않게 하는 것이 격식에 맞을 듯하며, 그 별단을 받아들이게 하자는 수령의 의견은 허약함을 보여준 것에 가깝습니다. 조정에서 만일 서계를 보내고자 한다면, 사신 행차 기일은 이미 조금 물렸으니 관왜(館倭)에게 서계를 부쳐 비선(飛船)¹³⁶⁾으로 왕복하게 하면 아마도 미치지 못하는 걱정은 없을 듯합니다. 저희 예조의 얕은 소견이 이와 같으나, 이 일은 관계되는 바가 미세하지 않으니 유사(有司)

136) 비선(飛船) : 대마도와 부산 왜관 사이에 급한 연락이 있을 때 오가는 작은 배. 두왜(頭倭) 1인과 격왜(格倭) 예닐곱 명이 타고 왕래하였다.

가 감히 멋대로 처리할 바가 아니므로, 묘당으로 하여금 좋을 대로 상량하여 품
쳐하게 하심이 어떠할지? 강희 50년(1711) 4월 초9일 우승지 신 유명확(兪命
確)¹³⁷⁾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이번 사행 때의 서계와 예물은 묘당에서 합당하게 품정하여 분부하겠거니와,
본조[예조]의 복계(覆啓)에 본부[동래부]가 알아야 할 것이 많이 있어 전문을 등
서하여 이관하니, 그 중 거행할 만한 것은 거행하되, 서계와 예물 등의 일에 있
어서는 아직 다 확정하기 전에 먼저 왜인으로 하여금 듣게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약조’ ‘실록’ 등의 말은 또한 엄밀히 비밀로 해야 하기로 견고히
봉함하여 비밀 관문으로 하거니와, 본부는 이 뜻을 알아 번거롭게 누설하지 말라.
전해 들으니 역관과 본부 하인배들이 전부터 많이들 본국의 사정을 관왜에게 알려
주어 조정의 모든 일을 저들이 모르는 게 없다던데, 차후로 이런 일들이 만약
드러나면 범죄자는 마땅히 그 형률에 의거할 테니, 본부는 의당 이 뜻을 알아서
각별히 엄히 신칙할 것. 이는 (동래부사의) 장계에 회계(回啓)를 발행할 때 관문
말단에 써서 보냄.

신묘(1711) 4월 초10일

강원감사의 관문 내용. 방금 도부한 관문 내용을 요약하면 “통신사 반전 인삼
을 준비하여 본조로 보내는 일”로 관문이 있었는데, 본도에 복정한 인삼 12근을
날 것[生]·익힌 것[熟]이 반반씩 되도록 하는 일로, 통신사에게 탐문하여 논의
해 결정한 후 감영에서 모두 모아 올려 보내려다, 왕래할 때 폐단이 없지 않을
듯하기로, 각 고을에 분부하여 그들로 하여금 각별히 골라 생·숙을 반반씩 마련
하여 귀조에 곧장 바쳐서 간품하고 받아 올리도록 하며, 각 고을에 분정한 인삼
수를 관문에 후록하였으니, 증빙하여 받아 올릴 것.

후록.

강릉 인삼 1근 10냥, 원주 1근 4냥, 춘천 1근 2냥 3전, 삼척 9냥 3전, 양양
12냥 5전, 평해 11냥 4전, 철원 11냥 5전, 이천 11냥 5전, 간성 11냥 3전, 울진
9냥 1전, 경강 7냥 8전, 안이 6냥 8전, 홍천 2냥 3전, 횡성 4냥, 고성 4냥, 통
천 3냥 6전, 양구 3냥, 영월 2냥, 흡곡 1냥 6전, 금화 7냥, 금성 2냥 8전, 낭천
1냥 7전, 회양 1냥 8전, 평창 1냥, 인제 9전, 정선 8전.

137) 유명확(兪命確) : 유명웅(兪命雄)의 오류로 보인다.

예조에서 수결한 내용. 도부했고, 낭청이 받아 올릴 때 사행의 수역(首譯)과 같이 간품하고 상사(上使)의 건량소로 보냄.

평안감사의 관문 내용. 방금 도부한 관문 내용을 요약하면 “통신사가 가져가도록 본도에서 올려보내는 인삼 8근 중 2근 10냥 5전은 받아 올렸고, 5근 5냥 5전은 불품이 없거나 다른 물건으로 보충해야 해서 불가불 도로 보냈으니 다시 마련하여 올려보낼 일”로 관문하였기로, 동 인삼 5근 5냥 5전을 근근이 다시 마련하여 께짜에 담아 자물쇠를 갖추어 도장을 찍어 봉해서 군관 장운택(張雲澤)에게 주어 올려보내니, 받아 올리고 회이(回移)하여 증빙으로 삼도록.

예조에서 수결한 내용. 도부했음.

신묘(1711) 4월 11일

동래부사 권이진(權以鎭)이 3월 26일 성첩한 장계. 임술년(1682) 도왜(島倭)가 송사(送使)를 정지하는 일로써 그 봉행으로 하여금 동래에게 서계를 소통하게 하였는데, 정상이 극히 교활하고 악독하거늘, 그때 수령이 능히 물리치지 못한 채 짐짓 받아두고 다만 답서는 하지 않았습시다. 신은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을까 우려하여 먼저 훈별(訓別)¹³⁸⁾로 하여금 전례대로 보내지 말라는 일로 이미 조정한 뒤에 사유를 갖추어 계문(啓聞)하였는데, 지금 과연 팔송사(八送使)¹³⁹⁾를 정지하는 일로 봉행 등이 감히 본부에 서계를 통지하고 또 별폭(別幅)이 있었습시다. 왜의 정상이 날로 더욱 교활하고 놀라워 통렬히 배척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신이 이미 도로 물려 보내고 훈별을 엄히 꾸짖어 즉시 돌려주도록 했으나, 임술년에 받아둔 일이 이미 실례임에도 교활한 왜인이 감히 이 사례를 끌어와 버젓하게 서계를 통하면서, 다만 임술년(1682)에 답서하지 않은 까닭에 또 별폭을 만들어 그 회답이 있기를 바라니, 그 정상이 심분 교묘하고 교활하며 무례합니다. 봉행이 감히 서계를 보낸 것이 전후로 하나 둘이 아니어서 거기에 답할 때도 있고 답하지 않을 때도 있어 거의 규례를 이루었는데, 신이 부임한 이후 첫 번째 봉서(奉書)는 신이 돌려주게 하여 신의 처소에 이르기도 전에 돌려주었고, 그 후 사과하는 일로 또 서계를 소통하고 싶다고 운운한 즉 신이 미리 그만 두게 했습니다. 지금 임술년 사례를 끌어와 역관이 공공연히 올려보낸 것이 벌써 놀랍지만, 매번 단지 물리침만으로 일삼는 것도 심히 피로하고 졸렬하여 훈

138) 훈별(訓別) : 훈도(訓導)와 별차(別差).

139) 팔송사(八送使) : 연례팔송사(年例八送使). 1637년 ‘겸대(兼帶)’ 제도가 실시되면서 대마도주가 8개의 사절단을 매년 1·2·3·6·8월 중에 각각 순번에 따라 정기적으로 파견했다.

별로 하여금 곧장 도주에게 답서하게 하고, 그 별폭의 물건은 역관더러 받아 사용하게 하되 물건 값을 쳐서 역관 스스로 준비하여 곧장 도주에게 보내도록 한다면, 일이 서로 걸맞아 가히 그 교활한 정상을 꺾을 수 있어서, 이것을 그대로 규례로 삼아도 손해될 게 없고 사리에 있어서도 매우 합당할 듯하니, 묘당으로 하여금 속히 품처하도록 하시며, 혹시 이런 일로 서로 겨루는 듯함이 있으니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공자[大聖]는 양화(陽貨)에게도 오히려 걸맞고자 하셨으니¹⁴⁰⁾ 의리에 의심스런 것은 없으며, 예로부터 적(敵)과 이웃하는 사이에서는 그 실정을 탐문하여 사정에 걸맞게 하는 것이 본디 당연한 사사이므로, 연유를 아울러 황공하게도 감히 아웁니다.

방금 바친 통신사행 때의 절목을 강정하고자 별도로 파견된 수역 이석린(李碩麟)의 수본 내용에 “대차왜와 재판차왜가 비직(卑職)을 만나기를 요구하여 만나 말하기를 ‘어제 나온 배편에서 도중(島中)의 편지를 얻어 보았더니, 에도에서 일체의 응대 준비를 탐문한 결과가 아직 대마도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통신사 행차의 승선 날짜가 마땅히 6월에 있어야 하니 동 탐문 결과가 나오는 즉시 다시 보고하여 알릴 계획이라’고 하며, 또 말하기를 ‘세 사신의 직책과 성명 및 원역(員役) 등의 직책과 성명을 이제 속히 써오면 통보할 바탕으로 삼겠다’고 하거늘, 비직이 ‘행차의 승선이 6월에 있으니 직책과 성명을 써오는 것이 너무 일찍은 듯하여 서울에서 출발할 때 써 오미 마땅하다’고 했더니, 동 왜인들이 ‘다다랐을 때 써오면 에도에 통보할 즈음 군색하고 급속한 일이 많을 것이니 미리 써와 달라고 간청하여 마지않았다’고 하기로, 연유를 수본하는 일”로 수본하였기로,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비변사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권이진의 장계를 보니 “임술년(1682) 도왜가 송사를 정지하는 일로써 그 봉행으로 하여금 동래에 서계를 소통하게 하였으나 그때 수령이 능히 물리치지 못한 채 답서만 하지 않았기에, 신은 이런 일이 있을까 우려하여 먼저 훈별로 하여금 전례대로 보내지 말게 하기로 이미 조정하게 한 뒤에 사유를 갖추어 계문하였는데, 지금 과연 팔송사를 정지하는 일로 봉행 등이 감히 본부에 서계를 소통하고 또 별폭을 두었으니, 왜의 정상이 교활하고 놀라워 통렬히 배척하지 않을 수 없

140) 『논어집주』 제17 「양화」 1장에 의하면, 양화는 계씨(季氏)의 가신(家臣)인데 일찍이 계환자(季桓子)를 가두고 국정(國政)을 전횡하였다. 양화가 공자를 만나고자 했으나 공자가 만나주지 않자, 양화는 공자에게 삶은 돼지를 선물로 보내어 공자로 하여금 자기를 찾아와서 만나게 하려고 하니, 공자도 그가 없는 틈을 타서 사례하러 갔다. 이에 대해 주자는 “공자가 그를 만나주지 않은 것은 의(義)이며, 찾아가서 사례한 것은 예(禮)이다. 반드시 양호가 없는 틈을 타서 찾아간 것은 양화의 행동에 걸맞게 하고자 한 것”이라고 하였다.

으므로, 훈별을 엄히 꾸짖어 돌려주도록 하면서, 단지 물리치기만 하는 것도 심히 피로하고 모자라 훈별로 하여금 직접 도주에게 답서하게 하고, 그 별폭의 물건은 역관을 시켜 받아 사용하게 하고 그 물건 값을 쳐서 값에 맞추어 물건을 마련하여 도주에게 보내도록 한다면, 일이 서로 걸맞아 가히 그 교활한 정상을 꺾을 수 있고 사리에 있어서도 매우 합당할 듯하니,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시라”고 하였는 바, 도주가 대마도에 있을 때 봉행이 직접 동래에 서계를 소통하는 것은 매우 외람되니 진실로 엄한 말로 통렬히 배척함이 적절하나, 다만 장계에 “봉행이 서계를 보낸 것이 전후로 하나들이 아니나 거기에 답할 때도 있고 답하지 않을 때도 있어 거의 규례를 이루었다”고 했으니, 임술년(1682) 수령이 받기를 허락하도록 계품(啓稟)한 것만 어찌 유독 실례라고 일컫겠으며, 전날의 본부 장계를 취하여 상고하니 한결같이 임술년(1682) 사례대로 송사를 정지하는 이외에 제1선도 또한 내보내지 말고 서계와 진상은 배편을 따라 부쳐 보내는 것으로 역관을 시켜 관왜에게 책유하게 하라고 사례를 상고하여 전령하고, 관왜가 전령을 도주에게 베껴 보냈다고 하여, 그 조정한 것이 이미 이렇게 명백함에도, 봉행배들이 건방지게 서계를 소통함은 극히 교활하고 악독하여,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물리쳐서 바치지 못하게 하는 것 외에는 다시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또한 훈별이 도주에 상대하는 것은 봉행이 동래부에 상대하는 것과 같으니, 우리가 바야흐로 저들이 예(禮)를 어기고 분수를 범한 일을 책유하면서 또 훈별로 하여금 곧장 도주에게 답서하게 한다면 ‘남을 탓하면서 그대로 본받는’ 것에 거의 가깝지 않겠습니까? 교린의 도리는 사령(辭令) 사이에 자세히 살펴서 해야 함이 적절한데, 훈별이 도주에게 서계를 소통하는 것이 만일 전례가 없다면 쉽사리 개창(開創)해서는 안 됩니다. 역관이 별폭의 물건을 받아 사용하고 사사로이 값을 고르게 하여 직접 보내는 것은 일의 체면을 따지더라도 실로 합당하지 않고 또 반드시 이것으로 그 교활한 정상을 꺾지도 못하니, 봉행의 사사로운 서계를 물리치라고 명했다면 그 별폭의 물건도 아울러 의당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수령이 전날의 장계에서 운운한 바를 생각해보면, 송사 정지 등의 일만 지적인 듯하고 봉행의 서계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데 대하여는 상세히 진달하지 않았다가, 금번 장계의 내용에는 또 “부임하여 첫 번째 봉서(奉書)는 신이 돌려주게 했고, 그 후 사과하는 일로 또 서계를 소통하고자 함에 신이 미리 그만두게 했습니다”라고 한 바, 봉행이 서계를 작성한 것은 본디 송사를 정지한 데서 연유하였는데, 수령이 진실로 그 외람됨을 알아 일절 금지하고자 하였다면, 도리어 앞의 장계에서 아울러 상세히 진달하여 조정의 명령을 품수(稟

受) 받아 통렬히 금지하지 않고, 이제 저들의 서계가 도래한 후에 비로소 뒤늦게 논한 것은, 이는 이미 대수롭지 않게 여겼음을 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저들의 서계가 온 것은 정말로 외람되지만, 우리의 변방 신하가 돌려주거나 미리 정지시키는 것은 의당 그 하나하나를 번번이 조정에 고해야 하거늘, 그때 즉시 치계하지 않고 이제야 말하는 것도 또한 미안한 일이니, 전 동래부사 권이진을 추고하십시오. 통역에 있어서는 마땅히 본부의 지휘를 한결같이 받아들여 하는데, 수령의 물리치라는 명령을 준수하지 않고 왜인의 뜻을 꼭진히 따라 저들의 외람된 서계를 받아 공공연히 본부에 올려 보낸 것은 정말로 극히 놀랄 만하므로, 해당 훈도와 별차 등을 본도 수사(水使)에게 명하여 잡아보내 수영에서 곤장을 치도록 함이 합당하니, 이로써 분부하되 본도에도 아울러 분부하심이 어떠할지? 강희 50년(1711) 4월 11일 동부승지 신 이의현(李宜顯)¹⁴¹⁾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함경감사의 관문 내용. 예조의 관문으로 인하여 경상도 관찰사가 이문한 내용에 말미암아, 본도에 복정한 통신사가 가져갈 응련(鷹連)의 실차(實差)와 예차(預差) 아울러 32련 및 숙마(熟麻) 91근을 이미 지난달 초 부산진으로 영솔하여 보냈으니, 상고하여 시행할 일임.

예조에서 수결한 내용. 도부했음.

황해감사의 관문 내용. 즉각 접한 경상감사의 이문에, 예조의 관문으로 인하여 통신사가 가져갈 집정부터 중납언(中納言) 등에 이르기까지의 사신 예단으로 석린(石麟) 6근, 봉행 8인 등에게 사신 예단으로 석린 8근과 백렴(白斂:白藪:가위톱) 5근과 응자(鷹子) 12련 등을 사신이 승선하기 전에 밤낮없이 수송하여 부산에 바쳐서 미치지 못해 일이 생기는 폐단을 없게 하라고 하였는바, 본도에 복정한 석린 및 백렴은 서울로 상납하고 응자는 동래부로 수송한다고 연유를 이미 귀조에 이문(移文)한 후 모두 이에 따라 거행하도록 하였더니, 영남의 이문에는 수납처로 부산을 말할 뿐만 아니라 이미 서울로 바친 석린과 백렴 등의 물건도

141) 이의현(李宜顯, 1669~1745) : 용인 이씨로 자는 덕재(德哉), 호는 도곡(陶谷)이다. 김창협(金昌協)의 문인으로 문학에 뛰어나 숙종조 송상기(宋相琦)가 당대 명문장가로 천거했다. 숙종 20년(1694)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동부승지·대사간·대사성·황해감사·도승지·경기감사 등을 역임했다. 경종이 즉위하자 동지정사(冬至正使)로 청나라에 다녀온 뒤 이조판서 등을 지냈으나, 신임옥사로 평안도 운산에 유배되었다. 영조 즉위 이후 풀려나 형조판서·이조판서·예조판서·양관(兩館)·대제학·우의정 등을 역임했다. 1732년 사은정사(謝恩正使)로 청나라에 다녀왔고, 1742년 치사(致仕)했다.

응련과 함께 부산으로 수납하라고 하는데, 위의 세 종류는 이미 각각 정한 곳으로 발송한 즉, 영남의 이문이 비록 이렇더라도 다시 변통할 도리가 없으니, 이런 뜻으로 귀조에서 해당 도에 이문하여 시행할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수결한 내용. 이문의 제사(題辭)에 따라 이를 낱낱이 거행하라고 경상감사에게 이문함.

신묘(1711) 4월 14일

금 4월 12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했을 때, 좌의정 서종태(徐宗泰)가 계한 바에 “통신사행 때 왜인에게 주는 예단을 차왜가 제거하라고 요청한 일은, 동래부사의 장계로 인하여 예조에서 복계하여 묘당에 품쳐하도록 청하여 이미 윤허를 내리셨는데, 이 일이 지난번 경연에서 나왔을 때 이미 하교를 받들었으니, 지금 마땅히 속히 확정해야 합니다. 예단의 정지를 청하는 일이 만약 그 나라에서 서계를 보냈거나 대마도에서 예도의 뜻으로 서계를 보내 그 연유를 거론하여 명백히 요청했다면, 진실로 따르더라도 달리 어려운 일이 없겠지만, 지금은 전후의 차왜가 단지 구어(口語)로만 요청하고 말도 또한 바깥입니다. 도주가 필시 예도의 뜻으로 소통하여 비록 허망하다는 의심이 없다 할지라도, 오래전부터 시행하던 규례는 교제하는 사이의 예절에 관계되며, 그들이 정지를 요청하는 것 또한 한 사람에게 주는 한 가지 예물이 아니라 모두 아울러 제거한다고 말을 하니, 단지 그들의 말에만 의지하여 이번 사행에 처음으로 정지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됩니다. 대저 그 나라 군주에게 서계를 소통하면서 아울러 저사(儲嗣)에게 예물을 주는 것은 예(禮)가 너무 지나치며, 또 집정 등에게 주는 것은 더욱 마땅하지 않아 국체(國體)에 손상됨이 있으니, 이제 그 요청으로 인하여 보내지 않더라도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그러나 저쪽에서부터 발설하면서 문서도 있지 않아 마치 조종하는 듯함이 있고, 간곡히 진청(陳請)하는 뜻이 전혀 없어서 정말로 심히 거만하고 방자합니다. 만약 한결같이 그 말대로 들어주어 보내지 않으면, 국가의 위신을 펴지도 저들의 마음을 꺾을 수도 없습니다. 이제 본부의 수령으로 하여금 이로써 대차왜에게 책유하도록 하되, ‘예물의 일이 중하니 조정에서 어찌 너희의 구어(口語)만 듣고 믿을 수 있겠는가? 도주의 서계가 있는 뒤에야 처분할 수 있으니 모름지기 즉각 급히 비선(飛船)을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엄히 신칙함이 마땅할 듯합니다. 신들이 밖에서 상의한 것이 이와 같은데, 왜인이 청한 바를 들어줄이 합당한가 아닌가는 여러 의논이 서로 어긋나, 신이 직분을 다해 생각해도

확실하게 정할 수는 없지만, 대개 도중(島中)에서 끝내 문서가 없다면 그 구어를 듣지 말고 전과 같이 부쳐 보내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였다.

우의정 김창집(金昌集)은 말하기를 “관백의 아들에게 전부터 비록 예물을 보냈지만, 바야흐로 강보에 있는 아이에게 예물을 보내주는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보내지 말라고 했다면 보내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집정 등에게 예물을 보내지 말라는 말에 있어서는 또한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으나, 이는 예로부터 유래한 일이므로, 단지 차왜의 한때의 구전(口傳)만 가지고 보내지 말라고 경솔하게 허락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할 듯하니, 대마도에 서계로 물어 그 답하는 바를 보고 처리해야 합당할 듯합니다” 하였다. 상감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신하들이 각각 소견을 진달함이 옳다” 하였다.

판윤 민진후(閔鎭厚)가 말하기를 “애당초 서계 소통이 사세의 부득이함에서 나온 듯하니, 그것이 마땅하지 않은 것은 정말로 대신의 말과 같지만, 행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지금 갑자기 감제를 요청하니, 그 의도하는 바가 어디에 있는지 헤아리지 못하겠습니다. 하물며 처음에는 폐단을 제거한다고 했다가, 중간에는 대등한 예로 대함이 불편하다고 했다가, 끝내는 약조에 들어 있지 않다고 하여, 전후로 변화하니 더더욱 극히 가증스럽습니다. 이제 만약 그 말로 인해 보내지 않는다면, 이는 펼치고 오름이 그들 손에 있는 것입니다. 관백의 아들에게 예물을 보내지 말라는 것은 그래도 핑계거리가 있지만, 집정에게는 결단코 무단히 보내지 않아서는 안 되니, 만약 동래부로 하여금 도주에게 서신을 보내 ‘지금 이 감제 요청의 의도가 폐단 제거에 있다면, 조정에서도 진휼(軫恤)의 마음¹⁴²⁾으로 허락하여 시행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나, 차왜가 전하는 말이 상세하지 않으니 반드시 모름지기 곡절을 명시하라’고 한다면, 왜인이 어찌 받아가지 않으려 하겠으며 도주도 어찌 답하는 바가 없겠습니까? 그 답서를 기다렸다가 보내든지 말든지 하면 완비될 듯합니다” 하였다.

좌참찬 이언강(李彦綱)은 말하기를 “예단의 일은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신의 얕은 소견은 본디 이와 같아 지난번 물으실 때도 이런 뜻으로 대답했습니다. 예도의 모든 일은 도주가 임의로 변통할 수는 없으니, 이제 비록 서신으로 물어도 반드시 명백하게 회보하지는 않을 테지만, 단지 예로부터 유래한 예절을 차왜의 한때의 말에만 의지하여 창졸간에 정지하고 없애는 것은 허술한 일이니, 서계를 보내 탐문하여 그 회답문자를 얻은 연후에 처분하시는 것이 완비될 듯합니다. 그런데 예조의 회계에 왜인의 정상을 극론했

142) 진휼지념(軫恤之念) : 진념(軫念). 아랫사람의 사정(事情)을 가엾게 여겨 마음을 써서 근심함.

으니, 만약 이렇게 서계에 말을 지어두면 관왜가 반드시 순순히 받아가지 않을 테니, 또한 마땅히 참작하여 고쳐서 보내는 거조가 있어야 합니다” 하였다.

민진후가 말하기를 “예조의 회계는 임금에게 아뢰는 문자에 해당하므로 상세히 구비함을 위주로 하지만, 서계는 사체가 같지 않으니 당연히 참작하여 말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였다.

한성군(韓城君) 이기하(李基夏)가 말하기를 “예로부터 유래한 일을 어찌 한 차왜의 말로 인해 그 정지를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탐문하여 그 문서를 얻은 연후에 처리해도 늦지 않으니, 도주에게 서계를 들여보냄이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상감께서 말씀하시기를 “관백의 아들에게 예물을 주는 일도 마땅히 물어야 하는가?” 하니, 서[서종태]는 “당연히 물어야 합니다” 하고, 민진후는 “서계를 보낸다면 관백의 아들에게 주는 예물 한 사안은 저절로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하였다.

예조참판 김진규가 말하기를 “본조의 규례에 긴요하고 중대한 사안은 장관이 비록 유고(有故)해도 차관이 거행하므로, 신이 이 일에 대해 지난번 회계를 초(草)했는데, 장관이 마침 출숙(出肅)¹⁴³했기에 그 초안으로 상의하여 입계했습니다. 저의 앞은 소견은 이미 여기에 있으니 이제 다시 진달할 말이 없습니다. 대저 예로부터 유래하는 일을 차왜의 구전으로 정지하는 것은 비단 사체가 미안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들이 저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또 저렇게 하지 않을 수 없어, 오직 그 말만 따른다면 어찌 국가라고 하겠습니까? 또 이 일은 비록 그 말을 따르더라도 우리에게 크게 이롭거나 해롭지는 않지만, 다만 그들의 말을 한결같이 따르다가 함부로 습관이 되면 후일의 폐단이 될까 가만히 두려우니, 결코 언어에만 의지하여 시행하기는 어렵고 수령이 문자로 도주에게 사정을 물어 그 답을 보고서 처리하는 것이 편할 듯합니다” 하였다.

이언강은 “서계를 보낼 때 서계 내용을 회계(回啓)에 했던 말대로 한다면 관왜 무리가 반드시 받아가지 않을 것이 염려되고, 이웃나라의 사령(辭令)과 본조에서 계달하는 말은 그 체제에 다름이 있으니, 어찌 참작하여 헤아리는 방도가 없겠습니까?” 하였다.

김창집은 말하기를 “양국이 다투는 일은 우리나라가 매번 문득 이기지 못하므로 참판 김진규가 계달한 바는 대개 후일의 폐단을 염려한 것이나, 일에 있어 들을 만한 것은 듣고 들을 수 없는 것은 듣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이 일은 지금 비록 허락하더라도 그것이 꼭 후일의 폐단이 될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동지(同知) 박권(朴權)이 말하기를 “신이 조정으로 돌아온 지 오래되지 않아

143) 출숙(出肅) : 벼슬에 나와서 임금에게 사은숙배(謝恩肅拜)함.

본말을 상세히 알지는 못하겠으나, 왜의 정상이 비록 ‘교활하고 거짓되다’ 하더라도, 이 일에 반드시 간사한 정상이 있는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대개 듣자니 예단에 회답할 때 그들로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 까닭으로 이렇게 하는 듯합니다. 관백의 아들에게 예단까지 주는 일은 이미 너무 연약하거니와, 집정에게 보내는 것은 어디서 창시되었는지 모르겠으나 또한 그만두어서 안 될 일은 아닙니다. 이제 만약 그들의 요청으로 인해 감제하고는 ‘너희가 간청한 바가 비용을 줄여 폐단을 제거하자는 데서 나왔기에 조정에서 특별히 진념(軫念)하여 시행을 허락한다’고 말하면, 국가 체면에 손상됨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조종의 권한이 저들에게 있다고 이를 수는 없습니다. 지금 비록 도주에게 서계를 얻더라도 도주의 서계가 예도의 말과 다르다면 근거할 만한 문서가 되기에는 부족하니, 이제 만약 왜인으로 하여금 문자를 지어 오게 하여 이대로 시행한다면 어찌 대마도의 서계만 못하겠습니까?” 하였다.

참판 김[김진규]이 말하기를 “대마도가 예조참판에게 감히 서계를 소통하지 않는 것은 규례입니다. 을유년(1705)에 처음으로 참판에게 서계를 소통하면서 예도에서 분부한 일이라고 핑계대었습니다. 이제 이 예물을 받고 안 받고는 사체가 매우 무거운데, 과연 예도의 분부라면 어찌 유독 문서 없이 차왜더러 구전만 하게 했겠습니까? 이것으로 보더라도 도주에게 서계를 명하지 않을 수 없으며, 차왜의 문자는 시행할 만한 바가 아닙니다” 하였다.

이언강이 말하기를 “사행이 들어간 후 저들이 혹 ‘예단을 까닭없이 보내지 않는다’고 말하면 도주의 서계를 내어 보여야 옳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도에서 애초에 예단 제거의 말이 없었다면 차왜가 반드시 감히 중간에서 지어내지 못할 것이니, 문서의 유무는 관계가 중하지 않은 듯합니다” 하였다.

참판 김[김진규]이 말하기를 “증명할 만한 한 가지 일이 있으니, 임술년(1682) 권유잉[嚴有院]에게 제전(祭奠)을 거행하지 말라는 일로 도주에게 별단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1장의 문서도 없으니, 의당 이것으로 저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하였다

서[서종태]가 말하기를 “소신이 사서(私書)로 영부사 신 윤지완(尹趾完)¹⁴⁴⁾에게 문의했더니, 그의 답은 ‘집정이 예물 사양을 원하는 그 뜻을 비록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이는 말을 잡아 꼬투리를 만들 단서가 아니니, 그 말대로 보내지 않아도 무방할 듯하다’고 했고, 또 본사(本司)의 낭청을 통해 원임대신(原任大臣)에게 말을 전해 문의했더니, 판부사 신 이유(李濡)는 ‘관백의 아들과 집정에

144) 윤지완(尹趾完, 1635-1718): 파평 윤씨로 자는 숙린(叔麟), 호는 동산(東山)이다. 현종 3년(1662) 문과에 급제하여 경상감사와 함경감사 등을 역임하고, 숙종 8년(1682) 통신사 정사(正使)로 일본을 다녀온 뒤, 어영대장·예조판서·병조판서 등을 거쳐 우의정에 이르렀다.

게 주는 예물은 본시 국체에 손상됨이 있으니, 이제 그들의 요청으로 보냄을 정지하는 것은 불가함이 없을 듯하다’고 했으며, 판부사 신 이이명(李頤命)은 ‘예조의 회계 내용이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대개 조정에서 매년 그들의 말을 꼭 진히 따르는 것은 합당하지 않지만, 관백의 아들에게 주는 예단은 사체가 다른 일보다 무거운데, 과연 작년 겨울에 태어났다면 예물 제거 요청이 그나마 잡을 뭔가가 있고 사신들의 배례 역시 장애가 있겠지만, 집정 등의 예물은 그 제거를 요청하는 바가 더욱 단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듣지 않고 부쳐 보내면 비록(그들을) 쥐는 방도는 되겠지만, 왜인은 본래 아주 독하여 혹시 끝내 받지 않는다면, 이는 당연히 사신의 허물이 되지 않겠으며, 예조참관이 보낸 예물이 오히려 욕(辱)을 끼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물며 관백의 아들에게 주는 예단은 상감께서 하사하시는 것이니 그 손상됨이 더더욱 어떻겠습니까? 이 예물에는 마필과 응련이 있어서 더욱 심히 불편합니다. 그러니 비록 부쳐 보내더라도 관백의 아들에게는 정지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또한 예조의 회계 안에 ‘대마도가 이미 대등한 예로 대함이 불편하다고 말하면서 참관의 서계와 예단 제거를 요청하였으니, 대마도에 주는 참의의 서계도 보내지 않아야 합당하고, 변방 신하가 의당 이것으로 차왜에게 책유해야 합니다’ 하였는데. 신의 생각에 이는 조정의 관대한 체모가 아닌 듯하고 도주 또한 어찌 마음에 화가 나고 유감이 없겠습니까? 이제 이 제거 요청이 예도의 뜻에서 나왔다면 도주는 죄가 없는 듯합니다” 하였다.

우의정이 말하기를 “관백의 아들 및 집정 이하에게 예단을 보내는 것이 어디서 창시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본령(本領)이 틀렸고, 지금 이 감제의 말은 예물을 더 보내달라는 요청과는 다르니, 쟁집하지 말고 허락하는 것이 무방할 듯하므로, 그 문서를 잡고 나서 허락하고 싶습니다” 하였다.

이언강이 말하기를 “관백의 아들에게 주는 예단이 어느 때에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인조조 임오(1642) 년간에 해조(該曹)에서 관백의 아들에게 서계와 예물을 마련하여 들였더니, 상감께서 강보의 아이에게 서계를 보내는 것은 극히 근거가 없다고 하교하셨으니, 그것을 하도록 하지 마십시오” 하였다.

참관 김[김진규]이 말하기를 “그때 서계는 하지 않았고 예단은 보냈습니다. 대개 임오년(1642) 관백이 늦게 아들을 낳아 대마도주가 우리나라에서 사신을 보내 축하해주기를 원하였기에 통신사행이 있었고 그로 인해 예물을 보냈습니다. 을미년(1655)은 관백이 새로 승습(承襲)했으나 아들이 없어서 예물을 보내는 일은 없었습니다. 임술년(1682)은 앞의 임오년 일을 끌어와 예물을 보내 드디어 규례를 이루었으니, 그 후 그 예물을 제거하고자 한다면 의당 문서로 통보해야 하는데, 차왜가 단지 언어만으로 와서 전하고 또 누차 그 말이 변하는 것은 우리

나라를 업신여기고 홀대하는 뜻인 듯하니, 이는 사체에 있어 불가불 그 문서를 보고나서 처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전부터 유래된 일이니 단지 구설에만 의지하여 정지할 수는 없다. 또한 왜인이 전후로 말을 바꾸어 한결같지 않으니, 동래부사로 하여금 도주에게 서계로 묻게 하여 그 답하는 바를 기다렸다가 처리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비변사, 예조].

신묘(1711) 4월 16일

비변사에서 입계하기를, 통신사행 때의 서계와 예단 등의 일에 대해 동래부에서 대마도로 서계를 보내 질문한다는 뜻을 지난번에 이미 품정(稟定)했습니다. 서계의 초고를 계하(啓下)한 뒤에 마땅히 급속히 내려보내 고쳐 적어 관왜에게 부치도록 해야 하니, 병조에 명하여 금군(禁軍) 중 부지런하고 성실한 자를 골라 정한 뒤 말을 주어 그로 하여금 초고를 가지고 속도를 배로 하여 내려가게 하심이 어떠할지? 전교하기를 “윤희한다”고 하심. [예조, 병조, 승문원].

신묘(1711) 4월 17일

비변사에서 입계하기를, 동래부사가 대마도주에게 줄 서계의 초고를 괴원[승문원]에서 지어내자마자 계하하여 금군에게 발송했습니다. 다시 엿드려 생각건대 차왜가 말한 바 ‘대등한 예로 대함이 불편하다’는 말은 그들이 이미 망발이라고 자복(自服)하였고, 또한 이 말은 대차왜가 도착하기 전에 있었는데, 지금 도주에게 보낼 서계에 섞어서 거론했으니, 차왜 등이 혹시 가져다 전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만약 이런 일이 있으면 손상되고 난처할 우려가 없지 않기에, 이 한사안을 원본 서계 안에 부표하여 들이니, 계하한 후에 다시 금군을 정하여 말을 주어 급속히 내려보내 교체하도록 함이 어떠할지? 전교하기를 “윤희한다”고 하심. [예조, 병조, 승문원].

신묘(1711) 4월 18일

동래부사 이정신(李正臣)¹⁴⁵⁾이 4월 초10일 성첩한 장계. 신은 이달 초7일 전

145) 이정신(李正臣, 1660~1727) : 연안 이씨로 자는 방언(邦彦), 호는 송벽당(松莢堂)이다. 숙종 25년(1699) 정시문과

부사 신 권이진(權以鎭)과 밀양 땅에서 인수인계하였고 초9일 임지에 도착했습니다. 초7일 신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박중징(朴仲徵)의 치통 내용에 “경인년(1710) 10월 19일에 나온 경인조 부특송사 1호선 1척에 정관 다이라 노부도오[平信豊], 부관 후지 나리기요[藤成清], 도선주 후지 쓰네나오[藤常尙], 봉진압물 1인, 시봉 2인, 반중 4명, 격왜 70명 등이 함께 탔으며, 동일에 나온 동 송사 2호선 1척에 이선주(二 船主) 후지 이노루[藤以乘], 유선주(留船主) 다찌바나 주우세이[橘重誠], 사복압물(私卜押物) 1인, 반중 3명, 격왜 30명 등이 함께 타고, 도합 2척이 초6일 진시에 배를 출발하여 돌아간 일”로 치통하였음. 초8일 미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기축년(1709) 11월 17일에 나온 의왜(醫倭) 1인이 이달 초6일 병으로 죽었기에 그 안에서 내어와 관(館) 뒷산에 묻었다고 역관들이 수본하기에, 연유를 치통하는 일”로 치통하였음. 동일 술시쥬 본부 유진장(留鎭將)의 치보 내용에 “황령산 봉군 강옥석(姜玉碩), 간비오 봉군 박신건(朴信建) 등이 진고한 내용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작은 배 1척이 물마루를 나왔다’고 진고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치통”하였음. 초9일 묘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박중징의 치통 내용에 “어제 해시에 작은 배 1척이 나왔다고 석성 봉군이 진고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상황을 탐색하려고 개운포 만호 김중탁(金重鐸)을 선정하여 보낸 일”로 치통하였음. 동일 신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어제 나온 작은 왜선 1척을 영솔하여 관소(館所)에 부쳤다고 초탐장(哨探將) 김중탁이 치보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정만익(鄭晩益)과 별차 이덕기(李德起) 등에게 명하여 정황을 묻게 한 뒤의 수본 내용에 ‘어제 나온 작은 왜선 1척에 대해 밤이 깊어 정황을 묻지 못했다가, 오늘 아침 관(館)에 나아가 정황을 물었더니, 관수왜(館守倭)가 하는 말이 도중(島中)에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비선(飛船) 1척에 두 왜(頭倭) 1인과 격왜 5명 등이 함께 타고 관수왜에게로 보내는 사서(私書) 및 노인(路引)을 가지고 나온 것이라 하기로, 가져온 동 노인 1통을 받아 올려 보낸다’고 수본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동 노인을 예전대로 수송하는 일로 치통한다”하였기에, 위의 비선 노인 1통을 감봉하여 해조에 올려 보냈음. 방금 바친 통신사행 때의 절목을 강정하고자 별도로 파견된 수역 이석린(李碩麟)의 수본 내용에 “대차왜와 재판차왜가 비직(卑職)을 요구하여 만나 말하기를 ‘어제 나온 배편으로 에도에서 탐문한 결과가 이제 비로소 대마도에 도착했는데, 에도와 각 주(州)에서

에 급제하여, 삼사의 청요직을 두루 거친 뒤, 1711~1712년 동래부사를 역임했고, 1721년 경종 즉위 이후 호조 참관으로 사은부사(謝恩副使)가 되어 연경에 다녀왔다. 그는 소론으로 조태구(趙泰壽) 등과 함께 노론을 탄핵하고 축출하는 데 앞장섰고, 병조참판·경기감사·함경감사를 역임했다. 1724년 영조가 즉위하자 신임사회를 일으킨 주동자의 한 사람으로 지목되어 유배되었다.

의 일체 지대(支待) 등의 일이 이미 다 마련되었으므로, 통신사 행차가 5월 10일 전에 서울을 출발해 6월 10일 전에 승선하여 바다를 건너는 일을 조정하려고 나왔으니, 이 뜻을 속히 전달하여 서로 어긋나는 폐단이 없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말하며, 또 말하기를 '기선(騎船)과 복선(卜船)의 자리돛을 무명으로 만들어 에도에서 보기에 형편없게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중언부언하기로, 연유를 수본하는 일"로 수본하였기로,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이정신의 장계를 보니, 수역 이석린의 수본 내용에 "대차왜와 재판왜가 '어제의 배편으로 에도에서 탐문한 결과가 비로소 대마도에 도착했는데, 지대 등의 일이 이미 다 마련되었으니 통신사행이 5월 10일 전에 출발해 6월 10일 전에 승선하는 일을 조정하기로, 이 뜻을 전달하여 서로 어긋나는 폐단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하며, '기선과 복선의 자리돛을 무명으로 만들어 보기에 형편없게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중언부언하기로, 연유를 수본한다"고 운운했습니다. 통신시행의 기일을 일관(日官)에게 가려 뽑게[推擇] 했더니, 5월 10일 전에는 합당한 길일(吉日)이 없고 5월 15일 발행하여 6월 21일 승선함이 길하다고 하며, 비단 일관의 말이 이러할 뿐만 아니라 행차 기일이 너무 급박하면 그 사이 서계 왕복도 반드시 미치지 못할 근심이 있으니, 이 두 날을 주선할 만한 듯하기에 이 날을 골라 정하여 분부하시며, 무명 자리돛 일은 지난번 사신이 청대했을 때 이미 확정했는데 전후의 수령이 연이어 이를 치계하는 것은, 생각건대 아직 듣지 못해 모르는 데서 나온 듯하니, 이 뜻을 아울러 회이하심이 어떠할지? 강희 50년(1711) 4월 18일 동부승지 신 이의현(李宜顯)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금 4월 12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켰을 때, 통신사 종사관은 이방언(李邦彦)을 서용하여 그대로 차정하여 보내는 일을 탐전에서 하교하심. [이조, 예조, 병조, 사역원].

선공감의 첩정 내용. 이제 이번 통신사가 가져갈 방물(方物) 께짝에 칠하는 색깔을 상세히 탐문했더니, 홍색으로 물들인다고 하는 바, 본감(本監)에서도 이로써 거행하되 홍색 염색을 거행하는 일을 호조에 이문하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수결한 내용. 그대로 호조에 이문함.

신묘(1711) 4월 28일

동래부사 이정신(李正臣)이 4월 20일 성첩한 장계. 통신사호행대차왜 접위관을 본도 도사로 이미 차정했는데, 통신사의 출발 기일이 여전히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기에 형세를 보아 청하여 와서 접대하겠다는 뜻을 전 부사 신 권이진이 재임 때 이미 계문했다고 하였는데, 신이 부임한 후 수역 이석린 및 훈도 정만익과 별차 이덕기 등이 와서 고한 내용에 “이전부터 대차왜가 나온 후 반드시 한 달 안에 다례(茶禮)를 설행하는 것이 이미 규례를 이루었는데, 이번에는 60일이 지나려 하는데도 아직 상접(相接)할 기약이 없어서 대차왜가 이를 유감으로 여겨 한탄하고 날마다 침책(侵責)¹⁴⁶하며 접위관을 급속히 청하여 오게 해달라고 누누이 하소연합니다” 하거늘, 신이 듣고 즉시 도사에게 치보했더니, 서목(書目)의 제사(題辭) 내용에 “이제 신병이 갑자기 위중하여 짐짓 조리한 후 달려가겠다”고 말하였기에, 이 뜻을 통역 등에게 전령하였더니, 동 수역과 훈별 등이 다시 와서 하소연하기를 “대차왜가 이 소식을 듣고는 ‘접위관에게 병이 있으면 본부 영감(令監)이 일찍이 다례를 홀로 행한 사례가 있으니, 원컨대 이 뜻을 본부에 고하여 수일 내로 반드시 다례를 설행하여 달라’고 와서 청합니다” 하거늘, 신이 엄히 책유하기를 “조정에서 접위관을 차정하는 것은 사체를 중히 여기기 때문이고, 도사가 비록 병이 들어 물려 행하더라도 생각건대 날짜가 반드시 많이 걸리지는 않을 텐데, 어찌 차왜의 절박함 때문에 조정의 명령을 불행하는 우리의 체면을 무너뜨리겠는가? 설사 전례에 근거할 만한 것이 있더라도 나는 결코 다례를 홀로 설행하지 않겠다”고 하여 이렇게 책유하여 보냈습니다. 그 후 대차왜가 본부에 글을 올려 누누이 요청할 뿐만 아니라, 훈별 등도 바치는 글을 가지고 다시 와서 고하기를 “저 사람의 요청이 만약 규례를 벗어난다면 소인들이 진실로 마땅히 책유하여 물리치지 어찌 이렇게 누차 와서 고하겠습니까? 저 사람의 말 중에 ‘내가 통신사를 호행하는 일로 국서를 받들어 여기에 온 것이 이제 두 달이 되어 가는데, 귀국에서 아직도 접대를 하지 않으니, 이로써 본다면 귀국은 반드시 통신사를 보내고 싶지 않은 것이다. 본부 영감전에 2~3일 내로 만약 홀로 다례를 행하여 서계를 전하여 받지 않는다면, 결코 다시 기다리는 것이 불가하여 나는 마땅히 국서를 가지고 돌아갈 것이니, 그대들은 속히 결단해달라’고 말하거니와, 저 사람의 요청이 이와 같이 간절하고 절박한데, 이제 만약 다시 접위관이 내려오기를 기다린다면 늦을지 빠를지 기약하기 어렵고 실로 일이 생길

146) 침책(侵責) : 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사람에게 책임을 추궁함.

우려가 있습니다. 임술년(1682) 통신사행 때 남부사(南府使)가 처음에는 접위관을 기다리고자 했다가 대차왜의 재촉으로 인해 한 달 안에 역시 홀로 다례를 행하였습니다. 이미 이런 전례가 있으니 이에 의거하여 하게 해달라” 누누이 괴롭게 요청하거늘, 신이 임술년(1682) 전례를 취하여 상고하니 과연 홀로 행한 일이 있었으되, 이제 이번의 홀로 행함은 조정에 품의드리지 못하는 미안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접위관을 오라고 청하면서 한편으로는 홀로 행하는 것도 이치가 거꾸로 뒤집힌 것이로되, 저 차왜가 이미 전례에 근거하여 괴롭게 쟁집하니, 한결같이 거절하여 서계를 즉시 전하여 바치지 않게 하는 것은 평상시 격식에 어긋남이 있기로, 부득이 이달 19일 동 차왜 다이라 가다나오[平方直]의 원역 등에게 가까운 전례에 의거하여 홀로 시행한 후, 참판과 참의에게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2통, 동래와 부산에게 보내는 서계 1통과 별폭 2통 등을 받아 올려 감봉하여 해조에 올려 보냈거니와, 다례 때 동 차왜가 글을 올려 진청(陳請)하되 “일기가 너무 더우면 자주 구름이 어두워 바다를 건너기가 편치 않으니 통신사 행차는 반드시 6월 10일 전에 승선하게 해달라”고 하며, 또 말하기를 “회답 서계를 속히 내려보내 시기를 넘겨 기다리는 폐단이 없도록 하시라”고 하는 바, 이런 요청들은 시행하여도 무방하기로,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니, 동 회답 서계를 해조로 하여금 재촉하여 내려 보내게 하며, 대차왜의 연향(宴享)에 있어서는 실로 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전례에 근사하기로, 접위관의 병이 차도가 있어 내려오기를 기다린 후에 함께 연향할 계획이라는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이정신의 장계를 보니, “수역(首譯) 이석린 및 훈별 등이 와서 고한 내용에 ‘이전부터 대차왜가 나온 후 반드시 한 달 안에 다례를 설행하는 것이 이미 규례를 이루었으나, 이번에는 60일이 지나려 하는데도 아직 접대할 기약이 없는데, 접위관이 병들면 본부에서 일찍이 다례를 홀로 행한 사례가 있다’고 하거늘, 임술년(1682) 전례를 취하여 상고하니 과연 홀로 행한 일이 있고, 차왜가 이미 전례에 근거하여 괴롭게 쟁집하니 한결같이 거절하는 것은 평상시 격식에 어긋남이 있겠기에, 부득이 가까운 전례에 의거하여 홀로 시행한 후, 서계와 별폭 등을 받아 올려 보냈거니와, 동 차왜가 글을 올려 사정을 진술하여 간청하되 ‘날씨가 너무 더우면 자주 구름이 어두워 바다를 건너기가 편치 않으니 통신사 행차는 반드시 6월 10일 전에 승선해달라’고 하며, 또 ‘회답 서계를 속히 내려 보내 시기를 지나치는 폐단이 없도록 하시라’고 하니, 동 회답 서계를 해조로 하여금 재촉하여 내려 보내게 하시라”고 하였는 바, 접위관의 병고가 어떠한지 모르겠으나

차정한 지 두 달인데 아직도 내려가지 않아 수령으로 하여금 홀로 다례를 행하게 만들었으니, 사체에 있어 매우 미안하여 경책(警策)하지 않을 도리가 없으므로, 도사 박성로(朴聖輅)¹⁴⁷⁾를 추고하여 그로 하여금 즉시 달려 나아가게 하며, 통신사행 기일은 추택해놓았으니 거행할 필요가 없거니와, 회답 서계는 그의 요청대로 급속히 내려 보내라는 뜻을 해조(該曹)·해원(該院)에 아울러 분부하심이 어떠할지? 강희 50년(1711) 4월 28일 좌부승지 신 이정귀(李徵龜)¹⁴⁸⁾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하고, 승선 날짜는 끝내 너무 멀어 다시 추택하라고 하심.

신묘(1711) 4월 29일

예조에서 입계하기를, 동래부사 이정신의 장계로 인하여 본조에서 첨부한 계목의 판부(判付) 내용에 “통신사의 승선 날짜가 끝내 너무 멀어 다시 추택(推擇)하는 일”로 하명하셨습니다. 일관을 불러 물어보니 “6월 21일 이전에는 원래 길일이 없고 단지 13일이 조금 낮지만 또한 배를 운행하기에는 거리낌이 있어서 실로 추이(推移)하여 고쳐 택일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지 감히 품의드립니다. 전교하기를 “그렇다면 이전에 정한 날짜로 하라”고 하였음. [사역원].

신묘(1711) 4월 30일

동래부사 이정신(李正臣)이 4월 26일 성첩한 장계. 이달 21일 신시에 도부한 비변사의 계하 관문 내용에 “통신사행 때 관백의 아들에게 보내는 예단 및 집정에게 보내는 서계와 예단은 단지 차왜의 구전(口傳)에만 의지하여 갑작스레 정폐(停廢)해서는 안 되므로, 본부의 뜻으로 대마도에 서계를 보내 질문할 일을 어제 이미 품정한 까닭에, 동 서계의 초안을 승문원에서 계하하고 별도로 금군을 정하여 말을 주어 길을 배로 하여 내려 보냈으니, 즉시 전례대로 고쳐 적어 관왜에게 부쳐서 비선으로 서둘러 왕복하도록 하여, 사행이 이로 인해 지체되는 폐단이 없게 할 일”로 관문과 서계 초본 1통을 금군 박진규(朴震圭)가 가지고

147) 박성로(朴聖輅, 1681~?) : 함양 박씨로 자는 재중(載仲)이다. 숙종 31년(1705) 증광시에 급제하여, 숙종 37년(1711) 경상도 도사를 지내고, 이후 사헌부 장령·예조참의 등을 역임하였다.

148) 이정귀(李徵龜, 1641~1723) : 전주 이씨로 자는 여휴(汝休), 시호는 정청(靖淸)이다. 숙종 2년(1676)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병조참의·좌부승지·도승지 등을 거쳐 형조판서로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글씨에 뛰어났다.

왔거늘, 분부대로 관왜에게 전하여 부치려고 서계를 고쳐 적도록 재촉하는 한편, 수역 및 훈별을 불러오게 할 즈음, 22일 진시쑼 동 서계의 수정 초본을 금군 이당휘(李堂輝)가 또 가지고 왔기로, 그 수정본으로 즉시 서계를 고쳐 적어 수역 및 훈별 등으로 하여금 차왜 등에게 전해주어 비선을 급히 도중(島中)으로 보내 답서를 받아 오라는 뜻을 엄히 신칙하여 분부하였더니, 수역 이석린 및 훈도 정만익과 별차 이덕기 등의 수본 내용에 “내려보낸 본부의 서계를 즉시 차왜 등에게 전해주고, 비선을 급히 도중으로 보내 답서를 받아오게 한 뒤에야 사신의 배가 마땅히 출발할 것이라고 각별히 가서 효유(曉諭)했더니, 차왜 등의 의논이 일치하지 않아 어려워하는 기색이 있다”고 수본하거늘, 신이 다시 “양국이 교제하는 예는 반드시 문자가 있는 이후에 서계와 예물을 정폐할 수 있으므로, 어렵다고 유보해도 소용없으니 속히 서계를 전하고 대마도의 답서를 받아온 연후에 사신의 배가 마땅히 출발한다”는 뜻을 다시 전령하였고, 한편으로 수역 및 훈별 등을 불러와 다시 엄한 책유를 더하여 그들로 하여금 십분 책유하도록 하였더니, 23일 오시쑼 동 역관 등이 다시 바친 수본 내용에 “차왜 등에게 다시 엄히 책유했더니, 동 왜인 등이 ‘동 서계를 도중으로 들여보내는 일은 이미 조정하여 내일 마땅히 발송하겠다’고 하였다”고 수본하였는데, 24일 새벽부터 잠깐 비가 내렸다가 잠깐 개이다가 큰 바람이 이어지자, 이윽고 역관이 와서 고하기를 “오늘 바람 부는 형세와 구름 어둡기가 이와 같아 왜인이 와서 ‘오늘은 결코 배가 출발할 수 없으니 바람이 잔잔해질 때를 조금 기다렸다가 즉시 들여보내겠다’고 운운하기로, 와서 고합니다” 하였습니다. 25일 종일토록 바람이 매우 심해 바닷길이 한결같이 순조롭지 못하다가 26일 오전에 바람이 그치자, 즉각 접한 부산 첨사 박중징(朴仲徵)의 치통 내용에 “금년 2월 26일에 나온 대차왜의 각선(脚船) 1척에 격왜 20명과 기축년(1709) 4월 초4일에 나온 통사왜(通事倭) 1인 등이 함께 타고 통래부의 서계를 가지고 당일 진시에 배를 출발하여 돌아갔다”고 치통한다 하였기에, 동 대마도로 본부가 보낸 서계가 오늘 들어갔다고 연유를 치계하거니와, 이제 이번의 대마도 서계 소통은 이미 비국(備局)에서 확정하여 엄히 신칙한 일이니 보발(步撥)¹⁴⁹⁾로 범연히 장계를 올려 아뢰어서는 안 되기로, 신이 군관 최수장(崔秀章)에게 장계를 배지(陪持)¹⁵⁰⁾하게 하고 말을 주어 빨리 달려 보내기에,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는 일임. [비국에 계하함].

149) 보발(步撥) : 선조 30년(1597)에 설치한 파발 제도의 하나. 걸음이 빠른 사람을 뽑아 걸어서 공문(公文)을 전하게 하는 파발 제도.

150) 배지(陪持) : ①지방 관아에서 진상(進上)·장계(狀啓)를 가지고 서울로 가던 사람. ②조선시대 에 말을 타고 공문을 전하던 파발제도. 기발(騎撥)·마발(馬撥)이라고도 한다.

신묘(1711) 5월 초1일

접위관 경상도사 박성로(朴聖輅)가 4월 25일 성첩한 장계. 신은 조정의 분부에 따라 통신사호행차왜를 접위하는 일로 이달 25일 말을 달려 동래부에 도착했습니다. 다례(茶禮)는 동래부에서 이미 설행하였거니와, 하선연(下船宴)은 역관과의 논해 결정하여 행한 후, 추후에 치게하려고 계획하는 일임.

신묘(1711) 5월 초5일

예조단자. 이제 이번 통신사가 가져갈 예단의 봉과(封裹:포장)는 금 5월 12일에 전례대로 호조·예조 당상과 세 사신이 본조에서 함께 함이 어떠할지? 강희 50년(1711) 5월 초5일 입계하니 입계한 대로 시행라고 하심.

예조에서 상고할 일. 이제 이번 통신사행이 왜인을 접견할 때 수역이 사사로이 예단을 증명하는 일이 있으니 전례를 상고하여 전례대로 제급(題給)¹⁵¹⁾할 일. [호조에게로 이문함. 경상감사에게로는 전날에 분정한 물종(物種)을 변통하여 사용하게 함].

예조에서 상고할 일. 전에 본부의 서장(書狀)으로 인하여 사신 이하의 직책과 성명을 써서 보내는 일은 임시로 전례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하라는 일로 이미 계하하였기로, 동 사신 이하 원역의 직책과 성명을 관문에 후록하니, 후록을 상고하여 써서 전하여 줄 일임.

후록.

통신정사 이조참의 조태억(趙泰億),¹⁵²⁾ 부사 홍문관 전한 임수간(任守幹),¹⁵³⁾

151) 제급(題給) : 제사(題辭)를 매겨 줌. ‘제사(題辭)’란 소장(訴狀)이나 원서(願書)에 쓰던 관청의 판결이나 지령을 일컬음.

152) 조태억(趙泰億, 1675~1728) : 양주(楊州) 조씨로 자는 대년(大年), 호는 겸재(謙齋)이다. 숙종 28년(1702)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경종조에 형조판서·대제학을 역임하고, 영조 초반에 병조판서·우의정·좌의정·영돈녕부사를 역임하였다./ 조태억은 원문에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조’를 먹으로 뭉개고 이름 두 글자에 동그라미를 치는 등의 표시를 해놓았다. 그 까닭은 아마도 조태억이 노론 4대신에 저항한 소론 5대신의 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영조 52년(1776) 관작이 추탈되었다가 1908년에서야 복권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번역문은 이러한 표시에 상관하지 않고 모두 ‘조태억’으로 번역하였다.

153) 임수간(任守幹, 1665~1721) : 풍천 임씨로 자는 용예(用譽)·용여(用汝), 호는 둔와(遯窩)이다. 숙종 20년(1694) 알성문과에 급제하여 단양군수·형조참의·우부승지 등을 역임했다. 1711~1712년 통신사행의 부사로 일본에 다녀온 뒤 『동사일기(東槎日記)』를 남겼다. 경사(經史)에 밝았으며 음률·상수(象數)·병법·지리 등에도 해박하였다고 한다.

종사관 홍문관 교리 이방언(李邦彦).

상상관(上上官) 동지 이석린(李碩麟), 첨지 이송년(李松年), 첨지 김시남(金始南), 제술관 전 좌랑 이현(李璲), 상판사 전 판관 홍순명(洪舜明)·부사용(副司勇) 현덕윤(玄德潤)·전 판관 청창주(鄭昌周), 차상판사 전 주부 김시량(金是樑)·전 첨지 최한진(崔漢鎭), 압물관사 전 첨지 김현문(金顯門)·전 직장 박태신(朴泰信)·전 참봉 김시업(金時玉+業)¹⁵⁴·전 직장 조득현(趙得賢), 양의(良醫) 전 직장 기두문(奇斗文), 의원 전 주부 현만규(玄萬奎)·부사용 이위(李渭), 사자관(寫字官) 상호군 이수장(李壽長)·상호군 이이방(李爾芳), 화원 부사과 박동보(朴東普).

정사군관 첨지 이액(李諤)·첨지 김일영(金鎰英)·전 군수 이행검(李行儉)·경력 조건(趙健)·첨정 한범석(韓範錫)·주부 류준(柳濬)·초관(哨官) 김세진(金世珍)·전 참봉 한윤기(韓潤基), 서기 판관 홍순연(洪舜衍).

부사군관 전 감찰 민제장(閔濟章)·선전관 정수송(鄭壽松)·도사 조빈(趙賓)·선전관 정찬술(鄭贊述)·호군 신진소(申震燾)·별장 유정좌(劉廷佐)·부사맹 장문한(張文翰)·한량(閑良)¹⁵⁵ 임도승(任道升), 서기 전 현감 엄한중(嚴漢重).

종사관군관 부사용 변경화(卞景和), 서기 부사과 남성중(南聖重), 별파진 겸군관(兼軍官) 김두명(金斗明)·엄한우(嚴漢佑), 마상재(馬上才) 지기택(池起澤)·이두흥(李斗興), 이마(理馬) 안영민(安英敏), 전악(典樂) 김석겸(金碩謙)·김세경(金世璟).

신묘(1711) 5월 초7일

경상감사의 관문 내용. 통신사가 저쪽 사람을 접견할 때 사적인 예로 증명하는 물건이 있기에 전례를 고찰하여 거행하라는 뜻으로 누차 이문했으나, 끝내 확정하여 행회(行會)¹⁵⁶하는 일이 없으므로, 미치지 못해 일이 생기는 폐단을 걱정하여 본도에서 전례대로 먼저 마련하도록 분부하라는 뜻을 전에 이미 이문했더니, 지금 도착한 귀조의 회이 내용에 “사신의 사예단의 화석(花席) 등 각 종류는 임술년(1682) 등록 안에 원래 수록해놓은 곳이 없어 본조에서 베껴 보낼 수 없다”고 한 바, 그 예단의 물건은 본디 새로 창안된 것이 아니니, 그 중 중간 크기 벼루[中硯] 3면(面), 화석 27장, 참먹[眞墨] 30홀(笏), 설화지(雪花紙) 1권, 운암지(雲暗紙) 1권, 도화지(桃花紙) 1권, 황국지(黃菊紙) 1권, 잔국지(殘菊

154) 김시업(金時玉+業) : 김시박(金時璞)의 오류로 보인다. 이하 동일하다.

155) 한량(閑良) : 호반(虎班) 출신으로 아직 무과(武科)에 급제하지 못한 사람.

156) 행회(行會) : 조정의 지시나 명령을 관청의 장(長)이 그 부하들에게 알리고, 또한 그 시행 방법을 논정(論定)하기 위한 모임.

紙) 1권, 상화지(霜華紙) 10권, 장지(狀紙) 15권, 백지(白紙) 50권, 부채[扇子] 100자루[柄], 황률(黃栗) 10말, 호두 1섬 12말, 들기름[法油] 2말, 4장을 붙인 유둔[四張付油菴] 8번(番), 6장을 붙인 유둔 2번, 참깨[眞荏] 10말 등의 물건은 신유년(1681) 11월 24일에 이루어진 귀조의 계하 관문에서 각 고을에 분정하여 들여주도록 한 것인데, 어찌 이와 같이 ‘원래 수록된 일이 없다’고 하는지 일이 매우 괴이합니다. 감영의 등록에 이미 이처럼 명백히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동사행의 출발 여정이 멀지 않은 줄 알기에 다시 이문하니, 거행 여부를 과발에 부쳐 회이하여, 때가 되어 방해되는[掣肘]¹⁵⁷⁾ 우환이 없도록 할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수결한 내용. 입계하려고 도부했음.

예조에서 입계하기를, 본조가 소장한 임술년(1682) 통신사행 때의 등록 안에는 각 향의 공·사예단이 모두 수록되어 있는데, 소위 사신의 사예단 물목은 드러난 곳이 없으므로 전날에 계하하지 않았습니다. 경상감사 유명홍(俞命弘)이 본조에 이문하여 말하기를 “통신사가 저쪽 사람을 접견할 때의 예단 물물은 신유년(1681) 11월 24일에 이루어진 귀조의 계하 관문에서 각 고을에 분정했다”고 운운하고는 감영의 등록을 베껴 보냈습니다. 조정에서 이미 그 왕명을 받들어 바다를 건너는 일을 진념(軫念)하여 무릇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을 이미 되도록 넉넉하게 하였으니, 저쪽 사람에게 때때로 증정하여 주는 물건 역시 의당 갖추어 주어야 할 듯한데, 본조 등록이 비록 소략하여 수록하지 못했더라도 본도에서 기록한 바가 이처럼 명백하여 근거할 만하니, 본조에 문적이 없다는 이유로 전날에 이미 행하던 사례를 폐지할 수는 없을 듯하고, 대신에게 물어봐도 그 뜻이 역시 이와 같으므로, 본도에서 베껴 보낸 물목 별단을 써서 들이니, 계하하신 후에 이것으로써 본도에 분부하여 그로 하여금 사행에 갖추어 주도록 하심이 어떠할지? 전교하기를 “윤희한다”고 하심. [비변사].

예조단자. 이제 이번 통신사가 도해한 후 저쪽 사람을 접견할 때 사적인 예로 증정하는 물목 별단: 중간 크기 벼루 3면, 화석 27장, 참떡 30홀, 설화지 1권, 운암지 1권, 도화지 1권, 황국지 1권, 잔국지 1권, 상화지(霜花紙) 10권, 장지 15권, 백지 50권, 부채 100자루, 황률 10말, 호두 1섬 12말, 들기름 2말, 4장을 붙인 유둔 8번, 6장을 붙인 유둔 2번, 참깨 10말.

강희 50년(1711) 5월 초7일 입계함.

157) 철주(掣肘): ‘팔꿈치를 잡아 당긴다’는 뜻으로, 간섭하여 마음대로 못하게 제지함.

예조에서 입계하기를, 통신사가 가져갈 서계와 예단을 이달 12일 싸서 봉하는 [封裹] 일은 이미 계하하였는데, 관백의 사자(嗣子)에게 주는 예단 및 집정 이하 여러 신하에게 예관이 보내는 서계와 예단은 정폐할 수 없다는 뜻으로 지난번 비국에서 동래부로 하여금 대마도에 서계를 보내도록 하는 일을 품정했습니다. 듣건대 그 서계를 이미 들여보냈더라도 답서가 12일 봉과 이전에 맞추어 올라 올 수 있을지는 기필할 수 없고, 15일 사행 기일 또한 멀지 않아, 사세가 장차 군색하고 급박할 것이니, 이 예단과 서계 등의 물건은 일단 마련하여 다른 서계 및 예물과 동일하게 봉과하였다가, 발행 전에 저들의 답서가 오지 않으면 짐짓 사행에 부쳐서 부산으로 가져가서 답서를 기다리게 하였다가, 바람을 살펴 배를 출발하는 사이에 만일 보내줄 만하면 그대로 가져가고, 그렇지 않으면 동래부에 머물러 두게 함이 무방할 듯하나, 본조가 감히 멋대로 처리할 바가 아니니 묘당으로 하여금 품지(稟旨)하도록 분부하심이 어떠할지? 전교하기를 “윤택한다”고 하심. [비변사].

신묘(1711) 5월 초8일

접위관 경상도사 박성로(朴聖輅)와 동래부사 이정신(李正臣)이 5월 초3일 성첩한 장계. 통신사호행차왜 다이라 가다나오[平方直]의 원역 등에 대한 하선연을 이달 초2일로 정하였기로, 신들이 동일 초량객사로 함께 가서 차왜 등이 전례대로 진상하고 숙배한 뒤 하선연을 그대로 설행하였으며, 공·사예단 잡물 역시 숫자를 대조하여 들여주었습니다. 동일 연향을 설행할 때 차왜가 말을 전하기를 “일기가 점차 더워지면 바닷길에 구름이 어두울 뿐만 아니라 바람의 형세도 매우 불순하여 바다를 건너기가 편치 않기에, 반드시 6월 10일 전에 승선해야 한다는 뜻을 전에 이미 역관들에게 언급했는데, 이제 들으니 통신사행 기일을 가려서 선택한 결과 6월 21일에 승선한다고 하는 바, 우리들이 머물러 기다리는 것이야 족히 상관없지만, 막중한 통신사의 행차에 불편할 우려가 있을까 염려하여 이와 같이 누누이 언급한다”고 하거니와, 이제 이번 통신사의 승선 길일을 6월 21일로 완전히 정했다면 변동이 불가할 듯하되, 차왜가 말한 바가 이와 같았기로,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는 일임.

신묘(1711) 5월 초9일

비변사에서 입계하기를, 예조에서 입계하기를 “통신사가 가져갈 서계와 예단을

이달 12일 봉과하는 일은 이미 계하하였습니다. 관백의 사자(嗣子)에게 주는 예단 및 집정 이하 여러 신하에게 예관이 보내는 서계와 예단은 정폐할 수 없다는 뜻으로 지난번 비국에서 동래부로 하여금 대마도에 서계를 보내도록 하는 일을 품정했습니다. 듣건대 그 서계를 이미 들여보냈더라도 답서가 12일 봉과 이전에 올라 올 수 있을지는 기필할 수 없고, 15일 사행 기일 또한 멀지 않아, 사세가 장차 군색하고 급박할 것이니, 이 예단과 서계 등의 물건은 일단 마련하여 다른 서계 및 예물과 동일하게 봉과하고, 발행¹⁵⁸⁾ 전에 저들의 답서가 오지 않으면 짐짓 사행에 부쳐¹⁵⁹⁾ 부산으로 가져가서 답서를 기다리게 하였다가, 바람을 살펴 배를 출발하는 사이에 만일 보내줄 만하면 그대로 가져가고, 그렇지 않으면 동래부에 머물러 두게 함이 무방할 듯하나, 본조가 감히 멋대로 처리할 바가 아니니 묘당으로 하여금 품지하도록 분부하심이 어떠할지?”라고 하자 “윤희한다”고 답하신 일로 하명하셨습니다. 도주에게 서계를 이미 들여보냈더라도 회환(回還)이 더딜지 빠를지는 기필할 수 없으니, 짐짓 정비하여 기일에 맞추어 봉과하여 부산으로 내려보내고, 보낼지 안 보낼지는 그 회답을 기다려 처리하면 진실로 완비될 것이니, 계사(啓辭)대로 시행하심이 어떠할지? 전교하기를 “윤희한다”고 하심. [비변사, 사역원].

신묘(1711) 5월 초10일

예조에서 입계하기를, 예전에는 평상시 예관과 동래 부산이 대마도와 왕복하는 서계 및 통신사 때의 국서와 예관의 서계 말단에 모두 ‘불선(不宣)’¹⁶⁰⁾으로 맺음말을 삼았는데, 기축년(1709) 고경차왜(告慶差倭)가 나옴에 이르러 그 서계가 ‘불실(不悉)’로 맺음말을 삼았기에 동래부가 힐책하니, 그가 “새 관백의 이름이 ‘이에노부[家宣]’라서 ‘선’자를 피휘(避諱)했다”고 하기에, 동래부가 이로써 계문하였습니다. 본조와 비국이 복계하여 “‘선’자를 이미 피휘한다고 일컬었으니 강제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대로 써게 하되, ‘불비(不備)’와 ‘불실’ 사이에 약간의 경중이 있으니, 지금부터 ‘비’로 ‘선’을 대신하는 일을 훈별(訓別)로 하여금 분부하도록” 한 일에 윤희를 내리셔서, 그 후 피차 스스로 왕복 서계에는 마침내 ‘불비’로 말을 삼았습니다. 이제 이번에 우리 주상전하께서 저 나라에 내려 보내는 서계는 신[진규(鎭圭)]이 괴원에서 지어 올렸는데, ‘선’자가 관백의 이름에 관계

158) 원문의 ‘발송(發送)’은 ‘발행(發行)’의 오기로 보인다.

159) 원문의 ‘대(待)’는 ‘부(付)’의 오기로 보인다.

160) 불선(不宣) : 서계(書契) 등의 끝에 쓸 말은 많으나 다 쓰지 못한다는 뜻으로 쓰는 말.

되니 예전대로 써 보내면 저쪽에 도착하여 트집 잡힐 우려가 있을 듯해 근래의 다른 서계 서식에 따라 ‘비’로 ‘선’을 대신하여 써넣고는, 생각해보니 기축년(1709) 본조와 비국에서 복계하여 분부하신 것은 대마도에만 해당되는 일이고, 국서 및 예관이 집정 이하에게 보내는 서계에는 앞서 강정하지 않았습시다.

지금 우리나라의 서계에는 피차의 트집거리가 될까 염려하여 ‘비’로 ‘선’을 대신했는데, 저들이 만약 혹 답서에서 근래의 서식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장차 경시되는 수치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의당 처리할 방도를 미리 생각해야 하니, 동래부로 하여금 이런 뜻으로 말을 만들어 대마도에 서계를 보내 예도 집정에게 전하라고 요구하여, 그 회답 국서 및 집정 이하의 서계가 모두 ‘불비’로 말을 삼도록 하고, 또 사신에게 신칙하여 저들의 답서를 보고 혹 서식에 위배되거나 거든 반복하여 효유(曉諭)하여 반드시 모름지기 서식대로 고쳐 쓴 후에 가져오게 하여야 체모를 얻게 될 듯합니다. 이 일은 전날에 이미 묘당의 품정을 거쳤기에 지금도 역시 본조에서 감히 멋대로 처리하지 못하니 묘당으로 하여금 품지하도록 분부하심이 어떠할지? 전교하기를 “윤희한다”고 하심.

신묘(1711) 5월 11일

예조단자. 이제 이번 통신사가 각 처에 가져갈 예단 물목을 어람하시어 낙점한 단자.

一. 일본국왕 앞의 예단. 말안장 2부, 범가죽 15장, 표범가죽 20장, 인삼 50근, 대수자(大繻¹⁶¹)子) 10필, 대단자(大段子) 10필, 색대사(色大紗) 20필, 흰 모시베 20필[12승], 생 모시베[生苧布] 20필[10승], 검은 삼베 30필, 청서피(靑黍皮) 30장, 각색 붓 50자루.

一. 일본국 왕자 예단. 말안장 2부, 범가죽 10장, 표범가죽 15장, 인삼 30근, 금선(錦線) 10필, 대릉(大綾) 20필, 색사(色紗) 10필, 청서피 15장, 각색 붓 50자루.

一. 집정 1인에게 증정하여 줌. 범가죽 3장, 표범가죽 2장, 대단자 3필, 흰 모시베 10필[9승], 청서피 5장, 황모필 30자루.

161) 원문의 ‘유(繻)’는 ‘수(繻)’의 오타로 보인다.

一. 집정 3인에게 증정하여 줌. 범가죽 2장, 표범가죽 2장, 대단자 3필, 흰 모시베 10필[9승], 청서피 3장.

一. 서경윤(西京尹) 1인과 근시(近侍) 1인에게 증정하여 줌. 각각 범가죽 1장, 표범가죽 1장, 흰 모시베 5필[9승], 청서피 2장, 황모필 20자루.

一. 봉행 8인에게 증정하여 줌. 각각 흰 모시베 10필[9승], 흰 명주 10필, 검은 삼베 5필, 범가죽 1장, 황모필 20자루.

一. 대마도주에게 증정하여 줌. 범가죽 2장, 표범가죽 3장, 인삼 5근, 흰 모시베 10필[9승], 흰 명주 10필, 검은 삼베 5필, 흰 무명 20필.

一. 수도서(受圖書) 2인에게 증정하여 줌. 각각 범가죽 1장, 흰 모시베 5필[9승], 흰 명주 5필.

一. 수직왜(受職倭) 5인에게 증정하여 줌. 각각 흰 모시베 3필[9승], 흰 명주 3필, 황모필 10자루.

一. 장로(長老) 1인에게 증정하여 줌. 인삼 3근, 흰 모시베 3필[9승], 흰 명주 5필, 황모필 20자루.

강희 50년(1711) 5월 11일 낙점함. [이상 물종의 머리에 동그라미 친 것은 모두 낙점됨].

신묘(1711) 5월 12일

예조에서 입계하기를, 지난번 통신부사와 종사관의 임시 직함을 정할 때 정사 조태억은 이조참의를 떠고 있어서 임시 직함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직을 했기에 이조참의의 임시 직함으로 들이자는 뜻을 감히 계달합니다. 전교하기를 “알았다고” 하였음. [예조, 사역원].

예조에서 상고할 일. 이제 이번 통신사가 가져갈 예단을 이미 봉과하였으니, 수령해 갈 차사원(差使員)을 전례대로 차정하여 오는 15일 수령해 가도록 하며,

예단을 신고 갈 쇄마(刷馬)¹⁶²⁾ 18필을 전례대로 급속히 정하여 보내서 실어 보내도록 할 일. [경기감사에게로. 국서 (실어 갈) 마필은 18필 안에 들어 있음].

신묘(1711) 5월 13일

비변사에서 입계하기를, 예조의 계사(啓辭)로 인하여 일본으로 보내는 국서 및 집정 이하의 서계는 모두 ‘불비(不備)’로 말을 삼고, 혹 저들의 답서가 근래의 서식(書式)을 준수하지 않을까 염려되니 동래부로 하여금 말을 만들어 대마도에 서계를 보내 에도에 전하라고 요구하며, 또 사신에게 신칙하여 저들의 답서를 보고 혹 서식에 위배되거나 반복하여 효유하여 반드시 모름지기 서식대로 고쳐 쓰게 한 후 가져오라는 뜻을 묘당으로 하여금 품지하도록 분부하는 일로 하명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서계 말단에 모두 ‘불선(不宣)’으로 맺음말을 삼았지만, 근래에는 관백의 이름을 피휘하느라 ‘비’로 써 ‘선’을 대신했는데, 애당초 피차 강정한 것은 대마도와 왕복하는 서계뿐이기에, 지금 국서에서 우리가 비록 피휘하더라도 저들이 동일한 규례로 말을 삼을지는 보장할 수 없어 의당 앞 일이 걱정될 듯하니, 본조의 계사대로 사행과 동래부에 분부하시고, 동래부의 서계는 즉시 해원(該院)으로 하여금 지어 보내게 하심이 어떠할지? 전교하기를 “윤희한다”고 하심. [예조, 승문원, 사역원].

조선국 예조에서 경건히 교지를 받들어 정사(正使) 이조참의 조태억(趙泰億), 부사(副使) 홍문관 전한(典翰) 임수간(任守幹), 종사관(從事官) 홍문관 교리 이방언(李邦彦)을 파견하여 서계와 예물을 수령하여 가지고 앞으로 일본국에 나아갈 것이니, 경건히 이대로 시행함이 합당하여 관문을 보내니, 청컨대 살펴 시행하기 바람. 관문 수령자에게 가도록.

계개(計開)¹⁶³⁾ : 기마(起馬) 52필, 상선(上船) 2척, 중선(中船) 2척, 소선(小船) 2척.

정사	이조참의 조태억(趙泰億)
부사	홍문관 전한 임수간(任守幹)

162) 쇄마(刷馬) : 지방관청에 배치해 둔 관용 말.

163) 계개(計開) : 조선시대 공문 작성 때 쓰는 관용어의 하나. ‘헤아려 기록한다[내역을 열거한다]’는 뜻으로, 어떤 사항이나 물건 및 금전 등을 열거할 때 그 첫머리에 표시하는 말.

종사관	홍문관 교리 이방언(李邦彦)
당상역관	동지 이석린(李碩麟)
	첨지 이송년(李松年)
	첨지 김시남(金始南)
상관사	전 판관 홍순명(洪舜明)
	부사용 현덕윤(玄德潤)
	전 판관 청창주(鄭昌周)
차상통사	전 주부 김시량(金是樑)
	전 첨정 최한진(崔漢鎭)
압물통사	전 첨정 김현문(金顯門)
	전 직장 박태신(朴泰信)
	전 참봉 김시업(金時玉+業)
	전 직장 조득현(趙得賢)
제술관	전 좌랑 이현(李磻)
양의	전 직장 기두문(奇斗文)
의원	전 주부 현만규(玄萬奎)
	부사용 이위(李渭)
사자관	상호군 이수장(李壽長)
	상호군 이이방(李爾芳)
화원	부사과 박동보(朴東普)
정사군관	첨지 이액(李詒)
	전 참봉 한윤기(韓潤基)
	전 군수 이행검(李行儉)
	경력 조건(趙健)
	첨정 한범석(韓範錫)
	주부 류준(柳濬)
	전 초관 김세진(金世珍)
	첨지 김일영(金鎰英)
서기	판관 홍순연(洪舜衍)
부사군관	부사용 장문한(張文翰)
	한량 임도승(任道升)
	전 감찰 민제장(閔濟章)

도사 조빈(趙賓)
 선전관 정수송(鄭壽松)
 선전관 정찬술(鄭纘述)
 전 별장 유정좌(劉廷佐)
 호군 신진소(申震燾)
 서기 전 현감 엄한중(嚴漢重)

종사관군관 부사용 변경화(卞景和)
 서기 부사과 남성중(南聖重)
 별파진 겸군관 김두명(金斗明)
 엄한우(嚴漢佑)
 마상재 지기택(池起澤)
 이두흥(李斗興)
 이마 안영민(安英敏)
 전악 김석겸(金碩謙)
 김세경(金世璟)

정사 반인(伴人) 1인 노자(奴子) 2명
 부사 반인 1인 노자 2명
 종사관 반인 1인 노자 2명, 당상역관 이하 원역 노자 22명, 군관·서기·별파진
 ·마상재 노자 24명

위는 관문[關].

정사 이조참의 조(趙)
 부사 홍문관 전한 임(任)
 종사관 홍문관 교리 이(李)

신묘 5월 일
 판서 참판 참의
 정랑 좌랑
 정랑 좌랑
 정랑 좌랑

신묘(1711) 5월 14일

동래부사 이정신(李正臣)이 5월 초7일 성첩한 장계. 이달 초2일 신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박중징(朴仲徵)의 치통 내용에 “금년 2월 25일에 나온 무자조 제13선 1척에 격왜 20명 및 기축년(1709) 6월 초10일 나온 도도금도왜(都都禁徒倭) 1인과 중금도왜(中禁徒倭) 3인 등이 함께 탔으며, 금년 2월 25일에 나온 무자조 제15선 1척에 격왜 20명 등이 함께 타고, 도합 2척이 공작미를 실어 가지고 당일 진시에 배를 출발하여 돌아간 일”로 치통하였음. 초4일 신시에 도부한 동첨사의 치통 내용에 “금년 3월 27일에 나온 비선(飛船) 1척에 두왜 1인과 격왜 5명 등이 함께 타고 관수왜의 사서(私書)를 가지고 당일 진시에 배를 출발하여 돌아간 일”로 치통하였음. 초6일 술시쯤 황령산 봉군 서필영(徐必永)과 간비오 봉군 정사룡(鄭巳龍) 등이 진고한 내용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물마루를 나왔다”고 진고하였음. 추후에 도부한 부산첨사의 치통 내용에 “왜선 2척이 나왔다고 석성 봉군이 진고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상황을 탐색하려고 본진(本鎭)의 제2선 선장 최재홍(崔再弘)을 선정하여 보낸 일”로 치통하였음. 동일 해시에 성첩되어 초7일 자시에 도부한 동첨사의 치통 내용에 “나온 왜선 2척을 영술하여 관소(館所)에 부쳤다고 초탐장 최재홍이 치보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즉시 가훈도(假訓導) 한찬흥(韓贊興)¹⁶⁴과 별차 이덕기(李德起) 등에게 명하여 정황을 묻게 한 뒤의 수본 내용에 ‘관(館)에 나아가 정황을 물었더니,

도중에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제1척은 무자조 삼특송사 2호선으로 격왜 30명과 교대할 삼대관왜(三代官倭) 1인 등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어 가고자 노인을 가지고 나왔다 하며, 제2척은 비선에 두왜 1인과 격왜 7명 등이 함께 타고 관수왜에게 보내는 사서(私書)와 노인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기로, 가져온 노인 2통을 받아 올려 보낸다’는 뜻으로 수본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동 노인을 수송하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기에, 위의 노인 2통을 감봉하여 해조에 올려 보냈음. 방금 바친 가훈도 한찬흥과 별차 이덕기 등의 수본 내용에 “대차왜와 재판차왜가 말한 내용에 ‘일찍이 임술년(1682)에는 예단마(禮單馬)를 5월 초3일 들여주었는데 이번에는 아직도 내려와 들여주는 거조가 없으니 무슨 사고가 있는 것이며, 세 사신의 직책과 성명 및 원역 등의 직책과 성명은 어찌하여 지금까지도 써오지 않으며, 재판에게 회답 서계는 또 어찌 내려오지 않는 것인지, 차왜가 직분을 거행하는 도리에 있어서 대단히 절박하다’고 하면서, 세 사신의 직책과 성

164) 한찬흥(韓贊興, 1680~?) : 청주 한씨로 자는 기중(起仲)이다. 숙종 34년(1708) 식년시 역과에 왜학으로 급제하여, 관직이 교회(敎誨)·주부(主簿)에 이르렀다.

명 및 원역 등의 직책과 성명을 급급히 써와 예도에 통보하여 무릇 지대 등의 일을 대기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였으며, 예단마도 급급히 내려와 들여주어 응련(鷹連)과 동시에 예도로 들여보내도록 해 달라고 하였으며, 회답 서계를 급급히 내려 보내 들여주어 차개(差价)로 하여금 (통신사가) 다다랐을 때 군색하고 급박한 폐단이 없도록 해 달라고 누누이 그치지 않기로, 연유를 수본하는 일”로 수본했으니, 세 사신의 직책과 성명 및 원역의 직책과 성명을 써보내는 일 및 예단마를 재촉하여 내려 보냄을 해조로 하여금 속히 거행하도록 하며, 재판차왜에게 회답 서계는 다례를 설행한 지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내려 보내지 않아 저 사람이 재촉함에 이르렀으니 또한 해조로 하여금 급속히 재촉하여 내려 보내시기를.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이정신의 장계를 보니, “차왜가 ‘예단마가 급급히 내려오고 세 사신의 직책과 성명 및 원역의 직책과 성명을 급급히 써오며 재판에게 회답 서계를 급급히 내려보내라’는 뜻으로 훈별에게 말을 하니, 재촉하여 내려 보내는 일을 해조에 명하여 되도록 속히 거행해 달라”고 한 바, 사신과 원역의 직책과 성명은 이미 써서 보냈고, 회답 서계 역시 내려 보냈는데 장계가 출발하기 전에 도부하지 못한 듯하나 지금은 이미 내려갔을 것으로 생각되며, 마필은 이 무더운 달에 먼저 내려보냈다가 저쪽에 도착하여 잘 먹이고 기르지 못하면 병이 생길까 염려될 뿐만 아니라, 예단을 봉과하기 전에 먼저 보내는 것은 사체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사행이 여정을 출발할 때 차분히 끌고 가서 그 승선 기일에 다다르도록 할 계획이니, 동래부로 하여금 이로써 훈별에게 분부하여 차왜에게 언급할 바탕으로 삼게 하심이 어떠할지? 강희 50년(1711) 5월 14일 행 도승지 김연(金演)¹⁶⁵⁾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신묘(1711) 5월 15일

동래부사 이정신(李正臣)이 5월 초10일 성첩한 장계. 이달 초7일 신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박중징(朴仲徵)의 치통 내용에 “금년 3월 초5일에 나온 무자조 제16선 1척에 격왜 20명 등이 함께 타 공작미를 실어 가지고 당일 진시에 배를 출발하여 돌아갔다”고 치통하였음. 초9일 술시쯤 황령산 봉군 이춘백(李春白)과 간비오

165) 김연(金演, 1679~1725) : 상산(商山) 김씨로 자는 사익(士益), 호는 퇴수당(退修堂)·형야현(也峴)이다. 숙종 10년(1684)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강원감사·충청감사·경기감사·도승지 등을 역임하고, 1711년 사은 겸 동지부사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개성유수·한성부 우윤·예조참판을 거쳐, 경종조 호조판서·형조판서가 되었는데, 영조가 즉위하자 노론의 탄핵을 받아 사직하였다.

봉군 정사룡(鄭巳龍) 등이 진고한 내용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전후로 나뉘어 물마루를 나왔다”고 진고하였음. 추후에 도부한 부산첨사 박중정의 치통 내용에 “왜선 2척이 전후로 나뉘어 나왔다고 석성 봉군이 진고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상황을 탐색하려고 개운포 만호 김중탁(金重鐸)을 선정하여 보낸 일”로 치통하였음. 동일 해시에 성첩되어 초10일 자시에 도부한 동첨사의 치통 내용에 “나온 왜선 2척을 영솔하여 관소(館所)에 부쳤다고 초탐장 김중탁이 치보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즉시 가훈도 한찬홍과 별차 이덕기 등에게 명하여 정황을 묻게 한 뒤의 수본 내용에 ‘관에 나아가 정황을 물었더니, 관수 왜가 하는 말이 도중에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제1척은 비선에 두왜 1인과 격왜 6명과 통사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이제 이번 통신사 때 일본의 저군(儲君)에게 예물을 제거하는 일로 동래부에 회답 서계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며, 제2척은 무자조 제1선이 재차 나왔는데 격왜 40명과 교대할 중금도왜 2명 등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어 가고자 노인을 가지고 나왔다고 했으나, 같은 배가 재차 나옴은 규정 이외에 해당하는 탓으로 노인을 받지 않고 이에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을 관수왜에게 책유하고, 회답 서계 1통은 받아 올려 보낸다”는 뜻으로 수본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동 서계를 수송하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으므로, 위에서 규정 이외로 나온 왜선은 속히 돌려보내라는 뜻을 다시 역관 무리로 하여금 관수왜에게 책유하도록 하며, 이제 이번 통신사 때 관백의 저군과 집정 등에게 예물과 서계 제거를 요청하는 일은 본부에서 도주에게 서계를 보냈더니 동 회답 서계가 지금 비로소 나왔기로 감봉하여 해조에 올려 보내거니와, 동 서계와 예물을 제거하는 일은 긴급한 관계로 보발(步撥)로 천천히 치계해서는 안 되기에 신이 군관 김한전(金漢錢)에게 장계를 배지(陪持)하게 하고 말을 주어 달려 보내기에,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는 일임. [5월 13일 비국에 계하함].

금 5월 15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켰을 때, 통신사행 때 관백의 아들 및 집정 이하에게는 예단을 보내지 말고 세 사신이 사사로이 만날 때의 예단은 그대로 두는 일을 탐전에서 확정함. [비변사, 호조, 승문원].

예조에서 입계하기를, 통신사행 중 관백의 아들 및 집정 이하에게 부치던 예단과 서계를 보내지 마는 일을 탐전에서 확정했습니다. 즉시 호조 낭관과 역관으로 하여금 함께 각 항의 물종을 점검하여 그 봉과한 것을 풀어 숫자를 대조해서 각 해당 관청에 되돌려 내려 보내고, 영남에서 마련하는 물건도 관문을 발행하여 갖추어 보내지 말도록 하며, 보내는 물종의 별단은 써서 들여 계하한 후에

사행에 분부하여야 상세히 살피게 될 듯합니다. 또한 관백의 아들에게 주는 별 폭은 이미 어보(御寶)를 찍었으니 괴원에 두는 것은 사체가 합당치 않기에 정원 [승정원]으로 하여금 품지하여 불태우도록 하심이 어떠할지? 전교하기를 “윤희 한다”고 하심.

예조가 이제 이번 통신사행 때 일본국왕 이하 각 처에 응대하여 주는 예물 별단.

一. 일본국왕 앞의 예단.[서계가 있음. 통은 은으로 장식하고 주홍칠을 함].
 응자(鷹子) 10련 [6련은 본도에서 마련, 4련은 강원도에서 마련], 준마(駿馬) 2필에
 안장 구비[해당 관청에서 마련], 범가죽 15장, 표범가죽 20장, 담비가죽[貂皮]
 20장, 인삼 50근, 대수자(大繻子) 10필, 대단자 10필, 색대사 20필, 흰 모시베
 20필, 생 모시베 20필, 검은 삼베 30필, 청서피 30장, 각색 붓 50자루.[이상은
 해조에서 마련]. 어피(魚皮) 100장, 색지(色紙) 30권, 참덕 50홀, 황밀(黃蜜)
 100근. 청밀(淸蜜) 10기(器)는 매 단지에 1말씩.[이상은 본도에서 마련].

一. 대마도주에게.[서계가 있음. 통은 흑칠 납염 장식으로 하되, 도주 및 장로
 와 수도서(受圖書) 등의 사람에게 보내는 서계를 함께 한 통에 넣음]. 흰 모시베
 10필. 흰 명주 10필. 검은 삼베 5필. 흰 무명 20필. 범가죽 2장. 표범가죽 3장.
 인삼 5근.[이상 해당 관청]. 화석 5장[본도에서 마련], 흰 모시베 10필, 흰 명주
 10필, 검은 삼베 5필, 흰 무명 20필, 범가죽 2장, 표범가죽 3장, 인삼 5근.[이
 상은 해조에서 마련]. 화석(花席) 5장[본도에서 마련].

一. 수도서 2인 각각.[각각 서계가 있음]. 흰 모시베 5필, 흰 명주 5필, 범가
 죽 1장.[이상은 해조에서 마련]. 화석 3장, 유둔 1부.[이상은 본도에서 마련].

一. 수직왜 5인 각각.[서계가 없음]. 흰 모시베 3필, 흰 명주 3필, 황모필 10
 자루.[이상은 해조에서 마련]. 화석 2장, 참덕 5홀.[이상은 본도에서 마련].

一. 장로 1인.[서계가 있음]. 인삼 3근, 흰 모시베 5필, 흰 명주 5필, 황모필
 20자루.[이상은 해조에서 마련]. 참덕 10홀[본도가 마련].

一. 일본국왕 앞의 사신 예단. 범가죽 5장, 인삼 10근, 흰 모시베 10필.[이상은
 해조에서 마련].

一. 일본국 왕자에게 사신 예단. 범가죽 5장, 인삼 10근, 흰 모시베 10필.[이상은 해조에서 마련].

一. 집정부터 중납언(中納言) 등에게 사신 예단 도합. 인삼 21근, 검은 삼베 85필, 황모필 420자루, 참떡 280홀, 부용향(芙蓉香) 310매, 범가죽 6장, 흰 모시베 42필, 작은 은장도[小銀粧刀] 5자루.[이상은 해조에서 마련]. 색지 44권, 백밀(白蜜) 85근, 방백자(房栢子) 500매, 어피 15장.[이상은 본도에서 마련]. 석린 6근[황해도에서 마련], 응자 3련[전라도에서 마련].

一. 봉행 8인 등에게 사신 예단 도합. 인삼 8근, 검은 삼베 24필, 황모필 160자루, 참떡 80홀.[이상은 해조에서 마련]. 색지 24권[본도에서 마련], 석린 8권[황해도에서 마련].

一. 사신 일행이 사용할 청심원(淸心元) 100환[의사(醫司)에서 마련].

강희 50년(1711) 5월 15일 입계.

비변사에서 입계하기를, 지난번 통신정사 조태억이 계한 바 “히꼬 센다이[彦千代]¹⁶⁶⁾에게 도서(圖書)를 허락할지 불허할지를 묘당으로 하여금 속히 품정할 일”로 하명하셨습니다. 대마도가 작년부터 그 아들 히꼬 센다이의 도서를 요청하는 것은 을유년(1705)에 그의 아명 도서(兒名圖書)를 추후 요청한 것과는 사례가 조금 다릅니다. 대개 조정에서 일찍이 히꼬미쓰[彦三]와 히꼬망[彦滿]의 아명 도서를 차례로 특별히 하사한 구례(舊禮)가 있으니, 지금 그 요청하는 바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축년(1709) 도해역관이 돌아올 때 도주가 처음 이를 요청하면서 회답 서계에 부쳐 진청(陳請)한 것은 매우 경근한 도리를 잃은 것이고, 또 범간(犯奸)한 왜인의 일에 서계를 받지 않은 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本司)의 복계 가운데 “비록 혹 마땅히 헤아려 처리하겠다는 뜻을 보여 동래부로 하여금 관왜에게 효유하게 하였으나, 범간한 왜인의 일로써 그들에게 엄한 책유를 가하였기 때문에, 도서는 그대로 방색되어 허락하지 않기에 이르렀고, 그들도 스스로 그 죄를 알아 감히 다시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단서도 없이 갑자기 그것을 허락하면, 은전(恩典)을 절도 있게 삼가

166) 히꼬 센다이[彦千代] : 대마도주 다이라 요시가다[平義方]의 아들.

는 방도가 아닌 듯합니다. 통신사가 저쪽에 도착했을 때 도주가 혹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없지 않을 테니, 도서를 허락할지 불허할지를 반드시 모르지기 명백히 확정하여 사신에게 분부하여야 사신이 질문에 응답할 수 있을 텐데, 이 일은 관계됨이 가볍지 않은데 조정의 의견이 어긋나 아직 하나로 귀결되지 않았으나, 주상께서 바야흐로 조용히 조섭하는 가운데 계시는지라 등대(登對)¹⁶⁷⁾하여 품처하는 것도 감히 하지 못할 바가 있습니다. 통신사가 내일이면 비록 하직하더라도 승선 전에는 날씨가 아직 많으니, 짐짓 앞으로 차대(次對)¹⁶⁸⁾할 때를 기다려 차분히 진달하여 품지하고 추후로 사행에 분부하심이 어떠할지? 전교하기를 “윤희한다”고 하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拾遺) 다이라 요시가다[平義方]가 조선국 동래부사공함하게 계복(啓覆)합니다. 배편이 바야흐로 이르러 그에 의해 기거가 길(吉)하심을 알고 기쁘고 위로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저군의 예물과 아울러 집정의 서계를 이번에 제거하는 일은 접때 이미 저희 차인(差人)으로 하여금 전하여 고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문의하시는 것은 우호를 돈독히 하고 예를 강마하는 소치가 아님이 없으니, 사연을 상세히 살펴보고 참으로 혼연히 감복했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 일은 동무(東武)¹⁶⁹⁾의 명에서 나왔고, 저희 주(州)는 오직 조정의 뜻을 공손히 준수하여 삼가 귀국[貴邦]에 전달하는 것만 알 따름이니, 그 뜻의 취지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어찌 저희 주가 간여하여 들을 바이겠습니까? ‘아직 정해진 제도가 있지 않다’고 운운한 것도 저희 차인이 한때 추측한 말에 불과하지 동무에서 이런 분부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직 밝게 살펴주시기 바라며, 귀국의 빙사가 도해하기를 천만 두 손 맞잡고 기다립니다. 아무튼 절기의 차서를 따라 스스로 보중하시길 비웁니다. 다 갖추지 못합니다. 보영 8년 신묘 5월 일, 대마주 태수 습유 다이라 요시가다.

신묘(1711) 5월 16일

예조에서 상고할 일. 이제 이번 통신사행이 일본국왕 이하 각 처에 줄 예단으로 사용할 응련(鷹連)은 사행이 승선하기 전에 차사원 부산진에게 수납하라는

167) 등대(登對) : 어전(御前)에 나아가 임금을 직접 대함.

168) 차대(次對) : 매달 여섯 차례씩 의정(議政)·대간(臺諫)·옥당(玉堂) 등이 입시하여 국가의 중요한 정무를 상주(上奏)하던 일.

169) 동무(東武) : 에도[江戸]의 막부를 일컫는 말.

뜻을 이전에 이미 각 도에 분부하였으니, 이제 생각건대 이미 모든 수량이 거기에 도착하였을 것이거니와, 일본국 왕자에게 줄 예단은 이제 제거했으니 동 응자 5련 역시 보낼 일이 없는지라, 동 각 도에서 팔에 얹어 온 사람들이 머물러 있거든 도로 부쳐 보내고, 팔에 얹어 온 사람들이 돌아갔거든 편의에 따라 잘 처리할 방도를 이전의 등록에서 살펴보는 한편, 사행 및 해당 진(鎭)과 상의하여 첩보해 처치하도록 함이 합당할 일. [경기감사에게로].

예조에서 상고할 일. 전일에 정하여 보낸 쇄마 18필 내에서 일본국 왕자와 집정 이하의 예단을 감제하므로 실제 들여서 실어 보낼 쇄마는 12필이니 상고하여 줄여 보낼 일.

승정원의 계사(啓辭). 예조에서 초기(草記)한 관백의 아들에게 주는 별폭은 이미 어보를 찍었으니 괴원[승문원]에 두는 것은 사체가 합당치 않기에 본원으로 하여금 품지하여 불태우도록 하는 일에 윤희를 내리셨습니다. 승문원에 분부하시어 와서 바치게 하면 즉시 불태우겠다는 뜻을 감히 아웁니다. 전교하기를 “알았다”고 하였음.

신묘(1711) 5월 18일

금 5월 15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켰을 때, 영의정 서종태(徐宗泰)가 계한 바에 “통신사행 때 관백의 아들 및 집정 이하의 예단을 정지하는 일은 단지 차왜의 구전만 믿을 수 없어서 과연 예도에서 나온 말인지 알고자 동래 부로 하여금 대마도에 서계를 보내게 하여 그 회답을 기다린 뒤 그 보낼지 말지를 정하겠다는 뜻을 지난번 연대(筵對) 때 이미 품정하였습니다. 대마도의 서계가 이제 막 나왔는데, 대개 그 사연은 과연 예도의 뜻을 전하여 통지하는 데서 나왔습니다” 하였다. 상감께서 말씀하시기를 “서계 가운데 곡절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예도의 뜻에서 나온 것은 분명하다” 하였다. 영의정이 말하기를 “저사(儲嗣)가 아직 정봉(定封)되지 않았다는 말도 물었는데, 답장 서계에서 ‘이는 차왜의 추측이지 동무(東武)의 분부는 아니다’고 하니, 이 말은 원래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집정 이하의 예단도 무슨 일로 연유하여 감제를 청했는지 말하지 않아서, 함축하여 드러내지 않은 뜻이 있는 듯해 교활한 태도¹⁷⁰⁾를 가히 볼 수 있지

170) 원문의 ‘웅(熊)’은 ‘태(熊)’의 오기로 보인다.

만, 에도에서 나온 명령임은 분명합니다. 조정에서 이미 이웃나라의 군주에게 증정하고 또 그의 어린 저사에게까지 증정하는 것은 그 예가 너무 지나칩니다. 예조에서 보내는 예단은 남의 신하는 원래 사사로이 교류하는 의리가 없으니 본령(本領)이 틀렸기에 그들의 말대로 보내지 마는 것이 사리에 본디 방해되는 바 없으나, 다만 관백의 아들에게 주는 예단은 사체가 그에 견주어 더 무겁고, 예조에서 보내는 예단도 조정에서 명한 것으로 오래 행하던 예이니 지금 갑자기 정폐(停廢)하는 일은 불편합니다. 또한 이 제거하자는 말도 저쪽에서 발설했고 게다가 그 정지 요청의 연유를 말하지 않으니, 마치 조종함이 그들에게 있는 듯해 그 정상이 거만하고 방자합니다. 조정의 큰 체모에 있어서는 아울러 구례대로 부쳐 보내어 억눌러 꺾는 뜻을 보여야 합당할 듯하지만, 왜의 성질은 이상하여 이미 정한 일은 단연코 변동하지 않아 우리나라의 신령스런 위엄으로 꺾어 굴복시킬 만한 바가 아니니, 끝내 여기고 거절하면 손상됨과 욕됨이 어떻겠습니까? 또한 이로 인해 혹 난처한 지경에 이를 염려도 있으니, 여러 재신(宰臣)들과 바깥의 여러 의논들이 자못 많이들 전과 같이 부쳐 보낼이 합당하다고 합니다. 소신의 생각도 역시 그 말을 한결같이 들어주어 보내지 않는 것은 언짢게 급히는 것이라고 여기지만, 그 끝을 생각하면 염려스러움이 없지 않으므로, 어제 계사를 초하여 진달하고 품의드리면서 보내지 말라는 뜻으로 말을 맺었습니다. 이 일은 관계됨이 가볍지 않으니 여러 신하들에게 하문하심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상감께서 “좌상이 진달한 후 여러 신하들이 각각 소견을 진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좌의정 김[김창집]이 말하기를 “당초 저 사람들의 예단 감제 요청은 단지 구전에서만 나왔는데, 예로부터 시행해오던 전례를 그런 구전으로 인해 정폐하는 것은 불가한 까닭에, 접때 경연에서 서계로 도주에게 물어 과연 에도의 뜻에서 나왔으면 정지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다는 뜻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제 답서로 보자면 비록 동무의 명이라고 일컬었으나 곡절을 명백히 말하지 않았으니 무슨 뜻이 있는 듯하지만, 이미 도주의 서계가 있으니 갖추어 보낼 필요는 없을 듯하고 여러 의논도 많이들 이와 같습니다. 사신이 저쪽에 도착한 후 효유하기를 ‘저군의 예단은 비록 한때의 특별한 은전에서 나왔으나 원래 응당 하사하는 물건이 아니고, 집정 이하의 예단에 있어서는 나라의 신하는 또한 사사로이 교류하는 의리가 없는데다 이미 보내지 말라고 말했으니 조정에서 억지로 갖추어 보낼 필요가 없는지라 아울러 모두 정지한다’고 하다면, 아마도 합당함을 얻을 듯합니다.” 하였다.

행 병조판서 최석항(崔錫恒)은 말하기를 “국가를 위한 교린의 도리는 먼저 그

근본을 정한 뒤에 절차를 미루어 나가야 길이 구차하고 소략한 폐단이 없습니다. 만약 그 본뜻을 세우지 않고 오로지 고식(姑息)에만 힘쓴다면 그 흘러가는 폐단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예단 한 가지 일은 당초 설행한 뜻은 비록 모르겠지만, 백 여 년 흘러 전해온 일이니, 반드시 변개하고자 하면 마땅히 그 사정을 모두 다 진술하여 우리러 조정에 품의드리, 조정에서 따를 만하면 허락하고 따를 수 없으면 허락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백이 새로 선 초기에 다른 단서도 없이 곧장 보내지 말도록 하니 그 방종하고 방자함이 심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 말대로 굽혀서 따르면 후일 경시하고 업신여기는¹⁷¹⁾ 조짐을 열어주어 그들이 한번 시험해본 계획에 꼭 맞아떨어지게 되니, 그것은 국체(國體)에 어떠하겠습니까? 신은 비록 왜의 정상이 어떤지 알지 못하나 백 년 오래된 일을 하루아침에 정폐하고도 끝내 그 체모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좌참찬 이언강(李彦綱)은 말하기를 “관백의 아들에게 주는 예단은 당초 대마도주가 특별히 우리나라에 요청하여 중간에서 생색을 내려고 한 것이 그대로 규례를 이루었으니, 원래 응당 하사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비록 보내지 말라는 말이 있더라도 특별히 간소한 사정이 있지는 않은 듯합니다. 집정에게 주는 예단에 있어서는 무엇에 연유하여 감제를 요청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만약 억지로 강제하여 들여보냈다가 끝내 받지 않는다면 국체를 손상하므로, 소신은 전부터 이렇게 진달했는데, 묘당에서 단지 일개 차왜의 구전만 믿고 허락해서는 안 되는 까닭에 변방 신하로 하여금 도주에게 서계로 문의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그 답서를 보니 과연 예도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되 제거 요청의 연유는 명백히 말하지 않았는데, 도주는 반드시 예도의 뜻을 모를 리 없지만, 그 도리에 있어 감히 이웃나라에 발설해서는 안 되는 듯합니다” 하였다. 상감께서 “이 일의 뜻을 도주가 반드시 모를 리 없지만, 교묘하고 거짓된 왜의 정상은 차치하고 도리로 미루어 봐도 반드시 감히 명백히 말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였다.

이언강이 말하기를 “소신이 구구히 지나치게 염려되어 감히 진달합니다. ‘참판과 대등한 예로 대함이 불편하다’는 말은 처음 재판왜에게서 시작되었다가 대차왜가 나온 후 훈별 등이 책유하자 망발이라고 일컬었는데, 이번에 수역 이석린(李碩麟)이 절목을 강정하려고 동래로 내려갔을 때 어떤 한 종자(從者)가 사사로이 말하기를 ‘조정에서 반드시 예단을 보내고자 하여 판서의 서계로 고친다면 응당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종왜(從倭)의 말은 곧 차왜의 말이고 차왜의

171) 원문의 ‘회(誨)’는 ‘모(侮)’의 오기로 보인다.

말은 곧 예도의 뜻입니다. 만약 예단을 들여보낸 후 그들이 혹 받지 않고 다시 이런 등의 말을 발설한다면 일이 심히 난처해집니다. 그러니 ‘남의 신하는 국경 밖으로 교류함이 없어 당초에 보낸 것이 본디 저절로 옳지 않으니 너희의 감제 요청이 합당하므로 감제를 허락한다’고 하고, 그로 인해 보내지 않는다면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공조판서 김석연(金錫衍)은 말하기를 “소신 또한 보내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단을 가져갔다가 혹 난처한 폐단이 생기면 어찌 염려스럽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형조판서 윤덕준(尹德駿)은 말하기를 “신이 바깥에서 이미 대신들 및 여러 재상들과 상의해보니 신의 뜻은 이언강과 부합했습니다. 대저 전부터 왜인의 말은 우리나라가 일찍이 꺾어 시행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비록 예단을 가져가더라도 끝내 받지 않는다면 도리어 욕이 됩니다. 저들이 앞에 없던 예물 증정을 요청한다면 의당 고집하여 허락하지 않겠지만, 구례를 감제하여 보내지 말라는 요청이니, 국체를 크게 손상하는 줄 모르겠습니다. 저들의 요청을 따라 정지해도 특별히 방해되는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주고자 할 즈음 저들이 ‘대등한 예로 대함이 불편하다’는 것을 위주로 하여 그 등급을 높여달라고 요청하면, 사신이 갑자기 그 일을 당하여 장차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의 심려는 실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였다.

예조참판 김진규(金鎭圭)는 말하기를 “신은 이 일에 대해 일전에 복계와 경연에서 알은 소견을 진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비록 왜인에게 기미책(羈縻策)을 펼치고는 있지만, 또한 어찌 조종의 권한을 모조리 저쪽에 있게 하여 경시 당하는 폐단을 열어서야 되겠습니까? 대개 이 관백의 아들 예단을 당초 저들의 뜻에 곡진히 부응한 것은 비록 후하게 한 데에 잘못이 있지만 임오년(1642) 이래 그 대로 규례를 이루었으며, 또한 동맹국으로서 저들의 저사(儲嗣)에게 증정하여 주는 것은 사체가 자못 중합니다. 아래에서 서로 문안하고 물건을 주는 일은 조금 가벼운 듯하지만, 역시 조정이 명한 바에 관계되니, 저들이 백 년이나 준행하던 것을 무단히 받지 않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서도 그 정지 요청을 갑자기 허락하기는 난처합니다. 그런데 차왜의 구전이 누차 그 말을 바꾸기에 변방 신하로 하여금 서계로 묻게 했더니 이제 그 답한 바가 또 심히 교활하여 아무개 일로 인해 제거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정봉되지 않았다’는 말에 있어서는 차왜의 한때의 추측이라고 핑계대었는데, 만약 아직 정봉되지 않아서 정지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과연 무슨 일에 연유하였는지요? 또한 그 사군(嗣君)의 정봉 여부를 대마도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들의

거짓됨이 이와 같으니, 다시 억눌러 꺾지 않고 오로지 그 말을 따르다면, 조종함이 저들에게 다 있다고 말할 만합니다. 이에 외부의 의논에서는 최석항의 말처럼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처 보내는 데도 절목이 있습니다. 지금은 형편상 도주에게 다시 말할 수 없으니, 사신더러 예도로 가져가서 그 접대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양국이 예로부터 행하던 예절을 차왜의 구전으로 폐할 수는 없기에, 본국의 변방 신하가 대마도에 서계로 물었으나 그 대답 역시 명백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중히 여기는 바가 예절이라, 이제 정지하는 연유도 모르면서 무단히 예를 폐할 수는 없어서, 사신에게 명하여 와서 전하라 하셨다’고 한다면, 저들도 당연히 답하는 바가 있을 텐데, 근거가 없으면 또한 마땅히 끝내 물리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비록 대신의 말대로 보내지 말자고 결정하더라도 의논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관백의 아들 예단은 실로 주상께서 증정하는 것이므로 별폭에 어보를 찍으니 사체가 중대합니다. 저들이 큰 것에 대해 받지 않는데, 사신의 사예단은 사체가 원래 가볍고 또 상접하는 예절도 없으니, 더더욱 어찌 공궤를¹⁷²⁾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예관이 집정과 여러 신하에게 보내는 것은 사사로움 가운데 공적인 것이요, 사신이 집정과 여러 신하에게 공궤함은¹⁷³⁾ 사사로움 가운데 사사로움이니, 그 사이에도 저절로 공·사와 경·중이 있다고 할 만합니다.¹⁷⁴⁾ 따라서 저들은 이 2건의 일을 본디 의당 한결같이 물리치거나 한결같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신된 자는 저들이 조정의 공궤(公禮)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사사로움 공궤를¹⁷⁵⁾ 행하기가 또 어찌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것과 아울러 모두 다 정폐하고, 사신으로 하여금 저쪽에 말하기를 ‘너희 저군이 우리 조정에서 주는 것을 받지 않는지라 사신도 감히 예를 행하지 못한다’ 하고, 집정에게도 이와 같이 말하면, 조종(操縱)의 권한이 거의 저쪽에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잡고 지키는 바가 있어 그들의 말에 쏠리지 않는다는 것을 당연히 알게 될 테니 국체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이언강이 말한 ‘난처하다’는 것은 견식이 있는 듯해도, 이런 염려 때문에 한 일 두 일을 매번 힘써 따르다면, 정말로 깎이고 허약함이 자심하여 장차 수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주상께 진달한 바가 두 가지이니 가려서 행하셔야 합니다. 이언강이 저들에게 말하자고 했던 ‘당초에 보낸 것이 옳지 않으니 너희의 감제 요청이 합당하다’는 말은 대마도에 보낸 서계의 말과 같지 않

172) 원문의 ‘퇴(饋)’는 김진규의 문집 『죽천집(竹泉集)』에 ‘궤(饋)’로 되어 있어, 이제 ‘궤’로 번역하였다.

173) 원문의 ‘퇴(饋)’는 『죽천집』에 ‘궤(饋)’로 되어 있어, 이제 ‘궤’로 번역하였다.

174) 원문은 ‘사(私)’를 모두 ‘예(禮)’로 적었는데, 이는 오류로 보이므로, 이제 원문의 ‘禮中之公’ ‘禮中之禮’ ‘公禮輕重’을 모두 『죽천집』의 ‘私中之公’ ‘私中之私’ ‘公私輕重’에 따라 번역하였다.

175) 원문의 ‘예퇴(禮饋)’는 『죽천집』에 ‘사궤(私饋)’로 되어 있어, 이제 ‘사궤’로 번역하였다.

으니, 그것이 과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병조참판 윤지인(尹趾仁)은 말하기를 “오래 행하던 예를 갑자기 정폐하자고 요청하니 그 뜻이 어디에 근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왜의 정상을 억측하기는 어렵지만, ‘답례하기가 어렵다’거나 ‘대등한 예로 대함이 불편하다’는 등의 두 곡절에서 나오지는 않은 듯합니다. 일찍이 예전에 없던 예단을 그들이 창안하여 요청하면 진실로 엄하게 배척하여 결코 따라서는 안 되지만, 종전에 증명하여 주던 예단이 그 합당함을 볼 수 없는데다 그들이 또 감제를 요청하니, 윤덕준이 말한 ‘꼭 끝이곧대로 보내는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다’는 말이 정말로 옳습니다. 그 정상이 어떠한지 따지지 말고 예단은 의당 보내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였다.

상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신에게 이미 내 뜻을 효유했지만, 왜인의 일은 우리나라가 매번 문득 이기지 못하니 정말로 염려할 만하다. 진실로 마땅히 그대로 보내 허약함을 보이지 말아야 하지만, 이 일은 원래 대단한 것이 아니고 또 도주의 답서가 오고 나서 그것이 예도의 말인 줄 명확히 알았으니, 억지로 가져갔다가 끝내 받지 않는다면 욕을 끼침이 막심하고 또 혹 난처할 단서도 없다. 그러므로 관백의 아들과 집정 이하에게 주는 예단은 보내지 마는 것이 옳고, 사신이 상접할 때 집정 이하에게 주는 사예단은 바로 집지(執贄)의 의리이니 이것과 아울러 정지해서는 안 되고 그대로 두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김[김진규]이 말하기를 “관백의 아들은 그들이 나이가 어리다고 이미 예를 제거하도록 했으니 원래 상접하는 예가 없는데 어찌 집지의 의리가 있겠습니까?” 하니, 상감께서 말씀하시기를 “집정 이하의 사예단을 그대로 주는 일은 이제 막 하교(下敎)했는데, 관백의 아들에게 주는 사예단은 어찌해야 할까?” 하자, 서[서종태]가 말하기를 “원래 상접하지 않으니 폐백을 증명할 의리는 없지만, 이는 유래되어 온 전례이니 집정 이하에게만 주고 관백의 아들에게 주지 않는 것도 불편한 듯합니다. 사신이 간 뒤에는 모든 일을 후하게 따라야지 단지 사리(事理)로만 따져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상감께서 말씀하시기를 “좌참찬은 예전에 저쪽에 갔다 왔으니 반드시 그 물정을 상세히 알 것이다” 하자, 이언강이 말하기를 “신이 비록 사명을 받들어 갔다 왔으나, 왜의 정상은 매우 교활하니 어찌 능히 알 수 있겠습니까? 사신의 사예단 한 사안은 사리로 논하자면 김[김진규]의 말이 옳습니다만, 저군이 비록 사신과 상접하지 않으나 이미 그 나라에 들어갔으니 예단을 주지 않는 것은 온당치 못한 듯합니다. 집정에게는 와서 사신을 만나보는 예절이 있으니 더더욱 예단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김[김진규]이 말하기를 “저들이 조정에서 증명하는 물건을 받지 않으니, 사신이 사적인 예를

행하는 것이 과연 미안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상감께서 말씀하시기를 “좌참찬이 진달한 바가 옳다. 관백의 아들에게도 사신의 사예단을 아울러 그대로 주는 것이 옳다” 하였다. [비국, 호조].

금 5월 15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켰을 때, 상감께서 말씀하시기를 “히코 센다이[彦千代]의 아명 도서 문제를 확정함이 좋겠다” 하자, 영의정 서[서종태]가 말하기를 “도서의 일은 통신사가 조정에 하직하기 전에 마땅히 품달해야 하는데, 여러 의논들이 어긋나 하나로 귀결되지 않고, 근자에 주상의 체후(體候)가 연이어 조용히 조섭(調攝)하는 가운데 계시고 일기가 너무 더운지라, 이런 시기에 등대(登對)하는 것은 감히 못할 바인지라, 어제 조용히 품쳐하여 사행이 승선하기 전에 분부하시라는 뜻으로 계사(啓辭)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마침 입시켰으니 품정할 수 있겠는데, 곡절은 대략 계사(啓辭) 안에 있습니다. 대개 도주가 기축년(1709)부터 그 아들 히코 센다이의 아명 도서(兒名圖書)를 요청하는 것은 그가 아명 도서를 추후에 요청했던 일과는 조금 달라서, 이미 후일에 전례로 삼지 말라는 성교(聖敎)가 있었으니, 특별히 하사한 은혜의 사례를 매번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물며 저들이 다른 일 때문에 보낸 서계 안에 덧붙여 진청했으니, 그 경근함을 상실한 것이 심대합니다. 본디 마땅히 허락하지 않아야 하지만, 작년에 비국의 회계에서 ‘너희가 만약 충근(忠謹)에 독실하면 조정[聖朝]에서 두터운 은혜로 혹 마땅히 헤아려 처리하겠다’는 말을 동래 부로 하여금 관왜에게 유급(諭及)하도록 했으니, 대개 그들이 뒤에 와서 청하는 바가 전연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전대의 조정에서 먼 곳 사람을 무마하느라 되도록 관후(寬厚)하기에 힘써, 가만히 사세를 헤아리다가 필경에는 혹 하사를 허락하는 지경에 쉽게 이르렀습니다만, 이번 통신사의 사행에는 다른 단서 없이 들어주어 허락한다는 뜻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일전의 논의에서 혹자는 ‘도주가 물으면¹⁷⁶⁾ 통신사가 의당 엄히 끊어서 막는 뜻으로 답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지나간 해에 효유한 것과 매우 크게 차이가 남을 면하지 못합니다. 혹자는 ‘의당 조정의 뜻으로 답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사신이 어떻게 간여하여 알겠습니까? 이는 성실에 흠이 있으니 저들이 어찌 믿어주겠습니까? 범간한 왜인의 일은 이 조항과는 비록 다르나, 그들이 이미 전후로 조정의 명을 어기고 거부한 죄가 있으니, 사신이 이로써 책유하고 그대로 효유하기를 ‘너희가 과연 스스로 새로워져 충근을 더더욱 생각하여 옛날에 특별히 은상(恩賞)을 입었던 날

176) 원문의 ‘민(悶)’은 ‘문(問)’의 오기로 보인다.

처럼 함이 있으면, 조정에서 혹 참작하여 특별히 은수(恩數)를 더하는 일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이런 방편으로 말을 잘 하여서 낙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좌의정 김[김창집]이 말하기를 “이 일의 곡절은 수상이 이미 상세히 진달했습니다. 인조조 히꼬미쯔[彦三]와 히꼬망[彦滿]의 도서를 특별히 줄 때 이미 후일에 전례로 삼지 말라는 하교가 있었고, 지나간 해 지로오[次郎]¹⁷⁷⁾가 도서를 얻고자 청했을 때 대신들이 수렴한 의논도 역시 허락하지 않았으니, 히꼬 센다이의 도서를 허급(許給)하는 것이 어찌 중대하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은미한 뜻을 간략하게 보였기에 혹 이것으로 구실을 댈 단서로 삼더라도, 사행 때 저들이 묻지 않으면 제기할 필요가 없고, 혹시 묻는다면 ‘조정에서 가볍게 허락하지 않는 듯하다’는 뜻으로 답변함이 합당합니다” 하였다. 상감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신하들이 각각 소견을 진달함이 옳다” 하였다.

행 병조판서 최석항은 “무릇 왜를 대하는 방도는 허락할 만한 것은 흔쾌히 허락하고 책유할 만한 것은 엄히 책유해야지, 피차를 건주어 따져서 따르거나 어기는 단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아명 도서는 비록 ‘그릇된 규례’라고 하지만 재차 허가하여 이미 전례를 이루었으니, 범간한 왜인의 일과는 사건이 본디 구별되므로, 이것으로 막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일찍이 ‘헤아려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이미 조정의 은미한 생각을 보였으니, 통신사행 때 저들이 묻지¹⁷⁸⁾ 않으면 본디 논할 게 없지만, 혹시라도 물으면 또 과연 더더욱 충근에 독실하여 자신의 정성을 다하는 바가 있으면, 조정의 관대함에 어찌 넉넉히 베풀어 구휼함(優恤)이 없겠느냐는 뜻으로 답하여, 한편으로 스스로 새로 위지는 길을 열고 한편으로 먼 곳을 회유하는 방도로 삼는다면, 방해될 바가 없을 듯합니다” 하였다.

좌참찬 이언강은 말하기를 “일찍이 왜인의 아명 도서를 허가해 준 경우가 두 번이요 허락하지 않은 경우도 두 번입니다. 히꼬미쯔와 히꼬망은 공로가 있었기에 특별한 은혜로 허급해 주었지만, 후일에 전례로 삼지 말라는 하교가 있었습니다. 그 후 유게이 지로오[右京次郎]¹⁷⁹⁾는 도주의 후계자가 된 뒤 추후로 그의 아명 도서를 요청했는데, 조정에서 불허한 것이 사리가 분명하고 정당하여 그가 감히 다시 요청하지 못했습니다. 히꼬 센다이의 도서는 사례가 조금 다르나, 그

177) 지로오[次郎] : 뒤에 나오는 유게이 지로오[右京次郎]를 가리킨다.

178) 원문의 ‘공(公)’은 ‘문(問)’의 오키로 보인다.

179) 유게이 지로오[右京次郎] : 앞의 내용들을 보면, 그는 아들 히꼬 센다이의 도서를 요청하는 대마도주 다이라 요시가다[平義方]이다.

요청하는 바 또한 전연 근거가 없지¹⁸⁰⁾ 않은데, 당초 이미 후일에 전례로 삼지 말라는 판부(判付)¹⁸¹⁾가 있었으니, 지금에 와서도 가볍게 허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갑신년(1704) 한후원(韓後瑗)¹⁸²⁾이 도해했을 때 조정에서 효유하기를 ‘히꼬망의 도서를 환납하면 지로오[次郎]의 도서를 마땅히 허급하겠다’고 했는데, 히꼬망의 도서가 환납된 후에도 끝내 지로오의 도서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번 히꼬 센다이 문서의 요청은 기축년(1709)에 이어서 시발되었는데, 그 후 범간한 왜인의 일에 저들이 서계를 받지 않은¹⁸³⁾ 죄가 있으니, 우리의 도리로서는 꼭 허락할 의리가 없지만, 조정에서 처음에 굳게 막지 않은 것은 본디 먼곳 사람의 희망을 끊지 않음이었고, 그때 책유한 말에 이미 허락하려는 은미한 뜻도 보였으니, 지금 영원히 막겠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왕명을 받든 신하는 역관과는 달라서 조정의 뜻을 모른다고 답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도해 후 저들이 만약 질문을 제기하면 응답할 때 완곡하게 돌려 말하지 않아서는 안 되니, 만약 ‘지금 이후로 너희가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새로워지면 조정에서도 끝내 마땅히 헤아려 처리하는 방도가 있을 것이다’고 하면 될 듯합니다” 하였다.

공조판서 김석연이 말하기를 “신의 생각에는 사신이 모른다고 답해서는 안 되니, 저들이 만약 요청하면 ‘이는 사신이 가타부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돌아가서 조정에 아뢰어야 마땅하다’고 답한다면, 무엇이 사리에 해롭겠습니까?” 하였다.

형조판서 윤덕준은 말하기를 “조정에서 이미 시종 허락하지 않을 뜻은 없으니, 사신이 저쪽에 도착한 후 저들이 만약 다시 말한다면, 사신이 스스로 자기 생각으로 답하기를 ‘너희가 만약 스스로 정성을 다하여 성실하고 신의가 있으면 조정에서 꼭 불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예조판서 김진규는 말하기를 “도서의 일은 신이 등록을 살펴봤더니 히꼬미쯔와 히꼬망의 도서를 인조조에도 처음에는 허가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인이 계속 해를 연이어 빌면서 요청하니, 극도로 지리하여 그 고충을 이기지 못해 특별한 은혜로 허가해 주고는, 후일에 전례로 삼지 말라는 하교가 있었습니다. 이미 조종조의 성명(成命:확정된 명령)이 있었으므로, 을유년(1705) 지로오의 도서 일로 대신들에게 의논을 수렴하자, 고(故) 상신(相臣) 신완(申琬)¹⁸⁴⁾과 서문중(徐

180) 원문의 ‘지(至)’는 ‘무(無)’의 오기로 보인다.

181) 판부(判付) : 상주(上奏)한 안(案)을 왕이 허가하던 일.

182) 한후원(韓後瑗, 1659-?) : 청주 한씨로 자는 백옥(伯玉)이다. 숙종 4년(1678) 증광시의 역과에 급제하여 왜학(倭學)으로 중사하였다.

183) 원문의 ‘소수(所受)’는 ‘불수(不受)’의 오기로 보인다.

184) 신완(申琬, 1646~1707) : 평산 신씨로 자는 공헌(公獻), 호는 경암(綱庵)이다. 영의정 신경진(申景禎)의 증손이며, 박세채(朴世采)의 문인이다. 현종 13년(1672)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대사간과 우의정 등을 역임하였다.

文重)¹⁸⁵⁾이 현의하기를 ‘임오년(1642) 일은 한때의 특별한 은혜였고 또한 후일에 전례로 삼지 말라는 하교가 있었으니, 비단 왜인도 다시 희망하는 바가 있어서는 안 됨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정에서도 감히 선대 조정의 일을 재차 의논해서는 안 된다’며 그 막는 것이 매우 준엄했는데, 주상께서 ‘내 뜻에 딱 부합된다’는 비답을 내리셨습니다. 의논하는 자가 혹 ‘임오년(1642)은 히꼬미쯔와 히꼬망의 도서를 아울러 허락했으므로, 후일에 전례로 삼지 말라는 하교가 있었지만, 지금 단지 이 히꼬 센다이 도서뿐이니 이 하교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고 하나, 을유년(1705)에 지로오가 구한 것도 일개 도서였을 뿐인데, 그때 대신들이 현의한 바는 임오년의 성교를 끌어왔으니 지금에만 어찌 유독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역시 성조께서 하교하신 바를 마땅히 준수하여 허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개 본 조정이 왜인에게 비록 기미책을 일삼아도 그 염려하고 근심하는 바는 청나라 사람과 다름이 있는데, 이 일은 비록 허락하지 않더라도 어찌 틈이 생기는 데 이르겠습니까? 권이진(權以鎭)이 범간한 왜인의 일로써 말한 것은 실언이라 할 만하니, 이제 하필 그 말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또한 ‘지나간 해에 대략 은미한 뜻을 보였다’는 말 역시 문서에 있는 일은 아니니, 이 어찌 계약문서[左契]¹⁸⁶⁾를 잡고서 반드시 그 전후의 언사에 어긋남이 없이 합치되기를 요구하는 것과 같겠습니까? 임오년(1642)부터 다시 허락하지 않은 것이 지금까지 70년에 이르니, 어찌 선대 조정의 하교를 준수하지 않고 장차 허락하겠다는 뜻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혹자는 ‘히꼬 센다이의 일은 지로오와는 차이가 있다. 지로오는 본디 맏아들이 아니고 또 대신하여 선 뒤에 추후로 요청했다’고 하지만, 유게이[右京]가 지금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한편, 일이 지금해야 될 것이라면 비용을 아껴서는 안 되지만, 지금해서 안 될 것이라면 소모되는 비용 역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영남의 민력(民力)은 이미 왜인 접대에 고갈되었는데, 또 가볍게 도서를 허락하여 배 1척을 더 나오게 하면 소모되는 비용이 너무 많으니, 허여하지 않음만 같지 못합니다. 또한 이번에 도주가 답한 서계에는 그 나라의 뜻을 명확히 말하지 않았으니, 사신이 어찌 유독 조정의 뜻을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저쪽에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저들의 교활하고 거짓됨이 이와 같으니, 우리 사신이 저들의 물음에 답하지 않는다고 불성실이라 하는 것은 신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또 전일에 변방 신하가 이 일에 대해 은미한 뜻을 보였

185) 서문중(徐文重, 1634 ~ 1709): 달성 서씨로 자는 도운(道潤), 호는 몽어정(夢語亭)이다. 현종 14년(1673) 학행으로 천거되어 청도군수와 상주목사를 역임하고, 숙종 6년(1680)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광주부윤·경상감사를 지낸 뒤 공조·형조·병조판서를 거쳐 영의정에 이르렀다.

186) 좌계(左契) : 『도덕경』에 나오는 말로, 계약할 때 약속을 나무에 적고 그 나무를 둘로 쪼개 두 사람이 각각 하나씩 징표로 가지는데, 그 나뭇잎 부신(符信)의 왼쪽 것을 채권자가 가진다.

다가 지금 도리어 난처하게 되었는데, 하물며 사신이 그 땅에 들어가서 말함에 있어서랴! 신의 생각에는 저들이 질문을 하더라도 사신이 ‘우리는 통신사로서 왔으니 사신의 일이 직무요 너희 도서의 일은 우리의 담당 직무로서 간여하여 알 바가 아니다’고 한다면, 어찌 체모를 얻지 못하겠습니까?” 하였다.

병조참판 윤지인은 말하기를 “신이 전례의 곡절을 알지는 못하나, 도주의 아들에게 도서를 하사하여 지급한 것은 본래 한때의 은전에서 나왔으니, 도주가 만약 우리나라를 위해 그 성실과 신의의 도리를 다한다면 또 도서를 하사해도 저절로 명분이 있지만, 근래에는 관왜가 혹 범간하기에 이르러도 끝내 법을 적용하지 않으니, 그 교만 방자한 습속은 매우 극히 가증스러워, 지금 한창 이로써 책망하고 있으니 어찌 은혜로운 전례를 베풀어서야 되겠습니까? 동래부사 권이진이 이것으로 말거리를 잡아 배척한 것이 불가한 줄 알지 못하겠습니다. 만약 준엄히 거절하는 뜻을 조금이라도 보이고자 한다면, 이번 사행 때 그들이 혹 제기하여 허락을 요청하는 일이 있더라도, 사신이 답하기를 ‘도주가 양국 사이에서 마음을 다하고 금법 조목을 넘지 않으면, 조정에서도 어찌 도서의 하사를 끝내 거절하겠는가마는, 다만 도주가 금지 조목을 준수하지 않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조정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대개 여기에서 연유한다’고 운운하면 합당함을 얻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신이 모른다고 답하는 것에 있어서는 성실과 신의의 도리에 흠결이 있습니다” 하였다.

상감께서 말씀하시기를 “을유년(1705) 대신들에게 의논을 수렴한 후 판부한 일은 바로 지로오가 추후에 요청한 아명 도서였다. 히꼬 센다이의 아명 도서 일과는 차별되지만, 이는 사신의 담당 직무가 아니므로 먼저 말을 제기할 필요는 없고, 저들이 물으면 대답할 수는 있되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 나의 본뜻은 이와 같다. 또한 사신으로서의 일과 체면은 교활한 왜의 답서에 예도에서 다투는 의도를 말하지 않은 것과는 다름이 있다” 하였다.

이언강은 말하기를 “역관은 주관하는 것 이외의 다른 일은 감히 간여하여 알지 못하지만, 사신은 이와 다르니, 모른다는 것으로 답을 하면 성실의 도리가 아닌 듯합니다. 만일 굳게 막고자 한다면, 당초 헤아려 처리하겠다는 뜻을 은미하게 보인 것과는 크게 차이나는 부분이 있으니, 말을 만드는 사이에 여분을 남기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좌의정이 말하기를 “그들에게 효유하기를 ‘예전에 너희 무리가 충근했기에 특별히 도서를 하사했지만, 이는 매번 전례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다시 가볍게 허락하지 않은데다, 하물며 근래 너희가 하는 것이 그릇됨이 많음에랴! 이 때문에 더더욱 허락하지 않는다. 이 뒤로 과연 능히 예전처럼 충근하면 조정에서도 어

찌 참작하여 헤아리는 방도가 없겠는가?’라고 말할 뿐, 장차 허락하겠다는 뜻을 드러내놓고 보여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상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일은 사신이 저들을 대할 때 준엄히 막아서도 안 되고 허가해 주겠다는 뜻을 드러내놓고 말해서도 안 된다. 만약 ‘조정에서 혹시 헤아려 처리할 방도가 있는 듯하다’는 등의 말로 잘 언급하면 좋을 것이다” 하였다. 김[김진규]이 말하기를 “주상의 하교대로 하더라도 조정의 뜻으로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이언강이 말하기를 “사신이 답하는 말은 조정의 명령으로 말을 삼지 말고, 윤덕준이 진달한 바와 같이 그의 사사로운 말로 답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하였다. 상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사신의 일과는 무관하니, 사신의 사사로운 말로 답하는 것이 가하다”고 하였다. [비변사, 예조].

금 5월 15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했을 때, 좌참찬 이언강이 계한 바에 “범간한 왜인에게 형률을 적용하는 일을 대마도가 약조에 없다고 핑계대며 시종일관 거역하고 있는데, 왜관의 살인자를 피차 같은 형률로 처단하니 범간한 사람도 역시 같은 죄로 심리하여 처단하는 것이 사리에 당연하니,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어찌 감히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번 사행이 저쪽에 도착한 후 범간한 왜인을 우리나라 사람과 같은 형률로 감죄(勘罪)¹⁸⁷⁾하는 일을 명확히 약조로 정해야 하기에 감히 계달합니다” 하였다. 예조판서 김진규가 말하기를 “범간한 자는 피차 의당 같은 죄여야 하는데, 왜가 같은 죄로 심리하여 처단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약조에 없다고 핑계대니, 이제 의당 그들과 함께 확정해야 합니다” 하였다. 행 병조판서 최석항은 말하기를 “이 일은 약조할 필요는 없고 마땅히 제찰(制札)¹⁸⁸⁾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였다. 이[이언강]가 말하기를 “소위 제찰이 곧 약조입니다” 하였다. 상감께서 말씀하시기를 “범간은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은 효시(梟示)¹⁸⁹⁾하고 왜인은 감죄하지 않으니¹⁹⁰⁾ 이러한 이치는 없을 듯하다. 이번 사행에서는 피차 같은 형률로 감죄한다는 뜻을 명백히 정하여 약조로 삼을 일로 분부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비변사].

비변사에서 입계하기를, 이제 동래부사 이정신(李正臣)의 장계 및 대마도의 서계 등본을 보니 곧 서식 고치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 ‘대군(大君)’의 칭호는 이미 77년이나 오래 되었는데, 복구를 요청하는 말이 갑자기 뜻밖에 발

187) 감죄(勘罪) : 죄인을 심의하여 처벌함.

188) 제찰(制札) : 제부(制符). 금제(禁制)의 문서나 게시.

189) 효시(梟示) : 죄인의 목을 베어 높은 곳에 매달아두고 경계하는 뜻으로 못사람들에게 보임.

190) 원문의 ‘倭人則勘罪’는 『숙종실록』 권50, 37년 5월 15일 해당 기사에 ‘倭人不爲勘罪’로 되어 있어, 이제 실록에 입각하여 번역하였다.

설되니 지휘자가 있는 듯합니다. 만일 터럭 하나라도 경외하고 꺼리는 마음이 있다면 어찌 이런 해괴한 거조가 있겠습니까? 이 일은 접때의 예단 문제에 견줄 바가 아니니, 엄한 말로 준절히 물리치지 않을 수 없기에, 묘당으로 하여금 신속히 복주(覆奏)하도록 할 일로 하명하셨습니다. 괴원[승문원]의 오래된 등록을 취하여 상고하니, 천계(天啓) 갑자년(1624) 국서에는 ‘봉서 일본국왕(奉書日本國王)’이라 하였고, 승정(崇禎) 을해년(1635) 대마도 서계에 이르러 비로소 ‘대군’의 칭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자년(1636) 예관의 답서 또한 그 호칭한 바에 따라 일컬었는데, 사세로 미루어 보면 저들이 반드시 요청한 후에 허락하여 그 서식을 고치고 그대로 규례로 삼은 것입니다. 지금 이 복구를 요청하는 말은 실로 뜻밖에 나왔는데, 교활한 왜의 정상을 비록 헤아릴 수는 없지만, 가령 그 나라에서 정말로 복호(復號)한 일이 있다면, 대차왜가 나와 오로지 통신사행 때의 절목만 강정하였을 뿐, 서식 개정은 관계됨이 최고로 무거움에도 당초에 제기하여 논의하지 않았다가, 이제 사신이 국서를 받들어 이미 출발한 뒤에, 비로소 예도의 명령이라 일컬으며 갑자기 이런 요청을 발설하여 오래 유래되어온 전례를 바꾸고자 하니, 그들은 오직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경외하고 꺼리는 마음이 전혀 없으니 정말로 매우 가증스럽습니다. 성교(聖敎)에 따라 엄한 말로 준절히 배척하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전교(傳敎)가 내려옴에 즉시 복주함이 마땅하나, 일이 변방의 사정에 관계되므로 문자로 갖추어 진달하기 어려운지라, 내일 비록 날짜 차례는 아니지만 여러 재신들과 입대(入對)하여 품정하고자 합니다. 한편, 병자년(1636) 서식에서 ‘대군’이라 개칭할 때 당연히 곡절이 있었을 듯한데, 괴원과 예조에는 모두 근거할 만한 문적이 없고, 본사에 있는 동래부 접왜식례등본(接倭式例謄本)에는 ‘무인(1639) 년간 왜인이 와서 대군으로의 개칭을 요청하니 조정에서 그에 따랐다’고 하였으나 그 상세한 것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실록에 만약 기재된 바가 있으면 저들에게 답할 때 준거로 말할 수 있으니, 춘추관이 소장한 실록을 본관 당상으로 하여금 진작 고출하게 하심이 어떠할지? 전교하기를 “윤허한다”고 하심. [춘추관, 예조, 승문원].

신묘(1711) 5월 29일

금 5월 27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했을 때, 영의정 서[서종태]가 계한 바에 “어제 동래부에서 장계한 왜인의 서식(書式) 일로 특별한 하교가 있었는데 아직 회계하지 않아서 문자를 상세히 살피지 못하고 오늘 입대(入對)¹⁹¹하여 품정하겠다는 뜻으로 계사(啓辭)를 하였습니다. 계사에 이미 진달했으나 간

략하게 대충 인용하자면, 관백은 곧 그 국왕의 집정 신하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그 나라 안에서 감히 거만하게 왕으로 호칭하지는 못하고 혹 ‘대장군’이라 칭하면서 왕의 일을 실제로 행한 듯합니다. 국왕이라 칭한 것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습니다. 만력(萬曆) 정사년(1617) 이래로 왕복한 국서의 서식에는 ‘일본국왕’이라 적었는데, 승정 을해년(1635) 대마도의 서계에는 다이라 시게노부[平調信]의 일 때문에 관백을 자랑하느라 비로소 ‘대군’이라는 말이 있었고, 조정의 회답 서식 역시 처음으로 ‘대군’이라 썼습니다. ‘대군’이라 운위한 것은 비록 존귀한 칭호이지만, 그때 필시 그들의 요청으로 인하여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고친 칭호를 받고도 말이 없어서 그대로 규례를 삼은 것이나, 이에 대해 근거할 만한 것은 얻지 못했고, 지금 실록을 상고해도 역시 수록된 곳을 얻지 못했습니다. 비록에 있는 접왜식례(接倭式例) 1책에 ‘무인년(1639) 왜인의 요청으로 인해 대군이라 개칭했다’고 운운한 말이 있지만, 일찍이 그 연유를 상세히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서식 개서(改書) 요청은 그 사정을 알 수 없는데, 어쩌면 관백이 새로 서서 매사에 힘써 크게 자궁하느라 이러는 것 같습니다. ‘국왕’이라 쓰는 것은 옛 서식이니, 옛것을 따라 개서하겠다는 요청은 참람하고 외람된 호칭으로 우리를 업신여기는 것에 견줄 것은 아닙니다. 옛 조종조 때는 에도에서 직접 조정에 서계를 소통한 일도 있지만, 이는 폐지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래서 비록 대마도로 하여금 뜻을 소통하게 하고는 있으나, 서식의 일은 중대하니, 만약 그 사유를 진달하고 공손한 뜻을 다하여 곡진히¹⁹²⁾ 청한다면, 조정에서 진실로 허락하여 고치는 것이 합당하지 어찌 인색하게 고집하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 통신사가 정해진 지 벌써 오래이고 근일에 절목을 강정할 때도 일찍이 이렇게 말하지 않다가, 이제 국서가 완성되어 사신의 도해가 임박한 날에 와서야 비로소 감히 치서(馳書)하여 요청했습니다. 이는 대마도의 죄는 아니지만, 저 나라에서는 예단과 이 일로 말을 보내어 어려워하는 것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어찌 마치 지휘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 말하는 대로 굽혀서 따라서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엄히 배척하기를 정말로 성교(聖敎)대로 해야 합니다. 오늘 품정할 바는 서계를 받느냐 마느냐에 있는데, 여러 의논들이 혹 ‘의당 동래부에서 한 것처럼 변방 신하로 하여금 물리쳐 받지 않게 하여 그 뜻을 끊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의 생각에는 큰 조정에서 어찌 꼭 물건을 끊어야 하겠습니까? 올려보내게 하여 이치에 맞게 답하면 무엇이 방해되겠습니까? 이제 답하기를 ‘비록 이것이 구례이나 지

191) 입대(入對) : 임금 앞에 나아가 자문에 응하던 일.

192) 원문의 ‘망곡(忘曲)’에서 ‘망’자는 오기로 보인다.

금의 서식을 거행한 지 이미 70여 년이 되었으니 그 옛것을 가볍게 고치기는 어렵다. 하물며 국서가 이미 완성되어 사명(使命)이 벌써 출발했는데 갑작스레 요청하는 것은 사체가 전도되어 따라 줄 수 없다. 객사(客使)가 오거나 다른 때라면 혹 어렵게 여겨 보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고 운운하면 합당할 것 같습니다” 하였다.

좌의정 김[김창집]이 말하기를 “서식 개정은 예절 중에 중대한 일인데, 저들이 만약 이런 뜻이 있었다면 대차왜가 나와 절목을 강정할 때 어찌 언급하지 않고서 이제 사신이 출발한 뒤에 갑자기 요청합니까? 동래부가 서계를 받지 않은 것은 정말로 체모를 얻은 것입니다. 신의 처음 생각은 동래부로 하여금 시종일관 엄히 물리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력 정사년(1617) 고(故) 상신(相臣) 오윤겸(吳允謙)¹⁹³이 통신사가 되었을 때 종사관이었던 고 판서 이경직(李景稷)¹⁹⁴의 일기를 얻어 보니, 관백의 회답 서계에 단지 ‘일본국 미나모토 히데타다[源秀忠]가 삼가 재배하고 상서합니다. 운운’했는데, 그때 사신이 ‘왕으로 일컫지 않으면 어찌 우리나라와 대등한 예로 대할 수 있겠소?’ 하면서, 반드시 ‘왕’자를 쓰도록 했습니다. 이로 보면 서식에 왕을 칭한 것은 실로 우리 쪽에서 발설하였습니다. 왜인도 혹 그 일의 상황을 알고서 저들이 만약 이것을 잡아 말한다면 답할 말이 없으니, 동래부에 분부하여 대마도의 서계를 올려보내도록 하고, ‘대차왜가 나왔을 때 당초에 강정하지 않고 갑자기 곧장 요청하는 것은 사체가 급작스러워 짐짓 허락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말을 만들어 답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였다.

우의정 조[조상우(趙相愚)]는 말하기를 “동래부의 장계가 들어온 이후 많은 신하들이 놀라지 않는 자가 없었고 성상께서도 매우 놀랍다고 하교하셨으니, 마땅히 성지(聖旨)를 한결같이 준수하여 엄한 말로 준절히 배척해야 할 바인데, 옛일을 취하여 상고하니 정사년(1617) 왕호를 일컫은 것이 우리나라 통신사가 억지로 요청한 데서 나왔지, 애초에 방자하게 스스로를 뽐내었던 일이 아니었으

193) 오윤겸(吳允謙, 1559~1636) : 해주 오씨로 자는 여익(汝益), 호는 추탄(楸灘). 토당(土塘)이다. 선조 30년(1597) 문과에 급제하여, 광해군 원년(1609) 동래부사를 역임하면서 선정을 펼쳤다. 광해군 9년(1617) 일본에 회답사(回答使)로 가서 임란 때 잡혀간 150여 명의 포로를 데려왔고, 1622년 진하사(進賀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인조반정 이후 우의정과 좌의정 등을 역임하였다.

194) 이경직(李景稷, 1577~1640) : 전주 이씨 덕천군(德泉君) 이후생(李厚生)의 후손으로 자는 상고(尙古), 호는 석문(石門)이다. 선조 38년(1605) 식년시와 증광별시에 잇달아 합격했고, 광해군 9년(1617) 회답사(回答使) 오윤겸(吳允謙)의 종사관으로 일본에 다녀왔다. 인조반정 이후 개성 유수(開城留守)와 도승지 등을 역임했고, 1639년 봄 강화유수(江華留守)에 제수되어 전후 복구에 힘쓰다가 1640년 7월 임소에서 64세로 순직했다. 일본을 다녀온 후 『부상록(扶桑錄)』을 지었다.

니, 지금 힘써 부응해도 진실로 해가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대차왜가 왕복하며 절목을 강정할 때는 일찍이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다가, 이제 통신사가 국서를 가지고 여정에 오른 후 갑작스레 그 일을 발설하여, 그 매사에 오직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습속이 예전부터 이와 같았으니, 이제 의당 엄히 배척하되, 한편으로는 중대하고 어렵다는 뜻으로 완곡하게 말을 만든다면, 교린의 의리에 있어 신중한 방도를 얻었다고 일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서[서종태]가 말하기를 “대마도의 사정이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에도에 문서를 주고받는 일이 있으면 사행이 지체될 근심이 있을 듯하니, 이것이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왜의 말이 ‘서계를 전하지 못하면 반드시 장차 에도에 중죄를 얻을 것이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 그 실정이 마땅히 이와 같을 듯합니다. 외부의 논의는 ‘도주가 연전(年前)에 제가 서계를 받지 않은 죄가 있으니,¹⁹⁵⁾ 지금 그 서계를 배척하더라도 사체에 엄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대마도에 그런 죄가 있더라도 조정에서는 관대해야지 하필 비교하여 따져 이렇게 하겠습니까? 도주는 우리나라에 대하여 속번(屬藩)과 같음이 있는데, 이제 만약 그 서계를 받아 에도에 죄를 얻지 않도록 하면, 그들 역시 사람의 마음이 있으니, 혹 감사하여 부끄러워할 줄 알 것입니다” 하였다. 상감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신하들이 차례로 진달하라” 하였다.

행 병조판서 최석항은 말하기를 “관백의 칭호는 국왕이라 일컫기도 하고 대군이라 일컫기도 하니, 서계 안에 그들이 자칭하는 대로 쓰는 것은 불가함이 없는 듯합니다. 다만 통신사를 요청함이 3년 전에 있었고 칭호 복구는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은데, 대차왜가 나왔을 때 이런 뜻을 아뢰었다면 허락하는 것이 옳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 통신사가 발행한 지 이미 오래되어 승선이 멀지 않은데 갑작스레 와서 고하여 마치 지휘하는 듯한 점이 있으니, 그 교만 방자하고 경시하며 업신여기는 습속은 참으로 극히 놀랍고 한스럽습니다. 지금 만약 ‘이처럼 중대한 일을 대차왜가 나왔을 때 어찌 보고하지 않았으며, 서계가 완성되어 통신사가 이미 출발한 후 창졸간에 급히 와서 말을 하니 형편상 허락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답한다면, 사의(事宜)에 부합할 것 같습니다” 하였다.

좌참찬 이언강은 말하기를 “대체(大體)로써 말하면 서식 개정은 우리에게 별달리 손상되는 바는 없습니다. 만력 정사년(1617) 이경직의 일기에 ‘왕’자를 요청하는 말이 있으나, 그 이전 병인년(1566) 에도의 서계에 이미 ‘일본국왕 미나모토 히데타다[源秀忠]’라 일컬었으니, 정사년(1617) 답서에 ‘왕’자를 쓰지 않은 까

195) 원문의 ‘약(若)’은 ‘유(有)’의 오기로 보인다.

답을 모르겠습니다. 한편, 을해년(1635) 도주의 서계에 ‘우리 대군[我大君]’이 있었기에 우리나라의 회답 서계도 ‘귀국 대군[貴大君]’이라 일컫고는 그대로 서식을 이루었습니다. 경전(經傳) 속의 글뜻으로 말하자면 ‘대군’이란 칭호는 ‘국왕’보다 높음이 있는 듯한데, ‘왕’을 고쳐 ‘군’을 칭할 때 우리나라에서 일찍이 어려워하지 않았으니, 지금도 복호(復號) 요청에 당연히 어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행이 이미 국서를 받들어 조정에 하직했으니 추후에 고치는 한 절목은 전도(顛倒)된 듯하므로, 이제 ‘절목을 강정한 후 서식을 개정하는 것은 사체에 미안하다’며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반드시 말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행(行) 훈련도정(訓練都正) 윤취상(尹就商)은 말하기를 “소신의 뜻은 이언강이 진달한 바와 같습니다” 하였다.

예조참판 김진규는 말하기를 “신이 비국의 계사(啓辭)로 인하여 춘추관 당상으로로서 본관에 이르러 실록을 고출하였습니다. 실록 고출 후에는 글을 써서 아뢰이 전례인데, 등대할 때의 규례가 너무 임박한 까닭에 글로 아뢴 여가가 없었으니, 청컨대 먼저 실록 고출의 일을 진달한 후 소회를 진달하겠습니다. 신이 사관(史官)과 함께 인조조 실록을 살펴보니, 을해년(1635) 겨울에 대마도 서식 변경의 일이 있었는데, 이는 중국 조정의 연호를 쓰지 않고 간지(干支)만 쓰고 또 예조 당상의 ‘합하(閣下)’ 칭호를 고쳐 ‘족하(足下)’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조대왕께서 받지 말도록 하셨는데, 묘당에서 ‘작은 예절에 간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면서 받기를 청하여, 단지 ‘족하’라는 칭호를 다시 쓰지 말도록 하였습니다. 서계는 곧 괴원등록(槐院謄錄)에 실린 대군으로 개칭한 서계이나, 개칭했다는 말은 괴원등록 안에 기록된 곳이 없습니다. 병자년(1636) 봄 예관의 답서와 을해년(1635)에 온 서계에도 ‘대군’이라 칭했으나, 실록에는 이 서계를 신지 않았습니 다. 그 해 통신사를 들여보낼 때도 서계가 있었는데, 사신을 들여보낸 일과 아울러 기록되지 않았습니 다. 단지 정축년(1637) 3월에 돌아온 통신사 임광(任統)¹⁹⁶·김세렴(金世濂)¹⁹⁷·황호(黃昊)¹⁹⁸를 인견할 때 왜의 사정을 질문

196) 임광(任統, 1579~1644) : 풍천 임씨로 자는 자정(子靜)이다. 인조 2년(1624) 별시문과에 급제했고, 인조 14년(1636) 통신사 정사로 일본에 갔다가 이듬해 돌아와 『병자일본부기(丙子日本日記)』를 저술했다. 형조참판·충주목사·안동부사를 거쳐 1642년 황해도관찰사·도승지 등을 지내고, 인조 21년(1643) 소현세자(昭顯世子)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나라에 갔다가 1644년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197) 김세렴(金世濂, 1593~1646) : 선산 김씨로 자는 도원(道源), 호는 동명(東溟)이다. 조부는 영흥부사(永興府使) 효원(孝元)이다. 광해군 8년(1616) 증광문과에서 장원급제했고, 인조반정 이후 여러 관직을 거쳐, 1636~1637년 통신사 부사로 일본에 다녀와 『해사록(海槎錄)』을 저술했다. 이후 황해감사·대사헌·도승지·호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198) 황호(黃昊, 1604~1656) : 창원 황씨로 자는 자유(子由), 호는 만랑(漫浪)이다. 약관에 문과 급제하여 대사성·대사간 등을 역임했다. 1636~1637년 통신사 종사관으로 일본에 다녀와 『해사록

한 이야기가 수록되었는데 칭호는 거론한 곳이 없습니다. 고(故) 상신(相臣) 민정중(閔鼎重)¹⁹⁹⁾이 동래부사가 되어 찬술한 접왜식례에 ‘무인(1638) 년간 왜인이 와서 대군으로 개칭할 것을 요청하니 조정에서 따랐다’고 했는데, 실록에는 무인년 한 해 동안 원래 이런 일은 없습니다. 대저 우리나라의 문적이 미비하여 그 대군으로 개칭한 곡절을 상고할 수가 없습니다. 또 『고사촬요(攷事撮要)』²⁰⁰⁾ <접대왜인>조에 ‘국왕전 송사(國王殿送使)’의 규례가 있는데, 그 주석에 ‘나라 안에서는 감히 왕이라 일컫지 않는다’고 했으니, 대개 그 왕호는 감히 그 나라 안에서는 일컫지 못해도 타국에는 일컬었습니다. 선조조 경인년(1590) 통신사 때 국왕전이 우리에게 보낸 국서에 ‘일본국왕’이라는 칭호가 있었고, 임란 이후 을사(1605) 년간에 대마도주가 거간(居間)하여 다시 통지하기를 요청하므로, 병오년(1606) 조정에서 박대근(朴大根)²⁰¹⁾으로 하여금 왜인 다찌바나 도시마사[橋智政]²⁰²⁾와 문답하게 했더니, 다찌바나 도시마사가 ‘서계 소통의 전례는 일본국왕으로 썼다’고 했으며, 그 후 또 손문옥(孫文或)²⁰³⁾으로 하여금 다찌바나 도시마사와 문답하게 했는데, 손문옥²⁰⁴⁾이 ‘이에야스가 반드시 국왕으로 일컬은 뒤에 우리의 국서도 역시 국왕이라 일컬을 수 있다’ 하고는, 인하여 경인년(1590)의 일을 언급하였습니다. 이로 보면 국왕의 칭호는 그 유래가 오래되었습니다. 정미년(1607) 사신을 파견할 때의 국서에는 ‘조선국왕 성휘 봉서 일본국왕(朝鮮國

(海槎錄)』을 남겼고, 효종 3년(1652) 사은부사(謝恩副使)로 연경에 다녀왔다.

- 199) 민정중(閔鼎重, 1628-1692) : 여흥 민씨로 자는 대수(大受), 호는 노봉(老峯)이다. 민유중(閔維重)의 형이요 인현왕후의 백부이다. 인조 26년(1649) 문과에 급제하여, 효종 9년(1658)에 동래부사로 부임했고, 좌의정 등을 역임했다.
- 200) 『고사촬요(攷事撮要)』 : 조선 명종 9년(1554) 어숙권(魚叔權)이 사대교린을 비롯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반 상식 등을 뽑아 엮은 유서(類書). 선조 때 허봉(許篈)이 증보(增補), 박희현(朴希賢)이 속찬하고, 인조 때 최명길(崔鳴吉)이 증감 수정한 뒤, 영조 47년(1771) 서명응(徐命膺)이 『고사신서(攷事新書)』로 개정 증보하기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간행되었다.
- 201) 박대근(朴大根) : 무안 박씨로 자는 현구(玄久)이다. 임진왜란 때 적정(敵情)을 정찰한 공으로 서부참봉(西部參奉)이 되었고, 도요토미의 사신을 자주 만나 능(陵)을 범한 자를 색출하는 등의 공으로 첨지중추부사에 특진되었다. 그 뒤 여러 번 사신을 따라 일본에 갔으며, 또 선위사(宣慰使)를 따라 부산에 가서 포로로 잡힌 남녀 수천 명을 쇄환하는 데 힘썼다. 관직은 동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 202) 다찌바나 도시마사[橋智政] : 1606년 11월 이에야쓰의 국서를 소지하고 부산에 도착한 일본 사절단의 정사(正使). 이에 1607년 1월 여우길을 정사로 한 사절단 467명이 부산을 떠나 일본으로 향했다.
- 203) 원문의 ‘혹(或)’은 ‘욱(或)’의 오키로 보인다. 이하 동일하다.
- 204) 손문옥(孫文或) :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 왜군의 포로가 되어 오랫동안 일본에 억류, 돌아올 때 일본 사정을 자세히 탐지하여 군사·외교 등에 기여하였다. 1598년 노량해전 당시 이순신(李舜臣) 휘하에 참전, 이순신의 전사를 비밀에 붙이고 평상시와 다름없이 군사들을 독려하여 승리를 이끌었다. 1604년 승려 유정(惟政)과 함께 일본에 들어가 조선인 포로 3,000여명을 데리고 돌아온 뒤, 1606년 서장관(書狀官)으로 대마도에 파견되어 전란 수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관직은 부장(部將)·만호(萬戶)·첨지중추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王 姓諱 奉書 日本國王)’이라 썼는데, 에도의 회답 국서에는 다만 ‘일본국 미나모토 히데타다’라고만 하고 봉작을 쓰지 않았으니, 이는 정미년 통신사행의 부사 경섭(慶漣)²⁰⁵이 기록한 바입니다. 병인년(1566) 국서에는 ‘일본국왕 미나모토 히데타다’라 썼는데, 이는 이번의 이 동래부가 베껴 보낸 옛 문서에 실려 있습니다. 정사년(1617) 이경직이 사명을 받들 때 써서 내린 국서와 또 저들의 답서에는 왕호를 쓰지 않았는데, 우리 사신이 ‘왕으로 일컫지 않으면 대등한 예로 대할 수 없다’면서 그 고쳐 써서 왕을 칭하도록 요구하여, 그대로 이를 준행하여 갑자년(1624)까지 이르렀습니다. 을해년(1635) 칭호를 고친 일은 괴원등록에 드러나는데, 대개 도주가 다이라 시게오키[平調興]와 대립각을 세우다가 시게오키가 죄를 입게 되자, 도주가 우리나라에 기쁜 소식을 알리면서 그 서계에 처음으로 관백을 일컬어 ‘우리 대군[我大君]’이라 하였고, 우리나라의 답서도 따라서 ‘귀국 대군[貴大君]’이라 일컬어 그대로 서식을 이루었습니다. 저들이 처음엔 왕을 칭하다가 중간에 대군으로 고치고 이제 또 왕호를 복구하는 것은 그 나라의 법제에 전장(典章)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역시나 본디 곡절이 있는데 우리가 듣지 못한 것일까요? 또 비단 저들이 개칭한 곡절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들이 칭하는 바를 따라서 칭한 사유도 드러난 곳이 없습니다” 하였다.

상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 그들이 서계에 ‘우리 대군’이라 칭했다고 하여 우리나라가 따라서 ‘귀국 대군’이라 하고 그대로 규례를 이루었을 리가 있겠는가? 반드시 곡절이 있을 텐데, 실록에 실려 있지 않으니, 소루하다고 할 만하다” 하였다.

김[김진규]이 말하기를 “그 소루함은 참으로 주상의 하교와 같습니다. 우리나라 문적에서 상고할 수 없는 것이 원래 이와 같으니, 근거를 끌어와 저들과 논란할 때 명백히 말하기는 어려울 듯하므로, 이것이 걱정스럽습니다. 대개 저들의 왕호는 새로 창안한 것이 아니며 또 참위(僭僞)²⁰⁶와도 다르니 굳게 막을 필요는 없는 듯하지만, 근래에 왜인은 모든 일을 오직 하고 싶은 대로 반드시 이루어야 그만둡니다. 명호(名號)의 서식은 관계되는 바가 중대한데, 애초 절목을 강정할 때 미리 보고하지 않고 이제 사신이 국서를 받들어 발행한 후에 황망하고 급박하게 서계를 보낸 것은 사체가 이미 매우 전도되었습니다. 성실과 신의라는 교린의 도리로 헤아리건대 그들이 과연 왕호를 복구하고 서식을 고치고자 한다면,

205) 경섭(慶漣, 1562~1620) : 청주 경씨로 자는 퇴부(退夫), 호는 삼휴자(三休子)·석촌(石村)·칠송(七松)이다. 선조 23년(1590) 증광문과에 급제하고, 1598년 진주사(陳奏使)의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1607년 홍문관 교리로서 통신사행의 부사가 되어 정사 여우길(呂祐吉)과 함께 임란 이후 첫 번째 사절로 일본에 다녀왔다. 부제학과 호조참판 등을 역임했고, 일본을 다녀온 후 『해사록(海槎錄)』을 저술했다.

206) 참위(僭僞) : 자기 분수에 넘치는 자리를 옳지 않게 차지하는 일.

마땅히 그 사유를 명백히 말하고 요청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 서계에 조금도 그 곡절을 드러내지 않은 채 급한 시점에 압박하여 강제로 요구하니, 이는 대개 우리나라를 경시하고 업신여기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단 정폐(停廢)의 일이 있자마자 이 일이 또 이와 같으니, 차후에는 장차 또 어떠하겠습니까? 그 조짐이 정말로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청한 바는 이미 고사가 있고 이 서계는 또 갈보는 글과는 다르니, 변방 신하로 하여금 배척하여 받지 않도록 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 받아서 조정에 올리도록 하고 답을 작성하여 보낸다면, 왕래하는 사이에 형세가 장차 지연될 것입니다. 또 조정에서 급작스레 저들의 서계에 답하며 그 가부를 논한다면, 비단 사체에 존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또 여지도 없습니다. 그러니 동래부사에게 명하여 그 가져온 서계를 받고서, ‘이는 비록 옛일에 없지 않고, 중간에 다시 고치는 것이 이미 근래의 규례를 이루었으니, 만일 과연 복호의 거조가 있다면 너희가 양국 사이에 거쳐하면서 마땅히 사행 절목을 강정할 때 미리 상세히 일의 상황을 보고하고 서식 개정을 요청해야 하는데, 지금 이제 사신이 여정에 오른 후 갑자기 발설하고 또 그 곡절도 말하지 않으니, 경근하고 성실한 도리가 매우 아니다. 또한 국서가 이미 왔는데 변방 신하가 어찌 감히 이 서계를 받아 올리고 추후로 고치기를 청하겠는가? 이는 사리에 불가한 것이므로 주상께 아뢰 수가 없다’고 하면서 그 예조에 보내는 서계를 물리친다면, 생각건대 저들이 반드시 말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즈음에 그 사정을 점차 탐지할 수 있으니 변화를 보고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시지요” 하였다.

병조참판 윤지인은 말하기를 “전후로 왜국과 왕복한 문서를 대략 보니 관백을 혹은 장군으로 혹은 국왕으로 혹은 대군으로 칭하여 변개가 무상합니다. 왕이라 하다가 군으로 칭한 것에 있어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존귀한 등급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전장(典章)이 갖추어지지 않아 수시로 그 칭호를 고친 결과에 불과합니다. 사체로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본디 동맹국의 군주로 관백을 대하는데, 관백이 낮은 칭호로 우리나라에 대등한 예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도리어 언짢음이 있는지라, 이것이 정사년(1617) 통신사가 쟁집하여 반드시 회답 국서에 ‘왕’을 쓰도록 한 까닭입니다. 그러니 지금 와서 그 왕호의 복구를 허락하는 것은 본디 어려운 일은 아니나, 다만 사행의 절목을 강정할 때 이런 등등의 큰 절목이 의당 먼저 조정되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추후로 요청하는 것은 매우 지극히 전도되었습니다. 이제 만약 ‘이렇게 중대한 일을 도주가 보낸 사람의 말에만 의지하여 허락할 수는 없으니, 반드시 예도에서 복구를 요청하는 문적이 있는 뒤에야 개정할 수 있는데, 사행이 이미 출발하여 형세가 기일에 미치

기 어렵다’는 뜻으로 말을 만들어 답을 보냄이 합당할 듯합니다” 하였다.

공조참판 권상유(權尙游)는 말하기를 “그 왕으로 칭하고 군으로 칭한 문적(文籍)이 한둘이 아니니, 전장(典章)이 정해지지 못한 데서 연유했다는 말은 그렇지 않은 듯합니다. 대개 국가의 칭호 복구는 그 관계된 바가 얼마나 중대합니까? 대마도 차왜가 말한 ‘서계를 전하지 못하면 장차 에도에 중죄를 얻을 것이라’는 말로 보아도 그것이 중대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들과 여러 재신들이 ‘통신사가 조정을 하직한 뒤 그 추후 요청으로 인하여 서식 개정을 허락하는 것은 전도되었다’고 한 말은 그럴듯합니다만, 신의 얕은 소견으로는 염려하는 바가 없을 수 없습니다. 저 나라의 사정은 역측할 수 없으나, 생각건대 어찌면 저들이 스스로 국정을 주도한 이래 오랫동안 칭왕(稱王)할 계획이 있다가 지금에 서야 비로소 하나로 합쳐질 수 있었기에 이런 급박한 때에 와서 칭하는 거조가 있었을 것입니다. 당초 대차왜가 절목을 강정할 때 이 일로 와서 강구하지 않은 것은 사세가 아직 미치지 못한 결과이지 우리나라를 업신여기는 데서 나온 것은 아닌 듯합니다. 이번 통신사행의 기일을 물리기를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은 아닌지 어찌 알겠습니까? 이로써 말하면 이제 이 서식 개정의 요청은 결코 우연한 절목에 건줄 바가 아닙니다. 저들이 이미 왕을 칭하여 우뚝이 스스로를 과대(誇大)하고, 또 통신사에게 서식 개정을 요청하여 나라 안에서 자랑하고 빛냄으로써 인심(人心)을 진복(鎮服)할 계획이라면, 그들이 희망하는 바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만약 배척하여 허락하지 않으면 어찌 생경(生梗)²⁰⁷할 염려가 없겠습니까? 또한 오랑캐와 교린하는 도리는 비록 깔보는 글이 있더라도 옛 제왕들이 도리어 혹 힘써 따랐는데, 하물며 이 도주의 서계에서 운운한 말은 본디 상대를 업신여기는 뜻도 없고, 또 조종조에서 이미 허락한 규례도 있으니, 이는 배척하여 끊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 신하들의 말은 이미 조용히 허락할 것을 청하되, 단지 통신사가 조정에 하직한 뒤 추후로 서식을 개정하는 것은 일이 전도되었다고 하여 갑자기 허락하기는 어렵다지만, 우리가 고집하는 것은 미미하고 자잘한 작은 예절에 불과합니다. 미미하고 자잘한 작은 예절에 구속되어 저 나라의 소망을 크게 저버리는 것은 옳은 계책이 아닙니다. 저들이 만약 끝내 이 때문에 생경(生梗)하여 혹 통신사가 배를 타고 출발한 뒤에 길을 가리켜 주는 배를 주지 않거나, 혹 배가 에도로 들어간 뒤에 별도로 화를 내는 사단(事端)이 있으면, 어찌 대단히 난처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된 뒤에 바야흐로 허락하여 따른다면, 이는 참으로 허약함을 보이는 데에 귀착되고 마니, 어찌 지금 흔쾌히

207) 생경(生梗) : 두 사람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는 일이 생김.

허락하는 편리함만 같겠습니까? 하물며 저들이 반드시 칭왕한 이후에야 바야흐로 더불어 대등한 예로 대할 수 있음에랴! 이는 정사년(1617) 통신사가 저 나라에 쟁집한 바이니, 지금 와서 거절하고 막으면 더욱 큰 차이가 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통신사가 이미 국서를 받들어 가지고 발행했더라도 승선 기일이 아직 머니, 국서를 이에 속히 가지고 와서 그 의식을 고쳐 보낸다면, 우리에게는 손해가 없고 저들에게도 소망을 이루게 되어 순조롭고 또 무사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은 범연히 처리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하였다.

상감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도에서 혹 장군이라 칭하고 혹 국왕이라 칭하고 혹 대군이라 칭하는데, 그 변개하는 곡절은 모르겠지만, 을해년(1635) 이전에 이미 국왕이라 칭했으니, 이는 오늘날 창안하여 요청한 일은 아니다. 다만 서식을 고치느냐 고치지 않느냐를 어찌 대차왜가 나왔을 때 강정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급한 시점에 임박하여 갑자기 발설하니, 그 습성은 정말로 가증스럽다. 또 이 일을 허락하느냐 허락하지 않느냐가 국가에 손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한 일 두 일 매번 그들의 말을 따르다가는 혹시 따르기 어려운 일에 있어 허약함을 보이게 되니, 또한 매우 염려스러워 꺾지 않을 수 없으므로 당초에는 반드시 엄히 배척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권상유가 진달한 바 ‘사신이 들어간 뒤에 혹시 다른 염려가 있을 수 있다’는 말에 별안간 거기에 과연 이런 환난이 있으면 욕을 끼침이 적지 않음을 알겠다. 또 도주의 서계 역시 깔보는 글에 견줄 것은 아니다. 이미 이와 같음을 알았다면 반드시 당초의 견해를 고수할 필요가 없으니, 다시 의논하여 진달함이 옳다” 하였다.

이언강이 말하기를 “권상유는 밖에 있을 때 이미 이 말을 했습니다. 대개 구호를 복구하는 요청이 반드시 경시하고 업신여기는 뜻에서 나온 것은 아니니, 대체(大體)로써 말하면 허락하는 것도 무방하나, 다만 이미 예단의 정패를 허락했는데 지금 또 그 말을 곡진히 따라 서식을 고쳐 보내면 끝내 언짢음이 있으므로 애초에 막는다는 뜻을 우러러 진달한 것입니다. 도주가 만약 그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혹 사신이 승선한 후에 길을 가리켜 주지 않거나, 저쪽에 도착한 후 일의 단서가 순조롭지 않으면 역시 매우 난처하니, 권상유의 말은 정말로 생각없는 견해가 아닙니다” 하였다. 서종태가 말하기를 “예절 사이의 일은 외방 오랑캐와 서로 다투기 부족하니, 권상유가 진달한 바는 생각없는 견해가 아니요, ‘다스리지 않음으로써 다스린다’²⁰⁸⁾는 도리에 터득함이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매사에 한결같이 저들이 말하는 바를 따르면 끝내 허약함을 보이고 마니,

208) 이불치지(以不治之) : 이불치치지(以不治治之). 『고문진보(후집)』에 수록된 소식(蘇軾)의 <왕자 불치이적론(王者不治夷狄論)>에 나오는 문구이다.

이 때문에 들어주어 허락하기 어렵습니다. 두 원임대신(原任大臣)의 뜻도 신들의 견해와 대략 같습니다” 하였다.

김창집이 말하기를 “동래부사의 장계를 가지고 살펴보면, 도주 역시 꼭 요청에 허락을 얻으려는²⁰⁹⁾ 생각은 아니더군요. 서계는 올려보내게 하되, ‘이번에는 사체가 급박하고 전도되어 허락할 수 없으니 짐짓 후일을 기다렸다가 상의하여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잘 말하여 회답하는 것도 안 될 것은 없겠습니다” 하였다. 조상우가 말하기를 “권상유가 진달한 바는 생각없는 견해는 아닙니다만, ‘이번에는 사행이 이미 출발하여 사체가 급박하다’고 말을 만들어 필경에는 꼭 막지는 않겠다는 뜻을 보인다면, 어찌 틈이 생길 염려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김진규가 말하기를 “저들이 단지 칭호 복구만 말하고 그 곡절은 말하지 않았으니, 급작스레 고쳐 쓰는 것을 허락하면 과연 어떻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먼저 변방 신하로 하여금 답서하여 그 복호의 곡절과 창졸간에 서식의 개정을 요청한 까닭을 묻고서 처리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였다. 이언강이 말하기를 “비록 묻더라도 반드시 말하지 않을 것이고, 또 이는 물을 만한 일도 아닙니다” 하였다. 윤지인이 말하기를 “지금 대마도 서계의 말이 공손하게 구한다고 해서 저 나라에서 또한 요청에 꼭 허락을 얻으려는 뜻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그렇지 않은 듯합니다. 대마도는 단지 우리나라의 답서를 얻어 에도의 질책을 면하기만 바랄 뿐입니다. 허락하고 안하고의 사이에서 오직 우리의 회답을 얻는 것만 위주로 하니, 그 말이 공손하게 구하는 것은 진실로 그 형세가 그런 것입니다. 새로 관백이 계승하여 서고 또 통신사를 요청한 것은 대개 나라 안에서 자랑하고 빛내어 인심을 진정시켜 따르게 할 계획에서 나온 것이니, 지금 이 개호(改號) 요청은 그 바라는 것이 가볍지 않습니다. 만약 허약함을 보일 것을 염려한다면, 이 일은 끝내 반드시 허락하여 부응해야 합니다. 처음에 인색했다가 끝에 가서 허락하면 더더욱 허약함을 보이게 되니 역시 편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하였다.

좌부승지 박태항(朴泰恒)은 말하기를 “신이 해당 승지로서 입시하여 감히 이에 우러러 진달합니다. 복호 이야기는 진실한 일이 아닌 듯합니다. 중간에 왕으로 칭했다가 그 후 대군으로 칭하고 지금 또 다시 왕으로 칭하는 것은, 생각건대 그 나라 전장(典章) 등의 권위가 엄격하지 않아 임의로 칭호를 잠시 빌려 교린하는 사이에 존귀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 진짜로 복호하여 왕이라 한 일이 있다면, 반드시 먼저 대마도와 여러 왜에 자랑했을 것이니, 또한

209) 원문의 ‘득정(得情)’은 ‘득청(得淸)’의 오류로 보인다. 아래 두 곳은 모두 ‘득청(得淸)’으로 되어 있다.

어찌 전파되는 말이 없겠습니까? 통신사가 떠나기를 청할 때에 임하여 갑자기 이 말을 내니, 교활한 왜의 실정은 본디 이와 유사함이 많지만, 절목을 완전히 결정할 때는 일찍이 한 마디도 없다가 지금 창졸간에 고치기를 요청하니, 그 무엄하고 거리낌 없는 정상은 심히 가증스럽습니다. 군이라 칭하고 왕이라 칭하는 일에 있어, 돌아보면 어찌 우리에게 손익이야 있겠습니까? 에도에서 분부했다면 비단 도주 한 사람이 사신을 내보낼 뿐만 아니라, 차왜 무리가 모두 장차 죽기를 한하여 요청을 허락받고야 그만둘 것인데, 그럼 우리에게 이해가 없는 일을 가지고 끝내 장차 끊겠습니까? 그러나 조정이 쟁집하지 않고 따라서 고칠 것을 허락한다면 매우 무단(無端)한 일이 됩니다. 그러니 신의 생각에는 만약 ‘국서의 칭호는 관계되는 바가 중대하니, 사신이 가져간 후에 도주의 서계 1장으로 인하여 가져와서 고쳐 쓰는 일은 사체가 전도되어 결코 따르기 어렵다’는 뜻으로 관왜에게 책유한다면, 우리가 잡은 것이 정대(正大)하여 저들이 혹 마음을 돌이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관왜는 대마도와 아주 가까워 비선의 왕래가 이어져서 수일 내에 사사로이 왕복하는 일이 있을 듯하니, 그 답하는 바를 보고, 어쩔 수 없는 듯 억지로 하게 된 후에 따른다면 합당함을 얻을 듯합니다. 이렇게 할 즈음 사신의 발행이 다시 열흘이나 보름 지체되더라도, 일이 진실로 합당함을 얻는다면 무방할 듯합니다” 하였다.

이언강이 말하기를 “여러 대신들이 의견을 다 진달했습니다. 지금 원로대신이 서울과 멀지 않는 땅에 있는데, 일찍이 사명을 받들어 일본에 갔기에 저나라의 사정을 갖추어 알 테니, 비변사 낭관(郎官)을 파견하여 즉시 문의하여 허락 여부를 듣게 하고, 한편으로는 동래부에 분부하여 서계를 올려보내게 하심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상감께서 말씀하시기를 “윤영부사(尹領府事)가 전에 일본을 다녀왔고 또 그의 거처가 멀지 않으니, 즉시 비국 낭청을 파견하여 문의하여 들은 이후 다시 품처하고, 동래부사가 도주의 서계를 받아 보내는 일도 분부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신묘(1711) 5월 29일

비변사에서 입계하기를, 이번 통신사행은 당상역관 중 사고가 없어 갈 만한 자가 극히 적기에 구차하게 충원하여 차견(差遣)함을 면치 못합니다. 사신들도 모두 염려하여 지난날 조정에 하직할 때 이 일을 주상 앞에서 진달하니 묘당에 두루 물으라는 하교가 있었고, 신들이 입시켰을 때도 주상께서 하문하신 바가 있습니다. 신들 역시 변통할 방책을 진달하여 품의드릴 즈음, 유생(儒生)

의 말²¹⁰⁾ 때문에 잠시 미룬다²¹¹⁾는 뜻으로 전달하고 물러났습니다. 근래 왜의 실정이 이상하여 사단이 겹쳐 생기는 것을 보니, 사행이 도해한 후에 만약 다른 사고가 없으면 참으로 무사하기를 바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혹 뜻밖의 별다른 일로 피차 쟁변을 주고받는 사단이 생기면 그것을 미봉하는 것은 오로지 언변(言辯)에 달렸는데, 데려간 역관이 왜어에 많이 통달하지 못하면, 생각건대 그 사이에서 주선할 수 없을 것이니 반드시 국가를 욕되게 할 근심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관계가 실로 매우 긴급(緊重)하여, 사행이 비록 출발했으나 못 의논들이 많이들 ‘역관 중에 왜어를 제일 잘하는 자를 가려 뽑아 더 정하여 보내자’고 합니다. 사신이 임시로 전달한 말 역시 대개 최상집(崔尙嶠)²¹²⁾을 데려가고 싶다는 뜻에서 나왔는데, 최상집은 바야흐로 죄를 받아 유배되어 있습니다.²¹³⁾ 지난해 사행을 위해 특별히 방면했다가 후에 왕명을 되돌렸으니,²¹⁴⁾ 또 차견을 요청함은 사체에 비록 미안하지만, 사신의 일이 이미 염려스럽습니다. 전부터 혹 일이 생기면 역관들에게 죄인의 몸으로 일을 시켜 그 직무를 맡기는 것은 이미 시행한 전례가 많을 뿐만 아니라, 왜인이 처음 통신사를 청했을 때 당상역관을 더 보내달라는 말도 있었건만 전례가 없다고 하여 막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비록 더 정하여도 본디 할 말이 있으니, 특별히 풀어주고 그대로 배소(配所)에서 곧장 사행이 도달한 곳으로 달려가게 하면 사의(事宜)에 부합할 듯합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경연에서 이 일을 품달하고자 했는데, 마침 입시하느라 시간을 보내 말을 하지 못하고 물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끝내 그대로 둘 수 없는 바가 있어, 이에 감히 우러러 재결해 주시기를 청하는 뜻으로 감히 계달합니다. 전교하기를 “더 정하는 것은 무방하니 계사대로 하라”고 하였음.

210) 『숙종실록』 권50, 37년 5월 29일조 해당 기록을 보면, “교리(校理) 정식(鄭弼)이 그 옳지 못함을 아뢰어 임금이 정식의 말을 따랐다”고 하였다.

211) 안서(安徐) : 어떤 일의 처리를 잠시 미루어 둠.

212) 최상집(崔尙嶠, 1664~?) : 무주(茂朱) 최씨로 자는 연보(延普)이다. 숙종 13년(1687) 식년시 역과에 왜학으로 급제하여, 관직이 교회(敎誨), 품계가 정헌대부에 이르렀다.

213) 『숙종실록』 권47, 35년(1709) 4월 13일조 기사를 보면, 역관 최상집(崔尙嶠)·한중억(韓重億) 등이 대마도에서 돌아왔는데, 왜인들이 범간(犯奸)한 왜인 문제로 서계를 받지 않아 최상집 등이 도로 서계를 가지고 오자, 동래부사 권이진(權以鎭)이 치계하여 최상집 등이 나라를 욕되게 한 죄를 다스리기를 청하니, 묘당과 의논하여 먼 곳에 징배하도록 명하였다.

214) 이윤희(李裕元), 『임하필기(林下筆記)』 권24,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 <왜어(倭語)> : 숙종 36년(1710) 일본과 장차 통신(通信)하려는데 역관 중에 왜어를 잘 하는 자가 매우 드물었다. 이에 최상집(崔尙嶠)을 유배지에서 석방하여 보냈는데, 동래부사가 말하기를 “나라를 욕되게 한 사람을 다시 보낼 수는 없다” 하자, 마침내 거상(居喪) 중인 한후원(韓後瑗)을 기복(起復)하여 보냈다.

신묘(1711) 5월 30일

비변사에서 입계하기를, 어제 경연에서 확정하여 발송한 본사 낭청이 일본 서식 개서의 합당 여부를 영중추부사 신 윤[윤지완(尹趾完)]에게 문의했더니, 소회를 써서 보내기를 “전에는 국서에 일본국왕으로 일컫다가 뒤에 그들이 대군으로 고쳤기에 우리나라도 대군으로 썼습니다. 그들이 감히 왕호를 감당하지 못해 대군이라 칭하였으니 곧 집정과 같은지라, 그대로 그와 더불어 대등한 예로 대함에는 언짢은 사단이 없지 않으나, 그때 조정에서 일찍이 힐문하지 않은 것은 어찌 오랑캐를 대하는 도리가 명호의 의절 사이에서 자질구레하게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스스로 왕이라 함을 우리가 금할 수 있는 바는 아니니, 그 칭왕을 알게 된 뒤라면 국서를 고쳐 보냄에 본디 방해될 것이 없습니다. 의논하는 자는 혹 말하기를 ‘저들이 지휘하는 것 같고 우리는 받드는 것 같으니 일마다 순순히 따르면 굴욕을 면치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모든 일은 대마도가 거간하여 요청하니, 가하면 허락하고 불가하면 물리쳐 그 일의 가부만 봐야 할 뿐, 지휘하거나 받든다는 혐의는 그것이 반드시 그러한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사행의 승선이 아직 멀었으니 국서를 고칠 만하면 고치는 것이지 어찌 전도됨을 우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였기에, 감히 계달합니다. 전교하기를 “영부사의 말이 정말 맞으니 어려워할 필요 없이 국서를 고쳐 보내는 것이 옳다” 하였다.

비변사의 감결 내용. 왜학(倭學) 최상집을 특별히 방면하여 배소에서 곧장 통신사행에게 가는 일로 입계하여 확정하였는데, 위의 최상집을 더 정하여 들여보내면 의당 반전이 있어야 하니, 동 반전 등의 일을 다른 원역(員役)의 예에 따라 거행할 일. [호조, 예조].

신묘(1711) 6월 초1일

비변사에서 입계하기를, 어제 경연에서 주상께서 “왜인이 요청한 서식 개정의 일에 대해 처음엔 비록 준엄히 배척하라고 하교했지만, 지금 재신들이 진달한 바를 들어보니 또한 의견이 있는지라, 허락하는 것도 안 될 것은 없는 듯하니 다시 의논하여 진달하라”고 하교하셨는데, 신들은 애초의 견해 외에 창졸간에 고쳐 생각하여 대답할 수가 없고 또 윤영부사에게 문의하라는 명도

있어서, 그의 대답이 어떠한지를 보고나서 우리러 진달하고자 했습니다. 신들이 물러나온 후 다시 더 생각하고 또 여러 당상들과 상의한 즉, 이제 이 서식 개정의 요청을 조정에서 허락하기 어려운 점이 세 가지입니다. 70여 년 칭호한 절도를 지금 와서 가볍게 고치기 어렵다는 것이며, 저 나라에서는 복호한 곡절을 진달하지도 않고 곧장 서식 개정을 요청하여 마치 지휘하는 듯하고, 우리로서는 매사에 문득 따라가서 허약함을 보이는 데로 귀착된다는 것이며, 국서가 완성되어 사행이 출발했는데 그제야 비로소 갑자기 요청하니 사체가 전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허락하지 않아도 우리는 본디 할 말이 있습니다. 다만 전후의 통신사행에서 예도의 회답 서식이 간혹 스스로 ‘국왕’이라 쓰지 않았어도, 을해년(1635) 이전 우리나라의 서식은 계속 ‘일본국왕’으로 썼으니, 이제 이러한 요청은 바로 그 옛 서식을 따르려는 것이므로 참위(僭僞)에 비견되지는 않으니, 그 실정이 반드시 업신여기는 데서 나왔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신·구 칭호 사이에서 우리의 국체는 애초에 손상되는 바가 없고, 그 말이 원래 허락할 만했으니 또한 문득 따라도 꼭 혐의될 것은 없습니다. 갑작스러워서 전도되었다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으로 말거리를 잡아도 저들의 뜻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운영부사는 국서를 고쳐 보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서울에 있는 두 원임대신도 모두 “매사를 들어주어 따르는 것이 언짢지만 저들의 요청이 옛 서식을 따르는 것이니 이제 비록 허락해도 방해될 것은 없는 듯하다”고 하며, 신들의 얄은 소견 역시 “조정에서 장차 따르기를 허락하여 그 소망에 부응하는 것이 혹 해로움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계 안의 ‘대군’ 두 글자를 의당 ‘국왕’으로 고쳐야 한다는 뜻으로 어제 계사(啓辭)를 작성해내어 여러 당상들에게 회시(回示)할 즈음, 곧 운영부사가 술회한 글로 인하여 들어가 아뢰었더니, “영부사의 말이 정말 맞으니 어려워할 필요 없이 국서를 고쳐 보내는 것이 옳다”고 하교하셨습니다. 대마도의 서계는 이미 동래부에 올려 보내라 했으니, 회답 서계를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지어내도록 하고, 통신사가 가져갈 서계의 서식은 ‘대군’ 두 글자를 ‘국왕’으로 고쳐 써서 별도로 금군을 정하여 말을 주어 내려보내심이 어떠할지? 전교하기를 “윤희한다”고 하심. [병조, 승문원, 예조].

신묘(1711) 6월 초4일

사역원 관원이 도제조와 제조의 뜻으로 입계하기를, 본원의 계품으로 인하여 왜학 최상집에게 이미 직첩(職牒)을 환급하라는 명이 있었으니, 이때 아직

서용(敍用)²¹⁵되지는 않았으나 우선 전례대로 통신사행 중에 관대(冠帶)를 착용하고 따라가게 하심이 어떠할지? 전교하기를 “윤희한다”고 하심. [비국, 예조].

신묘(1711) 6월 초8일

승문원 관원이 도제조의 뜻으로 입계하기를, 이제 이 일본 서식 개정의 일에 대한 예조의 회답 서계는 마땅히 그 말을 잘 만들어야지 전례를 답습하여 지어내어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는 남북의 자문(咨文)과 서계는 혹 그 일의 실마리가 관계됨이 중하면, 관각(館閣)의 당상이 지어 올린 전례가 자주 있었으니, 이제 이 서계를 대제학 김[김진규]으로 하여금 지어내게 하고 정서(正書)하여 들이겠다는 뜻을 감히 계달합니다. 전교하기를 “알았다”고 하였음.

승문원 관원이 도제조의 뜻으로 입계하기를, 원[승문원]의 사자관(寫字官) 이웅(李雄)은 임관(任官)이면서 이기(李紀)가 죽은 후 수일 동안 알리지 않았으니 사체를 이지러뜨린 죄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자관 이시휘(李時輝)는 몸이 실관(實官)에 매여 있어 가까운 곳에 가는 것도 임의로 하향(下鄉)할 수 없는데, 더구나 통신사의 도구전(都口傳)²¹⁶에 실리지도 않은 사람임에도 제조(提調)에게 고하지 않고 사사로이 제 스스로 내려가, 남의 이름을 사칭하여 따라가서 이익을 도모할 계책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 정상이 너무도 극히 놀라우니 (이웅과) 아울러 쫓아내되, 이시휘는 유사로 하여금 본도에 관문을 발송하여 잡아와 다스리심이 어떠할지? 전교하기를 “윤희한다”고 하심. [형조].

신묘(1711) 6월 초9일

비변사에서 입계하기를, 일본으로 보내는 국서의 서식을 고쳐 내려보낼 때 특별히 금균을 정하여 말을 주어 보내는 일을 계달하였습니다. 역관 1인도 사역원으로 하여금 정하여 보내 배행하게 하되 동일하게 말을 주는 것이 합당할 듯하니 병조에 분부하심이 어떠할지? 전교하기를 “윤희한다”고 하심.

215) 서용(敍用) : 죄를 지어 면직되었던 사람을 다시 등용하던 일.

216) 도구전(都口傳) : ‘모두 구전한다’는 뜻인데, ‘구전’은 3품 이하의 관원을 선임할 때 이조나 병조에서 임금의 낙점을 거치지 않고 뽑아 쓰는 것을 말한다. 김건서(金健瑞)가 쓴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 「지(志)」 <도구전식(都口傳式)>에 의하면, 통신사행 때의 정사, 부사, 종사관 일행의 인원과 수는 모두 구전한다.

신묘(1711) 6월 11일

접위관 경상도 도사 박성로(朴聖輅)가 5월 29일 성첩한 장계. 통신사호행차왜 다이라 가다나오[平方直]의 원역 등이 별연 설행을 없애고 건물(乾物)로 들여달라고 운운했다고 역관 등이 수본하였음. 이에 의거하여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달 28일 동 연회 수요의 건물 및 공·사예단 잡물을 아울러 숫자를 대조하여 들여주었으며,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신묘(1711) 6월 27일

접위관 경상도 도사 박성로(朴聖輅)가 6월 20일 성첩한 장계. 통신사호행차왜 다이라 가다나오[平方直]의 원역 등이 상선연 설행을 없애고 건물로 들여달라고 운운했다고 역관 등이 수본하였음. 이에 의거하여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달 19일 동 연회 수요의 건물 및 공·사예단 잡물을 아울러 숫자를 대조하여 들여주었으며, 차왜 접대 날짜의 기한이 지났으되 그들이 복호에 대한 회답 서계가 내려오기를 기다렸다가 상선연을 행하고자 하여, 지금까지 끝다가 이제 비로소 건물로 들여준 즉, 차왜의 날짜 기한이 이미 지났을 뿐만 아니라 예전에 대차왜를 접대할 때는 상선연 이후 접위관이 즉시 발행하는 것으로 규례를 이루었기로, 신은 전례대로 내일 떠나 본영으로 돌아가겠거니와, 통신사의 승선 기일에서 단지 하룻밤 지나 차왜 또한 동시에 들어가야 하는데, 동 차왜가 승선하여 배를 출발하는 등의 일은 본부에서 마땅히 치계해야 하며, 차왜가 바친 하선·상선·절일(節日)의 세 차례 예물은 동래부로 수송하여 추후 인편에 올려보내도록 하였으며,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는 일임.

一. 접위관 대인 합하게 사례 드립니다. 일전에 겨우 도착하여 아직 접견하지 못해 우러러 서운함이 바야흐로 지극하였습니다. 이제 생각건대 벼슬하는 근황이 좋으시리니 위로됨과 후련함이 교대로 이릅니다. 이에 변변찮은 의식을 갖추어 새로 도착한 데 대한 예를 경건히 펼칩니다. 나머지는 진상연(進上宴)을 기다려 정성스레 대하기를 기약합니다. 바라건대 살펴보시고 간직해주십시오. 다 갖추지 못합니다. 신묘 4월 일 영빙사(迎聘使). [그의 도서를 찍었음].

금을 붙인 작은 병풍[貼金小屏風] 1쌍(雙), 채화누합대연갑(彩畵累合大硯匣) 1비(備), 가죽 갑을 갖춘 5촌 거울[皮匣五寸鏡] 1면(面), 포목지(布目紙)²¹⁷⁾ 200편

(片), 오색사탕[五花糖] 10근, 얼음사탕[氷砂糖] 4근, 구리로 만든 큰 탕기[銅大湯器] 5개, 채화하고 붉은 칠한 네모 동이[彩畫朱漆方盆] 10매, 망원경[別眼鏡] 1조(操), 채화한 중간 크기 네모 경대[彩畫中方鏡臺] 1면 끝.

一. 접위관 대인 합하게 받들어 올립니다. 단오날 좋은 절기에 베풀하는 근황이 안온하시니, 이에 변변찮은 용품을 갖추어 절일의 의식을 표하오니 웃으며 받아들이시면 다행이겠습니다. 신묘. 5월 일 영빙사. [그의 도서를 찍었음].

채화하고 발 달린 네모 동이[彩畫有趺方盆] 10좌(坐), 채화한 5촌의 상자 거울[皮匣伍寸鏡] 1면, 그림 그린 도기병[陶器瓶] 3개, 등나무 대롱 담뱃대[藤管烟器] 10악(握), 족집게[鑷白介] 4쌍 끝.

一. 접위관 대인 합하게 받들어 올립니다. 무더위에 생각건대 안정된 기분[定味]이 더욱 다시 맑고 좋으시리니 위로되고 위로됩니다. 5개월 동안 관(館)에 있으면서 받은 정의(情誼)에 감사가 교대로 함께 합니다. 성사(星使:사신)의 행차가 장차 가까이 다가오매 피차간에 일이 많아서 작별할 길이 없으니 서운함을 어찌 말로 하겠습니까? 이에 자질구레한 물품으로 애오라지 이별의 의식을 펼치니, 삼가 바라건대 살펴보고 남겨두시면 다행이겠습니다. 다 갖추지 못합니다. 신묘 6월 일 영빙사. [그의 도서를 찍었음].

가죽으로 감싼 옥괘연[革裹玉掛硯] 1비, 맑게 칠한 문갑[淸漆文匣] 1개, 채화한 5촌 거울[彩畫五寸鏡] 3면, 채화한 밥그릇[彩畫飯盤] 10매, 붉은 대롱 담뱃대[朱管烟器] 20악, 오색사탕[五花糖] 6근, 구리로 만든 세 개가 한 벌인 세숫대야[銅累三盥盤] 1부(部), 문지(紋紙) 500편, 채화한 4면 거울[彩畫四面鏡] 1면, 대륜도(大輪圖)²¹⁸⁾ 2좌 끝.

신묘(1711) 6월 29일

동래부사 이정신(李正臣)이 6월 19일 성첩한 장계. 정거리(碇巨里)²¹⁹⁾로 이동하여 정박한 표류 왜선 1척이 관소로 돌아와 정박하기를 기다린 후 다시 계문할 계획이라는 연유를 이미 치계하였는데, 11일 유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박중징(朴仲徵)의 치통 내용에 “금년 5월 16일에 나온 비선 1척에 두왜 1인과 격왜 6명

217) 포목지(布目紙) : 종이를 뜯 때 발의 눈을 없애기 위해 베를 씌워 뜯 종이.

218) 대륜도(大輪圖) : 방위를 가리키는 큰 원그림.

219) 정거리(碇巨里): 조선후기 당시 김해 소속의 마을.

등이 함께 타고 대차왜의 사서(私書)를 가지고 당일 진시에 배를 출발하여 돌아간 일”로 치통하였음. 12일 신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박중정의 치통 내용에 “이제 이번 우도(右道)에 표류한 왜선 1척 및 다대포에 도착하여 나간 작은 금도왜선(禁徒倭船) 1척을 아울러 관소로 영부(領付)했다고 호송장 정철(鄭哲)이 치보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다시 가훈도 이덕기(李德起)와 가별차 최대제(崔垚齊)²²⁰⁾ 등에게 명하여 정황을 묻게 한 뒤의 수본 내용에 ‘무자조 제11선 1척에 격왜 20명이 함께 타고 지난달 27일 관소로부터 돌아가다가 역풍을 만나 표류하여 우도에 정박했다가 이제야 비로소 관소로 돌아와 정박했습니다. 운운’이라고 수분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하는 일”로 치통하였음. 동일 유시쫌 황령산 봉군 방자원(方自元)과 간비오 봉군 옥명립(玉明立) 등이 진고한 내용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작은 배 1척이 물마루를 나왔다”고 진고하였음. 추후에 도부한 부산첨사 박중정의 치통 내용에 “왜선 1척이 나왔다고 석성 봉군이 진고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상황을 탐색하려고 본진(本鎭)의 제2선 선장 최재홍(崔在弘)을 선정하여 보낸 일”로 치통하였음. 동일 해시에 성첩하고 13일 자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나왔던 작은 왜선 1척을 영솔하여 관소에 붙였다’고 초탐장 최재홍이 치보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즉시 가훈도 이덕기와 가별차 최대제 등에게 명하여 정황을 묻게 한 뒤의 수본 내용에 ‘관에 나아가 정황을 물었더니, 도중에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비선 1척에 두왜 1인과 격왜 7명 등이 함께 타고 대차왜에게로 보내는 사서(私書) 및 노인을 가지고 나온 것이라 하기로, 가져온 노인 1통을 받아 올려보내거니와, 대관왜(代官倭)의 말에 지금 이 배편에 온 도중의 사서에서 접때 구무한 호두와 잣이 이번 통신사 때 쓸 수요에 너무 부족하다고 하니, 호두 15섬과 잣 10섬 등을 급급히 구매를 허락하여 때에 미쳐 들여보내도록 해달라고 운운하기로, 연유를 수본한다’는 뜻으로 수분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동 노인을 수송하는 일”로 치통하였음.

14일 유시쫌 황령산 봉군 방자원과 간비오 봉군 옥명립 등이 진고한 내용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4척이 물마루를 나오다가 3척은 곧장 관소로 향하고 1척은 좌도로 향하여 표류했다”고 진고하였음. 추후에 도부한 부산첨사 박중정의 치통 내용에 “왜선 4척이 나오다가 3선은 곧장 관소로 향하고 1척은 좌도로 향하여 표류했다고 석성 봉군이 진고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곧장 관소로 향한 왜선을 탐색하려고 두모포 만호 이경(李++慶)을 선정하여 보내며, 좌도로 표류한 왜선에 정황을 묻고자 가별차 최대제를 선정하여 보낸 일”로 치

220) 최대제(崔垚齊, 1679~?) : 청주 최씨로 자는 용경(隆卿)이다. 숙종 36년(1710) 증광시 역과에 왜학으로 급제하여, 관직이 총민(聰敏)·판관(判官)에 이르렀다.

통하였음. 15일 자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박중징의 치통 내용에 “당일 나와 곧 장 관소로 향한 왜선 3척을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초탐장 이경이 치보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즉시 가훈도 이덕기와 가별차 최대제 등에게 명하여 정황을 묻게 한 뒤의 수본 내용에 ‘관에 나아가 정황을 물었더니, 도중에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제1척은 무자조 이특송사 1호선으로 재차 나왔는데 격왜 40명, 제2척은 동년조 일특송사 2호선으로 재차 나왔는데 격왜 30명, 제3척은 동년조 정암송사선(酹菴送使船)으로 재차 나왔는데 격왜 40명 등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어 가고자 각각 노인을 가지고 나왔는데, 위의 왜선들은 모두 재차 나와 규정 이외에 해당하는 탓으로 노인을 받지 않고 이에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책유했다’고 수본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하는 일”로 치통하였음. 동일 유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좌도로 표류한 왜선에 정황을 묻고자 선정하여 보낸 가별차 최대제의 수본 내용에 ‘달려가 기장(機長) 무지포(武知浦)²²¹에 도착해 표류한 왜선에 정황을 물었더니, 무자조 일특송사 1호선으로 재차 나왔는데 격왜 40명 등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어 가고자 노인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기로, 연유를 수본한다’는 뜻으로 수본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치통하는 일”로 치통하였음. 동일 해시에 성첩하고 16일 자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이제 이 무지포에 표류한 왜선 1척을 영솔하여 관소에 붙였다고 초탐장 칠포(漆浦) 만호 김시한(金時漢)과 호송장 기장 주사대장(舟師代將) 오중태(吳仲泰)가 치보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다시 가훈도 이덕기에게 명하여 정황을 묻게 한 뒤의 수본 내용에 ‘사연이 앞서 별차가 정황을 물은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되, 이제 이 왜선도 역시 재차 나와 규정 이외인 탓으로 노인을 받지 않는다’고 수본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하는 일”로 치통하였음.

17일 신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이달 초7일에 나온 비선 1척에 두왜 1인과 격왜 6명 등이 함께 타고 대차왜의 사서를 가지고 당일 진시에 배를 출발하여 돌아간 일”로 치통하였음. 동일 유시쫘 황령산 봉군 서장민(徐長民)과 간비오 봉군 양세창(梁世昌) 등이 진고한 내용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작은 배 1척이 물마루를 나왔다”고 진고하였음. 추후에 도부한 부산첨사 박중징의 치통 내용에 “작은 왜선 1척이 나왔다고 석성 봉군이 진고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상황을 탐색하려고 본진의 제2선 선장 최재홍을 선정하여 보낸 일”로 치통하였음. 동일 해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나온 작은 왜선 1척을 영솔하여 관소에 붙였다고 초탐장 최재홍이 치보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221) 무지포(武知浦) : ‘무지포(無知浦)’를 잘못 쓴 것으로 현재 부산시 기장군 연화리 일대를 일컫음.

즉시 가훈도 이덕기와 가별차 최대제 등에게 명하여 정황을 묻게 한 뒤의 수본 내용에 “관에 나아가 정황을 물었더니, 도중에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비선 1척에 두왜 1인과 격왜 6명 등이 함께 타고 대차왜에게로 보내는 사서 및 노인을 가지고 나온 것이라 하기로, 가져온 노인 1통을 받아 올려보낸다’는 뜻으로 수본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동 노인을 수송하는 일로 통틀어 치통한다” 하였기에, 위의 나온 비선 2척의 노인 2통은 감봉하여 해조에 올려보냈으며, 규정 이외로 나온 왜선 4척은 속히 돌려보내라는 뜻을 다시 역관들로 하여금 관수왜에게 책유하게 하였음. 대관왜 등이 말하기를 “전일에 구매한 호두와 잣이 통신사 때 쓸 수요에 너무 부족하다고 하니, 호두 15섬과 잣 10섬을 급속히 구무하여 들여주라고 운운” 한 바, 이는 예전에 구매를 허락한 물건이니 막는 것이 부당한 듯하므로, 허락 여부를 해조로 하여금 속히 품처하도록 하시기를.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이정신의 장계를 보니, “대관왜 등이 말하기를 ‘전일에 구무한 호두와 잣이 통신사 때에 너무 부족하다고 하니, 호두 15섬과 잣 10섬을 급속히 구무하여 들여주라’고 운운하므로, 허락 여부를 해조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시라”고 한 바, 이제 이 두 종류의 구청(求請)에는 이미 예전에 구매를 허락한 전례가 있고, 또 통신사 때 쓸 것이라 하니 막을 필요가 없어, 그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본도로 하여금 수요에 맞추어 허락하라는 뜻으로 분부하심이 어떠할지? 강희 50년(1711) 6월 29일 우부승지 신 이집(李集)²²²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운허함.

신묘(1711) 7월 초8일

예조에서 입계하기를, 지난번 통신사의 장계를 접하니, “일본에 가져갈 국서의 수정본과 별폭이 도착했기에 국서통(國書筒)에 옮겨 넣어 봉하고, 전에 배지(陪持)해온 국서와 별폭은 지금 비로소 올려보낸다”고 하니, 전례대로 정원에 명하여 품지하고 불태우도록 하심이 어떠할지? 전교하기를 “운허한다”고 하심.

정원에서 입계하기를, 예조의 초기로 인하여 통신사가 배지해간 국서와 별폭을

222) 이집(李集): 이집(李集, 1664~1733) : 덕수 이씨로 자는 노천(老泉), 호는 취촌(醉村)이요, 영의정 심지원(沈之源)의 외손이다. 숙종 23년(1697) 정시문과에 급제하고, 1707년 문과 증시에 급제하였다. 1710년 승지를 거쳐 대사간이 되어 최석정(崔錫鼎)을 신구(伸救)하다가 전직되었다. 경종조 예조참판·황해감사 등을 지내고, 영조 초반 예조판서·이조판서·우의정이 되었다. 글씨에 뛰어나 <백세청풍비(百世淸風碑)> <청성묘비(淸聖廟碑)> 등의 작품을 남겼다.

본원으로 하여금 품지하고 불태우도록 하는 일에 윤희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어첩(御帖) 및 사행 때 잘못 쓴 문서에 어휘(御諱)가 있으면 칼로 긁어내고 납입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에 따라 납입한다는 뜻을 감히 계달합니다. 전교하기를 “알았다”고 하였음.

신묘(1711) 7월 11일

동래부사 이정신(李正臣)이 6월 19일 성첩한 장계. 이달 초4일 술시쯤 황령산 봉군 민무신(閔武信)과 간비오 봉군 장삼봉(張三奉) 등이 진고한 내용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등불을 매달고 물마루를 나왔다”고 진고하였음. 추후에 도부한 부산첨사 박중징(朴仲徵)의 치통 내용에 “왜선 1척이 등불을 매달고 나왔다고 석성 봉군이 진고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상황을 탐색하려고 두모포 만호 김중탁(金重鐸)을 선정하여 보낸 일”로 치통하였음. 동일 해시에 성첩하고 초5일 자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나온 작은 왜선 1척을 영솔하여 관소에 붙였다고 초탐장 김중탁이 치보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즉시 가훈도 이덕기(李德起)와 가별차 김진혁(金震爌)²²³ 등에게 명하여 정황을 묻게 한 뒤의 수본 내용에 ‘관에 나아가 정황을 물었더니, 도중에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비선 1척에 두왜 1인과 격왜 6명 등이 함께 타고 관수왜와 대차왜에게로 보내는 사서 및 노인을 가지고 나온 것이라 하기로, 가져온 노인 1통을 받아 올려보낸다’는 뜻으로 수본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동 노인을 수송하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기에, 위의 나온 비선의 노인 1통을 감봉하여 해조에 올려보냈음. 통신사호행대차왜와 재판차왜가 탔던 크고 작은 배 도합 9척이 바람을 기다린다는 연유를 방금 치계하였는데, 이달 초5일 오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박중징의 치통 내용에 “통신사호행대차왜와 재판차왜 등이 탔던 크고 작은 배 도합 9척이 관소로 돌아와 정박해 바람을 기다리다가, 통신사 일행의 기선(騎船)과 복선(卜船) 도합 6척에 위의 왜선에 탔던 왜인 중 통사왜 4명, 금도왜 13명, 사공왜 12명 등이 도해선에 나누어 탔으며, 왜선 9척을 합쳐 도합 15척이 당일 진시에 배를 출발하여 곧장 대마도로 향했다는 일”로 치통하였기로,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는 일임.

223) 김진혁(金震爌, 1673~?) : 삼척 김씨로 자는 증명(仲明)이다. 숙종 39년(1713) 증광시 역과에 왜학으로 급제하여, 관직이 총민(聰敏)·정(正)에 이르렀다.

신묘(1711) 7월 17일

금 7월 15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켰을 때, 영의정 서[서종태]가 계한 바에 “어제 경상좌수사의 장계에 통신부사가 탄 배가 바다로 나간 지 겨우 수십 리만에 꼬리의 나무가 바람에 부러져 손상되어 간신히 도로 돌아와 정박했다고 하기에, 너무 놀라 본사에서 계사를 올려 ‘수사를 추고하고 해당 차사원을 파직하며 감색(監色)과 공장(工匠) 등을 순영(巡營)²²⁴으로 잡아와서 형추(刑推)²²⁵하시라’고 청하였더니, 이미 윤허를 내리셨는데, 여러 의논들이 ‘이는 전에 없던 일이니 차사원의 논죄가 너무 가볍다’고 하니, 이 말이 맞습니다. 잡아와 심문하여 그 경고와 문책을 엄중하게 하는 것으로 조치하여야 합당한 듯하기에 감히 진달합니다” 하였다. 좌의정 김[김창집]이 말하기를 “일이 비록 놀랄 만하나, 심문할 만한 일이 있어야 비로소 잡아올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심문할 만한 것이 없는 듯합니다” 하였다.

좌참찬 이언강은 말하기를 “바다를 건너는 여행에는 오로지 배와 노에 의지합니다. 신이 사명을 받들었을 때는 배와 노가 견고하고 치밀했기에 비록 풍랑을 만났어도 다행히 무사히 갔다 올 수 있었는데, 이 경우는 키[舵]가 부러져 돌아와 정박했으니, 만약 바다 중간에서 이런 환난이 있었다면 어찌 크게 위험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별이 파직에 그치는 것은 후일을 징계하기에 부족하니, 비록 심문할 만한 일이 없더라도 잡아와 심문해야 합당합니다” 하였다. 예조판서 조태억이 말하기를 “도해의 행차는 오로지 배와 노에 의지하는데, 조정에서 누차 신칙한 것은 대개 이 때문입니다. 지금 이 꼬리 나무가 부러져 손상되는 환난이 마침 배를 출발한 처음에 있어서 무사히 돌아와 정박할 수 있었지만, 혹시나 물마루 꼭대기에서 만났다면 틀림없이 뒤집혀 빠지는 환난을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는 실로 전에 없던 일이니, 그 죄를 무겁게 하여 후일을 징계하고 독려해야 합당할 것 같습니다” 하였다.

상감께서 말씀하시기를 “차사원의 죄는 검찰을 잘하지 못한 데에 있으니 별달리 심문할 만한 실정은 없지만, 바다를 건너는 행차는 오직 배와 노를 믿는데, 지금 이제 키가 부러져 돌아와 정박할 적에 그때 장계에서 배 안의 사람들이 모두 실색했다고 하니, 그 위태로움을 가히 상상할 수 있다. 후일의 폐단에 관계되므로 의당 그 죄를 무겁게 하라는 말은 생각없는 견해가 아니니, 잡아와 심문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비국, 예조].

224) 순영(巡營) : 각 도의 관찰사가 직무를 보던 관아를 감영(監營)이라 하는데, 감영을 달리 순영이라고도 함.

225) 형추(刑推) : 죄인의 정강이를 때리며 심문하던 일.

동래부사 이정신(李正臣)이 7월 11일 성첩한 장계. 이달 초7일 진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박중정의 치통 내용에 “어제 두모포 앞바다에서 바람을 기다리던 작은 왜선 2척과 수호하던 금도왜의 작은 배 1척 등은 역풍이 연달아 불어 발선하기가 쉽지 않아 관소로 되돌아와 정박하였다”고 치통하였음. 동일 유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금 초5일에 돌아갔다가 도로 나왔던 비선 1척과 금년 6월 26일에 나왔던 비선 1척에 두왜 1인과 격왜 6명과 중금도왜 1명, 금년 7월 초6일에 나왔던 비선 1척에 두왜 1인과 격왜 6명과 대차왜와 도선주 1인 등이 함께 타고서, 부사선(副使船)을 호행하려는 수호금도왜의 작은 배 1척을 다시 영솔하고 와서 두모포 앞바다에 정박하여 바람을 기다린다고 역관 등이 수분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수호장 두모포 만호 이경(李++慶)을 선정하여 보낸 일”로 치통하였음. 초8일 술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금년 7월 초4일에 나왔던 비선 1척에 두왜 1인과 격왜 6명 등이 함께 타고서 통신부사선을 호행하려고 두모포 앞바다로 또 나가 바람을 기다린다고 역관 등이 수분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동일하게 수호하라는 뜻으로 수호장 이경에게 신칙하여 분부한 일”로 치통하였음. 초10일 미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지금 이 두모포 앞바다에서 바람을 기다리던 금년 7월 초4일에 나온 비선 2척에 두왜 1인과 격왜 2명 등이 함께 타고 도선주왜의 사서를 가지고 당일 묘시에 배를 출발하여 돌아갔다”고 치통하였음. 동일 술시쯤 황령산 봉군 박이백(朴以白)과 간비오 봉군 김금철(金今哲) 등이 진고한 내용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작은 배 1척이 물마루를 나왔다”고 진고하였음. 추후에 도부한 부산첨사 박중정의 치통 내용에 “작은 왜선 1척이 나왔다고 석성 봉군이 진고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상황을 탐색하려고 개운포 만호 김중탁(金重鐸)을 선정하여 보냈으며, 즉각 역관 등의 수분.

내용에 ‘금년 7월 초6일 나왔던 비선 1척에 두왜 1인과 격왜 7명 및 기축년(1709) 11월 18일 나온 중금도왜 3명 등이 함께 타고서 통신부사선을 호행하려고 두모포 앞바다로 또 나가 바람을 기다린다’고 수분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동일하게 수호하라는 뜻으로 수호장 이경에게 분부한 일”로 치통하였음. 동일 해시에 성첩하고 11일 자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나온 작은 왜선 1척을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초탐장 김중탁이 치보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정만익과 별차 이덕기 등에게 명하여 정황을 묻게 한 뒤의 수분 내용에 ‘관에 나아가 정황을 물었더니, 도중에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비선 1척에 두왜 1인과 격왜 7명과 별도로 선정된 물에 익숙한 사공왜 1명 등이 함께 타고서 통신부사선을 호행하려고 관수왜에게로 보내는 사서와 노인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

기로, 가져온 노인 1통을 받아 올려보낸다'고 수분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동 노인을 수송하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기에, 위의 나온 비선 1척의 노인 1통을 감봉하여 해조에 올려보냈으며,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비변사에서 입계하기를, 통신사가 데려가는 당상역관 3인을 구례대로 차정하였고, 사신이 진달한 후에 또 본사의 계사로 인하여 최상집을 더 선정하여 내려보냈는데, 이 사신의 장계를 보니, 왜인이 "당상역관의 수를 더한 것은 규정 외에 해당하고 또 일행의 직책과 성명을 써보낸 후에 나왔으니, 역관 4인 중 1인은 상관(上官)으로 대하여야 마땅하기에, 모름지기 당하의 좌목(座目) 안에 써 넣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사신이 누차 왕복하여 네 역관을 모두 당상으로 써서 주었더니, 왜인이 부득이 받고나서는 도리어 "당상 중 1인은 당초 규정 이외이니 결코 다른 당상과 같은 사례로 대하기 어렵고 상통사(上通事)와도 또한 마땅히 조금 구별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개 당상역관은 저들이 '상상관(上上官)'으로 칭하고 상통사 이하는 '상관(上官)'으로 칭하면서, 무릇 접대의 절목에 차등이 있습니다. 이제 이 왜인이 운운한 바는 응접의 어려움에서 말미암은 듯한데, 당상 4인은 원래 이전의 규례가 아니므로 우리의 도리로서는 또한 강제로 접대하게 할 수 없으니, 새 당상 중 1인은 그 순차를 상관의 예에 따라 시행하라는 뜻으로 사신에게 분부하여 사신이 왜인에게 언급하도록 하심이 어떠할지? 전교하기를 "윤희한다"고 하심. [예조, 사역원].

신묘(1711) 9월 21일

예조에서 입계하기를, 지난번 동래부사가 올려보낸 바 대마주 태수가 통신부사의 복선(卜船)이 파선한 일로 동래부에 통보한 서계 1통은 본조에 계하(啓下)하고, 동래부의 장계는 비국에 계하되었기에 가져와서 참작하여 봤더니, 부사의 복선이 파손된 까닭에 그 복물(卜物)을 왜선에 나누어 실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행의 배가 파손되었다고 해서 왜인이 그들의 배에 복물을 옮겨 신고 또 이렇게 특별히 서계로 통보하는 거조가 있으니, 우리의 선린(善隣)하는 도리로서는 의당 동래부가 회답 서계로 감사해야 할 듯하나, 신의 관청에서 감히 멋대로 처리하지 못하니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심이 어떠할지? 전교하기를 "윤희한다"고 하심. [비국].

신묘(1711) 9월 25일

비변사에서 입계하기를, 예조의 계사에 “왜인이 우리나라 사행의 복물선이 파손되었다고 해서 그들의 배에 옮겨 신고 또 특별히 서계로 통보하는 거조가 있으니, 우리의 선린하는 도리로서는 의당 동래부에서 회답 서계로 감사해야 할 듯하다”고 했는데, 계사 내용의 사연이 일의 적절함에 부합하는 듯하니, 동래부의 회답 서계를 지어 내어 내려 보내라는 뜻으로 해조와 해원에 분부하심이 어떠할지? 전교하기를 “윤택한다”고 하심. [비국].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 다이라 요시가다[平義方]가 조선국 동래부사공 합하게 계서(啓書)합니다. 가을 날씨가 서늘한데, 족하의 맑고 자적(自適)하심을 생각하니 그리운 마음이 더욱 절실합니다. 세 분 사신 대인들도 침식이 길하니 멀리서 수고로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에 고하는 것은, 이달 22일 우리나라에 폭풍이 불고 큰 비가 내려 성난 파도가 하늘까지 치솟아, 포구 안에 닻줄을 묶는데 부사의 복선이 별안간 돌제방에 부딪혀 부서지니 놀라움과 슬픔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비록 그러하나 배 안의 사람들은 다행히 무사하기에, 애오라지 서계를 내달려 보고하여 알립니다. 바라건대 살펴주십시오. 다 갖추지 못합니다. 정덕(正德)²²⁶⁾ 원년(1711) 신묘 7월 일. 대마주 태수 습유 다이라 요시가다. [이것은 회답을 지어내고자 괴원에 이송함].

신묘(1711) 10월 초10일

동래부사 이정신(李正臣)이 10월 초1일 성첩한 장계. 지난달 25일 미시쑼 황령산 봉군 김천립(金天立)과 간비오 봉군 박신건(朴信建) 등이 진고한 내용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물마루를 나왔다가 역풍을 만나 우도로 표류 정박했다”고 진고하였음. 추후에 도부한 부산진 겸임 좌수영 우후(虞侯) 김석하(金錫夏)의 치통 내용에 “왜선 2척이 대마도에서 나오다가 역풍을 만나 우도로 향하여 표류했다고 석성 봉군이 진고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멈추어 정박한 곳을 상세히 탐색하여 빠르게 보고하라는 뜻을 차례로 신칙한 일”로 치통하였음. 28일 사시에 도부한 동 우후의 치통 내용에 “가덕도 첨사의 전통(傳

226) 정덕(正德) : 일본 제114대 나카미카도 천황[中御門天皇, 재위 1709~1735]의 연호로, 1711~1716년 사용하였다.

通)에 의거한 다대포 첨사의 치통 내용에 ‘이제 이번 정거리(碇巨里) 앞바다에 표류 정박한 왜선 2척에게 거제(巨濟) 왜학 양시웅(梁時雄)이 27일 신시에 내달려 도착하여 정황을 물었더니, 도중에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제1척은 무자조 부특송사 1호가 재차 나온 배로 격왜 40명, 제2척은 기축조 제9선으로 격왜 30명 등이 함께 타고서, 각각 노인을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 가고자 금 25일에 2척의 배가 대마도를 나왔다가 표류하여 이곳에 도착했다고 운운하며 전통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치통한다’ 하기로, 연유를 치통하는 일”로 치통하였음. 29일 유시에 도부한 부산진 겸임 좌수영 우후 김석하의 치통 내용에 “이제 이번 다대포로 이동하여 정박한 표류 왜선 2척을 영솔하여 관소에 붙였다고 호송장 정철(鄭哲)이 치보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다시 훈도 정만익과 별차 김상윤(金尙潤)²²⁷⁾ 등에게 명하여 정황을 묻게 한 뒤의 수본 내용에 ‘사연이 당초 거제 왜학 양시웅이 정황을 물은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되, 무자조 부특송사 1호가 재차 나온 배는 규정 이외인 탓으로 노인을 받지 않고 이에 속히 들여보낸다는 뜻을 관수왜에게 책유했으며, 기축조 제9선의 노인은 연호를 보영(寶永)으로 써넣었거늘, 동 왜인에게 묻기를 어떤 노인은 정덕(正德)으로 쓰고 어떤 노인은 보영으로 쓰는가 했더니, 정덕 연호는 7월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노인은 5월에 써넣은 것이라 답하기로, 그대로 받아 올려보냈으며, 통신사 일행이 9월 초2일 아카마가세키[赤間關]에서 폐단 없이 떠났다고 운운한 것 이외에 우선 아무개 곳으로 전진했다는 기별은 없다고 하며, 관수왜가 말하기를, 이제 도중의 사서를 보니 앞으로 통신사 행차 때 소용될 마른 대구어 몸집 큰 500미를 이에 속히 구매를 허락하라고 운운했다’고 수본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동 노인 1통을 받아 올려 수송하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기에, 위의 기축조 제9선의 노인 1통은 감봉하여 해조에 올려 보냈으며, 무자조 부특송사 노인은 재차 나와 규정 이외인 탓에 속히 들여보낸다는 뜻을 다시 역관으로 하여금 관수왜에게 책유하게 하였음. 위의 관수왜가 말한 “앞으로 통신사 때 소용될 마른 대구어 500미의 구매를 허락하여 들여주라”고 한 바, 이는 예전에 구매를 허락한 물건이니 마땅히 전례대로 구매를 허락해야 할 듯하므로, 허락 여부를 해조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시기를.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이정신의 장계를 보니, “관수왜가 말하기를 ‘이제 도중의 사서를 보니 앞으로 통신사 행차 때 소용될 마른 대구어 몸집 큰 500미를 이에 속히 구매를 허락하라’고 운운했다 하므로, 허락 여부를 해조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시라”고 한 바, 대구어 구

227) 김상윤(金尙潤, 1665~?) : 김해 김씨로 자는 이택(而澤)이다. 숙종 22년(1696) 식년시 역과에 왜학으로 급제하여, 관직이 교회(敎誨), 품계가 가선대부에 이르렀다.

무(求買)는 이전에 이미 두 번이나 돌았기에 이제 이 요청은 지리한 듯하지만, 임술년(1682) 전례를 취하여 상고하니 그 숫자가 지금에 비해 배나 많고, 또 통신사행 때 쓸 것이라고 하니, 꼭 막을 필요는 없으므로 그 말대로 본도로 하여금 숫자를 대조하여 구매를 허락하라는 뜻으로 분부하심이 어떠할지? 강희 50년(1711) 10월 초10일 동부승지 신 이세최(李世最)²²⁸⁾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신묘(1711) 12월 22일

동래부사 이정신(李正臣)이 12월 14일 성첩한 장계. 이달 12일 해시쯤 황령산 봉군 방구백(方九白)과 간비오 봉군金玉립(金玉立) 등이 진고한 내용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등불을 매달고 물마루를 나왔다”고 진고하였음. 추후로 도부한 부산첨사 최호(崔琥)²²⁹⁾의 치통 내용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등불을 매달고 물마루를 나왔다고 석성 봉군이 진고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상황을 탐색하려고 본진의 제2선 선장 최재홍을 선정하여 보낸 일”로 치통하였음. 13일 미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어제 나온 왜선 2척을 영술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초탐장 최재홍이 치보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즉시 정황을 물으라는 뜻으로 역관 등에게 분부하였더니, 즉각 훈도 정만익과 별차 김상윤 등이 정황을 물은 후 수본한 내용에 ‘어제 나온 왜선이 깊은 밤에 도착해 정박하여 정황을 물을 수 없다가 오늘 아침 관에 나아가 정황을 물었더니, 도중에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제1척인 비선은 통신사의 장계와 도주의 서계를 가지고서 작질(爵秩)이 높은 두왜 1인과 격왜 6명 등이 함께 탔으며, 제2척인 비선은 두왜 1인과 격왜 6명과 금도왜 2인 등이 함께 타고서, 각각 노인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기로, 통신사가 오사카성[大坂城]에 도착하여 쓴 장계 1통과 에도에 도착하여 쓴 장계 1통, 도주가 예조에 바치는 서계와 별폭 각각 1통, 동래 부산에게 서계 1통과 별폭 2통, 비선이 가져온 노인 2통 등은 받아 올려 보냈거니와, 왜인들이 말한 내용 중에 통신사 행차가 10월 초2일 왜의 서울을 떠나 동월 16일 에도에

228) 이세최(李世最, 1664~1726) : 용인 이씨로 자는 유량(幼良)이다. 숙종 25년(1699) 정시문과에 급제하고, 1704년 정언으로서 호조판서 조태채(趙泰菜)의 불법을 논죄하여 노소론이 서로 공격(攻斥)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동부승지·개성유수·대사간·충청감사·대사헌·도승지·경기감사를 거쳐 이조참판을 역임했으나, 영조 초반 김일경(金一鏡)의 옥사에 연루되어 삭탈관직·문외출송(門外黜送)되어 유배지에서 죽었다.

229) 최호(崔琥) : 영천 최씨로 무과에 급제하여 부사(府使)를 역임했다. 아들 최후태(崔垈泰), 손자 최암(崔岳), 증손 최범성(崔範星), 고손 최주덕(崔柱德)이 모두 무과에 급제하였다.

도착할 계획이었는데, 오오이가와[大井川]에 이르러 물이 불어난 까닭에 가나야[金谷]에 도착하여 이틀을 머물고, 동월 18일 유시에 무사히 에도에 도착했다고 운운한다'고 수본하기로, 동 장계 및 서계와 노인 등을 받아 올려 수송하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기에, 위의 대마도주가 해조에게로 바친 서계와 별폭 각각 1통, 동래 부산에게로 서계 1통과 별폭 2통 및 비선의 노인 2통 등을 감봉하여 해조에 올려보냈으며, 통신사의 장계 2통도 올려 보냈음. 전일에 계문했던 제주의 표류 왜인 1명이 신병이 바야흐로 위중하여, 그 본토에 돌아가 죽겠다고 빌기를 끊임없이 애절하게 간청하여 그치지 않기에, 동 왜인을 들여보내라는 서계를 해조로 하여금 재촉하여 내려 보내주실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이정신의 장계를 보니, “통신사가 왜의 서울을 떠나 에도에 도착했다고 도주가 바친 서계와 별폭을 감봉하여 올려보냈으며, 전일에 계문했던 제주의 표류 왜인이 신병이 바야흐로 위중하여 본토에 돌아가 죽기를 애절하게 간청하여 그치지 않으니 동 왜인을 들여보내라는 서계를 해조로 하여금 재촉하여 내려 보내시라”고 한 바, 도주가 우리 사행이 무사하다는 기별을 알리고 곡진하게 두왜까지 보내니, 그 서로 후하게 하는 도리로서는 접대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한결같이 임술년(1682)에 내보낸 두 왜의 예에 따라 접대하며, 표류한 왜인을 들여보내라는 서계는 이미 이달 19일 역관 최대제(崔垚齊)에게 부쳐 내려보냈으니, 이런 뜻으로 아울러 분부하심이 어떠할지? 강희 50년(1711) 12월 12일 우승지 신 황일하(黃一夏)²³⁰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희함.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 다이라 요시가다[平義方]가 조선국 예조 대인 합하게 봉서(奉書)합니다. 통신사의 배가 8월 9일 저희 주(州)에서 닻을 들어 9월 15일 셋즈[攝津]에 닻줄을 내렸습니다. 세 분 사신 및 일행과 여러 요속들의 기거는 무사합니다. 이번에 올바른 교린의 예로 아카마가세키[赤間關]와 오사카[大坂] 두 곳에서 특별히 연향을 설행하여 위로하는 거조가 있었으니, 성실과 신의가 두루 빛나 기쁨과 축하함이 참으로 깊고 특별했습니다. 이에 보고드리니 살펴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변변찮은 토산물로 먼 성의를 표하니, 빙그레 웃고 머물러 두게 하시기를 재차 빕니다. 바라건대 밝게 헤아려 주십시오.

230) 황일하(黃一夏, 1644~1726) : 창원 황씨로 자는 자우(子羽)이고, 조부는 김장생(金長生)의 문인이자 김천역 찰방을 지낸 황면(黃沔)이다. 숙종 22년(1696)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1703년 주청사(奏請使) 서장관으로 청나라에 갔는데, 사신의 체통을 잃었다는 이유로 죄를 입었으나 책봉사(冊封使)가 도착한 덕에 통정대부에 올랐다. 1704년 승지를 거쳐 동래부사로 나갔다가 우승지가 되었으며, 병조참판·동지의금부사·도승지·공조판서 등을 역임한 후 영조 1년(1725) 좌찬성에 올랐다.

시오. 다 갖추지 못합니다. 정덕 원년 신묘 9월 일 대마주 태수 습유 다이라 요시가다.

별폭: 채화층갑(彩畵層匣) 1비(備), 청금화로(靑金火爐) 1위(圍), 명반(明礬) 50근, 동화지(桐花紙) 300편, 채화문갑(彩畵文匣) 1구(具). 계(計). 정덕 원년 신묘 9월 일 대마주 태수 습유 다이라 요시가다.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 다이라 요시가다가 조선국 동래 부산 두 영공 합하께.²³¹⁾ 통신사의 배가 8월 9일 저희 주(州)에서 닻을 들어 9월 15일 셋츠[攝津]에 닻줄을 내렸습니다. 세 분 사신 및 일행과 여러 요속들의 기거는 무사합니다. 이제 예조 합하께 서계를 올려 이 일을 고하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박한 토산물을 별전(別箋)에 기록하니, 웃고 머물러 두게 하시면 다행이겠습니다. 다 갖추지 못합니다. 정덕 원년 신묘 9월 일 대마주 태수 습유 다이라 요시가다.

동래부사공 별폭: 수납으로 만든 차사발[粹鑲茗碗] 1개(箇), 구슬을 드리운 괘연[垂珠掛硯] 1비, 동화지 200편. 계.

부산영공 별폭: 채화갑(彩畵匣) 1비, 단목(丹木) 100근. 계(計)한 일.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접때 통신사가 왜의 서울을 떠나 에도에 도착했다고 가져온 서계의 회답 및 동래 부산이 답할 초고를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지어 내게 하되, 별폭의 회례(回禮) 잡물은 전례대로 마련하여 계목 뒤에 기록했으니, 급속히 마련하여 별도로 선정한 차비역관이 가지고 내려가게 하는 일을 해조 및 본도에 분부하심이 어떠할지?

후록.

별폭 회례: 인삼 1근, 범가죽 1장, 흰 명주 3필, 흰 모시베 3필, 검은 삼베 2필, 흰 무명 5필, 황모필 20자루.[이상은 해조에서 마련]. 화석(花席) 2장, 4장을 붙인 유둔[四張付油氈] 1부, 참떡 20홀.[이상은 본도에서 지급].

동래·부산 두 곳의 회례: 각각 흰 명주 2필, 흰 모시베 2필, 검은 삼베 1필, 흰 무명 3필, 황모필 10자루.[이상은 해조에서 마련]. 참떡 20홀[본도에서 지급].

강희 50년(1711) 12월 12일 우승지 신 황일하(黃一夏)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231) 원문의 ‘平義方’과 ‘朝鮮國東萊釜山令公閣下’ 사이에 ‘啓書’가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빠져 있다.

임진(1712) 정월 초1일

전교하기를, 일본에 보낼 국서를 내일 역관을 정하여 가지고 가게 할 일을 확정했는데, 아직도 지금까지 입계하지 않으니 그 까닭을 물어서 아뢰라. [비변사, 승문원, 예조].

임진(1712) 정월 초4일

금 12월 30일 영의정 서[서종태], 행 판부사 이[이이명], 비국 당상이 청대(淸對)하여 인견하여 입시켰을 때, 영의정 서[서종태]가 계한 바에 “통신사 조태억(趙泰億) 등의 장계를 방금 계하하였는데,²³²⁾ 왜의 실정에 뜻밖에 이런 변고의 사단이 있으니 지극히 마음을 놀라게 할 만합니다. 계사로 진달하고자 했으나, 문자가 끝내 언어로 상세히 갖추만 못하여, 입시하여 품지드려 재결을 기다리는

232) 『숙종실록』 권50, 37년 12월 30일 기사 요약: 통신사 조태억 등이 11월 20일 에도에서 치계하기를 “회답 국서를 받아 보니, 제6항의 ‘감(感)’자 아래에 중종대왕의 어휘를 범하였고, 서면(書面)에 현심(弦心)을 하지 않았으며, 봉(封)에도 쓴 글을 쓴 종이 없이 위는 봉하지 않고 다만 두 줄로 ‘봉복 조선국왕 전하서(奉復朝鮮國王殿下書)’라고 썼을 뿐 그들 국왕의 성명을 쓰지 않았으며, 보(寶)를 찍지 않았고, ‘근봉(謹封)’이라 쓰지 않았으니, 우리의 서식과 틀릴 뿐만 아니라 임술년(1682)의 회답서 봉식(封式)과도 같지 않았습니다. 신들이 즉시 고쳐 오게 했더니, 처음에는 ‘글에 임해서는 휘하지 않는다’ 하고, 또 ‘친함이 다했으니 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으며, 서식도 고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신들이 누누이 쟁집했으나, 국서의 체식(體式)을 고칠 수는 없다 하고, 또 우리의 국서 가운데 ‘광소(光紹)’의 ‘광’은 금왕(今王)의 왕부(王父)인 유조(猷祖)의 휘를 범했다고 하면서, ‘귀국의 먼 선조는 우리가 개국하기 전에 있어서 우리가 실로 알지 못했고, 유묘(猷廟)의 조정에서 어명(御名)을 그대 나라에 통한 것은 세 번이었으니 어찌 우리가 휘하는 바를 모르겠는가? 우리로 하여금 휘하게 하고자 하면, 반드시 먼저 우리가 휘하는 바를 피해야 옳다. 사신들은 이 복서(復書)를 가지고 귀국하여 그대 나라의 글을 먼저 고쳐 보내면 우리의 복서(復書) 역시 고쳐 보내겠다’ 했습니다. 또 ‘끝내 가져가지 않으려거든 이미 받은 국서를 우리나라에 돌려주고, 이미 바친 국서를 조선으로 돌려보내어 그 국서가 도착하기를 기다려 우리 글 역시 고치겠다’고 하기에, 신들이 ‘2자로 된 이름은 원래 1자만 휘하는 예(禮)가 없다. 을미년 통신사 때의 회답 국서도 일광산(日光山)의 ‘광’자를 휘하지 않았고, 임술년에 왕복한 문서 역시 이 글자를 많이 썼는데, 이제 어찌 유독 이 한 글자만 휘하려 하는가?’ 힐문했더니, ‘전에는 별로 휘하는 법이 없었으나 근래 점차 예절을 숭상하고, 또 지금 다른 나라의 휘자는 휘하려 하면서 우리나라의 휘를 휘하지 않아 사체에 미안하므로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생각건대 조정에서 지난번 ‘불비(不備)’ 두 자를 확정할 때 이미 그들의 소청을 들어주었으니, 범한 휘를 고쳐주기를 청하는 저들의 요청을 우리로서는 용납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이에 부득이 치계하여 비선을 급히 보내 조정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내일 에도에서 출발하는데, 국서를 교부(交付)하기 전에는 대마도로 가더라도 감히 귀국하지 않겠습니다. 묘당으로 하여금 속히 품지하여 국서를 고쳐 보내주시되, 단지 휘를 범한 한 글자만 고치고, 외면의 서식 역시 이 나라의 예(例)에 따르기를 문자로 약속했으니, 국서에서 단지 ‘광(光)’자만 고쳐 이 나라의 서식에 따라 만들어 보내주시면 사의(事宜)에 합당할 것입니다” 하였다.

것이 합당한데, 일이 매우 긴급하기에 비록 해가 저 어둑어둑하지만 이렇게 감히 청대하였습니다. 저들의 답서에 비록 어휘(御諱)를 범한 글자가 있으나, 이는 타국이 아는 바가 아니니 본디 반드시 깊이 꾸짖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그에 대해 말을 했으면 그들의 도리로서는 의당 즉각 허락하여 고쳐야 하는데, ‘대수가 멀어 친함이 다했다[遠代親盡]’는 등의 말을 하면서 말마다 매우 불손합니다. 또 국서에서 ‘광조(光詔)’의 ‘광’자를 고치라고 요청하나, 예전에 왕래했던 국서에는 ‘광’자를 많이 사용했어도 일찍이 이로써 문제 삼지 않았는데, 이제 사신의 말에 맞서 거절하면서 비로소 까탈을 잡으니 참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전에 가깝다고 말하지만, 이는 틀림없이 성실한 말이 아닙니다. 국서의 서식에 있어서는 이는 오래 된 규례로, 외면(外面)의 현심(弦心)²³³⁾에 봉함하고 어휘를 쓰며 어보를 찍는데, 그들의 국서 또한 이 서식과 같았으니, 설령 그 나라가 새로운 식례(式例)를 정했더라도 우리나라를 조금이나마 공경하고 삼가는 마음이 있다면 마땅히 옛 서식을 따랐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회답 국서는 내면의 식례는 별로 공경하는 일에 흠이 없지만, 외면에는 그 현심(弦心)의 제도를 없애고 성명을 쓰지 않았으며 또 인장도 누르지 않았으니, 그들이 마음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으나, 등한히 하고 업신여기는 데서 나온 듯하니, 우리가 받은 수모가 적지 않아 극히 놀랍습니다. 이는 미미한 작은 절목 사이의 일과는 같지는 않으니 사신의 힐문이 옳습니다. 장계에서 ‘날짜를 정하여 독촉하니 사신이 머무를 수가 없어 예도를 떠나 나왔다’ 하고, 또 ‘그들이 범한 휘의 글자를 마땅히 고쳐 써서 추후로 사신이 도착하는 곳에 보내어, 우리 국서가 고쳐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서로 교환하자는 뜻으로 약속했다’고 하였습니다. 먼 외방의 일은 멀리서는 헤아릴 수 없지만, 사신은 이미 그 곳에 있어 반드시 사정을 상세히 알기에 고쳐 보내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 일을 범범하게 논하자면, 휘를 범한 일을 우리가 이미 고치라고 꾸짖었으니 저들이 휘하는 바를 우리 역시 고칠 것을 허락하고, 외면의 서식을 저들이 이미 고쳤으니 우리 역시 그렇게 해도, 유독 우리한테만 예(禮)를 더하라는 것은 아니니, 폄하되고 손상되는 지경에 귀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맹국과 빙문(聘問)하는 사이에서 막중한 국서를 우리는 한결같이 옛 서식을 따르는데, 저들의 답서는 새로운 규례를 창출하고 게다가 사신이 쟁집한 뒤에 비로소 우리나라로 하여금 그 서식 모양을 따르라고 하니, 그것은 국체(國體)에 대단히 손상되고 욕되어 고치도록 허락하기가 참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신이 이미 이렇게 요청했으니 형세가

233) 현심(弦心) : 서신 봉투의 뒷면 중앙에 좌우의 종이 끝이 맞닿아 봉함하는 부분.

마땅히 고쳐 보내야 합니다. 다만 생각건대 조정에서 왜인에게 관대히 해온 지가 오래되어, 근래에는 교만하고 방자함이 더욱 심해, 매사에 반드시 그들이 청하는 대로 따르기를 원하니, 그 이후로 청하는 것이 있으면 조정에서도 꼭진히 따르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다른 일에 비할 수 없이 관계됨이 매우 무거우니, 예람(睿覽)하실 때 성의(聖意)는 어떻게 헤아리셨는지 모르겠으나, 대신과 여러 신하들이 함께 입시켰으니 하문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상감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신과 여러 신하들은 차례로 진달하라” 하였다.

행 판중추부사 이[이이명]는 말하기를 “조정에서 저 사람들과는 본디 통호하는 것이 불가하였지만 당초 기미책에서 나왔는데, 지금 와서는 더욱 저들을 제어할 기력이 없어 매사에 힘써 따르다가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그 욕됨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쟁집하는 바에는 두 건의 일이 있으니, 서식과 회를 범한 것입니다. 어휘는 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인지라 괴이하게 여길 것이 없으며, 반드시 삼가지 않은 뜻에서 나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서식에 있어서는 국서의 외면에 어휘가 있고 어보를 찍으며 또 현심의 제도를 행하는데, 저들은 그것이 모두 없으니 등한히 하고 업신여김이 심합니다. 사리로 말하자면 잘못이 저들에게 있으니, 고치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그들이 우리 국서의 서식대로 하도록 책유해야 마땅한데, 앞날에 만약 이길 수 없어 부득이한 후에 허락한다면 당초에 즉시 허락하는 것이 낫게 되는 것만 못합니다. 또 전에 비해 예(禮)를 더하라면 결코 따를 수 없으나, 지금은 간이(簡易)하게 하는 것이므로 어려워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신의 생각에는 고치는 것이 불가한 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행 병조판서 최석항(崔錫恒)이 말하기를 “통신사가 전후로 보낸 장계에 정성스런 대접이 이전 상황과는 다르다고 갖추어 진달했는데, 끝에 가서 갑자기 이런 뜻밖의 일이 있으니, 생각건대 그 사이에 특별한 사단이 있었던 듯합니다. 우리 조정의 어휘를 저들이 알지 못한 것은 공죄(公罪)²³⁴인 듯하니 심히 책망할 것은 못 되지만, 사신이 이미 어휘로 문제를 삼았으면 즉시 고쳐주는 것이 사리에 마땅한데, 다방면으로 핑계대며 거절하니 너무도 극히 놀랍습니다. 또 그 나라의 회를 거론하며 맞서 거절할 바탕으로 삼고자 하니, 그 실정이 더욱 가증스럽습니다만, 저들이 이미 나라의 회를 말했으니, 우리의 도리로서는 고치는 것을 허락해도 무방합니다. 외면 서식의 변개에 있어서는 지극히 놀랍습니다. 대개 피차의 국서에 본디 일정한 서식이 있으니, 끝에 ‘봉서 일본국왕’이라 쓰고 현심의 봉함 가운데 줄에 어휘를 쓰고 어보를 찍는 것이 백 여 년 준행된 옛 규례인

234) 공죄(公罪) : 공적 업무에서 과실로 범한 죄.

데, 지금 창졸간에 변개하여 현심을 하지 않았고 성명도 쓰지 않았으며 또 인장을 찍지 않았으니, 그 등한히 하고 업신여기며 경시하고 소홀히 함이 이보다 심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참으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도리와 사체로써 말하면 그 나라가 휘하는 글자만 고치고, 외면의 서식은 한결같이 이전의 규례에 따라 통신사에게 보내, 그로 하여금 극력 쟁집하여 마음을 돌려 말을 듣도록 기약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세(事勢)에 난처한 단서가 있습니다. 사행이 이미 에도를 떠나 바야흐로 대마도로 향하고 있어 책유하고 쟁변할 길이 없으며, 우리나라 국서를 지금 비록 전송(傳送)했지만 저들이 끝내 옛 서식을 준용하지 않고 본국으로 환송하면 일의 난처함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면 달리 뒷날을 도모할 계책이 없으니, 통신사가 요청한 대로 고쳐 써서 보냄이 합당할 듯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오락케의 성정은 몇몇한 이치로 헤아릴 수 없고, 하물며 관백의 사람됨은 어떤 형상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새로 선 뒤 수 건의 일로 살펴보면 전도되고 망녕됨이 비할 데가 없습니다. 예조[儀曹]의 예단과 저군의 예폐 같은 것은 바로 통신사행에 예로부터 통행하던 규례인데 지금 무단히 정지하였고, 칭호 변개는 사체가 가볍지 않은데 대차왜가 돌아가고 사행이 출발한 뒤에야 창졸간에 고치기를 요청하니 이 거조는 전도되고 이상한 듯하며, 지금 이 서식은 또 이전의 규례를 사용하지 않으니, 필시 별종의 인물입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일에 염려스러운 바가 많습니다. 이전의 역사를 꼭 살펴보니, 양국이 환심(歡心)을 잃어버린 시초는 대단한 것이 아니었지만, 작은 것이 쌓여 큰 것이 되고 은미함으로 인하여 드러남에 이르니, 환난은 홀연히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구한 남이 모르는 근심은 다 진달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이[이이명]가 말하기를 “저들의 애당초 서식은 단지 ‘일본 미나모토 히데타다’만 운운하고 ‘장군’이나 ‘국왕’ 등의 명호는 일컫지 않았는데, 지금은 번잡한 형식이 날마다 그릇되니, 그 본색이 아니라 쇠약할 징조인 듯합니다” 하였다.

형조판서 이언강은 말하기를 “회답 국서에 휘를 범한 일은 무심한 데서 나왔지만, 사신이 이미 이치에 맞게 고치기를 요청했으면 마땅히 즉시 고쳐야 할 것인데, 감히 ‘친함이 다하여 휘하지 않는다’거나 ‘글에 임해서는 휘하지 않는다’고 하고, 끝에 가서는 우리 국서 역시 그들이 휘하는 바를 범했다면서 먼저 고친 연후에야 고칠 수 있다고 하니, 이 또한 전혀 성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래 (저들의) 휘를 범하여 말했기에 저들이 우리의 휘하는 바에 맞서 거절하는 것이니, 또한 마땅히 허락하여 고쳐야 합니다. 서식 한 사안(事案)에 있어서는 저들은 고쳐 등한히 하고 업신여기는 새로운 서식을 따랐는데,

우리는 여전히 옛 규례대로 따르니, 지나치게 공손한 지경으로 귀착됨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옛 서식을 따르게 할 수 없다면, 차라리 공통으로 하나의 규례를 만드는 것만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신이 우리 국서 역시 그 새 서식을 따르겠다는 뜻으로 말을 하니, 그들도 역시 말없이 허락하였습니다. 사리로 논하면 그들이 저와 같은 까닭에 우리가 또 따라서 이렇게 하니, 온당한 도리는 아닙니다만, 피차는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니, 유독 우리에게만 공경을 다하게 하는 것과는 다르므로, 사신의 장계대로 고쳐 보내는 것이 무방할 듯합니다” 하였다.

예조판서 윤덕준(尹德駿)은 말하기를 “여러 신하들이 이미 진달했으니 소신은 별다른 견해가 없습니다. 이 일은 국가를 욕되게 함이 적지 않으니, 왜인의 정상은 참으로 극히 수상합니다. 이미 그들에게 국서를 전했으니, 저들이 비록 환급하더라도 그대로 받아오는 그런 이치야 어찌 있겠습니까? 당연히 저쪽에 머물면서 힘써 쟁집하여 반드시 말을 듣도록 기약했을 테고, 그러다보니 저들 역시 그 휘하는 바를 범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한편, 장계에 ‘독촉하는 거조가 있어 오래 머물 수 없다’고 했는데, 생각건대 이는 타국의 이목 때문에 말을 짧게 하여 자신의 생각을 다 말하지 않고 단서만 제시한[引而不發]²³⁵⁾ 것이니, 반드시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연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변방에 틈이 생기는 것이 이 국서를 고치느냐 고치지 않느냐에 관계되지는 않지만, 한 가지 미미한 일 때문에 우리가 먼저 끊는 것은 일의 합당함이 아닌 듯하니, 그들의 말대로 고치는 것도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하였다.

우윤(右尹) 박권(朴權)이 말하기를 “장계 가운데 휘를 범한 한 사안은 왜인이 본디 신하로 복속한 국가가 아니고 조정에서 원래 휘를 반포한 일이 없으니, 그들이 모르는 것도 괴이하지 않아, 반드시 쟁집(爭執)할 만한 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래 이것으로 말거리를 삼았으니, 저 사람들이 (우리가) 잡은 말에 맞서 거절하는 것 역시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서식에 있어서는 국가가 통호(通好)한 지 이미 백 년이 지나 전후로 서계의 왕복이 무수합니다. 이번에도 국서의 외면에 어휘를 쓰고 어보를 찍는 등의 절차를 한결같이 구례를 따랐건만, 저들은 이미 수령해놓고도 그 답서에 옛 규례를 전부 다 빠뜨렸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공경하고 삼가는 뜻이 있다면, 설혹 서식을 고치더라도 이를 미리 먼저 통보해야 마땅한데, 갑작스레 서식 개정을 일컬으니, 이러한 변개는

235) 인이불발(引而不發) : 『맹자』 「진심상(盡心上)」 41장에 “군자는 활을 당기기만 하고 쏘지는 않으나, 그 이치는 필적 뛰어 앞에 나타난 듯하여, 중도에 서 있거든 능한 자가 이를 따른다[君子引而不發 躍如也 中道而立 能者從之]”고 하였다.

극히 근거할 데가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엄한 말과 곧은 의리로 굳게 쟁집해야 하는데, 무슨 사정이 있기에 사신이 애초에 힘껏 다투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신이 쟁집하자, 그들은 국서를 환급하고 사신으로 하여금 한결같이 그들의 새 서식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서식을 고쳐 보내 그들과 같아진다면, 비록 ‘편하되고 손상되는 지경에 귀착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휘가 쓰인 국서를 전했다가 도로 가지고 온다면 어찌 욕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국가가 작고 힘이 약해 매번 틈이 생길까 염려하니, 이 일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매사에 이와 같이 점점 약함을 보이면, 앞으로 다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이미 국서를 보냈으니, 지금 와서 그들의 식례를 따라 급속히 고쳐 보내는 것은 국체에 크게 손상됨이 있기에, 감히 고쳐 보내자고 청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서[서종태]가 말하기를 “박권의 말은 정말로 소견이 있습니다. 막중한 국서는 예로부터 준용하는 규례가 있는데 그들이 어찌 감히 멋대로 고친답니까? 만약 공경하고 삼가는 마음이 있다면, 그 국서가 전해졌을 때 의당 그들 나라가 서식을 새로 정했다는 뜻을 고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조용히 생략하고 한 마디도 없이 사신을 탐색하고 시험하고자 했으니, 그 실정이 정말로 지극히 너무도 놀랍습니다. 지금 우리 국서의 경우에는 규례를 준수하여 실수가 없으니 어찌 고치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들이 우리를 따라 고치지 않아도 받아 와야지, 그렇지 않고 내버려둔 채 빈손으로 돌아오라는 뜻으로 사신을 엄히 효유하면, 의리는 직절(直截)하지만, 저들이 끝내 따르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처분은 곰곰이 헤아려보건대 마지막에 난처한 일을 있게 할 것입니다. 임진년(1592) 이후 조정에서 왜인에게 어찌 화친을 통할 이치가 있었겠습니까? 정미년(1607)부터 다시 통호를 허락한 것은 대개 그때 이에야스[家康]가 죽고 히데타다[秀忠]의 자손들이 한결같이 그와는 달랐기 때문이니, 조정의 기미책은 참으로 부득이한 데서 나왔습니다. 왜인은 뱀과 같지만, 원래 그들과 바다를 격해 가까이 이웃하면서 세급(歲給)이 넉넉하고 후하였기에 그들의 환심을 잃었다고는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우리가 먼저 끊고는 후일에 끝내 지킬 수 없어 다시 예전의 우호를 닦는다면, 더더욱 국가의 권위와 무게가 손상됩니다. 박권의 말은 옳지만 따지지 않을 수 없는데, 앞날의 사세를 헤아리면 극히 난처하여 감히 그 말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이[이이명]는 말하기를 “박권의 말이 옳습니다만, 조종조에서 백성을 위한 계책으로 이런 기미의 거조가 있었으니, 이제 대단한 이해가 없는데도 급작스레 우리가 먼저 끊을 기색을 보이는 것은 합당한 계책이 아닌 듯합니다. 신들이 국

가를 잘 도모하지 못해 이렇게 욕을 끼치는 날을 당하고도 능히 의리에 맞게 준절히 배척하지 못하고 감히 힘써 허락하시라는 뜻으로 청하니, 그 황공함을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일을 뜻대로 시종일관 거절하려면, 반드시 모름지기 먼저 그 서로 단절되는 것을 한정하여 계산해놓고 사신이 그대로 머물러 돌아오지 못해도 되돌아보지 않겠다고 작심한 이후에나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춘추시대 열국(列國)처럼 신의로 서로 더붙고 사령(辭令)으로 서로 감동시킬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천지 간에 비견하기 어려운 별종[異類]입니다. 그러니 만약 애초에 자세히 헤아리지 않으면 장차 어떻게 그 마침을 잘 하겠습니까?” 하였다. 서[서종태]가 말하기를 “박권의 말대로 하면 사리에는 합당합니다. 저들이 비록 오랑캐라도 굽은 것과 곧은 것은 분명하니, 그들에게 할 말이 없으면 혹 복종할 방도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왜인은 본디 별종(別種)이라, 생각한 계책을 한번 정하면 고쳐 도모하는 일이 절대 드뭅니다” 하였다.

박권이 말하기를 “신의 생각에도 만약 화친을 끊어 사신이 돌아올 기약이 없는 지경에 이른다면, 나라가 작고 힘이 약하니 어찌 되돌아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생각건대 저들이 만약 과연 틈을 만들 생각이 있더라도 또한 어찌이 때문에 화친을 단절하는 지경에야 이르겠습니까? 하물며 잡은 것이 본디 반듯하면 오랑캐라도 행할 만하니, 사신이 처음에 비록 힘써 다투지 못했으나, 이제 만약 ‘우리나라는 한결같이 옛 규례를 따르니 너희들이 어찌 감히 멋대로 고치는가? 우리나라의 국서가 이미 돌아왔으니 받들고 가겠지만 너희 나라의 답서는 고치기 이전의 서식이 아니면 결코 받아갈 수 없다’는 뜻으로 말을 하고 배척한다면, 그들 역시 잘못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거나 혹은 새삼 깨닫는 단서가 있어, 회답 국서를 우리나라의 옛 규례대로 고쳐 보낼 것입니다. 지금 만약 틈이 생길 줄 분명히 안다면 뜻을 굽혀도 무엇이 방해되겠습니까마는, 신의 혼미하고 얕은 소견으로는 그것이 반드시 틈이 생기는 지경에까지 이를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이[이이명]는 말하기를 “한나라 황제가 한나라 초기 전성기를 맞았을 때, 위타(尉佗)²³⁶⁾가 황옥좌독(黃屋左纁)²³⁷⁾을 탔는데도 문제(文帝)²³⁸⁾는 피하고 물러

236) 원문의 ‘두타(廚佗)’는 ‘위타(尉佗)’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동일하다. 위타(尉佗)는 남월왕(南越王) 조타(趙佗)를 가리킨다. 조타는 진(秦)나라 남해군 위(南海郡尉)로 있었기 때문에 ‘위타’라고도 하며, 남월왕이기 때문에 ‘월타(越佗)’라고도 한다.

237) 황옥좌독(黃屋左纁) : 한나라 때 천자의 수레를 말한다. 황옥은 수레의 지붕을 걸은 파란 비단으로 안은 노란 비단으로 장식한 것이고, 좌독은 쇠꼬리로 장식한 큰 깃발로서 수레 왼쪽에 꽂는다.

238) 문제(文帝) : 전한 제5대 황제 유향(劉恒). 고조(高祖) 유방(劉邦)의 제4자로 재위연도는 B.C180~B.C157년이다.

나 글을 보냈으니,²³⁹⁾ 옛 제왕이 오랑캐를 대하는 도리는 또한 이와 같습니다. 지금 이 서식은 전에 비하면 등한히 하고 업신여기는 것이지만, 그 규례를 고쳐 따르는 것은 겸손히 물러남에 비할 바 못 되고, 또한 그들이 물리쳐 받지 않는 것도 아닌데다, 마침 사신의 말 때문에 이러한 개정 요청이 있게 되었으니, 이제 비록 고쳐 보내도 그것이 대단한 손상이 되거나 욕이 되는 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서[서종태]가 말하기를 “이[이이명]의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문제가 위타에게 스스로 겸손히 말한 것은 한나라 전성기 시절에 해당합니다. 남월은 멀리 치우쳐 있고 또 좁아서 한나라의 위세로 항복시키니,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한 쪽 귀퉁이의 위타에게 겸손하게 낮춤을 보인 것은 국체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저들과 서로 더부[與] 나라입니다. 교린의 도리는 진실로 화평을 주장해야 하나, 예절 사이에 있어서는 엄한 말로 쟁변하지 않을 수 없으니, 박권의 말이 옳습니다. 우리의 말뜻이 직절(直截)하다면 저들이 혹 깨닫는 단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사신이 만약 회답 국서를 받지 않고 빈손으로 돌아온다면 그들 역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듯합니다. 그러나 이는 혹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지, 왜인의 성정은 이상하여 사리로 책망하기 어렵습니다” 하였다.

상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신의 장계가 진달한 바는 두 건인데, 하나는 휘를 범한 일이고 하나는 서식의 일이다. 어휘는 저 나라가 모르는 것이니 삼가지 않은 뜻에서 나온 것은 아닌 듯하다. 사신이 애초에 만약 다투지 않았다면 진실로 순조롭고 편안했겠지만, 사신의 도리로서는 다투는 것 역시 옳다. 저들이 일컬은 ‘친함이 다하여 휘하지 않는다’는 등의 말은 실로 매우 거만하고, 저들 역시 그 나라가 휘하는 바를 고치라고 요청하나 이는 그렇지 않다. 서식에 있어서는 통호한 지 오래라 지금 처음 있는 것도 아닌데, 회서 내면은 비록 예전과 같으나 외면은 우리의 국서와 같지 않다. 현심(弦心)이 없는데다 또 성명을 쓰지 않고 인장도 찍지 않았으니, 이는 최고로 등한히 하고 업신여기는 것이다. 사리로 논하면 잘못이 저들에게 있으니, 엄한 말로 준절히 배척함이 참으로 정당하나, 저 사람들은 몇몇한 이치로 책유할 수 없다. 또 국서를 처음에는 순순히 받았다

239) 조타는 한나라 진정(眞定)사람으로, 처음 이름은 조타였으나 진나라 남해위(南海尉) 임효(任囂)가 죽은 다음 위(尉)의 직무를 행하면서 위타(尉佗)로 불렸다. 진나라가 망한 뒤 자립하여 남월 무왕(南越武王)이 되었는데, 전한 고조와 화친하여 고조가 조타를 남월왕(南越王)에 봉하였다. 그러나 조타는 세력이 커지자 무제(武帝)라 자칭하며 중국 황제의 의장(儀仗)인 황옥좌독을 탔다. 조타가 황제를 자칭하며 중국 변방을 침입하자 여후(呂后)가 군대를 보내 토벌했으나 실패했는데, 문제(文帝)가 육가(陸賈)를 사신으로 보내 왕의 인수(印綬)를 주어 자치를 허락하는 등 우호를 닦으니, 조타가 그때부터 황제 칭호와 천자의 의장을 쓰지 않고 다시 남월왕으로 처신하며 한나라에 칭신(稱臣)하였다.

가 우리 사신의 말로 인하여 이런 거조가 있게 되었으니, 그들이 먼저 횡방을 놓은 것에 비할 바는 아니다. 서식을 저들이 만약 이전에 비해 공경히 하라고 하면 진실로 따를 수 없으나, 이는 자못 감쇄하는 것이니, 그것이 대단히 욕되는 줄은 알지 못하겠다. 이제 만약 이치에 맞게 쟁변(爭卞)한다면, 그들이 혹 마음을 돌려 말을 듣는 모양새가 박권의 말과 같을 수도 있겠으나 원래 기필할 수는 없으니, 어찌다 도리어 난처한 지경에 이르면 국체가 손상되고 욕됨이 더더욱 어떻겠는가? ‘광(光)’자는 그 말대로 고치고 서식 역시 한결같이 저 나라의 서식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나도 처음 장계를 볼 때 이렇게 해야 합당함을 얻겠다고 생각했다” 하였다.

서[서종태]가 말하기를 “국서는 마땅히 하교에 따라 고쳐 베껴야 하고, 대마도의 서계 또한 전례대로 회답하되, 해원(該院)에서 별도로 영리한 역관을 선택하여, 그로 하여금 내일 안으로 발송하여 밤을 새워 달려 나가도록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상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장계가 11월 19일에 나온 것이니, 그 사이에 아무 곳에 도착했는지 모르겠으나, 서로 만나 들어가서 전수하라는 뜻을 한정하여 분부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이[이이명]가 말하기를 “만 리 바다를 건너는 행차에는 마땅히 약간의 반전을 주어야 하니, 조금 관대하게 하루를 더 주어 행장을 꾸릴 수 있도록 함이 합당합니다” 하였다. 상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모레 발송하여 그로 하여금 밤을 새워 달려가게 함이 옳다” 하였다. [비국, 호조, 사역원].

임진(1712) 2월 14일

동래부사 이정신(李正臣)이 2월 초3일 성첩한 장계. 이달 초1일 술시쯤 황령산 봉군 정시건(鄭時巾)과 간비오 봉군 강건이(姜建伊) 등이 진고한 내용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물마루를 나왔다”고 진고하였으며, 추후로 도부한 부산첨사 최호(崔琥)의 치통 내용에 “작은 왜선 1척이 나왔다고 석성 봉군이 진고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상황을 탐색하려고 본진의 제2선 선장 최재홍을 선정하여 보낸 일”로 치통하였음. 동일 해시에 성첩하고 초2일 축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나온 작은 왜선 1척을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초탐장 최재홍이 치보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정만익과 가별차 최대제 등에게 명하여 정황을 묻게 한 뒤의 수본 내용에 ‘관에 나아가 정황을 물었더니, 도중에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비선 1척에 두왜 1인과 격왜 6명 등이 함께 타고서 통신사의 장계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기로, 동 장계 1봉(封)을 받아 올

려보내며, 또 통신사의 행차가 어느 곳에 돌아왔는지 이 장계는 어느 곳에서 작성하여 보냈는지 물었더니, 동 왜인이 통신사 행차는 정월 16일 아카마가세키[赤間關]에 도착했고 이 장계는 가와구치[河口]에서 내보낸 것이라 하며, 또 국서를 받들어 가져온 역관이 탄 배가 정월 20일 무사히 사스우라[佐須浦]에 도착하여 다시 대마부중[府中]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운운'이라고 수본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동 장계를 본진에서 수송하는 일로 통틀어 치통한다" 하였기에, 위의 통신사 장계 봉(封) 1통을 삼가 이에 올려보냈음.

지난해 겨울 사이에 통역 등이 와서 고하기를 “관수왜가 말하기를 ‘임술년(1682) 구송사(九送使)를 정지할 때 동래 부산에서 회답 서계를 들여준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팔송사(八送使)를 정지하는 일이 있건만, 본부 부산이 회답 서계를 아직도 들여주지 않은 까닭에 도중에서 누누이 언급하니 동 회답 서계를 속히 들여주라’고 운운한다”고 와서 고하거늘, 본부의 임술년(1682) 서계등록을 취하여 상고하니, 그때 구송사를 정지할 때 대마도의 봉행(奉行) 등이 본부에 서계를 바쳤으나 본부는 답이 없었고, 본부와 부산에서 도주에게 답서하는 일에 있어서는 원래 등록에 기록된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 부사 권이진(權以鎭)이 재임할 때 봉행 등이 본부에 서계를 바치자 매우 외람되었다고 계문(啓聞)한 뒤 물리쳤으니, 지금 서계에 회답했다고 말할 만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연으로 엄히 책유를 더하라는 뜻을 분부하여 보냈습니다.

방금 바친 훈도 정만익과 가별차 최대제 등의 수본 내용에 “어제 비선에 대한 정황을 물을 때 관수왜가 작은 종이편지 1장을 내주면서 ‘이것이 바로 임술년(1682) 구송사 정지 때 동래 부산이 회답한 서계의 등본이다. 본부에서 등록에 없으니 끝내 회답하지 않았다고 말하기에 임술년(1682) 회답 서계를 도중에서 베껴 왔으니, 이 작은 종이를 동래영감전에 들여서 보이고 동 회답 서계를 이에 속히 들여주라’고 하거늘, 비직(卑職) 등이 ‘서계 원본을 이렇게 베껴 왔어도 본부의 등록에 원래 없고 전 동래영감이 또 계문하여 확정했으니, 이차 저차 결코 회답할 형세가 없다’고 했더니, 동 왜인이 ‘임술년(1682) 회답 서계가 바로 이렇게 반반하여 상고할 만한데 하필 등록에 없다고 말할 것인가? 등록에 서계가 있는데도 계문하여 확정했다면서 끝내 회답하지 않으니, 이와 같은 교제의 절목을 어찌 계문하여 확정했다고 핑계대며 들여주지 않을 수 있는가? 여러분[僉知]들은 모름지기 많은 말을 하지 말고 이것으로 고하여 동 회답 서계를 이에 속히 들여주도록 하며, 또한 지난해 통신사가 오사카성에 도착했을 때 도주가 예조에 바친 서계의 회답도 역시 조정에 전달하기를 원하니 이에 속히 내려 보내 도중에서 다시 재촉하는 폐단이 없도록 해달라’고 하기로, 연유를 수본하는 일”로 수

본하였습니다. 위의 임술년(1682) 구송사 정지 때 동래 부산의 회답 서계를 도중에서 베껴 보냈다는 동 등본을 역관 등이 와서 바치거늘, 그 등본을 취하여 상고하니 임술년(1682) 3월 동래부사 남익훈(南益熏)²⁴⁰과 부산첨사 이두귀(李斗龜)²⁴¹가 송사 정지의 일로 도주에게 복서(復書)한 바, 이제 이 등본이 과연 진짜일지? 대저 임술년 봉행 등이 본부에 서계를 바친 일은 등록에 실려 있고 회답 여부는 거론하지 않았거니와, 혹 이 회답을 봉행에게 한 것이 아니라 도주에게 곧장 답한 것인지? 본부 등록에는 원래 실린 곳이 없으니 참으로 준신(準信)하기 어렵되, 관수왜가 말한 바가 이와 같기로 연유를 치계하니, 회답 여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해조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시며, 지난해 통신사가 오사카성에 도착했을 때 도주가 예조에 바친 서계의 회답도 해조로 하여금 재촉하여 내려 보내도록 하옵소서.

제주에 표류한 왜인 1명이 부산에 도착한 후 동 왜인이 신병이 있어 속히 돌아가기를 애걸하기에 관수왜 등이 누누이 언급한다고 역관 등이 와서 고하는 탓에, 동 왜인을 들여보내는 서계를 재촉하여 내려 보내시라는 뜻으로 치계하였더니, 동 서계를 지난해 12월 29일 역관 최대제가 가지고 왔거늘, 즉각 관왜에게 들여주고 그로 하여금 속히 들여보내게 했더니, 훈별 등이 와서 고한 내용에 “동 왜인의 신병이 점점 더 위중하여 생사를 드나드니 우선 차도가 있기를 기다렸다가 마땅히 들여보내겠다고 운운한다” 하기로, 표류 왜인이 수개월간 머물고 있는 우암촌(牛巖村)²⁴² 백성들이 땀나무, 마실 물, 물고기, 채소를 지공하는 폐단이 끝없는 탓으로 누차 명령을 전하여 역관 무리로 하여금 관왜를 책유하게 했더니, 훈도 정만익과 가별차 최대제 등이 다시 바친 수본 내용에 “관수왜의 말에 ‘표류 왜인에 관한 서계가 내려왔으니 마땅히 즉시 들여주어야 하는 바인데, 표류 왜인의 신병이 아직 차도가 없고 이때 날씨도 추워 형세가 들여보내기 어려운 까닭에, 관왜가 바람을 받는 지역에서 번갈아 수호하니, 또한 극히 근심되고 초초하되, 형세가 이와 같아 아직 들여보낼 수 없거니와, 우선 병세가 조금

240) 남익훈(南益熏, 1640~1693) : 의령 남씨로 자는 훈중(熏中), 호는 파은(坡隱)이다. 현종 13년(1672)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숙종 7년(1681) 밀양부사에서 동래부사로 부임해 1683년 4월 까지 재직하였으며, 경상감사와 함경감사 등을 역임하였다.

241) 이두귀(李斗龜, 1627~1688) : 여주 이씨로 자는 자정(子禎)이다. 효종 2년(1651)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1681~1682년 부산첨사를 역임했고, 숙종 14년(1688) 춘천 방어사(防禦使)로 재직하다가 관아(官衙)에서 죽었다.

242) 우암촌(牛巖村) : 우암포(牛巖浦)를 가리킨다. 현재 부산시 남구 우암동이다. 김건서의 『증정교린지』 「지(志)」 <타도표왜(他島漂倭)>에 의하면, 좌도(左道)에 표류한 자는 별차(別差)가 달려가서 정황을 묻고 왜관에서 20리 떨어진 우암포(牛巖浦)에 데려다 맡기고, 우도(右道)에 표류한 자는 옥포(玉浦의) 역학(譯學)이 정황을 묻고 다대포(多大浦)에 데려다 맡긴다.

차도가 있는지 보고 즉시 들여보내겠다'고 하기로, 연유를 수본한다"고 수본한 바, 서계가 내려온 지 벌써 두 달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들여보내지 않으니 일이 극히 지체되기로, 병이 만약 조금 낫거든 즉시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다시 역관 무리로 하여금 관수왜에게 엄히 책유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구은(舊銀)을 다시 통용하는 일로 본부 부산의 회답 서계를 개찬(改撰)한 초본이 지난달 초9일 내려왔거늘, 즉시 고쳐 적어 관왜 등에게 들여주었는데, 개찬한 서계를 들여준 이후에는 마땅히 한편으로 서계를 들여보내고, 한편으로는 구은의 통행을 즉시 거행하는 것이 조정의 명령이거늘, 서계를 들여준 지 벌써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거행하는 형국이 없으니, 참으로 심히 해괴하여 통역 등에게 명을 전하여 그들더러 대관왜에게 책유하게 했더니, 방금 바친 훈도 정만익과 가별차 최대제 등의 수본 내용에 "전하신 명령 내의 사연을 일일이 번역하여 대관왜와 관수왜에게 말했더니, 동 왜인 등이 말하기를 '개찬한 서계가 내려왔으니 동 구은을 분수(分數)에 따라 즉시 내주어야 마땅한 바인데, 일대관(一代官)의 목에 난 종기가 위중한 실상을 관중(館中)의 개시(開市)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속속들이 알고 있어, 은화 분수 문서를 아직 고열(考閱)하지 못한 탓에 이렇게 지연되거니와, 모름지기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사행에 사은(謝恩)하기 이전에는 당연히 내주겠다' 하기로, 돌아가는 형편을 수본하는 일"로 수본하기로,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이정신의 장계를 보니, "관수왜가 말하기를 '임술년(1682) 구송사 정지 때 회답 서계를 들여준 일이 있는데, 이번에는 팔송사 정지에 본부와 부산의 회답 서계를 아직도 들여주지 않는 일로 도중에서 누누이 언급한다'고 하였거늘, 등록을 취하여 상고하니 그때 구송사를 정지할 때 대마도의 봉행왜 등이 본부에 서계를 바쳤으나 답이 없었고, 본부와 부산에서 도주에게 답서함에 있어서는 원래 등록에 기록된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 부사 권이진이 재임할 때 봉행왜 등이 본부에 서계를 바치자 매우 외람되다고 엄히 책유를 더하라는 뜻으로 분부하여 보냈더니,²⁴³⁾ 관수왜가 작은 종이편지 1장을 내주면서 '이것이 바로 임술년(1682) 구송사 정지에 동래 부산에서 회답한 서계의 등본이다. 이것으로 고하여 동 회답 서계를 이에 속히 들여주도록 하며, 또한 지난해 통신사가 오사카성에 도착했을 때 도주가 바친 서계의 회답도 이에 속히 내려보내 다시 재촉하

243) 이정신의 장계를 보면, 외람되다고 한 사람은 권이진이고, 엄한 책유를 더하라고 분부한 사람은 이정신인데, 여기서는 문장이 생략되었다.

는 폐단이 없도록 해달라'고 한 바, 이제 이 등본이 과연 진짜일지, 임술년(1682) 봉행 등이 바친 서계는 등록에 실려 있고 회답 여부는 거론하지 않았으니 혹 회답을 봉행에게 한 것이 아니라 도주에게 곧장 답한 것인지, 참으로 준신하기 어렵되, 관수왜가 말한 바가 이와 같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해조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시며, 도주가 예조에 바친 서계의 회답 역시 해조로 하여금 재촉하여 내려보내게 하시라"고 한 바, 본조 등록에서 상고해보니, 임술년(1682) 구송사 정지 때 봉행왜 등이 동래부에 서계를 바친 일은 매우 외람되어, 이는 폐단을 줄이는 것이라는 말이 있었으나, 일이 변방의 사정에 관계되므로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했더니, 묘당의 복계 내용에 "도주가 대마도에 있는 날 봉행 등이 서계를 지어 보낸 것은 과연 외람되나, 그들이 폐단을 줄이는 데에 뜻이 있다고 말을 하니, 우선 받도록 허락해도 무방하다"고 하기로, 이때 동래 부산의 회답은 봉행에게 하지 않고 도주에게 곧장 답하여, 그 답한 서계가 괴원등록에는 분명히 수록되어 있는데 본부 등록에는 실려 있지 않으니 그 연유를 모르겠거니와, 전 부사 권이진이 재임 때 팔송사 정지 일로 봉행 등이 본부에 서계를 소통하자 부당하다는 뜻으로 치계했더니, 비국의 복계 내용에 "도주가 대마도에 있을 때 봉행이 곧장 동래에게 서계를 소통한 것은 일이 매우 외람되니, 배척하여 받지 않는 것 외에는 다시 다른 방도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개 임술년(1682) 봉행 등이 동래부에 서계를 소통할 때 묘당의 복계가 허락하여 도주에게 회답한 것이 곧 지금 이 관수왜가 편지에서 보여준 등본이니, 회답을 재촉하는 문제에는 이것을 지적하여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임술년(1682)에는 그 서계를 물리치지 않았기에 도주에게 답을 작성했으나, 이번에는 권이진이 품계했을 때 묘당에서 배척하여 받지 않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고 복계하여 분부했으니, 앞의 임술년 일은 오늘날 끌어올 만한 예시가 아니므로, 전례대로 확정하고 다시 책유를 더하여 제기할 수 없도록 함이 실로 사의(事宜)에 합당하되, 일이 변방의 사정에 관계되므로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시며, 도주가 바친 서계의 회답은 이미 지난달 29일 역관 변계(邊槩)에게 맡겨 내려보냈으니 이제 논할 게 없으므로 이로써 분부하심이 어떠할지? 강희 51년(1712) 2월 14일 우부승지 신 송징은(宋徵殷)²⁴⁴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244) 송징은(宋徵殷, 1652~1720) : 여산(礪山) 송씨로 자는 질부(質夫), 호는 약헌(約軒)이다. 박세채(朴世采)의 문인으로 박학하고 문명이 높았다. 숙종 15년(168)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승지·대사간·대사성·개성유수·형조참판·호조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문집 외에 『국조명신언행록(國朝名臣言行錄)』, 『역대사론(歷代史論)』, 『예설집록(禮說輯錄)』 등이 있다.

임진(1712) 2월 22일

동래부사 이정신(李正臣)이 2월 16일 성첩한 장계. 이달 15일 미시쫌 황령산 봉군 민무신(閔武信)과 간비오 봉군 서여성(徐汝成) 등이 진고한 내용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물마루를 나왔다”고 진고하였음. 추후로 도부한 부산첨사 최호(崔琥)의 치통 내용에 “신묘년(1711) 10월 15일에 나온 기축조 제10선에 격왜 30명과 대관왜 1인 등이 함께 탔으며, 신묘년 11월 초7일에 나온 기축조 제13선에 격왜 20명과 동년 12월 22일에 나온 대관왜 1인 및 제주에서 영술하여 우암촌으로 와 머물렀던 사츠마주[薩摩州] 표류 왜인 1명 등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어 가지고 도합 2척이 당일 진시에 배를 출발하여 돌아갔으며, 즉각 석성 봉군이 진고한 내용에 ‘왜선 1척이 나왔다’고 진고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상황을 탐색하려고 두모포 만호 이경(李++慶)을 선정하여 보낸 일”로 치통하였음. 동일 술시에 성첩하고 16일 자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나온 왜선 1척을 영술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초탐장 이경이 치보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정만익과 가별차 최대제 등에게 명하여 정황을 묻게 한 뒤의 수본 내용에 ‘관에 나아가 정황을 물었더니, 관수왜의 말에 도중에 별로 다른 일은 없고, 기축조 이특송사 수목선(水木船)에 격왜 20명과 금도왜 2인 등이 함께 타고서 노인을 가지고 왔으며, 통신사 삼복선장(三卜船將) 추시강(秋時江)의 시체 및 부복선(副卜船)의 격왜인 다대포 토병(土兵)²⁴⁵ 박준응(朴俊應)이 신묘년(1711) 10월 14일 오사카성에서 죽었기에 두 시체를 싣고 왔다고 하기로, 노인 1통은 받아 올려보내고, 동 시체는 그 시체의 친척에게 즉시 내주었으며, 또 통신사 행차의 소식을 물었더니, 이달 초9일 대마도로 돌아왔는데 동 행차가 먼저 오고 오래지 않아 나왔다고 하며, 관수왜가 또 통신사 행차가 작년 왜의 서울에 도착했을 때 바친 대마도주의 서계가 나온 지 이미 오래인데, 예조의 회답 서계가 해가 지났는데도 내려오지 않은 탓에 도중에서 재촉하니, 회답 서계를 이에 속히 내려 보내라고 누누이 그치지 않는다’고 수본한 바, 동 왜선이 가져온 노인의 서면(書面)에 각 도 각 관 방어소라 써넣었기로 전례대로 물리쳐 받지 않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기에, 위의 격식을 어긴 노인을 개서하여 바치라는 뜻을 다시 역관 무리에게 명하여 관수왜에게 책유하였거니와, 통신사가 작년 왜의 서울에 도착했을 때 대마도주가 바친 서계의 예조 회답을 이에 속히 들여 주라고 관수왜가 누누이 언급한다고 하니, 동 회답 서계를 해조로 하여금 이에

245) 토병(土兵) : 본디 그 지방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뽑은 군사.

속히 내려보내도록 하실 일임.

[이는 전날의 장계에 대한 회계(回啓) 안에 이미 내려보낸다는 뜻으로 복계하였기에 회계하지 않음].

임진(1712) 3월 초2일

동래부사 이정신(李正臣)이 2월 25일 성첩한 장계. 이달 24일 신시쫓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3척이 나와 연유를 방금 치계하였거니와, 동일술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최호(崔琥)의 치통 내용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3척이 나왔다고 석성 봉군이 진고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상황을 탐색하려고 개운포 만호 김중탁(金重鐸)을 선정하여 보낸 일”로 치통하였음. 동일 해시에 성첩하고 25일 축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나온 왜선 3척을 영술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초탐장 김중탁이 치통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정만익과 별차 김상윤(金尙潤) 등에게 명하여 정황을 묻게 한 뒤의 수본 내용에 ‘관에 나아가 정황을 물었더니, 도중에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제1척은 기축조 삼특송사 1호선으로 격왜 40명, 제2척은 동 특송사 2호선으로 격왜 30명, 제3척은 동 특송사 수목선으로 격왜 20명과 대관왜 2인 등이 함께 탔는데, 3척의 배가 공작미를 싣고 가고자 각각 노인을 가지고 당일 대마도에서 나왔다고 하기로, 동 노인 3통을 받아 올려보내며, 또 통신사 행차의 소식을 물었더니, 관수왜의 말에 통신사 행차가 이달 18일 부중(府中)에서 배를 타고 떠나자 마침순풍을 만나 19일 사스우라[佐須浦]에 도착하여 바람 부는 곳에서 기다리는데, 오늘은 바람의 형세가 잔잔하여 배를 출발하지 못했지만 내일은 순풍이 불어 마땅히 배를 출발할 것 같다고 합니다. 운운’이라고 수본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동 노인 3통 가운데 1호선과 2호선 노인 각 1통은 받아 올려 수송하지만, 그 나머지 수목선 노인은 서면에 각 도의 각 관청 방어소를 써넣었기로 전례대로 물리쳐 받지 않는 일”로 치통하였음.

일시에 도부한 훈도 정만익과 별차 김상윤 등의 수본 내용에 “관수왜의 말에 ‘통신사호행대차왜가 오래지 않아 의당 나올 것이라 하니, 경접위관(京接慰官) 및 차비역관 당상·당하 각 1원을 미리 차출하였다가, 대차왜가 나오는 즉시 내려 보낼 일’을 언급하기로, 연유를 수본하는 일로 통틀어 치통하고 수본한다”고 하였기에, 위의 왜선 노인 2통은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냈으며, 격식을 어긴 노인은 이에 속히 개서하여 바치라는 뜻을 다시 역관 무리에게 명

하여 관수왜에게 책유하였거니와, 통신사를 호송하여 오는 대차왜가 나오면 경접위관을 보내 접대하는 전례가 있으니, 경접위관 및 차비역관 당상·당하 각 1원을 미리 차출하였다가 차왜가 나오는 즉시 내려 보낼 일을 해조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기 위한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이정신의 장계를 보니, “관수왜의 말 가운데 ‘통신사호행대차왜가 오래지 않아 의당 나올 것이니, 경접위관 및 차비역관 당상·당하 각 1원을 미리 차출하여, 대차왜가 나오는 즉시 내려 보낼 일’을 해조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시라”고 한바, 임술년(1682) 통신사 때의 등록을 취하여 상고하니, 통신사가 돌아올 때 호행차왜로 1등 봉행이 나온다고 본부가 아뢰면서 경접위관의 차송(差送)을 청하였으나, 본조의 회계 및 묘당의 복계는 ‘마땅히 본도 도사를 차견해야 한다’고 했는데, 마침 연분(年分)을 복심(覆審)하는²⁴⁶⁾ 거조를 만나, 특별히 가까운 옆고을 수령 중 작질이 높은 문관을 차송하였다가, 그 후 통신사를 인견할 때 경접위관을 차송하는 일로 하교하였습니다. 경접위관과 도사 수령은 사체에 사이가 있으니, 그때도 바꾸어 보내자는 의견이 필시 존재했으며, 또 변방의 사정에 관계되니, 신의 관청에서 멋대로 처리하기 어려우므로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심이 어떠할지? 강희 51년(1722) 3월 초2일 우승지 신 황일하(黃一夏)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험함.

임진(1712) 3월 초7일

동래부사 이정신(李正臣)이 2월 28일 성첩한 장계. 통신사 일행의 기선과 복선 도합 5척 및 국서를 받들어 가져오는 배 1척 등이 용당(龍堂)·분포(盆浦)·남천(南川)²⁴⁷⁾ 등지에 표류 정박한 일과 통신사를 호위하여 온 차왜의 배 등은 그 배의 척수(隻數)를 알고 정황을 물은 후 추후로 계문하겠다고 연유를 방금 치계하였거니와, 이달 26일 사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최호의 치통 내용에 “초탐장 본진의 제2선 선장 최재홍의 치보 내용에 ‘왜선 2척은 용당 앞바다에 머물러 정박했고, 또 왜선 1척은 오륙도 앞바다에 침몰하여 타고 있던 왜인 19명이 근근이

246) 연분(年分)은 그 해 농사의 풍흉(豐凶)에 따라 나누는 토지 등급을 말하고, 복심(覆審)은 다시 심사하거나 조사하는 것이다.

247) 용당리(龍堂里), 분포리(盆浦里), 남천리(南川里)는 모두 동래부 동면(東面)에 속한 마을이다. 현재 용당리는 부산시 남구 용당동, 분포리는 남구 대연동, 남천리는 수영구 남천동이다.

급수선(汲水船) 가장자리 판(板)을 잡고 어렵사리 목숨을 부지했기에 즉각 초탐선에 싣도록 하여 그대로 관소에 보내고 동 침몰 왜선은 바다 속에 그대로 두었으며, 또 작은 왜선 1척은 절영도 바깥 바다에 떠다니다가 오늘 아침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치보했으며, 좌수영에서 선정하여 보낸 수호장 포이포(包伊浦) 만호 이시두(李時斗)의 치보 내용에 '작은 왜선 4척이 남천 앞바다에 표류 정박했다'고 하며, 또 석성 봉군이 진고한 내용에 '왜선 3척이 분포의 경계인 사포(蛇浦) 앞바다에 표류 정박했다'고 하기로, 위의 표류 왜선 등은 그 도달한 곳에 따라 정황을 묻고자 별차 김상윤을 선정하여 보낸 일"로 치통하였음. 동일 오시에 도부한 동 첩사의 치통 내용에 "부사 기선의 격군으로 순천(順天)에 사는 노응성(盧應性)이 압사했는데 시체 위에 모래와 돌이 많이 덮여 있어 금방 파내어 그를 분포리 임산(任山)에 묻었다고 차사원 감포(甘浦) 만호가 치보하였으며, 왜선 1척이 조도(朝島) 앞바다에 떠다니고 또 왜선 2척이 용당리 망산(望山) 앞바다에 머물러 정박했다고 수호장 칠포(柒浦) 만호가 치보하였으며, 또 왜선 1척이 남천 바깥 바다에서 표류해 남천 앞바다로 들어왔다고 포이포 만호가 치보한 바, 이제 이 통신사를 호송하여 온 왜선 등이 깊은 밤 풍우 속에 표류하여 각 처에 흩어져 초탐장의 보고와 봉군 등의 진고가 이처럼 서로 섞여 그 척수와 표류 정박한 곳을 확실하게 알기 어렵거니와, 그 표류 정박한 곳에 수영에서 수호장을 선정하여 보내 그로 하여금 상황을 탐색하여 수호하게 하며, 표류 왜선들이 연속으로 관소로 돌아와 정박했다고 봉군 및 수문소통사(守門小通事) 등이 차례로 이어서 진고하거니와, 훈별 등이 정황을 물은 수본이 도착한 이후에야 그 실제 숫자를 알 수 있겠기로, 연유를 먼저 치통하는 일"로 치통하였음.

동일 신시에 도부한 동 첩사의 치통 내용에 "신묘년(1711) 11월 초7일에 나온 기축조 제14선 1척에 격왜 20명 등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어 가지고 당일 진시에 배를 출발하여 돌아간 일"로 치통하였음. 일시에 도부한 동 첩사의 치통 내용에 "정사 기선 1척, 종사관 기선 1척, 복선 1척, 국서를 받들어 가져오는 배 1척 등은 먼저 부산 선창으로 돌아와 정박했고, 복선 하나는 남천 앞바다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치통하였음. 동일 유시에 도부한 동 첩사의 치통 내용에 "이제 이 표류 왜선에게 정황을 묻고자 선정하여 보낸 별차 김상윤의 수본 내용에 '달려가 용당 앞바다에 도착해 정황을 물었더니, 정사선에 통사왜 1인, 금도왜 1인, 사공왜 2명, 종왜 2명 등이 함께 탔으며, 왜선 제1척은 기축조 이특송사 1호선이 재차 나왔는데 격왜 40명, 제2척은 통신사 일행을 호송한 대차왜의 견선(撓船)으로 격왜 20명 등이 함께 타고 각각 노인을 지녔거니와, 이제 이들 나온 왜선들이 각 처에 표류하여 흩어졌거나 혹은 관소로 돌아오는데, 아직 정

황을 묻지 못했으니 도착해 정박하기를 기다려 상세히 정황을 물을 계획'이라고 수분하기예, 이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하는 일"로 치통하였음.

동일 해시에 성첩하고 27일 축시에 도부한 동 첩사의 치통 내용에 “부사선에 함께 탔던 왜인 8명을 우리나라 어채선(漁採船)에 실어 관소로 보냈다고 축산포(丑山浦) 만호가 치보하였으며, 즉각 수문소통사가 진고한 내용에 ‘낙후한 표류 왜선들을 맞이해 오려고 관(館)에 머물던 금도왜가 작은 배 1척에 타고 전례대로 용당 앞바다에 도착하여 나갔다’고 하기로, 소통사(小通事) 양광석(梁光碩)과 이월흥(李月興) 등을 압송함. 이제 이 부선(副船)의 부서진 곳을 구별하여 다시 보고하라는 뜻으로 차사원 감포 만호에게 분부했더니, 동 만호가 조사하여 보고한 내용에 ‘동 배의 오른쪽 가장자리 삼판 및 본판과 뱃머리가 모두 부서져 바다로 떠내려갔는데 간 곳은 알지 못하며, 왼쪽 가장자리 삼판은 크고 작은 돌덩이에 쌓여 파묻힌 탓으로 바야흐로 파내며, 앞뒤 돛대[帆竹] 2그루, 미목(尾木) 1개, 기타 소소한 목물만 물가로 떠내려와 또한 파내며, 파묻힌 삼판을 파낸 후 다시 치보하려고 계획하며, 죽은 사람의 의복 잡물을 찾으니 은자 8냥 5전, 가는 빗 11개, 낫쇠식기[鋤食器] 1좌(坐), 젓가락[筯] 2개, 기름종이[油紙] 1장, 모단으로 만든 갓끈[帽段纓子] 1건, 작은 창의(昌衣) 하나, 등나무 채찍 하나, 벼룻집 하나, 목군(木裙) 둘, 포군(布裙) 하나, 쇠사슬[鎖鐵] 둘, 전투복 하나, 버선 하나, 걸 수 있는 숟가락[巨匙子] 6개 등의 물건은 통영 사공 김계립(金戒立)과 순천에 사는 김태원(金太元) 등에게 전하여 주었다’고 조사하여 보고했으며, 전후로 관소에 도착하여 정박한 왜선들은 정황을 물어 수분했으나 날이 이미 저물어 아직 와서 바치지 못한 탓으로 여러 번 전령을 발하여 신척하였더니, 해시에 도부한 훈도 정만익과 별차 김상윤 등의 수분 내용에 ‘통신사호행차왜선과 비선 도합 14척이 좌도의 여러 곳에 표류 정박하였다가, 오늘 왜선 3척과 비선 4선이 관소로 도착하여 정박했기에, 나아가서 정황을 물었더니, 제1척은 통신사호행대차왜가 탄 배로 정관 다이라 미찌유키[平倫之], 봉진암물 1인, 시봉 2인, 반중 16명, 통사왜 1인, 의왜 1인, 격왜 70명 등이 함께 타고 서계를 지냈으며, 제2척은 동 차왜의 수목선으로 도선주 미나모또 덴조오[源傳藏], 금도왜 2인, 격왜 20명, 제3척은 동 차왜의 견선으로 격왜 20명 등이 함께 타고 각각 노인을 지냈으며, 비선 4척에는 각각 두왜 1인, 격왜 7명 등이 함께 타고 각각 노인을 지냈으며, 통신정사와 종사관이 탄 배에 각각 통사왜 1인, 금도왜 1인, 사공왜 2명, 종왜 2명 등이 함께 탔다가 관소에서 내보낸 비선에 실려 관소로 들어왔으며, 삼복선과 병선(兵船)에 탄 금도왜 각 2인, 통사왜 각 1인, 사공왜 각 2명 등도 역시 관소에서 내보낸 작은 배로 모두 관소에 들어왔으며, 부사선에 함

게 탄 통사왜 1인, 금도왜 2인, 사공왜 2명, 종왜 3명 등은 우리나라 배로 옮겨 실어 관소에 넣어 부쳤고, 기축조 이폐이양[以配庵] 송사선이 재차 나왔는데, 격왜 20명이 함께 타고서 노인을 가지고 별폭 잡물을 싣고 도중에서 나올 때 격왜 1명이 병이 위중하여 낙후된 탓에 19명 등이 함께 타고 나왔다가, 오륙도 앞바다에서 배가 부서져 타고 있던 19명 왜인이 근근이 죽음을 면했기에, 작은 급수선과 초탐선에 나누어 타고 관소로 들어왔으나, 부서진 배에 실린 별폭 잡물은 하나도 꺼내지 못했다고 하며, 그 나머지 배는 관소로 돌아와 정박하면 즉시 정황을 물어 수분하려고 계획하며, 왜선이 가져온 노인 6통은 받아 올려보냈음. 차왜가 가져온 서계는 다례일에 전례대로 바칠 계획이라 운운하기로 등본을 올려보낸다'는 뜻으로 수분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위의 노인 6통과 서계 등본을 전례대로 수송하거니와, 이제 이 왜선이 전후로 관소에 들어온 숫자가 8척에 이른다고 수문소통사가 차례대로 진고하므로, 이제 역관 등을 보고 정황의 사연을 물었더니 7척이라는 탓에, 당초 진고한 통사 등에게 다시 조사하게 하여 물었더니, 부서진 배의 격왜 등이 초탐선과 함께 그 작고 작은 급수선에 나누어 타고 관소로 들어갔기 때문에 대충 급수선을 나온 비선인양 여겨 진고하였는 바, 소위 급수선은 바로 그 배[本船] 안에 실려 있는 것이기에 척수에 넣지 못함. 침수된 배는 즉시 초탐장 본진의 제2선 최재홍에게 명하여 (사람들을) 많이 정하여 배를 육지로 끌어내라는 뜻으로 엄히 신칙을 더한 일"로 치통하였음.

동일 유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금년 2월 초1일 나간 비선 1척에 두왜 1인과 격왜 6명 등이 함께 타고서 관수왜의 사서를 가지고 당일 진시에 배를 출발하여 돌아갔으며, 통신사 일복선 1척이 당일 부산 선창으로 돌아와 정박했으며, 좌도 각 척에 낙후된 표류 왜선 7척 및 관소에서 내보낸 작은 왜선 등을 아울러 관소에 부쳤다고 수호장 등이 치보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즉시 정황을 물으라는 뜻으로 역관 등에게 분부한 일"로 치통하였음. 동일 해시에 성첩하고 28일 축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즉각 훈도 정만익과 별차 김상윤 등이 정황을 물은 후 수분한 내용에 '표류 왜선 7척이 관소로 돌아와 정박했기에 즉시 나아가서 정황을 물었더니, 관수왜의 말에 제1척은 통신사호행재판차 왜선으로 정관 다찌바나 가다다카[橋方高], 봉진압물 1인, 반종 10명, 격왜 40명 등이 함께 타고 별폭과 노인을 지녔으며, 제2²⁴⁸)척은 기축조 이특송사 1호선이 재차 나왔는데 격왜 40명, 제 3척은 동 특송 제2호선이 재차 나왔는데 격왜 30명 등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어 가고자 각각 노인을 가지고 나왔으며, 소위

248) 원문의 '일(一)'은 '이(二)'의 오키로 보인다.

재차 나옴은 규정 이외인 탓으로 노인을 받지 않고 이에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을 관수왜에게 책유하며, 제4척은 부사의 복물을 싣고 온 배로 격왜 20명, 제5척은 난파한 기축조 이때이양선[以配庵船]이 재차 나왔는데 격왜 19명이 함께 탔으며, 비선 2척에는 두왜 각 1인과 격왜 각 6명 등이 함께 타고 차왜 등의 복물과 노인을 가졌으며, 통신사 일복선에 탄 통사왜 1인, 금도왜 2인, 사공왜 2명을 부복선과 교대하러 온 왜선에 옮겨 실어 관소로 들어가며, 재판차왜는 임술년(1682) 전례대로 서계 없이 단지 동래 부산에게로 별폭만 있는 탓에, 등본 1통 및 재판선과 비선이 아울러 지닌 노인 3통을 받아 올려 보내거니와, 재판차왜의 말에 불 일이 있으니 접위관을 속히 차송해 달라고 운운하였다'고 수분하기로, 위의 별폭 등본 및 노인 3통을 전례대로 받아 올려 수송하였음. 이제 훈도와 별차 등을 보고 정황의 사연을 물었더니, 기축조 이특송사 1호선에 격왜 40명, 동 특송사 2호선에 격왜 3명 등이 함께 타고 재차 나왔다고 한 바, 위의 왜선 2척은 이달 초2일 이미 나와 이때 관중(館中)에 머물고 있거늘, 이제 또 나왔다는 말은 일이 매우 괴이하기로, 훈별 등에게 앞서 조사한 것에 대해 물은 일"로 치통하였음.

동일 사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동 왜선 2척이 겹쳐 나온 곡절을 역관 등에게 조사하여 물었더니, 훈도 정만익과 별차 김상윤 등의 수본 내용에 '전령에 의거하여 관수왜에게 조사하여 물었더니, 답하기를 전날에 나온 두척의 배가 돌아간 후 이제 또 나왔다고 하니, 의당 다시 물을 단서가 없되, 도중의 노인을 담당하는 왜인[路人次知倭]이 사리를 알지 못하여 앞서 왔던 왜선이 아직 돌아가기도 전에 이제 또 재차 노인을 써 보내어 이렇게 겹쳐 나오는 거조가 있게 되었으니, 실로 괴이하고 부끄럽다. 대마도에 있는 노인차지왜에게 후일에는 이와 같이 하지 말라는 뜻을 각별히 써서 통지하려고 계획한다. 운운'이라고 수분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하는 일로 치통"하였기에, 위의 재판차왜선 노인 1통과 비선 노인 6통 및 차왜 등이 가져온 서계와 별폭 등본 1통 등은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냈으며, 대차왜 수목선과 견선의 노인은 서면에 각 도 각 관 방어소라 써넣어 전례를 어긴 탓으로 물리쳐 받지 않은 뒤 이에 속히 개서하여 바치라는 뜻을 역관 무리로 하여금 관수왜에게 책유하도록 했으며, 규정 밖의 겹쳐 나온 왜선 2척은 속히 환송하라는 뜻도 역시 역관 무리로 하여금 관수왜에게 책유하도록 했으며, 통신사호래대차왜를 접대하는 경접위관 및 차비역관 등을 미리 차출하시라는 뜻을 전에 이미 치계하였는데, 동 차왜가 이미 나왔으니 경접위관 및 차비역관을 재촉하여 내려보내게 하시며, 통신사호래재판차왜는 일찍이 접대한 전례가 있기로 접위관은 가까운 고을의 수령 중에

서 차정하라는 뜻을 도신(道臣)에게 보고하였으니, 증정하는 연회의 예단 잡물을 해조로 하여금 전례에 비추어 마련하여 내려 보내도록 하시며, 임술년(1682) 등록을 취하여 상고하니 통신사호행대차왜가 거느린 시봉 1인을 접대하거늘, 이번 대차왜가 거느린 시봉은 2인이기로 금방 역관 무리더러 차왜에게 책유하도록 하여 그로 하여금 시봉 1인을 줄이도록 계획하였음. 이번 통신사행이 대마도주와 ‘범간’ 한 사안으로 약조를 새로 정했다고 도주가 수표(手標)를 주어 본부에 전하였기로, 동 수표의 원본은 본부의 지통(紙筒)에 보관해두었고, 수표를 옮겨 써서 해조에 올려보냈으며, 세 사신에게 왜인이 회례한 은자 1만 2천 3백 33냥 7전 5푼을 대마도주에게 전해주어 후일 그 지급할 공목(公木)²⁴⁹⁾ 308동 17필 6촌 5푼으로 바꾸어 낸다고 대마도의 수표가 와서 전했는데, 동 금년조 공목을 순영(巡營)에서 이미 역참에 나누어 각 관원이 반드시 마련하는 고을이 있으니 창졸간에 변통하기 어려워 방해되는 폐단이 없지 않을 뿐 아니라, 대관왜의 말에 ‘내년조 공목 계산을 줄이는 것이 편리하고 합당하다’ 하였기로, 내년의 공목은 원래 숫자에서 줄여서 마련하라는 뜻을 도신에게 논보하였으며,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이정신의 장계를 보니, “통신사호행대차왜가 이미 나왔으니 경점위관 및 차비역관을 재촉하여 내려보내게 하며, 재판차왜는 일찍이 접대한 전례가 있어 접위관은 가까운 고을의 수령 중에서 차정하라는 뜻을 도신에게 보고하였으니, 증정하는 연회의 예단 잡물을 해조로 하여금 전례에 비추어 마련하여 내려보내도록 하며, 대차왜가 거느린 시봉 1인을 역관 무리더러 책유하게 하여 그로 하여금 줄이도록 계획하였고, 이번 통신사행이 도주와 ‘범간’ 한 사안으로 약조를 새로 정하여 도주의 수표를 받아와 전하였기로, 원본은 지통에 보관해두었고, 수표를 옮겨 써서 해조에 올려보냈다”고 한 바, 대차왜의 접위관을 차송하는 여부는 방금 본부의 장계로 인하여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신 일에 이미 복계하여 윤허를 받았으니 이로써 분부하며, 차왜가 가져온 별폭의 회례 및 연회의 예단 잡물은 이미 전례가 있으니 전례대로 마련하여 들이도록 하며, 거느린 시봉 2인의 일은 임술년(1682) 접대 때도 역시 1인을 줄였으니 지금 역시 이대로 거행하며, 범간으로 새로 정한 약조 또한 이미 다 전했으니 본부에 보관해두는 것으로 그칠 수는 없으므로, 본부로 하여금 속히 새겨서 관중에 세워두어 왕래하는 왜인들이 금제(禁制)를 밝게 알도록 함이 사의(事宜)에 부합하되, 일이 변방의 사정

249) 공목(公木) : 공작목(公作木). 일본과의 공무역 대금으로 책정해두었던 포목. 해마다 미곡 16,000섬 대신으로 공목 400동(同)을 책정하였다.

에 관계되므로 묘당으로 하여금 품쳐하도록 하심이 어떠할지? 강희 51년(1712) 3월 초7일 우승지 신 이세최(李世最)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통신사호행차왜 다이라 미찌유키[平倫之]가 가져온 서계와 별폭 등본.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 다이라 요시가다[平義方]가 조선국 예조참판 대인 합하게 봉서(奉書)합니다. 계절이 중춘에 이르렀는데, 멀리 생각건대 대감의 체후가 아름답고 편안하시리니, 참으로 위로되고 걱정이 사라집니다. 이번에 통신사가 바다를 건너 동무(東武)의 대례(大禮)를 이미 마치고, 바다와 육지에서 탈없이 저희 주에 도착했으니, 기쁨과 위로됨이 참으로 깊습니다. 이제 귀국함에 미쳐 이전의 규례와 같이 다이라 미찌유키가 호행하여 부산포로 돌아갑니다. 세사신이 조만간 서울에 도달하여 반드시 평안함을 알릴 것입니다. 토산(土產)의 변변치 못한 물품으로 애오라지 먼 정성을 표하니, 수령하여 들이시면 다행이겠습니다. 삼가 이에 다 갖추지 못합니다. 정덕(正德) 2년(1712) 임진 2월 일.

별폭: 황련(黃連) 40근, 채화화전갑(彩畵華箋匣) 2개, 진주 드리운 괘연[垂珠掛硯] 2비, 금을 붙인 병풍[貼金屏風] 2쌍, 청금화로(靑金火爐) 3위, 대화진주(大和眞朱) 2근, 수납으로 만든 세 개가 한 벌인 맑은 사발[粹鑑累參淸鉢] 1부 끝.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 다이라 요시가다가 조선국 예조참의 대인 합하게 봉서합니다. 중화의 절기에 멀리 생각건대 맑은 생활이 아름답고 복되시겠지요. 나아가 살피건대 성사(星使)의 배편이 산 넘고 물 건넌에 어려운 일이 없었으니, 불민한 제가 왕복에 힘써 호위하면서 기쁨을 건디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영화롭게 돌아가실 것이라, 이전의 규례와 같이 다이라 미찌유키로 하여금 부산포로 배를 보내게 하니, 바라건대 세 사신이 곧 또 서울에 도달하면 반드시 알려주십시오. 나머지는 사자(使者)의 혀에 붙이고, 변변찮은 토산물로 애오라지 성의를 표하니, 빙그레 웃고 놓아두시기를 빕니다. 모두 바라옵고, 다 갖추지 못합니다. 정덕 2년 임진 2월 일.

별폭: 청금화로 2위, 채화한 6촌의 염경[彩畵五寸匱鏡] 5면, 채화한 작고 둥근 동이[彩畵小圓盆] 20매, 붉은 구리로 만든 차화로[赤銅茗爐] 2위, 채화경대 2개, 대화진주 2근, 검은칠 촛대[黑漆燭臺] 3개 끝.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 다이라 요시가다가 조선국 동래 부산 두 영공 합하게 계달(啓達)합니다. 중춘에 멀리서 생각건대 두 분 모두 시절에 맞추어 좋으

시겠지요.. 이에 살피건대 통신사가 바다를 건너 동무(東武)에 도착하여 대체(大體)가 시중 훌륭했고 왕복에 탈 없이 저희 땅에 도착했으니, 불민한 제가 바다와 육지에서 상접하여 호위하면서 뿔 듯이 기쁘고 기쁩니다. 이제 도로 돌아가시니 예전 규례와 같이 다이라 미찌유키와 다찌바나 가다다카[橋方高]가 부산포로 호송합니다. 세 사신이 조만간 서울에 도달하여 평안함을 알릴 것입니다. 곡절은 사자의 혀에 붙이고, 변변치 못한 물품으로 대략 미미한 정성을 표하니 받아들이시면 다행이겠습니다. 다 갖추지 못합니다. 정덕 2년 임진 2월 일.

동래부사공 별폭: 진주 드리운 패연[垂珠掛硯] 1비, 채화한 8촌의 염경[彩畵八寸匳鏡] 2면, 대화진주 1근, 채화한 중간 크기 벼룻집[彩畵中硯匣] 1개, 붉은 구리로 만든 차 화로 2위, 문지(紋紙) 400편 끝.

부산영공 별폭: 수정 갓끈[水精笠緒] 2결(結), 붉은 구리로 만든 세 개가 한 벌인 세숫대야[赤銅累三盥盤] 1부, 채화한 작고 둥근 동이[彩畵小圓盆] 20개, 붉은 구리로 만든 중간 크기 약관[赤銅中藥罐] 6개, 채화문갑(彩畵文匣) 1개 끝.

재판차왜 다찌바나 가다다카가 가져온 동래부사공 별폭: 대에 채화한 벼룻집[彩畵臺硯匣] 1비, 수정 갓끈 2결, 채화한 6촌의 염경[彩畵六寸匳鏡] 1면 끝. 정덕 2년 임진 2월 일.

부산영공 별폭: 대화진주 1근, 붉은 칠 벼룻집[赤漆硯匣] 1비, 문지(紋紙) 300편 끝.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저번에 통신사호래차왜 다이라 미찌유키 등이 가져온 서계에 대한 회답 및 동래 부산이 답할 초고를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지어 내게 하였는데, 별폭의 회례 물품은 전례대로 마련하여 계목에 후록하니, 급속히 마련하여 내려보낼 일로 해조와 본도에 분부하심이 어떠할지?

후록.

호래차왜에게 주는 참판 회례: 인삼 2근, 범가죽 2장, 표범가죽 2장, 흰 명주 10필, 흰 모시베 10필, 검은 삼베 10필, 흰 무명 30필, 황모필 30자루.[이상은 해조에서 마련]. 화석(花席) 3장, 4장을 붙인 유둔[四張付油氈] 3부, 참먹 30홀.[이상은 본도에서 지급].

참의 회례: 인삼 1근, 범가죽 1장, 표범가죽 1장, 흰 명주 7필, 흰 모시베 7필, 검은 삼베 7필, 흰 무명 20필, 황모필 30자루.[이상은 해조에서 마련]. 화석 3장, 4장을 붙인 유둔 3부, 참먹 30홀.[이상은 본도에서 지급].

동래·부산 두 곳의 회례: 각각 흰 명주 5필, 흰 모시베 5필, 흰 무명 10필,

황모필 20자루.[이상은 해조에서 마련]. 참먹 20홀[본도에서 지급].

재판차왜에게 주는 동래·부산 두 곳의 회례: 각각 흰 명주 3필, 흰 모시베 3필, 흰 무명 5필, 황모필 20자루.[이상은 해조에서 마련]. 참먹 20홀[본도에서 지급].

강희 51년(1712) 3월 초7일 동부승지 신 이세최(李世最)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예조단자. 이제 이번 통신사호래차왜 다이라 미찌유키 등의 하선·상선·유관(留館) 때 별연 도합 3번의 연회 및 접위관이 가져가는 예단 등의 물건을 전례대로 마련하니, 급속히 내려보낼 일로 해조와 본도에 분부하심이 어떠할지?

차왜에게 3번 연회를 베풀 때 증정하여 줌. 각각 인삼 1근, 흰 명주 5필, 흰 모시베 5필, 검은 삼베 3필, 흰 무명 5필, 황모필 20자루.[이상은 해조에서 마련]. 화석 3장, 4장을 붙인 유둔 2부, 참먹 20홀.[이상은 본도에서 지급].

도선주 1인에게 3번 연회를 베풀 때 증정하여 줌. 각각 인삼 1근, 흰 명주 3필, 흰 모시베 3필, 검은 삼베 3필, 흰 무명 4필, 황모필 20자루.[이상은 해조에서 마련]. 화석 3장, 4장을 붙인 유둔 2부, 참먹 20홀.[이상은 본도에서 지급].

압물 1인, 시봉 1인에게 각각 3번 연회를 베풀 때 증정하여 줌. 각각 흰 명주 2필, 흰 모시베 2필, 흰 무명 3필.[이상은 해조에서 마련].

반종(伴從) 16명에게 각각 3번 연회를 베풀 때 증정하여 줌. 각각 흰 명주 1필, 흰 모시베 1필, 흰 무명 2필.[이상은 해조에서 마련].

접위관이 가져가는 예단. 인삼 6근, 범가죽 3장, 표범가죽 3장, 흰 명주 20필, 흰 모시베 20필, 검은 삼베 14필, 흰 무명 40필, 황모필 80자루.[이상은 해조에서 마련함]. 화석 10장, 4장을 붙인 유둔 10부, 참먹 80홀.[이상은 본도에서 지급].

강희 51년(1712) 3월 초7일 입계하니 입계한 대로 시행하라고 하심.

예조단자. 이제 이번 통신사호래재판차왜 다찌바나 가다다카 등의 하선·상선·유관(留館) 때 별연 도합 3번의 연회에서 증정하여 주는 예단 잡물을 전례대로 마련하니, 급속히 마련하여 별도로 선정된 차비역관이 가지고 내려가게 할 일로 해조와 본도에 분부하심이 어떠할지?

차왜에게 3번 연회를 베풀 때 증정하여 줌. 각각 인삼 1근, 흰 명주 5필, 흰 모시베 5필, 검은 삼베 3필, 흰 무명 5필, 황모필 30자루.[이상은 해조에서 마련]. 화석 3장, 4장을 붙인 유둔 2부, 참먹 20홀.[이상은 본도에서 지급].

도선주 1인에게 3번 연회를 베풀 때 증정하여 줌. 각각 인삼 1근, 흰 명주 3필, 흰 모시베 3필, 검은 삼베 3필, 흰 무명 4필, 황모필 20자루.[이상은 해조에서 마련]. 화석 3장, 4장을 붙인 유둔 2부, 참떡 30홀.[이상은 본도에서 지급].

압물 1인, 시봉 1인에게 각각 3번 연회를 베풀 때 증정하여 줌. 각각 흰 명주 2필, 흰 모시베 2필, 흰 무명 3필.[이상은 해조에서 마련].

반중 10명에게 각각 3번 연회를 베풀 때 증정하여 줌. 각각 흰 명주 1필, 흰 모시베 1필, 흰 무명 2필.[이상은 해조에서 마련].

강희 51년(1712) 3월 초7일 입계하니 입계한 대로 시행하라고 하심.

새로 정한 약조.

一. 대마주 사람으로 초량관(草梁館) 밖으로 나가 여인을 강간하는 자는 율문(律文)에 따라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논할 일.

一. 여인을 유인하여 화간(和奸)한 자 및 강간하려다가 이루지 못한 자는 영원히 유배할 일.

一. 여인이 몰래 관중(館中)에 들어왔는데 잡아 보내지 않고 간통하는 자는 차율(次律)²⁵⁰을 쓸 일.

신묘년(1711) 11월 일 대마주 태수[도서(圖書)를 착압(着押)함].

임진(1712) 3월 초8일

비변사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동래의 장계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회계한 내용에 “통신사가 돌아올 때 호행대차왜의 경접위관을 차송하는 여부는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시라”고 한 바, 임술년(1682) 통신사가 돌아온 후 호행대차왜의 접위관은 전교(傳敎)에 따라 서울에서 차송했으니, 이번에는 마땅히 이 전례를 준용해야 할 듯하니, 이로써 해조에 분부하심이 어떠한지? 강희 51년(1712) 3월 초8일 우승지 신 김덕기(金德基)²⁵¹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250) 차율(次律) : 사형[一律, 一罪]보다 한 등급 아래의 형물로 귀양을 보내는 것이다.

251) 김덕기(金德基, 1654~1719) : 선산 김씨로 자는 재이(載而)이다. 숙종 8년(1682)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사간원에 들어갔다. 1689년 오두인(吳斗寅)·박태보(朴泰輔) 등과 함께 인현왕후 폐출의 부당성을 상소한 바 있다. 1694년 갑술환국으로 사헌부에 발탁되어, 우의정 최석정(崔錫鼎)의 삭탈관작을 청하고 훈련대장 신여철(申汝哲)의 추고를 청하는 등 강경한 언론을 자주 펼쳐 여러 번 체직되기도 했다. 동래부사·황해감사 등 외직을 거쳐 오랫동안 승지로 근무했고 뒤에 호조참판이 되었다.

임진(1712) 3월 초9일

동래부사 이정신(李正臣)이 3월 초3일 성첩한 장계. 지난달 29일 유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최호(崔琥)의 치통 내용에 “이달 14일 나온 비선 1척에 두왜 1인과 격왜 6명 등이 함께 타고 관수왜의 사서를 가지고 당일 진시에 배를 출발하여 돌아갔다”고 치통하였음. 이달 초1일 술시쯤 황령산 봉군 송지선(宋之善)과 간비오 봉군 박칠원(朴七元) 등이 진고한 내용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등불을 매달고 물마루를 나왔다”고 진고하였음. 주후로 도부한 부산첨사 최호의 치통 내용에 “작은 왜선 1척이 등불을 매달고 물마루를 나왔다고 석성 봉군이 진고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상황을 탐색하려고 개운포 만호 김중탁을 선정하여 보낸 일”로 치통하였음. 동일 해시에 성첩하고 초2일 축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나온 작은 왜선 1척을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초탐장 김중탁이 치보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정만익과 별차 김상운 등에게 명하여 정황을 묻게 한 뒤의 수본 내용에 ‘관에 나아가 정황을 물었더니, 관수왜의 말에 도중에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비선 1척에 두왜 1인과 격왜 6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관수왜에게로 사서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되, 동 노인이 풍랑에 젖어 극히 정밀하지 못한 탓에 개서하여 바치라는 뜻으로 동 왜인에게 책유한 후 물러나왔으므로 받지 않았다’고 수본하기로, 연유를 치통하는 일”로 치통하였기에, 위의 물에 젖은 노인을 개서하여 바치라는 뜻을 다시 역관 무리로 하여금 관수왜에게 책유하도록 하였음.

방금 바친 훈도 정만익, 별차 김상운, 한학(漢學) 상통사 정창주(鄭昌周),²⁵²⁾ 왜학 압물통사 김시업(金時玉+業)²⁵³⁾ 등의 수본 내용에 “이제 이번 통신사행에서 관백이 바친 별폭 잡물 및 도주와 만쇼잉[萬松院] 등이 예조에게로 바친 별폭 잡물을 왜선 3척에 나누어 실었다가, 그 중 2척은 무사히 관소에 도착하여 정박했지만 1척은 오류도 앞바다에서 난파되었는데, 동 별폭 등의 물건에 대해 왜인의 말을 상세히 들으니, 난파된 배에 실려 있던 물건 중 관백이 바친 별폭은 금병풍 12좌(坐)가 들어간 께짜 6좌, 장검 10과(把)가 들어간 께짜 1좌, 갑옷 6령(領)이 들어간 께짜 6좌, 언월도(偃月刀) 5과가 들어간 께짜 1좌이고, 도주가 예조에게로 바친 별폭 가운데 황련 40근, 시회괘연(蒔繪掛硯) 1좌, 작은 금병풍 4좌, 주

252) 정창주(鄭昌周, 1652~?) : 온양(溫陽) 정씨로 자는 성지(盛之)이다. 숙종 원년(1675) 식년시 역과에 한학(漢學)으로 급제하여, 관직이 상통사(上通事)·정(正), 품계가 봉렬대부에 이르렀다.

253) 김시업(金時玉+業) : 김시박(金時璞, 1684~?). 춘천 김씨로 자는 명중(明仲)이다. 숙종 31년(1705) 식년시 역과에 왜학으로 급제하여, 관직이 교회(敎誨)·주부(主簿)에 이르렀다.

홍(朱紅) 2근이고, 만쇼잉이 예조에게로 바친 별폭은 시회괘연 1좌, 황련 5근, 시회연갑(蒔繪硯匣) 1좌, 납주탕기(鑲酒湯器) 1좌, 시회중상(蒔繪重箱) 1좌인데, 이런 등의 물건이 모두 바닷물에 침몰하여, 그 중 갑주(甲冑)와 도검(刀劍) 등의 물건은 혹 손질해야 겨우 쓸 수 있고, 그 나머지 잡물은 형태가 유지된 것이라도 무용지물이기로, 비직 등이 관왜 등에게 말하기를 ‘막중한 별폭 등의 물건을 왜선에 싣고 오다가 이렇게 바닷물에 침몰되어 못 쓰게 되었으니 받아 나올 수가 없다’고 하니, 동 왜인들이 ‘임술년(1682) 통신사행 때는 별폭 잡물을 조선의 북선에 싣고 왔는데, 이번에는 부북선이 난파하고 일북선과 이북선은 좁아 북물이 무거워, 부사 일행의 북물 또한 왜선으로 싣고 왔기로, 동 별폭 잡물을 단지 일본 배를 빌려서 운반했을 뿐이니, 물건이 손상됨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알 바가 아니다. 동 물건을 맡겨서 싣고 올 때 단지 그 외부 표시만 보았기에 그 안의 실제 숫자는 알지 못하니, 여기에 간여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이에 의거하여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물며 또한 이런 등의 물건은 일본에서 평범한 물건이 아니니 원래 다시 구비할 길이 없고 또 품의하여 얻을 곳도 없으므로, 이로부터 변통할 길이 만무하다. 관백이 바친 막중한 별폭을 해변에 쌓아둔 채 여러 날 받아가지 않으니 일이 극히 절박하다. 속히 받아 나가서 때맞춰 포쇄(曝曬)하도록 할 일’이라고 한 바, 동 별폭 잡물은 이미 이와 같이 손상되었고 저 사람들이 답하는 바는 이와 같이 돌아보지 않으니, 어제 문답한 후 마야흐로 품정하려 할 즈음, 오늘 관왜가 비직 등을 만나고자 요청하거늘, 다시 들어가 만나보니, ‘별폭 잡물을 어제 받아가지 않았는데 오늘은 또 비가 올 징조가 있으니 해변에 드러난 채 방치하고 즉시 포쇄하지 않으면, 상한 것이 더욱 상하여 필시 무용지물이 되니, 이에 속히 받아 나가라’고 하거늘, 비직 등이 말하기를 ‘창이나 검 등과 같은 물건은 공들이 반드시 연마하여 윤을 내어야 유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운운한 즉, 관왜가 말하기를 ‘이는 상의하여 잘 처리하면 어렵지 않지만, 비록 그렇더라도 별폭의 전체 수량을 침지 등이 반드시 다 받아 나간 뒤에야 그 가운데 취할 만한 것을 다시 상의할 수 있으니, 이에 속히 전체 수량을 받아 나가라’고 떠들썩하게 계속 지껄이면서 말하는 바, 어떻게 해야 할지 감히 품의드리느 일”로 수본하였기에, 왜인의 회례 물건에는 침수되어 파손된 물건들이 그 사이에 섞여 있으니 일이 형편없게 되어 받아 올려보내기가 미안한 줄 너무도 잘 알지만, 사신이 이미 수효를 대조하여 받아서 왜선을 빌려 실었다가 우리 땅 경계에서 난파되는 것을 사람들이 목격했으니, 이는 왜인이 조심하여 싣고 오지 않은 결과가 아니거니와, 수본 내의 사연처럼 다시 구비하기를 책유하는 것은 이물(異物)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의리에 크게 손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단의 점퇴(點退)

또한 전례가 없었기로, 부득이 수량대로 받아 내어 반듯이 마르기를 기다렸다가 추후에 올려보내고자 계획하며, 연유를 먼저 치계하는 일임.

예조참의에게 답한 대마주 서계와 별폭.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 다이라 요시가다[平義方]가 조선국 예조참의 대신 합하게 봉복(奉復)합니다. 성사(星使)의 배편에 영화로운 편지가 잇따라 이르고 또 성대히 예물을 주시니 위로됨이 평소보다 배가 됩니다. 이에 살펴건대 우리 대군(大君)께서 세통(世統)을 계승하여 널리 정령(政令)을 선포하시매 사신이 바다를 건너니, 참으로 백 년간 사귄 정의(情誼)가 오래될수록 더욱 두텁고, 만리의 병문이 한결같이 옛 규례를 따르는지라, 조정의 기쁨이 어찌 그침이 있겠습니까? 이번에 성대한 예(禮)로 우대하심은 이전까지 없었던 일입니다. 세 사신의 진퇴가 법도에 맞아 대례(大禮)를 이미 마치고 돌아가니, 불민한 제가 어찌 춤을 출 이 기쁨을 감당하겠습니까? 저희의 산물을 아래 별지에 기록하니, 엿드려 바라건대 받아들이시면 다행이겠습니다. 삼가 이에 다 갖추지 못합니다. 정덕 2년 임진 2월 일 대마주 태수 습유 다이라 요시가다.

별폭: 붉은 구리로 만든 다섯 개가 한 벌인 세숫대야[赤銅累伍盥盤] 2부, 수정 잣근[水精笠緒] 2결, 채화화전갑(彩畫華箋匣) 2개, 채화한 7촌의 염경[彩畫七寸奩鏡] 2면, 금을 붙인 병풍[貼金屏風] 2쌍, 대화진주(大和眞珠) 4근, 채화한 옷걸이[彩畫衣桁] 1각(脚), 문지(紋紙) 1000편, 채화서가(彩畫書架) 1각 끝. 정덕 2년 임진 2월 일 대마주 태수 습유 다이라 요시가다.

예조대인에게 답한 만쇼잉[萬松院]의 회답[回翰]과 별폭.

일본국 대마주 종벽산(鍾碧山) 만쇼잉은 참으로 황공하여 합장[和南]²⁵⁴⁾하며 조선국 예조대인 합하게 봉복합니다. 먼저 배편에 의지하여 공경히 은혜로운 편지를 받들고 또 아름답게 예물을 주시니 참으로 위로되고 흐뭇합니다. 토산물이 비록 비박하지만 회답의 경의를 간략히 펴니, 바라건대 밝게 살펴주십시오. 다 갖추지 못합니다. 정덕 2년 임진 2월 일 대마주 종벽산 만쇼잉.

별폭: 채화괘연갑(彩畫掛硯匣) 1개, 채화누합대연갑(彩畫累合大硯匣) 1비, 황련 5근, 수납으로 만든 주과아[粹鑑酒鍋兒] 1개, 채화연광(彩畫宴筐) 1비 끝. 정덕 2년 임진 2월 일 대마주 종벽산 만쇼잉.

254) 화남(和南) : 승려가 합장하며 예(禮)를 표한다는 뜻의 불교 용어.

예조대인에게 답한 이폐이양[以配庵]의 회답[回翰]과 별폭.

일본국 대마주 할려산(曉驢山) 이폐이양은 참으로 황공하여 합장하며 조선국 예조대인 합하게 봉복합니다. 먼저 배편에 의지하여 공경히 은혜로운 편지를 받고 또 아름답게 예물을 주시니 참으로 위로되고 흐뭇합니다. 토산물이 비록 비박하지만 회답의 경의를 간략히 펴니, 바라건대 밝게 살펴주십시오. 다 갖추지 못합니다. 정덕 2년 임진 2월 일 대마주 할려산 이폐이양.

별폭: 금을 붙인 병풍[貼金屏風] 1쌍, 채화문갑(彩畵文匣) 1개, 문지(紋紙) 500편, 수납으로 만든 중간 크기 차사발[粹鑑中茗盃] 10개, 검은 칠한 크고 둥근 동이[黑漆大圓盆] 10매 끝. 정덕 2년 임진 2월 일 대마주 할려산 이폐이양.

예조대인에게 답한 조연장로(祖緣長老)의 회답[回翰]과 별폭.²⁵⁵⁾

일본국 산성주(山城州) 만년산(萬年山) 사문(沙門) 조연이 조선국 예조대인 합하게 봉복합니다. 성사(星使)의 배편에 멀리서 은혜로운 편지를 받고는, 동정(動靜)이 조화롭고 느긋하심을 살펴보니, 기쁘고 위로됨이 참으로 깊습니다. 빙례(聘禮)의 일을 마쳤으니, 바다와 육지에서 탈 없이 호위하는 한 사안을 어찌 애써 알려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까? 진귀한 예물을 주시니 그 성대한 뜻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비박한 의물(儀物)로 회답의 경의를 간략히 펴니, 모두 밝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갖추지 못합니다. 정덕 원년 신묘(1711) 납월 일 산성주 만년산 사문 조연.

별폭: 진주 5근, 청금화로(靑金火爐) 2위, 수납으로 만든 차사발[粹鑑茗盃] 20개, 금을 뿌린 큰 벼룻집[撒金大硯匣] 1구(具), 붉은 구리로 만든 다섯 개가 한 벌인 세숫대야[赤銅累伍盥盤] 1부, 황련 10근, 수정 갓끈 2결 끝. 정덕 원년 신묘 납월 일 산성주 만년산 사문 조연.

관백의 회답은 머물러 두고 내리지 않았으며, 도주 이하의 회답 서계와 별폭만 계하하였음.

임진(1712) 3월 초10일

정원의 계사. 접위관 조석명(趙錫命)은 현재 직명이 없으니, 해조로 하여금 구

255) 원문은 ‘回翰’이지만, 위의 두 경우처럼 ‘回翰并別幅’이 되어야 하므로, 이제 이렇게 번역하였다.

전(口傳)으로 군직(軍職)에 부치게 하심이 어떠할지? 전교하기를 “윤희한다”고 하심. [병조].

임진(1712) 3월 14일

동래부사 이정신(李正臣)이 3월 초6일 성첩한 장계. 이달 초3일 신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최호(崔琥)의 치통 내용에 “금년 2월 25일에 나온 비선 2척에 두 왜 각 1인과 격왜 각 7명 등이 함께 타고 관수왜의 사서를 가지고 당일 진시에 배를 출발하여 돌아왔다”고 치통하였음. 초5일 술시쯤 황령산 봉군 송지선(宋之善)과 간비오 봉군 박칠원(朴七元) 등이 진고한 내용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물마루를 나왔다”고 진고하였음. 추후로 도부한 부산첨사 최호의 치통 내용에 “작은 왜선 1척이 물마루를 나왔다고 석성 봉군이 진고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상황을 탐색하려고 본진의 제2선 선장 최재홍을 선정하여 보낸 일”로 치통하였음. 동일 해시에 성첩하고 초6일 축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나온 작은 왜선 1척을 영술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초탐장 최재홍이 치보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정만익과 별차 김상윤 등에게 명하여 정황을 묻게 한 뒤의 수본 내용에 ‘관에 나아가 정황을 물었더니, 관수왜의 말에, 도중에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비선 1척에 작질이 높은 두왜 1인과 격왜 6명 등이 함께 타고 동래 부산에게로 서계를 가지고 왔다고 하기로, 동 서계 1통을 받아 올려보내거니와, 동 왜인의 말에, 도주가 통신사의 배가 난파되었음을 듣고 이렇게 서계를 바치며 작질이 높은 왜인을 내보낸 것이니, 이 두왜는 별도로 접대한다는 뜻을 동래영감에게 고해 달라고 하거늘, 비직 등이 답하기를, 도주가 이렇게 서계를 바친 것은 비록 가상하다 하겠지만, 두왜를 접대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니 품정할 수 없다고 하니, 동 왜인이 또 말하기를, 이제 이 두왜는 다른 두왜와 다를 뿐만 아니라, 도주가 바친 서계도 별도의 예(禮)인 즉, 교제하는 정의(情誼)에 있어서는 접대를 허락할 도리가 있는 듯하니, 첨지 등이 모름지기 이런 뜻으로 잘 고해 달라고 간절하게 그치지 않되, 비직 등이 한결같이 굳게 막아 책유했다’고 수본하기로, 동 서계를 받아 수송하는 일로 치통한다”고 치통하였기에, 위의 대마도주가 동래 부산에게로 바친 서계 1통을 받아 감봉하여 해조에 올려보냈으니, 회답 초고를 해조로 하여금 지어 내어 내려보내도록 하시며, 두왜 접대의 일은 이전의 등록을 취하여 상고하니, 공무(公務)로 서계를 가지고 나온 두왜는 비록 접대하지는 않지만 약간의 식량과 반찬거리는 지급한 규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두왜는 사신의 배가 난파되었음을 위로하기 위해

내보낸 것이니 범연한 공무와는 또한 구별되는 듯하기로, 동 식량과 반찬거리를 참작하여 지급하려고 계획하며,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이정신의 장계를 보니, 관수왜의 말에 “도주가 통신사의 배가 난파되었음을 듣고 이렇게 서계를 바쳤다”고 하면서, 도주가 동래 부산에게로 바친 서계를 올려보냈으니 회답 초고를 해조로 하여금 지어 내어 내려보내도록 하시라고 한 바, 도주가 통신사의 배가 난파되었음을 염려하여 서계를 지어 내보냈으니 서로 우호하는 도리에 있어 회답이 없을 수 없으므로, 동래 부산이 답할 초고를 승문원으로 하여금 말을 만들어 지어 내어 내려보낼 일을 아울러 분부하심이 어떠할지? 강희 51년(1712) 3월 14일 좌승지 신 김덕기(金德基)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 다이라 요시가다[平義方]가 조선국 동래 부산 두영공 합하게 계서(啓書)합니다. 중춘에 기거가 편안하시리라 생각하니 그리운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관(館)에서 보고하는 문서를 접하니, 귀국의 통신사 일행이 이달 25일 사스나우라[佐須奈浦]에서 돛을 올렸는데, 그때 신시 무렵에 풍파가 크게 일고 게다가 음산한 비에 짙은 안개가 사방에 짙어 지척도 분간하기 어려워, 밤이 되어서야 정사의 기선이 겨우 용대(龍臺:오륙도)에 도착하여 정박했고, 부사의 기선은 암초에 부딪혀 사포(蛇浦)에서 파괴되어 격군 1명이 물에 빠져 죽었으며, 종사의 기선과 복선은 표류하여 염포(鹽浦)에 도착했으며, 나머지 정복선(正卜船)은 간 곳을 모르고 부복선(副卜船)은 바다 가운데 표류했으며 별폭을 실은 배 1척은 돌에 부딪혀 밑바닥이 파손되어 물에 젖는 우환이 있었다고 하니, 이 보고를 듣고 놀라움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대저 배를 운행하는 도리는 바람을 살피고 조류를 살펴 지극히 두려워하고 삼가야 하는데, 일행의 돌아가려는 마음이 비록 급하더라도 위험을 무릅쓴 거조는 반드시 예방해야 마땅하건만 이렇게 뜻밖의 위태로운 변고가 생겼으니, 그것이 과연 하늘의 뜻인지 사람의 실수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 사자 다이라 구주우[平矩充]를 보내 급히 문의를 드리니, 세세히 갖추어 교시해주시길 원하오며, 부디 조금이나마 우려하는 마음을 펴시고 한편으로는 문서 내용을 다 갖추어 치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천만 오직 높이 살피주십시오. 삼가 이에 다 갖추지 못합니다. 정덕 2년 임진 2월 일 대마주 태수 습유 다이라 요시가다.

임진(1712) 3월 22일

경상감사 이의현(李宜顯)이 3월 17일 성첩한 장계. 통신사호래재판차왜 다찌마나 가다다카[橋方高]의 접위관으로 자인(慈仁)현감 정몽해(鄭夢海)를 차정하여 그로 하여금 전례대로 접대하게 하였으며,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임진(1712) 4월 초7일

예조단자. 동래부사가 올려보낸 통신사가 돌아올 때 관백 및 대마도주 이하가 바친 회례 등의 물건을 전례대로 간품하여 납입한 일.

관백 회례: 언월도 20과[그 중 5과는 침수됨], 장검 20과[그 중 10과는 침수됨], 갑옷 20령[그 중 6령은 침수됨], 금병풍 20쌍[그 중 6쌍은 침수되고, 14쌍은 뒷면 배접한 비단의 꽃이 곳곳이 긁혀 손상됨], 주자(廚子) 1좌.

산성주 만년산 사문 조연이 바친 물건: 대화진주 5근, 청금화로 2개, 수납으로 만든 차사발 10개[그 중 1개는 깨짐], 금을 뿌린 큰 벼루상자[撒金大硯箱] 1구, 붉은 구리로 만든 다섯 개가 한 벌인 세숫대야 1부, 황련 10근, 수정 갓끈 2결.

대마도주가 바친 물건: 붉은 구리로 만든 다섯 개가 한 벌인 세숫대야 2부, 수정 갓끈 2결, 채화화전갑 2개[그 중 1개는 윗덧개의 한쪽 모서리가 손상되고, 1개는 본판의 칠이 긁힌 흔적이 있음], 채화한 7촌의 염경 2면, 금을 붙인 병풍 2쌍[뒷면 배접한 비단의 꽃이 곳곳이 긁혀 손상되고, 1쌍은 가장자리를 장식한 석철(錫鐵:무쇠)이 떨어지고 없음], 대화진주 4근, 채화한 옷걸이 1각, 문지(紋紙) 1000편, 채화서가 1각.

만쇼잉이 바친 물건: 채화괘연 1개, 채화누합대연갑 1개[침수됨], 황련 5근[침수됨], 수납으로 만든 주과아 1개[침수됨], 채화연광(彩畵宴筐) 1비[침수됨].

이때이양이 바친 물건: 금을 붙인 작은 병풍 1쌍[그 중 1짝은 뒷면 배접한 비단의 꽃이 긁혀 손상됨], 채화문갑 1개, 문지 500편, 수납으로 만든 중간 크기 차사발 10개, 검게 칠한 크고 둥근 동이 10매.

강희 51년(1712) 4월 초7일 입계함.

임진(1712) 4월 11일

경접위관 부사과(副司果) 조석명(趙錫命)이 4월 초4일 성첩한 장계. 신은 이

달 초3일 동래부에 도착하였거니와, 동 통신사호래차왜 다이라 미찌유키[平倫之]의 다례는 날을 정해 설행하고 추후로 계문할 계획이므로 연유를 아울러 먼저 치계하는 일임.

임진(1712) 4월 17일

경접위관 부사과 조석명(趙錫命)과 동래부사 이정신(李正臣)이 4월 11일 성첩한 장계. 통신사호행차왜 다이라 미찌유키[平倫之] 원역 등의 다례를 이달 초 10일로 정하였기로, 동일 신들이 함께 관소에 가서 전례대로 설행한 후, 예조에 게로 보낸 서계와 별폭 각각 2통 및 동래 부산에게로 보낸 서계 1통과 별폭 2통 등을 받아 올려 감봉하여 해조에 올려보내거니와, 동 차왜가 거느린 시봉 2인 중 1인은 임술년(1682) 전례대로 본부에서 이미 알아듣게 잘 타일러 감제하였기로 1인만 접대하며, 한편 무릇 통신사행 이후 대마도주가 바치는 예단 별폭은 두 차례로 나뉘는데, 그 일차로 바치는 것은 통신사가 나올 때 받아오고, 그 이차로 바치는 것은 대차왜가 받아오는데, 이는 모두 임술년(1682)의 전례로서, 물종의 많고 적음을 말하자면 대차왜가 받아오는 별폭이 통신사가 받아오는 별폭보다 넉넉하거니와, 이번 통신사가 나올 때 대마도가 마감하여 정한 것에 오류가 있어서 대차왜가 받아와야 하는 예단을 통신사에게 바꾸어 주었는데, 그 별폭 문서가 이미 올라가버려 교정하기 어렵기로, 지난달 16일 압물역관 김시업(金時玉+業) 등이 위의 별폭을 배지하고 올라갈 때 별폭이 잘못되어 바뀌었다는 뜻으로 연유를 갖추어 해조에 치보하였는데, 이제 대차왜의 별폭은 통신사가 받아와야 하는 물종의 수를 바쳐야 마땅하나, 그의 말에 “이제 이번 별폭이 잘못 바뀐 것은 내 탓이 아니다. 내가 받아와야 하는 별폭을 통신사가 먼저 받아갔기에 나는 오직 통신사가 받아와야 하는 별폭을 바쳐야 마땅한데, 다만 통신사가 받아온 별폭을 교체하여 바치기는 우리로서는 미안하기로, 그 물에 젖은 물건을 고치고 그 꺾락된 품목을 보태어 한결같이 임술년(1682) 등록 안의 대차왜가 바친 수량대로 바치겠다”고 훈별 등이 와서 고하거니와, 대차왜가 말한 바는 그들로서는 비록 자처하는 도리를 다하는 것이나, 전날에 올려보낸 것이 이미 대차왜의 별폭이요 오늘 받은 것도 대차왜의 별폭인지라, 수량이 넉넉한 별폭을 겹쳐 받는 것은 받는 것을 사양하는 절도에 언짢음이 있어서 물리쳐 받지 않는 것이 마땅하나, 저들이 이미 임술년(1682) 등록을 끌어왔고, 전날에 올라간 별폭은 원래 압물역관이 받아온 것이니, 그 수가 등록보다 지나쳐도 본부가 알 바는 아니고, 이제 이 받은 별폭은 과연 등록과 부합하니, 본부에서 전례

에 비추어 받아도 방해되는 바가 없을 듯하기로, 그 수대로 받아 올리려고 계획하며,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는 일임.

임진(1712) 4월 24일

상통사 정창주(鄭昌周)와 압물통사 김시업(金時玉+業) 등의 수본 내용. 이제 이 통신사가 가져간 예단 중 일본국 왕자 및 수직왜(受職倭) 5인에게 증정하는 예단 물건은 전해주지 못하였기로 도로 가지고 왔는데, 그 중 수직왜에게 주는 예단 가운데 흰 모시베 15필 중 10필은 그때 관반(館伴)인 문위사(問慰使) 왜인 등에게 증정하는 예단으로 옮겨 사용했기에, 장계 안에 연유를 갖추어 실었거니와, 지금 사신이 도장을 찍을 수 없는 탓에 비직 등이 도로 가져온 예단의 수를 수본에 후록하고 상고하여 받아 올리는 일로 감히 이에 우러러 품달합니다.

일본국 왕자에게 주는 사신 예단: 범가죽 5장, 인삼 10근, 흰 모시베 10필.

수직왜 5인에게: 흰 모시베 각각 3필 도합 15필 중 11필은 사용했음, 흰 명주 각각 3필, 황모필 각각 10자루.[이상은 해조]. 화식 각각 2장, 참먹 각각 5홀.[이상은 본도].

별폭 문서 봉투[封]는 수직왜에게로 주는 별폭의 것.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수결한 내용. 호조와 본도로 이문하려고 도부했음.

임진(1712) 5월 초3일

경접위관 조석명(趙錫命)과 동래부사 이정신(李正臣)이 4월 26일 성첩한 장계. 통신사호래차왜 다이라 미찌유키[平倫之] 원역 등의 하선연을 이달 25일로 정하였기로, 동일 신들이 함께 초량객사에 가서, 동 차왜 등이 전례대로 진상하고 숙배한 후 하선연을 그대로 설행하며, 공·사예단 잡물 또한 숫자를 대조하여 들여주었다는 일임.

임진(1712) 5월 초5일

비변사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동래부사의 장계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안에 “범간 때문에 새로 정한 약조를 또한 이미 전하여 바쳤으니, 본부에 보관해두는 것으로 그칠 수는 없으므로, 본부로 하여금 속히

새겨서 관중(館中)에 세워두어 왕래하는 왜인들이 금제(禁制)를 밝게 알도록 함이 사의(事宜)에 부합하니,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시라”고 한바, 이제 이 범간의 일로 새로 정한 약조는 누차 책유한 나머지 나왔는데, 이미 도중에서 3조로 정하여 내보냈으니, 이는 양국이 영구히 준수할 조약이기에, 새겨서 관중에 세워두어 왕래하는 왜인들이 금제를 밝게 알도록 하자는 것은 실로 해조의 복계와 같으니, 이에 속히 돌에 새겨 관중에 세워두라는 뜻으로 동래부사에게 분부하심이 어떠할지? 강희 51년(1712) 5월 초5일 우승지 신 이동암(李東鰲)²⁵⁶⁾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경접위관의 관문 내용. 이제 이 통신사호래차왜의 연향을 연이어 차례로 설환하는데, 역관 등이 와서 고한 내용에 “차왜가 말하기를 ‘임술년(1682) 통신사 세 분이 도주에게로 편지를 지어 보낸 일이 있으니, 이번에는 임술년(1682) 전례대로 동 편지를 이에 속히 지어 보내되, 만약 사신의 편지를 얻지 못하면 비록 기한이 지나더라도 돌아가서 도주에게 보고하지 않겠다. 운운’이라고 와서 고하기로, 등록에서 상고하니 임술년(1682)에 대마도주에게 세 사신이 과연 편지를 지어 보낸 전례가 있는데, 동 편지를 제때 내려 보내지 않은 까닭에 차왜가 관중에서 지체하므로 날마다 재촉하였던 바, 이번에 이 편지가 제때 도착하지 않아 관중에서 오래 머무르는 일이 있으면 그 폐단이 적지 않을 것이니, 동 편지를 이에 속히 재촉하여 내려 보내 머물러 기다리는 폐단이 없도록 할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수결한 내용. 임술년(1682) 비록 세 사신에게 사서(私書)가 있어서 그에 답한 일이 있지만, 이는 응당 행하는 전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세 사신이 모두 중죄를 입어, 설령 도주의 사서가 있더라도 전례를 따라 회답할 수 없으니, 이런 뜻으로 답할 것을 의당 상고하여 시행할 일.

임진(1712) 5월 17일

경접위관 부사과 조석명(趙錫命)이 5월 초10일 성첩한 장계. 통신사호래차왜 다이라 미찌유키[平倫之]의 원역 등이 별연 설행을 없애고 건물(乾物)로 들여달라 운운한다고 역관들이 와서 고하기로, 그 소원대로 이달 초9일 동 연회 수요의 건물 및 공·사예단 잡물을 아울러 숫자를 대조하여 들여주었으며,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256) 이동암(李東鰲, 1643~?) : 여주 이씨로 자는 춘경(春卿), 호는 월담(月潭)이다. 숙종 12년(1686)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승지·한성부 좌윤 등을 역임하였다.

임진(1712) 5월 20일

동래부사 이정신(李正臣)이 3월 21일 성첩한 장계. 이달 15일 신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최호(崔琥)의 치통 내용에 “금년 2월 25일에 나온 비선 1척에 두왜 1인과 격왜 6명 등이 함께 타고서 대차왜와 관수왜의 사서를 가지고 당일 진시에 배를 출발하여 돌아갔다”고 치통하였음. 16일 신시에 도부한 동첨사의 치통 내용에 “금년 2월 25일에 나온 비선 1척에 두왜 1인과 격왜 6명 등이 함께 타고서 대차왜와 관수왜의 사서를 가지고 당일 진시에 배를 출발하여 돌아갔다”고 치통하였음. 17일 신시에 도부한 동첨사의 치통 내용에 “올봄 수군의 조련에 나아가 참가하고자 첨사가 당일 여러 배들을 영솔하여 수영(水營)으로 출발하며, 유진장(留鎭將)으로 군관 서석구(徐碩龜)를 차정한 일”로 치통하였음. 20일 유시에 도부한 접위관 자인현감 정몽해(鄭夢海)의 이첩(移牒) 내용에 “통신사 호래재판차왜 다찌바나 가다다카[橋方高] 원역 등의 다례를 이달 20일 전례대로 설행한 후, 차왜가 동래 부산에게로 바치는 별폭 각각 1통을 받아 올려 수송하는 일을 통틀어 치통하고 이첩한다” 하였기에, 위의 차왜가 동래 부산에게로 바치는 별폭 2통을 감봉하여 해조에 올려 보냈음.

방금 바친 훈도 정만익과 별차 김상윤 등의 수본 내용에 “오늘 재판차왜의 다례 때 동 왜사(倭使)가 통사왜와 비직 등을 왕복시키며 접위관 앞에서 갖추어 진달하기를 ‘도주에게 아들이 있으면 귀국에서 특별히 아명 도서를 지급하여 교린의 두터운 정익(情誼)을 보이신 탓으로, 일찍이 도주의 아들 히꼬망[彦滿]과 히꼬미쯔[彦三]가 연이어 아명 도서를 받아, 귀국의 은전이 이미 그 규례를 이루었습니다. 지금 도주가 적통을 계승하여 경사(慶事)를 고한 지 수년이 되었으니, 아명 히꼬 센다이[彦千代]의 도서는 예전에 의당 은혜로운 허락을 입었어야 했는데 아직도 은혜를 입지 못했으니, 그 똑같은 대우 아래에 있으면서 어찌 혼자 구석을 향하는 탄식²⁵⁷⁾이 없겠습니까? 이 일의 전말은 이미 이번 통신사행 때 세 사신 앞에서 다 갖추었는데, 사신이 뜻밖에 나포되어 가버려²⁵⁸⁾ 다시 가망이 없기에 부득불 이렇게 우러러 진달하니, 원컨대 대

257) 향우지탄(向隅之歎) :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즐거워하나 자신만은 구석을 향하여 한탄한다는 뜻으로, 좋은 때를 만나지 못하여 한탄하는 말이거나,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하여 한탄하는 말이다.

258) 신묘년(1711) 5월 조정에 하직하고 일본으로 떠난 통신사행의 정사 조태억(趙泰億), 부사 임수간(任守幹), 종사관 이방언(李邦彦) 등은 임진년(1712) 2월 귀국하자, 국서(國書)의 서식과 관련하여 왕명을 욕되게 했다는 이유로 대간의 탄핵을 받아 그 해 3월 9일 수금(囚禁)되었다.

인께서 이런 뜻을 조정에 전달하여 동 히꼬 센다이의 아명 도서를 옛 법식대로 지급할 것을 허락하여 동일하게 어진 혜택을 입도록 해주시라'고 하며, 또 '서관(西館) 동대청(東大廳)의 서쪽 행랑(行廊)이 불탄 지 많은 해가 지났으니, 동(同) 행랑 또한 다시 건립하여 먼 사람으로 하여금 전례대로 용접(容接)²⁵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며, 또 '금번 통신사를 호행한 금도왜·통사왜·사공왜 등은 만 리 먼 바다에서 이처럼 폐단 없이 호행하여 왔으니, 그 이웃과 우호하는 도리에 있어 체급(帖給)²⁶⁰⁾하는 거조가 없어서는 안 되는데, 관중(館中)의 임술년(1682) 등록 안에 지급한 쌀의 수량이 명백히 수록되어 있거늘, 훈별 등은 전례가 없다고 일컬으면서 거간에 말만 많고²⁶¹⁾ 아직도 선뜻 시행하지 않는지라, 그래서 이처럼 다례 자리에서 우러러 진달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 3건의 일을 구비하여 모두 다 전하여 계달해 주시라'고 누누이 언급하기로, 연유를 수본하는 일"로 수본하였기에, 도주의 도서 요청을 받은 것이 이제 거의 10년이 되어, 전후의 곡절은 조정에서 이미 다 밝게 알고 있는데, 저들 왜인의 요청이 비록 전례에 의거하였더라도, 지금 만약 인준하여 지급하면 책임에 부응할 즈음에 반드시 본도에 폐단이 있거니와, 배 하나를 추가하여 나오는 일은 관계됨이 무겁고 어려우니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며, 또 그 통신사를 호행한 각양의 왜인들에게 체급하는 일은 한결같이 임술년 등록의 체급에 따르되, 그 중 통사왜는 임술년 등록에 비록 체급의 규례가 없으나, 저들 왜관 안의 문서에 체급의 규례가 있다고 누누이 언급할 뿐만 아니라, 비록 표류한 사람을 영솔해온 통사왜라도 또한 체급의 규례가 있는데 통신사행을 호송하여 온 통사왜는 사체가 더욱 특별하기로, 본부에서 참작하여 이미 먹을 쌀을 체급했으니, 저들 왜인의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에 의당 더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며, 그 서관 동대청의 서쪽 행랑을 개조하는 일 같은 경우는 연전에 불탄 것이 과연 실상이나 아직까지도 고쳐 짓지 못한 것은 바로 흉년 때문인데, 왜인의 말에 이미 고집하는 바가 있어 막기 어려우니, 가을을 기다려 이루거나 혹은 내년 봄을 기다려 한 번은 지어 주어야지 그만두어서는 안 될 듯하므로 이 또한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실 일임.

이에 의거하여 비변사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259) 용접(容接) : 찾아온 손님을 맞이하여 만남.

260) 체급(帖給) : 관아에서 용인(傭人)이나 상인(商人)에게 금품을 줄 때 서면으로 써서 내려주는 것.

261) 주차(周遮) : 말이 많은 모양. 그렇게 하여 어떤 인물이나 사안에 대해 적극 변호하여 막아주는 것, 또는 임금에게 올라가는 언로(言路)를 가로막는 것.

이정신의 장계를 보니, 훈별 등의 수분에 의거하여 말하기를 “도주의 도서 요청을 받은 것이 이제 거의 10년이 되는데, 전후의 곡절을 조정에서 이미 다 밝게 알고 있으니, 저들 왜인이 비록 전례에 의거하더라도, 지금 만약 인준하여 지급하면 책임에 부응할 즈음 반드시 본도에 폐단이 있으며, 배 하나가 추가되어 나오는 일은 관계됨이 무겁고 어렵다”고 하며, “통신사를 호행한 왜인에게 제공하는 일은 한결같이 임술년 등록에 따르되, 그 중 통사왜는 임술년 등록에 비록 제공의 규례가 없으나, 왜관의 문서에 제공의 규례가 있다고 누누이 언급할 뿐만 아니라, 표류한 사람을 영솔해온 통사왜도 역시 제공의 규례가 있는데 통신사행을 호래한 통사왜는 사체가 더욱 특별하기로, 본부에서 참작하여 이미 먹을 쌀을 제공했으니, 더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며, “서관 동대청의 서쪽 행랑이 연전에 불탔으나 아직까지도 고쳐 짓지 못한 것은 바로 흉년 때문인데, 왜인의 말에 이미 잡은 바가 있어 막기 어려우니, 가을을 기다려 이루거나 혹은 내년 봄을 기다려 한 번은 지어 주어야지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며, 모두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시라고 한 바, 이제 이 히꼬 센다이 도서의 일은 동래부가 전후로 장계하여 사연을 알렸고 묘당에서 막으면서 곡절을 계달하여, 일이 이미 성감(聖鑑)으로 통찰하신 바이거니와, 그 처음 히꼬망과 히꼬미쯔에게 도서를 성급한 것은 대개 선대 조정이 그 아버지의 충근(忠勤)을 가상히 여긴 데서 나와 특별히 시행한 것이고, 이후 전례로 삼지 말라는 뜻도 이미 널리 타일렀으니, 의당 감히 다시는 이런 요청이 있어서는 안 되기에, 그 후 시게오키[調興]의 요청과 다시 유게이[右京]의 요청을 받았으나 여러 번의 요청에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감히 다시 요청하지 않은 것은 저들이 근거할 만한 바가 없기 때문이요, 우리는 잡은 바가 있으니, 지금 이 요청은 이미 ‘후에 전례로 삼지 말라’는 선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설사 이것이 응당 요청할 일이더라도 마땅히 별도의 서계로 진청(陳請)해야 하건만, 기축년(1709)에 답하는 서계 안에 덧붙여 진달한 것은 더욱 경근한 뜻을 잃었으며, 지금 또 통신사호차왜의 다례 날에 재판차왜 등이 감히 히꼬망과 히꼬미쯔의 일을 끌어와 전례와 같음을 보이려고 사설(辭說)을 길게 늘어놓으며 반드시 허락을 입고자 하는 것 역시 극히 무엄합니다. 이 일은 격식 이외의 은전에 해당하니, 어찌 차왜 등이 사사로운 말로 우러러 요청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조정에서 먼 사람을 위무하고 안돈하느라 관대함과 두터움을 힘써 따르니, 지금 이후로 더욱 충근(忠謹)에 독실하여 무릇 청하는 바에 관하여 삼가 사체를 준수한다면, 또 어찌 참작하여 헤아려 처분할 방도가 없

겠는가마는, 그 사사로이 전하는 말로써 특별한 은전을 가볍게 허락할 수는 없다'는 뜻으로 동래부사더러 엄히 책유를 더하도록 하며, 통신사호행통사왜에게 채급하는 일은 임술년 등록 안에 원래 실려 있지 않으니 전에 없던 사례를 개창하기 어려워 본부에서 왜관 안의 문서에 의거하여 먹을 쌀을 채급한 것이니 다시 논할 것이 없으며, 왜관 서쪽 행랑의 재건은 그만두지 못할 일이지만 연이은 흉년으로 아직 역사를 일으킬 겨를이 없으니 짐짓 추수를 기다려 지어 주겠다는 뜻으로 분부하심이 어떠할지? 강희 51년(1712) 5월 20일 동부승지신 조도빈(趙道彬)²⁶²⁾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262) 조도빈(趙道彬, 1665~1729) : 양주(楊州) 조씨로 자는 낙보(樂甫), 호는 수와(睡窩)·휴와(休窩)이다. 아버지는 태래(泰來)이며, 숙부는 신임사화 때 사사(賜死)된 노론 4대신 중 한 사람인 태채(泰采)이다. 숙종 28년(1702) 알성문과에 급제하여 1710년 승지가 되었다. 1719년 동지사(冬至使)로 청나라에 다녀와, 대사성·대사헌·형조판서·병조판서 등을 지냈다. 경종조 신임사화에 연루되어 옥구(沃溝)에 유배되었다가 안음(安陰)으로 이배되었다. 영조가 즉위하자 풀려나 공조판서·병조판서·우의정·영돈녕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편집위원

- 위원장 **이송희**(신라대학교 교수)
- 위 원 **박화진**(부경대학교 교수)
- 위 원 **백승충**(부산대학교 교수)
- 위 원 **김강식**(한국해양대학교)
- 위 원 **황경숙**(부경대학교 교수)
- 위 원 **표용수**(부산광역시 시사편찬실)

국역위원

- 자료해제 **김동철**(부산대학교 교수)
- 자료번역 **정경주**(경성대학교 교수)
- 유영옥**(동아대학교 교수)
- 감 수 **이원균**(전 부경대학교 교수)

釜山史料叢書

國譯 通信使謄錄(Ⅲ)

발 행 인	강 대 민
편 지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편 집 · 교 열	부산광역시사편집분과위원회
발 행 일	2015년 8월 31일
인 쇄	성진종합인쇄사
발간등록번호	52-6260000-00076-10
ISBN	979-11-85308-04-3
	978-89-964675-0-2(세트)

비매품

【연락처】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시사편찬실

전화 051-888-5058, 팩스 051) 888-5059

자료검색 :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www.bssisa.com)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san.go.kr) 향토사도서관